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 2001~2021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 2001~2021

다시·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원은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국에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권장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후 1990년대 후반에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이 모여 인권기구 설립의 방향과 전략을 숙의하고 국가인권기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친 끝에 마침내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구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개별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그리고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인권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일제 식민잔재 및 분단체제의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 즉 인권의 실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여성,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구금시설, 보호시설, 군대 등의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노동인권 등 분야에서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금기시해 왔던 인권관련 현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이 우리 사회의 생활 속 규범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설립 20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새로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양극화와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변화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계승해야 할 일과 보완해야 할 일을 점검하여 앞으로 새로운 20주년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를 편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이 한권의 책에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어 다채로운 기억들로 지난 20년을 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가 발간되기까지 애써주신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 집필자들, 그리고 소중한 기억과 자료를 꺼내어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목차

1 개관

발간사	— 004
기관 소개	— 010
테마화보	— 016
통계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 036

제1장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유엔과 국가인권기구	— 056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 056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1978~1993)	— 060
2 국내 설립기반 준비 과정(1993~2001)	— 061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현황

1 주요 기능	— 070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071

2 조직 및 운영 변천사

1 인권위 설립 첫날_진정접수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	— 088
2 인권위의 조직·인력 구성 과정_독립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다	— 091
3 인권위 출범에 대한 해외의 관심_국제인권 리더로 발돋움	— 094
4 위원장 해외출장 청와대 사전 미보고 사건_인권위의 정체성을 확인하다	— 097
5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사회보호법, 차별금지법, 인권NAP_ 2003년 인권위가 주목한 과제들	— 100
6 전국 인권순회상담_현장에 답이 있다	— 104
7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표명_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켜낸 독립성	— 107
8 인권사무소 개소_지역의 인권파수꾼	— 110
9 사형제 폐지 권고_인권위의 숙명을 생각하다	— 113
10 인권교육_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정	— 116
11 장애인차별금지법_입법을 통한 인권제도 개선	— 119
12 조직 축소_인권위에 닥친 시련, 그리고 미완의 조직 회복	— 122
13 ICC 승인심사 보류_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A등급으로	— 126
14 새로운 인권_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인권위	— 128
15 블랙리스트, 직원 징계_무겁게 가라앉은 인권위	— 131
16 인권위 청사_청사도 인권위다워야 한다	— 133
17 인권위 위상 강화조치_인권위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	— 135
18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_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어젠다 선도	— 138
19 혐오차별 대응_지금 바로잡아야 할 때	— 140
20 평등법 제정 운동_모두를 위한 평등	— 142

3 주요 활동 변천사

제1장 정책권고

총론	— 150
제1절 인권 관련 제도 정비	— 157
제2절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 162
제3절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 173
제4절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 188
제5절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 221
제6절 차별 개선과 혐오 대응	— 232
제7절 북한인권 증진	— 238

제2장 조사와 구제 활동

총론	— 250
제1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60
1 경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60
2 검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1
3 사법기관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4
4 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76
5 구급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0
6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88
7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6
8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99

제2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성별·성적지향·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04
2 용모·신체조건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12
3 장애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13
4 나이·병력·종교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323
5 기타 차별행위에 따른 조사 및 구제	— 329

제3장 인권교육 및 홍보

총론	— 342
제1절 분야별 인권교육	— 351
제2절 전문가 양성교육	— 358
제3절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365
제4절 홍보	— 374
제5절 인권도서관 운영	— 388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총론	— 398
제1절 국내 교류 및 협력	— 402
제2절 국제 교류 및 협력	— 408

부록

1 연표	— 424
2 인권증진 행동계획 및 전략 변천	— 454
3 역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460
4 현 인권위원, 사무처 간부 및 각종 위원회 위원	— 466
5 조직 및 정원 변천	— 476
6 조직 및 정원 현황	— 482
7 예산 변천 현황	— 484
8 역대 전원위원회 운영실적	— 485
9 역대 상임위원회 운영실적	— 505



일러두기

1.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는 2001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일어난 사실(史實)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다만, 기구 설립 배경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이전까지의 설립 전사(前史)를 제1부에 기술하였다.
2.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을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맞춤법은 개정 한글맞춤법을 따르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기했으며, 숫자는 천 단위 이하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그 이상은 만, 억 등의 보조단위를 사용하였다.
3. 공식 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이지만 가독성을 고려하여 정식 표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권위'로 표기하였다. 각종 단체, 기관, 법률 등의 명칭도 반복되는 경우 약식으로 표기하였다.
4. 기관명, 부서명, 직함이나 직위 등은 글의 서술 시점(해당 시기)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현재 명칭을 병기하였다.
5. 각종 통계자료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나 비율(%)은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수치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약어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차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권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자유권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구 ICC)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 2008년부터 4~5년 주기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이 검토하는 제도



CI 소개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타입은 간결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 국가인권기구의 신뢰성과 품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심벌마크는 '창조'와 '생명'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인권위의 정체성을 담았다. 아울러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용', '공명정대' 등의 의미를 내포한 원(圓)과 함께,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Vision)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사용하여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을 향한 인권위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CI는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 교수의 작품이다.

심벌마크	국문 로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문 시그니처	영문 로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문 시그니처 + 슬로건	영문 시그니처
	타입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타입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영문 시그니처 + 슬로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he World for all</i>

엠블럼 소개

20주년 엠블럼은 격동의 시간을 지나 약관(弱冠)의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인권위의 과거 '20년'과, 국가인권기구로서 더욱 성숙한 책임성과 역량을 발휘할 미래 '20년'을 중의적으로 상징한다. 특히 20의 숫자 '0'을 바깥살처럼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급변하는 인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변화와 성장을 예고하는 열린 반원을 통해 세계적 인권 흐름인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and Inclusion)'을 형상화하였다. 중심 컬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징색 중 주황색을 활용하였다. 또한 20주년 슬로건 "20, 다시·함께"는 "새로운 다짐으로, 처음처럼, 오늘날의 인권위를 있게 해준 모든 사람과 다시 함께" 다음 2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다짐을 표현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



다시·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설립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비전과 사명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Strategy 전략목표

1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2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강화

3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Performance 성과목표





- 1 재난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 6 스포츠 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 강화
-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 8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
- 9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보호
- 10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 11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증진
- 12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 13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 14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 15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 16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 17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 18 지역 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 역량 강화
- 19 군 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 20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 21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p>인권 전담 국가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 보호·향상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 -
 <p>독립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사법·행정부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도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국가기구 ● 업무 수행 및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위해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인권위원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p>준사법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제도·관행 등의 개선 권고 ● 기존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와 상호보완적 기능 수행
 <p>준국제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법·제도 등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 국내법상의 기구이지만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성립되고 그 이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국제적인 성격 보유

주요 기능

 <p>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표명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표명 
 <p>조사·구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구제 ●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구제 ● 성희롱 조사·구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구제 
 <p>교육·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 인권문화 확산 및 홍보 
 <p>국내외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인권기구와 교류·협력 

진정·상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01



2001. 11. 26 인권위 진정접수 첫날



2002. 05. 10 외국인 노동자 진정접수

2002



2003. 12. 03 남북자 가족 인권위 농성

2003



2004. 05. 10 중국동포 진정접수

2004



2005. 06. 29
위원장 국립 소록도병원 방문

2005



2007. 05. 15 흥성 인권순회상담

2007

2008



2008. 04. 01 구금시설 첫 인권순회상담
(대전교도소 외국인 수용자)

2009



2009. 11. 23
진폐환자 건강·노동
상담 및 태백시민
인권순회상담

2010



2011. 05. 04 장애인 관련 강릉 인권순회상담

2011



2009. 09. 09 노인 인권순회상담



2010. 06. 27
수원 이주민센터 인권노동상담



2015. 04. 10
에이즈 감염인 대상 인권순회상담

2015

2020



2020. 02. 20
코로나19 관련
혐오 차별 대응 간담회

2021

방문조사·현장조사

발로 뛰었습니다

2001



2002. 09. 07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 현장조사

2002



2002. 10. 01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현장조사



2005

2005. 06. 07 인천 영락원 방문조사



2005. 07. 28
화성 외국인보호소 현장조사



2005. 12. 19 여의도 농민대회
사망사건 현장검증



2007. 08. 28
영등포교도소 방문조사



2005. 08. 04 청계천 장애인
접근 및 이동권 현장조사

2007

2007



2007. 11. 07 공주교도소 방문조사



2014. 11. 26 장애인시설 직권조사 현장(개집 감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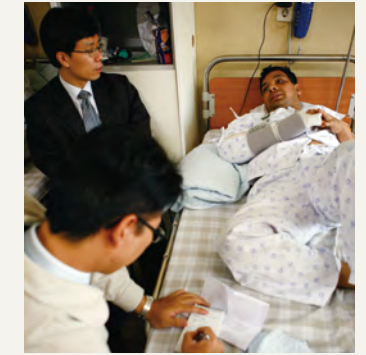


2018. 01. 14
파인텍 고공농성현장
방문



2020. 08. 06
스포츠인권 현장조사(송의여중)

2008



2008. 11. 14 마석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고현장 방문조사

2014



2014. 02. 05
밀양 송전탑 현장조사

2018



2019. 06. 17 육군11사단 군영창 방문조사

2020

2021

토론회·간담회·심포지엄 귀 기울였습니다

2001



2001. 12. 07 테러방지법 청문회



2002. 05. 10 외국인 노동자 간담회

2002



2003. 07. 08 '구금시설 내 계구사용과 수용자의 인권' 공청회 중 계구 시연회

2003



2004. 12. 01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2004



2009. 09. 08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 토론회

2008



2008. 11. 19 중·고교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09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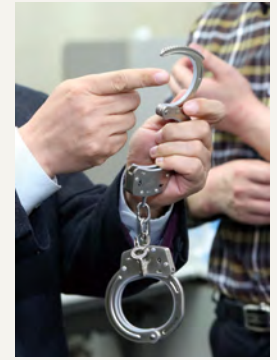


2010. 01. 19 우리 사회 재개발사업의 문제와 대안_ 용산참사 1주기 토론회

2014. 08. 22 인권위법 개정 공청회



2013



2013. 03. 28 수사기관 수감 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4



2015. 02. 16 정부 비정규직 종단면허제와 노동인권 관련 토론회

2015

2016



2016. 06. 13 인권위 15주년 기념 및 장차법 8주년 기념토론회(서울)

2018



2018. 10. 10 제16회 사형폐지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

2019



2021. 04. 09 가구방문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2019. 04. 14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2021

국제행사·대회·외부행사

함께했습니다

2001



2004. 04. 27 제8회 아시아음부즈만협회 총회_위원장 축사



2008. 03. 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식 및 행사



2009. 12. 28 광주 인권테마열차 발차식



2003. 12. 10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_노무현 대통령 축사



2007. 12. 10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외빈초청행사



2010. 06. 28 인신매매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2011



2011. 04. 18~19 유엔조약기구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컨설팅 프로그램



2016. 06. 15 아셈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2017. 03. 21 2017년 인권경영포럼



2019. 09. 03 제24차 APF 회의

2013



2013. 09. 13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15



2015. 05. 19 UNGC 코리아 리더 서밋 2015

2016



2016. 12. 09 2016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식_축하공연

2017



2018. 12. 10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_문재인 대통령 축사

2018

2019

2021

홍보·문화행사

알렸습니다

2001

2003



2003. 12. 10
인권사진전 <눈·밖에·나다> 개최



2003. 11. 07
영화
<여섯 개의 시선>
VIP 시사회

2005



2005. 10. 17
인권문예
디카사진 공모

2008



2008. 10. 27 촛불집회 브리핑



2010. 01. 26~28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2010



2012. 02. 28 제1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2012. 10. 30 인권영화 <범죄소년>
서울청소년보호관찰소 시사회

2012

2014



2014. 11. 26 지적장애인시설 직권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2016



2016. 03. 15 영화 <4등> 시사회



2017. 03. 03 특별기자단 발대식

2017



2017. 04. 27 차기정부에 바라는
10대 인권과제 기자회견

2018



2018. 11. 14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인권사진전

2019



2019. 03. 19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기자회견

2020



2020. 01. 16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실천 선언식

2021

교육·워크숍

배움을 나눴습니다

2001



2004. 07. 29
서울시경찰청 인권과정 교육

2003



2003. 12. 18 인권교육 워크숍

2004



2006. 04. 26 연합뉴스 신입기자 인권교육

2006



2009. 11. 08
인권아 놀자_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2007



2007. 09. 05
개발도상국 인권위 직원 초청연수

2009



2009. 08. 21 디자이너 안상수 인권교육

2010



2010. 10. 27~28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2013



2013. 07. 17 대구인권체험관 개관식

2014



2014. 07. 09
2014 ODA 수료식

2015



2015. 04. 20
제5기 시민기자단 위촉식 및 워크숍

2016



2016. 06. 17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

2017



2017. 06. 15
스포츠인권 워크숍_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2018



2018 인권위원 워크숍

2019



2019. 03. 28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2021

외부인사 방문·강연·MOU

교류하고 협력했습니다

2001



2003. 08. 17
APF 사무국장 내방

2002



2002. 09. 26 치할리스 원주민 위원회 방문

2003

2004



2004. 01. 13
동티모르 외무부 장관 내방

2005



2005. 03. 10 리영희 교수 특강

2007



2007. 12. 21
전북대-인권위 MOU 협약식



2010. 02. 17
UNHCR 전임·신임대표 위원장 면담

2010



2014. 06. 10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권위 MOU 체결식

2014

2015



2015. 07. 30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내방

2016



2016. 01. 15
EU 대표부 대사 위원장 면담

2017



2017. 03. 23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참석자들 위원장 면담

2018



2018. 04. 25 이반 시모노비치 국제사형제폐지위원회 위원장 내방

2019



2019. 12. 06 주한 인도대사 위원장 예방

2020



2020. 11. 03 스포츠인권 명예대사 류현진 선수 내방



2021. 03. 26 이용수 할머니 위원장 면담

2021

위원장 외부활동

소통했습니다

2001



2002. 03. 06
위원장 어린이 신문 인터뷰



2001. 12. 10
세계인권선언 53주년
기자회견



2004. 04. 29
위원장 EBS 특강 출연



2006. 01. 02 현충원 참배



2009. 06. 13 KBS <사랑의 리퀘스트> 위원장 출연



2008. 07. 15
오산성산초등학교 위원장 인권수업

2002

2004

2005

2006

2008

2009

2010



2010. 03. 17~27
제네바 ICC 연례회의의 위원장 참석



2017. 02. 1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_
인권위 헌법기관화 위원장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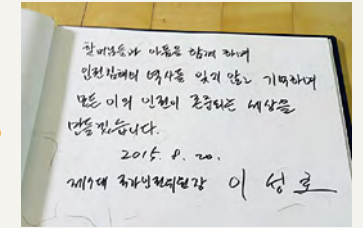


2020. 06. 30 평등법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

2014



2014. 11. 18
제주 4.3평화공원 위원장 방문



2015. 08. 20 위원장 나눔의 집 방문

2015

2017

2018



2018. 02. 23
GANHRI 연례회의의 위원장 참석

2019

2020



2021. 09. 15
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2021

회의·내부행사

다짐하고 도약하였습니다

2001



2002. 04. 19 인권위
현판식(금세기빌딩)



2004. 02. 24
인권NAP 추진기획단 발족식



2006. 11. 24 인권위 조형물 개막식



2001. 12. 30
인권위 사무처준비단
회의



2003. 10. 16 인권위 체육대회(독섬유원지)



2006. 03. 13 인권위 비전선포식



2005. 10. 11 부산인권사무소 개소식

2007

2008



2008. 09. 01~05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는 자전거여행



2016. 06. 30 대전인권체험관 개관

2017. 06. 26
2017년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



2019. 10. 30 남산 둘레길 걷기

2010



2010. 02. 11 우수조사관 시상식

2014



2014. 09. 24
여주라파엘의집 봉사활동

2016

2017

2018



2018. 10. 16
2018 연찬회(서대문 안산)

2019

2021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2001



2004. 07. 01
위원장 최저생계비 체험

2002



2002. 06. 27
국제공동행동의 날
시위현장
인권지킴이 활동

2004



2005. 04. 28
한센인 정착촌 상록농원 현장방문

2005



2006. 09. 13
평택 빈집철거 인권지킴이 활동

2006

2008. 05. 11
마이그런츠 아리랑
다문화 이주민 축제
인권위 부스



2008

2007



2007. 07. 06
청주여자교도소 현장방문

2012



2012. 04. 17 광주엠마우스장애인그룹
현장방문

2014



2014. 04. 10 감정노동자를
지켜주세요_거리 캠페인



2015. 09. 17 난민지원센터 피난처 방문

2015



2016. 11. 14 상임위원 인권현장 방문

2016

2017



2017. 06. 30 수원 보훈요양원 위문 방문

2018



2018. 09. 13 난민 단식농성장 현장방문

2019



2019. 06. 01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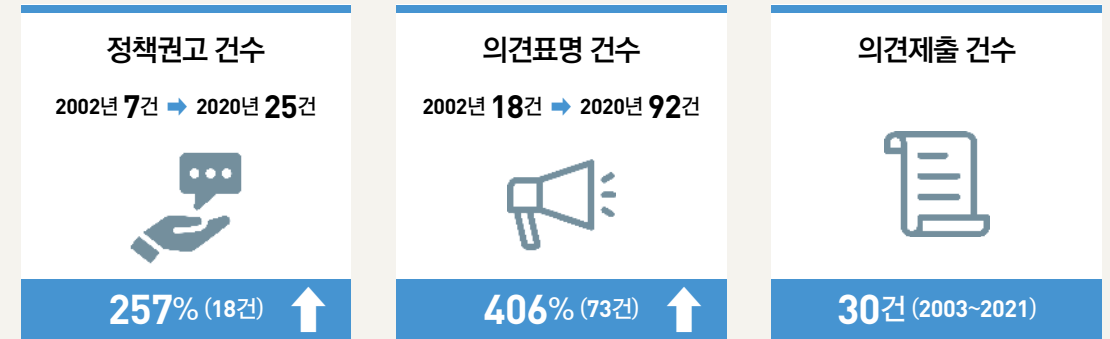
2021

통계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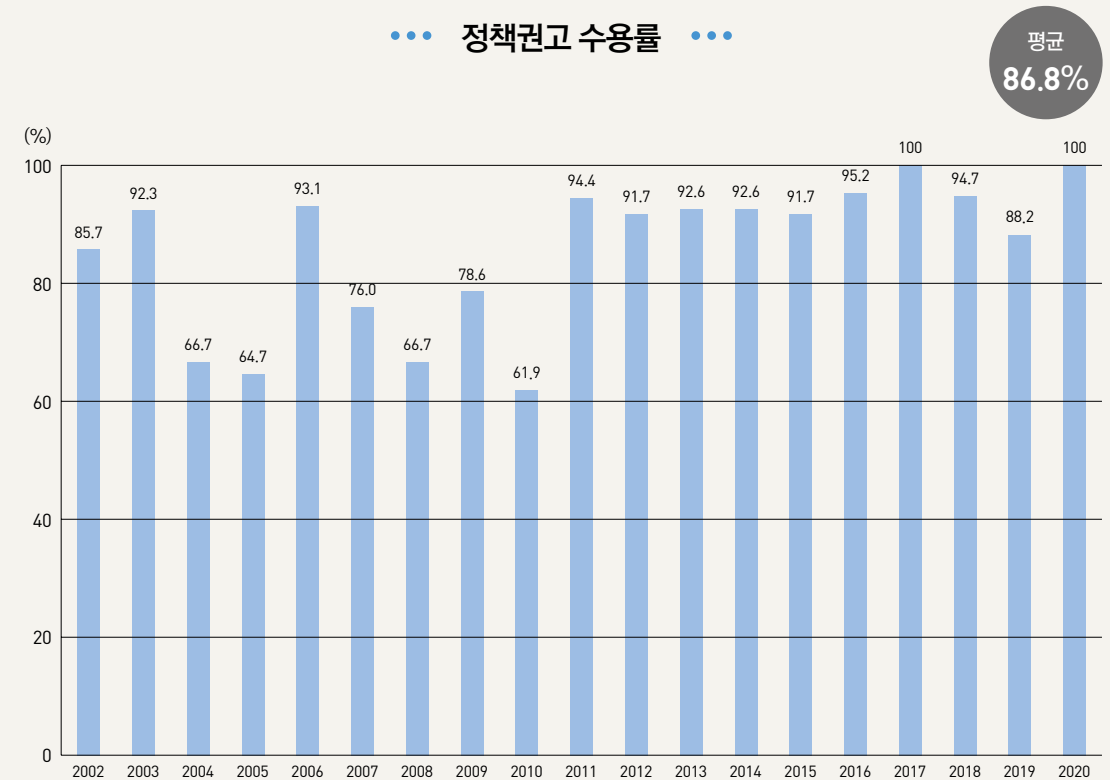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인권통계』를 시작으로 지난해인 2020년까지, 인권위 업무 전반에 관한 통계를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를 발간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가운데 주요 통계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통계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 정책권고 수용률
- 인권상담 및 민원·안내
- 접수처별 상담
-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 영역별 차별행위 상담
- 유형별 진정 접수
- 경로별 진정 접수
-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접수
-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접수
-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접수
- 진정 처리결과(종합)
-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종합)
- 인권침해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 차별행위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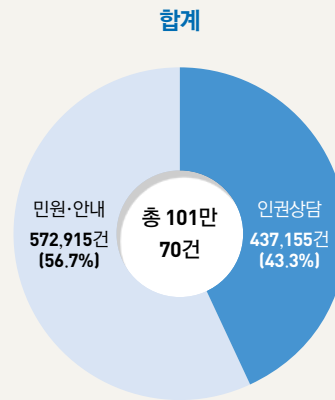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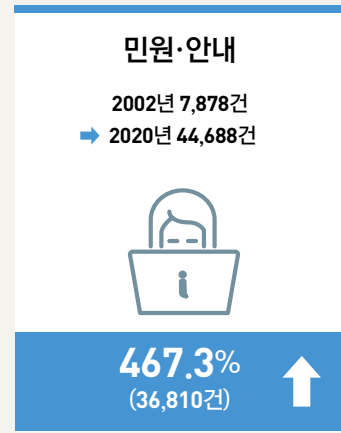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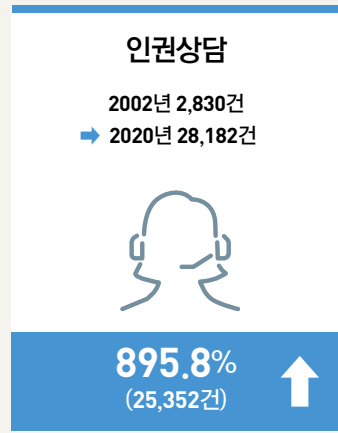
... 정책권고 수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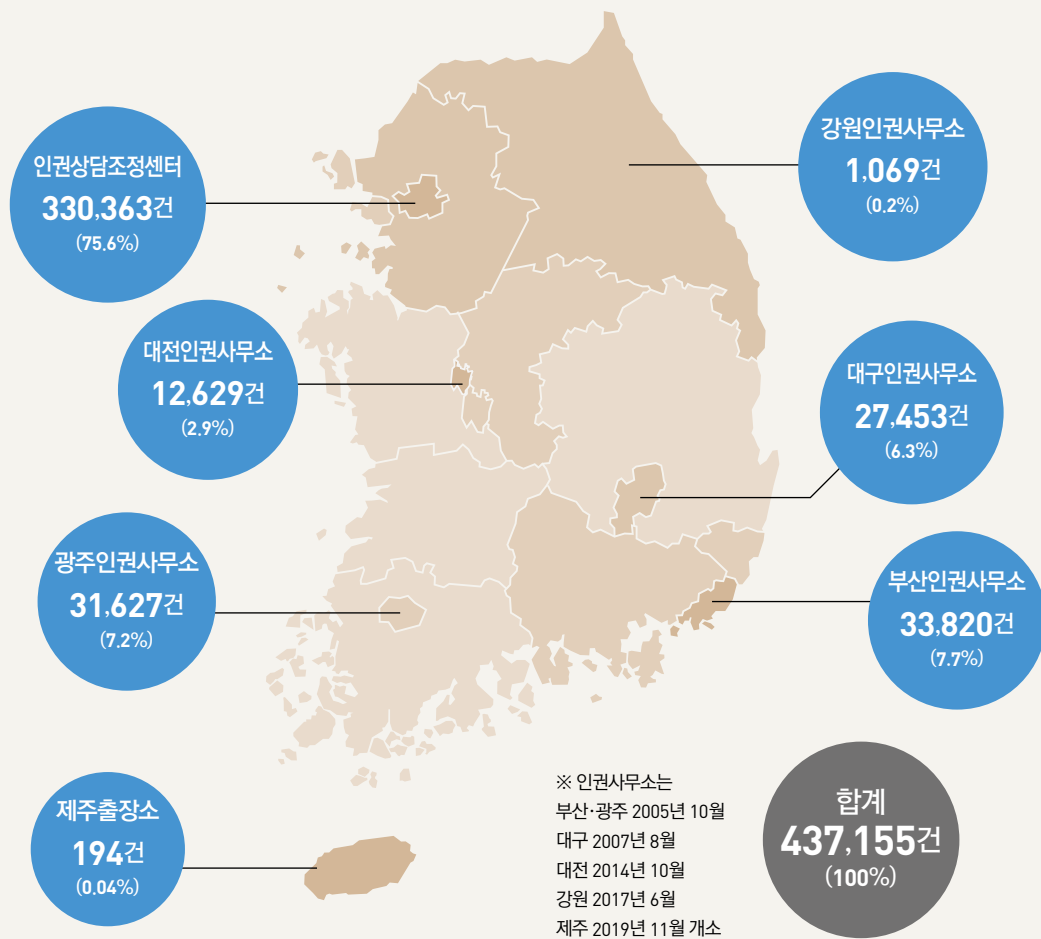
1 누적 통계는 2001. 11. 26~2021. 06. 30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증감률은 각 1~12월의 합계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 되, 개별 항목의 기준연도는 최초 통계 생산연도를 반영하였다. 이하 '합계' 또는 '2021'은 2021. 06. 30까지를 말한다.

※ 권고수용률은 권고의결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권고수용률 = $\frac{(\text{수용} + \text{일부수용}) \text{ 건수}}{(\text{수용} + \text{일부수용} + \text{불수용}) \text{ 건수}} \times 100$

인권상담 및 민원·안내



접수처별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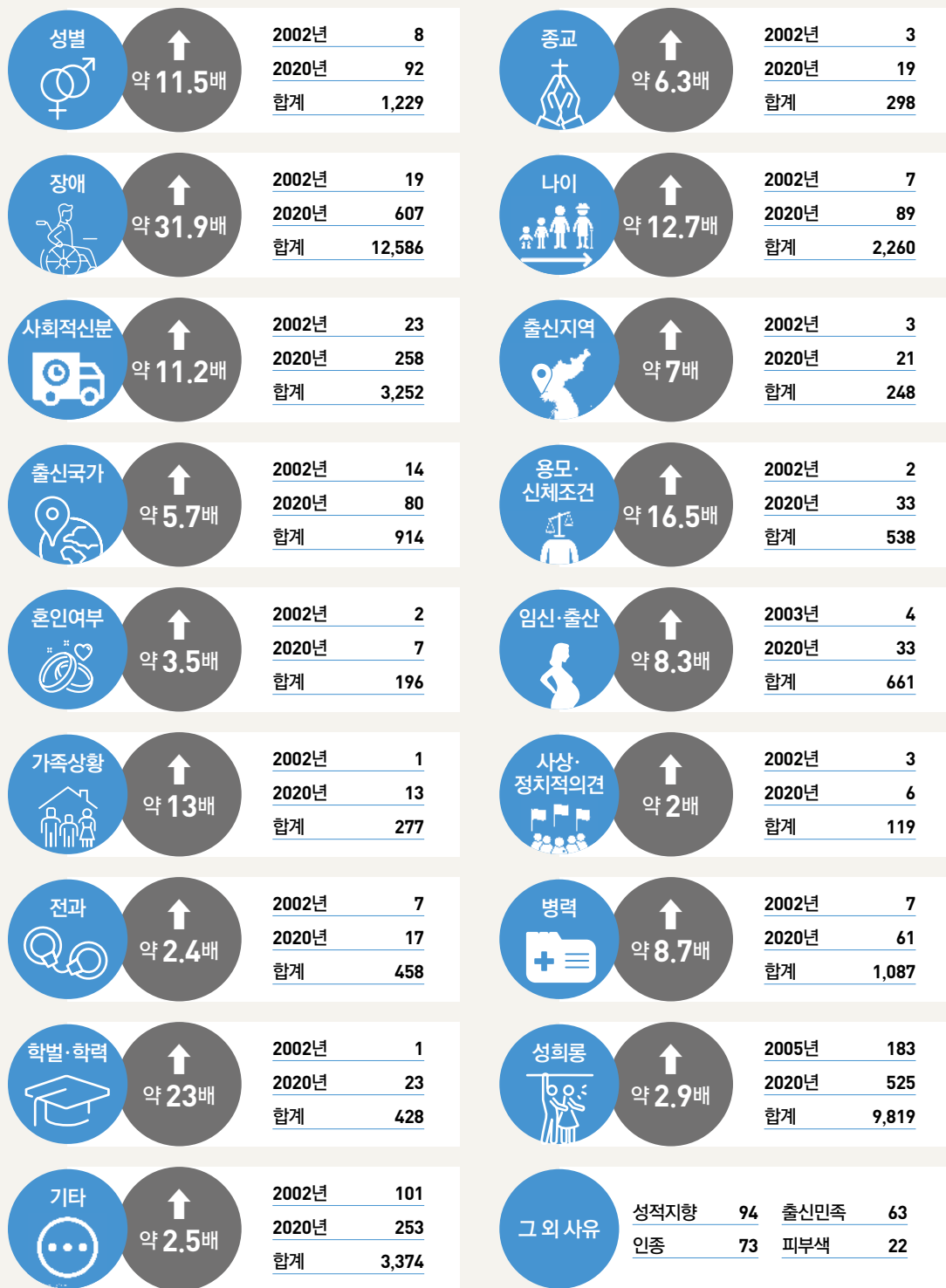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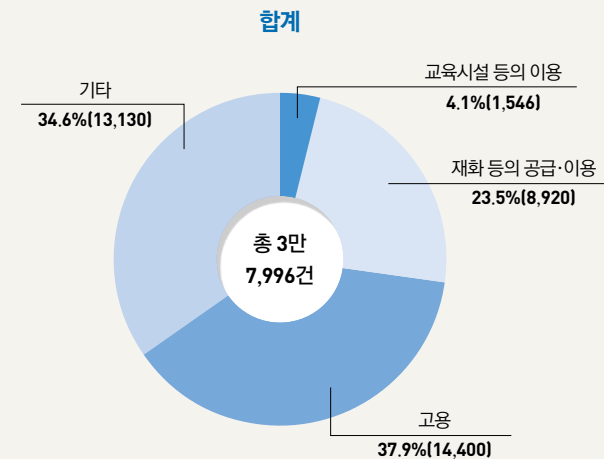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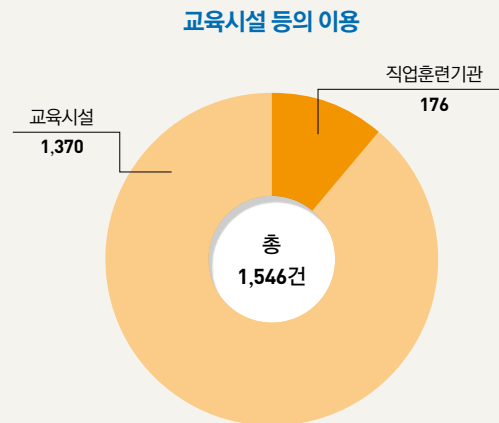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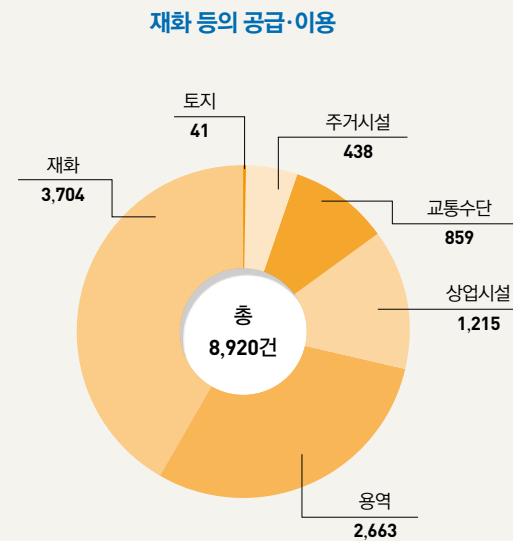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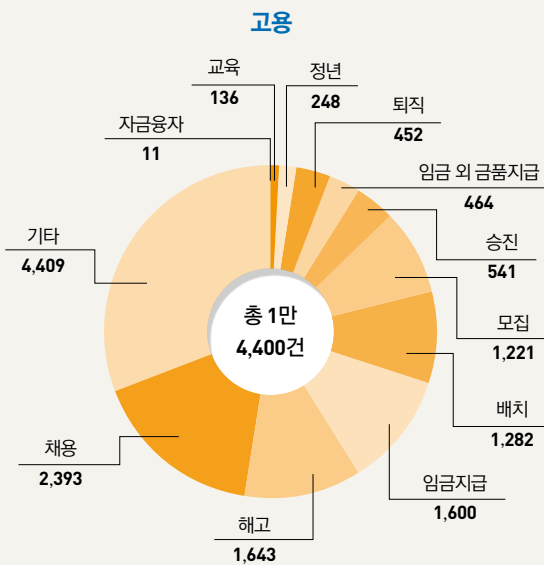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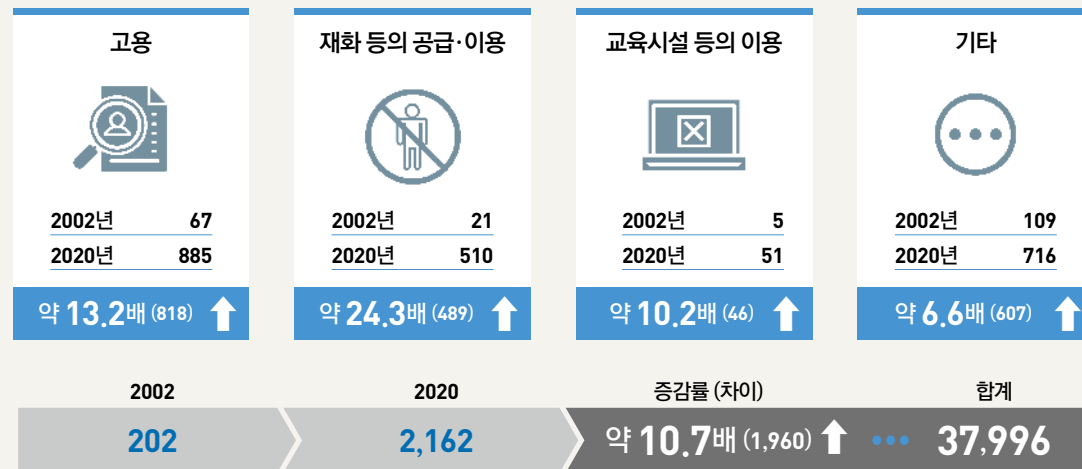
... 사유별 차별행위 상담 ...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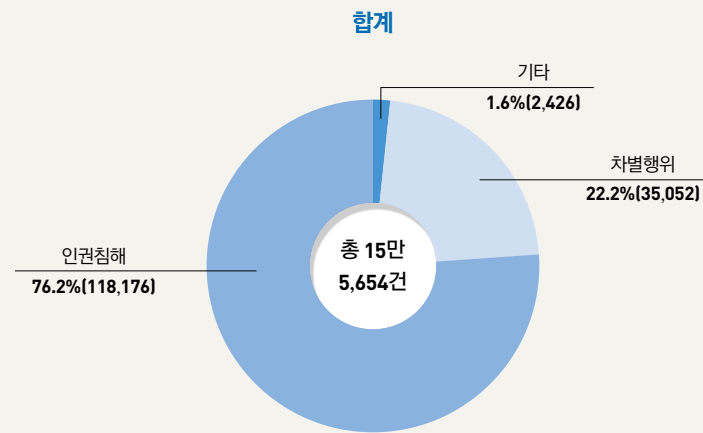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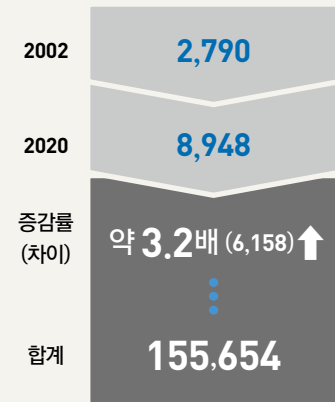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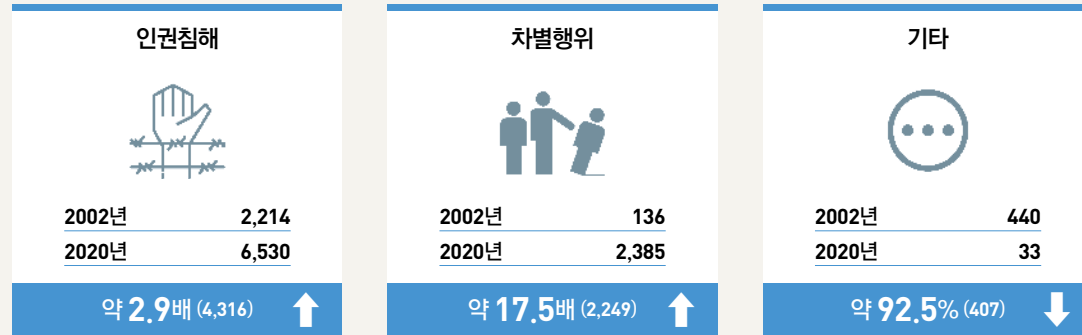
... 영역별 차별행위 상담 ...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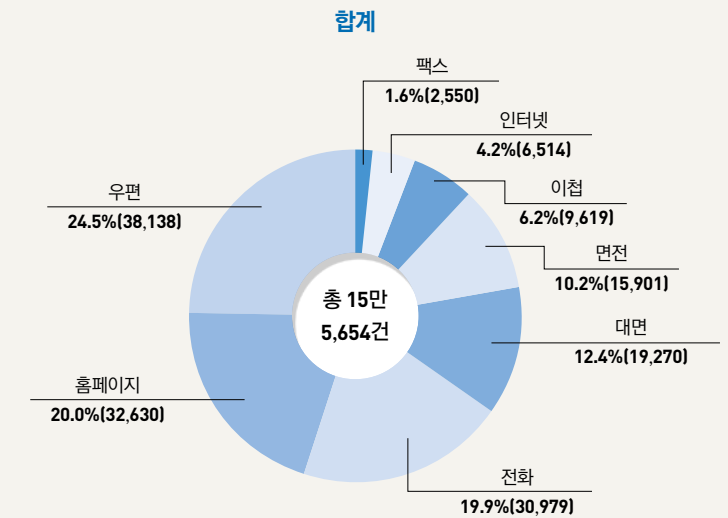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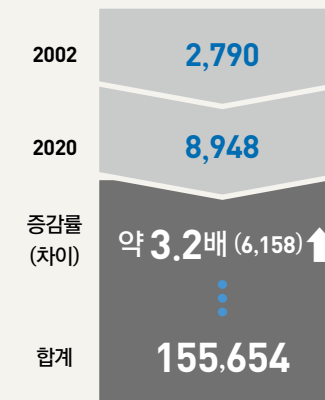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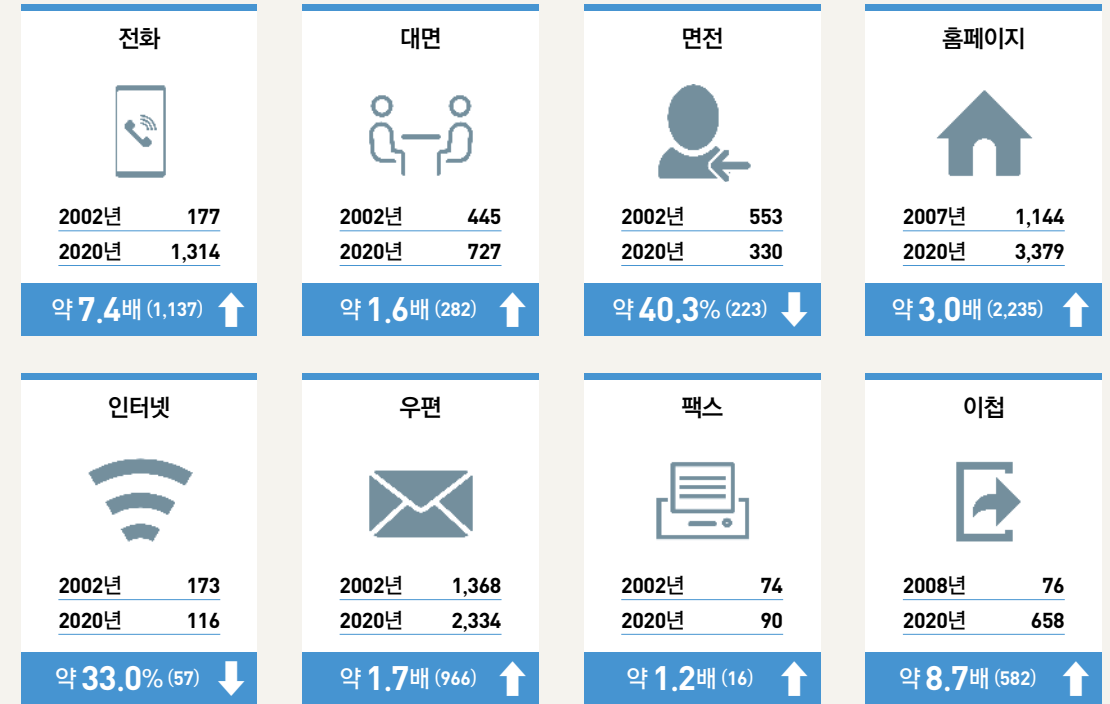
유형별 진정 접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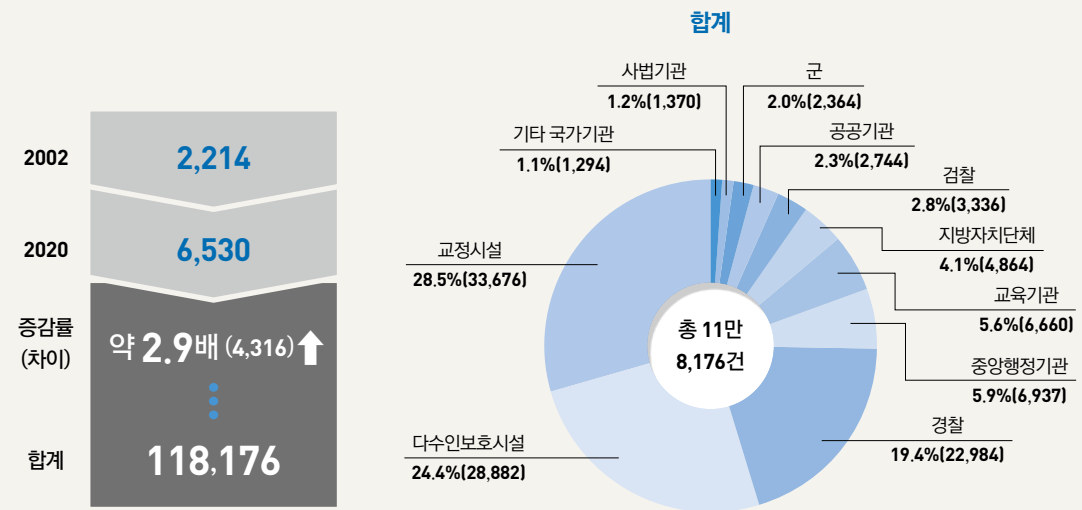
경로별 진정 접수

(단위: 건)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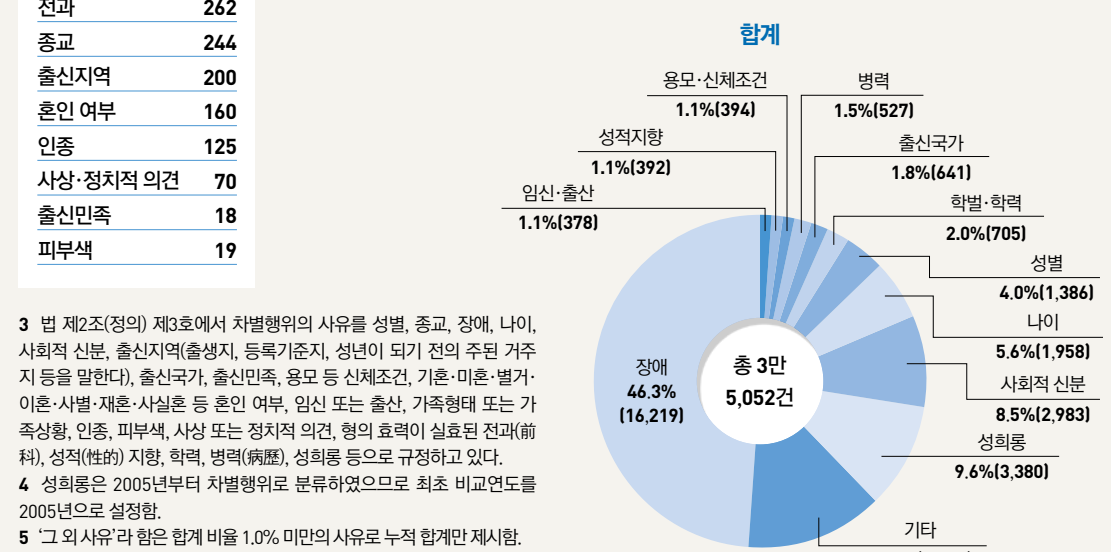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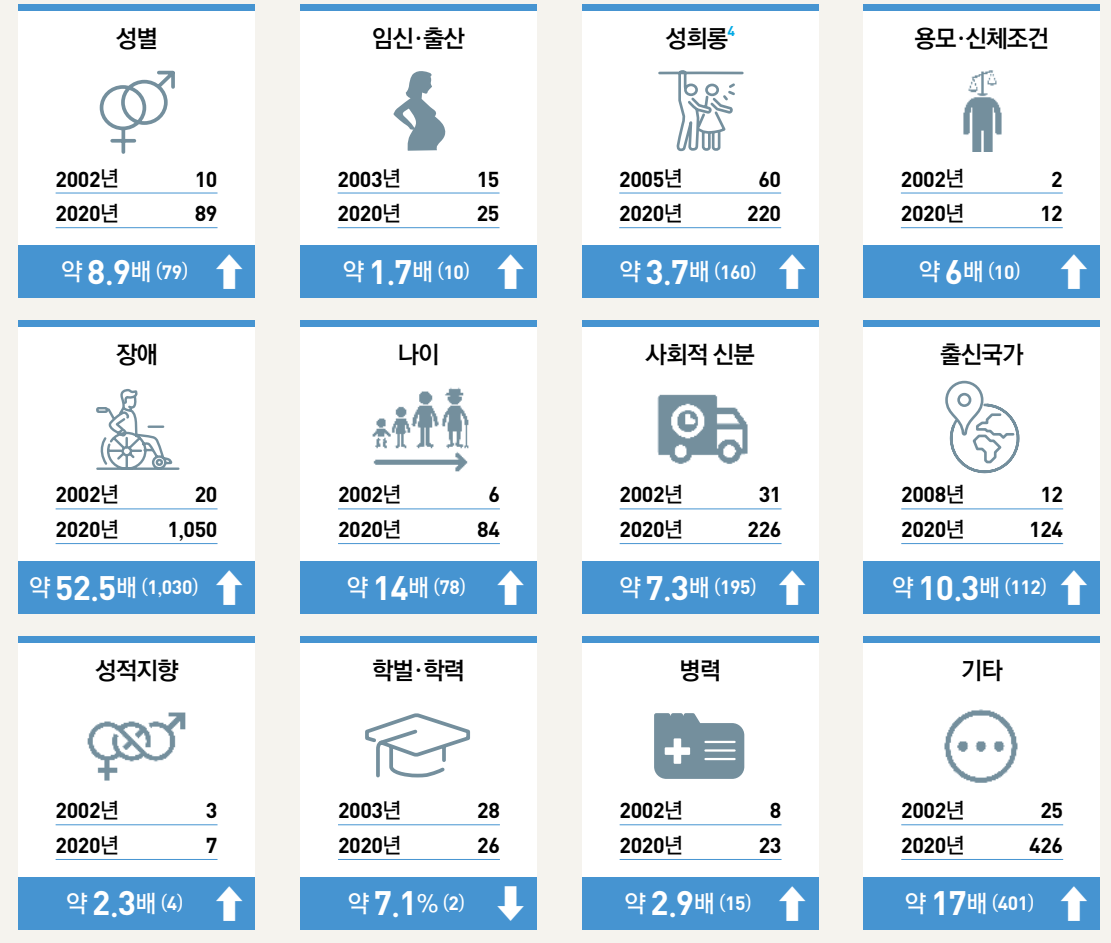
(단위: 건)



2 '그 외 기관'이라 함은 합계 비율 1.0% 미만의 기관으로 누적 합계만 제시함.

사유³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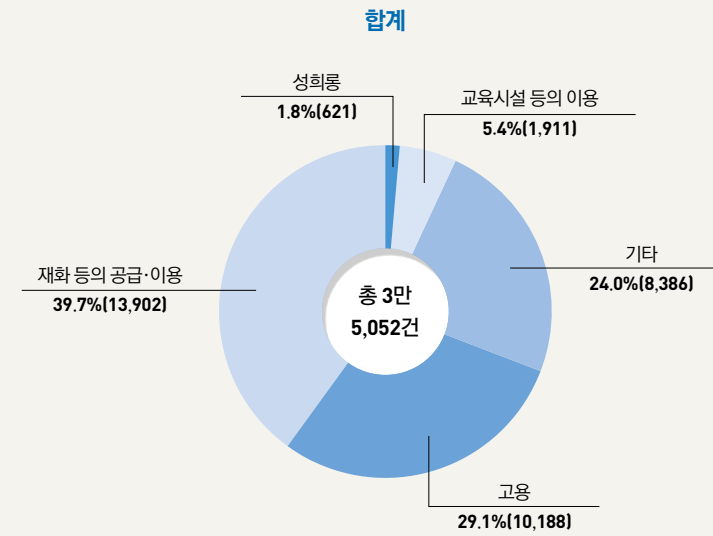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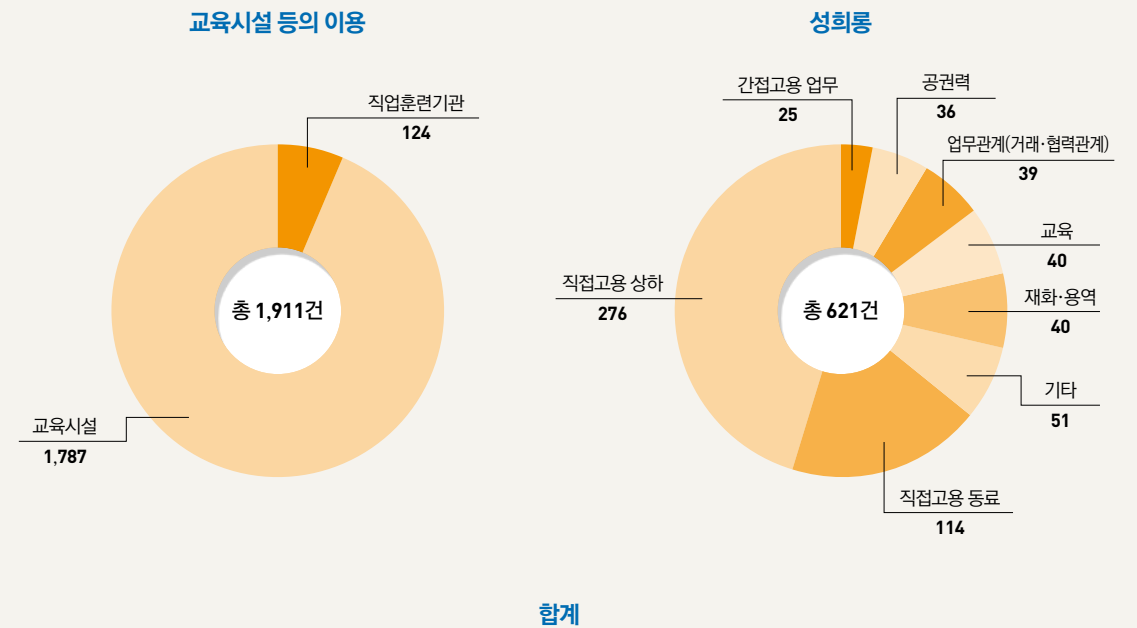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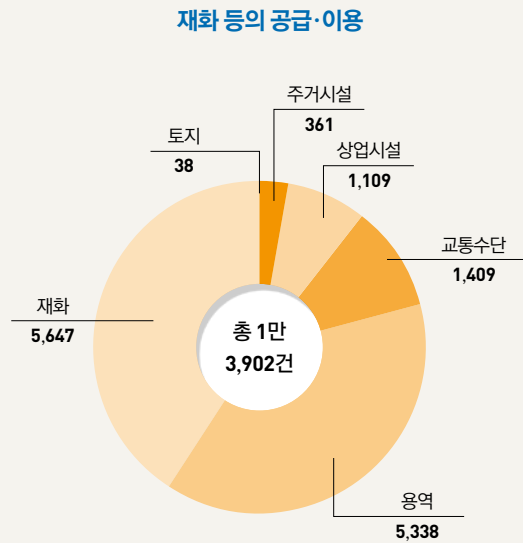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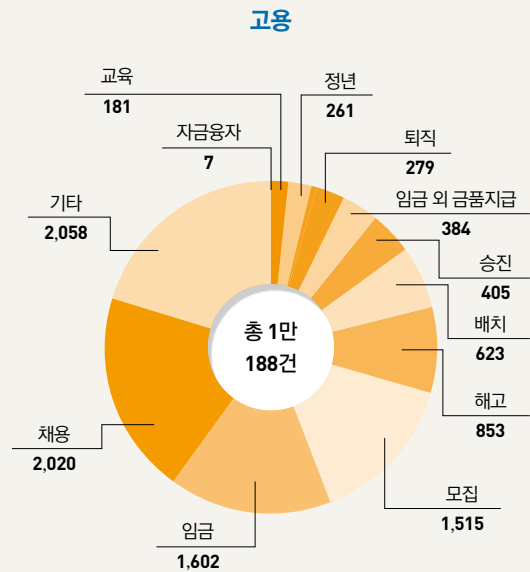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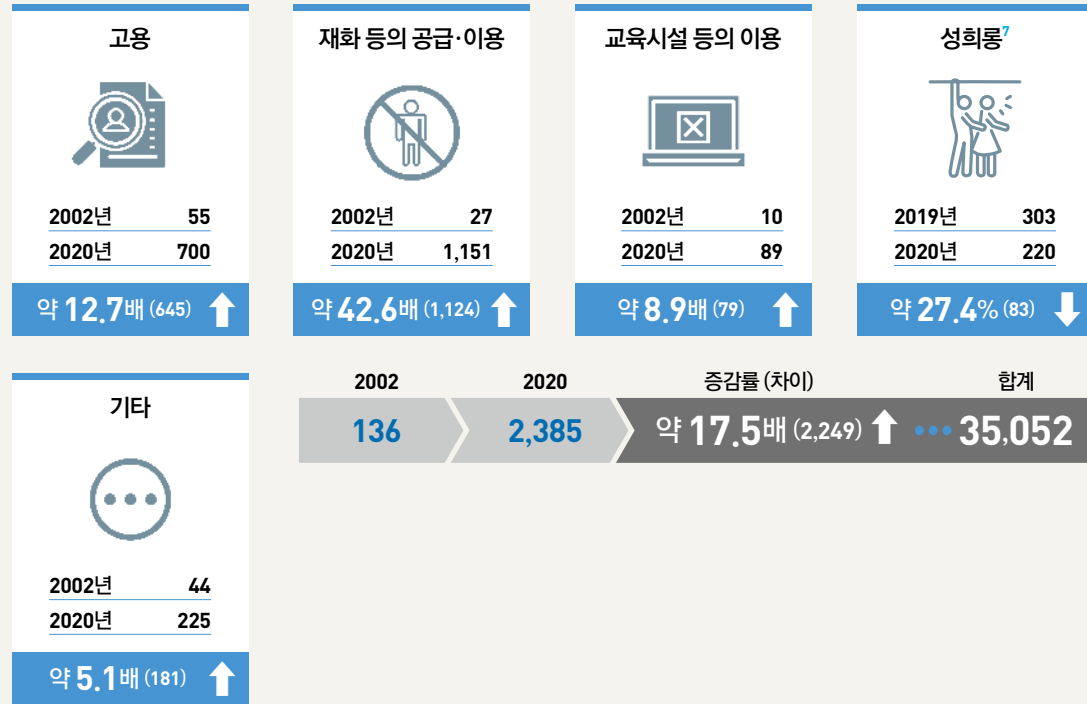
(단위: 건)



3 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사유를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성희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성희롱은 2005년부터 차별행위로 분류하였으므로 최초 비교연도를 2005년으로 설정함.
 5 '그 외 사유'라 함은 합계 비율 1.0% 미만의 사유로 누적 합계만 제시함.

영역⁶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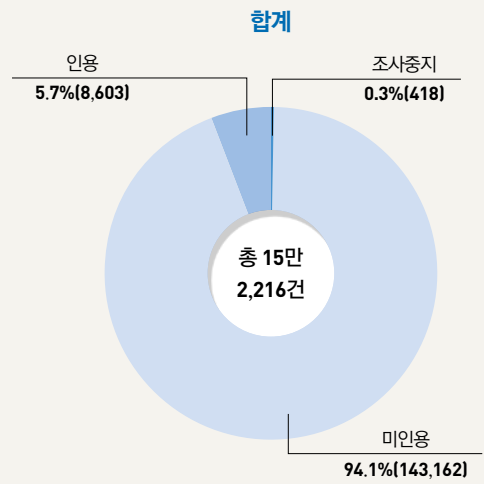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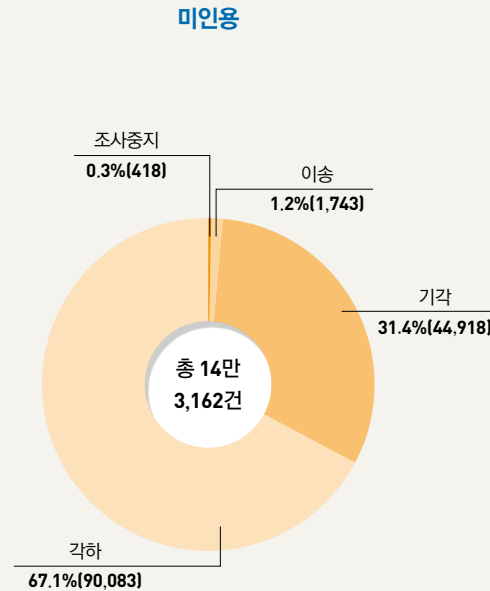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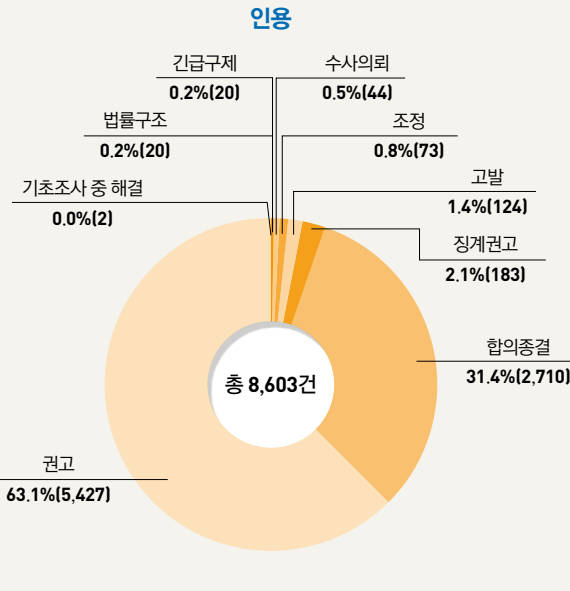
(단위: 건)



⁶ 법 제2조(정의)제3호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응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⁷ 2019년부터 차별사건 영역에 성희롱 영역 신설

진정 처리결과^{8,9} (종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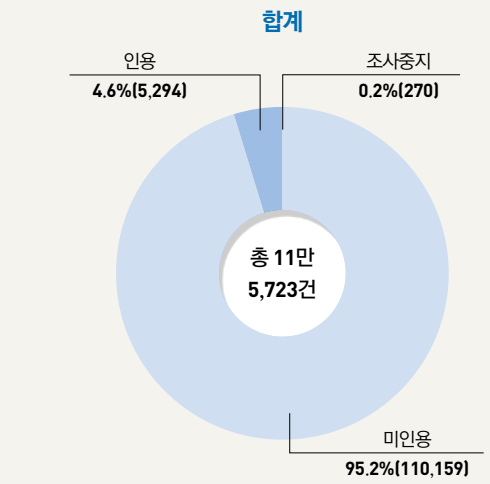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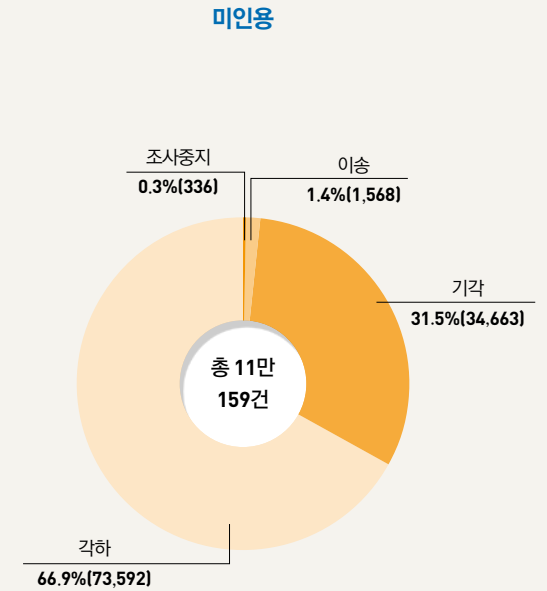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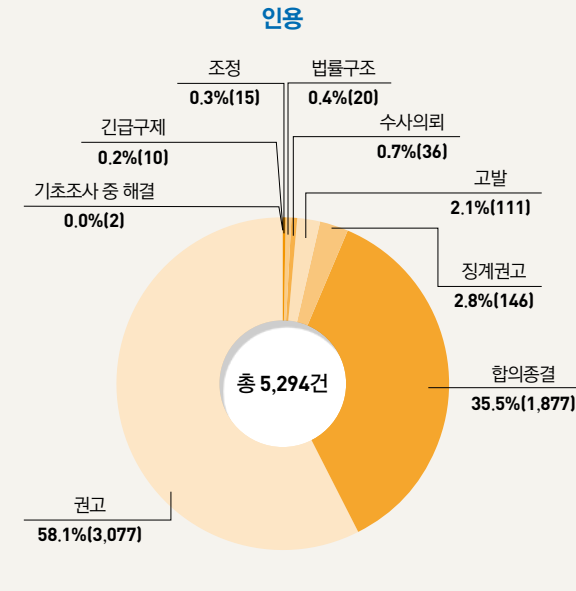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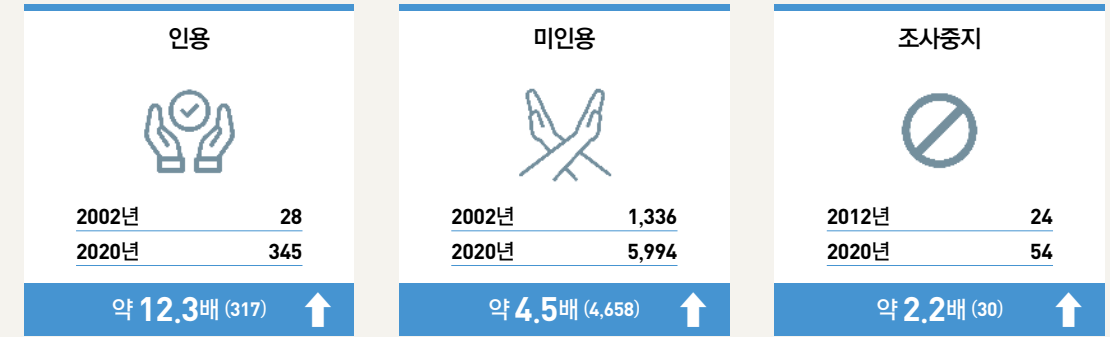
8 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법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제1항 및 제2항, 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제1항, 법 제39조(진정의 기각), 법 제40조(합의의 권고), 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2011. 12. 08. 폐지), 제26조(합의)이하 같다

9 모든 진정사건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10 조사중지는 2004~2011년은 미인용에 포함하여 집계되다가 2012년부터 별도 통계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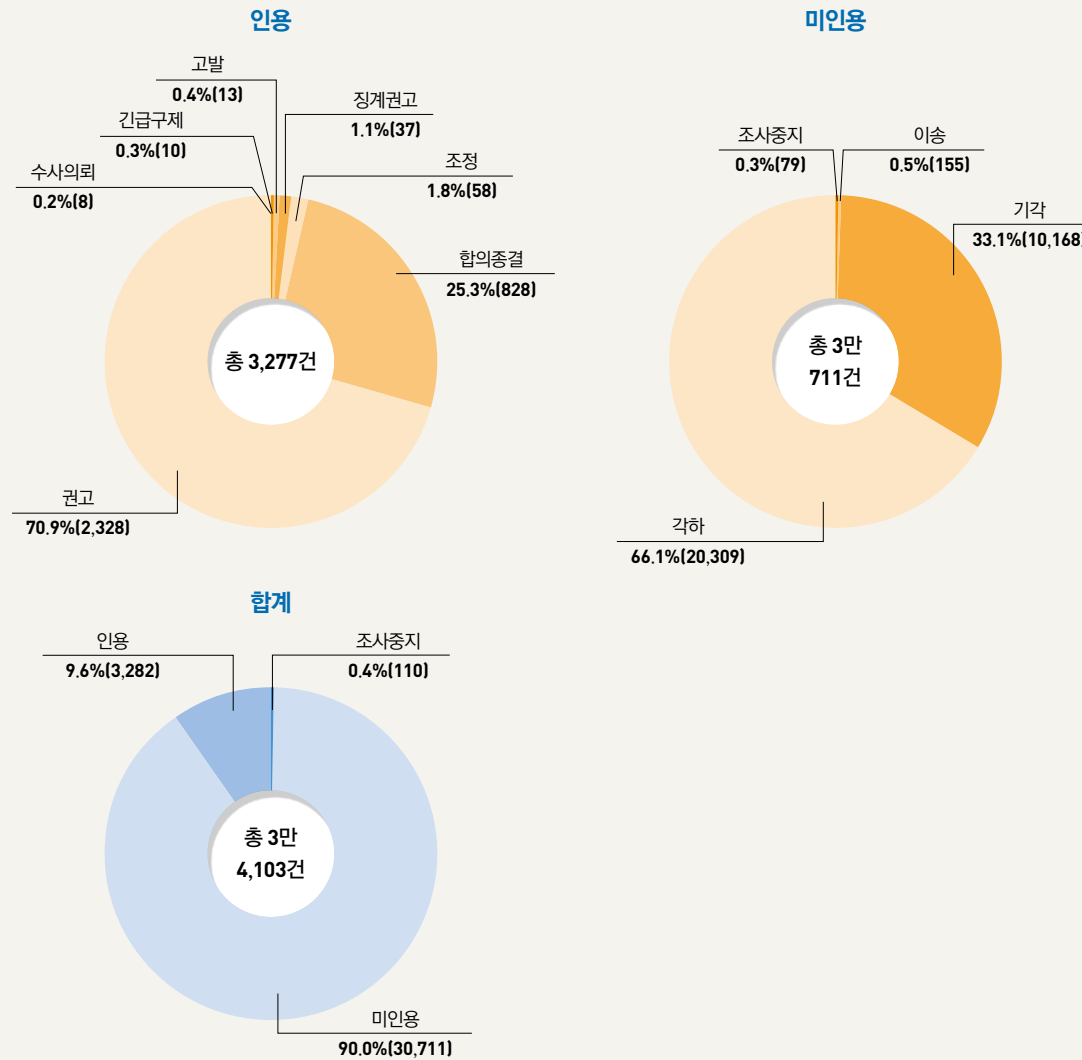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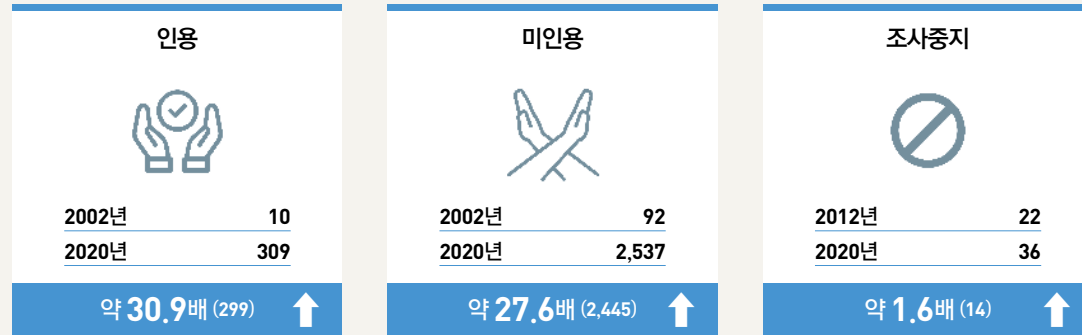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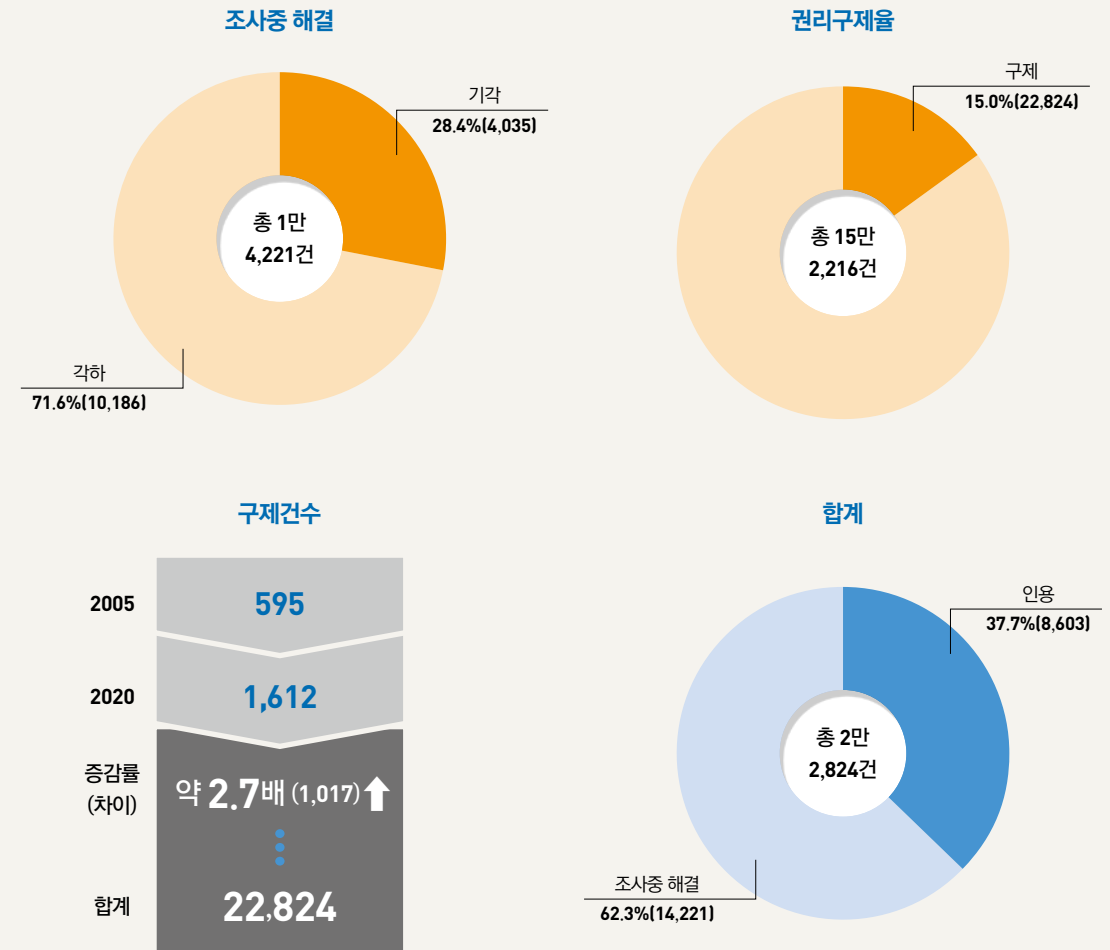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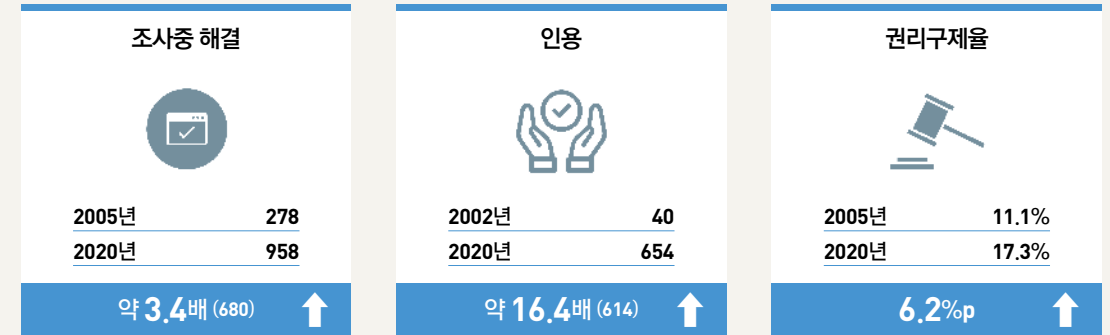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단위: 건)



조사중 해결¹¹ 및 구제율¹² (종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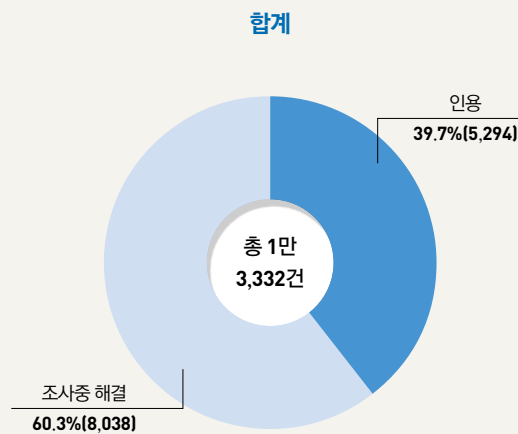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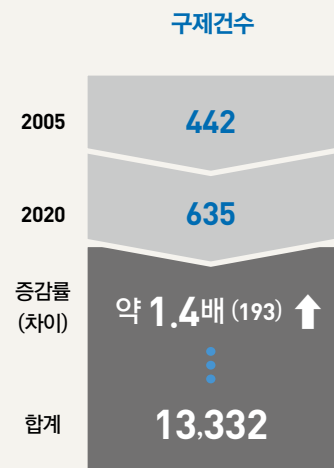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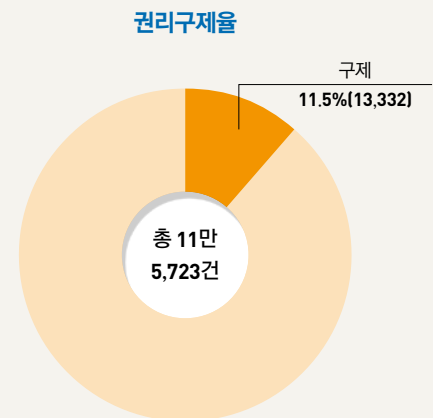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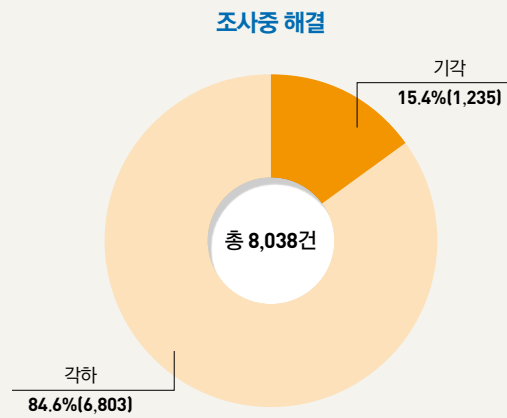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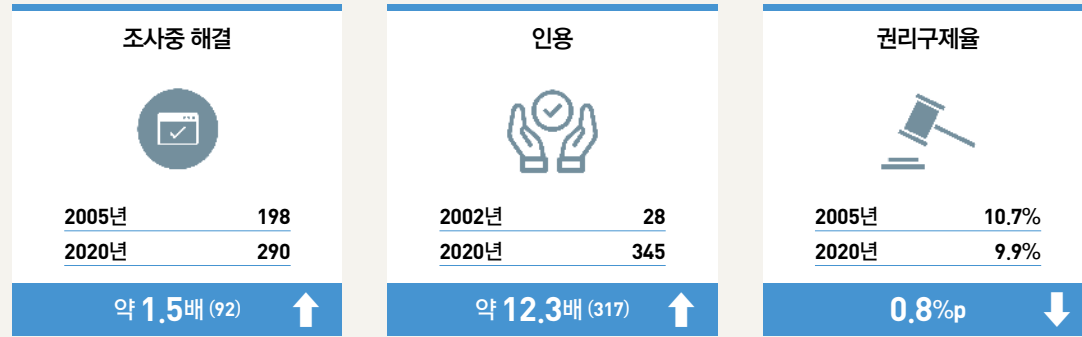


11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중재, 상세한 설명 등으로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진정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중 해결'로 처리하고 있다.

12 '구제율'은 2011. 11. 28.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개선 방안' 논의 시 결정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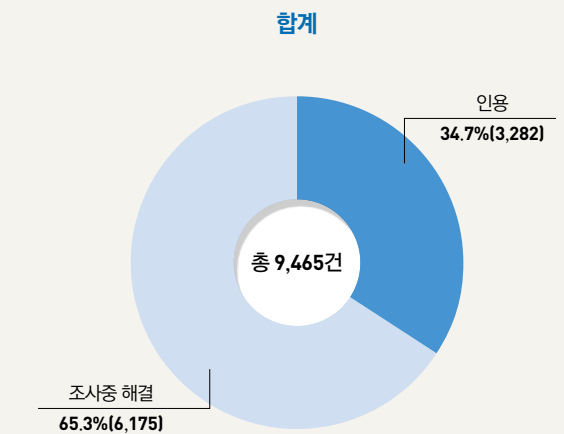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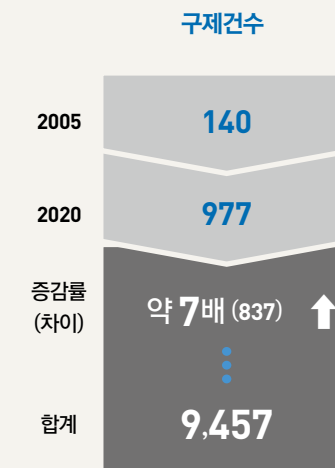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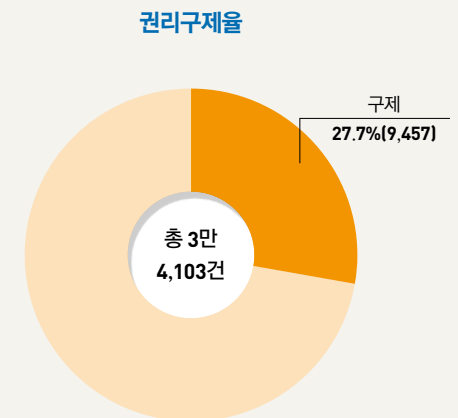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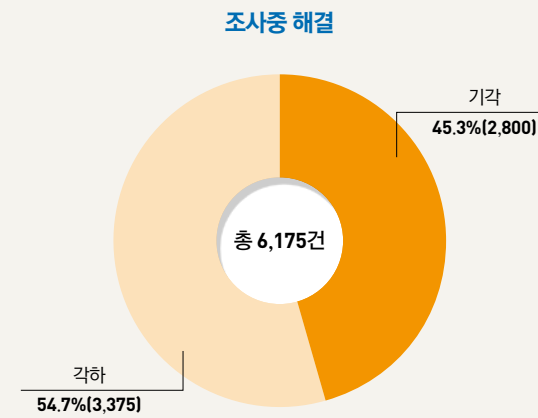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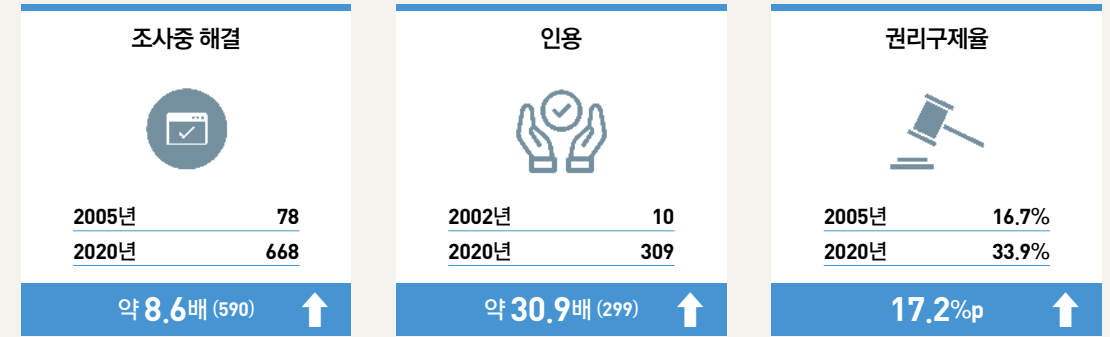
... 인권침해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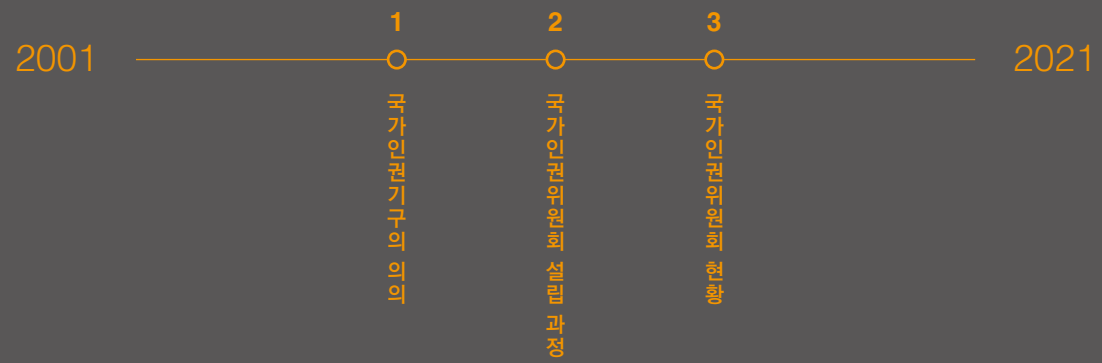
(단위: 건)



... 차별행위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

(단위: 건)





1

개관



20th ANNIVERSAR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제1장 국가인권기구의 의의

1. 유엔과 국가인권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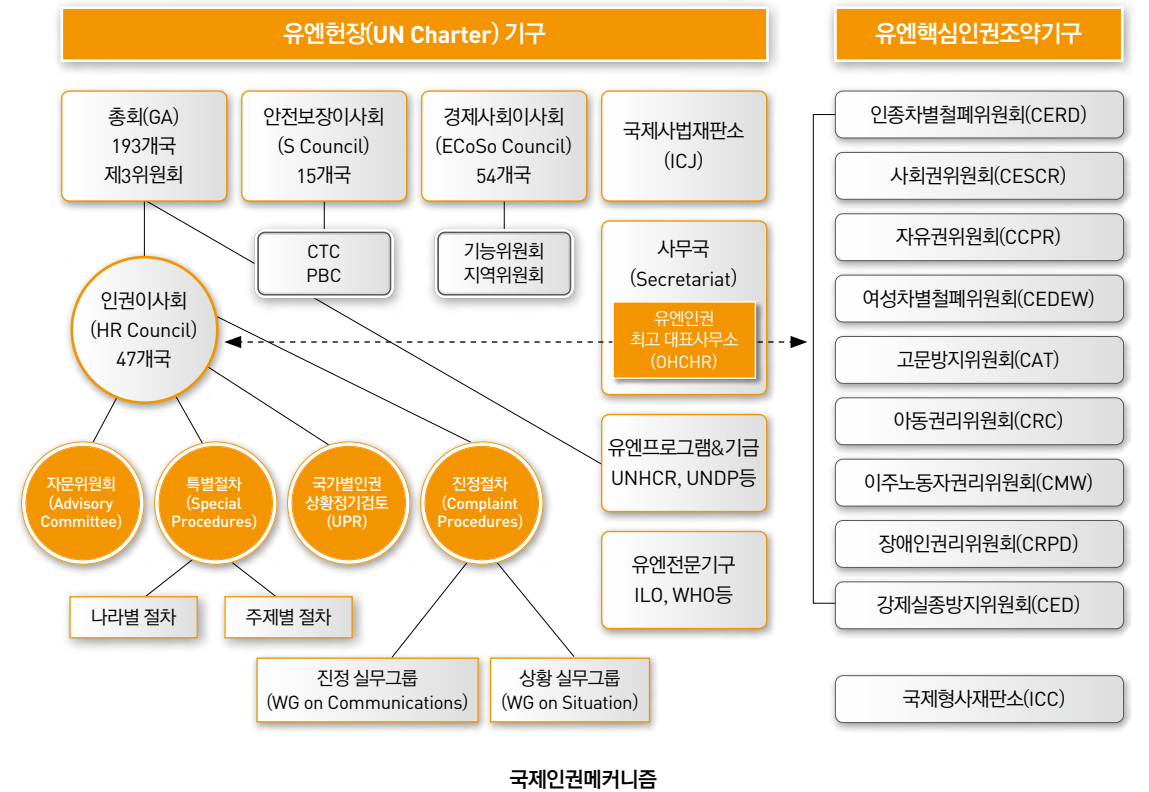
오늘날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 주장되고 인류가 실현해야 할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유엔의 탄생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평화와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인권을 3대 핵심기둥으로 삼았으며, 「유엔헌장」에서도 7회에 걸쳐 반복해서 언급하며 인권이 중요한 글로벌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유엔은 설립 직후부터 인권을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으로 정립하기 위해 정치적·문화적·사회적·종교적 배경을 모두 고려하여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인류 공통의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10일 탄생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현재 무려 350개에 달하는 국가 및 지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국제인권법의 뿌리가 되고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설립에 나섰고, 오늘날 120여 개국이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권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 권한은 각 나라의 정치적·문화적·사회적·종교적 배경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적 주체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해결, 인권 교육 및 증진 활동, 인권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조언 등을 포괄하는 권한과 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국가인권기구에 포함되는 유형으로는 인권위원회, 옴부즈맨, 전문인권기구 등이 있다.

2.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국가인권기구 개념의 모체는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탄생한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옴부즈맨은 전통적인 삼권분립 체제로 운영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삼권분



립에 기초한 국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 이르러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권체제를 확립해 나갔고, 다양한 인권 분야를 규율하는 국제조약도 점차 늘어났다. 더불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의 내재화, 즉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방안에 대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논의도 확산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국가인권기구 설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민주화를 촉진하고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The first International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

연도	주제	주요 내용
1946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국제인권법의 국내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권고
1978	유엔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원칙) 제정, 총회에서 인준
1991	제1차 국가인권기구 워크숍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초안 마련
1993	빈 세계인권회의	「빈 선언과 행동계획」 채택
1993	유엔총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채택

Workshop on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지위,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파리원칙」이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나라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지역별로 국가인권기구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파리원칙」의 주요 내용

광범위한 권한 확보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자문,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협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독립성 확보

국가인권기구는 입법·사법·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정부나 타 기관의 간섭이나 방해 받지 않고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구성원의 신분상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구성의 다원성

국가인권기구는 사회의 다원성을 대표할 수 있고,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되어야 한다.

활동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권한에 관한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운영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소외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직접 또는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여론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

국가인권기구는 개별 사안에 관한 진정을 조사·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며,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

국가명	기관명칭	설립시기	근거	기구성격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1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기구
호주	호주 인권위원회	1981	인권위원회법	법률기구
인도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1993	인권보호법	법률기구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1999	인권위원회법	법률기구
필리핀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1987	헌법	헌법기구
덴마크	덴마크 인권연구소	1987	국제학·인권연구센터설치법	법률기구
프랑스	프랑스 국가인권자문위원회	1947	국가인권자문위원회법	법률기구
독일	독일 국가인권위원회	2001	인권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	법률기구
영국	평등과 인권위원회	2007	평등법	법인기구
폴란드	폴란드 인권위원회	1988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	법률기구
스페인	스페인 옴부즈맨	1981	헌법	헌법기구
캐나다	캐나다 인권위원회	1977	인권법	법률기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옴부즈맨	1993	헌법	헌법기구
멕시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1989	헌법	헌법기구
케냐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2002	헌법	헌법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1995	헌법	헌법기구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국가인권위원회	1995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기구

●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1.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1978~1993)

• 세계로 확산하는 국가인권기구(1978~)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으로는 각 나라별로 운영되는 국내법상의 기구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국가기구이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나라의 국가인권기구가 자국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및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성숙해 온 논의의 결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19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1976년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하 사회권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하 자유권규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유엔의 인권기준 설정작업의 일환이었다.

인권 전반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의 효력 발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계기로, 유엔은 개별국가 단위에서 국내기구이면서도 국제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났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제3세계를 중심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기본준칙 마련(1991~1993)

1991년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제정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1993년 6월 세계인권대회 및 12월 유엔총회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며,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적어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반영·구현하는 대표적 국가기관이므로 헌법기관의 위상을 가져야 하며, 만약 헌법 개정의 어려움 때문에 법정기관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도 헌법기관에 준

하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운영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등 네 부분에 걸쳐 기본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들을 각 나라에 명확히 제시하였다.

2. 국내 설립기반 준비 과정(1993~2001)

• 국가인권기구 탄생을 향한 열망의 분출(1993. 06~1998. 09)

우리나라의 인권기구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출범하였다. 1993년 6월 10일, 10개의 민간단체 회원 21명으로 구성된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권대회 공대위)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 민간단체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 그 발단이였다.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인권대회 공대위는 현장활동가를 비롯하여 법률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인권대회 공대위는 대회를 통해 유엔 인권제도외 기구, 여성의 권리, 식민지 문제의 해결, 노동자의 권리, 재소자의 권리 등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자체적으로 정리한 한국 인권상황 개괄 책자 및 국가보안법 책자 등을 각국 대표단에 배포하였다. 무엇보다 대회 내내 인권대회 공대위의 마음을 흔든 것은 ‘국가인권기구’였다. 오랫동안 국내 정치의 민주화에 힘을 쏟느라 국제사회에 눈 돌릴 틈이 없었던 탓에,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는 그 자체로 신선



1993년 6월 14일 “세계인권회의의 계기로 인류의 인권이 더욱 신장되기를 기원”하며 체신부(현 정보통신부)가 발행한 기념우표(우표번호 1720)



1993년 6월 14일부터 2주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의 장면

한 충격이었다. 당시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설명을 처음 접하고 “정말 그런 게 있나? 그게 가능할까? 만약 그렇다면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국내로 돌아온 인권대회 공대위는 상설적 기구인 인권단체협의회를 만들어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1994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태지역 인권 워크숍을 시작으로, 1995년 11월 서울에서 국내 민간단체 공동 주최로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고, 1996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인권대회에 참가하는 등 분위기도 조금씩 무르익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5년 4월 28일, 백충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한국의 인권상황과 경제력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요구에 불을 붙인 것은 정치권의 움직임이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 15일, 김대중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의지가 강력했다.

이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열망은 현실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하였고, 인권 개선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는 등 ‘인권대통령’을 자임하였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제도권 내에서도 급속히 진전되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법무부는 1998년 3월 28일, 가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연내에 설치하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 차원에서 인권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자 사회 각계에서 인권위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1998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인권위 설치 등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7가지 인권과제를 담은 ‘인권 관련 개혁제안서’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인권단체들도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1998년 9월 17일 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29개 시민·사회·학술단체가 주축이 되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구성하였다.

물론 일각에서는 민주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새삼스럽게 무슨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느냐 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에서 이제야 비로소 인권이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며, 향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3년간 이어진 시민사회-정부 간 줄다리기(1998. 10~2001. 02)

새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민간단체들이 공추위를 조직하면서 인권위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둘러싸고 노정된 정부와 인권단체 간의 견해차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1998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같은 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공청회를 여는 등 정부 차원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노력이 가속화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998년 9월 25일 정부가 준비한 「인권위법」 시안에서 인권위를 법무부 산하기구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정부 법안을 강력히 성토했고 나섰다. 공추위는 정부안이 발표된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공개된 법무부의 인권위 설립법안의 핵심은 특수법인인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한적 권고권을 갖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밀실작업의 산물인 법무부안을 철회하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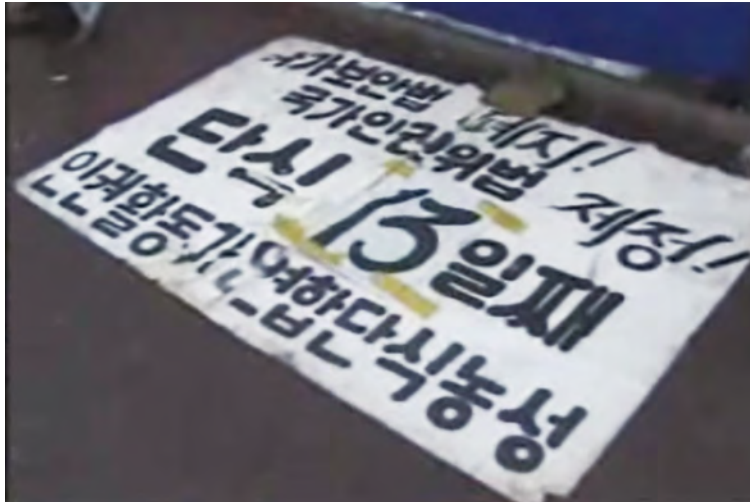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인권기구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모순은 인권위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법무부가 인권위의 지위와 기능을 정하는 법안을 기초하고 입법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법무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권단체들은 애초부터 일관되게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서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인권단체들은 1998년 9월에 구성된 공추위를 1999년 4월 29일 7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확대 개편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인권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도 커졌다. 인권위의 위상, 조직 형태, 강제수사권 부여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정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었다. 당정은 인권위의 명칭과 위상 문제에서부터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의 명칭을 ‘국민인권위원회’로 하고, 국가기관보다는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가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공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같은 공직자가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감사원,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과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논리였다. 이에 반해 당은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검찰 등 기존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명칭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고 준헌법적 국가기구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의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당정의 입장은 엇갈렸다. 법무부 시안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당연직 4명은 관계부처 차관이 맡고, 나머지 7명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은 법무부가 인권위원 구성을 좌지우지할 경우 인권위는 사실상 법무부의 산하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인권위법」 제정을 둘러싼 각 정당과 법무부, 시민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은 해를 넘기며 계속되었다. 2000년 11월 29일 민주당 인권특위에서 확정된 법안은 인권위의 독립성은 보장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 수를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은 전원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 취임 및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할 것, 성역 없는 조사권을 보장할 것, 「인권위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 규칙에 위임할 것,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 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둘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는 채로 법안 제정은 차일피일 연기되었다.

2000년 12월 말,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 현장



이에 인권단체들은 2000년 12월 28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라는 구호를 내걸고 인권 2대 현안의 연내 해결을 위해 연합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서울, 부산, 울산, 전주, 수원, 광주 등 전국의 15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들도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살을 에는 추운 겨울날, 인권활동가들은 천막도 없이 비닐막 덮고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결의를 이렇게 밝혔다.

“인권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각종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명령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로 탄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독립을 요구해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권기구를 원합니다. (중략) 인권활동가들이 모든 활동을 접고, 그것도 엄동설한에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인권 현안들의 중대성 때문입니다.”(인권 2대 현안 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연합 단식농성단 성명 중에서)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13일간의 단식농성을 마친 뒤에도 국회 앞 집회, 민주당사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하였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2000년 4월 명동성당에서 인권위를 법무부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농성을 전개하였고, 민주당사 점거농성을 하다가 전원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기도 하였다. 공대위는 농성, 시위, 캠페인 외에도 청와대, 국회, 정부, 국제인권단체 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법·입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국가기구를 법으로 제한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 점은 재야 법조계에서조차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는 구상은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대위는 현장활동가뿐만 아니라 인권법 등에 정통한 법률가와 인권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었기에, 각계의 비판에도 이 구상을 법제화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각고의 다양한 노력 끝에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3년간 이어진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 진통 끝에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02. 13~05. 24)

2001년 4월 30일, 제221회 임시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의 「인권위법」 수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재적의원 273명 중 찬성 137명, 반대 133명, 기권 3명). 찬성과 반대는 4표 차에 불과했다. 통과된 「인권위법」은 인권위 및 인권위원에 대한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면책특권 미부여, 인권위원 임명 시 청문회나 국회동의 절차 미비,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부족, 조사대상 기관의 제한, 동행명령권·증인신문제도의 부재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인권시민단체의 3년간에 걸친 끈질긴 투쟁이 ‘절반의 승리’로나마 귀결되는 순간이었다(위원장 인사청문회, 국회 추천 인권위원의 국회동의 절차는 이후에 도입되었다).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시도를 극복하고 최종 통과된 「인권위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약 4년 만에, 1993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어렵게 통과한 「인권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폭력 또는 폭언 등으로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사인(私人) 간 차별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애나 성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위가 곧바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직접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경우 인권위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데, 시설 공직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녹취할 수 없도록 하여 진정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법」은 한계가 많다는 비판도 받았다. 최대 쟁점인 인권위 조사범위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만 인정하여, 국회 입법과 법원 재판은 제외하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의 법률적·사실적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제출이 허용되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 등을 제외하고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했다. 또한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임명동의 등 견제 수단이 배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인정함으로써, 기밀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다.

공대위는 정부의 「인권위법」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종결된 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를 금지하는 등 인권위를 사실상 법무부의 ‘외청’으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법안을 추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인권위법」 제정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온 온 국민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일체의 차별행위 등으로 인한 인간 존엄성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인권 보호기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환영 논평을 발표하였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인권위법」의 재제정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2001년 5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법」 공포안을 의결한 데 이어 5월 24일 법률 제

6481호로 공포하였고,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로 「인권위법」이 시행되었다.

• **인권위 출범을 위한 준비(2001. 05. 25~11. 24)**

우여곡절 끝에 「인권위법」이 통과되었지만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진통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독립적 국가기구라는 독특한 위상과 전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관 출현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였고, 그동안 민간단체 논의를 대변해 오던 공대위는 권한이 축소된 「인권위법」 제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2001년 5월 25일 자체 해산을 결정하였다.

2001년 8월 1일, 초대 위원장으로 김창국 변호사가 내정되었다. 인권위 출범 시한인 11월 25일을 3개월여 앞둔 8월 20일, 국무총리 훈령 제420호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파견 공직자 8명, 민간 출신 전문가 7명 등으로 행정지원반과 법제운영반을 구성, 설립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준비기획단은 시행령 및 직제령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시안 준비, 업무처리 절차 및 지침 시안 준비, 사무처 구성안 준비 등 인권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8월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해외 인권기구 현황과 국내의 국가기관 운영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준비기획단은 인권위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조직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준비기획단은 당시 사무처 정원으로 321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작은정부론’을 내세우며 120명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진정접수와 조사라는 기본 기능 외에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정책 개선, 공직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국내외 교류·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21명도 부족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사무처 규모와 별개로 인권위 직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도 큰 과제였다. 당시 준비기획단은 인권위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민간 전문가들이 인권위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 학계 등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성안했으나, 이 역시 정부 부처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인권위법」 시행과 직원채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2001. 10. 30)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위촉식(2001. 11. 23)

출범을 40여 일 앞둔 10월 9일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11명의 인권위원이 임명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인권위법」 제정과 인권위 설립은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인권위원들이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원 정원과 관련한 인사 주무부처와의 이견으로 인해 그때까지 직제령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인권위는 인권위원 외에 사무처를 구성하지 못한 채로 출범하였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준비기획단은 2001년 11월 24일 자동 해산되므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규칙」을 제정하고, 인권위 운영을 보좌할 임시 사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이하 사무처준비단)을 설치하였다. 사무처준비단은 설립준비기획단의 역할을 이어받아 시행령, 직제령 및 인권위 규칙과 규정, 업무지침 시안의 준비, 사무처 조직과 인사 및 예산안 편성, 청사 확보, 위원회 운영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사무처준비단과 정부부처의 끈질긴 협의 끝에 다음 해 4월 1일, 5국 18과 1소속기관, 정원 180명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발족하였다. 당시 공무원 정원은 180명이었으나 별도 정원인 파견공무원 20명, 전문계약직 공무원 15명을 포함하여 사실상 인권위 직원은 215명으로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와 출범	
2001. 08. 20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설치
2001. 10. 09	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명
2001.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발대식
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02. 04. 01	청사 입주 및 사무처 발족

•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 탄생(2001. 11. 25)**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갔다. 1990년대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관행 등 인권보호를 위해 개선할 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인권의식 제고도 필요한 시점이였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화와 인권을 향한 국민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 및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의 탄생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인권 보호·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라는 뜻깊은 이정표가 세워지는 순간이였다.

인권위의 출범은 단순히 국가기구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논의와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역사적 필요에 의해 종합적 인권 전담기구가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첫째, 인권위의 탄생은 국제인권기구의 국내적 실행, 즉 인권 관련 ‘준국제기구’의 국내 출범을 의미한다. 「인권위법」은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가치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인권이 더 이상 단순한 국내 문제로 귀착되지 않으며, 각 나라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약속된 인권 규약을 지켜야 할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참석한 인권위 현판식(2001. 11. 26)

의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탄생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가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되풀이하였다는 반성 위에서,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인권 전담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셋째,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인권감시자’ 역할을 국가기구가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인권위의 권한은 비록 국제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관할 영역이 광범위한 편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조사·구제 업무뿐만 아니라,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이용에서 벌어지는 19개 유형의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도 관할한다. 오랫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교도소 등 330여 개 구금시설 외에 9,000여 곳에 이르는 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도 감시대상이다.

넷째, 인권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구가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구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제 절차 탓에 차별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장애인·아동·노약자·성소수자·노숙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신속·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인권위이다.

끝으로,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대변하고 국민적 요구 수준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기구이다. 우리보다 먼저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한 나라들의 경우,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문제가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진정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감시 및 구제를 중점 업무로 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 변화와 다양성의 폭이 커질수록 국가인권기구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도 확대되고 있다.

●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 현황

1. 주요기능

인권위는 인권전담 기구로서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기능은 정책개선,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4가지이다.

• 정책개선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하여,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담당재판부(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권위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한다.

• 조사와 구제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한다.

또한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한다. 주요 차별 사유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19가지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조사와 구제를 수행한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외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기구이자, 성차별 조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교육과 홍보

인권위는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공직자, 시설종사자, 언론인, 일반시민 등 대상별로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표준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인권교재, 인권영화, 인권만화집, 인권포스터, 인권사진집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직원, 인권단체,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인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의 홍보는 모든 이의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 기능의 하나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조직 자체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둔 다른 기관들의 일반적인 홍보와 차별화된다.

• 국내외 협력

인권위는 인권 옹호와 향상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해외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위는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 단체들은 인권 실태조사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권위의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성을 보완한다.

인권위는 각국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권기구를 운영해 온 나라들의 경험을 습득하는 등 국제교류에 힘쓴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권위 조직은 심의·의결기관인 위원회와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된다. 인권위는 주요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정책, 조사 등의 주요 업무 및 인권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합의제 형식으로 수행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1) 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권위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인권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권위를 대표하며 인권위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

하여 인권위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는 것은 물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인권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결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결원된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특히 인권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인권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다만 인권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인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할 수 있다.

인권위원은 위원회나 「인권위법」 제12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운영

인권위는 주요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체 인권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3~5인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인권위의 의사운영은 「인권위법」 제14조(의사의 공개)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다만 진정사건과 관련해서는 「인권위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에 따라 그 심의를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한다.

(1) 전원위원회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18조 및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인권위 운영 및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7인 등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전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 ②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④ 법·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⑤ 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법 제19조 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 ⑦ 법 제19조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 ⑧ 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 ⑨ 법·시행령·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 ⑩ 상임위원회·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⑪ 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전원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회, 건)

구분	개최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기타 안건
2001~2021. 06	440	1,862	669	149	1,022	22

(2)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의결사항

- ① 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4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 ③ 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긴급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 ⑤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⑥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중 1. 법 제19조 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중 ①~⑤항 관련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함

상임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회, 건)

구분	개회횟수	상정안건				
		합계	보고안건	심의안건	의결안건	기타 안건
2001~2021. 06	776	2,172	709	342	1,084	37

(3) 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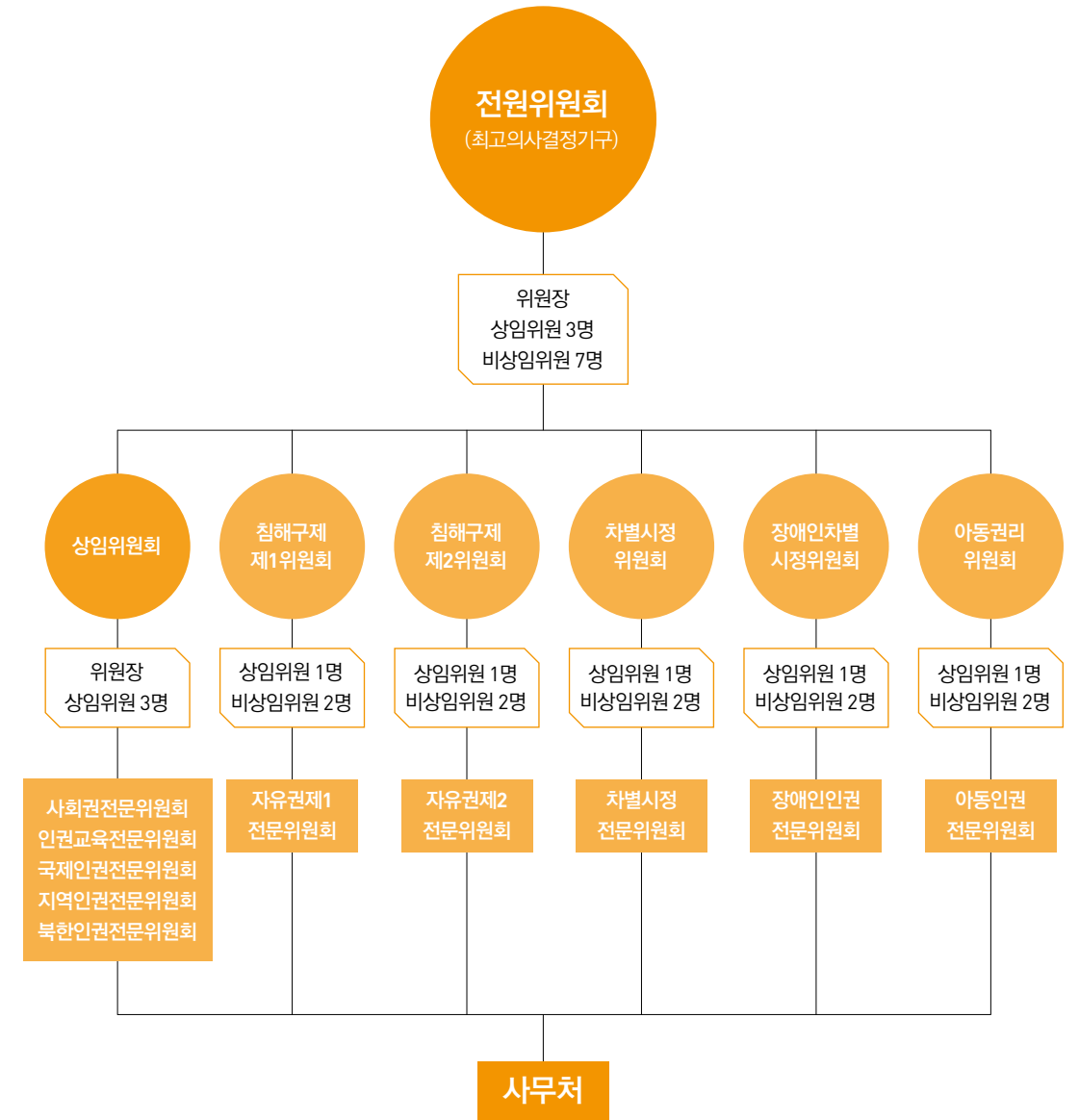
소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현재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지정하고 2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각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상정된 심의·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전원위원회 회부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현재 각 소위원회별로 매월 1~2회 개최한다.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명칭	심의·의결 분야	의결사항
침해구제제1위원회	검·경·국정원·군·입법부·사법부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침해구제제2위원회	구금·보호·다수인보호시설(노인 등),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② 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의 개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위원회	19세 미만 아동(장애사건 제외), 아동복지시설 등	③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사건 관련하여 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필요한 사항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나이·학력·사회적 신분 등), 성희롱, 성차별 사건	④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사건에 대한 합의 권고,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⑤ 법 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전원위원회 또는 인권위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소위원회 변화 연혁

구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 소위원회	차별행위 조사 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2001. 10. 1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2005. 08. 02	-	-	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침해구제위원회로 명칭 변경	차별시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
2006. 02. 13	-	-	정책위원회 폐지, 업무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조정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로 분리	-	-	-
2008. 04. 22	-	-	-	-	-	신설	-
2016. 04. 28	-	-	-	-	-	-	신설
2021. 현재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폐지	· 침해구제제1위원회 ·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위원회의사운영 체계도

(4) 조정위원회

인권위는 2005년부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선정,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차별(성·장애를 제외한 차별 분야), 성차별(성차별 분야), 장애인차별(장애인차별 분야), 인권침해(인권침해 분야) 등 4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 조정위원회는 인권위원인 조정위원장 1인과 조정위원(외부) 2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권위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구제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과정 등 인권위의 최종 심의의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권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위원회 변화 연혁

구분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차별조정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2002. 03. 08	신설	신설	-	-
2005. 07. 29	-	-	신설	신설
2021. 현재	위촉 조정위원 3명	위촉 조정위원 3명	위촉 조정위원 3명	위촉 조정위원 4명

※ 2002. 03. 0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조정위원회와 차별조정위원회를 설치
 ※ 2005. 05. 0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된 「인권위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을 별도 제정

3) 사무처와 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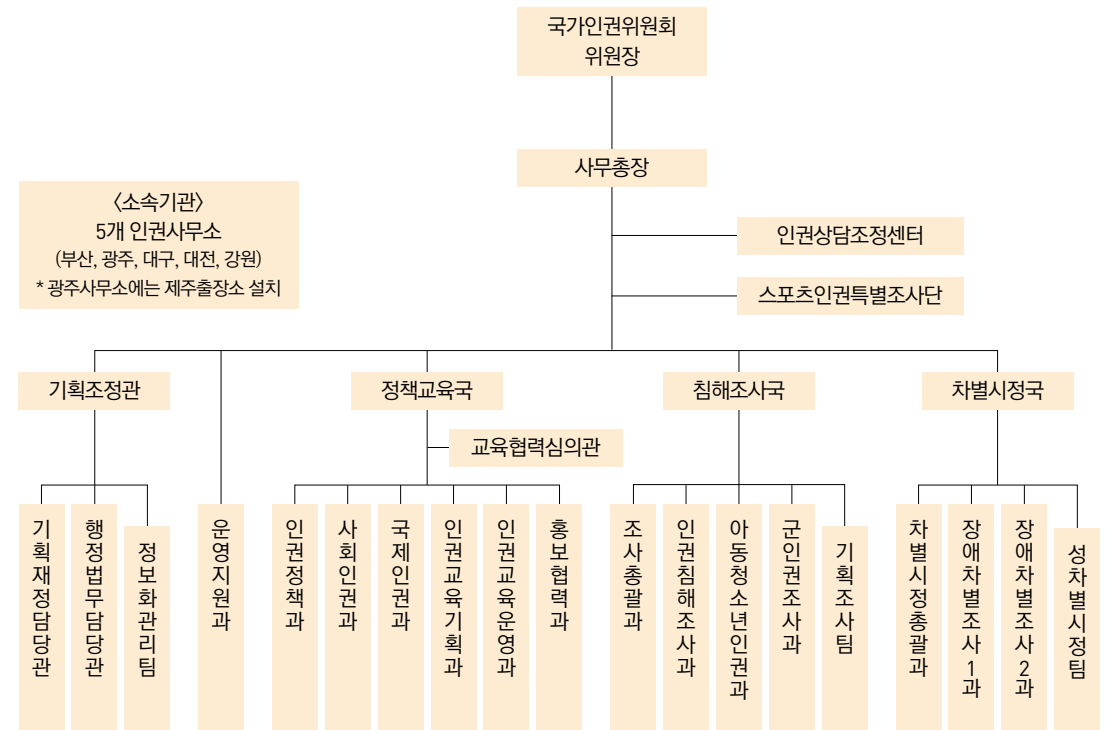
(1) 사무처

인권위 사무처는 2001년 11월 25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을 거쳐 2002년 4월 1일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2. 02. 04 제정)에 따라 정식 출범하였다. 당초 인권위는 1실 4국 2관 25과 1소속기관 321명의 정원을 정부조직 담당부처에 요구하였으나, 협의 결과 인권정책실이 인권정책국으로 축소·조정되는 등 5국(인권정책국, 행정지원국, 인권침해조사국, 차별조사국, 교육협력국) 18과 1소속기관 180명의 정원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인권사무소 신설, 본부-팀제 도입, 대통령직속기구화 논쟁, 정부에 의한 일방적 조직 축소, 장애차별 전담인력 증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조직 축소 이전 정원·조직 회복 등을 거쳐 2021년 현재 정원 234명, 2관 3국 17과 3팀 5소속기관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사무총장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와 소속기관인 인권사무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역대 사무총장은 총 7명으로, 현재 제8대 사무총장이 2019년 12월 30일부터 재임 중이다.

2021년 현재 사무처 조직 현황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부서별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2관 3국 17과 3팀 5소속기관+1단 | 정원 234명(본부 190, 소속 44)



사무처 조직도

인권위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 기능
기획재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총괄업무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연간보고서 발간,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보고 ○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및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조직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재정운영계획 수립 ○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인사청문회 총괄 ○ 기타 위원회 통계의 관리, 지시사항 관리, 국내 집행업무 등
기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법과 그 시행령 입안 및 협의, 법령질의 해석 ○ 위원회 규정의 전반적 관리 및 법규집 발간 ○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공직윤리 ○ 정보공개 업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기록물 관리(전자기록, 비전자기록 등) ○ 비영리법인 허가, 사무검사 등, MOU 총괄
정보화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 위원회 홈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주요 기능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행정업무 총괄 ○ 인권위원 워크숍 등 위원회 대내외 행사 계획수립 및 주관 ○ 위원회 의사운영(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 문서 접수 및 수발, 관리 관리 ○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 등 관리 ○ 소속 공무원의 복무·상훈·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교육·훈련 및 국외훈련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위원회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직원 상호회 운영 및 직원복지 향상 	
인권상담조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정·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진정의 각하처리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 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민원업무 처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진정 등의 접수·분류 및 소관 과에 대한 승부 ○ 진정 및 상담 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DB 유지·관리 ○ 상담기법의 개발·개선 및 전문상담(위)원의 위촉·교육 및 관리 ○ 면전진정 업무(인권사무소 관할지역 및 정신보건시설 제외) ○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정책교육국 (교육협력 심의관)	인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사회권,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아동·청소년·군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 제외)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인권(사회권 및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 관련사항 제외) 관련사항에 관한 의견제출 ○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사회권 및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 관련사항 제외) ○ 인권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교류·협력 ○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권고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회인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사회권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 관련사항에 관한 의견제출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사회권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 관련사항에 관한 연구요청 및 공동 연구 ○ 사회권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 관련사항에 관한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권고, 의견 표명·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국제인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주,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사항 제외) ○ 국제인권조약 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아시아·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AGAC) 운영 관리·감독
	인권교육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 학교(초·중등 및 대학) 및 공공(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돌봄(미취학아동 및 노인) 분야 인권교육 관련 다 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권고 및 의견표명 -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 분석과 이행 점검 -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 - 인권교육과정의 개발·운영 ○ 인권 관련 자료·정보의 조사·수집·분석 및 보존 ○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인권도서관 업무

부서명	주요 기능	
정책교육국 (교육협력 심의관)	인권교육운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평가 ○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 운영·관리, 양성한 인권강사의 심사 및 평가 ○ 사회복지(아동시설 포함) 및 시민사회(공기업 포함) 분야 인권교육 관련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권고 및 의견표명 -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 분석과 이행 점검 -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 - 인권교육과정의 개발·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 운영
	홍보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 확산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책 기획·홍보 ○ 위원회 보도자료 제작·배포·분석 등 대 언론 홍보 ○ 페이스북·블로그·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뉴미디어 활용 홍보 ○ 인권잡지·웹드라마, 결정례 영상 제작, 인권작품 공모 등 인권 콘텐츠 기획·제작·배포 ○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 총괄·조정 ○ 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운영 ○ 위원장 인권현장방문 계획 및 운영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 제,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관련 구금시설 방문조사 ○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관련 통계의 관리 ○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권침해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의견표명 ○ 「인권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관련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아동청소년인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 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의견표명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 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관련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군인권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사 및 구제,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군 교도소 방문조사 ○ 군 인권에 관한 교육 ○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차별시정국	기획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관련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기획·총괄 및 조정, 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통계의 유 지·관리 ○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후속 조치 관련 법령·정책·제도·관행의 조사·연구 총괄 ○ 방문조사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차별시정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아동·청소년, 군, 장애, 성차별·성희롱 제외) ○ 차별행위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 차별행위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 보호 ○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부서명	주요 기능
차별시정국	장애차별조사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장애인 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장애인 제외) ○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장애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제외) ○ 장애차별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 장애차별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법률구조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한·증인 보호 ○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장애차별조사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문·상담, 진정의 접수·조사 및 구제 ○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한·증인 보호 ○ 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 장애인복지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사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성차별시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한·증인 보호 ○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인권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구역 내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관할구역 내 진정사건의 조사·구제 ○ 관할구역 내 인권교육 및 홍보 ○ 관할구역 내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 교류·협력

인권위 청사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서울 중구 금세기빌딩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인권사무소 및 제주출장소를 위한 별도의 청사를 설치·운영 중이며, 지역의 경우 직원 순환근무를 고려하여 관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 청사 운영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	사용기간	
본부	이마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1,380	2001. 08~2002. 03
	금세기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13층	8,858	2002. 04~2015. 09
	나라키움 저동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15층	10,275	2015. 10~2038. 12
인권사무소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00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361	2005. 09~2018. 03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지상 8층	515	2018. 04~2022. 03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 6층	359	2005. 09~2014. 0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408	2014. 07~2023. 07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370	2007. 07~2019. 05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5층	537	2019. 05~2023. 05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빌딩 13층	638	2014. 09~2021. 12
강원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무실동) 대원신협 4층	635	2017. 05~2027. 05	
출장소	제주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제주마루 2층	975 (교육센터 포함)	2019. 09~2024. 08

(2) 소속기관

• 인권사무소

인권위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에 인권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권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은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강원 5개소이며, 제주에는 출장소를 두었다. 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관할구역 내에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 접수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 접수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인권위의 조사 지원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인권위는 지역별 인권교육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각 사무소별로 지역 인권교육센터를 열고 인권체험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인권사무소·인권교육센터·인권체험관 운영현황

지역	인권사무소		지역 인권교육센터		인권체험관		
	개소일	관할구역	개소일	프로그램	개소일	위치	프로그램
부산	2005. 10. 11	부산·경남·울산	2015. 04. 21	○ 인권강사 양성과정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 노숙인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인권특강 등	2010. 04. 21	부산지하철 '물만골역'	○ 인권도서관 운영 ○ 기획전시 운영 ○ 인권교육장 운영 ○ 장애체험관 ○ 작은 공연장 운영 ○ 지역별 특화 체험
광주	2005. 10. 12	광주·전남·전북·제주	2015. 03. 31		2008. 10. 31	광주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마복역)'	
대구	2007. 07. 01	대구·경북	2015. 05. 01		2013. 07. 17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	
대전	2014. 10. 15	대전·충남·충북·세종	2015. 04. 28		2016. 06. 3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구봉산 건물 2층	
강원	2017. 06. 14	강원	2018. 04. 26		2019. 02. 26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2층	

• 인권도서관

인권위는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02년 소속기관으로 인권자료실을 개관하였고, 인권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자료 열람·대출 및 정보 서비스, 인권위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보존,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인권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더 많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각 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분관(부산·광주·대구·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4) 자문기구

인권위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의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인권위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업무상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인권위 안건의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 자문기구 운영현황

- ① 정책자문위원회
- ②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10개)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 사회인권전문위원회 | 국제인권전문위원회 | 인권교육전문위원회 | 지역인권전문위원회 | 북한인권전문위원회

5) 소관 법규

인권위의 소관 법령으로는 「인권위법」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있으며, 「인권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권위의 조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으로, 인권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인권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인권위 규칙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사무처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법」은 인권위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국회에서 3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을 절충하여 2001년 5월 24일 제정하였고, 법 시행일은 2001년 11월 25일 인권위 설립일이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조사대상의 확대, 권고의 실효성 강화, 독립성 증대 등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2005년 7월 29일 일부개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희롱이 포함됨으로써 종래 여성부에서 수행하던 성희롱 시정·구제기능이 법적으로 완전히 인권위에 이관되었다(실제 업무이관은 법 개정에 앞서 2005년 6월 24일부터 진행). 또한 차별 사유에 '학력 등'을 추가하였고, 인권위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는 한편, 인권위의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에서는 인권위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 및 사립학교를 아우르는 각급학교가 새로 포함되었고,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90일 내에 권고이행 계획을 수립·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인권자료실'의 명칭을 '인권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인권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다.

2016년 2월 3일 일부개정에서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ICC, 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권고에 따라 「인권위법」을 개정하였다. 당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단체 정의규정 신설, 인권위원 자격기준 마련, 인권위원 선출·지명 시 세부절차 마련, 인권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이념 고려,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 면제, 인권위 조직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인권위의 독립성 고려 등이다. 이를 통해 인권위원 지명·선출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였으며, 중국적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0년 2월 4일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영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타법 개정 형식으로 인권위의 조사대상 중 '헌병대 영창'도 삭제하였다. 인권위는 「군인사법」 개정 이전에 영창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개정 연혁

연번	제·개정일자	제·개정내용
1	2001. 05. 24	○ 법률 제정
2	2005. 03. 31	○ 「민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3	2005. 07. 29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에 '성희롱' 포함 ○ 차별 사유에 '학력 등' 추가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 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정 관련 규정의 보완·구체화
4	2005. 08. 04	○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5	2005. 12. 29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6	2006. 10. 04	○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7	2007. 05. 1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 개정
8	2009. 02. 03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9	2011. 05. 19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개정(법령용어와 표현 등 순화·정비)
10	2012. 03. 21	○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인권위원장 포함 ○ 인권위 조사대상기관 확대(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 피권고기관의 권고이행 계획 회신 의무화(90일 내) ○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11	2013. 03. 23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
12	2014. 03. 18	○ 벌칙 규정 중 금고형 폐지,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 적용으로 개정
13	2016. 02. 03	○ 시민사회단체 정의규정 신설 ○ 인권위원 자격기준 마련 ○ 인권위원 선출·지명 시 세부절차 마련 ○ 인권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이념 고려 ○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 면제 ○ 인권위 조직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인권위의 독립성 고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없이도 구제조치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14	2020. 02. 04	○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타법 개정('헌병대 영창' 삭제)
15	2020. 03. 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규정 정비

• 인권위 소관 시행령

「인권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인권위 조직은 제외)을 정하고자 2002년 2월 9일 「인권위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4년 3월 17일에 인권위 업무 수행상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이 신설되었으며, 2011년 4월 6일에는 「인권위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제19조). 이후 2013년 1월 28일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를 관계법령 제·개정 및 사회현실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면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그 유형에 포함시켰으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시·도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보완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인권위의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신설하였다.

• 인권위 관련 규칙·훈령·예규

인권위 규칙은 「인권위법」과 그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예 「행정심판법」)에서 인권위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명시적 위임은 없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에서 정한 것이다. 2021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등 20개의 규칙을 제정·시행 중이다.

훈령은 인권위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규정화된 명령이다. 2021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등 49개의 훈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예규는 사무처의 행정사무 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사무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2021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등 22개의 예규를 제정·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개정 연혁

연번	제·개정일자	제·개정내용
1	2002. 02. 09	○ 시행령 제정
2	2004. 03. 17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제19조~제21조) 신설
3	2007. 10. 15	○ 타법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관련 개정(제2조 제2호)
4	2011. 04. 06	○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및 부과금액 적정화(제22조)
5	2012. 08. 03	○ 타법 개정(「아동복지법」 시행령) 관련 개정(제2조 제1호)
6	2013. 01. 28	○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위 조정(제2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포함 등)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보완(제19조, 시·도교육청 포함) ○ 조사·구제업무 수행상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제23조)
7	2017. 05. 29	○ 타법 개정(「정신보건법」 시행령) 관련 개정(제2조 제3호)
8	2021. 01. 05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관련 개정(제4조 제2항, 제3항)





2

조직 및 운영 변천사



20th ANNIVERSAR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인권위 설립 첫날

- 진정접수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

2001년 11월 26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5층 인권위 접수처는 업무 개시 한 시간 전부터 물려든 수십 명의 진정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중에는 진정접수를 하러 전날 대구에서 상경한 인권침해 피해자 유가족도 있었다. 현장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진정이 쇄도했다. 인권위 출범과 동시에, 오랜 세월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던 각종 청원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었다.

이마빌딩에 마련된 4개의 진정접수 부스에는 위원장과 3인의 상임위원이 앉았다. 설립준비 기간 동안 시행령, 직제, 청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없이 서둘렀지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정원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무처 직원 한 명 없이 인권위원 11명과 사무처준비단원 27명만으로 업무를 개시하면서 벌어진 진풍경이었다. 인권위는 당초 사무처 구성을 위해 321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작은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120명 선까지 줄일 것을 요구하여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무처준비단의 최영애 단장은 11월 22일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권위는 26일 오전 9시 「인권위법」에 따라 출범하지만, 사무처 구성을 위한 직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진정접수 업무만 먼저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인권위는 법이 부여한 임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 접수를 시작으로 업무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접수가 개시되고, 위원장이 앉은 부스에 제1호 진정인이 자리하는 역사적인 순간, 모든 이목이 쏠렸다. 제1호 진정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용익 교수였다. 11월 17일 충북 제천보건의소장 후보 1순위였는데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임명되지 못한 제자 이희원 씨(장애3급)를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



진정접수 첫날,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들의 진정을 접수하는 유시춘 상임위원(2001. 11. 26)



진정접수 첫날, 진정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박경서 상임위원(2001. 11. 26)

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옆 부스에는 제2호 진정인의 접수가 시작되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성우 양지운 씨였다. 여호와와의 증인 신자로서 군입대 후 집총을 거부하다가 항명죄로 구속수감 중인 아들을 대신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그는 초·재범 및 범죄 유형별 세부사항에 관계없이 27개월 이상 복역시키는 법무부 기준이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3번 부스에는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들이 찾아왔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피신 중인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툰 우리말로 크레파스와 물감 제조회사를 상대로 '살색'을 없애달라고 진정했다. 체불임금보다 그들을 더욱 괴롭힌 것은 피부색이 다른 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모욕이었던 것이다. 인권위의 대표적인 결정례 중 하나로 꼽히는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권고'의 시초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인권위는 진정접수 다음 해인 2002년 7월,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 색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접수처에는 1975년 인혁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유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에서 커밍아웃한 이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동성애자, 승객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성전환자,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이의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진정접수를 하던 인권위 관계자들도 진정인들의 사연에 목이 메어 고개를 떨굴 정도였다. 이렇듯 인권위의 업무 개시 첫날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다양한 사안이 일시에 분출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하루에만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총 122건에 이르렀다. 조사관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처럼 많은 진정이 들어온 것은 우리 사회에 인권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었다. 이날 14건의 진정을 접수했던 유시춘 상임위원은 그날의 풍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제2호 진정인 양지운 씨가 말하는 인권위

양지운 씨에게 인권위는 특별한 국가기관이다. 그는 인권위 업무 개시 첫날, '구금시설 내 여호와와의 증인 종교의 자유 침해' 진정을 냈다. 일체의 폭력을 거부하는 여호와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고 항명죄로 징역을 사는 수형자 부모 511명을 대표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양 씨의 진정 이후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 내 여호와와의 증인 종교집회를 허용하라"고 권고하였다. 처음에는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던 법무부는 2003년 7월, 이를 받아들였다. 인권위와의 인연에 대해 양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인권위 출범 첫날, 진정서를 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만감이 교차하더라.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 당시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으셔서 '이 땅엔 이제 양심수가 없다'고 했다. 1,600여명 젊은이가 양심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사실 진정 내면서도 반신반의했다. 그랬는데 인권위가 정부에 이 문제를 권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중략) 인권위가 열심히 인권의 파수꾼 노릇을 하는데,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어떤 부처는 인권위를 잔소리꾼으로, 거북한 기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옳은 것을 옳다고 할 때는 귀를 여는 것이 똑똑하다."

양 씨는 인권위와의 특별한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이후 인권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인권위 출범 첫날 접수된 진정 서류(2001. 11. 26)



교동초등학교에서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김창국 위원장(2001. 12. 12)

“어찌 첫날 인권위를 직접 찾아온 이들뿐이겠는가. 앞으로 인권위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래서 주류로부터 소외된, 낮은 곳에 거주하는 이들일 것임이 분명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처지가 못 되는 이들과 부당한 차별을 어디에 기대 해결할 길이 없는 이들이 올 것이다. 인권위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낮은 데서 살아야 한다. 권력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

인권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열망은 설립 초기 진정건수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설립 첫해인 2001년 불과 36일 만에 803건의 진정이 쏟아진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2년에는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권위 출범을 맞아 사회 각계 인사들의 응원도 쏟아졌다. 비록 제정된 「인권위법」이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인권위가 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매섭게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성실히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언론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관심을 표명했다. 《국민일보》는 인권위 출범일에 사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의 적폐를 해소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은 앞으로 인권위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인권위 출범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정부부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국가가 앞장서서 시정하고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다”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물론 긍정적인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인권위법」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 겨우 입법화되었으나, 법이 통과된 후에도 조직 규모와 직원채용 방식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기득권 지키기에 밀려 효율적인 조사 수단을 부여하지 못하는 등, 인권위 출범을 반기지 않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권기구는 커다란 사회적 기대와 더불어 막중한 과제를 안고 첫발을 내디뎠다.

인권위의 조직·인력 구성 과정 - 독립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합격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9일, 인권위의 첫 공채선발자 51명에 포함된 뇌성마비 2급 중증장애인 안상희 씨의 소감이다. 인권연구 5급 직원으로 합격한 안 씨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다.

2002년 2월 26일 마감한 인권위의 첫 공채 결과, 71명 모집에 2,448명이 지원하여 평균 3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최종 선발된 51명 중 기능직 합격자 12명을 제외한 39명은 국장급 3명, 과장급 6명, 5급 16명, 6·7급이 14명이었다. 연령대는 30대가 27명(69%)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22명(56%)으로 남성 17명(44%)보다 많았다. 출신 직업은 인권·시민단체 출신이 11명(28%)이었고, 연구·교육계 출신 14명(36%), 전·현직 공직자 5명(13%) 등이었다.

인권위 사무처는 2001년 11월 25일에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을 거쳐 2002년 4월 1일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2. 02. 04 제정)에 따라 정식 출범하였다. 원래 인권위



인권위 직원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 (2002. 01. 10)

는 1실 4국 2관 25과 1소속기관 321명의 정원을 정부조직 담당부처에 요구하였다. 그 이전에 439명의 직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321명으로 줄인 터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원을 둘러싼 인권위와 행정자치부의 견해 차이는 인권위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인권위 업무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의 조사에 한정하고,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처리가 가능한 일들을 제외하면 굳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는 물론이고 「인권위법」에 명시된 정책개선, 교육·홍보 등 법에 명시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막판까지 인권위는 321명을, 행정자치부는 120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으나 최종 협의 결과 인권정책실이 인권정책국으로 축소·조정되는 등 인권위 요구안보다 줄어든 5국 18과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정원 180명(파견 공무원 20명, 전문계약직 공무원 15명은 별도 추가)으로 조정되었다. 이마저도 사무처 준비단이 끈질기게 행정자치부와 줄다리기를 협상을 하여 얻어낸 결과였다. 비록 사무처준비단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몇 개월간 지체되었던 사무처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권위는 독립기구인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구성에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 행정 경험이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인권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하에 직원채용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직원채용특례규정은 제정되지 못했고, 그 대안으로 가능한 한 많은 직책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에 배정하여 민간인을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인권위는 새로운 국가기관이 발족할 때마다 기존 국가기관에서 일하던 공직자들을 전입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출신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많이 충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채를 실시하였다. 채용 비율도 일반직 공직자 60%에 민간 전문가 몫의 별정직 공직자를 40%로 배정하였다. 당시 일반 정부부처의 별정직 공직자가 2~3명인 것과 비교할 때 실로 파격적인 조치였다.

국내 최초의 국가인권기구를 이끌어갈 인재를 뽑는 일인 만큼 채용 과정에도 신중을 기하였다. 무엇보다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시험을 통해 직원을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들어오는 인사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직 공직자 채용에서도 엄격한 면접 과정을 거쳤다.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보다 빠른 승진 등 신생 조직의 이점만을 노리는 공직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였다.

인권위 설립 초기 조직 형태에서 큰 폭의 변화가 이루어진 때는 2005년이다. 정부의 차별시정 기능 일원화 방침에 따라 6월 23일부로 기존에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소관이던 성차별 관련 업무가 인권위로 통합되었다. 인권위의 일원화는 점점 복합적으로 변해가는 차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인권위는 차별조사국에 차별개선담당관을 신설하고 전문성 제고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지역순회상담 및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 인권단체의 요구를 수용, 지역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 및 인권침해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2005년 5월 31일 직제를 개정하고, 2005년 10월 11일과 12일 부산·광주 지역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이어서 2005년 12월 30일, 총 정원(201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국·과 중심 체제에서 성과 중



기존의 국가기관과 달랐던 사무처 분위기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다루는 국가기구이자 독립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출범 초기 직원채용 비율을 일반직 공무원 60%, 별정직 공무원 40%로 두었다. 그런데 인권위 업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권력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정부 입장을 집행하도록 훈련된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반면 시민단체, 연구소 등 민간기관 출신이 주를 이룬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은 뛰어난 반면 행정 업무에는 미숙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경력과 업무 특성 때문에 인권위 사무처가 조화를 이루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다른 국가기관에서 전입해 온 지 얼마 안 된 한 공직자가 “도대체 이렇게 굳기 빠진 국가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개탄했다는 일화만 보아도, 당시 서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시민단체 등 민간 출신 비율이 높다 보니 출범 초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조직 분위기도 확연히 달랐다. 일단 옷차림부터 자유로웠다. 과장급 이상은 정장 차림이 많았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캐주얼한 차림이 대부분이었다. 호칭도 파격적이었다. 과장급 이하의 직책이 없는 직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선생님’으로 불렀다. 직급의 고하에 상관없이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인권위 설립 초기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선택된 호칭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반직 공직자에게는 낯선 용어였다. 이 외에도 인권이라는 영역을 다루는 기구답게 직원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했으며, 어느 국가기관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다.

제4대 안경환 위원장은 취임 초기의 조직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특이한 기관이다. 위계질서는 취약하다. 그게 도리어 기관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의 대가는 고립이다. 최대한으로 어울려야 한다.”

심의 자율행정조직인 본부-팀제(5본부 22팀 3소속기관)로 전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본부-팀제 개편 시 최대 중점사항은 인권교육 기능의 강화와 업무 영역에 따른 정책-조사의 연계로, 업무 대상별 조직 구성을 통해 대국민 인권서비스 향상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꾀하였다. 우선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협력국 내 인권교육담당관을 인권교육본부로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대상별 조사-정책의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중심의 인권침해조사국과 차별조사국을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로 각각 개편, 정책개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처럼 설립 초기에 인권위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08년 초부터 인권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난관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인권위 출범에 대한 해외의 관심 - 국제인권 리더로 발돋움

국가인권기구는 국내법상의 조직이지만 국제인권규범을 토대로 설립되고 그 이행을 담당하는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인권기구 탄생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성과 조직 규모 및 예산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설립 초기부터 일본·중국 등 해외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등 인권위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2002년, 2004년에는 설립 초기인데도 많은 국가의 관계자들이 인권위를 방문하였다.

2002년 5월 10일에는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re)가 이끄는 중국 대법원 부장판사 등 8명의 방문단이 인권위의 권한 및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날인 11일에는 홍콩 인권법센터 리알 순가 소장 등 5명의 아시아 NGO 홍보단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을 독려하고자 각각 방문하였다.

일본 인권단체의 방문도 이어졌다. 일본 인권포럼 21(NGO) 마에카와 미노루 포럼 총괄연구원 등 5명(05. 24), 일본 변호사연합회 후지와라 세이고 변호사 등 12명(06. 03),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 나카오 아키라 검사 등 3명(08. 07),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 나카야마 다로 회장 등 11명(10. 04) 등이 인권위를 찾았다. 주로 일본의 「인권옹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 「인권위법」을 참고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인권국장 등 2명(06. 21), 유엔인권위원회 이완희 UNDP 몽골사무소 국제인권자문위원 등 2명(08. 09), 주한 스웨덴대사관 오른브란트 부대사(10. 25),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체랭더르쯔 위원장 등 5명(10. 28), 오드리 글로버 유엔인권위원회 영국대표단 단장 등 4명(11. 12) 등이 한국의 인권위 활동과 국제인권 분야의 연대 강화를 위해 잇따라 인권위를 방문하였다.



인권위를 방문한 APF 사무국장(2003. 08. 17)



인권위를 방문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2002. 06. 21)

이처럼 활발한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2004년에 두 건의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였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와 제9차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PF) 연례회의가 그것이다. 창설된 지 3년도 안 된 신생 인권기구이자 APF에 정회원기구로 가입한 지 2년차에 불과한 인권기구가 세계적인 국제인권대회와 연례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관련 국제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더구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열린다는 상징성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된 이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4개 지역별로 순환하여 2년마다 개최된다. 제7차 대회는 본래 멕시코가 개최국이었으나, 경제난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회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후 APF의 적극적인 요청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UNOHCHR)의 제안에 한국 인권위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서울로 대회 장소가 결정되었다.

인권위는 2004년 1월 한국 자문위원회와 실무운영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창국 인권위원장이 맡고, 자문위원으로 박경서 상임위원, 최영애 상임위원,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오재식 전 월드컵전 회장, 이석태 민변 회장,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 이대훈 성공회대 연구원, 이성훈 팍스로마나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실무운영단은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기획·의제팀, 의전·총무팀, 홍보·출판팀으로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와 실무운영단은 8개월에 걸쳐 의제, 기조연설자, 발제자 등의 선정을 비롯,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이라크 전쟁을 위시하여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분쟁과 대테러'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국가인권기구들이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 회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권 NGO 대표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국가인권기구 대표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국가인권기구와 NGO 간에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2004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대회는 루이즈 아머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해 70개국에서 190명의 인권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모두연설, 분과별 주제발표와 토론, 전체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대회 마지막 날에는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에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및 대테러 조치의 국제 인권기준 부합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유엔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향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연례회의에서 각 국가들의 서울선언 이행 사항을 보고하는 등의 절차도 명시되었다.

한편 인권위가 2002년 11월 정회원기구로 가입한 APF의 제9차 연례회의는 이에 앞서 13일에 개최되었다. 인권위는 설립 3년 만에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 인권사회에서 위상을 드높인 것은 물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값진 경험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인권위는 이후 국제인

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2006년 12월 초, 볼리비아에서 열린 ICC 연례회의에 참석한 인권위 관계자들이 낭보를 들고 돌아왔다. 당시 대회에서 향후 적용될 의장, 부의장 선출 원칙을 확정했는데, 2007년 3월 총회에서는 (남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의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앞서 중요한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역량을 보여준 우리나라 인권위가 다시 한번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였다. 인권위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현직 ICC 위원장 모르텐 키에를름을 만나 3년간 의장직을 수행한 경험과 조언을 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7년 3월 23일 안경환 위원장이 ICC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서 2004년 9월에 개최된 제9차 APF 연례회의에서 APF 의장에 선출된 바 있는 인권위는 아·태 지역에서의 주도적 위상을 넘어 국제인권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의 유엔 인권 관련 활동일지

우리나라는 유엔 창설 후 1970년대 말부터 국제인권 관련 9개 핵심인권조약 중 7개 조약에 가입하고 국내적 이행 문제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유엔은 1965년 채택, 1976년 발효)
- 198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가입(유엔은 1979년 채택, 1981년 발효)
- 1990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일명 「자유권 규약」) 가입(유엔은 1966년 채택, 1976년 발효: 우리나라는 채택 이후 가입까지 24년 소요)
-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일명 「사회권 규약」) 가입 및 발효(유엔 채택, 발효 등 B규약 과 상동)
-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가입. 이후 1996~1997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및 1997~1999년 임기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에 진출
-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및 발효(유엔은 1989년 채택, 1990년 발효)
-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에서 일명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원칙」 채택(이 대회에 참석한 국내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귀국 후 인권 전담할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지속 요구)
- 1995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 및 발효(유엔은 1984년 채택, 1987년 발효)
- 2008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가입 및 2009년 발효(유엔에서는 2006년 채택되고 2008년 발효됨)

위원장 해외출장 청와대 사전 미보고 사건 - 인권위의 정체성을 확인하다

국가인권기구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 실패라는 배경에서 태동하였다. 바로 이것이 국가로부터의 인권 보호가 국가인권기구의 주 업무인 이유이며, 이러한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 국가기구로부터의 독립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원칙을 명시한 「파리원칙」은 독립성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존립 근거임을 설명하는 데 한 장(章)을 온전히 할애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 역시 국가인권기구의 인사·예산상의 독립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권위법」 제3조를 통해 “인권위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률에 의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탄생하였음에도, 기존에 없던 낮은 국가기구였기에 시행 과정에서 타 정부기관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다. 2002년 11월 김창국 위원장의 해외출장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은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독립성 논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APF 제7차 연례회의 참석차 김창국 위원장과 김덕현 비상임위원, 최영애 사무총장, 사무처 직원 1명 등 4명이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였다. 청와대는 인권위가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 규정상 필요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출국 예정 10일 이전에 여행 일정을 명시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인권위도 엄연한 국가기구이므로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해외출장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률에 명시된 독립기구이므로 여타 국가기관과 동일한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해외출장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귀국 후 청와대는 언론에 “인권위가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 규정상 필요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해 엄중경고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독립적 국가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했다고는 하나, 당시만 해도 국내에 선례가 없었기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조차 독립기구로서의 인권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출장 미보고 사건이 알려지자 국회를 필두로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까지 비판에 합세하였고, 언론도 인권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조 2항 “인권위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11월 18일 최영애 사무총장이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가독립기구가 국외출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와대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으며, 김창국 위원장은 ‘인권위는 독립적 기구’라는 제하의 언론 기고를 통해 독립기구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강조하였다. 이 사건은 지금도 독립기구로서 인권위의 정체성을 재조명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후에도 독립성 수호를 위한 인권위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설립되면 경찰청에서 정보경찰을 파견한다. 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서이다. 출범 초기 인권위에도 정보경찰이 파견되었지만, “독립기구를 일반 국가기관처럼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입 자체를 금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조직 축소 및 독립성 훼손 위기가 지속되었던 안경환 위원장 체제에서는 아예 태스크포스팀을 조직,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세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인



선례 없는 독립적 국가기구에 엇갈린 시각차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유일무이한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보니, 설립 이전은 물론이고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를 향한 시선은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를 탄생시킨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인권위를 법무부 산하기구로 배속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독립기구로 탄생했지만, 이후에도 인권위의 독립성은 틈만 나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했음에도, 인권위가 정부 주요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불멘 소리를 하며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3부(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실제로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인권위를 직속 기구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정부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인권위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자연히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도 낮았다. 이렇듯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권위는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언론도 ‘인권위=독립기구’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다.

권위는 업무의 독립성을 넘어 인사·조직·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규로 독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비법조인·현장활동가 출신 인권위원장으로 주목받은 최영애 위원장도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임기 내 과제로 꼽았으며, 특히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집트 난민들의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하였다.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한 달 가까이 단식 중이던 이집트인들을 만나 난민제도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당시는 정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기라, 위원장의 첫 방문지가 난민 농성장이라는 사실은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가야 할 곳은 가고, 쓴소리가 필요할 때는 하면서 청와대와 관계 정립을 할 것이라며 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취임 첫 일정으로 난민 농성현장을 찾은 최영애 위원장(2018. 09. 13)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사회보호법, 차별금지법, 인권NAP - 2003년 인권위가 주목한 과제들

2003년 6월 17일,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이하 'TFT')의 일곱 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김용철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안보 형사법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3주 뒤에 열린 제8차 국가보안법 TFT 회의에는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제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보며,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인권현안 중 하나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논의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쟁이 거듭되었던 사회적 배경이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비정규직, 사회보호법,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2003년 TFT, 추진위의 대주제로 선정한 이유였다.

인권위는 2003년 들어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인권현안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월 7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제3차 워크숍에서, 인권위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별금지법안,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사회보호법을 2003년 집중실천 주제로 선정하고, 1개 추진위원회와 3개의 TFT를 구성하였다.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하고 비상임위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각 팀을 구성, 한 해 동안 운영하였다. 인력 부족으로 쏟아지는 현안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인권위로서는 TFT와 같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었다.

특히 인권위 설립 전까지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인권위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위와 TFT에 시민사회 인권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켰다. 인권단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인권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제와 자료수집, 토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추진위와 TFT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03년 초부터 활동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는 차별행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차별 유형과 영역을 설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차별 현상은 있되 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차별 연구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차별 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법률가 등과 함께 차별 관련 주요 쟁점 및 외국의 입법례 검토, 조문 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04년 8월에 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법안에 대한 다양한



청송보호감호소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사회보호법 TFT(2003. 06. 03)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을 수정하였다. 이 같은 과정이 3년 반 동안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6년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하였다.

2003년 3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한 국가보안법 TFT는 2004년 7월까지 총 16회에 걸친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 법 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04년 7월 26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가보안법 TFT 활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를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인권위는 2004년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제정 당시부터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50여 년간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을 ‘청산되어야 할 낡은 유물’로 선언하고,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 권고를 하였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 및 피보호감호자 처우 등 집행 현실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감호제도를 2003년 주요 인권현안으로 선정하고,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비상임위원 1인과 외부 전문가 5인으로 TFT를 구성, 해당 제도에 대한 연구 검토에 착수하였다. 2003년 2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회보호법상 국내의 각종 연구자료 및 판례, 보호감호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외국의 보호감호 관련 실태, 법무부와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와 관련된 각종 처우 실태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2004년 1월 12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져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태생적 원죄를 피하기 힘든 데다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에 대하여,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치료감호를 위한 대체 입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현실을 상징하는 두 가지 법에 대하여 인권의 이름으로 ‘사망선고’를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인권위의 TFT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출범한 새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인권위



사회보호법 TFT가 청송보호감호소에 간 까닭은?

“그동안 가해자였던 우리는 감호소에 오면서부터 피해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단식을 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합니다. 이미 교도소에서 찢값을 다 치렀는데도 또다시 보호감호소에 들어온 것이니까요.”

2003년 6월 3일 인권위 사회보호법 TFT가 청송보호감호소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만난 한 피감호자의 이야기다. 사회보호법 TFT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5월 23일부터 청송제2보호감호소 감호자 500여 명이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사회보호법 TFT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전격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첫날에는 피감호자 12명을 만나 감호소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생활하는 감호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었다.

이후 인권위는 2003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사회보호법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보호법 TFT는 1년 가까이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며 보호감호소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2004년 1월 12일 국회와 법무부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는 공공부문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 대하여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전파한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 영역에서 친인권적인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총 3회에 걸친 예비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중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TFT의 주요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외부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TFT에 참여시켰다.

비정규직 TFT는 현장조사와 청문회라는 두 가지 활동방식을 병행하였다. 우선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2003년 3월 19일 서울지하철공사, 근로복지공단, 공공연맹 관계자 3인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양적 조사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투자기관,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의료·가스 부문 등 총 38개 사업장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주도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조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심층조사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관련 지침, 비정규직 관련 각종 판결,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TFT는 사회 여러 층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인권위는 2005년 4월 14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법안)과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건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도 인권위가 특히 심혈을 기울인 과제이다. 인권위는 2003년 10월 정부와 협의한 결과, 인권NAP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2004년 2월 24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고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자문단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였다. 이후 2년간 영역별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현황 조사를 26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더불어 쟁점별로 31개 인권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기관과 17차례 영역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가 인권위가 인권NAP 권

고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인 2007년 5월 22일 1차 인권NAP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5년 주기로 지속해서 인권NAP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제기된 많은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TFT를 운영하였다. 2004년 3월 생명윤리 TFT를 구성하여 생명윤리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바람직한 생명윤리법의 개정방안과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의 초안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인권교육법제화 TFT, 차별판단지침 마련 TFT 등을 구성·운영하였다.

인권위가 주목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추진위와 TFT 운영은 인권 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 스스로 인권을 가치판단의 중심으로 여기고 정책결정의 주체로 나서도록 견인하였다. 크고 작은 현안마다 인권위는 각계 전문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었고, 여기서 이루어진 논의는 인권위 활동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어왔다.



차별금지법 관련 인권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2005. 12. 09)

전국 인권순회상담 - 현장에 답이 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50년 세월을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2005년 6월 28일, 한센인 집단촌이 있는 소록도를 찾은 인권위 직원들에게 반백의 한센병 환자가 던진 말이다. 50여 년 전 꽃다운 열여섯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온 그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이고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의 절절한 토로에 상담 현장을 찾은 인권위 직원과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도 숙연해졌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위해 소록도를 찾았다.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진 인권상담에서는 상담부스 운영과 함께 방문상담도 이루어졌다. 거동이 불편한 한센인들을 배려한 조치였다.

당시 소록도의 건물 곳곳에는 인권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알리는 하늘색 포스터가 나붙었다. 인권위 방문 소식을 접한 소록도 주민들 사이에는 오랜 세월 천대 속에 살아온 아픔을 씻을 수 있겠다는 기대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체념 어린 시선이 뒤섞여 있었다.

인권위가 주로 소외계층과 약자의 인권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바, 한센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집단 중 하나이다. 한센병은 전염 위험이 낮아도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인권침해, 차별이 고질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과거에 발병한 한센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생활실태, 일제에 의한 소록도 강제 이주 및 단종시술 등의 진상, 한센인 자녀 및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록도 인권순회상담(2005. 06. 28~30)



상담 둘째 날인 29일에는 조영황 위원장도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았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한센인을 차별과 편견으로 대했고 국가는 무관심했다. 국가기관의 한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당시 인권위의 소록도 방문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한센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국가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한센인들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인권위는 소록도 외에 전국 89개 한센인 정착촌을 모두 방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5월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상담 및 진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권 현안에 소홀하기가 쉽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인권상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4개 도시를 순회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순회상담 기간 중에는 해당 지역의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 인권현안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찾아가는 상담 및 진정접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순회 상담용 버스를 구입하는 한편, 질 높은 인권서비스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인권 전문상담원의 역량개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2003년에는 지역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99개 인권시민단체와 각 지역의 인권현안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검찰·경찰·군부대·구급시설·보호시설 기관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인권위의 주요 업무와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순회상담 때마다 상임위원들이 번갈아 가며 총 74개 경찰관서의 간부경찰 910명을 대상으로 ‘경찰활동과 인권’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후 지역별로 문을 연 인권사무소에 진정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순회상담의 역할이 인정되었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겪은 이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과 진정접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전화·인터넷·서면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거주지 자유가 제한되는 구급시설 수용자를



대전 인권순회상담(2003. 05. 28)



대구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2004. 05. 06)

방문하여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외부 접견과 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수용자들이 인권위 위원이나 직원을 만나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면전진정'은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인권위법」 제3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접수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위 초기에는 폭증하는 면전진정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접수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2003년에 《면전진정 가이드북 1》을 내놓은 데 이어 《면전진정 가이드북 2》도 발간하였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힘입어 면전진정 시스템의 효율성이 개선됨에 따라, 면전진정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1년 11월 13건에서 2020년 12월 2,529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20년간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은 총 6만 2,009건이 접수되었다.

한 구금시설 진정인은 인권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기관이 힘 있는 사람들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권위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인권위의 상담·진정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이들에게 희망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었다.

인권위가 연구소도 아닌데 왜 실태조사를?

구치소,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주거빈곤층, 한센인, 탈북자, 미등록 외국인, 청소년 출소자, HIV 감염인, AIDS 환자, 노숙인, 장애인, 장애아동...

이상은 인권위가 지난 20년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대상의 목록 중 일부이다.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인권정책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002년에는 이동·청소년 관련 법령 검토, 노인학대 및 인권 실태조사, 장애인 고용 및 차별 실태조사, 군대 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고용차별 실태조사, 인권 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구금시설 환경 인권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2003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는 전년도 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다. 2005년에는 인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위한 기초적·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는 실태조사 추진을 놓고 끈질기 않은 시선도 있었다. 조직 내부에서조차 “인권위가 연구소도 아닌데 왜 실태조사를 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인권위는 “현장 실태를 누구도 모른다”, “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는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끈기 있게 설득하였다. 이처럼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실태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교정시설, 군대, 정신보건시설 등의 구금시설은 인권 사각지대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인권위 출범 이후 면전진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기의 공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표명 -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지켜낸 독립성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와 관련된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2003년 3월 26일 인권위가 내놓은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표명이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한국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미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정부 내 협의와 토의과정을 통해 이런 견해가 충분히 조율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라고 지적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사실상 대통령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분열 행위”라며 비난하였다. 일부 언론도 국론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청와대 관계자도 인권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표하는 건 좋은데 대통령한테 사전에 언질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섭섭해할 정도였다.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창국 위원장(2003. 12. 10)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였다. 의견표명 다음 날인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는 단일한 것이지만 일사불란과 획일주의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 행위 자체는 인권위의 고유 업무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략)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다. 협의의 정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고도의 독립적 기구이며, 내용상으로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앞서 고영구 국정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물이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다. 한 국회의원이 고 원장에게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같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반대입장을 밝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성토했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여전히 인권위의 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권위가 테러방지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인권위의 업무이다. 「인권위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 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인권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후에도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는 않는 독립기구로서 소신대로 의견을 내고 권고하였다. 2003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정규직법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였다. 2005년에는 11월 쌀수입 협상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농민 2명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숨졌다. 12월 26일 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고, 경찰 수뇌부를 문책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바로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책임자를 가려내고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2008년에는 광우병 논란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에서 촉발된 청소년 집회가 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독립기구의 참뜻

이라크 파병 반대 의견표명을 포함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특하면 반기를 드는 독립기구의 존재가 대통령으로서의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늘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2003년 12월 10일에 열린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정부와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판단에 있어 서로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끝내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투표나 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두고 점차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인권위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부딪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당연한 현상이고, 그것이 서로 존중되고 수용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도 인권을 침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믿음과 기대를 심어주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 의견표명을 하는 인권위(2003. 10. 28)

사회로 확산하면서 검역주권 강화, 한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 정치적 쟁점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세 차례에 걸쳐 시민의 평화적 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금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시위 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으로 집회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이 130여 건 접수되었다. 당시 진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인권침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2008년 10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 “경찰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청장 경고 등을 권고하였다. 당시 인권위의 권고는 촛불집회에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결론이었고, 이후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보복성 조직 축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회자되었다.

인권사무소 개소 - 지역의 인권파수꾼

2005년 10월 1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에서 부산인권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인권위가 설립된 지 4년 만에 지역사무소¹가 생기면서 지역밀착형 인권보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 지역의 각종 인권 관련 상담과 진정접수 및 인권보장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 4명과 현직 공무원 2명 등 총 6명의 인원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구성원들은 개소식에 앞서 이미 한 달 전부터 출근하며 현황 파악, 상담접수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 개소식에는 조영황 위원장이 참석하여 “인권위와 지역의 확실한 연결고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위의 활동 범위가 한결 넓어진 만큼, 지역의 인권문제 상담과 진정접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교육·홍보 업무를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길이 한층 넓어졌다”라고 평가하였다.

인권사무소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인권사무소를 개소하기까지 무려 2년여의 시간이 걸린 데다 직원 규모도 문제였다. 단 6명의 직원으로는 진정접수 등 업무만을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관할구역 지역민의 인권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인권위는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려 하였으나, 정부부처 이견으로 정원이 축소되는 등 개소하기까지의 길은 험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권사무소의 출범은 지역 인권문화 활성화에 인권위가 앞장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함과 아울러, 지역 인권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인권위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인권위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한층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인권사무소가 개소하고 이튿날인 12일에는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6층에 광주인권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부산·광주 인권사무소는 개소 바로 다음 날부터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를 시작하였다. 지역주민의 높은 기대감과 접근성 향상에 힘입어 인권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수는 매년 늘어났다. 여기에 2006년 2월부터 1331 인권상담 전화가 개통되면서 상담과 진정 건수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개소 후에는 인권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 인권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정립 논의,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 대외기반 확대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 협력과 홍보사업 등 지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권위는 부산·광주 인권사무소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2007년 7월 대구인권사무소, 2014년 10월 대전인권사무소, 2017년 6월 강원인권사무소, 2019년 11월 제주출장소를 차례로 열었다. 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 접수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 접수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인권위의 조사 지원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별로 인권사무소가 개소하면서 조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이관되었다. 2006년 9월 교정시설, 2009년 4월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2014년 9월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사건, 2016년 3월에는 장애차별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급학교, 기타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관련 진정사건 이양 등으로 조사대상 업무 영역을 확대해 갔다. 2015년에는 각 사무소별로 지역 인권교육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 개소식(2005. 10. 11)



광주인권사무소 개소식(2005. 10. 12)



대구인권사무소 개소식(2007. 08. 31)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식(2014. 10. 15)

¹ 2005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지역사무소'가 공식 명칭이었고, 2009년 4월 6일에 시행된 조직 개편을 통해 '인권사무소'로 변경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인권사무소'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강원인권사무소 개소식(2017. 06. 14)



제주출장소 개소식(2019. 11. 01)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지역별로 인권상담네트워크 운영, 지역자치단체와의 MOU 체결, 시민참여형 홍보 활동 등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광주인권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인권체험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 권고 - 인권위의 숙명을 생각하다

2006년 인권위가 전국 법학 교수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위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주요 권고 중 가장 잘한 사례로 '사형제 폐지 권고(17.4%)'를 꼽았다.

사형제 폐지는 인권위가 출범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인권위에게 숙명과도 같은 과제 중 하나이다. 사형제는 사형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관을 비롯하여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여하는 모든 이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 집행한 뒤에는 원상회복도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이들과 달리 잘못된 재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될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으며,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0여 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인권위는 출범 직후인 2003년 인권현안 10대 과제 중 하나로 사형제 폐지를 선정하고 정부에 제출한 이래, 최근까지 일관되게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지난 20년간 인권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형제 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형제 폐지 권고 결정 전원위원회 (2005. 04. 06)



대한민국 사형제 폐지 기념행사(2007. 12. 24)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사형 관련 규정·범죄·판례 등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총 11명의 위원 중 8명이 사형폐지안에 손을 들면서(사형존치안 1명) 사형제 폐지 권고안이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임을 천명하였다.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사형제 폐지 권고도 해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극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여론은 더욱 힘을 얻었지만, 인권위는 오직 인권의 기준에서 꾸준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8년 9월 10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인권위는 2020년 12월 28일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관하여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2월 1일에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역대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앞두고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입장을 권고하고 그저 고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여

론에도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갔다. 2019년 5월 3일 인권위가 개최한 “사형제 및 대체형벌 청문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담은 헌법적 가치와 오판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형제를 폐지하고 중형 등 대체형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사형제 존속을 주장하는 측은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흉악범죄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범죄피해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였다.

인권위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 사형제 폐지 의견은 20.3%에 불과했지만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형벌이 도입된다면 사형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대체형벌 마련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사형제 폐지와 같이 국민 다수가 호응하고 공감하지는 않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에 대하여 인권위는 소신 있게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가보안법 또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TFT 구성, 청문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알리고 폐지 권고 및 의견표명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지난 20년간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형제 및 대체형벌 청문회 (2019. 05. 03)

인권교육

-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정

인권교육은 인권위의 4대 기능 중 하나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인권교육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국가 인권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이를 수행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이 그 핵심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위법」 제19조와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능이다. 그러나 이는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일 뿐,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확산으로 나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을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주체, 대상 및 실행 체계 등을 포함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을 추진한 이유이다.

인권위는 2004년부터 인권교육 법제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면서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2004년 7월 외부 전문가 자문, 2005년 3월과 2006년 인권교육 법제화 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2006년 4월에는 인권교육가, 법률가 등 11명으로 '인권교육 법제화 TFT'를 구성·운영하여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용역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인권교육법」 초안은 2007년 3월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4월 4일 공청회를 거쳐 4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05. 09)한 뒤 다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 주체, 인권교육위원회 및 인권교육원 등 기구 신설과 관련,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법무부 등 정부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한 협의와 설득작업에 나서야 했다. 그 결과 인권위 소관 법률로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이 법제심사(10. 24), 차관회의(10. 25), 국무회의(10. 30)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이 법안을 11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인권교육법」은 끝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어 버린 것이다. 「인권교육법」은 이후에도 18대(2011. 03. 31,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19대(2014. 10. 10,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20대 국회(2018. 08. 24,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에서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19대·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종교단체가 법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한 대구 토론회(2005. 05. 10)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체계성 확보를 위한 인권교육센터 개소식(2009. 04. 02)

있지 않은데도 '인권교육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격렬한 입법반대 활동을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발의를 철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1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인권교육법」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인권위와 법무부가 2021년 8월 5일 공동으로 입법예고한 「인권교육기본법」에 인권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그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인권위는 입법을 통한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2017년부터 인권위 사무처 직제에 인권교육원을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여 인적 토대를 구축한 뒤 물적 토대를 확대해 가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에서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부지와 건물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 인권위는 인권교육원 설립 전까지의 대안으로 2008년부터 청사 내 강당을 인권교육센터로 시범운영하였고, 2009년 충북 충주 소재 건설경영연수원 일부를 임차하여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체계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 청사에도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였고, 2015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개 지역 인권사무소에 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 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구성과 내용

인권위가 제정을 추진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목적 및 정의 조항으로 제1조(목적), 제2조(인권교육 정의),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② 권리·의무 조항으로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시행 조항으로 제6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제7조(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2조 및 제3조 : 법 시행과정에서 개념 혼란을 방지하고자 유엔이 제시한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가치 기준 및 지향점을 명시하여 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을 제시 △안 제4조 : 인권교육을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규정 △안 제5조 : 국가와 지자체에 인권교육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인권교육 자원 활용에 대한 책무 부여 △안 제6조 : 국가, 지자체, 초·중·고등학교, 구급·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직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평생교육시설·사업장 등에 인권교육의 홍보와 시행을 권장하도록 규정 △안 제7조 :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과정 개발 워크숍(2003. 10. 21)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2009. 11. 08)

로그래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인권교육센터만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고, 안정적인 교육 공간의 확보가 절실해졌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제주, 광주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2019년에는 국고로 귀속될 예정인 장애인 시설(전북 전주시 소재 자립원)이나 용도폐기된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로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끝에 경기 용인 소재의 용도폐기 국유재산인 관세청 통관물류센터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설계비 예산 2억 2,600만 원까지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공간이다. 특히 인권위가 보유한 인권 전문성과 현장성을 교육과정에 녹여냄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인권문화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인권교육원은 2021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21년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 입법을 통한 인권제도 개선

“오늘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2008년 4월 11일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인권·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더는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차법」 시행에 큰 기대를 표했다.

「장차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아닌 교육권, 방송접근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참정권, 모·부성권, 문화향유권 등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인권법이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가



장차법 시행 기념행사(2008. 04. 11)

장차법 서울 설명회(2008. 04. 04)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하는 이른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차법」은 2007년 4월 10일 제정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4월 11일부로 발효되었다.

「장차법」이 태어나기까지는 참으로 길고 고단한 여정이 요구되었다. 2001년에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입법운동이 시작된 이래, 무려 7년여의 세월을 거쳐 비로소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장애 관련 최초의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차법」에는 400만 장애인의 피눈물과 실질적인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분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장차법」 제정 활동은 2000년 영국에 연수를 다녀온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외국의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4월 15일 장애인 단체를 주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결성되었고,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조직은 전국 297개 단체로 확대되어 157일간의 노숙농성, 장애인 활동가 13명의 식발식 등을 이어갔다.

인권위도 힘을 보탰다.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는 「장차법」 제정을 위한 공개공청회(2004년), 외국 입법 사례 포럼(2006년) 등을 진행하며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2007년에는 국회에 계류 중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안과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표명을 하였다. 「장차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인권위는 차별 판단의 일관성 유지,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 대응, 신속한 구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 해 인권위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도 권고하였다.

「인권위법」에 따라 장애인차별 관련 권리구제와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던 인권위는 2008년 「장차법」

제1기 장차법 모니터링단 발대식 (2010. 06. 04)



시행과 함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역할을 확대하였다.

「장차법」 시행을 계기로 인권위에 접수되는 장애인 관련 진정 건수도 대폭 늘었다. 「장차법」 시행 원년인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696건을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무려 745건이 접수되었다.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 25일부터 「장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4월 10일까지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이 총 630건인 것과 비교하면 「장차법」 시행이 불러온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인권위는 장애차별 시정을 위한 의미 있는 권고를 꾸준히 내놓았다. 굳이 권고까지 가지 않고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로또 복권방’을 운영하려는 뇌병변 장애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장차법」의 내용과 권리구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계약 성사를 이끌어낸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애인단체와 인권위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힘으로 입법에 성공한 「장차법」은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 제정 추진에도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조직 축소

- 인권위에 달친 시련, 그리고 미완의 조직 회복

2008년 1월 16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바로 다음 날(1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속기구 전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뒤를 이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 제니퍼 린치 ICC 의장, 비딧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사회와 당시 여당은 물론 국제기구까지 나서는 등 나라 안팎에서 반대가 끊이지 않자, 2008년 2월 8일 여야 협상을 통해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존치하는 데 합의하면서 조유의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때의 논쟁은 독립성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인권위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인수위를 거쳐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출범한 후, 이번에는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확정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기구 설치(20명 증원) 등을 일방적으로 백지화(4월)하였고,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통해 인권위가 4개 과 및 1개 국 이상 과다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10월)하자,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권위에 대한 조직진단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법률로 보장된 독립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4국 1관 19과 3소속기관의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무시하고, 인권사무소 폐지 및 대대적인 조직통폐합을 통한 대규모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1월 5일 2차 검토안(1차 검토안 대비 조사·구제 인력 20~30명 증원)을 제시한 데 이어, 22일 3차 검토안을 제시하며 조직 축소 강행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0일에는 인권위에 조직개편 관련 최후통첩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조직 축소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진정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여 오히려 인력 부족을 지적해야 할 상황인 데다, 당시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 감축은 채 2%도 안 되는데 유독 인권위만 20%를 감축하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조치였다. 대외적으로는 운영상의 방만함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과정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경찰청장 경고 등을 권고한 데 대한 보복성 표적 감축이라



인권위 건물에 걸린 조직 축소 반대 현수막(2009. 04. 03)

는 해석도 있었다.

3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최후통첩이 전해지자 인권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안경환 위원장은 예정된 제네바 출장을 취소하고 전원위원회를 긴급소집했다. 또한 조직개편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31일 국무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전원위원회 석상에서 인권위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축소 방침은 절차와 방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발표문에서 인권위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축소 조치는 독립기구인 인권위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유엔의 「파리원칙」과 「인권위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방적인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 인권위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인권위는 행안부의 일방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제령 개정 절차는 유보되어야 한다.
-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긴급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위원들의 이 같은 공동행동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개인의 이념적 지향을 떠나서, 인권위의 독립성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한목소리로 입증한 것이었다.

인권위 외부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조직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평소 인권위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이른바 협력적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인권단체들은 3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항의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등 인권위 지침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장차법」이 인권위의 인력 축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장애인단체의 우려가 컸다.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인권사무소 폐쇄 소식에 크게 반발하며 상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법학 교수 250여 명과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인권위 축소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과 인권위 조직 축소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제사회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3월 24일 제니퍼 린치 ICC 의장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강행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 인권위를 모범 기구로 평가했던 아시아 인권단체들도 한국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는 서한을 ICC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나라 안팎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무처 정원 44명(21.2%) 감축을 포함, 인권위 조직을 '5본부(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인권교육·행정지원)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기획조정관) 2국(정책교육국·조사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를 하는 직제령을 의결하였다. 인권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인권위는 당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및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어 4월 6일 직제령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인권위는 당일 아침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채택하고, 오전 10시에 안경환 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중략)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중략) 직제령 개정에 따른 일련의 후속 조치를 인권위답게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 수행의 집중도와 효율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직제령의 시행은 우리 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안겨줄 것이나, 우리는 그 아픔을 달래면서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은 직제령을 하루속히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동시에 직제령의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정원 감축 조치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면직되었고, 이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다.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사례로 남았다. 당시 인권위를 떠나야 했던 간부와 직원 중 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경찰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사회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 관리한 문건 또는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지기도 했다.

정부의 일방적 조직 축소는 인권위 전체의 분위기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특히 국·과 단위 조직이 50% 가까이 축소되었기에 업무 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09년 7월, 안경환 위원장은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며 사퇴하였다.

당시 정부에 의해 축소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는 지난한 세월이 필요했다. 그해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직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은 2010년 10월 28일 각하 결정되었다. 헌법

기구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한계가 뼈아팠다. 인권위는 축소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인권위 조직 축소 직전인 2008년 4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장애인차별 시정 관련인력 증원 20명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인권위 조직 축소 과정에서 백지화되었고, 이에 이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10년에는 집단진정 800여 건이 접수됨에 따라 장애인차별 사건이 전체 차별 진정의 약 48.5%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진행하여 2011년 10월 10일 장애인차별조사2과를 신설하고 조사인력을 증원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조직 축소 및 통폐합으로 인해 지나치게 넓어진 통솔 범위를 해소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제협력팀·인권교육운영팀·아동청소년인권팀 등 3개 부서를 직제상 팀으로 도입하였다. 국제인권팀은 조직 축소로 폐지되었으나 늘어나는 국제협력 수요 및 준국제기구로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단위로 복원한 것이다. 인권교육의 경우, 조직 축소 이전 1본부 3팀이던 것이 1개 과로 축소되었으나, 인권교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권교육과를 인권교육기획과와 인권교육운영팀으로 분리하여 기획 및 운영 기능을 각각 강화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책·조사기능을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하였다. 위 3개 팀은 2017년 2월 28일 과로 승격되었다. 이때 강원인권사무소도 신설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축소된 인권위 조직과 인력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조직·정원 회복'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24일 사무처에 차별시정국·사회인권과·군인권조사과·성차별시정팀이 신설되었고, 이후에도 제주출장소(2019)-기획조사팀(2020)-교육협력심의관·인권교육운영과·정보화관리팀(2021)을 차례로 신설하여 2021년 현재 정원 234명에 2관 3국 17과 3팀 5소속기관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조직축소 이전과 비교하면 과 단위 4개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새로운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권연구, 이주인권, 인권교육, 인권도서관 등 관련 조직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력은 2021년 기준 234명으로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사이 증가한 업무량을 감안하면 이 역시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지만, 인권위 조직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다.



직제 개정령 발효 즈음에 국민들께 드리는 글 기자회견(2009. 04. 06)

ICC 승인심사 보류 -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A등급으로

“한국 인권위의 인원 및 사업을 상당히 감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9년 3월 24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문제가 공식 제기되었다. 한국과 멕시코, 호주, 인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알렉시 아사타슈빌리 멕시코 국가인권위 대표는 이같이 발언하였다.

이에 앞서 3월 23일에는 제니퍼 린치 ICC 의장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인권위 조직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였다. 린치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인권위가 2010년부터 3년간 ICC 의장기구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지명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미 2008년 1월 18일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한국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결정은 등급 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처럼 ICC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 정부의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조직축소 시도가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실추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잇따라 내놓자, 국내에서도 인권위의 국내외 위

ICC 콘퍼런스(2012. 11. 04)



상 추락이 자칫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졌다.

ICC(현 GANHRI)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관의 활동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A~C까지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ICC 가입과 함께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11월에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2021년 8월 기준, GANHRI 회원 국가인권기구 128개 중 67.2%인 86개 기구가 A등급, 25.0%인 32개 기구가 B등급, 7.8%인 10개 기구가 C등급이다. B등급 이하로 강등되면 GANHRI 내에서 의사결정권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모든 의제에 대해 발언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독립성이나 실효성을 침해한 자국 정부의 형편없는 조치 때문에 매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2개 국가인권기구는 A급에서 B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수모를 겪곤 한다. 그러나 한국 인권위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독립성과 실효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항상 A등급을 유지해 온 터였다.

그러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직후인 8월 1일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한국의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ICC에 B등급으로의 하향 조정을 요청하였고,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민간감시단(Asian NGOs Network on NHRIs, ANNI)도 한국 인권위에 대한 조사와 등급 재검토를 ICC에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2011년 6월 ICC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인권위의 등급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ICC가 2014년 3월과 10월에 이어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나 연속하여 한국 인권위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이다. ICC는 통보문에서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위원회 직원 구성 면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 인권위원회와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ICC의 통보문 외에도 인권위의 조직 축소 이후 제기된 일련의 독립성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었다.

2004년 ICC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온 데다 2007년에는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등급보류 판정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ICC의 등급보류 통보는 국가적 망신이라며 인권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인권위의 위상이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ICC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4년에는 인권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6년 1월에는 국회에서 「인권위법」을 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결국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개정법에는 “인권위원 선출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추천·의견 수렴을 거치고, 인권위원 성비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등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5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2016년 3월 ICC에서 명칭 변경, 이하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에 A등급 유지를 통보하였다. 인권위는 2021년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인권

-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는 인권위

인권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 이슈가 등장하고, 그 이슈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끝에 사회적 합의와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우리 현대사에도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인권문제가 있는가 하면,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제기된 인권문제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영역이 '정보인권'이다.

인권위는 일찍이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NEIS가 대표적이다. 이후 전자기기에 의한 감시나 감청, 피해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유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자, 인권위는 2008년 주요 업무계획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인권 보호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CCTV 운영관리 개선 권고 외에도 공항에 전신 검색장치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정보통신 심의제도가 사실상 검열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표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2009년부터 시작된 3개년 중기계획인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한 성과목표의 하나로 정보인권 증진을 제시하였다. 이후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정보인권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정보인권 전반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를 통해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발판으로 2011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이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보인권국가보고서> 작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고, 2012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 이하 아셈) 정보인권 세미나를 한국에 유치하는 등 정보인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였다.

2013년에는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보인권 관련 국제 동향 및 기준을 소개하고, 정보인권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정보기술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보인권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인권경영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무한경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 관련 토론회 (2009. 09. 03)



기업과 인권 토론회(2011. 07. 20)

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대책을 세웠다. 유엔은 2008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한 데 이어, 2011년에는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서를 결의함으로써 프레임워크의 전 세계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국내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인권위는 2007년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고용 등의 차별에 관한 조사활동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권경영 문화 확산에 나섰다. 2008년부터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 지원, 다양한 토론회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기업과 인권 관련 정책활동을 본격화하였다. 2011년 10월 11일에는 3일간 APF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성명서'(서울선언)를 채택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후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에서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을 기획사업으로 정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경영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2013년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인권경영 개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고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기업과 인권 의제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자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기업 스스로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 2013년 12월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보급하였다. 인권위는 특히 인권경영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인권도 인권위에 부여된 과제이다. 2000년대 이후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2003년 4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의 북한인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고(2003) 북한인권 관련 연구·조사 및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2007년에는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을 설정하였다. 2010년부터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북한인권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식(2019. 02. 25)



스포츠인권명예대사 류현진 선수 인권위 방문(2020. 11. 03)

한편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스포츠인권’을 주요 인권이슈로 부각시켰다. 2007년 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다룬 KBS <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 보고서> 프로그램이 2008년 1월 방송되면서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인권위는 2008년 대한체육회에 협조를 구해 전국을 순회하며 학생운동선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중·고교 학생 운동선수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보고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2009년에는 스포츠인권 정책포럼 구성,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2019년 1월 다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빙상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형식적 개선이나 미봉책이 아닌, 한층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2019년 2월 인권위는 임시기구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운동부 합숙소 실태조사를 비롯,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실태 파악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는 등 스포츠인권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향후 새로운 인권영역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집단적인 생명·안전의 위협과 사회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팬데믹의 장기화는 우리 일상에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도 새로운 인권이슈를 대두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새로운 인권영역을 발견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갈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직원 징계 - 무겁게 가라앉은 인권위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안경환 위원장 후임으로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한양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으나,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정 직후부터 인권단체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현 위원장은 6년간의 재임 기간 중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11월에는 현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하였고, 이어서 조국 비상임위원과 60여 명의 인권위 위촉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였다.

현 위원장 체제 당시 추락한 국제적 위상도 논란을 부채질하였다. 한국이 유력했던 ICC 차기의장 후보를 스스로 포기한 일과,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인해 ICC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협력적 긴장관계

인권위는 많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립되었고, 출범 직후부터 여타 국가기관과 달리 시민사회와 폭넓은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국제인권메커니즘도 모든 정부기구의 회의에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되었다.

2002년 4월 18일 인권위가 새 청사로 이전한 후 공식적인 집들이의 첫 손님으로 인권시민단체를 초대하였다. 인권위의 진로를 놓고 236개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한 설립 초기부터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들었으며, 각 부문 인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권보호가 필요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시민단체도 인권위 설립, 위원장·인권위원 임명,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조직축소 반대, 내부혁신과 현안대응 촉구 등 지난 20년간 인권위의 주요 고비마다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위원장(위원) 내정 철회요구 등 수시 성명 발표, 전문위원 사퇴 등 협력 전면거부, GANHRI에 등급하락 요청 등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시민단체와의 올바른 관계설정에는 오랜 고민 끝에, 인권위는 스스로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열망을 담아야 하는 GO(Governmental Organization)’로 규정한다.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중요한 기반이자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그려갈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엄연한 국가기관이고, 인권위의 독립성은 입법·사법·행정의 3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4부’인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기꺼이 협력하되 서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견제하는 협력적 긴장관계가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상호발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은 조직 내부에서도 일어났다. 2011년 인권위 노조 간부를 지낸 계약직 조사관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에 항의하여 1인 시위를 한 직원 11명에게 징계(4명 정직, 7명 감봉)가 내려졌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청와대와 경찰청이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2012년 드러나기도 하였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출신,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인권위원과 직원, 용산 참사 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민감한 사안의 조사 및 권고에 참여한 직원들이 그 대상이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형벌상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8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경찰청 블랙리스트’ 문건에 “인권위 인적쇄신 필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조직개편 추진하면서 별정·계약직 인원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보장기구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징계된 직원 11명은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2017년 최종 승소하면서 징계는 원천무효가 되었다.

인권위 청사 - 청사도 인권위다워야 한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청사의 위치와 공간 구성도 인권위다워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인권위가 2002년 처음 청사를 마련하고 각 층의 용도를 구상할 때 최우선 순위로 생각한 것이 바로 ‘진정인편의’였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여 인권위를 방문하려 할 때,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도서산간 주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시청이라는 랜드마크와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실제로 출범 초기에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인권위를 방문해 진정을 접수한 사례가 15% 이상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과 사무처준비단이 사용한 첫 청사는 서울 종로구의 ‘이마빌딩’(2001. 08~2002. 03)이었다. 이마빌딩 입구에는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휠체어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새로 만들었다. 층별 구성에서도 진정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부서인 인권상담센터, 인권자료실, 조사국 등을 아래층에 두었다.



금세기빌딩 앞에서 진행된 인권위 현판식(2002. 04. 19)

2002년 4월 사무처가 발족한 뒤로 2015년 9월까지, 13년 5개월에 걸쳐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 위치한 금세기빌딩(7~13층)을 사용했다. 금세기빌딩은 주변에 청와대, 서울지방경찰청 등 상당수의 진정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있고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등 각계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공간과 인접하여 각종 인권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위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교류차 한국을 방문한 해외인사들에게도 금세기빌딩 주변은 한국의 인권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인권교육의 장이었다. 또한 광화문광장이나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있을 때는 인권위 건물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어 홍보효과도 덩어로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지역 인권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등에 문을 연 인권사무소 모두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였다.

시민의 접근성을 중시하다 보니 인권위 청사에서는 돌발 사태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는 업무 수칙 때문에 청원경찰과 경비직원들이 종종 애를 먹기도 하였다.

명동성당 인근에 위치한 현 청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 인권위가 새롭게 등지를 튼 것은 2015년 9월이었다. 미래 청사 확보의 안정성, 예산 절감 등이 청사 이전의 이유였다.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과 인접해 있던 금세기빌딩의 경우, 접근성과 상징성은 뛰어난 반면 임차료와 관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2014년 기준 임차료는 43억 원으로, 이는 연간 기본경비(사업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60%에 달해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전 당시 금세기빌딩의 상징성과 접근성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나라키움 저동빌딩이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명동성당 인근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유희청사 발생에 따른 국가기관 재배치 움직임, 이를 계기로 한 미래 청사 확보 가능성(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2038년 국고 귀속 예정), 예산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금의 청사로 이전한 것이다.

현재 청사에서 인권위는 10층에서 15층까지 6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 당시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사무공간 배치 시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장애인 이동 편의는 물론이고 민원인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도서관, 상담센터, 배움터 등을 설치하였다.



중구 저동의 나라키움 저동빌딩 외관(2015. 10. 04)



나라키움 저동빌딩 인권위 현판식(2015. 10. 12)

인권위 위상 강화조치 -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역동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촛불혁명에서 시민들이 열망한 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었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사람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5일, 인권위 위상을 제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 대통령은 일찍이 후보 시절에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하며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기조와 결별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동시에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형식화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던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도 지시하였다. 정기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침해의 감시자이자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지시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09년 조직 축소 이전으로 조직·정원 회복’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잘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하였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각 기관장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운영이 기본적으로 인권위가 추구하는 정신에 기



대통령에게 특별보고하는 인권위원장 (2019. 04. 04)

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하면 국민의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기 초에 확실히 심어주고자 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인권위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17년 5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등 10대 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중 많은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

12월 7일에는 5년 9개월 만에 대통령 특별보고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원장 특별보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만들어진 첫 번째 자리였다. 이성호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기본권을 대폭 강화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담보할 법률 체계의 완비를 통한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던 인권위 내부에서도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혁신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인권위 업무혁신 TFT'를 3주간 운영한 후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2017년 10월 30일에는 과거 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자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혁신위원회는 2018년 1월 15일 조직혁신 방안, 독립성 보장 방안, 투명성 제고 방안 등 권고안 3건을 마련해 인권위에 전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독립성(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 축소 및 폐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인권위 조직·예산 관련 독립성 보장 등) △투명성(소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 공개 확대, 전위원회·상임위원회 위원 회의록(실명 녹취록) 작성·공개, 회의 녹화영상 공개, 공익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생중계 검토 등)

△조직혁신(신규 직원 채용 시 인권활동 경력자·전문가 채용 확대, 국·과장 직위에 경력개방형 직위 확대, 과장 직위 내부 공모제 및 부서원 모집제 실시, 개인성과평가 중심의 평가제도 혁신 등)을 제시하였다.

새 정부 출범 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한 2017년에 진정사건 접수가 1만 2,33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인권교육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정부부처 비율도 크게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6월과 10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노동자의 정보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등을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도 각각 8월과 7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병사의 장애등급을 다시 판정하라는 권고와 선박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17년 인권정책에 대한 권고 수용률은 100%로 인권위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새 정부에 바라는 10대 인권과제 기자회견(2017. 04. 27)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어젠다 선도

2018년 6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인권위가 설립한 세계 최초 노인인권 전담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이하 AGAC) 개소식이 열렸다. AGAC는 아셈 회원국의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이다.

인권위는 2014년 10월, 제10차 아셈에서 우리 정부가 AGAC 서울 유치를 제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인권위는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국내 노인복지 문제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고령화 관련 현안과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후 인권위는 제1차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를 개최(2015. 09)하고, 아셈노인인권전문가포럼에서 노인인권센터 설립 필요성 등을 제안(2016. 06)하였다. 그 결과, 2016년 7월 열린 제11차 아셈 정상회의



아셈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2015. 10. 26~28)

에서 AGAC를 서울에 설립한다는 승인이 이루어졌고, 이후 인권위 주도로 AGAC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개소식에서 이성호 위원장은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인권문제는 그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 2015년 아셈 노인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유럽과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센터 개소의 배경이 되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센터의 노인 인권정책 연구나 교류협력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권위도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GAC는 △노인인권 정책연구 및 지표개발 △노인인권 현황 모니터링 △국내외 노인인권 허브로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인 인식개선과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인권 정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인권위 또한 국내 법령·정책·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협력체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노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양성평등을 기초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인권위 또한 국내 법령·정책·관행·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직 수행,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협력체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식(2018. 06. 26)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셈은 아시아 및 유럽 정상,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국제협의체로, 1996년 출범하여 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가며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셈에 관한 논의는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아시아-유럽 양 지역 국가들이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은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1996년 초기 아셈은 EU 15개 회원국과 ASEAN 7개 회원국, 중국, 일본, 한국, 유럽위원회(EC)로 구성되었다. 제1차 회의는 1996년 3월 1~2일에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참가국은 ASEAN 회원국 및 한국·중국·일본 등 10개국과 EU 15개국의 정상, EU 집행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방향 설정을 비롯한 포괄적인 문제를 논의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98년 4월 3~4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회의는 2000년 10월 20~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 베트남 하노이 회의부터는 EU 10개국, ASEAN 3개국이 더 참가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국이 늘어, 현재는 아셈 51개 회원국에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셈의 주요 의제는 자유무역 촉진, 아시아-유럽 간 무역과 투자 확대, 유엔의 개혁 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이다.

혐오차별 대응 - 지금 바로잡아야 할 때

2018년 9월 5일 최영애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혐오문제 해결을 꼽았다. 최 위원장이 취임 직후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혐오는 차별적 구조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문제이므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조직 내부에서는 굳이 기획단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는 반대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기획단 구성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앞서 인권위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의 특별사업으로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결정한 터였다. 최 위원장 취임 후 2019년 1월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신설하는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 종교계·학계·법조계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25명을 위촉,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 2019년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혐오차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기로 하고,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3월)와 '혐오표현 사용경험 조사'(4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청소년 인식조사'(5월)를 연속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성인 응답자의 64.2%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으며, 혐오표현 경험자의 과반수가 위축감(50.5%)이나 공포심(53.1%)을 느끼고 87.3%가 문제 있는 표현으로 생각하였으나, 대부분 무시(79.9%)하거나 피하는(73.4%)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청소년의 경우 응답자의 68.3%가 혐오표현을 경험하였고, 82.9%가 향후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22.3%에 달하였다.

인권위는 '혐오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혐오표현 사용경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공론화 및 인식개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견인 △자율대응 규범 마련 및 이행 확산 등 3대 핵심 전략을 수립, 추진하였다. 먼저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마주 캠페인'을 비롯하여 토론회 및 지역간담회 개최,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공론화를 꾀하였다. 아울러 언론·교육



혐오대응 교육감 공동선언(2019. 11. 15)



혐오차별 대응 캠페인(2019. 06. 04)

등 주요 영역에서 실천선언과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초를 닦고,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등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의 관계,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19년 10월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개념 혼동으로 인한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5개월간의 작업 끝에 혐오표현의 기본 개념과 인식의 틀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인권위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차별의 관점에서 혐오와 혐오표현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혐오현상의 등장,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혐오표현의 해악과 그 대응방법 및 고려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획단을 구성한 이듬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이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혐오표현 대응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확산 △공론화 및 사회 분위기 조성 △공공영역 대응 강화 등 3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확산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위원장 성명, 코로나19와 혐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국가기관 최초로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혐오차별 실태조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혐오표현 발화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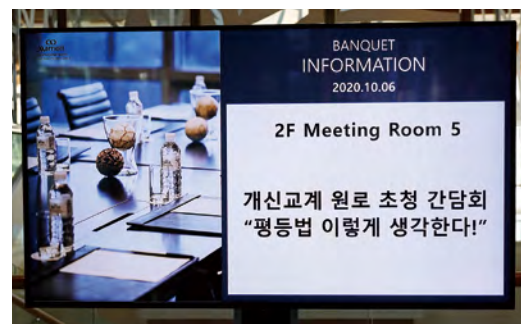
2020년은 교육 영역과 언론·미디어 영역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적 대응을 선언하고,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한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은 온라인, 스포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여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고,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공감대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정부 홈페이지, 유튜브,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개선을 촉구하였다.

● 평등법 제정 운동 - 모두를 위한 평등

인권위가 2020년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72.4%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응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73.6%가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등한 존중과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국민인식을 반영하여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논의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평등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의 일이었다.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법률 명칭도 기존의 '차별금지' 대신 '평등'을 앞세웠다.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평등을 앞에 두는 것이 국민에게 이 법안의 목적을 더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평등법」 시안의 주요 내용은 △차별의 개념과 범위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시정 책무 규정 △규율되는 차별유형 구체화 △차별 구제수단 다양화와 구제 실효성 제고 등이다.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등 5개 개념으로 정의하고, 39개 조로 구성하였다. 차별 사유도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21개로 명시하였다. 특히 악의적 차별행위가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중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평등법 관련 개신교계 원로 초청간담회(2020. 1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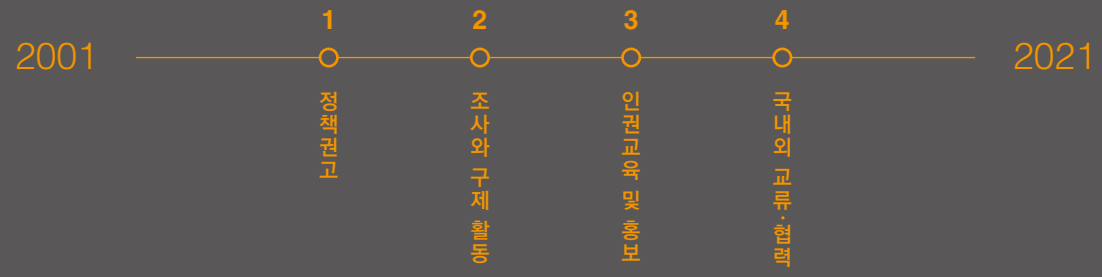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2020. 06. 30)

로 하였다. 차별행위를 입증할 책임도 차별을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

의견표명 이후 인권위는 그간 「평등법」을 반대해 온 종교계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회적 공감대와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설명회, 분야별 간담회, 각계 분야와의 토론회,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국제 콘퍼런스 및 주한대사 간담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펼쳤다.

2021년 6월 21일에는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하였다.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평등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기에 제21대 국회가 우선해서 답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끈질기게 권고하자, 21대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3

주요 활동 변천사



20th ANNIVERSAR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제1장 정책권고

... 인권정책 개선 권고의 지속적인 증가 ...

국내 인권정책 개선에 선도적 역할


1,042건



20년간 인권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제출 건수

국제인권 리딩 국가로의 도약


29건



20년간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건수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인권 보호·향상에 기여


3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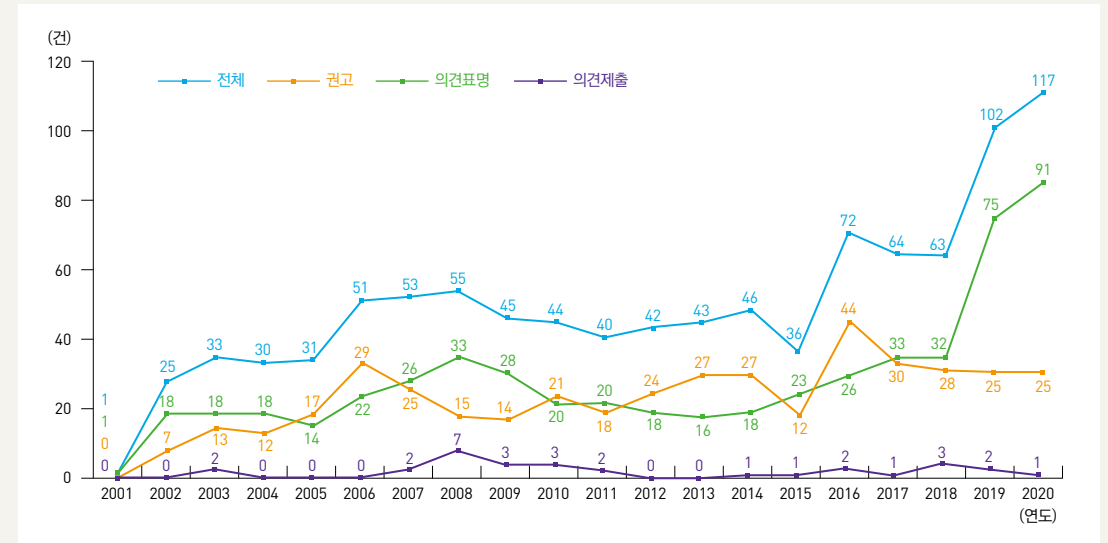
20년간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수

공공기관 인권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인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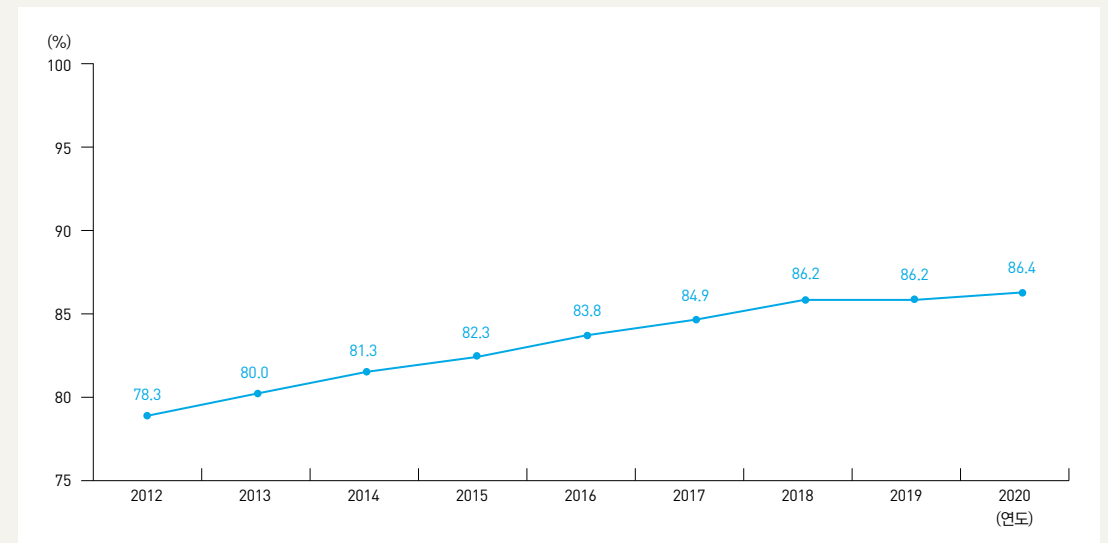


20년간 인권위의 정책권고에 대한 누적 권고수용률



[그림 3-1-1]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 추이

... 매년 80% 이상의 수용률 유지 ...



[그림 3-1-2] 연도별 누적 인권정책 권고 수용률 추이

영역별 주요 성과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 사형제도 폐지의 건표명(2005) 등 보편적 인권으로서 기본권 보장 촉구
-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표명(2003),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 등 안보·국익 우선주의에 가려진 인권문제 재부각
-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관련 의견표명(2019), 경찰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의견표명(2020) 등 경·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적 제도 개선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으로 노동취약계층 인권보호

-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권고(2007),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법령 및 정책 권고(2010), 정부 비 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 선도
- 사내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권고(2015),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9)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대책 제시
-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정책권고·의견표명(20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2017) 등 노동3권 강화 보장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2014),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2018) 등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

다양한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및 권고로 새로운 인권과제 발굴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권고(200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등 장애차별 제도 개선(119건)
-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노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 권고(2013),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2019) 등 아동·노인·여성 차별에 대한 국가책임 강조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2002), 난민 인권보호 위한 정책개선 권고(2006) 등 이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대응(56건)
-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권고(2007), 푸제온 관련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의견표명(2009),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2020)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건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권고(2003),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2005),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2014)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행 개선(16건)
-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표명(2005),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련 법률정비 권고(2014),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개선권고(2018년) 등 사생활 보호·정보인권의 적용범위 확대
- 일명 '미네르바 사건' 계기로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표현 유포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의견제출(2009) 통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 침해 경고
-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2020) 등 4차산업 시대의 신기술로 인한 인권침해·차별에 선제적 대응

불합리한 차별관행 및 제도 개선으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에 기여

- 차별금지법 제정권고(2006),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 등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무원 정년차별 관련 권고(2005), 채용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표명(2013)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2012),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20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상훈 추천배제 관련 제도개선(2020)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문제 이슈화
-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2019)으로 혐오표현 예방의 필요성 강조

정부·지자체 인권제도 정비로 대한민국 인권정책의 청사진 제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관련 권고(2012·2014·2017)로 정부의 인권정책 로드맵 수립
-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조사 및 의견표명(2017)을 통해 지방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제시

-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2006),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2011) 등 북한인권 관련 중·장기 국가정책 제시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개선 의견표명(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권고(2013)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총론

1. 개관

• 정책권고의 주요 변화 추이

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서 정책, 조사·구제,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인권과 관련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의 하나가 인권 관련 정책개선 업무이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을 조사·연구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서도 권고와 의견표명을 한다.

이러한 법제·정책 개선에 대한 인권위의 권한은 개별적인 진정사건으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국가기관의 정책 추진이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수많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시정되었다. 2013년부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매년 80% 이상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한다.

• 인권정책 권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영역 확대

지난 20년간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이슈에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위는 정책권고의 영역도 확대해 왔다.

출범 초기 인권위의 정책권고 영역은 주로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이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해묵은 이슈나, 양심적 병역거부, 이라크전 파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과 법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가 전반의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인권 관련 제도 정비 또한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가 관심을 가진 영역이었다.

더불어 강력한 국가권력에 가려져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던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인권위 설립으로 탄력을 받았다. 이후에는 양극화,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도 확대되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이주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교정시설 수감자 등으로 취약계층의 외연을 넓히고 인권정책 개선

영역도 함께 확대해 갔다.

노동인권, 정보인권, 인권경영은 인권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념화된 대표적인 영역들이다.

인권위는 노동시장이 변화되면서 사내하청 근로자, 여성 감정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근로형태가 출현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인권 문제에 대응하였다. 더불어 국가에만 부여되던 인권 존중 책임이 기업으로 확장되고, 2012년부터 공공기관이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권위는 인권정책 권고 영역을 정부기관을 넘어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정책권고를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인권정책 권고 영역의 확대는 지난 20년간 진행한 243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20년간 1,042건 인권정책 권고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총 1,042건(권고 425건, 의견표명 587건, 의견제출 30건)의 인권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정책 개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권고와 의견표명·의견제출을 하였다. 이러한 인권위의 노력은 국가기관의 인권 개선과 법적·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다.

인권위의 인권정책 권고 등도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2002년 25건에서 2006년에는 51건(권고 29건, 의견표명 22건)으로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17건(권고 25건, 의견표명 91건, 의견제출 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인권위가 다양한 분야의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속해서 정책 개선 영역을 넓혀갔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지난 20년간 인권위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은 법원 13건, 헌법재판소 17건으로 총 30건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2003년이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호주제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 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혈통 계승을 강제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은 2008년 처음 이루어졌으며, 이 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총 5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난 20년간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 협약, 아동권리 협약 등이 포함된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총 29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였다.

• 2013년부터 매년 권고수용률 80% 이상 유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 출범 초기에는 66.7%(2004년), 61.9%(2010년)로 권고수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인권 제도 개선에 대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 높아지면서 2013년부터는 매년 권고수용률(권고수용률은 권고 의결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이 80% 이상을 유지하였다.

2. 정책권고 활동의 성과

인권위가 지난 20년간 권고한 인권정책 영역은 크게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혐오와 차별개선, △인권 관련 제도 정비, △북한인권 증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의 개선과 시정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권고와 의견표명 등을 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정보인권·노동인권·북한인권 등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권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인권 영역을 개척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영역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영역에서는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사회보호법」 등 인권침해를 이 유로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폐지나 대체입법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으로서 기본권 보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악명을 떨쳤던 「사회보호법」이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폐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이라크 전쟁 파병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관한 논의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국가적 차원의 인권 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인권위의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2003. 03. 10),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2006. 05. 08) 등은 국민이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사회에 재각인 시킨 사례들이다. 특히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를 계기로, 2004년 1월 29일에는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영역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영역에서 인권위는 노동취약계층의 인권보호 개선에 주력하였다. 인권위는 청소노동자, 대학강사, 감정노동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노동자,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초단기간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권고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10년 인권위가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10. 02. 04)는 일하는 청소년을 처음으로 노동시장의 구성원으로 인식시키는 출발점이 된 것은 물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

또한 노동인권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 이후 일부는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노동환경의 변화를 이루었다.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10. 09. 30),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8. 07. 1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20. 05. 21)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경영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고, 인권NAP 권고를 통해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인권NAP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별도의 정책과제(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국내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하였다.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영역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영역에서 인권위는 오랜 기간 인권을 유린당하고 차별과 사회 냉대 속에서 움츠려 있던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사회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장애인(119건), 아동(118건)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 영역에서는 이동권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다양한 권고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장차법」 법제화에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장차법」 제정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정신장애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경우도 인권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 영역이다.

•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영역

인권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를 사회적으로 개념화하였다. 특히 NEIS에 관한 권고는 우리 사회에 자기정보 통제권의 중요성과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인권 영역을 확장시킨 첫 사례였다. 당시 인권위의 권고는 이전까지 생소하던 정보인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 전반에 던졌고,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정보화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왔던 정책입안자들에게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인권위가 2013년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는 기존의 개별적인 기본권과 단편적인 사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정보인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발간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AI 등 신기술 도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

• 혐오와 차별개선 영역

혐오와 차별개선 영역에서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노력이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 07. 24),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 06. 30)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 인권 관련 제도 정비 영역

인권 관련 제도 정비 영역에서 인권위는 3기에 걸쳐 인권NAP를 수립하고 정부에 권고하였다. 2006년 제1기(2007~2011) 인권NAP 수립 권고를 시작으로, 제2기 인권NAP(2012~2016), 제3기 인권NAP(2017~2021) 수립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중장기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는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주요 가치 및 평가지표로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북한인권 증진 영역

북한인권 영역에서 인권위는 여러 권고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북한인권 정책을 제시하였다. 2011년 10월 24일 정부에 제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이 그 예이다. 권고안에서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개선은 물론,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주요 통계

[표 3-1-1]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단위: 건)

합계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1,042	425	587	30

[표 3-1-2] 연도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합계	1,042	425	587	30
2021. 06	48	12	36	0
2020	118	25	92	1
2019	102	25	75	2
2018	63	28	32	3
2017	64	30	33	1
2016	72	44	26	2
2015	36	12	23	1
2014	46	27	18	1

구분	합계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2013	43	27	16	-
2012	42	24	18	-
2011	40	18	20	2
2010	44	21	20	3
2009	45	14	28	3
2008	55	15	33	7
2007	53	25	26	2
2006	51	29	22	-
2005	31	17	14	-
2004	30	12	18	-
2003	33	13	18	2
2002	25	7	18	-
2001	1	-	1	-

[표 3-1-3]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단위: 건)

합계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 ¹	사회권규약 ²	인종차별 철폐협약 ³	고문방지 협약 ⁴	여성차별 철폐협약 ⁵	아동권리 협약 ⁶	강제실종 금지협약	장애인권리 협약 ⁷
29	3	4	4	4	4	5	3	-	2

[표 3-1-4]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단위: 건)

합계	법원	헌법재판소
30	13	17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7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표 3-1-5]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합계

(단위: 건, %)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종	권고수용률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합계	425	408	203	151	54	17	86.8

[표 3-1-6] 분야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항목별 합계

(단위: 건)

구분	합계	인권기준·정책일 반(NAP포함)	구금·보호시설	군·경찰	여성	장애·병력	아동	노인	이주·난민
합계	243	52	10	13	5	22	19	11	13
차별일반· 전과 등 차별	비정규직· 노동권	건강·주거· 환경·사회보장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기업인권	북한인권	국제인권	스포츠	
16	24	16	11	12	5	6	7	1	

[표 3-1-7]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 및 권고수용률 합계

(단위: 건, %)

구분	합계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소계	권고수용률		
이주인권	62	53	91.9	19	-
여성·성소수자 인권	50	10	100.0	38	2
아동인권	123	39	88.9	83	1
장애인인권	128	59	100.0	67	2
북한인권	27	13	92.3	14	-
인권교육	22	10	100.0	12	-

제1절 인권 관련 제도 정비

1. 개관

우리 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뿐만 아니라,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국가인권 정책의 청사진 '인권NAP 권고안' 제시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NAP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권NAP는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이기 때문이다.



NAP 권고안 발표 언론브리핑(2006. 01. 09)

• 지역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인권NAP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한 중장기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는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펼치고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012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개정 권고>(2012. 04. 12)를 하였다.

2. 주요 결정례

• 한국사회의 인권정책 로드맵 수립

인권위가 출범 초기부터 인권NAP에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2001년 5월 우리 정부를 향해 인권NAP 수립 진행 상황 보고를 권고한 바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국내적 요구도 컸다. 즉,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인권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권종합정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2003년 10월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인권NAP 수립 과정은 권고안 작성과 본계획 수립단계로 이원화되었고, 인권위가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실무작업이 진행되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NAP 권고를 통해 인권정책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고, 법무부가 정부안을 수립한 이후 각 부처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3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인권위는 제1기(2007~2011) 인권NAP 권고안(2006. 01. 09)을 의결하여 정부에 통보하였다. 권고안은 제1부 NAP의 개요와 추진방법을 담았고, 제2부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시설 생활인, 새터민, 군인, 전·의경, 병력자 및 성적 소수자 등 총 11개 인권 취약집단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부는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분야, 현재의 인권 보호를 넘어선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 분야, 국내외 인권 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2007년 5월 22일 인권위 권고안을 기초로 인권NAP를 확정하였다. 정부안은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장애인 보험가입 문제, 고용차별, 빈곤아동 보건의료제도,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등 상당 부분 인권위 권고안에서 후퇴하거나 아예 계획에 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청사진을 확정해 국내외에 제시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권위는 이후 인권NAP 권고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였고, 2012년 1월 20일 제2기 인권NAP 권고안(2012~2016)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였다. 제2기 인권NAP 권고안은 제1기와 마찬가지로 총 3부

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2015년도에는 기업과 인권 관련 법·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9개 분야 24개 핵심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2016년 7월 기업과 인권 NAP(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권고(2016. 07. 25)하였다.

2017년에는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촉구 의견표명(2017. 07. 20)을 하였다. 제3기 인권NAP는 총 3부로, 제1부 인권NAP의 개요,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15개 대상별 핵심 추진 과제(향후 5년간 집중 및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제3부 자유권·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 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 증진 문제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2015년 9월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강조한 빈곤, 건강, 교육, 성평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반영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2021년 제4기 인권NAP 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지역사회에 인권이 싹들 수 있는 기반 마련

인권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에서의 인권 제도화도 중요하다. 특히 인권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정책적 실행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의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012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정 및 개정 권고>(2012. 04. 12)를 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인권위는 권고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6개 광역 지자체와 82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나,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 지자체가 타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인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2017년 인권기본

NAP 탄생 배경과 각국 수립 현황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인권대회가 열렸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가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 결과, 참여한 모든 국가 대표들이 '빈 선언과 실행계획' 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문서에는 "세계인권대회는 각 국가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근거로서 그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인권NAP 수립 작업이 각 나라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태동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원을 가지며 국제사회 연계망 및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성숙한 논의의 결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93년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들이 앞 다퉈서 인권NAP 수립에 나섰다. 각국의 NAP는 빈 회의의 결과를 반영하되,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독특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이행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 조약 참고 △모든 계획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참여의 중요성 강조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접근방법 고려 △이행 과정을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할 국가인권기구 제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강원권 워크숍
(2014. 07. 04)



조례나 인권위가 미비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지자체 인권위원회 형식적 운영 지양 및 심의 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견표명을 통해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가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역사회에 각인시켰다. 2019년 기준으로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 지자체 226개 중 95개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마련

이 외에도 인권위는 인권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 1월부터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과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 개정 추진기획단을 운영해 온 인권위는 연구포럼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의견 표명하였다. 개정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의 현실화,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인권 국가를 지향하도록 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자유권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였으며,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망명권, 난민 보호, 사상의 자유 등을 새롭게 명문화하였다. 이어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 검열을 금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 인권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 제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할 것을 권고(2014. 09.

22)하였다. 이는 인권위원의 다양성·투명성·독립성을 보완하라는 ICC(현 GANHR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고 공청회 및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결과물이었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전문성과 경험 및 업무상 독립성 등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다원적 대표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인권위 위원의 다원성 보장을 위한 원칙, △공석 공고 및 선출·지명 이유 공표 등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제도 정비와 더불어 제도 이행 체계도 고민해야

내년이면 정부가 제4기 인권NAP(2023-2027) 수립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인권위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이 2021년 6월 입법 예고되었다.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 수립과 실행의 토대가 되는 법이다. 향후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준중 책임도 법안에 규정하였고, 국가기관·지자체·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국내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이행체계, 제도 이행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국가권력과 형사사법제도 개선

1. 개관

•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커진 자유권에 대한 열망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자유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국가권력에 의해 자주 침해당하곤 하였다. 특히 1970~198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희생을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자유권이 침해되면서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도 함께 커졌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자유권에 대한 열망은 이후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감시할 국가인권기구(인권위)의 설치로 이어졌다.

• 사회적 파급력 큰 이슈에 적극 의견 개진

사회 한쪽에는 국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는데도 아픔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권위 설립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회 약자들의 기본권을 다시 세운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가 컸다.

출범과 동시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과거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제도들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폐지나 대체입법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이 악법들의 사회적 퇴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2005. 04. 06),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 08. 23),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2004. 01.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3. 11. 28) 등이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의 인권지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점과 같은 법이었다. 법률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킨다는 국제인권기구, 학계, 시민사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고,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며,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기여하는 방



테러방지법 관련 인권위 브리핑(2003. 10. 24)



철곡 한센인 집성촌 인권순회 상담(2005. 07. 04)

향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관한 논의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국가적 차원의 인권의식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 안보·국익 우선주의로 희생된 인권문제 재부각

인권위 출범 전후인 2001년 9·11 테러 사건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반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인권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인권위는 안보나 국익 등을 명분으로 희생되어온 인권의 원칙을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라크전에 대한 입장표명이다. 인권위는 2003년 3월 26일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하며 국회가 과병안 처리를 신중히 검토하길 요청하는 견해가 담겼다. 유엔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전쟁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 대한민국 「헌법」에서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9·11 테러 사건으로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표명>(2002. 02. 20)도 이러한 인권위의 고민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김창국 위원장 경찰청 특강 (2004. 08. 03)

2. 주요 결정례

1)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법·제도 개선

• 첫 국회 의견 제시, 첫 청문회 개최로 만들어진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

인권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표명한 것은 조직 출범과 더불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가 그로부터 닷새 뒤인 11월 30일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통해서이다.

이에 앞서 2001년 11월23일 국가정보원은 9·11 미국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 세계의 테러 대응책 마련 및 안전 월드컵 개최를 명목으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였다. 이에 인권위는 출범하자마자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테러방지법」 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테러 용의자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테러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함으로써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2001년 12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인권위 출범 이후 첫 청문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청문회, 한국헌법학회 및 국제인권법학회 의견 조회 등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2002년 2월 20일 최종적인 의견으로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위 출범 후 국회에 보낸 첫 의견표명이었고, 첫 청문회 개최를 통해 결정한 것이었다.

인권위의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 노력은 국회에 의견서를 보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인권위는 2003년 10월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 의견표명을 하였다. 기존의 법·제도 등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고 내용상으로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외국인 차별 소지가 있고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후 2016년 4월 29일 입법 예고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도 국무조정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인권위는 안보나 국익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규정된 법률인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 평화와 인권에 화두를 던진 이라크 파병 권고

2003년은 이라크 전쟁 발발 등을 계기로 안보와 인권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된 해였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국익을 내세워 지지 의사를 밝히고 한국군 파병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시급하게 추진되면서 인권위 내외부에서는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25일 파병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앞둔 시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2003. 11. 29)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기자회견(2004. 08. 24)

점까지도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자 일부 인권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다. 인권위 직원 30여 명도 인권위의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자, 25일 오후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독자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정부 발표가 있고 6일 후인 3월 26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7가지의 이유와 원칙을 들어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하며 이라크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우리 사회에 전쟁과 평화, 인권, 나아가 인권위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로 국가안보에 묻힌 인권을 세우다

2004년 8월 23일 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밝혔다. 해방 직후 좌파 불순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된 비상 조치법인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큰 법으로 지적되어 왔다.

당시 「국가보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및 규제행위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법과 중복되는 가운데, 불명확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개별 처벌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는 논란이 지속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과정에서 영장 없는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수사, 사형과 의문사, 장기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는 시비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보안법」 관련 당사자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인권에 앞서 국가 안보를 더 우선시하였던 ‘국가보안법 현상’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전 국민적인 자기검열 통제 시스템으로 정착하면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낳다 보니 인권위가 발족한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 및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03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T를 결성하고 「국가보

안법」을 체계적·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TFT는 2004년 7월까지 총 16회에 걸친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 법 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04년 7월 26일 325장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이 법률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큰 점,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반복 지적하면서 폐지를 권고하는 점,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기존 법률로써 반국가적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 역사적·법률적·현실적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폐지를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등 개폐를 위한 노력은 그동안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무시당하고 침해당해 온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로서 그 의미를 더한다.

• 인간 존엄성 부정하는 사형제 폐지 지속해서 주장

사형은 인류가 만든 제도 중 모든 인권의 전제인 생명권과 모든 인권의 바탕인 인간 존엄성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다. 사형은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 즉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커졌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가 결코 범죄율 감소 등 범죄 예방에 별다른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밝혀왔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인권위도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권고를 결정하였다. 사형제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원칙)과 사형 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감한 주제인 만큼 사형제 폐지 권고를 결정하기까지 인권위 내부에서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국민의 식 조사를 비롯해 사형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사형 관련 규정·범죄·판례 등을 분석하고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04년 11월과 12월에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2005년 3~4월에 3회에 걸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면폐지안, 사형을 폐지하되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안, 사형을 폐지하되 전시에는 존치하는 안, 현행 사형범죄 범위 등의 축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인권위의 노력

인권위는 2005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7년 12월에는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2018년 4월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형제에 관한 조언을 경청하였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를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 후 대안도 검토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였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의 집행금지 의무, 사형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역대 3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앞둔 2021년 2월 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1~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및 사형제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소 방안, 현행 유지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마침내 2005년 4월 6일에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사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형 폐지안 8명, 사형 존치안 1명의 의견으로 폐지안이 의결되었다. 위원들은 사형제도 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시 예외적으로 사형제도 유지 의견이 있었던바, 이러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입법 과정에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논란의 중심에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목소리를 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위의 지속적인 의견표명과 권고를 통해 13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권과 함께 대체복무제를 보편적 권리로 인정해 왔던 터였다.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계속 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던 대체복무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과 ‘양심을 가장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한동안 지속되었으나,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10월부터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 ‘이중처벌’ 비판받던 「사회보호법」 폐지 및 「보호수용법」 제정 반대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전과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보호감호처분제도로, 이중 처벌이자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인권위는 2003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보호감호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 후, 2004년 1월 12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을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법 폐지와 대체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수용해 치료하고 치료 기간을 형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법」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 이후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은 결국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인권위는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마다(2014년, 2016년, 2020년) 반대 의견을

사회보호법 폐지 관련 기자회견
(2004. 01. 13)



표명해 왔다. 아동 성폭력 사건 등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형의 적절성 보완, 형벌 집행에서의 교정 및 교화 기능의 보완, 범죄피해자 보호 방법의 실질적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보호수용과 같은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권위의 원칙이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에서도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 민주주의 초석 다지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힘 실어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핵심적 권리 중 하나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장해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지나치게 많은 집회의 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3년 11월 28일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집회·시위 금지 요건을 축소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2009년 6월 4일에는 국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6개 법률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 규정, 복면 등의 착용금지 규정, 통고만에 의한 영상촬영 규정, 소음규제 강화 규정, 형벌을 대폭 강화한 규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심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야 옥외집회는 전면 허용하고 심야 시위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2020. 04. 23, 11. 05)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과거 국가공권력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

• 인권 유린의 현장 삼청교육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삼청교육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권고〉(2003년)는 국민이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사회에 각인시킨 입장 표명이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며 25개 군부대에 설치한 것이었다.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4만여 명의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대에 수용하고 강제로 순화교육을 하였다. 정권이 바뀐 후 강제 연행된 피해자들이 군부대 내 순화교육 중 가혹행위는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여러 정권에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몇 차례 발의된 의원 입법안도 회기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피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해 인권위에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진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기간의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인권위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당시 피해현황 및 정부의 피해보상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요구 및 정부, 법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2003년 3월 10일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삼청교육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대통령의 보상 약속, 법원의 피해자 위로금 지급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통한 구제 조치 결정, 1980년대 해직공직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권고였다. 인권위 권고 후 2004년 1월 29일 국회에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인권위의 〈삼청교육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권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 차별과 편견 벽에 갇혔던 한센인 문제 해결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격리되어 인권유린을 당해온 한센인들도 그런 대상 중 하나였다. 인권위는 2005년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한센인 인권 개선을 선정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인권위는 한센인 집단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상담과 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와 한일 양국 토론회, 160여 건의 진정에 대한 조사 등을 펼쳤다.

한센인들의 수난은 1910년대 일제가 이들에 대한 강제수용과 강제격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의 한센인 정책은 완전·절대 격리, 평생격리, 자손근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격리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며 외출을 금지하고 단종과 낙태를 강행하였다. 시체를 해부하거나 인체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였다. 한센인들에 대한 이러한 반인권적 대우는 광복 이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2006. 01. 16)

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한센병이 유전되거나 전염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확산되면서, 절반의 한센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수용소와 다름없는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였다. 무지와 편견의 벽이 이들의 사회와의 소통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인권위는 2006년 5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한센인 정착농원인 소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다.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명예회복 및 보상, 생활지원,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하였다. 또한 국회는 2007년 10월 17일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센인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인권위의 정책 권고는 차별과 편견의 벽에 갇혀 있는 한센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약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집회에 대한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공권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의견 표명도 있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해 쓰러져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운용실태 점검 및 안전성 강화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사건 관련 의견표명>(2016. 08. 30)을 하였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는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미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위해성을 감안하여 사용 기준 등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수용한 바 있었다.

3) 형사사법제도 개선

• 검찰 수사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인권위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자백 확보 중심의 수사가 인권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2019년 11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차이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또한 신문·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2011년, 2014년 검찰의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용하여 시행 중이다.

인권위는 2015년 5월경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자택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반복되었는데도 검찰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표명>(18진정0839400, 2019. 10. 28)도 하였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하되,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체포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용하고, 제도 운영과 운영 주체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관련 공청회 (2005. 07. 01)

한편 검찰에 대해 <사건기록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20진정0074000)도 있었다. 인권위는 2020년 검찰총장에게 항고·재항고·재정신청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더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재정신청·즉시항고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경찰 수사과정 인권 제도 개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인권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왔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2020년 12월 8일 국회의장에게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활동 범위를 신설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활동 대상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중에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를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경찰) 등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2019년에는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 관련 정책 권고>(2019. 12. 20)를 통해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인권보호와 범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운용 차량 내 영상 녹화 장비와 관련하여 보유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영상 녹화 장비 운영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경찰들이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관행 개선>(19진정0857200, 2020. 11. 25) 의견표명을 하였다.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내용에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경찰청장에게는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 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경찰청장에게 체포된 피의자 등에게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선 경찰관서에서 안내문 등을 직접 피의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체포적부심 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견표명>(20진정0291200, 2020. 11. 04)도 있었다. 현장 경찰관들이 관련 절차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포된 피의자로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서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서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치우가 보장되도록 유치인 의료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찰서 유치장 의료치우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19진정0009300, 2020. 04. 16)도 하였다.

제3절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

1. 개관

•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 고용형태 사회문제로 대두**

우리나라는 198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반해 고용환경은 열악하였다. 노동자의 저임금, 과도한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더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임금 등 악화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관계에서 시간제·계약제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은 임금·수당·사회보장제도·각종 복지혜택 면에서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당사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내 소비위축, 노사관계의 불안 등 국민경제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초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고, 4대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비정규직 확산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2003년 새롭게 출범한 정부 역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 **‘노동권도 인권’, 사회적 인식 바뀌**

인권위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문제의 하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원, 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각종 자료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에 적극 나섰다.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 2002년에는 「국가보안법」 폐기, 보호감호제도 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3대 과제로 선정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사회가 우선해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한편, 인권위 초기만 해도 노동권을 인권의 범주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컸다. 인권위는 「기간제법」 제정안 및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5. 04. 14)을 시작으로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



청소용역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07. 05. 04)



'감정노동자를 지켜주세요' 거리캠페인(2014. 04. 10)

양한 의견표명과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 노동취약계층 인권 개선에 주력

노동인권 영역에서도 인권위가 가장 주력하였던 것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였다. 지난 20년간 비정규직·노동권 관련하여 총 23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인권위는 첫 노동인권 관련 실태조사 대상으로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를 선택하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청소업무는 비핵심 업무로 분류되어 직접고용에서 용역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업무인 데다가 주로 여성·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우리 사회 대표적인 노동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 외에도 인권위는 대학강사, 감정노동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노동자,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경비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인 「기간제법」 제정안 및 「파견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은 물론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의견표명을 하였다.

• 노동자 안전과 노동3권 보장 위해 노력

사회권규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제노동기구 「산업안전보건협약」에서도 국가와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이들이 많다. 인권위는 이러한 노동환경을 고려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특히 주목한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였다. 노동취약계층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이 더 큰데도 대개는 저임금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보호 수준이 낮은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에조차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2014. 11. 27),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2015. 11.

12) 등을 하였다. 2018년 발표한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권고」(2018. 07. 12)의 경우, 인권위 권고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생식독성물질 취급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는 성과를 남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진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도 인권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 05. 21)가 반영되어 2021년 2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인권위는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다.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내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환경훼손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국제 인권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을 정립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6월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국가에만 부여하던 인권존중 책임을 기업으로 확장해 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국제 인권사회의 흐름을 국내에 적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을 정착시키고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공공성을 근간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하며, 법과 제도, 정책, 투자와 조달 관행, 공급망 정책을 통해 일반 기업에 이를 확산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요 결정례

1) 노동취약계층의 인권 개선

인권위는 출범과 함께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역할을 해왔다. 전일교원에 비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2004. 05. 24)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 개선 정책 권고」(2007. 09. 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2008. 04. 14), 극한의 노동환경에 노출된 「방송영상제작 스태프 노동인권 개선 정책 권고」(2012. 10. 18),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2016. 12. 05) 등은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기 관임을 각인시켜 준 대표 사례들이다. 또한 인권위는 정부에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다양하게 표명하였다.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
(2005. 08. 10)



•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인권 중요성 부각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해 2004년 9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경영계와 노동계 및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부르는 등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가져왔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차별의 해소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과제이자, 민주적 사회통합의 당면과제로 보았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용사유 제한 규정, 사유제한 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간주 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서면요건 규정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파견대상 업무의 제한적 허용 규정, 현행과 동일한 파견기간 규정, 당해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한 휴지기간의 확장 규정, 파견근로자의 불법사용 즉시 직접고용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파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전체 근로자 고용 안정성 및 노동인권 보호 재천명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비정규직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2015. 05. 26)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그 사용유인을 높여 정규직 근로자

를 대체할 우려가 있고 기간연장 이후 실질적인 정규직화 유도 정책이나 남용방지 대책은 미흡하므로 보완을 검토할 것, △근로자 파견 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균등대우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므로 보완을 검토할 것,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배려가 불법파견의 징표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의 보완을 검토할 것,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 제정은, 쉬운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정규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재천명한 것이었다. 또한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이 인정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3권 보장 등 노동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의미 있는 권고였다.

• 대학의 비정규직 시간강사 문제 이슈화

대학교육에서 높은 시간강사 의존율과 직업화에도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다. 안정적 신분이 확보되는 전임교원과 달리 정식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개별 대학으로부터 다음 학기 해촉이나 재위촉에 대한 아무런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도 전임강사의 20% 이하 수준이다.

2003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백모 씨(34)가 이러한 시간강사의 신분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가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04년 5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표적인 노동취약계층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권 개선

여성·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우리 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통하는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

노동권이 노동인권이 되기까지

2005년 4월 14일 인권위가 당시 사회적 논란이었던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 법안에 대해 인권위는 “보호의 목적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불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은 그 의견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언론들도 “인권위가 왜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죠?”라며 의아해하였다. 인권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을 인권의 범주로 생각하지 않던 시절의 모습이다. 어쩌면 인권위는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려고 존재하는 기관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익숙하였던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는 철옹성처럼 우리 삶과 문화 속에 뿌리내린 고정관념에 대한 거센 도전이었기에 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논란을 겪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우리 사회에 노동인권 개념을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

권 개선을 위해서도 인권위가 나섰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6년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각각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2007)하였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를 남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고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청소 등 시설관리업무를 별도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준공영화 방안(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활용)의 도입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와 별도로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나친 저가낙찰의 문제 개선 및 법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기간 확대와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대부분 열악한 실정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휴게공간 마련 및 복리후생 시설(식당, 샤워실 등) 이용 보장 등도 권고하였다.

• 오랜 기간 미흡하였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청소용역 영역만큼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은 곳이 바로 콜센터, 유통분야 등 감정노동 분야이다. 그러나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나 제도적 수준의 보호 체계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그간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2016. 12. 05)를 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 정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국가와 사용자의 책무 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명시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하여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고,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보건 조치 의무를 동법률에 명시할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및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것,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권고와 함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 발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 발간, 현장간담회,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다.

• 노동인권 최저지대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사회 공론화

2010년 인권위가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법령 및 정책 권고는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있는 10대 청소년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한 사례이다. 통계청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15~19세)은 약 10%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이 노동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9년 11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을 수립해 중·고등학교와 대학, 청소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안심알바 센터를 전국 166곳에 설치하였으나 상당 실적은 미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10년 2월 4일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안에는 연소자 법정근로시간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인권 관련 토론회 (2015. 02. 16)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6. 11. 08)

규정을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개정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행정 강화와 노동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하는 등 노동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는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

• 노동취약계층 보호 위한 다양한 노력

이 외에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권고(2008)한 바 있지만, 이 권고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2011년 실시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방송제작 스태프 응답자의 55.6%가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저임금과 경력을 무시하는 임금체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업무강도와 취약한 사회안전망도 문제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송영상산업 제작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 현실과 노동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2012)하였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서도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환경 개선을 권고(2020. 10. 29)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 대표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던 가사근로자가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장받는 데 인권위도 힘을 보탰다. 인권위는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15년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등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2016. 11. 10)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08. 04)을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2017. 11. 23)도 하였다.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고령·여성 등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도는 전일제 근로자를 위한 보호 장치들로 설계되어 있고, 심지어 「비정규직법」상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주휴·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고, 모성보호(임신·출산·육아 등)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한편 '정리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리해고의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등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인권위는 정리해고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2013. 01. 17)하였다.

2)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에서 최상위권이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노동인권에서도 중요한 화두이다. 인권위는 안전한 노동환경으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하였다.

• '위험의 외주화 멈춰라'...간접고용노동자 인권 개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 시작된 외주화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위험업무 외주화와 노동기본권 제약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 이처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와 같이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몇 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2019년 11월 5일에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산업재해 위험 높은 분야 사업장 관행 개선 촉구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14년에도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

트업 하청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맡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업장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2014. 11. 12)하였다. 세부 권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협의체 구성 시 하청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 △도급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대할 것, △장기적으로 재해율의 단순 감소보다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요율제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를 개선할 것, △현제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하청 산업재해통계 통합관리 제도를 조선업·철강업 등 사내하청 비중 및 산재 위험이 높은 업종에 확대할 것, △도급사업장에서의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및 산재 발생 보고에 대한 감독행정을 강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계획을 마련할 것 등이었다.

• '제2의 김용균 없도록'...5개 발전사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권고

고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을 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 직접고용이 필요하므로, 발전회사와 관련한 예산 등 사항을 적극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에도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하였다.

•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인권위는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해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인해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교육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초로 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보상 신청과 판단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구하면 사업주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작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2018년 권고하였다. 또한 야간근로 인가 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18. 02. 12)



하는 것은 물론,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적용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도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 사용자 또는 노동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장 외부의 제3자로부터의 괴롭힘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인권위는 2020년 노동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3)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의미에 관하여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단체의 결성이 필요하고 단결된 힘에 의해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 이러한 노동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성격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시(헌법재판소 94헌바13·26,95헌바44, 1998. 02. 27)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노동3권에 대한 법·정책의 개선활동을 펼쳐왔다.

• **‘해고자·실업자도 노조 가입’…관련법 개정 이끌어 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개선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노동조합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이자 국제인권규약에서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만나는 첫 관문이 바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만 노동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두고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 취업준비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하였다.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 반려를 비롯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가 과연 우리나라에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증대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용될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2010. 09. 30)하였다. 인권위는 노동부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 이후 2012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자 2010년 정책 권고와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 제출(2017. 12. 18)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개선에 기여**

인권위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도 하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자 아닌 자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무 제공 상대방에 대한 전속성 여부가 상이하고 직종별로 편차가 크다는 이유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대표적인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 인권위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노무 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 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2007. 09. 17)에 이어 2017년 정부 및 국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2017. 04. 06)를 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2017년 하반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태 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였다. 이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도 보호 법률은 입법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해 본다.

• 노동3권 ILO협약 가입 정부에 권고

인권위는 노동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국내 노동3권의 개선을 위해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을 앞둔 2018년 12월 10일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제87호, 제98호에 가입(비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이다. 특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은 비준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 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노동조합 활동에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이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뿐이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제3기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에서도 ILO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 노동쟁의로 침해받는 노동3권 보호 위해 노력

노동쟁의로 인해 노동3권 보장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서도 인권위는 목소리를 냈다.

노동쟁의가 잦아지면서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증폭하였다.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놓고 적지 않은 법적 공방도 벌어졌다.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의 쟁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 자주적·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직장폐쇄와 관련된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직장폐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교육 포함)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2012. 11. 22)하였다. 국회의장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등 관련 법률 개정 시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노동쟁의로 정리해고자가 대량 생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9년에는 단일 기업과 관련된 대법원 계류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의견서를 내기도 하였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쌍용



ILO 권고이행상황과 한국 비정규직 문제 관련 토론회(2017. 08. 29)

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 재판부가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2019. 11. 11)를 제출하였다. 이는 인권위가 오랜 시간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정리해고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4) 인권경영

인권경영은 다국적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에게도 기업경영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저조한 편이며, 기부 및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인권경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경영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인권경영을 전체 기업으로 실천, 확산시키도록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해 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의 활동 개선을 적극 권고하기도 하였다.

•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실천·확산에 디딤돌 역할

인권위는 2012년 2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5월 초안을 발표하였다. 10월에는 기업 의견 조회를 거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2013. 01. 08)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상장기업 30곳에 배포하였다. 배포 후 2014년 8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책임경영, 윤리경영 등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 전반적으로 인권경영의 개념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인권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30개 공기업 대표 및 87개 준정부기관장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 점검을 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2014. 09. 25)하였다.

•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예방·구제활동 독려**

인권경영 실천에서는 다국적 기업도 예외가 없다. 인권위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의 활동이 미흡하다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해 △국내 연락사무소에 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질의·이의제기 절차, 연례보고서, 업무담당자 등 관련 자료를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것, △이의제기 접수 및 결과통지 시 업무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 △국내연락사무소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안들을 사무처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그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2011. 10. 27)하였다.

• **더 열악해지는 노동환경, 모든 일하는 사람 위한 노동인권 고민해야**

감염병 확산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수준은 세계 10위 이내로 상승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가경제수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왔으며,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장시간노동, 소득양극화 심화 등 노동지표는 최하위권으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20년간 노동권 보호와 인권경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여성·청소년·장애인·고령자 등 노동취약계층의 노동현실은 저임금, 고용불안, 장시간노동 등 여전히 열악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및 기술 발전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하고 노무제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는데도, 기존의 노동법과 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각종 노동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노동취약계층은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노동법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발전되어 왔다. 노동자 보호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권위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예외 없이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권경영포럼(2019. 03. 28)



● 제4절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1. 개관

• 인권위 설립 후 사회 약자 목소리 커져

사회 약자의 인권문제는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인권위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 상담센터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이들로 인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동안 인권을 유린당하고 차별과 사회 냉대 속에서 움츠려 있던 장애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적 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많은 사회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인권위를 통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이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최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위 정책권고 현황을 보면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총 119건(권고 56건, 의견표명 71건, 의견제출 2건)을 권고하였고, 정책권고에 대한 수용률 또한 100%였다.

장애인 인권문제 중 초기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였던 내용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었다.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 권고>(14직권0001700, 2015. 04. 13)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적지 않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동권 외에도 장애인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2011. 04. 01)



노인인권지킴이단 워크숍(2009. 04. 20)

이 여러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과 언제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안전권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다양한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차별에 포함된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장애차별 사건은 대부분 이러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장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의 수어통역 제공 필요성에 대한 의견표명>(20진정0310100, 2020. 09. 21)이 대표적이다.

정신장애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권 문제는 인권위 출범 전에는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못하다가 인권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영역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진정은 강제 수용이었고, 그 뒤를 이어 시설과 치료 과정, 직원이나 동료에 의한 폭행 등이었다. 많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를 수용하면서도 입원 환자의 최소한의 생존 및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설립 초기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다른 진정사건과 비교해 낮은 비중을 보였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장애 특성 때문이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장애 특성을 고려해 방문조사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시설의 개선을 이끌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권단체들의 대리 진정을 통해 장애차별 문제를 이슈화하였다.

• 자기 권리 보호 어려운 아동의 권리 옹호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것은 1989년으로, 여러 사회적 약자의 권리 중 아동의 권리는 비교적 '최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그다음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산업혁명기 유럽에서 자행된 아동

「장차법」 제정 역사와 사회에 끼친 영향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장차법」의 제정 전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에서 「장차법」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와 권리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다양한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때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장차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부터였다. 2003년 4월, 53개 단체가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 연대를 결성하였다. 이 가운데 인권위가 2006년 7월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를 하면서 별도의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그해 8월, 정부는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해 법안 작업에 돌입하였고, 그 결과물이 12월 18일 장항숙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의 법안을 병합 심리해 상임위 대안을 마련하였고, 3월 2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 6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장차법」 제정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노동을 보더라도 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았다. 이러한 아동의 참상에 대한 각성과 고발이 서구에서 아동의 권리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니,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한 것은 200년도 되지 않은 셈이다.

국내에서도 아동 인권에 관심을 보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인권위 설립 전만 해도 국내에서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 학생 처벌 및 학교폭력 등은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피학대아동, 시설아동, 빈곤아동,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동 등은 사회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을 스스로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고, 국가기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인권위에 아동인권을 담당할 독립부서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아동인권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물론, 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의식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직권수정 권고>(2002. 10. 28),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06. 27),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1. 03. 02) 등을 하였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개선 권고>(2010. 06. 2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2016. 05. 19),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2017. 11. 0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1. 01. 19) 등을 진행하였다.

• 초고령사회 대비한 노인인권 강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노인의 상당수가 빈곤, 자살, 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최소한의 삶의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취약계층으로 몰리는 빈곤층 노인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노인인권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노년의 존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한 <노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3. 01. 28),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2017. 01. 12), <정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2018. 03. 15),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개선 권고>(2020. 02. 10) 등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소득·건강권·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더불어 인권위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오는 세대 간 갈등, 부양 시스템 악화 및 불충분한 수급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전국에 급증한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2016. 06. 20), <2018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2018. 12. 28),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2020. 09. 10) 등을 진행하였다.

•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차별,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응

여성도 아동, 노인과 같이 오랫동안 차별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규정과 영역별 평등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인권위는 2005년 6월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

원화 방침에 따라 여성부에서 담당해 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를 인권위로 통합하고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왔다.

• 외국인 근로자·난민 등 이주민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요구

2021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민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이주민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기 이주노동자 문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인권침해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노동비자를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농성, 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산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엄청난 빚돈을 들여야 하는 송출 비리를 낳았다. 다시 그 돈을 갚으려는 연수생들의 근무지 이탈이 확산되고 불법체류가 일반화되면서 임금체불, 노동착취, 비인간적 대우 등의 인권침해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2003년 8월 17일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키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과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한편, 급여 외에 퇴직금이나 연월차 수당 및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불거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 일단이나마 진정되었다.

대한민국의 다른 인종에 대한 폐쇄성은 난민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제사회는 박해와 폭력을 피해 자국의 국경을 넘은 난민을 국제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1992년에 가입하고,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2018년까지 비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48,906명 중 인정자는 936명으로 2%도 되지 않는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난민인정자들도 또 다른 인권침해와 적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8년 인권위가 실시한 난민인정자 처우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경기북부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순회상담(2009. 09. 20)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2018. 10. 05)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난민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인권위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였다.

• 폐쇄성에 접근 어려웠던 군대·구금시설 인권문제 이슈화

구금시설은 특성상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은 데다가 구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왔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라는 시각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사회적으로 방치하는 데 한몫하였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진정상담 및 접수, 조사 및 구제활동은 바로 이런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일이었다.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외부 개입이 쉽지 않기로는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군대 내 인권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다. 인권위 출범 초기에 주로 과거의 군의문사 사건에 관심을 두었다면, 나중에는 <군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정책 권고>(2012. 04.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05. 12), <육군 GP 총기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2019. 04. 30) 등과 같이 반인권적인 군대문화에 대한 환경 개선에 집중하였다. 군대인권과 관련해 인권위는 그동안 8건의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각 주제는 군대인권 문제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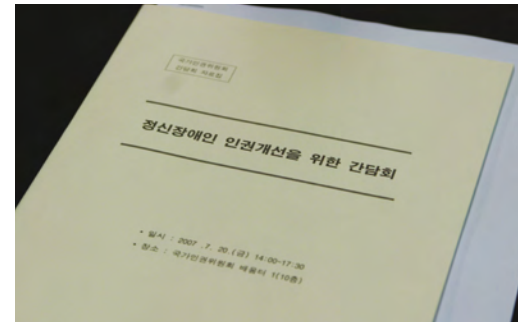
이 외에 빈곤 문제도 우리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빈곤층이 증대하고 빈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사회갈등과 경제효율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였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빈곤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빈곤계층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다. 최근 성적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이 커지면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특정 질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보유자 등이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 약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주요 결정례

1) 장애인

(1)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

국내 정신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균 재원 기간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길고, 퇴원 후 재입원하는 비율도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평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 보고서(2007. 07. 20)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서울설명회(2009. 11. 05)

균 가구소득도 다른 장애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고용률도 저조한 편이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30%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답할 만큼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무게도 크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위험하거나 무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과 그에 기반한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제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기회조차 가로막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해 왔다.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국가 책임론 강조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 겪는 자기결정권 침해, 치료과정에서의 알 권리 제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선진국 대비 높은 비자의 입원 및 장기 입원 등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정신보건·법률·의학 분야 전문가,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센터 관계자 및 법원 행정처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위원회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9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정책 권고하였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나온 것은 세계적으로 호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이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 문제를 국가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인권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 절차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등이 있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여러 언론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었고,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인권위 또한 권고 이후에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자 설명회, 국가보고서 발표회, 부산·광주·대구지역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

의하고 권고 결정문을 대통령실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홍보 활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향상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위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2021년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을 담은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 하기도 하였다. 2008년 국가보고서 발간 이후 인권상황 점검과 개선대책을 담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무 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 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주거 등 일상생활을 비롯해 정신 건강증진시설 입·퇴원 과정, 치료 상황, 인식 수준, 재난 상황 인권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등 인권보호에 나서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하여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서 겪는 자기결정권 박탈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위는 2015년 7월 15일, 보호자가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대한민국 「헌법」상 과잉금지 및 적법절차,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입원당하여 6개월에서 수십 년까지 강제입원과 치료가 허용되는 현행 제도는 유엔총회가 1991년 채택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MI 원칙)’ 등 국제규범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전에도 정신건강 증진시설 관련 진정사건 권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2009. 11),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3. 07. 02)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왔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격권·명예권·신체의 자유 등을 보호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찰청, 소방서, 민간 응급 이송업체 등에 배포할 것 등을 권고(2016. 07. 21)하였다. 또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개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표명(2020. 09. 21)하였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제도 개선

상당수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오랫동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열악한 격리실 환경과 강박 도구, 무분별한 격리·강박 시행 등 인권침해 요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격리·강박 환경 개선, 격리·강박 기록유지 표준화, 최대 허용시간 등 관련 지침 보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장애인시설 관련 국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방향과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권고를 하였다.

•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의 인권 개선

인권위는 지속적인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다. 2015년 방문조사에서는 노숙인 등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는 행위, 입원환경 관리 미흡, 환자의 알 권리 제한 등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조사기관의 감독기관에게 향후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2016년 3월 7일에는 정신병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해 해당 병원에 휴대폰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유병률 및 치료 연계율 등에 대한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정신의료기관의 병실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도 이루어졌다. 2020년 4월 20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가 의료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 개선을 요청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요양시설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19년 인권위의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촉탁의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 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되어 요양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정신요양시설이 그저 사실상 거주지 제공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장애인권리 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시설 실태조사 발표회 (2006. 02. 02)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촉구

국내 장애인복지시설은 2018년 기준 1,527곳이고, 전체 거주인 중 49.3%가 30인 이상의 집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거주인 중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67%에 달하고, 입소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58%를 차지하였다. 문제는 이들이 머물렀던 상당수의 장애인복지시설이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인권위는 2019년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 일정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9월 우리나라 정부에 “한국은 탈시설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활동 보조 서비스 정책 등이 부족하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3)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차별의 상당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장애인 이동권·접근권·안전권 보장

한국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지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접근권과 편의시설 개념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고 실행할 정부기구가 이원화되면서 그 실효성이 떨어졌다. 2001년 1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와 2002년 5월의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편의시설의 적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헌법소원, 인권위 진정, 수습 차례에 걸친 버스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2004년까지 모든 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심부름센터, 휠체어 콜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계 내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졌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인권위는 지속해서 의견을 표명하였다.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 권고>(2015)가 대표적이다. 고속·시외버스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개선계획도 없어서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그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는 버

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권고하였다.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 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서울·경기·부산·광주·대구·대전 등 6개 권역의 공공기관 245곳(우체국 195곳, 고용센터 50곳), 대형 판매시설 164곳 등 총 4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우체국과 고용센터의 경우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 시설 접근성,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시설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관리가 미비하거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7년 1월 5일 권고하였다.

이동권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권이다. 장애인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 장애인들의 안전권에 대해 국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인권위는 2016년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2016. 11. 24)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국가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며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홍보를 권고하였다. 또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안전교육, 다양한 경보·피난설비의 보급 및 연구를 권고하였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방향 제시

인권위가 2020년 권고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사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로, 2021년 예산이 1조 5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복지제도이다. 그런데 65세 이전에는 하루 24시간까지도 받던 활동지원 급여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으로 옮겨 가면서 3~4시간으로 급격히 단축되어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상생활 유지 자체가 힘들기에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기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

인권위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해왔다. 2020년 2월 20일 긴급 정책권고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법률 개정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연령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사실상 전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국회의 적극적 입법 노력으로 12월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었다. 인권위 권고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개정 법률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연령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다.

• **대통령 연설에 수어통역 미배치는 장애인 차별**

국가는 「장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된 특별연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날 자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경제, 고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 방향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청와대는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공중파 방송 3사와 공익채널 KTV만이 자체적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하였다. 이에 수어통역의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함으로써 농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9월 21일 이 진정을 판단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방송 화면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었기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주요 연설을 중계하거나 연설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표명하였다.

국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은 물론, 농인의 농 정체성 확립과 농 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을 안내하는 자리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특별연설을 함께 진행하였다면, 대통령의 연설은 그 자체로 농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 아동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생명·생존·발달에 위협을 받지 않고,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괴롭힘이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으며 휴식, 여가, 놀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회(2006. 09. 29)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보장 공개토론회(2010. 03. 16)

• **학교에서부터 인권교육·인권의식 개선**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등의 학교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인권위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학생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2년 인권위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2002년 10월 29일 인권위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인권 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교과서의 본문, 예화 및 삽화 등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직권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2003년도 1학기 교과서부터 수정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검정교과서의 경우는 2003년도 1학기부터 2004년도 1학기까지 인쇄 상태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정하여 배포하도록 조치하였다.

인권위는 학교 내 체벌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하며 학생의 인권보장을 중요하게 여겼다.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었다. 이미 앞서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 금지 입장을 밝혔던 인권위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나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체벌’ 허용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와 학내의 질서 유지’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건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학생의 책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1. 03. 02)하였다.

• **학생 두발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인간이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2005. 06. 27), 2017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7. 12. 21) 등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대한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 영역에서도 기본권을 행사하는 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18진정0236300(2018. 5. 29), 17진정1072800(2018. 07. 03) 외 다수]한 바 있다.

•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위한 제도 개선**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아동 성폭력 문제의 개선을 위해 수사·공판 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법률 등 제도상의 미비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정부에 지속해서 권고해 왔다. 특히 2008년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 피해아동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처가 부족하다는 각계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동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 6월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 성폭력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권고의 주요 내용에는 아동 진술의 최소화를 위해 아동의 최초 진술에 검찰과 경찰,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의료지원 청구권자를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등 아동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2년부터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아동이 형사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2019년 ‘국회 계류 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하고, 따라서 국회가 전향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 보호**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에 달했고, 이 중 만 13~15세 아동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의무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 책임소재 명확화와 전용 쉽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 확보를 권고(2016. 05. 19)하였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기존대로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남겨두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산사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2017. 11. 02)하였다. 출생 사실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저지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및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 확대, 학대아동 사례관리 체계 정립, 모든 아동 번사사건에 대한 분석,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권고(2021. 01. 19)하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2016년 인권위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자립 지원과 더불어 정신 건강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이 진행되도록 관련 교육을 하도록 권고(2016. 11. 17)하였다.

• **형사사법 과정에서 아동권리 보장해야**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하여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인권위는 법원집행관이 법원의 집행서류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집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인 피해자들만 있는 가운데 문을 크게 두드려 피해자들이 문을 열게 한 뒤 집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2016. 11. 17)하였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이 학생을 면담할 때 아동의 의사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와 동석할 수 있게 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에는 담임교사 등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추가하도록 의견표명(2020. 07. 28)을 하였다.

한편,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2019. 03. 14)하기도 하였다.

•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는 만 18세에 도달하여 법적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생활하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한다. 매년 그 수가 2,5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은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거나 금전적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이들이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와 이를 통한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보호종료아동 역량 강화라는 2개 주제하에 주거지원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취업·진학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이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자립지원 전담요원 배치기준 개선 및 역량 강화, 자립 관련 정보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실용적 생활기술 등 자립준비 교육 확대,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취업·진학 지원 강화 등 보호종료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 7월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 이주민

(1)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1993년 11월 우리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산업연수생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데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실제 보장받지 못하였다. 연수생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고 연수생 신분을 이탈,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2년 7월 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해 농업·축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외국 국적 동포들이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음식점업과 청소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 방침도 밝혔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책 검토를 해온 터라 곧바로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그해 8월 13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핵심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 고용허가제(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 포함) 도입 등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인권위는 다음 해인 2003년 2월 10일 국무총리에게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이러한 재권고를 하게 된 것은 실태조사와 진정 등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의 심각성 때문이었다. 과도한 송출비용,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만성적인 임금체불,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임금·고용·재화의 차별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종합세트라 할 만하였다.

•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개선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을 행정처분에 따라 자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보호하고 대기하게 하는 곳이다. 이런 취지의 공간이 구금시설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열악하다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수용 중이던 외국인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보호 수용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사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인권위는 여수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월 27일부터 6개월간 직권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는 참혹하였다. 화재 당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2명의 경비용역만 근무하고 있었고 보호실의 구조와 운영은 구금시설과 다름없었으며 출입문은 이중장치로 잠겨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보호의 이유는 대부분 임금체불이었는데, 노동부 지침인 '선 구제 후 통보'의 원칙과 임금체불 상담과 관련해서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화재 용의자로 추정되



화성 외국인보호소 현장조사(2005. 07. 28)



구로동 이주민 지원센터 인권순회상담 실시(2006. 07. 23)

는 김 모 씨(사망자)에 대해서도 고충처리 상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원들과 민간용역경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형식적으로 실시되었고 그로 인해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수습과정에서도 화재사고 직후 일부 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채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였고, 사고 피해자 22명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정신과적 진료도 없이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여러 국가기관에 개선 권고(2007. 04. 09)를 하였다. 법무부 장관 및 국회의장에게는 보호의 법적 성격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보호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보호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 보호 절차에서 보호 외국인이 누려야 할 일반적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선 구제 후 통보' 원칙을 법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 외국인들에 대한 안전대책 및 실질적 훈련방안을 마련하고, 보호 외국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되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여수출입국사무소장, 노동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여수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보호 외국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하였다.

이후에도 인권위의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의견표명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2011년에는 외국인보호소 3곳을 방문조사하고, 2011년 11월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할 방안으로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이용 안내 강화 및 언어 제공, 물품 위생처리 강화, 인권친화적인 시설로 개선 등에 대해 정부에 권고하였다.

• 이주아동·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

이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 자녀의 수도 계속 늘어나, 이제 우리의 다문화 쟁점은 이주민의 인권문제에서 이주민 자녀의 권리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라 하더라도 학습권, 보육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개선을 권고하였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경우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 노출 우려 등의 이유와 함께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학습권 보장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2010년 1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2019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영유아보육법」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하였다. 2013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이주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 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18년 3월 22일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 외국인 차별 관행 개선 요구

인권위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난 2009년 국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E-2 비자 소지 외국인 A씨는 에이즈 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불발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제도’에 따라 대한민국을 당사국으로 개인 진정을 제기하였다. 개인 통보제도는 개인이 국제인권기준 등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취지를 국제적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검토를 통해 인권침해에 관한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제도이다. 2016년 9월 8일 인권위는 E-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에이즈 검사 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 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하여 현재 2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 관련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해 왔으나 이주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위 역시 이주민 관련 진정사건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단체의 상담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인권위는 2011년 ‘제1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2012. 02. 15)하였다. 제1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 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

인권위는 2019년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30개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2019. 09. 19)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쉽도록 개선,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의 공정성 강화 및 난민 처우 개선,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등이다. 인권위의 이주 가이드라인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었다.

(2) 난민

• 난민에게도 인권이 필요한 이유

전쟁과 테러, 박해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난민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하면서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 난민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의 비판이 일었다. 우리나라의 문화 성숙도나 경제



난민 인권보호 개선 방안 토론회(2005. 07. 14)

발전, 인권상황 등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또 난민신청을 한 뒤 1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데다, 불허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예 취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2006년 6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난민에 대한 정책 전반의 개선을 권고(2006. 06. 12)하였다. 우선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함에 따라 난민이 추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이익의 침해가 온다는 점에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난민신청자, 난민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난민신청자, 기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난민신청자 등에게 임시적 지위를 부여해 적법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도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난민인정 절차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난민신청자가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등에게 적절한 사회적 처우를 하기 위해 난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와 직업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난민 자녀의 교육과 보호,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도 권고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난민인정과 그 사회적 처우에 관한 근거 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난민 문제를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학계와 인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난민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출입국 업무가 갖고 있는 국가 중심적 시각을 탈피해 인권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권고였다.

• **난민신청 절차, 출국대기실 처우 개선해야**

출국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생겨 대기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 난민인정 신청심사 불허부 결정비율은 2013~2015년 3년 평균 33.9%, 2016년 4월 말 기준 51.9%이다. 이처럼 난민신청 심사에 회부되지 않는 사례가 많지만 많은 외국인은 불허부 결정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문서로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난민인정 심사를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시행령」의 난민인정 심사 불허부 사유를 형식적 사유로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불허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허부 통지를 받은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다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기본적인 처우를 제공할 것을 권고(2016. 08. 25)하였다.

• **난민이라 받는 차별에 대한 의견표명**

인권위는 난민신청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9. 10. 01)



노인학대예방의날(2019. 06. 14)

인권위는 2019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8월 8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이는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난민 심사 절차의 진행으로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협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급대안적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2019. 08. 29)하였다. 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2020년에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2020. 02. 17)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에 대한 의견표명>(2020. 11. 09)을 하였다.

4) 노인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지만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권위는 노인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정부에 지속해서 권고하였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보호 및 안전 개선을 요구하였다.

• **노인복지 정책 및 법 개선에 의견**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인의 소득·건강권·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인학대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2013. 01. 28)하였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한 공적 이전의 노후소득 대체율을 증대시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노인 계층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차 의료부터 종말기 케어(care)로 이어지는 노인친화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영양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노인 계층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것, △노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집중 취업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노인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강구할 것,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공급하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가구

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주택 개조 방안을 강구할 것, △자살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적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등이다. 피권고 기관들은 대부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왔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차기 예산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인권위는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노인복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기도 하였다. 2018년 4월 19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권교육 기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하였다. 인권교육 기관 지정 요건을 '인권교육 강사 1인 이상'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제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인권교육 기관의 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사람'에서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여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 기관 인력의 조건을 '인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요건 대신, '경력과 인권 지식이 입증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인권교육 강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인권교육 기관 지정 및 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를 인권교육기관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노인시설 내 노인인권 문제 수면 위로 끌어내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발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시설의 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의료인,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로 알려지면서 인권위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인권이 실현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힘썼다. 특히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권고하였다.

2016년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 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령 정비 이전이라도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권교육 강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2016. 06. 20)하였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조하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병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2020. 09. 10)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보호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노인의 특성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진정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2018년에는 2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노인요양원의 신체 구속 실태와 입·퇴소 과정, 종교의 자유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및 생활 관련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시설 내 CCTV 운영 실태 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2018. 12. 28)하였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노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98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고, 시설의 직원 및 거주 노인에 대한 설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의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치매노인 인권도 보호해야'...정부에 제도 개선 권고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는 2015년 기준 64만 8,000명에서 2024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0만 명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치매노인의 실종, 학대·방임은 물론 이들을 돌보다 지친 가족이 환자를 죽이는 간병살인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치매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시설 및 운영상의 차이가 크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치매노인을 신체적으로 구속하는 등 치매노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치매관리체계와 정부의 치매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치매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17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종 치매노인 단기간 일시보호 제도 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치매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확대, △치매환자 보호자의 치매관리사업 심의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을 권고하였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치매상담센터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경찰서,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 △치매의 예방 및 치매 관련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 등 치매상담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5) 여성

인권위는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회에 '자녀의 성 변경 제도 및 친양자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정부에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책임 관련 규정의 보완을 권고하는 등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보호 위한 지표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발견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지만 그동안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조기발견 자체가 어려웠다. 더욱이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유엔인신매매 방지 의정서」가 비준되고 12월 5일 자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인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2010. 04. 27)

권위는 「유엔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적 등에 따른 27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와 피해자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의료서비스 제공 등 15개의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표'를 만들었다. 인권위는 또 지표를 활용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2016. 06. 20)하였다. 인권위가 마련한 보호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실마리로서 역할을 하였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권고

문화예술계는 폐쇄적인 인맥 구조와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가운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아 인권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성희롱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함을 관련 지침에 명시, △(가칭)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신설, △신고사건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전담인력 확충,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되, 단체가 성희롱 방지 노력이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 등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표준계약서에 '(가칭)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분쟁해결의 조정기구로 포함하는 등 피해자가 예술활동

을 지속하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불법 낙태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낙태죄로 인해 낙태율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과 관련하여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등의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하여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2020년 11월 30일 인권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기에, 낙태를 비(非)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54년 형법상 낙태죄 제정 이후 67년 만인 2020년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로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낙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에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임신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것이 된다. 또한 의사가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의사 거부권'에 대한 법안도 아직 논쟁 중이기 때문이다.

6) 빈곤층

인권위는 빈곤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를 이유로 사회권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거권, 노동권, 아동권, 건강권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빈곤가정 단전·단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우리 사회에서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는다. 장애인·여중생 등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인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의 사건·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요금을 내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당해 왔다. 인권위는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2005년 실태를 파악하고, 전기와 물이 끊겨도 이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빈곤가구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다. 촛불화재 사망사고가 사회 이

슈가 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2005년부터 단전 대신 '전류 제한기'를 달아 시간당 일정량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인권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요금을 체납하면 전기·수도 공급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가구인지 여부를 파악해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선별된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재정을 통해 체납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때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것을 권고(2007. 11. 26)하였다. 설령 일반 체납자라 하더라도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는 단전이나 단수로 생존의 위협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요금 징수는 다른 법적 수단에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한전이 설치한 전류제한기에 의해 공급되는 시간당 220W만큼의 전력량으로는 최소 생활 보장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전력량을 재평가하여 공급량을 높이도록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즉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비 연체자에 대해 단전·단수할 수 있는 규정을 '아파트관리규약'에 넣어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관리비 징수와 단전·단수조치는 서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비 연체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단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강제철거 거주민 인권도 보호되어야

빈곤계층의 주거권과 관련된 영역 중에서 인권침해 정도가 특히 심각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강제철거이다. 국제인권규범은 무리한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는 부득이하게 강제퇴거를 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강제퇴거와 강제철거에 대한 기본원칙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퇴거와 강제철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강제철거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어서 강제철거가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기본원칙은 △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및 퇴거 예정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 공직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2009. 02. 12)하였다. 인권위는 2021년 3월 4일에도 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를 하였다. 이는 2009년 권고의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채,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 폭행이나 동절기 강제퇴거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주거 상실한 노숙인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빈곤계층 중에서도 노숙인의 삶은 더 열악하다. 노숙인 대부분이 생활시설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설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2006. 02. 21)

을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도 상당하다. 인권위는 빈곤으로 주거를 상실한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2013. 01. 09)하였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과밀화된 긴급 거처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안정 대책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 및 사회 복귀를 포함한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주택 보급 방안 강구도 함께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자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일자리 제공, 병원을 찾기 힘든 노숙인의 상황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확충,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들 각 기관은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상황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해 왔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심의 요청

2020년 겨울,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 김 모 씨는 부양의무자인 딸에게 연락하기를 극도로 꺼려 한 달에 25만 원 남짓인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을 거부하였다. 인권위는 방배동 모자사건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해 12월 28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러나 빈곤해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3만 명에 달하였고,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해서 완화되었고, 제1,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및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최소한의 의료보장조차 받기 어렵다. 이에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책임을 후순위로 하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20대 1인가구도 개별 보장해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능동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20대 청년 별도 가구 보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20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00년 6.4%(50만 7천 가구)에 불과하였던 20대 1인 가구는 2010년 11.6%(76만 3천 가구)로 늘었고, 2018년에는 14.6%(102만 가구)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권위가 지난 2019년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혼자 사는 20대 청년들의 빈곤율은 부모와 같이 사는 또래들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7.7%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9.3%)의 약 2배 정도 수치를 기록하였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봐도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19.8%)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8.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떨어져 살수록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청년들의 생계가 더 위협받고 있는데도 공적 보장제도는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0년 12월 28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들에 대해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국가가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7) 군대 및 교정시설

우리나라 군대와 교정시설은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의 의견표명과 권고를 통해 그간 가려져 있던 군대 및 교정시설의 인권문제를 사회 밖으로 공론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 군 복무 중 생긴 이명, 구제 권고

군에서 복무를 하다 보면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외부에서 자극이 없는데도 소리를 느끼는 이른바 '이명(귀울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이명은 군인을 괴롭히는 대표 질환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전역 군인의 연금 질환 유형 중 1~3위가 이명 또는 난청이며, 제대 군인의 약 9.5%에서 이명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이명 피해의 실태조사와 피해구제 방안이 절실한 이유는 이명이 정신건강까지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이명 증상에 대한 피해 현황을 국방부가 조사한 적은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이명 피해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실태조사와 군부대 청력보존 프로그램 실시를 권고하였다. 국가보훈처 장에게는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보상을 위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와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2012)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소음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해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각 군의 고소음 발생 부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소음측정 및 청력검사, 피해예방 교육, 관련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등 관련 대응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해 시행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해 왔다.

• 「군인복무기본법」, 군인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주장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이 2015년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인권위에 의견조치를 요청하였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군인복무 기본정책 심의 시 인권위와의 사전 협의, 군인복무정책심의



청주여자교도소 현장조사(2003. 10. 08)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2006. 02. 08)

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 사유 중 '정당의 당원' 삭제, 유아를 가진 모든 군인에 대한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사회단체 가입 허가 기준 수정, 고충심사 청구의 방법 수정,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상담 등의 인권위 이첩,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인권위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2016. 05. 12)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인권위의 의견표명 사안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군인복무 기본정책 심의 시 인권위와의 사전 협의, 유아를 둔 모든 군인에 대한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사회단체 허가가입 기준 수정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 의무복무 중 사고자 형제에 대한 과도한 징집 개선 촉구

인권위는 가족이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당하여 재해사망군인 또는 재해부상군인이 된 경우 다른 가족이 또다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가족들에게 가혹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2017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병역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병역감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권위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위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부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80~90명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매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인원이 11만 명 정도라고 할 때 그 비율이 0.07%에 불과하여 병역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

• 육군 GP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인권위는 2018년 11월 육군 GP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병들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GP 등 소부대에 근무하는 파견병사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상관리 실태 점검 및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2019년 4월 30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군 수사당국의 결론과 같이 판단하였으나, 사고 발생 전후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였다. 먼저 GP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 의한 군장검사를 거쳐 총기·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피진정 부대 측은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규정에 따른 보고 절차 없이 사망자를 근무 명령보다 하루 당겨서 GP 근무에 투입하였고, 평소 군복무 시 GP 근무 투입과 관련한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피진정 부대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GP 등 소부대 병력에 의한 신상관리 점검과 총기·탄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이 사건 사망자의 전공 사상 심사에서 부대 측의 관리 소홀 부분을 고려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육군 본부는 2019년 10월 인권위의 의견표명 취지에 맞게 「육군규정 120」을 개정하여 피파견 부대에서 신상관리기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열악한 교정시설 환경과 수용자 처우 개선 요구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교정시설에 대한 개선과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감자에 대한 인권 증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정부에 요구하였다.

2011년 수원, 해남, 소망, 서울남부 등지의 구금시설이 신축·이전·개축하면서 일괄 감시가 쉬운 사각, 오각 또는 육각의 빌딩 구조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는 수용자 관리 등은 쉽지만 운동시설, 여름철 거실 온도 및 습도, 채광 및 통풍, 악취 등 시설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도시형 고층빌딩 건물 형태인 수원·인천·울산 구치소 3개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2011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빌딩형 구금시설 시설구조의 인권보호기능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빌딩형 구금시설 내 수용자들이 운동과 관련하여 느끼는 만족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문제는 실외 운동공간 부족(38%), 실내 운동공간 부족(23.1%), 운동기구 부족(15.6%)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여름철의 높은 습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실외 운동장이 없는 빌딩형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에게는 일일 30분 이상의 실질적 운동시간을 부여하고, 실내 운동에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제공할 것, △빌딩형 구금시설의 거실 규모 및 수용 인원에게 맞게 냉방시설의 개체 수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빌딩형 구금시설 내에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 △수용자에게 별도의 식단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향후 신축하는 교정시설의 경우, 빌딩형 고층건물을 지양하고, 거실 내 채광·통풍 등 시설환경의 쾌적도를 높이고, 야외운동 및 수용자용 식당을 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 반영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2019년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혹서기·혹한기 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2019. 01. 16)하기도 하였다.

• 또다른 「사회보호법」인 「보호수용법」에 문제제기

인권위는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유사한 「보호수용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아동 성폭력 범죄, 상습 성폭력 범죄, 연쇄 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더라도 최장 7년까지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2014. 09. 03)하자, 인권위는 법 제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표명(2014. 12. 08)하였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제시한 피보호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보호수용시설을 외부 통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호감호제도처럼 단순 작업을 부과할 경우 최저임금의 보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 기타

• 결과 중심의 체육계에 스포츠 인권 화두 던져

우리나라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10만여 명의 초·중·고교 학생선수를 비롯한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19년 초 빙상과 유도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질적인 스포츠계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이 절실하였다. 인권위는 2010년 12월 6일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교육청 및 대한체육회에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과 그 취지에 맞는 종목별·공간별 등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제작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을 권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스포츠계 인권문제는 여전히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인권위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고 2019년 2월부터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정을 받았다. 2019년 10월까지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선수·지도자 보호 및 구제 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한 체육행정 주체들이 운영 중인 제도와 기구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처리에 한계가 있기에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체육계 폭력을 흔들림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서 하려면 인권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에 여러 정부기관과 대한체육회 등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체육계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위주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 근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2019. 01. 22)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문 체육인의 폭력 피해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가 스포츠에 대해 승패의 결과만을 중시하고 승리, 성공, 국위 선양 등을 우선해 온 편향된 인식에 그 근원이 있다.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스포츠를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시켰다.

• 푸제온 특허발명 강제실시는 국민 건강권 보호 방안

국민의 건강권도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사례도 있다. 푸제온은 일부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제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약품을 공급할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푸제온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하였다. 이에 2009년 6월 15일 인권위는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 국제인권기준 및 해외사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 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또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결국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최종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건강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 선거권 연령 기준 관련 의견표명

선거권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행법상 19세 이상으로 정해진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2013. 01. 17)하였다.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 수준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기에, 선거 목적 등에 따라 선거연령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선거권과는 성격이 다른 정당 가입이나 활동은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후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되었다.

• 공무 중 사망 비공직자 순직인정제도 개선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2017년 4월 13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였다. 더불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다른 비공직자에 대해서도 순직공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비공직자도 공직자와 동일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직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 인정은 공직자 신분 여부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힘써**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은 광복 이후 부랑아 강제수용시설로 사용되었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4,691명의 아동이 경찰과 공직자에 의해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되었다. 당시 선감학원 아동의 약 41%는 8~13세였는데도 강제노역에 시달렸으며,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열매, 들풀,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아동들은 선감학원 종사자 및 다른 아동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 및 구타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탈출 또는 사망하였고, 3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위는 이들이 겪었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생존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선감학원 사건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필요**

우리 사회 약자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인권위의 노력 덕분에 설립 초에 비해 사회 약자들의 인권문제는 점차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현안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사회 약자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사회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제5절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

1. 개관

20세기 후반에 펼쳐진 디지털 정보혁명은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통신·인터넷망의 확산에 힘입어 인터넷 검색기능과 뉴스, 블로그, 카페, 쇼핑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한 일명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방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유형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역시도 큰 결실을 거두어 유엔이 평가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2020년 기준 세계 2위).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 권리의 향상과 평등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정보사회의 고도화가 구현될수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나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지배 또는 권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보의 대량 집적과 활용, 통제, 격차 확대와 같은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들에 의한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과 오남용, 유출 문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감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도에 따른 격차 문제 등 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인권 의제들이 그것이다.

• **'정보인권' 개념 도입과 사회적 논의 확산**

정보기본권 또는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학계의 연구를 통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인권위 초기부터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였다. 인권위에서 2013년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에서는 정보인권을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얻어진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보인권의 유형은 크게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권,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정보인권 용어,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우리나라에서 정보인권 또는 정보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받아들여졌는지 명확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권리를 '정보기본권'으로 범주화하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 당시 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보인권 보호'라는 어젠다가 사용되면서 정보인권의 개념 도입 및 범주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가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인권위는 2003년 8월 19일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학계에서 정보기본권의 개념 연구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의 활동 과정에서 정보인권 개념이 현실의 쟁점에 융화되었으며, 마침내 인권위가 이를 공식적인 인권 개념으로 수용하게 된 것인바, 이는 새로운 인권 개념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모범적이고도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2003. 06. 24)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자 브리핑(2005. 05. 10)

정보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권은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내심(內心)의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 권리이다. 정보접근권은 국민 누구라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수집·전파·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의 자유나 알 권리를 뛰어넘어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이다. 정보문화향유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의 확대, 저작권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정보인권 관련 결정 총 170건 의결

인권위가 2002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의결한 정보인권 관련 결정례는 모두 175건이다(법령·제도 등에 대한 정책권고·의견표명과,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을 모두 포함). 결정례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결정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년간 정보통신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야

기된 사례가 그만큼 많았고, 정부나 국회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하여 인권위가 권고나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는 방증이다. 이 외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등에 관한 결정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정보인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총 10건이었고, 정책연구 용역은 총 7건이었다.

2. 주요 결정례

1) 정보프라이버시권

정보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는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대량 수집, CCTV를 이용한 모니터링 행위의 증가,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행태를 추적·분석해 기업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 증가, 지문·DNA 등 생체정보 수집이나 이용의 확대, 해킹사고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신 감청 급증 등이다. 1980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민의 실제 생활에서 사생활에 대한 인식도 낮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도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되지 않은 기본권이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감시나 감청, 피해 사실이나 피의 사실의 유포,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출 등으로 인권침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이에 인권위는 다양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 또는 다른 사인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권고>(2003. 05. 12)를 비롯해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2005. 02. 14),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대한 개정 권고>(2014. 04. 28)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용 분야에서 많은 결정례가 나왔다. 개인 정보를 가급적 폭넓게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정부(특히 수사기관·법집행기관) 및 사업자들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능한 한 폭넓게 보호받으려 하는 시민 및 소비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낳은 결과였다.



유전자정보 보호에 관한 토론회(2004. 09. 22)



지문 등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토론회(2004. 11. 23)

• NEIS 권고, 정보인권 영역 확장한 첫 사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과 집적,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단지 행정 효율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히 마련하지 않고 도입을 추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권고는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제권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인권 영역의 확장을 가져온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NEIS는 학생 지도 등에 필요한 학생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학교 내 서버에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던 것을 초고속 통신망을 통하여 16개 시·도교육청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적·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권위가 NEIS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여부, 법적 근거, 추진배경,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교육공직자 인사 영역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의 입력 제외로 인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학교에서 수집·작성된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타 기관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당시 학교장의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작성·관리권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는 이러한 정보의 전산화 또는 자료의 수집과 대학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해서는 사생활보호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 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에 집적·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NEIS의 집적된 정보 누출 시 우려되는 피해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정보의 누출에 비할



대전 인권시민단체와의 간담회(2003. 05. 26). 이날 김창국 위원장은 교육부의 NEIS 관련 인권위 권고안 수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바 없이 심각하다. 셋째, 교육 공직자 인사기록카드의 기록사항 중 호주 성명, 병역미필 여부, 혈액형, 재산관계 등은 인사의 과학화 목적과 무관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라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 원칙 등에도 반한다. 넷째, 계량화되고 획일화된 NEIS는 장래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 또한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2003년 5월 12일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기록 중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교육공직자의 재산사항, 호주사항 등 26개 항목은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며,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이전까지 생소하기만 하였던 정보인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 전반에 던졌고,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왔던 정책입안자에게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다.

• 아동과 청소년 정보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공

2005년 인권위가 발표한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련 의견표명>(2005. 03. 25)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정보인권의 범위를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거나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견표명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아동인권의 구현이란 점과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CCTV로 인한 개인 감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준 제시

인권위는 개인영상정보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서 다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발표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결정으로는 2004년 발표된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2004. 04. 19)를 들 수 있다. 이는 2002년경부터 서울시 일부 구에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검토된 것이다. 인권위는 같은 결정에서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회(2010. 12. 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인데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근거해 이의 설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CCTV 설치와 촬영은 범죄예방이나 수사를 위한 다른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에, 그러한 조치들로도 범죄예방·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권위가 제시한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은 2007년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반영되었으며, 더 나아가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도, 이러한 통합관제센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의 시설인데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특히 범죄 수사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요건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2018. 05. 03)를 발표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 주민등록번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고유식별 정보이지만, 그 구성방식이나 특성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인권체계에서도 지적되어 왔다(유엔 2008년 UPR 등).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2014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2014. 05. 26)를 발표하고, 주민등록 관련 행정사무와 사법행정 업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은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2005. 01. 18)



인권위·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시스템의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2016. 03. 18)

허가 법령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당연시하던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절차 마련, 주민등록번호 구성체계 변경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2)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권

인터넷의 발달은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개개인의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였지만, 타인의 인격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명예훼손, 모욕 등) 또한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유통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구축하였지만, 이는 또다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에 관한 토론회(2005. 08. 19)

•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 울린 ‘미네르바 사건’

국내에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부각된 대표적인 사례는 일명 ‘미네르바 사건’이다.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주목을 받던 한 인터넷 논객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후 해당 인물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2009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2009. 06. 08)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인권위는 「전기통신기본법」 해당 규정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행하는 모든 유형의 허위 표현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 ‘허위의 통신’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지적과 같은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2002년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 이후 이를 대체하여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대한 조항을 도입하려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안에 대하여 국가 행정에 의한 통제보다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2002. 08. 12)을 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2010년 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2010. 09. 30)를 통해 전달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는 대내외적으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적 기준과 흐름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의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 정보접근권 및 정보문화향유권

정보접근권은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방해제거청구권(정보격차 시정에 관한 권리 포함)으로 나뉜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발생하였던 침해의 대표적 사례들로는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의 불응을 통한 알권리 침해, 정보의 접근 제한 및 규제, 정보의 관리부실 및 폐기로 인한 침해 사례 등이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발생하였던 차별의 대표적 사례는 장애 및 병력에 의한 정보접근의 제한 및 불편, 노조원의 인터넷과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 및 제한, 신분에 따른 정보 접근성 제한 등의 사례가 있다.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문제 화두로 던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례는 온라인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 대한 것으로,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4. 12. 18),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2014. 11. 27) 등



정보격차와 사회적 차별에 관한 간담회(2005. 07. 26)

이 그것이다.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2014)에서 인권위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4)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노년층 사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기 및 화면설계 등 보편적 설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노년층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노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결정례들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보인권 역시 이러한 시대 변화에 걸맞게 보편적 다수의 권리에서 다양한 소수의 권리로 발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정보문화향유권은 웹 2.0에서 문화의 생산, 소비가 쌍방향으로 나타나고 개방, 공유의 정신이 가시화되어 실현됨에 따라, 이를 이유로 강화되는 지적재산권의 흐름과 이를 제한하려는 인권으로서의 정보문화향유권의 충돌문제로 이어져왔다. 정보문화향유권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국내의 중요 이슈들은 한미 FTA, P2P 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등 대부분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범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4)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정보기술과 인권침해 문제에 선도적 대응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Big Data) 등 미래 정보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에 많은 편리함과 유용성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신기술로 인해 인간 존엄성의 침해,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의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집적, 분석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포럼(2014. 06. 10)



'빅데이터 시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정보인권포럼(2020. 11. 17)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종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원칙들,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한 고지와 동의 등이 행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권위는 2016년경부터 이러한 미래 정보기술의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다.

• 신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보인권 문제 또한 중요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개선, 마케팅, 정책 수립 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인권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10. 13)을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9. 07. 22)에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가명정보 처리 조항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의견표명하였다. 또한 2020년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0. 04. 02)을 통해서 인공지능산업에서의 기본적 인권 및 인간존엄성의 보호에 대한 원칙, 인공지능으로 인한 편향과 차별 방지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결정은 인공지능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처음으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적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최초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의 의미는?

인권위가 2013년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는 정보인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기준, 국내 현황과 국가의 정책 방향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인권위는 보고서 발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회와 국내 및 국제 심포지엄을 몇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인권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가 하면, 정보인권 개념 정리를 위해 500쪽이 넘는 논문을 검토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각계의 노력으로 탄생한 《정보인권 보고서》는 기존의 개별적인 기본권과 단편적인 사례 중심의 논의를 탈피하고 국내·외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발간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았다.

•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

정보인권은 국민의 보편적인 삶과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권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회원 가입, 각종의 이벤트 참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리와 건물 곳곳에 있는 CCTV 촬영 등 우리의 모든 삶은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근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0년간 인권위의 정보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은 정보인권의 개념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여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보의 활용이라든지,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막론하고 인권의 보호보다는 효율성과 편리성을 앞세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정보인권 보호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제6절 차별 개선과 혐오 대응

1. 개관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회에 만연한 차별, 인권위법으로 명확히 규정

이러한 분위기에서 설립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차별행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가기구였다. 인권위가 규정한 차별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19개 사유(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유도 가능)를 이유로 3대 영역에서 제한·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3대 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구분하였다.

연령차별금지법 기자회견
(2009. 03. 17)



• 차별에 경종 올리는 권고로 사회인식 변화 이끌어

인권위 설립 초기에는 인권문제의 주된 사회적 관심이 인권침해 행위에 초점이 모여 있었고, 차별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인권위 설립 전에는 나이, 인종, 학벌,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문제가 발생해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위 출범 이후 차별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면서, 차별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것도 차별이로구나” 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준에 존재하던 다양한 차별금지조항들이 인권위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차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등을 시정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인권위가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결정례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 정책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장애·사회적 신분·출신 지역·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차별 사건들에 대하여 정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출범 초기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을 적극 나서고 있다.

•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구현할 평등법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대표적인 정책활동 중 하나였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대한 침해행위와 아울러 성별 등 19개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차별의 개념이나 유형, 그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인권위는 좀 더 적극적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출범 초기부터 외국의 차별금지 관련 법이나 각종 국제기준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3년 1월에는 학자, 법률가, 인권단체 등 각 분야의 차별 전문가 17명으로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2005년 10월에는 인권위원 4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다. 각계의 의견수렴과 자체 검토를 거쳐 2006년 7월 24일에는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권고법안은 제1장(총칙), 제2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3장(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차별의 구제)의 총 4개의 장, 43개 조로 구성되었다.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으로 개념화하고 차별의 사유와 영역을 정하였으며, 국가기관 등의 차별 예방조치 및 차별 시정 의무를 명시하였

다. 또한 권고법안은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는 장치로 인권위와 법원의 구제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2007년 10월 2일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제정 이유를 밝히며, 병력(질병 이력), 학력, 출신 국가와 민족, 성적지향 등 20개 차별금지 조항을 설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었다. 그러나 2007년 최초 입법 시도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재계의 우려가 더해져 실패하고, 이후로도 총 7차례(정부 입법 1번, 의원 입법 6번)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번번이 좌초되었다.

인권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11년 10월 27일에는 「차별금지기본법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차별금지법안」에 담겨야 할 내용에 관하여 재차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3년 5월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의 세부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법무부 주관 국정과제로 포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2016년 7월, 제3기 인권NAP(2017~2021) 권고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2020년 6월에는 한 발 나아가, 내·외부 전문가로 쟁점 검토 팀을 구성·운영하여 그간의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반영한 시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의견표명(2020. 06. 30)을 하였다. 인권위 의견표명 이후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인권위의 권고 시안에 기초한 「평등법」을 발의하였다. 인권위가 과거의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란 이름을 앞세운 이유는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한다는 목적 및 법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2007년 첫 상정 당시와 달리 정부가 아닌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것도 입법권자인 국회가 인권위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거쳐 제정을 주도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인권위는 「평등법」 시안에서

「평등법」 관련 개신교계 원로 초청 간담회(2020. 10. 06)



차별 개념(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표시·조장 광고), 차별 사유, 차별 영역 및 차별 예외 등 차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는 혐오표현이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공고히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차별 영역에서의 괴롭힘을 차별 개념에 포함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배제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할 경우 비차별 및 소수자 보호 원칙을 견지할 의무도 규정하였다. 각 차별 영역에서 규율되는 차별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권위의 시정 권고 및 소송 지원, 법원의 차별 시정조치 명령 및 가중적 손해배상 등 차별 피해의 구제 실효성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도 규정하였다.

2021년 6월에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입법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인권위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소수자의 극단적 선택, 고용·외국인·여성 차별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결과였다. 실제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응답자는 88.5%를 넘어섰다. 인권위는 2021년 6월 21일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평등법」 제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다. 제 21대 국회가 먼저 답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권고안, 「평등법」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시정 의무 및 차별 금지, 예방조치에 대한 규정, 불합리한 차별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 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반영한 최초의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이제 그만

그동안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남성보다 여성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반세기가량 성차별·반(反)여성인권의 상징이던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여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사회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위가 2013년 의견을 표명한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차별 관행>(2013. 11. 13)은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외조부모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에서 차별이 발생한 일이었다. 인권위는 차등 대우하는 것은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년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가 차별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근로자의 외조부모상(喪)에 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유엔의 각 국제조약기구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해왔다.

-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평등법」 제정 권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2015), 사회권규약위원회(2009, 20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 2018),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03, 2007, 2012, 2019), 아동권리위원회(2012, 2019), 인권이사회 인권상황 정기검토(2008, 2012, 2017)
- 2020년 6월 30일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우리 정부에게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교훈을 토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촉구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포럼(2008. 11. 27)



제1차 성평등 포럼(2009. 02. 14)

해서는 조부모상과 달리 경조휴가·경조비를 주지 않거나 적게 책정하는 등 모계 차별적인 방식으로 경조휴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업에 경조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할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간에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할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회원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표명하였다. 이는 최근 성별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남성 자녀가 없는 외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달라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성평등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방송평가 항목에 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 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2018. 12. 14)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송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막고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 학벌주의 부추기는 사회에 제동 걸어

성차별, 고용차별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이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학벌에 대한 신뢰는 거의 맹목적이라 할 만큼 견고하다. 2004년 인권위가 진행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18.5%)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진행된 2019년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1%가 학력·학벌 차별을 겪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특정학교 중심의 진학 홍보는 이른바 ‘명문학교’의 진학을 가문의 영예나 출신 학교의 자랑으로 인식해 온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주며,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09년부터 특정학교 합격 현

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 사건 80여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 학교별로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게시 철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특정대학 합격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계속 진행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에 의한 학벌 차별문화 조성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2012. 10. 31)하였다. 전국 각 도 및 광역시(서울특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교육감들에게는 각급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급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전국의 중등 학교장에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의견표명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차별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한국 사회의 학력·학벌 차별에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 혐오표현 난무하는 정치권에 예방 강조

최근 몇 년 사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과 차별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회 공동체의 존립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핵심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2019. 11. 25)을 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진전시킬 책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동시에,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차별문제, 「평등법」 제정 시급

인권위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이 존재한다. 2017년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오범죄를 걱정하는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의 비율이 80~90%에 이르렀다. 혐오와 차별이 어찌다 겪는 일이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며 실존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집단이나 그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Hate Speech)이 온·오프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면서 규제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혐오표현과 그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차별 구조, 표현을 넘어선 혐오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별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 제정이 시급하다.

제7절 북한인권 증진

1. 개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은 생존권뿐만 아니라 자유권을 포함한 북한인권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유럽연합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도 활발해졌다. 인권위에도 북한인권에 대한 진정사건이 접수되었고, 인권위 차원에서 북한인권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2003년 4월 28일 인권위 제40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설기구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원칙과 정책방향을 대외적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에는 인권위 내에 북한인권 팀을 두고 더 전문화된 북한인권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인권에 대해 인권위는 정책권고 15건, 의견표명 15건을 하였으며, 27회에 걸쳐 성명, 논평을 발표하였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현황 파악을 위해 2005년 처음 시작한 실태조사는 18회 이루어졌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는 국내외에서 17차례 진행하였다. 북한인권을 다루기 위해 2005년 구성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79회 개최되었으며,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08년 발족된 북한인권포럼은 4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권위는 2021년에는 비상설기구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북한인권포럼을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상설기구로 북한인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인권위가 2011년 10월 24일 정부에 제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북한인권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권고안을 통해 인권위는 북한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은 물론,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인권위는 북한 내 인권 상황,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증진과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



북한인권 증진 정책 로드맵 관련 기자회견(2010. 12. 13)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첫 진정 접수(2011. 03. 15)

태, 국군포로·납북피해자·이산가족의 인권문제 등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주요 결정례

1)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 ‘생존권은 인권의 본질’…북한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북한 주민의 생존권은 인권의 본질적 문제이다. 인권위는 2008년도에 들어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및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식량난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연이은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의 감소, 외부 지원 식량 중단, 국제 식량 가격 폭등 등의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사회단체와 정당, 정부기관과 검토·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2008. 09. 30)하였다.

•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 원칙

2006년 12월 11일 표명한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접근 원칙, 주요 정책의 방향이 포함되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향후 인권위의 활동계획도 나왔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원칙으로는 인권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활동이 비판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2016. 12. 18)



조언과 협력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북한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재외 탈북자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객관적이고 철저한 정보 수집,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등이다.

• 북한인권 개선 위한 중장기 국가정책 제시

2011년 10월 24일 인권위가 정부에 제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은 정부에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권고였다. 인권위는 2010년 실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 권고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북한인권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관련 부처와 공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민간의 대북 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2015. 01. 26)하였고,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2010. 12. 06) 등을 발표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재외 탈북자 포함)의 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인

북한인권 영역에서 자주 보이는 성명과 논평, 이유는?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북한인권을 중요한 인권 사안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북한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전문위, 2006. 12. 11)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 관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와 25조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피권고 기관이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권고나 의견표명 방식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 논평을 발표하는 형태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쳤다.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논평>(2010. 11. 25),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2015. 05. 12),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0. 09. 28) 등이 대표적이다.

권위는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법상 난민 지위 보장 방안, 국내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한 신변 처리 간소화 방안, 북한이탈 여성과 제3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실용적인 국내 정착 프로그램 운영,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 등도 권고하였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 겪은 북한이탈주민에 건강권 보장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은 생명을 걸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고 있으며, 성공하여 중국에 체류하더라도 강제북송의 위험으로 항상 가슴을 졸이는 극도의 공포에서 살고 있다. 국내 입국 이후에도 정신적·신체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로 대인관계 회피, 불안감 등을 겪으며 취업활동 등 안정적인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에게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2011. 11. 24)하였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2012. 12. 06)도 하였다.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에게 하나원에 정규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강화를 권고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돕는 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적 빈곤,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심각한 경우 제3국행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재입북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기존에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정착금 지급, 주거지원, 취업 지원 등을 지원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을 권고(2013. 10. 17)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3)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남북분단에 의한 인권현안 해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의 문제는 분단과 전쟁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문제보다 정부의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영역이다. 인권위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분단과 전쟁, 납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이들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구체대상 남북피해자의 확대, 이적행위자 규정의 구체화, 피해 당사자의 구제심의위원회의 참여 보장 등을 담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06. 07. 27)과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견표명(2012. 10. 11)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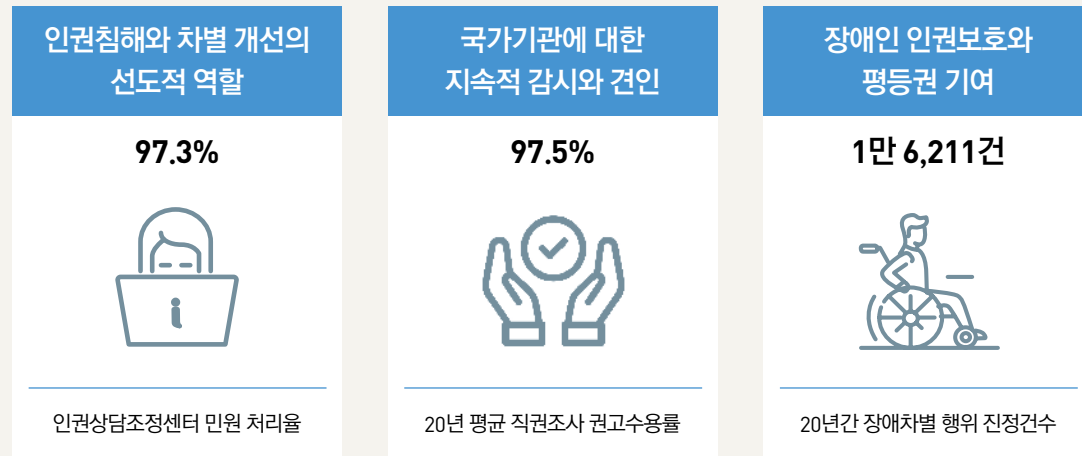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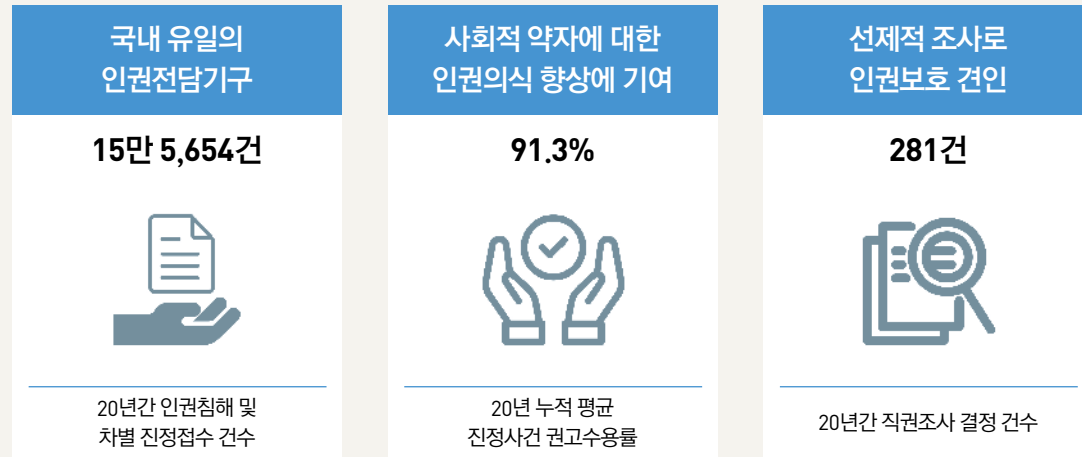
• 남북관계 특수성 한계, 국제사회 연대 강화로 극복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위 내에서도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영역 중 하나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논의는 인권의 보편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동북아 정세의 측면에서 볼 때 자칫 사회적 갈등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에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아래 북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평화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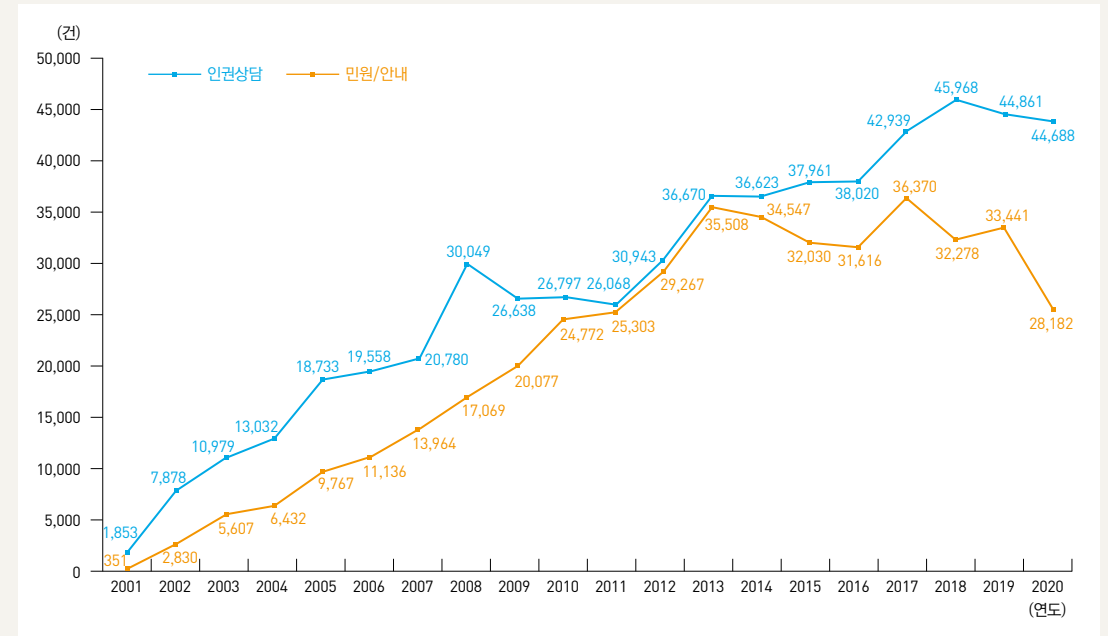


최근 북한인권 국제동향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전략 토론회(2014. 11. 27)

제2장 조사와 구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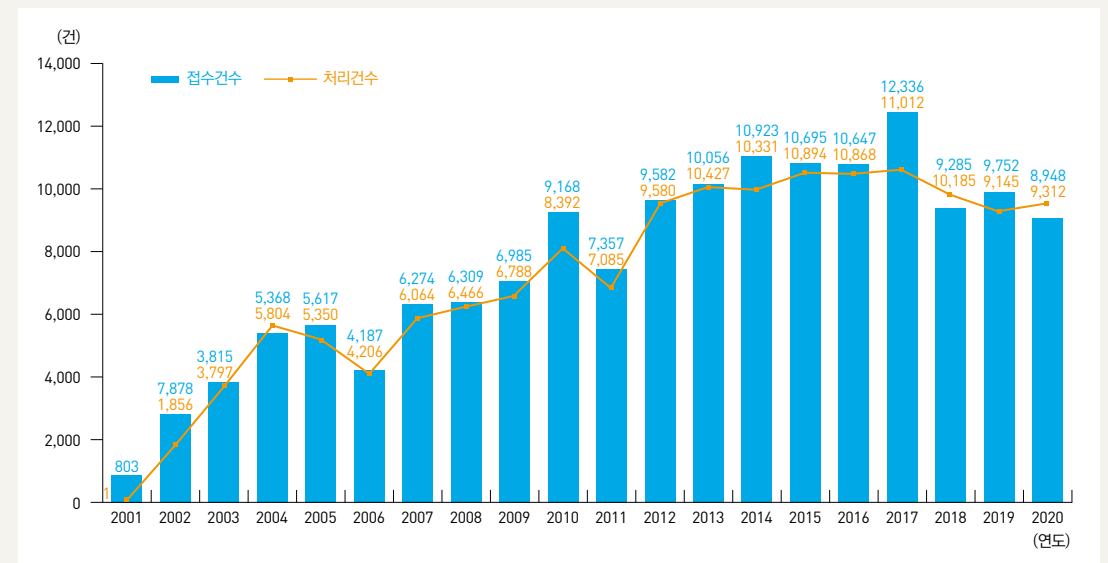


●● 인권상담, 민원·안내 누적 100만 건 돌파 ●●



[그림 3-2-1] 연도별 인권상담, 민원·안내 추이

●● 2013~2018년 연간 약 1만 건 이상의 사건 처리 ●●



[그림 3-2-2] 연도별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영역별 주요 성과

공권력에 대한 감시 역할 강화

- 여의도 농민시위 조사·구제(2005),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 등 인권침해 개선권고(2008) 등 경찰의 과잉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
- 전·의경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방지 위한 직권조사 및 제도 개선권고(2007), 의경 백혈병 사망사건(2011), 유치장 내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2018) 등 제도적 변화 근거 마련
- 수사과정의 고문행위에 대한 직권조사(2010) 등 수사의 투명성 향상 및 성과 위주의 수사방향 재고 견인
- 20대 여성 살해사건 112신고센터 대응 관련 직권조사(2012) 등 경찰 내부 시스템 개선

경찰의 부당한 수사관행 개선

- 심야조사 관련 인권침해(2007), 피의자 신문과정 시 변호인 메모 금지(2016) 등 피의자 권리보호 향상
- 부당한 불심검문(2004), 강제 임의동행 관련 인권침해(2007),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 관련(2007)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016), 경찰의 부당한 내사에 의한 인권침해(2018) 등 개인의 기본권 보호

검찰의 공권력 남용 제재를 통한 인권 개선

- ○○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2003), ○○지검 가혹행위(2004) 등 검찰 내 폭력행위 근절 분위기 형성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2004), 검찰의 부당한 압수물 폐기(2018) 등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주의 경고
- 구속사실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2005), 대검찰청의 부당한 강제소환에 의한 인권침해(2014), 부당한 출국 금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2020) 등 검찰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의식 향상

- ○○훈련소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2005),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2011), 해병대 선임병사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2016) 등 시정권고로 군 인권 향상에 기여

- 해병 상습폭행 은폐사건 직권조사(2011), 군부대 내 인명사고 은폐에 의한 인권침해(2017) 등 군대의 투명성 및 개방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근거 마련
- 여군 중령 강제퇴역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2008),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 처분의 부당성(2020) 등 여군 관련 불합리한 처우 개선
- 군내 불온서적 차단 관련 의견제출(2009), 군대 부사관의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개선권고(2013), 훈련병 식발로 인한 인권침해(2019) 등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

구금시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 개선

- 소거실 수용환경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2008), 사망사건 관련 의료조치 미흡(2016) 및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2018) 등 구금시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 개선
- ○○구치소 수감자 사망사건(2005), 구금시설 내 부당한 CCTV 계호(2016) 등 구금시설 내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장치 마련
- 수용자 알 권리 침해(200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2004),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 검열 및 징벌(2018) 등 구금시설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다수인보호시설의 생활인 보호 및 인권 개선

- 가혹행위 등에 대한 인권침해(2009),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폭행(2013),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노동력 착취(2016), 노인복지시설 강제노동 및 금전 착취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2014)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유린 구제 강화
- 부당한 정신병원 계속 입원 관련 개선권고(2007),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2015) 등 인권 보호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2016) 등 아동인권 보호·증진

아동이익 최우선 및 학생인권 증진

- 교복 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 신상 노출(2009),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내 게시에 의한 인격권 침해(2013), 교사의 체벌 및 반성문 작성 강요(2020) 등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

- 일제고사 반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2010),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2017) 등 학생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학생인권 증진 건인

국가기관 업무 관련 인권 개선 건인

- 지문 날인에 의한 인권침해(2008), 유가족 국회 출입금지(2010)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근거 마련 촉구
-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 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2017),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2018)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경종
- 이주노동자 과잉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2009),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소득 지원 시 이주민 배제(2020) 등 이주민·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 및 인권해석 확장에 기여

지속적인 성차별 권고로 성평등 문화 확산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 2006),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2019),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차별 및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2020) 등 성차별 관련 제도 개선
- 성희롱 사건 사례집 발간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기여
-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2004),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인권침해 사건(2008) 등 인권 사각지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사회 전 영역의 다양한 차별 개선

-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2005), 용모를 이유로 한 공군장교교육대 퇴소 처분(2017), 경찰공무원 채용 및 의무경찰 모집 시 내반슬(오다리)에 대한 지원 제한(2020) 등 차별적 관행 개선
- 과체중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2010),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 차별금지(2020) 등 사회 전반의 평등의식 고취
- 나이에 의한 고용차별(2006), 신인 코미디언 공채 시 응시연령 제한(2010) 등 나이차별 개선 기여
- ○○대학교 교수 채용 시 종교차별(2007),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차별(2019),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2020) 등 종교 관련 불합리한 고용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2006), HIV 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2019), 암 수술 병력을 이유로 한 해외파견자 선발 차별(2019) 등 병력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보호 건인

-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사망사고 관련 개선권고(2002),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금지(2006) 등 「장차법」 근거 마련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2009),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2019),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뉴스 한국수어통역 미제공(2020) 등 장애차별 제도 개선권고
-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차별(2016),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2017) 등에 대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건인
- 온라인 쇼핑물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2019),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2020) 등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 기여

- 선거방송의 수화통역 제도 개선(200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 침해(2014) 등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2015), 학생 승마체험사업에서 발달장애학생 차별(2019) 등 장애인 차별 개선

총론

1. 개관

• 인권침해 진정 구급시설 28.5%, 다수인보호시설 24.4%, 경찰 19.4% 순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진정건수는 총 15만 5,654건으로 이 중 인권침해가 11만 8,176건(75.9%), 차별행위는 3만 5,052건(22.5%)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접수 현황을 피진정 기관별로 살펴보면 구급시설(28.5%), 다수인보호시설(24.4%), 경찰(19.4%) 등 세 기관이 전체 인권침해 진정의 72.4%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중앙행정기관 6,937건(5.9%), 교육기관 6,660건(5.6%), 지자체 4,864건(4.1%), 검찰 3,336건(2.8%), 공공기관 2,744건(2.3%), 군 2,364건(2.0%)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진정은 인권위 설립 이후 2002년 2,214건이던 것이 2020년 6,539건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 장애사건 진정, 차별행위 진정의 46.3% 차지

차별행위 관련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사유는 장애로 46.3%(1만 6,221건)에 이른다. 장애차별과 관련해서는 2002년 20건이던 진정접수 건수가 「장차법」이 제정된 2007년 256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2006년, 116건)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8년 640건, 2009년 725건, 2010년 1,69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차별사건으로 분류하는 성희롱은 차별행위 전체 진정의 9.6%(3,380건)를 차지하여 장애 관련 사건 다음으로 많다. 인권위 출범 이후 2004년까지 매년 한두 건에 그치던 성희롱 관련 진정은 차별시정기능이 인권위로 일원화된 2005년 60건을 시작으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200건을 상회하고 있다. 그 외 차별행위 관련 진정은 사회적 신분 2,983건(8.5%), 나이 1,958건(5.6%), 성별 1,386건(4.0%), 학력·학벌 705건(2.0%), 병력 527건(1.5%), 성적지향 392건(1.1%) 등 순으로 접수되었다. 차별행위 관련 진정은 2020년 2,424건으로 2002년 136건 대비 약 17.8배 증가하였다.

• 인권위 진정사건 권고수용률은 91.3%

2021년 6월까지 인권위가 처리한 진정건수는 총 15만 2,216건으로 집계되었다. 권리구제(인용, 조사 중 해결 포함)는 총 2만 2,824건 이루어졌으며, 권리구제율은 15.0%이다. 「인권위법」은 진정 취하를 각

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처리건수 15만 2,216건 중 진정취하 건수 5만 4,450건을 제외하면 실질 구제율은 23.3%이다. 인권침해 권리구제율은 11.5%, 차별행위 권리구제율은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27.7%이다.

한편, 인권침해 사건 권고수용률은 집계를 시작한 2012년 87.9%에서 2021년 6월 91.3%로 증가하였다. 인권침해 권고수용률이 94.2%이고, 차별행위 권고수용률은 87.2%를 기록하고 있다.

• 직권조사 권고수용률은 97.5%

인권위는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2004),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2005),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2005) 등 성희롱, 군, 장애인시설, 구급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2021년 6월까지 총 281건(인권침해 152건, 차별행위 129건)의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시정조치 등을 권고한 사건은 총 206건(인권침해 139건, 차별행위 67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권고 157건, 고발 30건, 징계권고 8건, 수사의뢰 7건, 의견표명 1건, 합의중결 1건이고, 권고수용률은 97.5%이다.

직권조사는 인권위 설립 초기인 2004년(37건)과 2005년(84건) 가장 많은 사건을 개시 결정한 가운데 매년 10건 전후의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방문조사 104건, 권고수용률 97.8%

구급·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문조사는 200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625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104건을 실시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권고 49건, 수사의뢰 1건, 의견표명 7건을 결정하였고, 나머지는 조사종결 등 처리하였다. 방문조사 대상 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110개소)과 노인복지시설(71개소), 아동복지시설(52개소) 등 다수인보호시설(338개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군영창 등 구급시설 225개소, 외국인보호시설 64개소 등이다.

시설 방문조사는 인권위 출범 이후 매년 20~30개소 전후로 이루어지다가 2017년 80개소로 대폭 늘린 후 2020년까지 매년 약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방문조사의 권고수용률은 97.8%에 달한다.

• 긴급구제 79건 심의, 33건 구제조치 권고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인권위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2021년 6월까지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대상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사건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2003), 쌍용자동차 농성장 식수 및 의약품 반입(2009),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2010), 금전·노동 착취당한 지적장애인(2017),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중단(2018),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2019) 등 총 79건이며, 이 중 33건에 대하여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결정하였다.

2. 인권침해 조사·구제 활동의 성과

• 국가공권력 감시 및 견제

인권위는 출범 초기 ‘○○지검 피의자 사망 및 가혹행위’(2002) 직권조사와 ‘○○○ 농민시위 사망사건’(2005),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2005) 등을 통해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2010년에 발생한 ‘○○경찰서 고문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고문행위를 밝혀내어 경찰서 형사과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수사 투명성 제고 및 성과 위주의 수사방향 개선을 건언하였으며, ‘의경 백혈병 사망사건 직권조사’(2011)는 이후 의경제도 폐지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 외에도 인권위의 권고로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심야조사, 조사중 메모 금지 등 검·경의 부당한 수사과정에 대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어냈다.

•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수용자 1명에게 허락된 공간이 3.3㎡(1평)가 채 못 되는 구금시설의 처우 및 환경과 관련, 인권위는 2008년(소거실 수용환경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과 2016년(○○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의료조치 미흡 등), 2018년(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의 직권조사를 통해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개선권고 등 인권상황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수용자의 건강권, 접근교통권, 사생활 보호, 통신권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지내는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인권위는 다수인보호시설 내 장애인, 노숙인, 노약자, 아동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출범 직후 순회상담과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설 생활인들의 권리구제에 힘썼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며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정신의료 시설 강제 입·퇴원 등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강제노동, 금전 착취 등에 의한 인권침해(2014), 노숙인요양시설에서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2015) 등의 권고를 통해 사회의 이면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인권위는 선임병이나 간부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이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5년에 연달아 터진 일명 ‘인분 사건’과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하여 ‘해병 상습폭행 은폐사건’(2011)과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2011) 직권조사,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7개 부대 직권조사(2015), ‘해병대 선임 병사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2016) 등 주요 사건에 긴밀히 대응하여 군대 내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인권위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과거에는 은폐되거나 축소되었던 군대의 인권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인권친화적 인 병영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도 인권위는 여군 인권 증진과 군 인권의식 향상, 군대조직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

2005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는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엎으며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국제기준과 아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인권의 주체이고,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인권위는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인권을 유보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으며, 더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 내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성적 우수자반, 일제고사, 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을 폐지하는 데 일조하며 아동·청소년 인권의 눈부신 성장을 건언하였다.

• 국가기관·지자체 인권 체제 개선

인권위는 ‘판사 막말 인권침해 개선권고’(2010), ‘유가족의 국회출입 금지’(2010),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사건’(2018),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강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2019),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2019) 등, 지난 20년간 인권전담기관으로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곳이면 대통령, 국회, 국정원, 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부당한 인식과 관행 등을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권고를 통해 ‘관’ 중심으로 움직이던 국가기관의 행정체제를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돌려놓는 데 기여하였다.

3. 차별행위 조사·구제 활동의 성과

• 차별의 기준 제시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르므로 특정 색이 ‘살색’일 수 없는 노릇인데도, 2002년 인권위가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이라는 표현은 차별”이므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리기 전까지 ‘살색’을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2005년 인권위가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 1번부터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시정을 권고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인권위는 오랫동안 관행이나 상식으로 여기던 행위에 대해 차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고용의 공정화

인권위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성별 분리 채용을 비롯, 입사지원서의 종교·출신지역·가족관계 및 재산·결혼 여부·질병·신장·체중·혈액형 등 업무와 무관한 차별적 조항을 없애는 데 일조하였다. 특히 2003년 인권위가 두 차례에 걸쳐 50명 이상을 채용한 대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

용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대부분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이, 학력 등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는 신입사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없애는 '열린 채용'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인권위는 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2005), '과체 중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2010),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2006)과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차별'(2020)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인권위는 고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한 고용절차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차별 관련 제도 정비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 및 근거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권고를 통해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근로자의 모집·승진·해고·퇴직·전보 시 연령제한을 두지 못하게 한 「연령차별금지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장차법」과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인권위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제·개정된 법이다.

• 장애인 인권 보호·증진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정보통신시대에 필수적인 방송접근권 및 웹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인권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4. 주요 통계

[표 3-2-1] 유형별 진정접수(2001~2021. 06)

(단위: 건, %)

구분	합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건수	100%	건수	100%	건수	100%	건수	100%
계	155,654	100.0	118,176	76.2	35,052	22.2	2,426	1.6
2021. 06	4,706	100.0	3,541	75.2	1,115	23.7	50	1.1
2020	8,996	100.0	6,539	72.7	2,424	26.9	33	0.4
2019	9,755	100.0	6,977	71.6	2,726	27.9	52	0.5
2018	9,285	100.0	7,053	76.0	2,207	23.8	25	0.3
2017	12,336	100.0	9,133	74.0	3,169	25.7	34	0.3
2016	10,647	100.0	8,160	76.6	2,433	22.9	54	0.5
2015	10,695	100.0	8,499	79.5	2,188	20.5	8	0.1
2014	10,923	100.0	8,708	79.7	2,197	20.1	18	0.2
2013	10,056	100.0	7,458	74.2	2,495	24.8	103	1.0
2012	9,582	100.0	6,946	72.5	2,549	26.6	87	0.9
2011	7,357	100.0	5,425	73.7	1,803	24.5	129	1.8
2010	9,168	100.0	6,460	70.5	2,681	29.2	27	0.3
2009	6,985	100.0	5,282	75.6	1,685	24.1	18	0.3
2008	6,309	100.0	4,892	77.5	1,380	21.9	37	0.6
2007	6,274	100.0	5,067	80.8	1,159	18.5	48	0.8
2006	4,187	100.0	3,335	79.7	824	19.7	28	0.7
2005	5,617	100.0	4,199	74.8	1,081	19.2	337	6.0
2004	5,368	100.0	4,628	86.2	389	7.2	351	6.5
2003	3,815	100.0	3,041	79.7	358	9.4	416	10.9
2002	2,790	100.0	2,214	79.4	136	4.9	440	15.8
2001	803	100.0	619	77.1	53	6.6	131	16.3

[표 3-2-2] 진정접수

1)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접수 (단위: 건, %)

구분	합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중앙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118,176	100.0	3,336	2.8	22,984	19.4	266	0.2	2,364	2.0	6,937	5.9	102	0.1	1,370	1.2	1,294	1.1
구분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정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 관리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기타	
합계	4,864	4.1	2,744	2.3	6,660	5.6	33,676	28.5	28,882	24.4	1,103	0.9	262	0.2	300	0.3	1,032	0.9

2) 사유별¹ 차별행위 진정접수

구분	합계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희롱	용모·신체조건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5,052	100.0	1,386	4.0	160	0.5	378	1.1	262	0.7	3,380	9.6	394	1.1	16,221	46.3	1,958	5.6	2,983	8.5	641	1.8
구분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역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벌·학력		병력		기타	
합계	18	0.1	125	0.4	19	0.1	244	0.7	200	0.6	70	0.2	262	0.7	392	1.1	705	2.0	527	1.5	4,727	13.5

[표 3-2-3] 진정 처리결과²

1) 진정 처리결과³ 총계 (단위: 건)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152,216	8,603	44	73	5,427	124	183	20	20	2,710	2	143,162	96,083	1,743	44,918	418	451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중해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115,723	5,294	36	15	3,077	111	146	20	10	1,877	2	110,159	73,592	1,568	34,663	336	270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구분	합계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34,103	3,282	8	58	2,328	13	37	10	828	30,711	20,309	155	10,168	79	110		

1 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차별행위의 사유를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성희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모든 진정사건 처리 통계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취소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종결 처리한 진정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3 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법 제33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제1항 및 제2항, 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 법 제39조(진정의 기각), 법 제40조(합의의 권고), 법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2011. 12. 08 폐지), 제26조(합의)(이하 같다).

[표 3-2-4] 조사중 해결⁴ 및 구제율⁵

1)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총계 (단위: 건, %)

구분	전체 처리건수(A)	권리구제					권리구제율(%) B/A
		합계(B)	인용	조사중 해결			
				소계	각하	기각	
합계	152,216	22,824	8,603	14,221	10,186	4,035	15.0

2) 인권침해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구분	전체 처리건수(A)	권리구제					권리구제율(%) B/A
		합계(B)	인용	조사중 해결			
				소계	각하	기각	
합계	115,723	13,332	5,294	8,038	6,803	1,235	11.5

3) 차별행위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구분	전체 처리건수(A)	권리구제					권리구제율(%) B/A
		합계(B)	인용	조사중 해결			
				소계	각하	기각	
합계	34,103	9,457	3,282	6,175	3,375	2,800	27.7

[표 3-2-5] 권고수용

1) 진정사건 권고수용 총계 (단위: 건, %)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5,630	5,098	3,972	685	441	532	91.3

2)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3,233	3,008	2,504	329	175	225	94.2

3)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2,375	2,068	1,450	354	264	307	87.2

4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노력 또는 증제, 상세한 설명 등으로 진정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등 진정 당사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중 해결'로 처리하고 있다.

5 '구제율'은 2011년 11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개선방안' 논의 시 결정한 사항이다.

4)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22	22	18	2	2	-	90.9

[표 3-2-6] 긴급구제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미상정						상정		
			소계	미상정 조사중해결 ⁶	긴급구제 요건 불비	합의종결	조사중해결 (각하)	각하	소계	긴급구제권고 부결	긴급구제권고 결정
합계	70	70	46	15	20	4	4	3	24	16	8

[표 3-2-7] 연도별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화신 현황

(단위: 건, %)

구분	피권고 기관수(A)	검토중 (90일 내)(B)	화신		미화신	90일 이내 화신율 ⁷
			90일 이내(C)	90일 초과		
합계	3,870	213	2,347	1,071	69	67.3

[표 3-2-8] 직권조사⁸ 결정·처리 및 권고수용

1-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총계

(단위: 건, %)

구분	결정건수	종결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의뢰	권고	고발	징계권고	합의종결	의견표명	소계	기각	직권조사중 종결
합계	281	277	206	7	157	30	8	3	1	71	7	64

1-2) 직권조사 권고수용 총계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165	157	87	66	4	8	97.5

2-1)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구분	결정건수	종결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의뢰	권고	고발	징계권고	의견표명	합의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중 종결
합계	152	148	139	5	107	20	6	1	-	9	-	9

6 2020년 8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긴급구제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긴급구제번호가 발급된 사건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긴급구제 요건이 미비된 경우(요건불비)나 현장조사에 따라 긴급구제 사안이 해소된 경우(미상정 조사중 해결),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고 있다.

7 90일 이내 화신율 = $\frac{90일\ 이내\ 화신건수}{(피권고기관수 - 검토중(90일\ 내)건수)} \times 100$

8 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2-2)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113	107	48	58	1	6	99.1

3-1)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구분	결정건수	종결건수	인용							미인용		
			소계	수사의뢰	권고	고발	징계권고	의견표명	합의종결	소계	기각	직권조사중 종결
합계	129	129	67	2	50	10	2	2	1	62	7	55

3-2)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52	50	39	8	3	2	94.0

[표 3-2-9] 방문조사⁹

(단위: 건)

1)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구분	결정건수	종결건수	처리결과				
			권고	의견표명	방문조사종결	직권조사의결	수사의뢰
합계	104	97	49	7	40	-	1

2) 방문조사 권고수용

구분	권고건수	권고수용 여부				검토중	권고수용률 (A+B)/C
		소계(C)	수용(A)	일부수용(B)	불수용		
합계	49	46	29	16	1	3	97.8

9 법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경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경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2만 2,984건으로 총 접수건수(11만 8,176건)의 19.4%를 차지한다. 이는 교정시설(28.5%)과 다수인보호시설(24.4%)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경찰사건 진정은 2013~2017년에 1,300~1,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후로도 매년 1,100~1,200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 물리적 폭력은 감소, 수사절차 위반은 증가

지난 20년간 경찰 관련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유형을 보면,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수사절차 위반, 강압수사 등이 전체 경찰사건의 약 70.9%를 차지하였다. 주목할 것은 인권위 설립 초기 30%를 상회하던 물리적 폭력이 2020년에는 약 18%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인권위 초기에 10% 미만이던 수사절차 위반사건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적인 침해 내용은 체포 이유 등 권리 불고지, 부당한 체포·구속·감금 등이다. 한편 2007~2010년에 매년 50건 이상 접수되던 부당한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은 최근 10년간(2011~2020) 평균 19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2021년 6월까지 경찰사건의 처리건수(2만 2,477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13.1%(2,947건)로,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 11.5%보다 1.6%p 높다. 경찰사건에서 권고가 가장 많은 유형은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수사절차 위반, 강압수사 관련으로, 매년 경찰사건 구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유형은 수사절차 위반이며,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체포·구속·감금에 대하여 매년 10건 이상을 구제하였다.

경찰 인권침해 주요 유형(2001~2021. 06)

-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5,543건(24.1%)
-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4,042건(17.6%)
-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수사 3,836건(16.7%)
- 체포, 구속, 감금 2,067건(9.0%)
-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848건(3.7%)

2) 주요 결정례

경찰사건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민주주의와 집회 관련 기본권 침해 △공권력의 물리적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의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절차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 6가지 유형으로 주요 결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과 절차 또한 적법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원칙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경찰의 업무 수행, 특히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 경찰 내부의 근본적 개선방향 제시

인권위 설립 초기의 유의미한 결정 중 대표적인 사례는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 요구, 임의수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들이다. 당시 경찰은 불심검문 시 목적과 이유, 본인의 소속·성명 등을 관행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불심검문 절차 미준수에 의한 인권침해>(03진인1312, 2004. 06. 04),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076, 2007. 02. 21), <경찰 불심검문 시 신분증 미제시로 인한 인권침해>(10진정0279100, 2010. 07. 23) 등 사건에서, 경찰이 제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어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최초 대민접촉 과정에서부터 법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경찰 내부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포)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 등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7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공포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혐의 사실이 인정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는 2004년에 발생한 '○○○ ○○광역시장 굴비상자 관련 사건'과 '불량만두 파동 사건'을 직권조사(<피의사실공포로 인한 인권침해>, 05진인730, 2006. 10. 13)하여,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사실공포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 공청회, 외국사례 수집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피의사실공포가 범죄행위이고, 설령 공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수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촉구**

2016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피의자 신문과정 시 변호인의 메모 검사)(15진정0882300, 2016. 06. 09). 당시 경찰은 수사기관의 밀행성, 수사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의 위험을 이유로 피의자의 메모권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메모 제시 요구 및 확인 행위가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고, 메모 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변호 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은 이를 수용하였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모든 경찰서에 조사 중 메모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하였다. 피의자 메모권과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찰의 부당한 내사에 의한 인권침해〉(18진정0219500, 2018. 11. 09)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찰 내사업무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 사건이다. 경찰이 재야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 장기간 부당한 내사를 진행하였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경찰이 진정인과 주변 친인척 등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하면서 내부규칙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이 관행에 따라 자의적으로 내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제정 전까지는 내사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자체 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요건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법무부 등과 협조하여 내사의 근거가 명시된 법률 마련을 추진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내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심야조사 관련 인권침해**(07진인0368, 2007. 04. 02)

진정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서 형사과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30분까지 약 13시간 30여 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급박한 사항이 아님에도 심야조사를 하였고, 심야조사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서장은 이를 수용하여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피의자 인권 침해 금지, 심야조사 지양, 적법절차 준수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 **부당한 임의동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4605, 2008. 09. 22)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로운 퇴거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동행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다. 인권위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유사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서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혐의자 권리 미고지**(16진정0411500, 2016. 11. 25)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이다. 경찰은 진정인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비록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은 없지만,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참고인이나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 시에도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경찰의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16진정0781000, 2017. 08. 23)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진정인을 유치장에 구금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10일 동안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접견을 제한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 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내용과 접견 금지의 사유, 불복의 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형사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권고기관은 구속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시 금지사유 고지 등을 위한 관련 지침안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무리한 강압조사로 인한 건강권 침해**(17진정0597800, 2017. 11. 23)

피의자가 뇌경색 등으로 복약 중임을 인지하고도 경찰이 수갑을 채운 상태로 무리하게 조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의자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피진정인이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범죄수사 규칙에 피의자 등의 건강을 고려하여 조사 시 휴식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도 권고하였다. 피권고기관은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하고, 범죄수사 규칙에 피조사자 휴식 시간 부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민주주의와 집회 관련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근본요소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절제된 공권력 행사 필요성 제시**

2005년 11월 15일 쌀 수입 개방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서울로 집결한 농민들의 여의도 등지 시위 중 경찰의 강경 진압과정에서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05진인3941, 2005. 12. 26).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농민의 사망원인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부대를 특정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휘책임자와 불법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이 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경찰청장은 사퇴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사과문을 통해 국가가 독점한 물리력이 고도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속에서 절제하며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 공권력 행사가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칠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합니다. 공권력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집회 시 공권력의 물리적 행사 기준을 확립하고, 공권력 감시기구로서 인권위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공권력 행사의 원칙과 기준 종합 권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비인도적 연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130여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인권위는 당시 인권지킴이 활동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의



‘여의도 농민시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권위의 현장검증(2005. 12. 19)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진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08진인1966, 2008. 10. 27).

인권위는 6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두 달여 동안 256명 이상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할 것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 등을 징계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여의도 농민시위 사망사건’과 ‘촛불집회 참가자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은 공권력 행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인권위가 종합적인 권고를 내린 사건이다.

그 외 민주주의와 집회에 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인권위가 내린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부당한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14진정0464100, 2016. 03. 28)

○○경찰서장이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에 대해 집시법상 ‘생활 평온 침해’, ‘학교시설 주변’,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등의 조항을 들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대한 진정사건이다. 인권위는 집회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은 해당 금지조치가 인권위의 판단과 달리 적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집회·시위 참가 차량에 대한 경찰의 차단조치(16진정0918000·0968000(병합), 2017. 06. 23)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이용, 이동하던 중 경찰이 안성TG, 양재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차량을 차단하여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인권위는 사전에 차량을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 등 사회적 위험이 현저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촉진적·보장적 관점에서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였다.

-경찰의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16진정0109600, 2017. 10. 30)

경찰이 미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제지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당시 상황이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 및 대사관에 대한 위해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곧바로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경찰의 집회의 자유 보호의무 위반(16진정0458200, 2018. 03. 28)

사측이 회사 정문 앞에 365일 24시간 집회신고를 하는, 일명 ‘알박기’ 집회를 관행적으로 신고해 후 순위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진정사건이다. 인권위는 사측의 행위를 방치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3)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범죄 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것은 경찰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단,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과 공정성,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 이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경찰 행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방향성 제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경찰의 고문 관련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 10직인1, 2010. 06. 15). 인권위는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3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서 사무실에 CCTV 사각지대가 있고,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고문 장소, 가해자, 고문 양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여죄 추궁 관련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피해자 22명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 밟기,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팔을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등의 고문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2017. 03. 24)



이에 인권위는 관련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해당 경찰청장에게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서의 고문·가혹행위 사건은 인권위가 고문 정황과 단서를 토대로 신속하게 직권조사를 결정하여 진실을 밝혀낸 사건으로, 인권위 권고 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주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CCTV 관리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 위주의 수사 방향을 재검토하는 등 인권적 관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1950년대에 이른바 ‘공비’ 토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의경제도는 1970년대 이후부터 주로 집회·시위 진압활동에 동원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극단적 선택, 알몸 진급신고식 등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인권위는 2005년 10월 20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이어 전·의경을 둘러싼 전반적인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으나(전·의경 구타 등 인권상황 직권조사 결과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 05진인0001620, 2007. 02. 21) 권고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던 중, 모 의경이 입대할 지 7개월 만에 급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 11직권300·11직권500·11직권600·11진정800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병합), 2011. 09. 19).

‘의경 백혈병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구타·가혹행위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구타·가혹행위 예방대책 시행 및 지속적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및 신입대원 등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보호조치·전문상담 강화 등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제도·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전·의경의 인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인권위 권고 이후 의경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고, 2023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필요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대표하는 장구는 ‘수갑’이다. 인권위 설립 이후 2010년 말 기준으로 수갑 관련 진정은 누적 진정건수 4만 3,000여 건의 2%에 해당하는 832건으로, 단일 요소로는 빈도수가 높은 상황이었다.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한 유형은 △필요한 시간보다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우(‘비례의 원칙’ 위배) △도주나 저항의 정도가 미미한데도 과도하게 수갑을 채운 경우(과도한 물리력 행사) △고의적으로 수갑을 강하게 채운 경우(가혹행위 남용) △이유를 불문하고 손목에 상처가 발생한 경우(손목 상해 등 부작용 발생)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시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얼굴 및 장구 노출) 등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수갑 관련 진정 내용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런던경시청,



수사기관 수갑 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 수갑 사용 시연(2013. 03. 28)



수갑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물리적 행사의 대표적인 장구로 최소한의 사용을 허용한다

LA경찰청)를 검토한 후, 수갑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1년 11월 2일 <수갑의 재질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를 통해 수갑 사용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인체에 위해를 덜 끼치는 재질 개선과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장에게 수갑 사용 제한, 시갑 상태 노출 예방,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을 포함한 ‘수갑 사용규정’과 상해 방지를 위한 수갑 재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권고 이후에도 개별 사건에서 부당한 수갑 사용 사례가 계속되자, 경찰청에 기존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재권고를 하였고,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도 유치장에서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수용된 진정인들이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 부분으로 연결하는 상·하체 포승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 및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진정의 요지였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장구 사용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호유치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호장비를 구비하며, 수갑 및 포승이 변형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17진정0449100·17진정0975800·17진정1069900(병합), 2018. 05. 09).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에 힘입어 일반 철제수갑이 피의자 손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안쪽에 실리콘을 덧댄 이른바 ‘인권 수갑’을 제작·사용한다거나, 장구 사용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수갑의 형태와 사용 양상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4) 경찰의 보호의무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상의 법리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 여성살해 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12직권0000400, 2012. 09. 18)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4월, 미등록외국인이던 피의자 오모 씨가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신체를 휘

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랍 직후 112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범행 장소까지 밝히며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는데도,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112 접수자는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집안’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보하였는데도, 이를 누락하는 바람에 현장 출동 경찰들이 건물 외부만을 차량과 도보로 수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경찰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112신고 접수처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112 요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긴급사건 대응체계 및 112 신고전화 공청 시스템 개선, 112 요원 근무환경 시스템 개선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밝히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 외 경찰의 보호의무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범죄 피해 신고자 사망에 대한 직권조사(19직권0002100, 2019. 07. 09)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만 12세)이 신고한 지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 신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 아동의 안전을 살피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경찰 보호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인권위는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해당 경찰청장에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보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업무 개선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학대사례 정보공유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5)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2004년 발생한 <○○○○경찰서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04직인37, 2004. 12. 27)는 경찰의 미흡한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실명·나이·소속 학교와 학년, 피해 사실 및 피의자들의 인적사항과 피의사실이 기재된 자료가 언론에 제공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범인 식별실이 있는데도 피의자 41명에 대하여 줄을 세워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더욱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접촉하도록 방지하여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형사가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 물 다 흐려놨다”라는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피해 사실을 누설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2인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지방경찰청장 및 당시 경찰서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경고 및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적법절차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6진인969, 2006. 08. 10)

경찰관이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진정인에 대하여 사전·사후 허가절차 없이 2회에 걸쳐 알몸

수색한 사건이다. 당시 피진정인은 여성 경찰관과 동행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진정인의 충분한 동의·승낙·허가를 받아 신체수색을 해야 하는데도, 여성 경찰관 없이 속옷까지 벗게 하는 알몸수색을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피진정인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면조사 등(19진정0967400, 2020. 11. 25)

준강간 피해자가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상담한 사안이 경찰서로 이첩된 후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성범죄 관련 CCTV를 확보한 뒤 피해자를 불러서 이를 확인케 하고, 현직 경찰 신분인 준강간 피의자를 호출하여 단둘이 독립된 공간에서 대화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긴 시간이 경과하는 사이에 입수한 CCTV 영상자료가 분실되는 등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장기화되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피진정인들을 각각 서면경고 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성범죄 수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광역시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6) 적법절차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행법 체포 과정 등에서의 절차적 권리 침해다. 경찰관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고, 임의수사인 경우엔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 장비, 무엇이 문제인가?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녹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보유기간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호송차량은 아직도 CCTV 사각지대이다.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로,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영상을 적절한 기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의 증언만으로는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호송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폭행, 사망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블랙박스에는 차량 내부 영상은 없고 차량의 전면과 후면만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기간 도과로 외부를 촬영한 영상도 존재하지 않아 이송 당시 폭행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찾기 어려워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경찰청 운용차량 내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다수 있었지만, 상당수가 영상녹화장비 부재나 영상 보유기간 경과로 인해 피해 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에 어려워 종결되었다.

인권위는 비록 사건은 기각하였으나, 조사 결과 호송차량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가 실제로는 영상을 30일간 보유하지 못 할뿐더러 현행 지방경찰청별 개인정보처리방침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호송차량에 설치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 사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1~30일 형태로 규정한 사실 등을 발견하였다. 이는 법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문제로, 인권위는 장기적으로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30일 수준까지 확보하여 경찰청 운용차량 내 탑승자 보호와 차량 내 상황의 증거기록 확보 등 영상녹화장비 설치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보고, 단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 관련 정책권고, 18진정0464200, 2019. 12. 20).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진정을 한다고 해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번번이 진정을 기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인권침해 시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즉 증거물의 임의제출과 관련된 임의성 여부나 미란다 고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그 적법절차에 관한 입증책임은 진정인이 아닌 경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임의수사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물 등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19진정0429400, 2020. 06. 22).

이 밖에,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진정인의 집을 수색하고 수색 목적 또한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사건(19진정0752000)에서, 경찰관들은 수색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적법절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들어 해당 경찰관들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2. 검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검찰 사건 진정건수는 3,336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건수(11만 8,176건)의 2.8%이다.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2003년 이후 매년 약 150~250건이 접수되고 있다. 침해유형별로는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수사’(1,075건, 32.2%)와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638건, 19.1%)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2021년 6월까지 검찰 사건의 처리건수(3,303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7.3%(242건)로,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 11.5%보다 4.2%p 낮다.

2) 주요 결정례

검찰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주요 결정례를 △폭력 및 가혹행위 △편파·부당수사 △적법절차 위반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폭력 및 가혹행위와 관련한 인권침해

2002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지검 피의자 사망 및 가혹행위’는 인권위가 검찰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한 최초의 사건이다(○○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02직인2, 02진인1882·1889·1891(병합), 2003. 02. 24).

인권위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밝혀내어 수사관 10명을 불법체포, 불법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박○○ 계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수사

를 의뢰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위법한 긴급체포와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체포 이후에도 사후영장 발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인권위가 사후영장 발부제도 도입을 권고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이 영장에 의한 체포보다는 편의에 따라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포영장주의가 뿌리내린다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범죄 혐의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고, 과학적인 수사와 증거수집을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후 피의자를 체포한다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지검 가혹행위’(〈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02진인1234, 2004. 02. 23)는 2004년 “뇌물수수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라며 국내 대기업 전 임원이 당시 ○○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진정으로, 인권위는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혐의를 상당 부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2) 편파·부당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2004년 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들이 미성년자인 강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무리한 대질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였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다(〈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 02진인 928, 2004. 05. 10).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강간으로 인해 임신중독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하였으며, 대질조사 시 가해자와 나란히 앉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성범죄조사 및 공판 관여 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육체적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되는 인격권 및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을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외 검찰의 부당수사 관련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대검찰청의 부당한 강제소환에 의한 인권침해(14진정0068700, 2014. 08. 01)

대검찰청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강제 소환하여 진정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내부감찰 사건으로 조사한 데 대하여 공권력 남용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소환한 것은 행정청의 내부감찰이 그 목적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소환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는 임의조사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조사대상자가 수용자인 경우에는 수용시설에서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이 채워지는 등 강제구인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사의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소환 요구자·소환 이유·소환 목적 등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감찰 조사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용자를 강제 소환하지 않도록 감찰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하였고,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하였다.

- 검사의 부당한 강제이송(16진정0857400, 2017. 11. 23)

수도권 A교도소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진정인이 해당 재판과 관계없는 검사가 타 사건 조사를 이유로 영남지역 B구치소로 10일간 강제이송시키는 바람에, 그 기간 중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수용자가 구속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수용자가 이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영장을 발급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권고하였고, 검찰총장에게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피권고기관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일선기관에 전파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3) 적법절차위반과 관련한 인권침해

무고 혐의로 구속하였는데도 가족 등에게 구속의 이유, 일시 및 장소 등 구속통지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구속 사실 미통지로 인한 인권침해〉(05진인2368, 2005. 12. 12)),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면서 고소 남용 사례로 진정인의 예를 들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를 토대로 진정인을 유추하여 기사를 작성, 진정인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한 사례(〈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15진정0288800, 2016. 07. 20)), 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검찰이 최종판결 확정 전에 압수물(휴대전화)을 폐기한 사례(〈검찰의 부당한 압수물 폐기〉(17진정0372200, 2018. 09. 18)) 등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한 진정도 인권위가 조사 결과 인권침해로 판단, 시정권고하였다.

• 검찰 조사의 투명성 보장되어야

인권위 출범 이후 검찰의 강압조사로 인한 극단적 선택 관련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이나 인과관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2005년 5월경부터 ○○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과 관련, 같은 해 7월 2일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다음 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검사와 수사관의 강압수사가 그 원인이라는 진정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피조사자가 총 83명에 달하고, 특히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아 검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표명을 하였다. 검찰이 수사과정의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 도중 해당 사례의 분석과 일반 피조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식별해 내고 심리적 배려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수사기법이나 수사담당자들의 인식 태도 등에서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검찰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인권위는 경찰서 형사과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실에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과 조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황과 직무상 비밀 유지, 수사 재량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와

사무 공간의 분리 등을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법기관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에 접수된 사법기관 관련 진정건수는 23건으로, 같은 해 전체 인권침해 진정건수(619건)의 3.7%를 차지하였다.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사법기관 관련 진정건수는 1,370건이며, 처리건수는 1,345건, 권리구제율은 5.9%이다. 사법기관 권리구제율은 전체 침해사건의 권리구제율 11.5%보다 5.6%p 낮다.

2) 주요 결정례

사법기관 관련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를 △인격권 침해 △개인의 자유권 및 정보 유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판사막말에 의한 인격권 침해

2010년에 발생한 ‘판사 막말 사건’(〈폭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10진정0018600, 2010. 07. 23)은 판사가 재판 중 조정절차에 나온 70대 여성이 합의안 수용을 거절하자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 나오는 꼴을 보고 싶으냐”라는 막말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이혼 당사자에게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라”라고 욕박지른 판사가 있는가 하면, 재판 중 60대 증인이 불명확한 진술을 반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라는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막말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에 인권위는 〈폭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2010) 사건에서, 피진정인의 소속 법원장에게 조정과정에서 판사의 폭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권위 있는 사법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인권위가 주의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법원 내 과도한 언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판사의 법정 언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외 사법기관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중화권 다문화 자녀들의 성명 등록 시 현지 발음 등록으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425200·19진정0502900(병합), 2020. 04. 07]

인권위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외국의 성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나 혼혈 여부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고,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한국 국적 자녀의 성 기재 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권고기관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송부해 왔다.

(2) 개인의 자유권 및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인권침해

〈집행관의 부당한 강제 개문〉(19진정0848300, 2020. 06. 26)은 진정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와 최고장을 부착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채무자 등이 숨긴 집행목적물을 수색하기 위하여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집행관이 먼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열도록 촉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집행관이 진정인에게 사전에 연락한 사실이 없고,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집행관의 개문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동산 인도 집행의 경우 최고(催告) 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부재중이라면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최고장을 송달하는 등 덜 침익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거 강제집행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 집행관이 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아 행하는 것을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보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법원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강제 개문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그 외 사법기관의 개인의 자유권 및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약식명령 송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16진정0039100, 2016. 11. 17)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진정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판결서(약식명령) 등본에 진정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5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6자리, 직업, 구체적인 주소지, 범죄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약식명령 판결서 등본에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생년월일, 주소, 벌금액 등을 기재하여 송달한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약식명령 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4. 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 폭언·욕설은 증가, 폭행·가혹행위는 감소

군대는 명령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며,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이다. 인권위 출범 이후 군 관련 진정건수는 총 2,364건으로 인권침해 총 접수건수(11만 8,176건)의 2.0%를 차지하였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523건, 22.1%)가 가장 많고, ‘부당한 업무 지시·규정·처분 등’(419건, 17.7%), ‘건강·의료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311건, 13.2%),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286건, 12.1%), ‘생명권 침해’(120건,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와 ‘부당한 업무 지시·규정·처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군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20.9%로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 11.5% 대비 9.4%p 높게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년간 인권위는 물론이고 국방부와 군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에 힘입어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다.

2) 주요 결정례

군과 관련한 주요 결정례를 △폭행·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여군 및 성적지향과 관련한 인권침해 △군대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폭행·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인권위 초기에 접수된 군 관련 특기할 만한 사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2005년 1월 10일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일명 ‘인분 사건’이고, 둘째는 2005년 6월 19일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이다. 연이어 터진 대형사건은 군 인권 상황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고질적인 군대 관행에 경종 울려

〈○○ 훈련소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05직인0000002, 2005. 02. 14)는 중대장이 소속 훈련병 192명 전원(배식 지원 13명, 입실 1명 제외)을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에 일렬종대로 정렬시킨 후 두 차례에 걸쳐 인분을 집었던 손가락을 입에 넣게 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군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명문화, 인권보호관제도 설치·운영 등 군인 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육군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와중에 일어난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은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일병이 잠자던 소대원들에게 수류탄을 던진 뒤 경계초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총기를 난사하여 소대원 8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사건이다.

2005년 인분 사건에 이어 총기난사 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자, 인권위는 군대 내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이 여전히 존재하며, 구타 등을 당한 이후 탈영이나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에 이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폭력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잔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군대 내의 폭력행위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권고를 하였다. △국방부 장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양성·보수교육 과정에 인권 과목을 필수화하고, 각 군 신병 교육기관 및 부대에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군대 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감찰·군사안보 지원·군사경찰 등 내부 통제장치를 장병의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군의 소원수리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규정, 단체기합 폐지 등 장병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권 내용, 장병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의 설치·운영, 지휘 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을 신설할 것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 등이다.

‘인분 사건’과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이후, 육군은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에 나섰다.

•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권고

〈해병○사단 폭행·가혹행위 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11직권0000100/10진정0796600(병합), 2011. 03. 24]와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11직권0001900, 2011. 10. 20)는 앞의 두 사건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듯하던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또다시 불거진 사건이다.

‘해병○사단 폭행·가혹행위 사건’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던 중 일반 부대와 달리 해병대에서는 상습적인 구타·폭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고도 군기 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면서 직권조사를 발동한 경우이다. 조사 결과, 청소 불량, 군기 유지 등을 이유로 온몸 폭행, 슬리퍼 등으로 뺨 때리기 등 후임병에 대한 구타와 폭행 사건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간부들은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단장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처분만 하는 등 축소·은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2011)는 피해자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사망한 일이 선임병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던 중, 추가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한 사안이다. 조사 결과 ○○사단 ○○기지 선임병에 의한 폭행·가혹행위가 확인된 것만 75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분대장에 의해 비호·조장되고 있었으며, 중대장·대대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계통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는 군인복무 규율·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폭행이 극심하고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은 구타·가혹행위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와 지휘감독자의 관리 부실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권고를 하였다. △지휘·감독 관련자를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폭행사건을 은폐·지연 처리한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구타·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을 수립할 것 △병사 및 지휘관의 인권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영생활 단계별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 등이다. 국방부는 책임 소재에 대한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소원수리 문화(군 복무 중 겪는 애로사항을 제보하는 문화)를 비롯하여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 외 폭행,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해병대 선임병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16진정00486700·16진정0455200·16진정0789700(병합), 2016. 12. 27]

2016년 6~9월, 2개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3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5개월간 해당 부대원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조사한 사건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해병은 '취식 강요'를 해병대의 전통이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병 때는 피해자이지만 선임이 되면 가해자로 변신하는 악습이 유지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미 2011년에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하였고, 2015년에는 '○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7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 악습 개선을 재차 권고하였는데도 악습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인권위가 참여하는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 회의
(2012. 02. 27)



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의 병영 악습 개선을 위해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 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는 가해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해병대 부대 간부 대상 인권교육,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초빙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 여군 및 성적지향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군 중령 강제퇴역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퇴역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 2008. 01. 28)은 군 인권의식이 비교적 낮았던 2008년, 인권위가 선도적으로 의견표명한 사건이다. 당시 유방암 수술 외에는 다른 신체적인 증상이 없었는데도 규정에 따라 강제 전역한 여군 중령이 강제퇴역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벌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가 피해자의 현역군인으로 복무할 자유를 제한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업무수행에 아무런 건강상·체력상의 문제가 없는 이상, 과거의 병력이 현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병력만을 이유로 퇴역처분을 내린 것은 병력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당시만 해도 여군과 관련한 진정건수는 극소수였으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관련 고충을 제기한 여군에 대하여 보복성 조치를 한 사건(<여군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건>, 17진정0796900, 2018. 01. 24) 등 여군 관련 진정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도 여군이 있었지만, 사생활 통제로 억제되어 있던 인권의식이 분출하면서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에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에 대하여 육군이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하여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전역 조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20진정0056500, 2020. 12. 21). 군 복무 중 성전환은 군대제도가 생긴 이래 발생한 최초의 사례로,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근거를 들어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였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는 법원에 전역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중 피해자는 차별과 혐오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다. 유가족은 고인의 뜻을 이어 소송을 계속하였고, 2021년 10월 7일 1심 법원은 전역 취소 결정을 내렸다.

(3) 군대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군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군 인권 수준의 척도로 인식되어 온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사망사고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특히 구타·가혹행위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대착



**앞서간 인권위,
124년 만에 폐지된 영창제도**



군 영창을 방문조사 중인 인권위(2016. 07. 04)

군법을 위반한 군인을 단기간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그 구금기간만큼 늘렸던 영창제도는 구한말인 1896년 1월 처음 생긴 이래로 부대 지휘관 자의에 따른 구금이라는 위험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인권위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네 차례에 걸쳐 군 영창 방문조사를 실시, 영창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병사를 영창에 가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권고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2020년 1월 9일 「군인사법」 개정이 의결되면서 영창제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오적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7월 22일 국방부에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라는 제목으로 23종의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하여 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에 공문을 내려보낸 일이다(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의견표명, 2009. 10. 19). 이 가운데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것은 3권뿐이었고, 그 외 도서는 베스트셀러거나 심지어 정부와 공공기관 추천도서로 선정된 책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 형성의 자유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거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다며 의견표명하였다.

그 밖에도 군대에서 주임원사들이 소속 부대 부사관에게 부채현황 파악을 위해 개인금융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등>(12진정0886400, 2013. 07. 05)이나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모아 봉사활동 명목으로 주말에 한꺼번에 시행한 사건인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의 과도한 얼차려>(2016. 07. 20), 공군이 육군훈련소 및 해군교육사령부와 달리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삭발을 실시한 <훈련병 삭발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348500, 2019. 11. 19)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인권위는 재발 방지 및 관행 개선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군 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5.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현재 국내에는 판결 확정 전인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구치소 11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 38개, 지소 3개, 민영교도소 1개를 포함하여 53개 교정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수용정원은 2020년 기준 4만 8,600명이지만 수용자 현원은 기결수 3만 3,392명(62.0%), 미결수 1만 9,084명(35.4%)으로 수용정원 범위를 약 8% 초과한 상태이다.

• 구금시설, 인권침해 전체 진정의 약 30% 차지

구금시설 관련 진정은 인권위 설립 초기인 2001~2002년을 제외하고 매년 1,600~1,80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누적 진정건수는 3만 3,676건으로 전체 인권침해 진정건수(11만 8,176건)의 28.5%에 이른다. 이는 인권위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진정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침해유형별로는 물리적 폭력, 인격권 침해, 건강권 침해, 외부교통권 제한 등이 전체 구금시설 사건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인 침해 내용은 ‘의료조치 미흡,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8,212건, 24.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당한 조사 및 징벌, 계구 사용’(4,737건, 14.1%),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2,978건, 8.8%) 등 물리적 폭력과 ‘처우 관계, 인격권 침해’(7,453건, 22.1%), ‘폭언 욕설 등’(402건, 1.2)과 같은 인격권 침해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냉난방, 음식물, 채광, 통풍 등 ‘열악한 시설’(3,344건, 9.9%), 접견 제한, 서신 검열 등 ‘외부교통권 제한’(2,758건, 8.2%)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열악한 시설’과 ‘외부교통권 제한’은 2010년(247건)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물리적 폭력과 인격권 침해, 건강권 침해 등은 여전히 구금시설 사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구금시설 사건의 처리건수(3만 3,011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8.6%(2,855건)로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 11.5%보다 2.9%p 낮다. 최근 5년간 구금시설 권리구제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11건), 2017년(9건), 2018년(45건), 2019년(21건), 2020년(32건)을 구제하였으며, 2020년 권고수용 현황은 100%이다.

2) 주요 결정례

구금시설과 관련하여 △열악한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수용자의 알 권리 및 통신권 침해 등 4가지 영역으로 주요 결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열악한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제1항),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하고(제2항 (a)),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천명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하게 고려함

의정부교도소를 방문조사 중인 인권위
(2007. 09. 05)



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하 「피구금자 보호원칙」)의 제1원칙은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우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인권기구가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과밀수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수용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재사회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과밀수용**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 특히 과밀수용은 인권위 설립 이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구금시설 소거실의 과밀수용 문제 및 화장실 출입문 미설치 등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인한 진정이 다수 접수되자 인권위는 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관할의 전국 14개 교정시설 소거실 환경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소거실 수용환경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08직인0000014, 2008. 11. 24).

조사 결과, 11개 구금시설의 소거실은 5.29㎡(1.6평) 내외의 협소한 면적에 3~4명이 지내는 등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으며, 소거실 내에 화장실이 있으나 주요 부위만 겨우 가릴 수 있는 가로 80cm×높이 75~90cm 크기의 작은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을 뿐 출입문이 없어 수치심과 불쾌감, 당혹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용변 냄새, 소리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구금시설 측에서는 극단적 선택 등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였으나, 화장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구금시설에서 그러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조사대상 시설 중 4개의 구금시설은 2.48~3.22㎡(약 0.75~0.98평)의 소거실에 2~3명을 수용하여 취침용 매트리스(1개당 면적 1.32㎡)조차 펴지 못해 접거나 포개어 사용하고 있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 구분에 관한 지침」 제3조에 규정된 혼거실 1인당 기준면적은 2.58㎡(0.78평)이지만, 개인에게 허용된 면적은 1.08~1.33㎡(0.33~0.41평)에 불과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에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과 조사·징벌실 과밀수용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최소 국제기준 면적인 3.4㎡에 못 미쳐**

출범 이후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3년 이후 증가한 수용률은 2017년 말 기준 115.4%에 이르렀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이 124.3%로 더 높았고, 여성 수용자의 경우 ○○구치소의 수용률은 무려 185.6%에 달하였다. 이처럼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가 거듭되면서 2018년에는 직권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였다(〈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등〉, 17직권0002100·16진경0380801 등 25건(병합), 2018. 11. 05).

혼거실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은 국제적십자사 3.4㎡(1.02평), 유럽고문방지위원회 및 독일 7㎡(2.11평), 일본 7.2㎡(2.17평)로 다양하다. 향후 우리 교정시설에 적합한 1인당 기준면적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국제기준 면적인 국제적십자사의 3.4㎡(1.02평) 대비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52%에 이르며,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인 7㎡(2.11평)를 적용하면 무려 300%가 넘는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수용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 장관에게 △유류 수용 동의 활용, 여성 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을 시행할 것 △구금시설 신·증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원칙을 구현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 필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을 포함한 시설 환경에 관한 진정 접수는 연평균 160여 건에 달한다. 과밀수용이나 시설 문제는 비단 수용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열악한 시설은 수용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의 근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교정시설의 주요 목적인 질 높은 교정·교화를 어렵게 만든다.

인권위는 진정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과밀수용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하여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에 관한 토론회(2017. 11. 21)



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예산·인력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금시설의 환경 개선은 신축과 증축 등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신축의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가석방 등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구금시설의 특성상 수용자는 건강권 향유에 큰 제약을 받는다. 아울러 구금시설 수용자의 열악한 건강 문제는 비단 수용자나 교정당국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건강권 전문가 및 관련 국제기구들은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은 더 넓은 범위의 공공보건 문제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수용자 대부분은 언젠가 사회에 복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은 전체 인구의 건강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사항과 연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으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2015. 12. 17, 유엔총회 채택) 통칙 제24조 제1항은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의료적 서비스 상당 부분 제한당하는 현실

2016년 수용자 2명이 조사·수용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 접수되었다. 인권위는 더운 여름에 당뇨나 고혈압 등 질병이 있는 수용자들이 선풍기가 없는 조사수용실에 과밀하게 수용되었고, 의료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직권조사에 착수하였다(○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의료조치 미흡

등 직권조사), 16직권0001900·16진정0688600·16진정0695700(병합), 2016. 12. 23].

당시 교도소는 정원의 120% 이상을 초과한 1,400여 명을 수용한 상태로 의무관 3명과 간호사 4명을 포함한 1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식수는 하루 3회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조사수용실로 사용 중인 거실은 1인당 면적이 1.74㎡(0.52평)로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 기준상 혼거실 1인당 면적 기준 2.58㎡(0.78평)보다 협소하였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바깥 복도보다 온도가 높았다. 조사수용실에는 교정사고 우려 등으로 일반 거실과 달리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 수용자에게 부채를 지급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지병이 있는 피해자들을 과밀수용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사고 발생 당시의 교도소장을 징계할 것과 혹서기에는 조사수용실에 선풍기를 설치하는 등 조사수용실의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로 교정시설 내 의사 수가 상당히 확충되기는 하였으나, 국내 의료인력 여건상 여전히 외부와 동일한 치료 서비스를 받기란 쉽지 않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과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서 의료접근권이 수용자 건강권의 핵심사항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정당국은 수용자가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수용자의 신체의자유등 기본권 침해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수용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제받는다. 외부인과의 접견 소통, 종교행사 참여, 도서 등의 반입, 운동 및 목욕, 집필, 물품 구매 등을 법령 및 교정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받게 되는데, 수용자가 조사·징벌 시에는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행위의 제한이 가해진다. 인권의식과 교정환경이 향상됨에 따라 제한의 정도는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인정되어야

2004년 6월 7일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지방검찰청 검사가 2004년 5월 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피의자 접견금지 및 독거수용 지휘 및 결정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장기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04진인0002644, 2004. 11. 24). 조사 결과, 검찰수사 기간인 약 15일 내내 진정인에 대하여 접견을 금지함으로써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구금자 보호원칙」 제15조에 따르면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외부(특히 가족과 변호사)의 교통은 수일 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검사가 조사를 완료하여 접견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적어진 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함으로써 진정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할 경우 접견 금지대상의 범위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하였으며, 대검찰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 외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수용자 호송 시 시승·시갑 상대 노출 관련(2008.02.09)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박모 씨가 “법원 구치감에서 재판정까지 도보로 호송되면서 시승·시갑이 되고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상태에서 얼굴이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법원 공원에 있던 행인 등 일반 공중에 게 그대로 노출되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2007년 6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이동 과정에서 시승·시갑한 진정인의 손목 부위와 기결 수용복을 입은 진정인의 얼굴을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잔디광장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행인 및 건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 노출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 소속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구치소와 교도소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호송 시 수용자가 원할 경우 모자와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16진정0773500, 2016.12.23)

진정인이 구치소에 입소해 있는 약 4일 동안 전자영상장비(CCTV)가 설치되어 있어 모욕감과 동시에 사적 영역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구치소는 진정인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권과 관련된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전자영상장비는 법령에 의거하여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보다는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자료가 없고, 유사한 상황에서 입소한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약 4일 동안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에 수용하여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자살·자해 위험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하는 경우, 개별 수용자의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4) 수용자의 알 권리와 통신권 침해

인권위 출범 이후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개방성’이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과도하게 검열하거나 통제하던 수용자의 알 권리와 외부 교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수용자의 알 권리와 통신권 존중되어야

2003년 교도소 수용자인 진정인들은 교도소 측에서 진정인들이 자비로 구독하는 신문을 검열하여 과도하게 기사를 삭제한 채 배부하고, 구독 가능한 신문을 1인 1종 1부로 제한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수용자 알 권리 침해, 03진인150·499·513·515·522(병합), 2003.09.15). 인권위는 수용자의 알 권리가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보안 등 공익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의 표현은 열람 제외 기사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의 남용 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열람 제외 기사를 탈주, 집단단식 등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수용자들이 상당한 범위에서 여러 종류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 및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을 개정하여 200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그 외 수용자의 알 권리와 통신권 침해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 검열 및 징벌(18진정0214100, 2018.08.29)

수용자가 구금시설 내에서 본인이 목격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사에 서신을 발송하려 하자 구치소에서 이를 검열하였으며, 서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신 발송을 불허하고 부당하게 조사·징벌한 것에 대해 진정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서신 검열은 검열 사유에 해당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하며, 검열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서신의 발송을 불허하고 진정인을 징벌한 피진정인의 처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서신 검열을 하거나 징벌을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이 사건 관련 진정인에 대한 징벌 의결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반면, 구치소장은 불수용하였다.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19진정072830등 15건(병합), 2020.08.13)

법무부는 외부도서 반입 과정에서 들어오는 부정 물품의 반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부터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여 법률 도서와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수험서 등을 제외한 외부도서의 반입을 불허하고, 교정기관 내에서 책을 구매한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였다. 인권위는 법무부 지침이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 제27조 및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도서 반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수용자 우송·차입도서 합리화 방안’의 시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가 영치금으로만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지침을 철회하였다.

• 인권위 권고로 20년간 유지된 법무부 지침 변경

2020년 5월 벌금 미납으로 노역형을 살던 30대 수감자가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다(구치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계속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19진정085850, 2020.10.06).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수감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으나 다음 날 불안 증세를 보였다. 구치소는 수감자를 CCTV가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



소년사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인권위는 특히 소년사범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년사범에 대한 교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우려가 있거니와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소년사범의 경우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중범죄자도 있지만, 사회에서 버림받았거나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생활 범죄도 많다.

법무부는 1989년 「소년법」을 개정, 전국의 소년원을 정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가르치는 7개 중학교 및 2개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과정과 전문직업훈련원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는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또다시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사회에 거부반응 없이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997년부터는 소년원의 공식 명칭도 중·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로 변경되었고, 「교육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고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세기까지 소년사범의 구금시설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그러나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청소년들이 구금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정 원칙을 바꾸는 데 힘을 쏟았으며, 소년원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소년사범을 다룬 독립영화를 제작·배포하여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현재 소년원은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력 인정이 되는 교화기관이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이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다. 일시적인 잘못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소년수형자를 담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소년교도소 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장비로 묶어 14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결국 수감자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이송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구금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은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인지, 징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오남용의 가능성이 큰데도, 보호장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권고가 계속 불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구치소 수감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구치소 교도관의 보호장비 남용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자, 법무부는 2020년 7월 자체 개선안을 내고 구치소 직원 1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이 조치 후 구치소 내 보호장비 사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여 년간 존속되었던 법무부의 지침이 변경된 데에는 인권위의 결정례가 근거가 되었다.

6.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수의 사람을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인보호시설의 본래 목적은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대상자들이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데다 시설의 상당수가 입·출소가 자유롭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인권침해가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사각지대였다.

• 전체 인권침해 진정건수 중 약 24.4% 차지

2021년 6월까지 인권위에 제기된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은 전체 인권침해 진정건수(11만 8,176건)의 24.4%인 2만 8,882건으로 집계되었다. 주로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이 이용하고 폐쇄적인 시설 특성상 인권위 설립 초기에는 진정건수가 100건 이하였으나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 결과 매년 진정건수가 급증하여 2015년(3,484건)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19~2020년 1,500여 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침해유형별로는 입·퇴소 적법절차 위반, 부당 수용, 가혹행위, 건강권 침해가 전체 다수인보호시설 사건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시 보호의무자 비적격’(8,557, 29.6%), ‘부당한 퇴원 및 퇴소 불허’(3,617건, 12.5%), ‘외출 및 외박 제한, 휴대전화 사용 등 통신권 제한’(2,606건, 9.0%), ‘부당한 격리 및 강박’(2,053건, 7.1%), ‘불법·강제 수용’(1,848건, 6.4%) 등 입·퇴소 적법절차 위반과 부당수용 관련 진정이 약 53.9%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폭행 및 가혹행위’(1,660건, 5.7%),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1,332, 4.6%), ‘강제노동’(530건, 1.8%), ‘의료조치 미흡’(1,396건, 4.8%), ‘열악한 시설 환경’(854건, 3.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0년대 중반 연 1,000건을 상회하던 ‘입원 시 보호의무자 비적격’ 관련 진정은 제도적 보완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 2019년 이후 100건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불법·강제수용, 부당한 퇴원 및 퇴소 불허,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은 여전히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의 주요 유형이다. 한편, 2021년 6월까지 다수인보호시설 사건의 처리건수(28,662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13.1%(3,769건)로,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 11.5%보다 1.6%p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결정례

인권침해 진정사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변화를 이루어낸 분야가 다수인보호시설이다. 다수인보호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위의 활동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나누어 주요 결정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의도적인 격리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일 경우는 1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이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가능하며, 이 요건만 충족되면 합법적으로 감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강제입원, 불법 격리 등 신체의 자유 침해

2004년 ○○중앙병원에서 환자들을 불법 격리하고, 관리자가 구타·폭언을 일삼고, 환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중앙병원 신체의 자유 침해, 04진인3988-05직인3, 2005. 06. 21).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입·퇴원 과정상의 위법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이러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료인력 및 입원환자 수의 적정성 위반에 대하여 피진정인을 행정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입·퇴원 절차상의 위법행위 및 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고발하였다. 피진정인에게는 입·퇴원 절차 및 방법의 개선책을 수립할 것과 입원환자들이 퇴원 심사 등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2007년에는 어머니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였는데, 6개월 후 어머니가 치매로 입원 연장 동의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계속 입원 조치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부당한 정신병원 계속 입원 관련) 06진인0002441 등, 2007. 04. 09). 조사 결과, ○○병원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진정인 누나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계속 입원 조치하였고, 퇴원심사 청구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환자 입원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환자들이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해당 시의 시장에게는 「정신보건법」상 계속 입원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과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신건강 국가보고서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2009. 04. 03)

•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절차와 관련,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킨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계속 입원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노력에 힘입어 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강제입원 요건 심사가 강화되면서 불법감금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 외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정신병원 내 심전도검사실 등의 CCTV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14진정1089100, 2016. 04. 22)

정신병원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고 병실 등 모든 곳에 CCTV가 설치·운영되어 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병원에는 병실, 안정실, 복도, 의사실, 관촬실, 치료실, 식당 등에 CCTV 총 123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이 병실 전체를 24시간 내내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CCTV 설치·운영을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병동 내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정신병원 보호실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19진정0466800 · 19진정0466801(병합), 2020. 04. 20]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진정인은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보호실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의 보호실에는 침대와 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차폐시설이나 환기시설 없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인들이 아무 때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진정인은 비록 사각지대가 있다 하더라도 CCTV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출입문을 통해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2)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성폭력 ○○특수학교 및 사건)(06직인07, 2006. 08. 21)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2005년 11월 21일 ○○특수학교 성폭력사건대책위가 사건 관련 가해자가 구속된 후, 이들의 기소 내용 외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일반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성범죄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할뿐더러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인권위법」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특수학교 및 ○○원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성범죄가 만연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학교 직원과 사회복지사가 여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당시 법인 임원들은 공식적으로 사건경위 파악이나 장애아동 보호, 그리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한 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총 6명의 범죄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기관에 관계 법인의 이사회를 재구성할 것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아울러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교육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도가니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8년 12월, ○○○도 ○○○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개연성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아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08직인18, 2009. 02. 11).

조사 결과 시설 생활인을 부당하게 결박하고,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위하여 옷을 만들어 입혔으며, 시설 생활인에 대한 강박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병원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시설장에게 시설 및 인력배치 개선,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 종사자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관할 감독기관인 군수에게는 시설의 일부 생활인 전원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개선조치, 관할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항 감독 강화를 권고하였다.

• 직권조사로 장애인 인권 적극 보호

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폭행〉, 14진정 0395600, 2014. 07. 07)는 인권위가 장애인거주시설인 복지원 내 미성년 지적장애인 거주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시설 내 피해자가 다수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시설장이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로 때리고 체벌하였으며,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장이 다수의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21일 장애인 체벌·폭행 등의 혐의로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하였다. 관할 지자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였다.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13진정0000000, 2013. 11. 12)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장애인들을 폭행·체벌하였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대표이사가 주로 CCTV가 없는 자기 방으로 거주인들을 데려가서 폭언하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과 과도한 체벌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인 산하 공판장의 사무국장은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하였음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회복지 법인 대표이사와 법인 산하 공판장의 사무국장을 「장차법」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방치 등(15진정0454300, 2016. 01. 19)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과도한 종교행사에 동원되고, 시설 종사자가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중증장애인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장애인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급된 보조금인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축한 직원용 숙소에 단독으로 거주함으로써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종교활동 시간 동안 이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거주인을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인력을 확보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종사자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인력을 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관할 군수에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른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및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연고지가 불분명한 노숙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 안정된 주거공간 없이 거리나 공원, 역, 쉼터에서 지내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숙인복지시설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이 포함된다.

• 인권지킴이단 등 제도적 변화 마련

2014년 4월 14일, 인권위에 접수된 노숙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거주인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노숙인요양시설에서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5직권0000300, 2015. 07. 15).

조사 결과 시설 측에서 거주인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고, 거주인들끼리 서

로 때리도록 하고, 무릎 꿇은 채 소화기를 들고 벌을 서게 하고, 발일 등에 거주인들을 동원하였으며, 시 보조금과 수급비, 장애수당 및 연금, 보훈 급여, 기초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장 가족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되자 시설을 자진 폐쇄하고 거주인들은 전원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에 시설 측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을 환수 조치할 것과 거주인의 수급비를 제외한 장애수당 및 연금, 기초연금, 보훈 급여 등을 당사자에게 반환 조치시킬 것,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복지기를 돕고자 2011년 6월 7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10여 년간 다른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다. 노숙인복지시설은 여타 다수인보호시설에 비해 출입이 자유로워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노숙인 지원 담당 행정기관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이다 보니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속적인 감시와 활동으로 인권침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와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의 의무적 설치 등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4)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신체적으로 쇠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해 있는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인권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강제노동, 금전 착취 등에 의한 인권침해>(14진정0061100, 2014. 06. 24)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자 노인복지시설 대표인 피진정인에 대하여 시설 생활인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 임의 사용, 노동에 대한 임금 미지불, 간접체벌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에서 임의로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발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주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주어 노인과 장애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진정시설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도지사에게는 피진정인을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할 것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피권고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피해자를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하거나 가족에게 인계하였으며, 피진정인을 해임하고 피해자 미환수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였다.

<노인요양원에서 치매환자 폭행 피해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14진정0430700, 2014. 09. 24)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 대한 시설 내 의료조치 미흡, 폭행사건 시 보호자 연락 지연 등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장을 대상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시설 내 입소자 간 다툼으로 피해자가 갈비뼈와 발가락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업무 간호일지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누락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거나 어떠한 신고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노인학대 및 치료방임 등 보호의무 태만으로 보아 인권침해로 판단하였으며, 피진정인의 피해자

에 대한 보호 소홀과 진료를 하지 않고 방임한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및 제39조의9 규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관할 군수에게 해당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학대 발생 미신고 관련 피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과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포함,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5)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을 포함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애정적·자율적·수용적인 태도보다는 권위적·통제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성에 기초한 아동인권 침해 문제가 쉽게 야기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성폭행, 구타, 협박, 친권포기 강요, 보조금 횡령 등 시설아동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도 종종 발생하였다. 인권위 출범 이후 아동양육시설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비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시설아동들이 학대나 방임 등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아동 CCTV 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20진정0513000, 2020. 10. 22)는 공동생활가정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공동생활가정에는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설치·운영한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CCTV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인 등 보호아동들의 동의를 얻을 것과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CCTV 운영을 중지·철거하고, 진정인을 전원 조치한 후 휴원하였다.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보수교육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슈는 ‘탈시설화’이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상 양육환경 자체가 대규모 집단 생활보호이며, 제한적인 공간과 확실적인 명령체계 내에서 행동해야 하므로 개인의 요구보다 효율적인 집단활동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 위주의 보호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의 과밀함과 열악한 환경, 시설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성장한 아이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례가 쏟아지면서 위탁 가정정책 중심 정책이 시행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역시 유사한 이유로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수인보호시설 설립의 근본 취지는 시설 생활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와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데 있지만, 이 시설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와 접촉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거나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경에 처해 있어 재활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오면 학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확실히 탈시설화할 경우 중증발달장애인이거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탈시설화의 길은 멀다. 당사자들의 부적응,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과 탈시설화 서비스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7.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2021년 6월까지 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전체 인권침해 진정건수의 5.6%인 6,660건이다. 전년 대비 126건이 증가한 190건이 접수된 2007년 이후, 교육기관 관련 진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2016~2020)은 연 500~700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2,147건, 32.2%)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학교폭력’(581건, 8.7%), ‘부당한 제도 및 처분’(519건, 7.8%), ‘폭행 및 가혹행위, 체벌’(409건, 6.1%), ‘부당한 징계’(276건, 4.1%), ‘개인정보 유출 등’(182건, 2.7%) 순으로 나타났다(단, 이는 교육기관 통계로 학생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인격권 침해, 폭행 및 가혹행위·체벌, 부당한 징계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2010년대 중반 이후 휴대전화 사용 제한, 두발·용모·교복 제한, 과도한 개인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의 진정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2021년 6월까지 교육기관 사건의 처리건수(6,363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18.6%(1,182건)로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 11.5%보다 7.1%p 높았다. 그러나 2020년 교육기관의 권고수용률은 92.3%로, 전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권고수용률 97.2%보다 4.9%p 낮게 나타났다.

2) 주요 결정례

인권위가 초등학생에게도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니 강제로 일기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을 때 교육계, 언론, 학부모 등 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학교의 강제 이발과 과도한 복장검사를 지적했을 때도 일부에서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며 이견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인권위는 국제기준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하여 일관된 원칙을 제시해 왔다.

다음은 각급학교와 관련한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이다.

• 인권 시각에서 바라본 교복 명찰, 고정부착에서 탈부착으로

인권의식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튼다. 문화와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폭력을 가하는 이도, 당하는 학생도 당연하게 여기던 체벌이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라지게 된 것처럼, 인권의식이

커지면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부당함에 눈뜨고 스스로 권리를 찾게 된다. <교복 명찰 고정부착에 의한 인권침해>[09진인1542·1543·1545·1546·1547·1548(병합), 2009. 10. 26]도 학교와 학생에 대한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진정인은 교복에 명찰을 고정 부착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본인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이름이 개인에 대한 인격적 징표이자 소중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전국 각 시도 교육감, 해당 학교장에게 교복에 명찰을 고정 부착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교복 명찰은 고정부착에서 탈부착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 외 각급학교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일제고사 반대 학생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08진인486, 2010. 05. 10)

이른바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고사에 반대하여 수업 전 시위를 하기 위해 만든 학생의 피켓을 학교에서 동의 없이 회수해 찢은 것에 대한 진정사건이다. 인권위는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수업시간 전에 평화적으로 행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시위문화를 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피켓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거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과 소속 교사들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과 관련한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내 게시에 의한 인권침해(13진정0790300, 2013. 12. 27)

학교폭력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 친구를 도우려고 옆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 당사자들과 동일한 조치를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내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 창피를 주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강제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수치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과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에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학교 교장에게 학교폭력 사례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육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 대학원생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

2015년에 발생한 이른바 ‘인분 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드러내어 사

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학원생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대학의 자치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호되어야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하였다(〈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15. 11. 04).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의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 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는 권리침해 시 권리구제 및 본인의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대학원생의 의무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인권위는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고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으며, 대학원생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현행 대학평가제도의 평가지표에 대학원 인권보장 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원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평가 항목에 인권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시대에 따라 인권 내용도 바뀌어야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한 이후 서울·전남·광주가 잇따라 제정·시행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각각 충남·제주에서도 제정하였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조사·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6개 시·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도는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하면 인권의 내용도 바뀔 수 있다. 2017년 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통신의 자유)을 제한하더라도 그 정도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것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었다(〈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17진정0193700, 2017. 19. 08).

8.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중앙행정기관(6,937건, 5.9%), 지자체(4,864건, 4.1%), 공공기관(2,744건, 2.3%) 사건은 총 접수건수(11만 8,176건)의 10%를 상회한다. 2010년 이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 진정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지난 20년간 중앙행정기관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건수(6,742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8.1%(544건)로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 11.5%보다 3.4%p 낮았으며, 공공기관(처리건수 2,612건 중 246건 구제, 권리구제율 9.4%)과 지자체(처리건수 4,703건 중 533건 구제, 권리구제율 11.3%)도 전체 침해사건 권리구제율보다 각각 2.1%p, 0.2%p 낮게 나타났다.

2) 주요 결정례

인권위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내린 주요 결정례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침해 △폭행 및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부당한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비밀 침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을 받는 것은 인권침해〉(07진인874, 2008. 05. 29)는 국가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진정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동사무소(현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찍어야만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동사무소 관계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을 근거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는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문은 태어날 때부터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성인 만큼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이다. 지문과 관련한 인권위의 결정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온 국가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인권침해 진정 영역 넓어져

공항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는 도중 타인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에서 속옷, 콘돔을 꺼내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한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17진정 0712100·18진정0015300(병합), 2018. 11. 14)도 앞의 사례와 맥락을 같이한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공항 세관이 검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 대기선을 지정·운영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관세청장에게 여행자 개인 휴대품 검사 시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와 대기선 간 거리 조정 등의 대책을 만들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1989년 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공항을 출입하는 인구가 급증하였고, 위험하거나 금지된 물품의 반입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하물 검사는 당연한 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위에 제기되는 진정 목록에 이처럼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정 영역은 더욱 세분화되고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희롱 조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16진정0983100, 2017. 04. 04)

공항 노동자인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고용노동부 지청에 성희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소속 근로감독관은 대질조사를 별도 조사실이 아닌 피진정인이 근무하는 책상 앞에서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성희롱 사건 조사 시 비공개 장소에서의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피해자 등의 조사 시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2) 폭행 및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2018년에 인권위는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발동하였다(○○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 직권조사, 17직권0002200, 2018. 01. 26). 이전까지 대학병원은 엘리트들만의 폐쇄적인 조직으로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웠고, 피해자들도 조직문화나 관행 등으로 받아들인 탓에 오랫동안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영역이었다.

• 인권보호에 예외 영역은 있을 수 없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대학교 전공의 폭행 피해사실이 공개되면서 인권위는 추가 피해자 및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병원 해당 과 전공의들은 2014년부터 지도교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실과 의국 사무실 등 병원 내 부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얼차려 자세로 폭행을 당하는 등 위계집단 내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과 진료과장은 2015년 발생한 폭행 피해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시행,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병원장 역시 이러한 사

실을 제보받고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신 내부 조사만 진행하여 병원 최고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심각한 폭력행위가 대학병원에 만연하게 된 것은 폭력 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관행 때문이라고 보아, 학교 측에 폭행 교수들을 중징계하고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전공의 인권보호 및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동안 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폭행이 용인되어 왔으나, 이 사건은 대학병원도 인권보호의 예외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잘못된 정책이라면 시정 요구도 가능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강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17진정0606200·17진정1139600·17진정1141700·17진정1143800·17진정1202600(병합), 2019. 02. 21]는 인권위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복장을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2018년 ○○시는 자율에 맡겼던 택시기사 근무복 착용을 6년 만에 의무화한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복장을 유지하게 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서비스업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정복장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택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장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하였으며, 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 외 국가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의 폭행 및 강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18직권0001600, 17진정0807400·18진정0112800(일부 병합), 2019. 08. 08]

2016년 4월 사회적 논란이 된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집단입국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였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 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각각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시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또는 명확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통일부 장관에게는 집단입국 사실 언론공포에 대해 그 과정과 문제점을 밝힐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검찰총장에게 언론공포 및 동의 과정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 「국가정보원법」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피진정기관들은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일부 수용하였다.

(3) 부당한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14진정0861000, 2015. 09. 16)는 국가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인권의식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진정인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을 보던 중 화장실 이용을 감독관에게 요구하였으나 화장실 출입 시 재입실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할 수 없이 감독관이 응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시험실 뒤편에 쓰레기통을 마련해 주어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 피진정기관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할 때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18진정0894500, 2019. 10. 14)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수험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장 대부분은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집중력 저하 방지를 위해 시험 중에는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수험생들도 이러한 관행에 의문을 달지 않았고, 생리현상을 참는 것 역시 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인 생리적 욕구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금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일깨워주었다.

(4)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2019년 말에 시작하여 2020년부터 본격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위축·중단시켰으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마저 위협하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되었으며, 마스크 등 긴급물품 지원이나 의료지원에서 이들이 배제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시는 재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소득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고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을 발표하였고, ○○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시와 ○○도의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며, 「인권위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자체장에게 해당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코로나

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소득 지원 시 이주민 배제), 20진정0234400, 2020. 05. 21). 인권위는 ○○도의 불수용에 대해 제차 권고하였다. 이주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도 자국민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

그 외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이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권조사(〈○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화재사고 직권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07적인2, 2007. 04. 09)

2007년 2월 11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3층 보호실에서 불이 나 구금되어 있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중 잠금장치를 여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유독가스에 희생되었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는 출입국사무소장에게 소방 및 안전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보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권리구제 절차를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노동부 장관 및 지방노동청 지청장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고 근로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장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을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사무공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그에 합당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서장에게는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부검 시 미리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부검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주노동자 과잉단속에 의한 인권침해(09진인2516, 2009. 10. 12)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관계자 이 모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년 7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거리에 내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시설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를 강제력 행사 개시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 차량 탑승 후에 고지한 점, 신분증 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외국인 근로자를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rob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점 등을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과잉진입, 주거 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제2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성별·성적지향·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은 총 3만 3,893건이며, 이 중 성희롱 관련 진정건수가 3,380건(9.6%)으로 장애 관련 진정건수 1만 6,221(46.3%)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로 인한 차별 관련 진정은 1,386건(4.0%), 성적지향은 392건(1.1%)이다.

성희롱 관련 진정은 전년(2005년, 60건) 대비 47건 증가한 2006년(107건)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303건)에 가장 많은 진정이 제기되었다. 성별 관련 진정은 2010년 중반까지 100건을 하회하였으나 2016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9년 225건을 기록하였다. 인권위 설립 이후 매년 5건을 밀돌던 성적지향 관련 진정은 2010년대에 들어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7년에는 성적지향 사건이 전년(2016년, 5건) 대비 50배가 넘게 증가한 261건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균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조항 관련 진정이 244건 접수된 데 기인한다.

한편, 2021년 6월까지 성적지향 사건의 처리건수(381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76.6%(292건)로 전체 차별사건 권리구제율 27.7%보다 49.1%p 높은 반면, 성희롱 사건 권리구제율(778건, 23.8%)과 성차별 사건의 권리구제율(310건, 23.1%)은 전체 차별사건 권리구제율보다 각각 3.9%p, 4.6%p 낮게 나타났다.

2) 주요 결정례

인권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성별 사건의 권리구제는 122건(약 9%), 성희롱 사건은 140건(4%)이었고, 성적지향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1건, 2020년 2건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성별 △성희롱 △성적지향 세 영역의 주요 결정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별로 인한 차별

성차별로 인한 진정건수는 2002년 2건에서 2019년 22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부당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일들을 사회 변화와 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별로 느끼게 되면서 문제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설립 20년이 지난 지금도 성별로 인한 차별은 공고하다.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18진정0107300, 2019. 07. 24)과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차별>(19진정0493800·19진정0939000(병합), 2020. 04. 28)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별 고정관념과 선입견 여전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2019)은 생산직 근로자 채용 시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하고 채용 후에도 여성 근로자의 승격에 제한을 두어, 똑같이 사원으로 입사한 생산직군 여성 근로자는 현재도 전원 사원인 반면 생산직군 남성 근로자는 전원 관리자로 승격한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회사는 “생산직의 제조 업무 중 현미경 검사 등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에는 과거부터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작업이므로 생산직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고, 관리자는 전체 공정의 이해와 함께 설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루야 하므로 ‘체력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겸비한 남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승격에 유리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산직 제조 직렬의 경우 남녀 근로자가 성별 구분 없이 3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출하 및 품질관리 직렬 근로자도 제조 직렬에서 순환근무를 한 것으로 볼 때 생산직 남녀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이나 노력의 정도 또한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회사의 여성 근로자는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작업에 적합”하다거나 ‘위험하고 무거운 부품을 관리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라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선입견에 기인하여 여성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승격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차별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차별 및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2020) 역시 근본적인 양성평등의 길이 얼마나 요원한지를 보여준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하여, 진정인들이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포럼(2008. 11. 27).



입법 및 사법 분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제 및 이행방안 토론회(2012. 09. 19)

하는 노동자인데도 임금·연차휴가·복리후생 등에서 진정한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성차별 의도가 없었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 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한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과 기관은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 그 외 성별 관련 인권위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서의 차별(05진차0000517, 2005. 09. 28)

초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부여하고, 여학생에게는 남학생 번호를 모두 채운 후 대략 30번부터 부여하여 왔는데,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어린 학생들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며, 이로부터 초래되는 폐해는 학생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학생들에게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초등학교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06진차116·06진차136(병합), 2006. 09. 11]

한국철도공사가 고객 서비스 업무 담당 승무원의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다른 승무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KTX 여승무원 업무는 외주화함으로써 임금·상여금 등의 고용조건에서 KTX 내 다른 승무원에 비해 차별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성별을 기준으로 외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새로운 위탁사는 남성 승무원도 채용하고 있으며, KTX 열차 팀장 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1명이, 새마을호 승무원 중에는 남성 승무원 4명이 근무하는 등 열차 승무의 직책별로 명시된 경력만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열차 승무 업무에서 성별은 진정직업 자격 또는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한국철도공사가 고객 서비스 업무는 여성 집중 직무이자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여승무원을 저임금 조건에 위탁사 비정규직으로 분리해 채용하도록 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수용하지 않았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른 분리모집(〈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05진차430, 2007. 08. 27)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성별이 관련 직무의 필수적 자격요건이 아닌데도 성별을 구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것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성에 국한하거나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인원을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는 요지의 진정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화재진압, 수관 관리,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의 소방업무가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을 요구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로부터 남녀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논거가 곧바로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소방업무에 필요한 강인한 신체적·체력적 조건은 남녀 지원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개인별로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이므로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소방업무에 남성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남녀를 구분 모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라 채용 분야 및 채용 인원을 달리 정하여 구분 모집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에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른 분리 모집을 중지하고 양성에게 평등한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 및 신장 제한(09진차773, 2010. 05. 25)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 국방부 장관에게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인 국방부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2) 성희롱으로 인한 차별

1992년 발생한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이 고용상 성차별 문제임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2021. 01. 25)는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문화에서는 언제든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을 통해 인권위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차별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 성희롱, ‘수위’와 ‘빈도’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는 ‘전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6개월에 걸쳐 ○○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고 ○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종합

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성희롱의 본질은 권력관계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즉 실질적인 권력관계에서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성희롱의 진위 여부는 '수위'와 '빈도'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 발생 여부 및 성적 언동으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 여부에 달려 있다.

인권위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전 ○○시장의 일부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고용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였다.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이전과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빈도가 적고 수위가 낮다고 해서 용인할 경우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러한 행동은 결국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용인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의 문제이다.

인권위는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2021)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을 충실히 할 것,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2차 피해 증가 및 성희롱 인식 범위 확대

성희롱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 그 대신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은 2020년 8월 20일 제9집까지 발간하였다.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의 특징은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리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성희롱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피해 예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9집에 소개된 성희롱 권고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이하 309~310쪽 표는 2001. 11. 25~2019. 12. 31 누계).

- 권고사건의 당사자 관계와 직위

243건의 권고사건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9.1%로,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고용관계			업무관계 업무거래 협력관계	그 밖의 관계				계
	직접고용 상하관계	직접고용 동료관계	간접고용 업무관계		교육 관계	시설/ 서비스 이용관계	공권력/ 강제수용 관계	기타	
건수	168	17	12	5	24	6	1	10	243
비율(%)	69.1	7.0	4.9	2.0	10.0	2.5	0.4	4.1	100.0

당사자 직위는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78.6%이고, 피해자는 평직원이 77%로 가장 많았다.

피진정인	피해자	대표자	고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평직원	고객	기타	계(%)
대표자	-	-	3	55	-	10	68(28.0)	
고위관리자	-	-	5	14	-	6	25(10.3)	
중간관리자	-	-	1	93	-	4	98(40.3)	
평직원	-	-	1	23	1	14	39(16.0)	
기타	-	-	-	2	-	11	13(5.3)	
계	-	-	10	187	1	45	243	
비율(%)	-	-	4.1	77.0	0.4	18.5	100	

- 성희롱 발생 기관, 장소 및 양태

성희롱 발생 기관을 살펴보면 기업,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4.2%를 차지하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공적 부문도 36.8%에 달하여 성희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구분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계
	국가 기관	자치 단체	공공 기관	학교	기업체	단체	학원	의료 기관	요양 및 보호시설	기타	
건수	10	18	23	36	109	19	10	11	5	2	243
비율(%)	4.1	7.4	9.5	14.8	44.9	7.8	4.1	4.5	2.1	0.8	100
	87건(35.8%)				156건(64.2%)						

발생 장소는 직장 내인 경우가 45.4%를 차지하고, 회식 장소의 경우가 23.8%로 나타났다.

구분	사업장 내	회식장소	교육장소	출장지	공공/ 상업시설	사석	기타	계
건수	124	65	18	15	1	15	35	273
비율(%)	45.4	23.8	6.6	5.5	0.4	5.5	12.8	100

※ 진정사건 1건당 발생 장소가 다수인 경우가 있으므로 권고사건 243건보다 장소가 더 많음

- 권고사건의 성희롱 양상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절반이 넘는 52.7%, 언어적 성희롱은 42%로 신체접촉을 수반한 성희롱이 더 많았다.

구분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언어적	육체적+시각적	언어적+시각적	육체적+언어적+시각적	기타	계
건수	38	102	-	84	1	8	5	5	243
비율(%)	15.6	42.0	-	34.5	0.5	3.2	2.1	2.1	100

(3)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인권위 출범 이후 성소수자 관련 차별 진정건수는 연간 10건 안팎에 불과하였다.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사회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공론화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인권침해>[06진차525·06진차673(병합), 2008. 08. 25]는 성전환자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진정인 최 모 씨 외 2인은 대법원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성별 정정요건으로 △최종적인 외과수술(성기수술)을 할 것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반대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범죄 또는 탈법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부모의 동의를 제출할 것 등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누락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의 세부조항 중 ‘최종적인 외과수술(성기수술)을 할 것’에 대해서는 성전환을 위해 불가역적 의료를 행한 사람에게 성기 성형수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할 것, ‘만 20세 이상일 것’에 대해서는 성년자를 원칙적 대상으로 하되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둘 것 등, 9가지 항목별로 개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였다. 또한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법의 공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므로 특별법 제정 전까지는 대법원 지침 중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3호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용하였다. 그 외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헌혈 문진 시 성적지향에 의한 평등권 침해(03진차664, 2004. 08. 03)

헌혈을 하려는 이들에게 실시하는 문진 사항 중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는가”라는 항목은 헌혈자의 HIV 감염 가능성을 묻기 위한 것으로, 실제 “예”라고 대답하면 헌혈에서 배제되었다. 이

에 한 동성애자 인권단체 대표가 위 문진 조항은 동성 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문진 조항이 에이즈 감염이 없는 동성애자도 헌혈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헌혈문진표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동성 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문진 조항을 개정하고, 최소한 동성 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현재 헌혈문진표는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남성과의 성접촉”으로 문항이 변경되었다.

-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 차별(17진정 0935400, 2019. 04. 10)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려던 진정인이 ○○구 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진정인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였으며, 다음 날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시해서 대관을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한 사건이다. 이에 진정인은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천장 공사는 이미 결정되어 일정이 잡혀 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취소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 공사 일정을 정하였으나,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관리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적 메모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특히 대관허가 취소과정에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 반면,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게 시설 이용 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적취향, 성적지향, 성정체성

‘성적취향’과 ‘성적지향’은 종종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다른 의미이다. ‘성적취향’이란 신체의 일부 또는 옷이나 소지품 따위의 물건을 통하여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는 ‘페티시’를 의미하며, ‘성적지향’이란 한 개인이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성적지향은 다른 성별에 이끌리는 ‘이성애’, 같은 성별에 이끌리는 ‘동성애’, 성별에 관계없이 이끌리는 ‘범성애’, 성적 이끌림이 없는 ‘무성애’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사람마다 느끼는 이끌림이나 행동 경향, 강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성정체성’이란 생물학적 성(sex)의 구별과는 별도로 한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을 말한다. 그러나 스스로 특정 성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2. 용모·신체조건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지난 20년간 인권위에 진정된 용모·신체조건 차별 관련 진정건수는 총 389건으로, 차별 관련 전체 진정건수(3만 3,893건)의 약 1.1%이다. 인권위 설립 초기 용모·신체조건 차별 관련 진정은 5건 이하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년(2004년, 6건) 대비 약 7배가량 급증한 45건이 접수되었다. 이후 용모·신체조건 차별 관련 진정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매년 20~4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 용모·신체조건 차별사건의 처리건수(391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26.3%(103건)로, 전체 차별사건 권리구제율 27.7%보다 1.4%p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결정례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를 △신체조건 △용모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2005년,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 03진차562·04진차265·04진차336·04진차343·05진차19·05진차74·05진차75·05진차81(병합), 2005. 04. 11)].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업무 수행에 관한 육체적 능력은 개인차가 있고, 육체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도 일률적으로 키와 몸무게로 판별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를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소년보호직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반면 교정직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소방방재청장은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차별은 지식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체화되는 것이기에, 차별적 언동을 하고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과체중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10진정0436000, 2010. 12. 20)은 피진정회사 부회장이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직원에게 “목표체중 감량이 안 될 시 사직해야 한다” 등의 이메일을 보내며 체중 감량과 운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피진정회사 부회장의 행위는 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인력관리의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 능력 측정과 무관한 것으로 전인적 구속까지 이른다.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인에게 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

사회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되면서 용모에 대한 지적이나 차별적 언동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차별〉(20진정0681000, 2020. 12. 03)은 아직 우리 사회에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하며, 선입견이나 차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진정인은 ○○카지노에서 딜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영업부 및 노무팀의 간부인 피진정인들이 지시한 흰머리 염색을 거부하자 진정인에게 사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위는 용모의 기준은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상황, 장소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고객이 흰머리 카지노 딜러의 외형을 보고 딜러의 집중력이나 체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피진정인들의 우려는 용모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 흰머리가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연륜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딜러 업무의 수행에서 머리색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제한되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회사가 말하는 정돈되고 통일된 모습 등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흰머리가 과도한 염색이나 과감한 헤어스타일과 같이 사회통념상 카지노 딜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용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카지노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과 이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외 용모·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외모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17진정127000, 2017. 07. 10)

시설관리 분야에 입사 지원을 한 진정인은 면접 후 인사팀장이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으니 인근 숙소를 구하는 대로 연락을 주면 출근 날짜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여, 숙소 계약을 완료하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연락을 받고 출근한 진정인에게 인사팀장은 “진정인의 인상착의를 현장 소장에게 보고한 결과 대머리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인권위는 인력 채용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자체적으로 차별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3. 장애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인권위 설립 이후 2021년 6월까지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1만 6,221건으로, 차별행위 총 진정건수인 3만 5,052건의 46.3%에 달한다.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640건으로 전년(2007년, 256건) 대비 3배가량 폭증하였으며, 이후 점증하여 2011년(886건)을 제외하고 매

년 1,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차별 권리구제 건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2019년 (204건)을 제외하고 매년 약 500여 건에 이르며, 2020년에는 712건을 구제하였다. 2021년 6월까지 장애차별 사건의 처리건수(1만 5,841건) 대비 권리구제율은 34.7%(5,489건)로, 전체 차별사건 권리구제율 27.7%보다 7.0%p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 첫날 사무실 풍경
(2001. 11. 26).
인권위에 접수된 제1호 진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007년 제정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고용, 노동 등 6가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차법」 서울 설명회
(2008. 04. 04)



「장차법」 제정 10주년 기념 「장차법」 개정안 수렴 토론회
(2017. 04. 04)

2) 주요 결정례

인권위의 장애 관련 활동은 「장차법」 제정 전후로 나뉜다. 「장차법」 제정 이전의 주요 사건으로는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사망사고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02진인0001402, 2002. 11. 18)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543, 06진차544(병합), 2007. 03. 09)이 있다.

• 지하철 내 장애인 사고는 국가기관의 잘못

2002년 5월 발생한 '발산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는 갓 출범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장애인의 희망과 기대가 드러난 사건이었다. 진정인은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의 요구는 ○○시의 조속한 공개 사과와 배상, 리프트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제 등이었다.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는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의 부실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의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청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 방지용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휠체어 콜택시 도입, 저상버스 운행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은 기회의 박탈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2007)은 2006년 ○○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시각장애인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2002. 09. 07)

(약시)에게 확대 답안지는 제공하였으나 확대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고, 시각 상태를 고려한 색 대비 시험지(흰 종이에 검은 글씨 필요)를 준비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장애를 한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시각장애로 인해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고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박탈하는 ○○시 공무원 공채시험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에 위배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의무에 어긋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적절한 시험 편의를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직 「장차법」이 없던 상황에서 인권위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의 권고를 하였으며, 이는 처음으로 간접차별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사례이기도 하다.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그동안 인권위가 내린 주요 결정을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이동권 제한에 따른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권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편의제공 미흡에 따른 차별 등 5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08진차886, 2009. 08. 07)은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가 처음으로 「장차법」을 적용하여 권고한 사례이다.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진정인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진정인에 대해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에게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차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까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인정해야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방송접근권을 제한받는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지상파방송 한국수어통역 의무비율을 5%로 규정한 2013년 기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메인뉴스에 대한 지상파방송사 한국수어통역 미제공 등〉(19진정0130100, 2020. 04. 20)은 장애인에 대한 방송국의 차별적 인식에 경고장을 날린 사례이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의 시청권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불가능한 국민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이유로, 방통위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인 아닌 일반인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포함,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

였다. 또한 2019년 4월 4일 강원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9시간 이상 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도 수어통역 없는 재난방송은 차별이라고 판단, 인권위가 긴급성명을 발표하였다. TV에서 수어를 작게 처리하는 것은 비장애인이 볼륨을 낮추고 TV를 보는 것과 같으므로 재난방송에서는 수어의 직접 제공이 원칙이 된 것도 인권위의 권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외에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레저스포츠 이용 시 청각장애인 탑승 거부(17진정0857700, 2018. 04. 10)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이 ○○시 ○○해수욕장 스카이버이크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1명당 비장애인 보호자 2명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레저스포츠 이용과 관련한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향후 장애인이 탑승할 때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관리업체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시 ○○해수욕장 스카이버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1호 (3)을 참고하여 개정할 것, 「○○시 ○○해수욕장 스카이버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 시 정신적·신체적으로 탑승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 등의 내용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 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주민센터의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 19진정 0501400, 2019. 10. 07)

1급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은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진정인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말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행한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은 말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와야 한다고 하여 결국 진정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인권위는 이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 뇌병변장애 등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권고 이후 의사소통 방법(보완적 의사확인서 등)을 통해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사무편람을 개정하였다.

(2) 이동권 제한에 따른 차별

장애가 있다는 것은 곧 일상과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이동권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켓을 들어야만 했다. 인권위의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 부족, 설계 및 구조상의 문제 등 온갖 이유로 불가능하다고들 하던 각종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장애인의 이동권도 일정 부분 보장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콜택시 이용 횟수 제한, 대중교통 접근의 불리함, 지역 간 이동의 어려움 등 보이지 않는 제약과 차별이 존재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08진차426·08진차454(병합), 2008. 08. 27)은 시내버스 전자문자안

내판 미설치는 청각장애인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며 진정이 제기된 사건이다.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국토해양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 내부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그 이전부터 운행해 오던 버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시내버스 등은 「장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하고, 2009년 3월 이전부터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중앙교통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 시행기준을 수립하였다. 그 외 이동권 제한에 따른 차별의 인권위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15직권0000900, 2016. 11. 18)

선박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 종합적인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 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 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 이용 시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피권고기관은 모두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게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15진정06676000·15진정0799500·15진정0800400·15진정0800500·15진정0800700·15진정0801000·15진정0801300·15진정0801400·15진정0801600·15진정0801700·15진정0801800·15진정0801900·15진정0812800·15진정0846900(병합), 2017. 07. 03]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진정인들이 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제기된 진정이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정당한 편의제공 관점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휠체어 사용자의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의 일부를 개조하여 휠체어 승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 탑승공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대·폐차에 충당되는 버스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이 갖춰지도록 한 후 휠체어 사용자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

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휠체어 사용자의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및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운영기술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피진정인 등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였으나 피진정회사는 비용, 공간 부족, 사고 위험 등의 이유를 들어 불수용하였다.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권고(15직권0001300, 2016. 06. 13)

2015년 인권위는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일부 항공사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대형 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은 채로 탑승 및 하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항공기 탑승을 위해 장애인에게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7개 국적 항공사 대표에게는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18진정0528900, 2019. 02. 25)

진정인과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전화(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할 차량을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회사의 전화 상담원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대여 배제를 중지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약관 변경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

(3)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권 차별

〈○○구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미설치〉[08진차116·08진차117(병합), 2008. 05. 02]는 장애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차별하여 교육권 침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장애 학생의 학부모인 진정인들은 자녀들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고등학교와 시교육청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였다. 고등학교 측은 학교가 40년 된 노후건물이어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실습에 사용하는 기계들이 중장비 기계, 고속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기기, 무거운 측량기계들로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은 실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학교 1층에 이동통로의 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습용 기계들이 다루기 힘들고 위험한 데다 고가여서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학교 측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상담과 지도, 적절한 편의제공 등을 통해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비장애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본 것이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들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시 교육청에는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9년 제기되었던 <학생승마체험사업에서 발달장애학생 차별>(18진정0904400, 2019. 09. 06)은 장애인 무조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보여준 사례이다. 진정인은 ○○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학생의 부모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신청하여 4회 체험을 마친 자녀가 이후 추가 이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승마장 측이 장애 학생은 재활승마만 할 수 있다며 이용을 제한하였다. 장애는 유형마다 다르므로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는 승마장의 서비스 거부하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조건 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학생승마체험을 원하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승마 외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 외 교육권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및 괴롭힘[17진정1017100·18진정0014000(병합), 2018. 04. 10]

피진정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한자 쓰기 과제를 부과하여 완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복도에 남아 한자를 쓰게 하였으며, 교무실로 불러내어 큰소리로 혼내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특수교사가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과제량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자 쓰기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왼손 약지가 없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채용 신체조건 중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기준으로 인해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될 수 있어 문의한 결과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응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신체기준에 의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제한>(18진정0197700, 2018. 8. 10)). 인권위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컴퓨터 활용이나 운동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

는데도, 업무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신체 기준으로 응시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경찰공무원 채용 시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신체 기준으로 인해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시에 실시되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로 장애인 고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수혜자는 대부분 경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취업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장애인의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5) 편의제공 미흡에 따른 차별

장애차별 관련 상담 중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 크게 증가한 영역이 편의 제공이다. 「장차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규정한다. 요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애인과 경쟁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기회만 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지원해야만 정당한 편의 제공이자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사회에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9년 진정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물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18진정0112400 등 42건(병합), 2019. 12. 09]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이 회원가입과 결제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데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설명이 이미지로 되어 있고, 대체 텍스트가 없어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을 알 수 없다며 진정이 제기된 사안이다.

인권위는 과거 이와 유사한 진정에 대하여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등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면서 장애인의 웹 접근이 불편하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고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 「모바일 앱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장애차별 사건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장차법」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 편의제공 미흡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메모 대필 편의제공 거부(15진정0627300, 2015. 08. 20)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진정인이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의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인 상황에서, 필기시험 중 회계학 과목에 다수의 계산 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 과정을 대신 메모해 줄

수 있는 편의제공을 시험 주관처인 인사혁신처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긴급구제를 요청해 온 사건이다.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 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필기장에 응시자는 회계학 계산 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이는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며, 요구되는 메모 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 대필을 지원한다고 하여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 대필자를 직접 선정하고 메모 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대필자가 문제 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진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18진정0384900, 2018. 09. 19)

청각장애 2급인 진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장애인 사법지원과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가사사건의 소송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며 변호사를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수어통역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2018년 7월경 서울가정법원에서 수어통역 지원에 대한 예납 명령을 받았다. 수어통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조제도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였으나,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를 자비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재판 진행에서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거나 소송구조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권고기관은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역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어통역 등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법원의 모든 소송절차 및 집행·회생 등 그 밖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19진정0881500, 2020. 09. 21)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의 상대방 측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처리 과정에서 계속 음성언어로만 말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파출소로 방문하라고 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진정인은 피해차량과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진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처리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들에 대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조력제공 의무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관할 경찰서에 이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기준 만들어야

국가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살아온 환경에 따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 생애주기별 경험에 따라 성격이 모두 다르고 기본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모든 장애인에게 맞춤형 편의 제공을 하거나 특별 대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4. 나이·병력·종교 차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개관

200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건수 3만 5,052건 중 나이 관련 진정은 5.6%(1,958건), 병력은 1.5%(527건), 종교는 0.7%(244건)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이 관련 차별은 2009~2014년 매년 150건 전후로 제기되었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병력 관련 차별은 매년 20~3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종교 관련 차별에 대한 진정은 인권위 설립 이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그 건수가 연간 10건 전후로 많지 않다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2021년 6월까지 나이 사건의 권리구제율은 29.7%(573건)로 전체 차별사건 권리구제율 27.7%보다 2.0%p 높은 반면, 병력 사건(1281건, 24.9%) 및 종교 사건(52건, 21.5%)은 전체 차별사건 권리구제율보다 각각 2.8%p, 7.2%p 낮다.

2) 주요 결정례

차별은 비교 대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교 대상이 없다면 애초에 차별이 불가능하다.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능력은 개인 차이일 뿐 나이의 많고 적음, 병력·종교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지난 20년간 인권위가 차별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켜 왔는지 △나이 △종교 △병력 관련 주요 결정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은행원 역직위(나이가 들어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위·임금이 거꾸로 내려가는 제도)발령 차별, 임용고시 응시자격 차별, 청원경찰 응시자 나이 및 성차별,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항공사 여승무원·소

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등 2006년에 인권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해 권고한 건수는 6건에 이른다. 이 중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직원 채용 시 나이 및 학력에 의한 차별을 한다는 진정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는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한 24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05진차 317·06진차1·06진차194·06진차609(병합), 2007. 04. 301.

• **본질적 업무능력과 나이는 무관**

공무원의 응시 연령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행령」 제16조 별표4에 따라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28세로 제한하였고, 6급 및 7급 공채의 경우 20~35세로, 5급의 경우 20~32세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나이 제한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9급 시험의 응시 연령에 대해 28세의 상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연령과 본질적 업무 간의 상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가 고령화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령 공직사회가 고령화된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 및 효율성 제고는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수험 준비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폐단 역시 다양한 고용기회 창출을 비롯, 사회 전반적인 연령차별 철폐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 시 응시 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였다.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나이 관련 진정 급증

인권위의 나이 차별과 관련한 지속적인 권고는 2009년 3월 22일 근로자의 모집·승진·해고·퇴직·전보 시 연령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얻었다. 이 법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되며, 취업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차별 보호대상이 된다. 인권위 출범 이후 2008년까지 7년간 나이 차별 관련 진정건수는 총 322건이었으나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에만 210건으로 급증하였다.

지금은 기업의 채용 공고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나이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모집에서뿐만 아니라 보수 지급, 승진 기회, 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나이가 차별의 근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 외 나이 차별 관련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신인 코미디언 공채 시 응시연령 제한(10진정0105300, 2010. 05. 24)

공영방송인 ○○방송은 2010년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하였다. 피진정인은 20여 년간 동일한 응모자격을 제시해 왔으며, 연예인의 데뷔 나이가 점차 어려워지고 평균 활동기간 또한 짧아지는 추세에서 만 30세 이후 합격한 사람에 대해 몇 년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원자격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는 만 30세를 초과했다고 하여 방송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신인 코미디언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타 방송사의 경우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할 때 응시 상한 연령을 두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공영방송사는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발굴·개선하는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나이를 기준으로 신인 코미디언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14세 미만 아동 헬스장 출입 배제(20진정0554600, 2020. 10. 22)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헬스장 이용을 금지하였다. 상업시설 운영의 자유가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일부 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든 아동을 개별적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연령차별금지법」 3주년 기념 토론회(2012. 03. 20)

것에 해당하고, 아파트 내 시설에서 각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 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헬스장 출입을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입주민 의견 수렴과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커뮤니티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헬스장 운영방식을 결정하기를 권고하였다. 피진정아파트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2)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2007년에 제기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과 2019년 발생한 '특정 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는 종교인 차별'은 전자와 후자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 종교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2007년 ○○대학교가 교수 채용 시 응시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여 실력 있는 다른 지원자들의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대학교 교수 채용 시의 종교차별, 05진차345, 2007. 05. 14).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대학교 측은 사립대학은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설립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대학의 존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대학교 측이 실질적으로 지원자를 특정 교인으로 제한하고, 특정 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채용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특정 종교 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설립한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해당 종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이를 위해 대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도 인정되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교과과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부를 실질적인 채용요건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든 학부 교수에 대해 특정 종교인 여부가 필수적인 직업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학교에게 교수 채용 시 응시 자격을 실질적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특정 종교 신자에게 불리한 것은 간접차별

제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교인인 진정인은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 이는 진정인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제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차별, 19진정0456100, 2019. 11. 25). 인권위는 국가자격시험 요일이 다른 종교의 신자

또는 무종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외견상으로는 동일한 대우이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 신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피진정기관에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그 외 종교 관련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19진정0383000, 2020. 01. 22)

대학 신학과 조교수인 진정인의 가족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현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진정인은 부교수 승진서류를 대학교에 제출했으나 학교는 "(특정 종교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를 이유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에서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라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히잡 착용을 이유로 취업에서의 차별(19진정0461800, 2020. 12. 29)

피진정기관 인턴직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40개국 사람과 일을 하는 데 히잡을 쓰는 사람은 방해가 된 다며 채용에서 탈락시켰다. 인권위는 기독교인의 십자가 목걸이나 가톨릭 신자의 목주 등과 달리 한국에서 익숙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히잡 착용을 생략화하여 진정인에게 채용 불이익을 준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 향후 채용 면접심사 시 수행업무 내용과 무관한 종교 관련 질문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3)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142, 2006. 12. 22)에서 진정인은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자 발표 때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피진정회사는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는 채용 직위에 요구되는 단체생활 시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고, 채용 직무가 높은 강도의 육체노동을 요구하므로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B형간염이 발병할 우려가 있으며, 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해외의 오지에 파견될 경우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불합격 처리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인권위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병력과 관련해서는 선입견이나 오해로 인한 차별이 많다. 인권위는 간염의 활동성 여부가 간 기능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통념으로 인한 회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바이러스 보유자의 해당 업무 수행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 무지도 차별행위의 원인

흔히 ‘에이즈’라고 불리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오해로 인한 차별행위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과거 HIV는 접촉만으로도 감염된다는 오해를 받았다. 2000년대에 들어 HIV가 단순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체액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는 사실이 상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HIV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많다. 강한 반발이나 거부감은 공포에서 비롯되며, 공포는 무지가 그 원인일 때도 많다.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직장 건강검사에서 HIV 양성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HIV 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18진정0733000HIV, 2019. 07. 24). 인권위는 이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HIV 및 AIDS 관련 인식개선 등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검사 본인 외에는 HIV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고용 관련 병력은 직무수행이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고용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 외 병력 관련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암 수술 병력을 이유로 한 해외파견자 선발 차별(18진정0693300, 2019. 11. 19)

진정인은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전문가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파견될 유엔 기관 면접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인권위는 다자협력전문가의 선발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진정인의 신체 상태가 직무기술서상 다자협력전문가 업무 수행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 개인별 신체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암 수술 전력만으로 선발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다자협력전문가 등 국내외 봉사단 선발 신체검사 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개정·적용하여, 암 수술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신체 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

- 신원진술서상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검사임용에서의 차별(20진정0490600, 2020. 10. 15)

법무부는 2021년도 신입검사 선발 전형을 위해 지원자에 대한 신원정보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치료 이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 신원조사 항목에는 건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원조사 요청을 위한 신원진술서에도 건강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는데도, 피진정인이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병력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신규임용 지원 시 요구하는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간접차별로부터 인권보호 방안 마련해야

인권위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여겨온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현재 모집·채용 시 연령 제한을 두는 공기업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 사기업도 상당수가 연령 제한을 없애는 추세이다. 물론 나이·병력·종교와 같은 차별적 조항을 금지하여도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교묘하게 차별을 행할 여지는 남아 있다. 간접차별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위가 우리 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또 다른 숙제이다.

5. 기타 차별행위에 따른 조사 및 구제

1) 개관

인권위는 차별 사유를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 19가지로 분류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조사와 구제를 수행한다.

지난 2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3만 3,893건의 차별행위 관련 총 진정건수 가운데 앞서 살펴본 성별, 성적지향, 성희롱, 용모·신체조건, 장애, 나이, 병력, 종교 등 8가지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2만 3,822건으로 전체 차별 진정의 70.2%를 차지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나머지 차별 사유는 혼인 여부 157건(0.5%), 임신·출산 364건(1.1%), 가족 상황 255건(0.8%), 출신국가 591건(1.7%), 출신민족 18건(0.1%), 인종 125건(0.4), 피부색 19건(0.1%), 전과 255건(0.8%), 사상·정치적 의견 70건(0.2%), 학벌·학력 695건(2.1%), 사회적 신분 2,914건(8.6%) 등이다. 최근 5년간은 임신·출산, 사회적 신분, 사상·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이 증가하고, 학벌·학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 주요 결정례

기타 차별행위는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에 따른 차별 △전과 및 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학벌·학력,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등 4가지로 나누어 주요 결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차별은 편견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09진차535, 2009. 07. 06)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미혼모를 바라보는 인식과 불이익으로 인한 차별행위로부터 구제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2009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임신하였고, 학교 측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자퇴하였으나 학

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학교 측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여야 하고, 부모의 교제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이 임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미스러운 행동' 및 '풍기문란 행동'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학교 측의 입장은 완강했으나 진정인인 학생의 입장도 간절하였다.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생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인권위는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경우 평생 실업 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커서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고등학교장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시교육감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제를 눈앞에서 치운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당한 학습권을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인권은 배려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이다.

• 제도와 사회변화 속도의 간극이 차별 낳아

21세기에 들어 가족의 형태는 과거에 비해 몹시 다양해졌다. 시대가 변하며 가족 상황도 바뀌었지만 제도는 급변하는 사회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다.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 위원 피선거권 제한>(15진정0208700, 2015. 06. 17)은 변화한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의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계부모라는 이유로 학부모 위원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이혼 및 재혼 등

미혼모 학습권 진정인 기자회견
(2010. 03. 16)



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 가정 등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시 친부모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반면,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 외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과 관련한 인권위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다자녀 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시 재혼가정 불인정(20진정0240300, 2020. 07. 30)

피진정인 ○○○○교육감이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재혼으로 다자녀 가정이 된 진정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비단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므로, 재혼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통한 다자녀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재혼을 통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2)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에 따른 차별

인권위 주요 결정에서 한국 사회를 바꾼 결정례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가 <크레파스 회사의 피부색 차별>(2002)이다. 인권위 출범 직후인 2011년 11월, 한국에 사는 외국인 4명이 크레파스 등의 '살색' 표현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살색' 표현이 다른 인종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술표준원에 색명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기술표준원은 이를 수용하여 '연주황'으로 시정하였다. 이후 분홍으로 바뀌었으나 초등학생에게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논의 후 2005년 살구색으로 권고되었다. 이처럼 크레파스 색깔 하나로도 우리의 인식은 좌우되며,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치아 관련 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아내의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 기간을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11진정0173200, 2011. 08. 26)이나 불임으로 자녀가 없는 다문화가정을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제외한 <무자녀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미지급>(20진정0313300, 2020. 07. 02) 등은 다문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이다. 무자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로 진정인을 포함한 2건의 피해사례가 권리구제되었다.

그 외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에 따른 차별에 대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에 대한 인터넷 전화이용대금 결제방법 차별(09진차0000369, 2009. 12. 21)

○○통신회사는 외국인의 경우 미수납률이 높고 연락처와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아 요금 미납 시 미납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요금납부 방식에서 내국인과 달리 은행 자동이체를 허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주거와 소득이 있는 경우 수납률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도, 사안별로 검토하여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요금 납부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피진정인 ○○통신회사 대표에게 요금 수납 시 외국인에 대하여 은행 자동이체 납부를 거부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외국인도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다만, 일부 외교관이나 미군 등 실명인증 불가능 외국인은 제외).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클럽 입장 제한(18진정0521300, 2019. 07. 22)

2001년부터 부산에 사는 인도계 미국인이 지역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입장을 거부당하고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클럽은 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외국인 출입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동행한 한국계 미국인과 달리 진정인에 대해서만 입장을 거부한 것은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진정인에게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19진정0252500, 2019. 12. 26)

난민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이던 진정인은 ○○호텔의 세탁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피진정 ○○회사의 ○○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하여 면접에 통과한 후, 현장 책임자 ○과장으로부터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직원들에게 신입사원으로 소개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튿날 진정인의 검은 피부를 사유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용을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수단 출신으로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과 A사 직원인 ○과장이 진정인에게 보낸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진정인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인종과 피부색이 채용 거절 사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및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ILO 111호) 등에 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진정 ○○회사 대표에게 진정인의 재취업 의사를 확인 후 채용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향후 채용 과정에서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3) 전과 및 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광장 사용신청 불허로 인한 평등권 침해〉(05진차364, 2006. 05. 22)는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가하면서 진보진영 집회를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시의 불허 입장은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광장에 대한 자의적 사용 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과 ○○시의 조례가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는 진정을 제기한 단체에게 ○○광장 사용을 허가하였고, 이후 조례를 개정하여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외의 공익적 행사와 집회 및 시위의 진행을 위해서도 ○○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별,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의 차별금지 조항도 신설되었다.

〈공직유관단체 채용 면접 시 정치적 성향 질문으로 인한 차별〉(16진정0664900, 2016. 09. 21)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진정인이 면접위원 중 한 명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으며,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직업 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질문이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행위로 판단하였다.

그 외 전과 및 사상·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과 관련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05진차297, 2007. 02. 12)

2005년 5월 ○○○○당은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당이 제기한 문제 조항들은 20개 국·공립 대학교와 48개 사립대학교가 학칙 등에 “학교의 기본 기능과 교육목적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한 ‘학생활동제한’ 조항과 16개 사립대학교가 학칙 등에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학내외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이다. 15개 사립대학교는 정치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등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대학들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이러한 학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가르치는 자가 특정한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학생에게 설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이 왜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정치활동’은 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아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대한민국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

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대학교들은 이를 수용하였다.

- 교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09진차889, 2009. 12. 14)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교칙 개정활동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회 담당 부장교사가 진정인의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추천을 거부하였다.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기관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4) 학벌·학력, 사회적 신분 따른 차별

〈비정규직 전환 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 제외〉(20진정0181900, 2020. 12. 29) 사건은 4년제 대졸자를 탈락시킨 것이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이다. 진정인은 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로, 사내하청 근로자를 피진정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4년제 대졸자는 탈락시키고 고졸 및 2년제 졸업자만 채용한 것이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향후 생산직 근로자 모집·채용 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면접방식 및 전공 기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그 외 학벌·학력, 사회적 신분 따른 차별과 관련한 주요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03진차127, 2003. 09. 15)

청소년의 경우 공공 및 교통시설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청소년이라는 증명을 학생증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다. 인권위는 공공시설 등 이용요금을 학생들에게는 할인해 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해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기관인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 보건소장 임용 차별[15진정0735500·15진정0785500·15진정0914600·15진정0914700·15진정0914800(병합), 2017. 02. 24]

피진정인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과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고용상의 학력차별에 관한 간담회 (2005. 07. 29)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불수용하였다.

- 학점인증제 학사학위자에 대한 학력 차별(16진정0140500·17진정0238500, 2018. 01. 18)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확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중 교육대학이 아닌 타 대학 학사학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재학 기간의 80%인 3.2호봉을 가산해 주던 내용을, 사범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가산해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이로써 교육부는 사범대학 학위를 보유한 사람에 비하여 그 외 대학 학위를 보유한 사람을 호봉 인정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전적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보충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력을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타당한 근거가 없고, 학점인정법과 고등교육법 소관부처인 피진정인이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를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등 수준의 학교의 학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복수학위에 대한 경력 가산에 있어 학점은행제의 수학 경력을 배제하는 행위는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복수학위에 대한 경력 환산에서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에 따른 수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였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17진정0317000, 2018. 11. 01)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같은 공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명절귀향비, 체력단련비, 경조비 등의 지급 및 자녀 교육비, 의료비, 차량 구입 등 지원과 같은 각종 복리후생상 처우에서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현격하게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는 개인 자가차량 출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목욕장 탈의실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등 비품도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적정 도급비를 보장할 것과, 근로자의 자가차량 출입 및 개인사물함과 같은 비품 제공 등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은 임금인상분, 복리후생비 도급비 반영, 주차장 출입 허용 등의 조치로 권고를 수용하였다.

- 지방공무원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차별(17진정0119900, 2019. 06. 05)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초임 호봉을 확정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상근한 경력'만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진정인의 임용 전 근무기관 경력을 '비상근' 경력으로 보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임용 전 근무기관에서 통상 근무자와 같이 출근하여 상근 근로자처럼 근무하였는데도, 전 근무기관에서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용 전 근무기관의 경력을 비상근 경력으로 보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유사 경력을 평가할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여 '상근'의 의미를 규정할 것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유사 경력을 평가할 때 경력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재심의 진행 등 권고를 수용하여 규정을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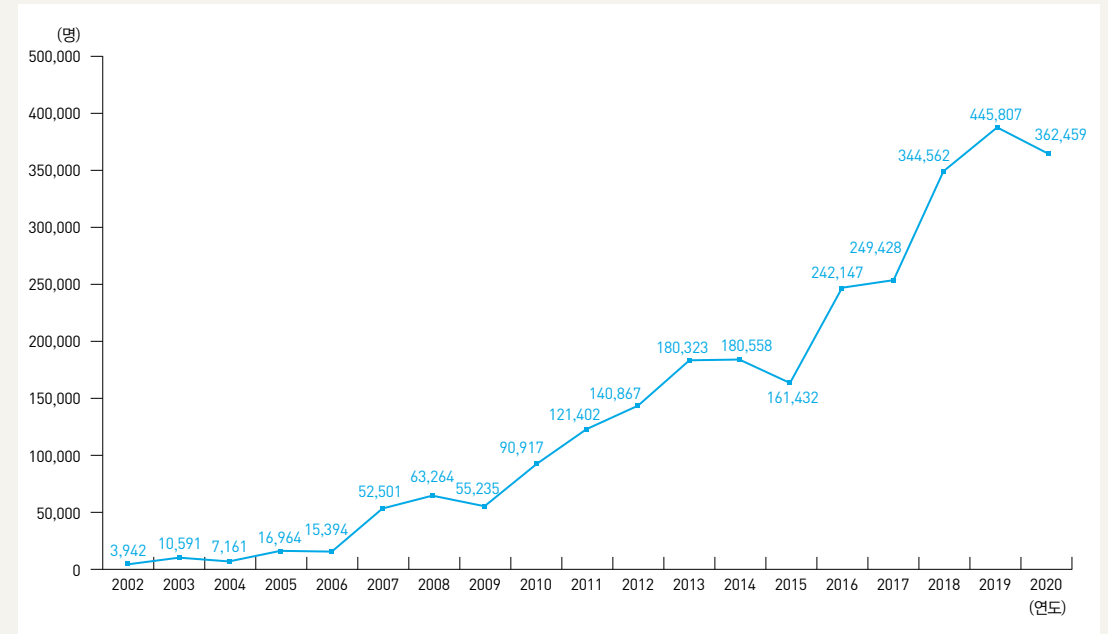
- 기간제교원의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17진정0955202·18진정0700000·19진정0269200(병합), 2019. 10. 29]

기간제교원의 호봉책정 시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사건이다. 정규교원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음 달 1일에 정기승급을 하지만, 기간제교원은 고정급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에 호봉 승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 및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과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정규교원에게는 상위자격 취득에 대해 호봉 재획정을 통하여 다음 달에 승급을 인정하고, 기간제교원은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자격 변동 등 새로운 경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 승급으로 봉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등에 권고하였고,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모두 수용하였다.



제3장 인권교육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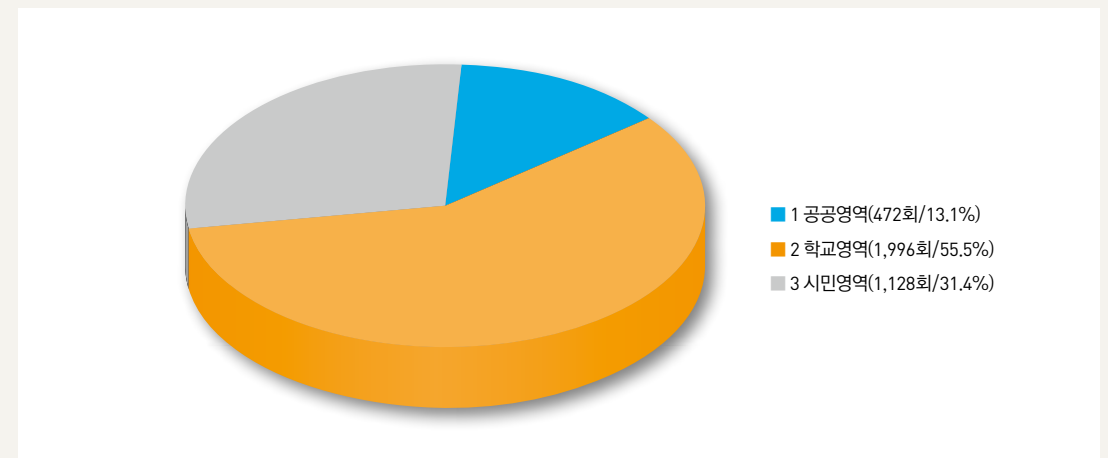
... 해마다 확대되는 인권교육 ...



[그림 3-3-1] 연도별 인권교육 인원 추이



... 방문을 통한 체험식 인권교육 진행 ...



[그림 3-3-2] 방문 프로그램 현황

※ 338~339쪽 중 홍보(2021. 06. 30 기준)를 제외한 나머지는 2021. 08. 31 기준

영역별 주요 성과

공공부문 인권교육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 공직자 대상 인권교육과정 운영(2010), 국방부와 공동으로 육·해·공군 대상 인권교관 양성과정 및 군 간부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2015) 등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대
- 경찰 및 국방부 내 인권교육 전담 인력팀 신설(2006), 경찰청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운영(2016), 지자체 인권역량 향상과정 개설(2020) 등 공공부문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
-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인권경영 추진 권고 이후 '기업과 인권' 과정 개설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인권역량 강화

학교 인권교육 강화로 학교 인권교육 기준 제시

-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2003),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2007),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2020) 등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의 기준 제시
-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09~2013),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모니터링 및 결과 발표, 교과서 집필기준 제시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에 기여
- 학교 관리자 및 교원 대상 인권교육 연수과정 운영
- 14개 대학과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MOU 체결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기여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저변 확대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실시(200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도입(2018)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확대를 통한 인권의식 저변 확산
- 2019년부터 기존 사회복지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로 순차적 이관, 인권위 교육과정을 1일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모색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으로 인권교육 제도화에 기여

- 국방부와 인권교육 지침 공동 개발하여 「군 인권교육 규정」(2008) 제정,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내실화 의견 표명(2015), 유치원 교사의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권고(2018),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20),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도입 제도 개선권고(2020) 등 인권교육 제도화에 기여

열린 교육으로 인권문화 외연 확대

-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도서관인 인권도서관 개관(2002), 사이버인권교육센터 구축(2004) 등으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 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군인권교육협의회·학교인권교육협의회·언론인권교육협의회·대학인권센터협의회 등 다양한 협의회 운영으로 인권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
- 인권특강(누적 17,865회), 방문 프로그램(누적 3,396회) 등 인권교육 기회 확대로 인권문화 저변 확대

선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는 인권교육 수행

- 인권강사 양성 및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운영, 인권강사 위촉제도 시행(2015), 직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인권교육 전문화·활성화 기반 조성
-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전문화, 교육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인권교육 확장

콘텐츠 개발로 인권교육의 전문화·체계화 실현

- 인권교육 콘텐츠 211종(2020년 현재 공공 52종, 학교 25종, 시민사회 72종, 공통 62종)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선도
- 인권영화·애니메이션(14편), 웹드라마, 인권만화집(2003, 2006, 2013) 등 대중적인 콘텐츠 개발로 인권의식 확산 견인
- 주요 결정례 영상 제작·보급(2014)으로 인권에 대한 감성적 공감 유도

매체 활용으로 생활밀착형 인권존중 문화 조성

- TV·라디오 광고 및 CF 제작,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국민과 소통공간 확대

인권 체험 및 인권정보 접근성 확대로 평등한 사회를 위한 초석 마련

- 인권작품 공모사업, 인권보도상 등을 통해 인권 콘텐츠의 자발적 생산 확대
- 잡지 《인권》의 웹진 발행, 점자 도서, 보이스아이(음성 전환) 바코드 삽입, e북 기능 추가 등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시민기자단(2018년부터 온라인 서포터즈로 명칭 변경) 운영으로 인권교육의 직접 참여 및 체험 유도

총론

1. 개관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달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강화에 방향을 맞춰야 하고, 국가·인종·종교집단 간 이해와 관용, 친선의 증진, 평화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 「고문방지협약」 제10조, 「장애인권리협약」 제4항 및 제8항 등 많은 국제인권협약에서도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권위법」 제19조 제5호 및 제26조는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 겪기도

1990년대는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시기였다. 2001년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및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권위는 가장 우선적으로 경찰·교정·검찰 등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자 영역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였으나, 이 국가기관들을 잠재적 인권 가해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일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인권위 내부도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태였다.

• 인권교육 외연 확대 및 자체 인권교육 시행 기반 조성

2006년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 담당부서를 공공·학교·시민 등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대상별 업무의 집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 관련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사회복지사, 기업·언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었으며, 2008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정신보건법」 제6조의2)라는 인

권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인권교육의 접근성 제고와 자율학습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및 인권역량 강화, 인권 관련 소양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구축, 행정직 공직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외연을 확대하였으며, 일반 시민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권교육협의회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기관·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등 자체 인권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하였다.

• 조직 축소 시기에도 인권교육 확산 모색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조직 축소로 인해 3개 과로 나뉘어 있던 인권교육부서가 인권교육과 1개 과로 통합되고 교육 담당직원 수도 대폭 감축되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오히려 인권교육 주대상자를 확대하고, ‘인권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권교육의 확산을 적극 모색하였다.

인권위는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공고히 하고자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의견표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5. 07. 30)을 하고,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 교과를 필수영역으로 지정할 것 등을 의견표명(「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2015. 12. 09)하는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에 이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인권교육 대상층이 순차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인권교육을 이수한 해당 분야 근무자의 인권의식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 프로그램 체계화·전문화를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위는 2015년을 전후로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인권교육 전담부서를 인권교육기획과와 인권교육운영팀으로 재편하고, 주요 집합교육과정인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기본·전문·심화 과정으로 단계를 세분하여 운영하였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인권강사로 위촉하였다. 한편 군대·경찰·지자체·교육청·언론 유관기관 등과 인권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국가기관을 비롯한 대상 기관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져온 결과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인권위는 사이버인권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계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15년에는 부산·광주·대구·광주 등 4개 지역 인권사무소에 인권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차원의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9년에는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 분야 의무교육 위주의 단기교육에서 탈피하여 1일 이상의 전문 교육과정 위주로 과정을 개설, 공공·학교·시민사회를 대상으로 관리자·담당자·강사 등에 대한 리더십·직무역량·강의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용적인 변화를 모색하였다.

• 20년간 285만 1,880명이 인권교육 수료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에 힘입어 2002년 연간 32회, 3,942명에 불과했던 인권교육 횟수와 수료 인원(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동활용교육 포함)은 2007년 516회, 5만 2,501명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2020년에는 6,282회, 44만 5,80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권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은 사이버인권교육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사이버인권교육 운영 개시 이후 130명에 불과하던 연간 수료인원은 2020년 31만 8,791명(인재원 플랫폼 공동활용 포함)으로 15년간 약 2,45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사이버인권교육 누적 운영횟수 1만 회, 누적 수료인원 100만 명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는 법정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서비스데스크 운영, 시스템 관리 개편 등 각종 학습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이후 사이버 콘텐츠 공동활용 사업모델을 개발·시행하는 등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사이버인권교육은 지난 20년간 누적 147만 2,227명(인재원 사이버플랫폼 공동 활용 포함)이 수료하였다. 학습과목은 ‘인권의 이해’ 과정이 21만 7,072명(14.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성희롱 예방’(21만 6,732명, 14.7%), ‘장애(인)차별 예방’(20만 42명, 13.6%), ‘노인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12만 9,192명, 8.8%), ‘(신)행정과 인권’(10만 7,694명, 7.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해설’(8만 2,802명,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영화, 공모전 등 인권 홍보 루트 다양화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아울러 인권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방송·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권영화, 인권도서, 인권만화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또한 인권 관련 공모전 사업을 진행하거나 잡지를 발간하여 더 많은 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용 홍보 콘텐츠 개발에 힘써 왔다. 최근에는 뉴미디어의 급속한 성장과 확산에 발맞추어 인권영화 대신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텍스트로만 발표하던 주요 결정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한편,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톡 등의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와 소통을 펼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의 전문화·체계화를 꾀하는 한편,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현안을 알리고 교육에 반영하는 등 인권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시의성·전문성·활용성 높은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주요 인권 분야의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및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인권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2. 인권교육·홍보 활동의 성과

• 공공부문 인권교육의 비약적 발전

인권위는 설립 직후부터 법무, 경찰, 행정 등 공직자 연수과정과 학교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법무부와 경찰청 등 교육기관의 모든 과정에 인권 과목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에까지 인권교육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경찰과 군대에는 자체적인 인권교육 전담조직이 구성되었고, 현재 인권위와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이버인권교육센터 구축·발전으로 인권교육 외연 확장

인권위는 설립 초기인 2004년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를 구축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전산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2016년 신규 포털사이트 구축, 2020년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학습자 맞춤형 사이버 인권교육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사회 저변의 사이버 학습 인프라를 이용하여 인권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공동활용’ 사업모델을 기획·도입한 결과, 2020년 자체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보유한 공기업·공공기관 59개에 인권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총 12만 5,042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콘텐츠 공동활용은 인권위가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표준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인권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기관별로 인권교육 콘텐츠를 별도 제작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예산의 낭비와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공공부문 LMS의 활용성을 끌어올리는 순기능도 있었다.

• 교과서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에 기여

인권위의 노력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범교과 학습주제로 초·중등학교의 도덕, 사회 등 일부 교과에 인권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2009년부터 학생·교사로 구성된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인권침해·차별 사례 등 문제적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 수정 또는 삭제 권고하는 등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에 기여하였다.

• 중장기 계획수립으로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확대

2006년부터는 인권교육의 영역을 더 넓혀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위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장애·노인·아동 관련 사회복지사 및 시설종사자 교육 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8년 「정신보건법」 제70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 대상들의 인권교육이 시작되었다. 2011년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인권위는 체계적인 노숙인 분

야 인권교육을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2018년부터 의무화 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노인인권교육협의회를 조직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2018~2019년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기업과 인권NAP 정부 권고 등 인권보호 환경 조성

인권위는 '기업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업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체계화하여 개별 기업과 인권교육 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2016년에는 기업과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는 등 기업의 인권교육에 힘써 왔다. 2018년 인권경영 매뉴얼 발표 이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기업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부터 기업과 인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과 인권영향 평가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를 예방하고 언론 환경으로 인한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인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 인권강사 양성으로 내실 있는 인권교육 수행

인권위는 인권교육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영역별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부터 '위촉 인권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권위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하고, 인권위 직원들에게도 인권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썼다. 아울러 사회 복지 분야 및 스포츠 인권강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인권위는 인권의식의 전파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인권위의 교재는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인권교육 환경과 교육자·학습자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2021년 8월 기준 공공 52종, 학교 25종, 시민사회 72종을 포함, 총 211종의 교재를 개발하여 인권교육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 대중적 콘텐츠 제작·보급에 앞장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대중성과 파급력이 큰 인권영화 총 14편을 제작·보급하여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를 일상의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 웹드라마를 제작·보급(2021년까지 총 4편)하여 인권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홍보 다각화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인권위는 방송과 라디오 광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권위의 사업과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기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언론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견인하였다. 또한 잡지 《인권》과 온라인·SNS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인권주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 공모사업, 인권보도상 등으로 인권문화 확산

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대중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인권의 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 시상하여 인권문화의 확산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3. 주요 통계¹

[표 3-3-1] 인권교육 통계(종합)

(단위: 회, 명)

구분	합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교육	
합계	횟수	37,027	4,096	3,596	18,472	5,157	5,706
	인원	2,851,880	185,419	78,249	1,179,815	1,035,710	372,687
2021. 08	횟수	1,749	135	200	607	629	178
	인원	116,898	2,915	2,845	18,121	54,201	38,816
2020	횟수	2,972	150	163	733	668	1,258
	인원	356,348	5,011	2,700	29,846	214,281	104,510
2019	횟수	5,628	330	556	2,699	825	1,218
	인원	445,807	12,527	10,694	107,372	261,505	53,709
2018	횟수	4,699	427	484	2,116	726	946
	인원	344,562	19,957	8,542	106,189	166,183	43,691
2017	횟수	4,110	494	533	1,968	576	539
	인원	251,187	28,916	10,974	101,482	79,799	30,016
2016	횟수	3,853	734	380	1,760	432	547
	인원	242,147	33,953	5,930	96,302	71,434	34,528

¹ 제3장 총론의 통계는 2021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임

구분		합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교육
2015	횟수	2,780	438	239	1,479	336	288
	인원	161,512	18,468	9,194	83,025	34,685	16,140
2014	횟수	2,447	334	206	1,506	232	169
	인원	180,558	14,325	4,926	110,080	34,744	16,483
2013	횟수	2,099	245	159	1,280	235	180
	인원	178,592	11,382	4,588	112,956	37,815	11,851
2012	횟수	1,477	214	119	858	141	145
	인원	139,390	10,456	2,204	90,727	21,465	14,538
2011	횟수	1,316	166	153	777	71	149
	인원	121,402	7,064	3,019	89,333	14,681	7,305
2010	횟수	1,137	177	88	739	65	68
	인원	90,788	6,518	1,726	71,297	10,409	838
2009	횟수	752	131	109	432	61	19
	인원	55,250	7,056	3,052	31,044	13,842	256
2008	횟수	869	45	66	684	72	2
	인원	64,663	2,643	1,972	46,249	13,793	6
2007	횟수	542	30	46	403	63	0
	인원	49,177	2,171	1,673	39,222	6,111	0
2006	횟수	203	20	38	122	23	0
	인원	15,053	1,197	1,029	12,195	632	0
2005	횟수	156	11	21	122	2	0
	인원	16,852	372	1,072	15,278	130	0
2004	횟수	89	6	23	60	0	0
	인원	7,161	180	1,224	5,757	0	0
2003	횟수	117	5	13	99	0	0
	인원	10,591	186	885	9,520	0	0
2002	횟수	32	4	0	28	0	0
	인원	3,942	122	0	3,820	0	0

[표 3-3-2]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합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사이버플랫폼 공동활용
합계	횟수	37,027	4,096	3,596	18,472	5,335	6,135
	인원	2,851,880	185,419	78,249	1,179,815	1,074,526	397,701

[표 3-3-3]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합계		인권강사과정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의무교육과정 ²		인권직무과정		교육전문가 과정		인권리더십 과정 ³		워크숍 등 ⁴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4,096	185,419	675	15,818	2,333	117,470	808	42,185	37	689	20	433	34	917	189

[표 3-3-4] 인권특강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합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18,472	1,179,815	4,472	387,285	9,559	589,672	4,440	202,858

[표 3-3-5]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합계		본부		인권사무소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18,472	1,179,815	7,399	572,889	4,259	216,924	2,034	105,793	2,662	177,889	1,831	88,319	301	15,781	46	2,220

[표 3-3-6]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합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3,596	78,249	472	12,626	1,996	44,960	1,128	20,663

[표 3-3-7]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회, 명)

구분	합계		본부		인권사무소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제주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합계	3,596	78,249	636	17,566	385	6,941	832	19,623	991	20,571	606	11,112	137	2,317	9	119

² 정신보건시설(2009년), 노숙인시설(2012년)의 종사자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별도 분류

³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2020.06.24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현행화함

⁴ 2017년부터 '워크숍 등'을 별도 분류하지 않고 '인권강사과정' 또는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에 포함

[표 3-3-8] 대상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분	합계	공직자	학교	시민
합계	1,472,227	769,530	145,434	557,263

(단위: 명)

[표 3-3-9]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분	합계	검찰과 인권	경찰과 인권	교도관과 인권	군대 인권 역량	군대와 인권	군인 인권의 이해	기업과 인권	노인 인권의 이해	노인관련 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별별이야기-만화영화로 보는 차별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시각 장애인용)
합계	1,472,227	1	2,888	1	8,268	37,327	710	10,116	797	129,192	26	68,666	26
사회적 약자의 이해	선생님을 위한 인권 플러스	성차별 예방	성희롱 예방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어린이용)	수사과정 인권역량	스포츠와 인권	시선1318	시선너머	신 행정과 인권	아동 권리의 이해	아동 청소년의 인권	언론과 인권
282	43,423	73,568	216,732	28,183	1,419	1,221	536	14	12	53,785	243	22	0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이주민과 인권	인권경영의 이해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 심화	일상 차별 예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설	정신장애인과 인권	차별예방	학교폭력 예방	행정과 인권	장애(인) 차별예방	인권의 이해 (입문편)
17,031	8,047	57,724	217,072	27,252	60	77,052	5,750	27,610	57,808	21,413	53,909	200,042	8,207
인권의 이해 (권리구제편)	장애차별 예방교육	노인 인권 의이해 강좌	알기쉬운 인권상담	차별금지법의 이해_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_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이후의 건강과 인권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 라인						
7,182	0	839	742	1,766	815	3,932	516						

(단위: 명)

제1절 분야별 인권교육

1. 개관

인권위는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으로 인권교육을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에 교육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혀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관용,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인권교육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자, 더 나아가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광범위한 인권교육 네트워크와 홍보 다각화로 사회 곳곳에 인권의식 전파

인권위는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와 모니터링을 시행함과 아울러, 시의성·활용성이 높으면서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질 높은 인권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인권교육을 사회 각 부문과 지역 곳곳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 광역시·도 지자체인권교육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영유아인권교육협의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한층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 연수 공간인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 뉴미디어 채널, 영상 제작, 인권보도상 시상, 인권주간 기념행사 등 다양한 접촉면을 발굴, 활용하여 인권위의 사업과 활동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인권교육 업무의 사회적 역할 재설정

사회복지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학생인권조례 확산, 대학인권센터 설립,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등 분야별 인권교육이 대중화함에 따라, 인권교육 선도자 및 조정자로서 인권위의 역할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복지 분야 교육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분야별 관리자, 강사, 담당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교육과정을 구조화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였다.

2. 주요 활동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에 따르면 인권교육 영역은 크게 입법 관계자, 사법부, 검사·검찰·경찰·교정직·법 집행관·군인 등을 포함한 행정부 등의 ‘공공 분야’와 유치원생과 교원 등을 포함한 ‘학교 분야’, 언론인·법률인·사회단체 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집단과 여성·장애인·노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기업인, 일반인을 포함한 ‘시민사회’로 구분된다. 지난 20년간 인권위가 전개해 온 인권교육 활동을 공공, 학교, 시민사회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공공 분야 인권교육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차원에서 법 집행기관인 경찰·교정·검찰 공직자 등 공공 분야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추진해 왔다. 2002년부터 법무, 경찰, 행정 등 공직자 연수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군대까지 인권교육을 확대시켰다. 또한 기관별 자체 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각 기관의 인권특강을 지원하는 등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 경찰청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운영

국가공권력의 집행자로서 인권침해 가능성의 점점에 있는 경찰은 상시적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곧 시민의 인권보호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경찰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전담 조직이 구성되었다. 2016년부터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여성, 아동, 외국인 등 인권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에 중사하는 경찰과 경찰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인권친화적 경찰업무 수행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매년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2005. 10. 21)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제2회 인권경영포럼 (2018. 11. 09)

• 인권교관 양성, 군 지휘관 등 인권교육 확대

인권위는 ‘군대 인권교육 기본계획’(2005) 수립 이후 국방부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지침을 개발하여 국방부 훈령인 「군 인권교육 규정」(2008. 02. 13)을 제정하고, 군대 내 모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군부대 총기사고, 자살사고 등 군대 내 인권침해로 야기된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2015년부터 군 간부로 구성된 인권 교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집중 시행해 왔다. 또한 군대 내 인권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도관, 수사관, 의무관, 인권 모니터링단,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지휘관이 인권존중문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국방부와 협의, 육군지휘관과정(대령, 중령)에 인권특강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과정 운영

인권위는 2010년부터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인권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직자 조직에 인권문화가 확산 되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지역 내 인권옹호자 및 인권리더로 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지방직 공직자는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반면, 중앙부처는 그렇지 못하여 국가직 공직자의 인권교육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학교 분야 인권교육

인권위는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지식, 가치·태도, 기능·행동이 통합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인권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교과서 모니터링단 발대식(2009. 06. 28)



제1차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2017. 03. 37)

• 2009년부터 학교 정규과정에 인권교육 도입

인권위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관련내용 분석연구》 등 교육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규교육과정의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에서 인권교육 실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03년부터 2년간 ‘인권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또한 2005년 유엔이 채택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에 의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을 촉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하여 교육정책에 인권교육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2009년, 인권교육이 학교 정규과정에 도입되었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교과서 안 인권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교사로 구성된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등 문제적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이와 별도로 NAP에 포함된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계획’을 점검·이행하기 위하여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나 삽화, 사진 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2009~2014년에 걸쳐 해마다 시행하였다.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확산에 기여

인권위는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사 대상의 인권교육도 적극 추진하였다. 교사의 인권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인권강좌 개설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연수 기획담당자 대상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와 협의하여 2004년부터 교원연수과정에 ‘인권교육 지도능력 제고’ 항목이 편성되었다. 또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리더십과정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장애 인권·이주인권·스포츠인권 등 주요 인권현안을 주제로 ‘찾아가는 학교인권 특강’을 진행하였다.

• 대학교, 영·유아 대상으로 인권교육 확대

인권위는 2006년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2018년 서울대학교까지 14개 대학과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MOU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인권교육 연구 및 대학교 인권교육의 확산을 견인하였다. 2019년부터는 전국 62개 대학인권센터가 참여하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운영하여 대학의 인권증진과 인권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 및 양육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과 영·유아 분야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유아친화적이고 안전한 유아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더 나아가 유치원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치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2018. 03. 15).

3)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 대폭 확산, 강화

2006년 인권위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공직자와 학교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인권교육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기업 및 언론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인권교육의 실효성이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었고, 2008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조항(「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이 신설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에 인권교육이 반영되면서 장애·노인·아동 관련 사회복지사 교육 및 시설종사자 교육 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크게 확산되었다.

인권위는 2015년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을 공고히 하고자 보육 교직원의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의견표명(《「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5. 07. 30)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 교과를 필수영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2015. 12. 09)을 잇따라 내놓았다.

•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전담

인권위는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 정착을 위해 각종 의무교육을 직접 수행하여 2011년부터 「노숙인복지법」 제20조에 의거,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노숙인 분야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분야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이용자 및 거주인은 물론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에도 힘썼다.

한편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노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이 중요한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인권교육 이행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16년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2016. 06. 20).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부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라 노인시설 분야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 (2017. 06. 16)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2018. 11. 22)



‘기업과 인권’ 유엔 정책프레임워크 및 ISO26000 분석 토론회 (2011. 07. 20)



미디어 실천 선언식을 하는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2020. 01. 16)

으로 4시간의 인권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고, 인권위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으로 인권교육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 등 상위법령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 2020. 09. 10).

•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 및 다양화

인권위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 분야 의무교육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교육대상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담당자 역량과정, 강사과정 등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강사과정은 위촉 인권강사 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지식을 보강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포츠 인권강사, 인권활동가, 인권상담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인권의식의 전문성 제고와 저변 확산에 힘쓰고 있다.

• 기업과 인권NAP 정부 권고 및 언론 워크숍으로 인권보호 환경 조성 마련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하면서 각국이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기업과 인권NAP의 정의, 추진과정, 수립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기업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기업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업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개별 기업들과 인권교육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다.

인권위는 2016년과 2017년에 기업과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하였으며(〈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2016. 07. 25, 〈기업과 인권NAP 수립촉구 의견표명〉, 2017. 07. 20), 2018년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을 권고하였다(〈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2018. 08. 09).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인권경영 교육을, 2020년부터는 인권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2010년부터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기자협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권옹호자로서 언론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한편, 언론보도 과정에서 인권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보도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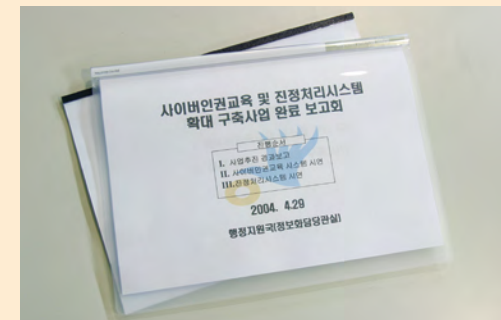
인권정보 접근성을 높인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위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권교육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2005년에는 ‘사이버인권배움터’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였고, 2007년에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도입, 현재의 인권교육센터(edu.humanrights.go.kr)를 구축하여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2016년에는 기존 교육운영 시스템(LMS)의 서버 용량 부족, 신규 콘텐츠 탑재 한계, 모바일 연계성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고, 2020년에는 해당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스템 에러 해결, 누적된 학습자 불편사항 해소 조치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다.

사이버인권교육 이수자 수는 2015년 5만 명대에서 2016년 10만 명대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기관, 공기업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 독려, 공공 분야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학습자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8년 20만 명대, 2020년 30만 명대 등 인권교육 이수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 인권교육 이수를 위한 서비스 데스크 신속 도입·운영, 공공기관 콘텐츠 공동활용 사업모델 시행 등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인권교육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은 2020년 말 현재 애니메이션 학습과정 19개 콘텐츠와 동영상 강의형 7개 등, 26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년간의 사이버인권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 의무교육의 목적형 콘텐츠, 15차시 구성의 장시간 학습형 콘텐츠 위주의 제작 성과를 활용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학습자 눈높이와 다양한 교육 콘텐츠 수요를 감안, ‘콘텐츠 품질향상 전산개발’ 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장기간 고정형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존 사이클을 단축하고, 최신 영상 제작기법으로 다용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방향을 개선하였다.



사이버인권교육 시스템 완료 보고회 자료(2004. 04. 29)

● 제2절 전문가 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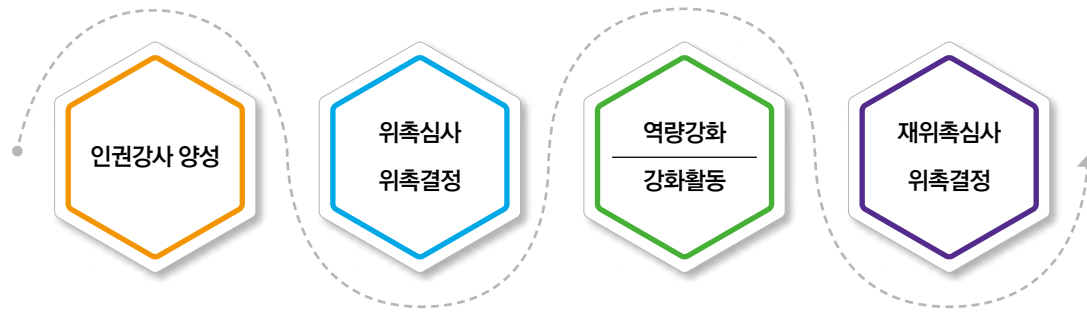
1. 개관

인권교육의 선결조건은 전문적인 인권강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인권강사는 교육대상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고양하는 촉진자이자, 적절한 정보와 지적 자극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내자이다. 따라서 인권강사의 역량은 인권교육의 효과를 가름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사회 각 분야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영역별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위촉인권강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촉강사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권위 직원의 인권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권전문학교, 부서별 교육, 인권감수성과정, 대상별 역량강화과정 등을 운영 중이다.

2. 주요 활동

1) 인권강사 양성 및 위촉



'분야별 인권강사 양성 ▶ 위촉 인권강사 역량 강화·활동 ▶ 재위촉' 순환과정
(노인·기업·장애 등 12개 분야)

• 매년 분야별 수요 고려해 공모

인권강사 양성은 영유아·장애·이주·노숙인·정신보건·스포츠·아동·노인·사회복지·발달장애 등 분야별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분야를 달리 공모하며, 분야별 현장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교육대상은 해당 분야 현장종사 경력 3년 이상이나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반드시 인권강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학습자는 매년 2월경 사이버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 기본·전문·심화 과정으로 단계별 교육

2002년부터 시행된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3일간 워크숍이나 연수를 실시하여 인권교육 강사풀을 조직하였다. 2008년 전후로 기존의 워크숍 방식에서 기본·전문과정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바꾸고 분야별로 강사를 양성, 보수교육도 운영하였다. 2014년 인권강사 양성 분야를 세분화한 데 이어 2015년부터는 '인권강사위촉제'를 도입하여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기본·전문·심화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교육일수를 8일(3/3/2일)로 확대 운영하였다. 교육과정 중에는 사이버인권교육 수강과 강의 시연 평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 과정을 수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위촉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단'을 구성하였다. 2016년부터는 인권사무소에서도 부분적으로 교육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안)

과정명	1일차(7시간)	2일차(7시간)	3일차(7시간)	4일차(7시간)
기본과정1 4일(2+2일) 사이버2 과정 원격 28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수강 : <인권의 이해> + <세계인권선언>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원격-분야통합(분반)	원격-분야통합(분반)	원격-분야통합(분반)	원격-분야통합(분반)
	O.T 인권, 역사·개념·가치	국가 유엔인권체계·국가인권기구 이해	자유권의 이해 사회권의 이해	평등권의 이해 (특강) 혐오와 차별
기본과정2 2일 사이버2 과정 집합 14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수강 : <차별 예방> + <성희롱 예방>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소집-분야통합(분반)	소집-분야통합(분반)		
	필독서 활용 교육 현장탐방 or 모듬연구	중간평가 종합정리학습		
전문과정 3일 사이버1 과정 원격 21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수강 : '분야별 인권' 과목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원격-분야별	원격-분야별	원격-분야별	-
	분야별 인권 총론	분야별 인권과 자유권 분야별 인권과 사회권	분야별 인권과 평등권 분야별 이슈 분석	-
심화과정 3일 모듬과제 1건 집합 21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과제 과목별 지정교재 필독(과정 개시 1개월 전 통보) 			
	소집-분야통합(분반)	소집-분야통합(분반)	소집-분야통합(분반)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인권강사의 태도와 역할	강의 시연·평가	

※ 2018~2021. 08 현재까지의 프로그램 기본안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인권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일수는 기존 8일에서 2017년 9일, 2018년에는 12일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기본과정은 기본과정 1(4일)과 기본과정 2(2일)로 나누어 시행하고, 전문과정(4일), 심화과정(2일) 등 총 12일간의 집합교육과 사이버인권교육 4개 과목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과정에는 인권의 역사·개념·가치, 자유권·사회권·평등권과 유엔 인권체계 및 국가인권기구의 이해 등 인권 일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목을 배치하였으며, 전문과정에는 인권 총론, 개별 분야의 인권과 자유권, 개별 분야의 인권과 평등권, 개별 분야의 인권과 사회권 등 세부적으로 전문지식을 익히도록 하였다. 심화과정에서는 강의 시연 및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교육 능력을 함양하고,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학습하는 등 인권강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위촉 인권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발

인권위는 인권강사 양성과정이 종료되면 강의 시연 평가를 거쳐 강사를 위촉하는 등 인권강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위촉자의 경우 1년 경과 후 재위촉심사를 받고,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위촉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위촉심사를 거치려면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수료, 현장 강의활동 등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권위는 2019년까지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 등 일부 특강에 대해 위촉강사를 활용하였으나, 2020년 해당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 위촉 인권강사의 기본 정보를 공개, 여타 기관에서 인권강사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촉 인권강사는 개별적으로 인권강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 인권강사역량강화

인권강사 양성 못지않게 위촉된 인권강사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권위는 기존에 양성한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위촉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인권강사 양성 분야 및 위촉 현황

연도	신규 인권강사 양성 분야	당해연도 위촉 현황
2015	군, 장애, 정신보건, 아동·청소년, 영유아, 노인, 사회복지, 노숙인, 이주, 스포츠(10개 분야)	-
2016	정신보건, 장애, 노숙인, 노인, 이주, 아동·청소년, 영유아, 사회복지, 스포츠, 발달장애 (10개 분야)	341
2017	정신보건, 노숙인, 노인, 기업, 발달장애, 노동, 아동·청소년(7개 분야)	455
2018	노인, 장애(2개 분야)	362
2019	기업(1개 분야)	266
2020	기업, 노숙인, 스포츠, 장애(4개 분야)	230
2021	아동·청소년, 영유아, 이주(3개 분야)	193

※ 매년 12월 기준 위촉자 수, 2021년은 8월 기준
 ※ 2015년 6월 인권강사 위촉제도 도입, 2016년 인권강사 최초 위촉

2017년 인권위는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연초에 분야별 강사단 워크숍을 진행해 전국의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교환 등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일간의 집합교육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외의 새로운 인권 경향이나 현안 등에 관한 지식과 강의역량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이버인권교육 2과목 이수, 역량강화 워크숍 3회 참여, 인권강의 3회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재위촉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강사들의 자기계발 동기부여를 견인하였다.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은 최근 인권동향 파악 및 인권이해 증진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인권의 이해, 혐오와 차별, 교육대상별 인권교육 준비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2020년에는 ‘강의 시연 워크숍(마이크로 티칭 과정)’을 새롭게 도입, 강의 시연 후 동료·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더욱 질 높은 인권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직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인권위는 출범 이후 국외연수와 비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 인권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점차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는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가 복잡해지면서 인권위 직원들의 인권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020년 총 2,046명이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2016년 들어 직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체계를 정비하였다. 우선 기능별 역량강화를 위해 부서별 교육, 인권감수성과정, 대상별 역량강화과정 등 총 12개 과정으로 구성된 ‘인권전문학교’를 운영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각종 조사기법 등을 주제로 한 ‘인권조사관학교’와 국내외 인권 현황을 주제로 한 ‘인권정책학교’, 인권교육 기획·설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학교’ 및 ‘인권행정학교’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후 2017년 인권행정학교가 폐지되고, 부서별 실무교육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으로 ‘인권숲속학교’와 ‘국내 인권현장 탐방’을 진행하였다.

대상별 역량강화과정으로는 ‘신규직원 역량강화과정’, ‘리더십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감동·소통 리더십과정’을 새롭게 운영하여 여성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8년부터는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던 직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인권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역량 강화교육을 받은 직원은 2016년 214명, 2017년 305명, 2018년 614명, 2019년 500명에서 2020년은 법정 의무교육과정이 추가되어 총 2,046명(중복)이 이수하였다.

직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현황

연도	프로그램	날짜	주요 내용	인원
2016	인권정책학교	07. 06~08	- 인권정책업무 추진사례와 시사점 - 혐오표현과 반차별정책의 과제	25
	인권조사관학교	07. 12~15	- 유관기관 조사관 특강 - (조사) 인터뷰의 이론과 실습 등	33
		11. 30~12. 02	-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 - 조사보고서 쓰기 실습	33
	간부 리더십교육	07. 21~22	- 언론 대응 및 홍보 전략 - 인문학 리더십을 통한 조직 관리	29
	신규직원 역량강화	07. 01~28	- 인권위 기능별 업무의 이해 - 지역 인권체험관 방문 - 인권재단 '사람' 방문	7
	국내 현장탐방	07. 18.~11. 28	- 광주, 밀양 등 - 다양한 인권친화적 아동교육 모색 - 소록도 100년, 한센인 인권 현주소 등(4개 팀)	17
	인권교육학교	08. 08~09	- 유진인재개발원 -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전략 - 현장에서 본 인권교육의 현황과 이슈	22
	인권행정학교	08. 31~09. 02	- 갈등은 풀고, 소통은 쌓는 조직문화 - 진정한 자기 돌봄을 통한 타자의 돌봄	27
	직원 인권강사 역량강화	09. 21	- 인권교육 기법 등	21
	제1차 신규조사관학교	02. 06~14	- 조사관을 위한 이론적 틀 - 조사의 실제 및 기술	14
	인권조사관학교	07. 11~14 (3박 4일)	- 인권가치 내재화 1 : 현법을 상상하자 - 인권기구 조사관의 역할과 윤리 - 조사보고서 잘 쓰기 방법	44
		12. 04~06	- 인권기구 조사관의 역할과 윤리 -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페미니즘	30
인권교육학교	07. 27~28	- 인권교육은 무엇이고, 왜 하는가? - 인권강사 3인에게 듣는 '인권교육과 나의 삶'	28	
인권정책학교	08. 31~09. 01	- 안전권과 생명권 - 정책업무 절차와 보고서 작성법	34	
인권숏속교실	09. 26	- 당사자에게 듣는 인권 이야기 1 유출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보안관찰자 강용주	23	
	10. 24	- 당사자에게 듣는 인권 이야기 2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 쌍용차 이창근 전 정책실장,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	51	
간부 리더십교육	12. 15	- 변화를 이끄는 혁신 리더 - 미디어 트레이닝 -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멘탈 피트니스	30	
신규직원 역량강화	06. 19~23	-	12	
국내 인권현장 탐방	07. 25~28	강원 태백 등 - 광산지역 진폐환자 인권탐방	8	
	08. 29~09. 01	서대문구청 등 - 인권체험관 직원, 인권기관 등 탐방	8	
	09. 20~22	제주 강정마을 등 - 제주지역 인권현장 탐방	4	
	10. 22~25	안산시 등 - 수용시설 인권유린의 아픈 역사를 찾아서	4	

연도	프로그램	날짜	주요 내용	인원
2017	직원 인권강사 역량강화	11. 16~17	- 인권교육 원칙 및 제자리 찾기 - 인권교육 경험 나누기 - 인권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 1, 2	15
	제1차 신규 조사관학교	02. 22~23	- 신규조사관을 위한 조사 이론 및 조사 실제, 기술	11
2018	조사관학교	09. 10~14	- 조사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실무역량 학습 - 조사관으로서의 인권가치 내재화,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논의	92
	신규직원 역량강화	04. 16~27	- 인권위와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 인권기구 조사관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 및 조사 실무	17
		10. 10~18	- 인권위와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 국제적 인권기구 및 국내 인권현안 이해 등	23
	감동·소통 리더십과정	06. 19~20	- 여성 직원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한 업무협력관계 형성 및 강화 - 인권위 지도자 역할에 대한 이해 등	22
	리더역량 강화과정	10. 30	- 인권위 전략추진 회의 후속 논의 - 인권특강 : 가짜뉴스와 차별, 혐오의 확산	35
	인권교육학교	06. 21~22	- 인권교육 기획과 과정 설계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상황 변화	22
	인권정책학교	12. 17~18	- 유엔인권 권고현황과 인권위의 역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구조 변화 등	26
	인권숏속교실	11. 14	- 인권, 평화를 말하다 • 영화, 드라마,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변화 • 개성공단 이야기	8
		11. 28	- 인권, 여행을 만나다 • 음악, 여행과 만나는 인권과 사람들 • 길 위에서 만나는 난민캠프 이야기	22
	국내 인권현장 탐방	08. 21~24	서울, 전주 등 - 청년인권운동가들 만나다 • 청년 주거빈곤 현황 및 정책의 한계 등 주거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역할 모색	6
		11. 28~30	일산, 전주 등 -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탐방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과정에서의 인권기반 적용방안 모색	4
	직원 인권강사 역량강화	12. 19~20	- 인권위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 인권교육의 이야기 흐름, 서사와 질문 구성, 방법론 - 인권교육기획 및 강의안 작성 실습	14
부서별 전문교육	부서별 진행	-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전문교육 진행 • 총 21개 부서, 24회 운영	339	
신규 조사관학교	01. 23~25	- 신규조사관을 위한 조사 이론 및 조사 실제, 기술	37	
조사관학교	05. 14~16	- 조사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실무역량 학습 - 조사관으로서 필요한 인권가치의 내재화,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논의	86	
국내인권 현장탐방	06. 11~14	금오도 등 - 섬 개발과 인권,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의료접근권 - 여순사건 및 이아포 민간인 학살지 방문	6	
인권정책·교육학교	06. 21~22	- 자유권·평등권·사회권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시선 - 보도자료 잘 쓰는 법에 관한 강의와 실습	54	

연도	프로그램	날짜	주요 내용	인원
2019	인권순속교실	07. 10~31	-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시비 걸기 - 인권은 정치다: 사회권적 인권과 계급정치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조소앙의 열망과 그림자 인권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62
		08. 21~09. 25	'창' - 철학적·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다양한 인권론 -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존중에 반하는 가치들 - 권리는 관계다, 권리의 상호성에 대한 존중 - 자유, 평등, 연대의 트라이앵글 - 보호와 안전의 갈등, 인권에 대한 책임 -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정동들	67
	부서별 전문교육	부서별 진행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전문교육 진행 - 총 14개 부서, 21회 진행	188
2020	조사관학교 (차별시정국)	06. 22~24	- 차별사건 조사 이론 및 실제, 보고서 작성 요령 - 조사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실무역량 학습 - 조사관으로서 필요한 소양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논의	61
	조사관학교 (침해조사국)	07. 08~10	- 인권침해사건 조사 이론 및 실제, 보고서 작성 요령 - 조사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기법 및 실무역량 학습 - 조사관으로서 필요한 소양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논의	57
	신규직원 역량강화	09. 03~04	- 신규직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 및 실무역량 학습 - 인권위에 대한 이해 및 주요 기능, 인권업무 이해 향상	24
	인권정책·교육학교	09. 24~25	- 정책교육국 담당자의 공통역량 과정과 교육업무 중심의 전문성 강화과정으로 분리운영 - 인권교육 기획과 과정 설계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 - 인권정책교육 업무 관련 상황 변화, 주요 쟁점 검토 및 공유 -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실천방안 논의	46
	인권감수성 향상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이해)	10. 23	(온·오프 병행교육) -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역사를 통해 본 인권	111
		10. 26	- 4차 산업혁명과 인권 & 인권의 미래	23
		10. 28	- 노동의 시민권과 노동차별	109
		11. 05	- 한국여성운동사와 여성인권	77
		11. 06	- 한국의 인권 100년	80
			12. 03	- 한국 인권사의 관점과 조망 & 기후위기와 인권
간부급 역량강화	11. 20	- 리더십의 역할 및 강화방안 - 변화된 환경과 인권위 역할 - 새로운 인권위 구상과 추진전략	17	
부서별 전문교육	부서별 진행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별 전문교육 진행 - 총 11개 부서, 13회 운영	118	
법정의무교육	06. 15	(온·오프 병행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241	
		(온·오프 병행교육) 아동폭력 예방교육	254	
	06. 25	(온·오프 병행교육) 성인지 관점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264	
		(온·오프 병행교육) 성인지 관점으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237	
11. 24	(온·오프 병행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249		

제3절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1. 개관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립 초기부터 인권교육 콘텐츠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인권교육 교재 총 211종 개발

인권위는 변화하는 인권교육 환경과 교육자·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8월 기준 총 211종(공공 52종, 학교 25종, 시민사회 72, 공통 62종)을 개발하였다. 인권교육 콘텐츠는 교육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관기관·단체·인권강사 등의 교육자와 공공도서관·온라인 사이트 등에 제공·보급하고 있다.

일상 속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공감과 정서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6조 제2항에도 “‘예술’ 등은 인권 분야에서의 훈련과 인식증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인권존중의 태도와 정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영화·영상물과 생활 속 인권을 주제로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인권문화 저변 확대와 인권 지식기반 구축을 도모하였다.

2. 주요 활동

1)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인권교재 콘텐츠 개발은 공직 종사자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공공 분야’와 교육현장에 몸담은 교사들을 위한 ‘학교 분야’, 일반 대중과 사회복지자를 위한 ‘시민사회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공공 분야 교육 콘텐츠’ 52종 개발

인권위는 공직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

급해 왔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인권길라잡이 경찰편』, 『경찰인권교육 방법』, 『수사 분야 인권교육 교재』, 『경비 분야 인권교육 교재』 등을 발간하였고, 경찰청과 관련해서는 『인권길라잡이 경찰편』, 『경찰인권교육 방법』을 교재로 활용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인권길라잡이』, 『수사와 인권』, 『경비와 인권』 등 3권을 통합하고 새로운 인권위 결정례, 변경된 법규 등을 반영하여 『경찰과 인권』을 발간하였다. 또한 경찰 인권교육 기본교재와 함께 인권강사들의 경찰 대상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경찰 인권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유엔 등 25개 해외 인권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군인권교육 교재』, 『군 의료분야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국군인권교육 교재』는 군 최초로 국군 인권교육 기본교재로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병영에서의 인권 실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등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수사와 인권』을 개발하여 군대 내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행정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도 개발하였다. 2015년에는 사이버 콘텐츠로도 전환하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인권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행정과 인권』을 토대로 『인권행정 길라잡이』 국가편과 지자체편을 각각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에서는 공직자들이 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계획수립,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교육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등을 다루었으며, 『노동인권 교육교재』에서는 노동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고찰하였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사법·입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교재를 비롯, 공공 분야에서 총 52종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 현장에서 유용한 ‘학교 분야’ 교육 콘텐츠 25종 개발

학교 분야의 교육 콘텐츠는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3년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에 이어 2004년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를 발간, 전국의 각급학교에 배부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를 넓히고 인권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2007년 개정 고시된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에 국어·도덕·사회 등 각 과목의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도입되면서, 인권 관련 내용의 구체적 구성방안과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을 교육부 및 교과서 집필자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각급교육 현장에서 교과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인권교육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였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아 및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알쏭달쏭 알 권리』를 발간한 데 이어, 보육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교재 『영유아 인권 길라잡이』를 내놓았다. 대학 인권교육, 특히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과 사회복지 교재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인권과 사회복지』를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였다. 또한 SNS 등 뉴미디어에 적합한 카드뉴스와 해설서 형식의 『학교 인권교육 콘텐츠 4종』(추석과 노동의 가치, 한글날과 장애인권, 혐오차별 예방, 아동권리협약)을 개발하는 등 총 25종의 학교 분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인권교육의 지평을 확대해 나갔다.

• ‘시민사회 분야’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도 힘써

시민사회 분야 인권교육 교재는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일반대중서와 사회복지 분야별 교재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일반대중서로는 노인인권을 다룬 『엄마 엄마』, 『혼둥이네 할머니』와 장애인권을 다룬 『장한 친구 희완이』, 이주인권을 다룬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 등이 있다. 또한 인권위가 제작한 인권영화를 토대로 『별별이야기 학습지도안』, 『여섯 개의 시선 학습지도안』, 『다섯 개의 시선 학습지도안』, 『세 번째 시선 학습지도안』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이 외에 『불편해도 괜찮아』, 『불편하면 따져봐』 등을 기획하여 전문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였다.

사회복지 분야별 교육 콘텐츠는 『노인인권 교재』, 『정신장애 분야 인권교육 교재』 등을 발간하면서 기틀을 잡았고, 유엔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권고의 주요 대상인 언론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언론인권 길라잡이』와 스포츠 종사자들의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와 인권』 표준강의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길라잡이』, 『노숙인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본교재 개발』, 『노인인권 길라잡이』, 『정신보건 길라잡이』, 『장애인권 길라잡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혐오차별 예방 표준교안』 등을 개발하였으며, 사이버인권교육 교재로 『언론과 인권』, 『인권경영의 실제』 등을,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로 『장애인 차별예방』,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등을 출간하였다. 이 밖에 기업 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 입문』, 『기업 인권교육 교재』, 『인권경영 길라잡이』 등을 개발, 보급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유엔과 국제앰네스티에서 나온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및 『인권교육지표틀』을 발간하였다.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



인권위가 발간하는 다양한 분야별 인권교육 자료들



〈여섯 개의 시선〉 감독과 작품(2014. 06. 10)



〈시선 사이〉 VIP 시사회(2016. 05. 30)

획을 번역한 것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규범적 기초와 정의, 일반원칙, 목적, 주요 행위자, 대상 집단, 조정과 이행을 위한 구조, 이행 프로그램, 중간평가, 추진전략 등을 주제로 기술되어 있어 인권교육 실행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2) 효과 높은 영상물 콘텐츠

인권위는 양질의 인권영화를 제작, 보급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인권영화를 비롯한 영상물은 활용도나 효과성 면에서 다른 콘텐츠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0년간 총 14편의 인권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

영화는 대중성과 파급력이 크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인권위는 2003년 〈여섯 개의 시선〉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권침해와 차별의 이야기를 영상 언어를 통해 소개하였다. 〈여섯 개의 시선〉은 박광수, 박찬욱, 정재은, 박진표, 여균동, 임순례 등 6명의 감독이 인권이라는 화두를 저마다의 색깔로,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엮어낸 유니버스 영화이다. 이 영화는 국내외 30여 개 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특별언급상, 제13회 한국가톨릭매스컴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에 제작된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와 영화 〈다섯 개의 시선〉은 각종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상영되었으며, 2007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2—여섯 빛깔 무지개〉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퍼시픽 스크린어워드 베스트애니메이션 부문 노미네이트, 프랑스 리옹 아시안영화제(2011. 04~09)에서 애니메이션 부문 3등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개봉한 〈범죄소년〉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소년범의 심각성을 제시, 작품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또한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 축제인 선댄스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지슬〉의 오명 감독 작품으로 주목받았던 〈하늘의 황금마차〉(2013)는 제10회 제천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고 카를로비바리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 국내외 영화제 초청 및 수상으로 의미 있는 성과 거둬

2016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인권영화 제작이 중단되었으나, 2014년 제작된 〈4등〉과 2015년 제작된 〈시선 사이〉가 개봉하면서 인권위는 인권영화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지우 감독의 연출로 기대를 모은 〈4등〉은 상하이국제영화제, 카를로비바리영화제 등에 초청받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인권위는 청년들의 고단한 일상과 상실감을 표현한 인권영화 〈메기〉를 제작하였다. 〈메기〉는 등장인물 간 소통의 부재로 시작되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보여주며 혐오 대응과 차별 예방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2018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민평론가상 등 4개 부문 수상, 오사카아시안필름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완성도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인해 근본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0년까지 인권위가 우수한 14편의 인권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영화인(50여 명의 감독과 3,000여 명의 영화인)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원 덕분이다. 이 영화들은 3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인권교육 현장과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되었고, 유수의 국제영화제들의 초청을 받고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인권영화

제작 연도	제목	작품명	유니버스 주제	감독	배급사 (배급연도)
2002 ~ 2003	여섯 개의 시선	그녀의 무게	외모	임순례	청어람 (2003)
		그 남자의 事情	소수자	정재은	
		대륙횡단	장애	여균동	
		신비한 영어나라	아동	박진표	
		얼굴값	편견	박광수	
		믿거나 말거나, 천드라의 경우	이주노동자	박찬욱	
2003 ~ 2004	별별이야기 (애니)	낮잠	장애	유진희	아트플러스, 청어람 (2005)
		동물농장	소수자	권오성	
		그 여자네 집	성역할	김준외	
		육다골대녀 (肉多骨大女)	외모	이애림	
		자전거 여행	이주노동자	이성강	
		사람이 되어라	입시위주 교육	박재동	
2004	다섯 개의 시선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	장애(다운인)	박경희	CJ엔터테인먼트 (2006)
		남자니까 아시잖아요?	성, 피부색, 성소수자, 학력 등	류승완	
		배낭을 멘 소년	탈북청소년	정지우	
		고마운 사람	비정규직	장진	
		종로, 겨울	중국 동포	김동원	

제작연도	제목	작품명	유니버스 주제	감독	배급사 (배급연도)
2005	세 번째 시선	잠수왕 무하마드	이주노동자	정윤철	진진 (2006)
		소녀가 사라졌다	아동	김현필	
		힘난한 인생	피부색	노동석	
		당신과 나 사이	성역할	이미연	
		BomBomBomB	청소년 성소수자	김곡·김선	
		나 어떡해	비정규직	홍기선	
2006 ~ 2007	별별이야기2- 여성 빛깔 무지개	세 번째 소원	시각장애	안동희·유정우	청어람 (2008)
		아주까리	아동, 성역할	홍덕표	
		아기가 생겼어요	여성	이홍수·이홍민	
		사방사방 샤랄라	다문화가정	권미정	
		메리 골라스마스	인종, 성, 나이	정민영	
		거짓말	성소수자	박용제	
2007	시선1318	진주는 공부 중	입시위주 교육	방은진	백두대간 (2009)
		유.엔.미	청소년	전계수	
		릴레이	비혼모 학습권	이현승	
		청소년드라마의 이해와 실제	88만원 세대와 청소년	윤성호	
		달리는 차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김태용	
2008	날아라, 팽귄	장편	아동, 노인, 여성	임순례	스튜디오 느림보 (2009)
2009 ~ 2010	시선 너머	이빨 두 개	이주 개인정보	강이관	인디스토리 (2011)
		니마		부지영	
		백문백답		김대승	
		바나나셰이크		윤성현	
		진실을 위하여		신동일	
2011	범죄소년	장편	전과 차별	강이관	타임스토리 (2012)
2012	어떤 시선	두한에게	발달장애인	박정범	진진 (2013)
		봉구는 배달 중	노인	신아가·이상철	
		얼음강	양심의 자유	민용근	
2013	하늘의 황금마차	장편	노인	오명	진진 (2014)
2014	4등	정지우	스포츠 인권	정지우	프레인 (2016)
2015	시선 사이	우떡권	청소년 인권	최익환	진진 (2016)
		과대망상자(들)	정신장애	신연식	
		소주와 아이스크림	무연사, 고독사	이광국	
2017	메기	장편	청년의 삶과 인권	구교환·이옥섭	옛나인필름 (2019)

• 수어본·영어본까지 접근성을 확대한 웹드라마

2017년까지 인권영화를 제작·보급하던 인권위는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에 발맞추어 2018년부터는 확산에 용이한 웹드라마 제작을 시도하였다. 영화와는 또 다른 장르인 웹드라마가 자칫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를 일상의 이야기로 쉽게 풀어낼 수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가 만든 첫 번째 웹드라마인 <진정하세요>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과 차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또한 인권위는 2019년에는 학교를 배경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청소년 인권, 스포츠 인권, 다문화 관련 인권 등의 주제를 다룬 <비밀의 비밀>을 제작하였으며, 2020년에는 아동보호 시설 청소년에 대한 편견, 일상에서의 성차별, 스포츠 인권 등을 다룬 <차타공인>을 제작하였다. <비밀의 비밀>과 <차타공인>은 인권위의 홍보 성격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였으며, 특히 <비밀의 비밀>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존중과 배려를 생각하게 만들어 인권문화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차타공인>은 수어본뿐만 아니라 영어본으로도 제작·보급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웹드라마

제작연도	제목	작품명(시리즈)	감독	제작사(배급연도)
2018	진정하세요	Ep.01 차별시정총괄과 민태용	김근호	(주)디지털에블루션
		Ep.02 과한 나이		
		Ep.03 조사관의 자격		
		Ep.04 명백하지 않은 차별		
		Ep.05 뜻밖의 손님		
		Ep.06 7년만의 귀향		
2019	비밀의 비밀	Ep.01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비밀	김연황	(주)디지털에블루션
		Ep.02 누구에게나 있는 비밀의 비밀		
		Ep.03 손바닥으로라도 가리고 싶은		
		Ep.04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2020	차타공인	EP.01 눈을 거짓말을 하지 않아	황성운	(주)디지털에블루션
		EP.02 널 믿어. 내 손을 잡아		
		EP.03 있는 그대로의 널 이해할게		
		EP.04 마음이 너에게 닿길 바래		

3) 인권작품 공모사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

인권위는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인권문화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인권지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 속의 인권을 주제로 2006년부터 공모사업을 실시하였다. 공모

사업은 국민들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인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감수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2013년부터 심사·시상 등 인권위가 일괄 수행

초기에는 인권위와 3개의 지역인권사무소가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주최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인권작품공모전’으로 통합 시행하고 있다. 공모전 분야는 사회 트렌드에 어울리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권과 관련 있는 자유 주제의 논문, 시, 에세이, 사진, 웹툰, UCC, 포스터, 카드 뉴스 등이며, 2019년(혐오차별, 스포츠 인권, 군 인권)과 2020년(차별 반대, 차별 예방)에는 주제를 정하여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 수상 작품은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

인권위는 공모전 수상 작품을 모아 책으로 발간하거나 엽서(사진, 포스터 등)로 제작하여 도서관·인권사무소·인권단체에 배포하고, 이를 전시회·인권 순회상담·거리캠페인 등의 인권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수상 작품들은 인권위 페이스북·카카오톡·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공개되어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로, 잡지《인권》의 콘텐츠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1년부터는 변화된 정보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전 전용 사이트(www.humangongmo.kr)를 개설하였으며, 해마다 수상작을 업로드하여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인권교육자료나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기타 문화 콘텐츠 개발

• 인권만화집 『십시일反』, 『사이시웃』, 『어깨동무』

만화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권위는 2003년, 2006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주)창비와 협력해 인권만화집을 발간하였다. 2003년 제작된 첫 번째 만화집 『십시일反』은 박재동, 손문상, 유승하, 이우일, 이희재, 장경섭, 조남준, 최호철, 홍승우, 홍윤표 작가가 참여하여 이주노동자, 성차별 등의 주제로 하는 극화와 만평을 담았다. 2006년 제작된 두 번째 만화집 『사이시웃』은 손문상, 오영진, 유승하, 이에림, 장차현실, 정훈이, 최규석, 홍윤표 작가가 참여하여 비혼모, 청소년 인권 등을 다룬 작품을 담았다. 2013년에 발간한 세 번째 만화집 『어깨동무』는 정훈이, 최규석, 손문상, 김수박, 조주희, 박철권, 김성희, 윤필, 굽시니스트, 유승하 작가가 참여하여 기업인권, 노인인권, 학생인권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 생생한 인권현장을 담은 인권사진집과 인권포스터

인권위는 인권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사진집을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제작하였다. 2003년에 제작된 『눈 밖에 나다』는 사진작가 광상필, 김문호, 박영숙, 성남훈, 안세홍, 이재갑, 최민식, 한

금선의 작품과 글을, 2005년 제작된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는 사진작가 성남훈, 이갑철, 임종진, 김문호, 박여선, 김중만, 이규철, 최향영, 노익상, 한금선의 작품과 공선옥, 조병준, 김문호, 방현석, 이문재, 노익상의 글을 실었다. 인권포스터는 그림 한 장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면에서는 사진과 동일하다.

인권포스터는 전문가와 작가들이 참여하여 세 차례에 걸쳐 제작되었다. 2003년 처음 제작된 ‘차별1’은 안상수, 홍성담, 박불똥 등 16명의 시각매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주노동자, 성차별, 소수자 차별 등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졌다. 2006년 두 번째 제작된 ‘차별2’는 김현, 서정계, 조선경 등 10명의 시각매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각장애인, 비정규직, 출신민족 등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졌다. 2011년에 제작된 ‘생활 속 인권 이야기’는 이주여성, 소년원, 새터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이 참여하여 생활 속의 인권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들을 시각매체 전문가인 안상수 교수가 디자인하여 창작하였다.

• 책 속 인권 이야기, 인권도서

인권위는 2010년에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다룬 인권도서 『불편해도 괜찮아』를 발간하였다. 2011년에는 『인권의 해설』,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를 발간하였는데,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는 2012년에 영문판 『For the sake of human rights』로도 출간되었다. 2012년에는 인권영화 10년을 기록한 『별별차별』을 출간하여, 보는 영화에서 읽는 영화 교재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차별을 주제로 한 인권포스터(2005. 01. 05)



2021 인권작품공모전 포스터 일부 대상 수상작

● 제4절 홍보

1. 개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인권위의 업무를 다룬 제19조 제5호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의 홍보활동이 조직의 업무와 정책을 알리는 역할인 것과 달리, 인권위의 홍보활동은 기관 자체의 홍보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공감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 시도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정책권고, 사업과 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기본적인 방송과 라디오 광고를 비롯해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보도를 수행하여 인권위의 입장과 사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언론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얻기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영화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잡지 《인권》을 창간해 국민에게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보도 확산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또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작품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다각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홍보활동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주요 결정례를 2분 남짓한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한편, 잡지 《인권》도 종이 매체에서 벗어나 웹진, 전자 도서, e북 등 접근경로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온라인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도 진행한다. 온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를 발송하여 인권위의 주요 보도자료와 함께 다양한 활동 내용을 알리는 한편, 블로그 ‘인권 속 별별이야기’에 시민기자단과 함께 매달 게재하는 홍보 콘텐츠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인권위 설립 15주년인 2016년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주간을 지정해 광고, 인권거리 체험홍보관,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고 있다. 또한 청사 앞 전광판을 활용해 주요 결정례 동영상, 대한민국 인권상 공모 및 조정제도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인권위는 각 부서의 홍보 수요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1) 광고 및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TV 광고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 신뢰도와 주목도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집중적으로 광고와 캠페인 펼쳐

인권위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인, 다문화가족 2세,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차별과제를 선정해, ‘인권은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TV 광고(2002)와 ‘외국인 노동자, 우리



차별과제를 다룬 인권위 TV 광고(2002)

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TV광고(2003)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2004년에는 국민의 차별 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을 홍보하기 위해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1세대 혼혈인인 배기철 씨의 "단지 피부색이 다를 뿐인데, 자신들과 틀리다고 합니다"라는 독백을 엮어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TV 캠페인을 제작하여 2005년까지 방송하였다. 2006년에는 장애차별, 연령차별, 성차별을 주제로 한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으며, CM송을 만들어 라디오 광고로 집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2008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MBC와 공동으로 20부작 휴먼 다큐 프로그램인 <희망나눔 무지개>를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2010년에는 EBS와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차별의 발견'을 주제로 하는 두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다큐·교양 프로그램 <지식채널e>에서 방영하였다.

2013년에는 전문 뉴스채널인 YTN과 함께 '인권은 생활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연령차별,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 장애차별, 신분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례를 다룬 4편을 방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SBS라디오와 함께 '인간이 중심 되는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KBS FM과 CBS FM 라디오에 240여 회에 걸쳐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KBS FM, CBS FM, TBS FM 라디오에 광고를 110회 진행하였다.

• 언론 전담부서 운영을 통한 언론보도 홍보활동

인권위는 설립 이후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매체 등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온라인 홈



광주인화학교 직권조사 결과 기자 브리핑(2011. 12. 28)



인권보도상 트로피(2017. 02. 24)

페이지를 통해서도 보도자료를 공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권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권고 및 의견 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인권현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위의 국내외 주요활동 등이다. 또한 인권위는 언론 공표자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취재 협조와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건 및 결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현안 설명 등을 위한 간담회, 브라운 백 미팅 등을 통해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과 이해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모바일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출입기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특히 주요 현안 발표 시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고, 인권 현안과 쟁점에 대해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인터뷰 등을 기획하고 지면 반영 및 방송사 뉴스 제작을 유도하는 등 기획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기사 스크랩, 주 단위 언론 동향 보고 등 인권위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으로 인권위 내부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강의, 언론홍보 실무교육 등을 추진해 언론홍보에 대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였다.

2) 인권보도상

인권위는 언론이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의 보호·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물을 자발적으로 생산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10대 인권보도'를 선정해 시상해 왔다. 2011년에 이르러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고, 이 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2012년 '인권보도상'을 제정하였다.

• 공신력을 높여 위상 강화

인권위는 인권보도상의 심사 운영 세칙을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인권보도상의 공신

력을 확보하고 위상을 강화하였다. 심사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5~6명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 등 총 7~8명으로 구성된다. 2015년(제4회)까지는 본상 5편 선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6년(제5회)부터는 대상을 별도로 신설하고 상금을 증액하는 등 대외적인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제1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으로 총 1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후 점차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매년 30~40여 건의 후보작이 접수되고 있다.

인권보도상 당선작

회차(연도)	구분	매체명	보도 제목	기자	
제1회 (2012)	신문	한겨레	제2의 김진숙, 제3의 한진중	김도형 외 4명	
	방송	KBS광주	기아차 현장실습 뇌출혈사고 연속보도	우한울 외 5명	
		EBS	학교 회계직을 아시나요	박용필 외 3명	
제2회 (2013)	신문	제주CBS	우리는 외국인 선원, 노예가 아닙니다	김대휘	
		경향신문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전병역 등 4명	
		동아일보	중국 탈북자 강제복송 관련보도	주성하	
	방송	세계일보	우리 안의 폭력	이우승 등 9명	
		KBS	난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박에스더	
인터넷	KBS(리셋뉴스)	민간인 사찰문건 폭로 연속보도	송명훈 등 16명		
제3회 (2014)	신문	인터넷	오마이뉴스	현대차의 그늘 시리즈	김종철 등 4명
		국민일보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기를 버립니다	김유나 외 2명	
	방송	경남도민일보	밀양 할매·할배들의 절규에 응답하다	표세호 외 7명	
		광주MBC	상처받은 자의 치유	이재원 외 1명	
		아리랑TV	Comfort Women, One Last Cry	문건영	
인터넷	오마이뉴스	삼성A/S의 눈물	최지용 외 2명		
제4회 (2015)	신문	중앙일보	전과 5범 이상 소년범 1만 명	위성욱 외 4인	
		세계일보	대한민국 검시 리포트	박성준 외 2인	
		경기일보	인권침해·비리 백화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명관 외 2인	
	방송	KBS	군대 성폭력 보고서-누가 오 대위를 죽였나	이병도 외 2인	
		EBS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이동현 외 4인	
인터넷	글자에 갇힌 아이들				
제5회 (2016)	대상	한겨레신문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임인택 외 4	
	본상	광주MBC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정소송 승소	김철원	
		경인일보	인권사각지대, 산단의 뒷모습 기획보도	김환기 외 3	
		이데일리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관련보도	조용석 외 1	
		CBS	'마포 장애형제 사건' 연속보도	김광일	
		청주CBS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보도	박현호 외 1	
JTBC	손영석 외 2				

회차(연도)	구분	매체명	보도 제목	기자
제6회 (2017)	대상	국민일보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터내는 소녀들의 눈물	박효진
	본상	오마이뉴스	'불법파견 위장취업 보고서' 및 후속 관련보도	선대식
		CBS	13세 지적장애 하은이 성매매 둔갑 판결 연속보도	김광일
		YTN	모야모야 여대생 강도 및 범죄 피해자 지원문제	이승배
		연합뉴스 전북	살인, 강도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소년들	김동철
		내일신문	멕시코판 <집으로 가는 길>	정재철
머니투데이	오세중			
제7회 (2018)	대상	동아일보	'그림자 아이들' 시리즈 및 후속보도	조은아, 김재명, 김예윤
	본상	CBS	성심병원 간호사 선정적 장기자랑 등 인권침해 실태 연속보도	김명지, 송영훈
		제주CBS	70년 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수형인 기획보도	김대휘, 문준영
		프레시안	심층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전홍기혜
제7회 (2018)	본상	한겨레	'18살 고교실습생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나' 연속보도	고한솔, 김미향, 허호준, 이지혜, 신지민
		한국일보	비극의 로힝아족 난민캠프 최초 르포	정민승
		머니투데이		오세중
제8회 (2019)	대상	한겨레	노동orz, 우리 시대 노동자의 초상	고한솔, 신민정, 황금비, 장수경, 임재우, 노현웅
	본상	서울·대전MBC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연속보도	박진주, 김장훈, 남재현, 김수근, 이승섭, 조명아
		한겨레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변지민, 정환봉, 최민영
		SBS	끝까지 판다-병의원 불법의료 실태 연속보도	이병희, 김종원, 한세현, 박하정, 정성진, 조창현
		경남MBC	골려간 사람들-'지쿠호 50년의 기록'	정영민, 강건구
		오마이뉴스	기획-피해자는 두 번 운다	소중한, 배지현
제9회 (2020)	대상	EBS	EBS 연중기획 (가족의 탄생-가족을 구성할 권리) - 혈연 외에 1인가족, 동거, 입양, 그룹홈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 조명	이상미, 송성환
	본상	서울신문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 청소년 미혼 부모 중 사법처리 사례 전수조사해 처벌은 대부분 여성이 받고 있는 문제 조명	이하영, 김정화, 이근아
		제주 CBS	대마도가 품은 '제주 4.3 수장학살' - 제주 4.3 당시 수장학살 희생자를 목격한 일본 대마도와 인근 도서 주민 증언 채록해 보도	이인, 고상현
		국민일보	'죽음조차 가난했던 무연고 사망의 기록' 외	전웅빈, 김유나, 정현수, 김판, 임주연
		서울신문	2019 이주민 리포트 : 코리아드림의 배신	유대근, 홍인기, 김형우, 박윤솔, 이하영, 기민도, 나상현
		한겨레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권지담, 이주빈, 황춘화, 정환봉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 제정**

인권위는 언론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다. 언론의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은 전문과 총강,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 등 8장의 분야별 요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칙과 별도로 구체적인 보도 사례와 원칙을 담은 매뉴얼도 제작하였다.

인권위는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해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와 공동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5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였고, 《기자협회보》 광고를 통해 인권보도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이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 7명이 참여하는 인권보도준칙위원회(위원장 김주연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가 구성되어 「인권보도준칙」 초안을 마련하였다.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보도준칙」 초안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분야별 인권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최종안은 인권위 상임위원회와 기자협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고,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장과 한국기자협회장이 최종안에 서명, 공식 발표하였다. 이어서 인권위는 인권보도수첩을 제작해 언론인과 국가기관 및 지자체 홍보담당관에 배포하였고, 언론인 인권교육 등에 「인권보도준칙」을 활용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의 후속 사업으로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제정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3개 공중파 방송과 4개 중편 방송의 메인뉴스, 10개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14년 11월에 아동 인권을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으로 수정하고 북한 인권을 추가하는 등 준칙을 개정하였다.



인권보도준칙위원회의(2011. 06. 24)

3) 뉴미디어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인권위 역시 2010년 이후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뉴스레터 발송과 블로그 운영에 덧붙여 포털사이트 광고를 집행하고, 유튜브·블로그·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였다.

뉴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의 중요성은 2019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욱 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기존의 카드뉴스, 브로슈어, 엽서 등의 홍보 콘텐츠를 영상 위주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인권위 유튜브에 신속하게 게시·보급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 발송

인권위는 2006년부터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를 제작·배포해 왔다. ‘휴먼레터’를 통해 주요 결정례, 블로그 기사와 웹진 관련 내용, 인권도서관의 국내 도서 추천과 월별 인권영화 상영 등 인권위 소식과 주요 활동을 알리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2주에 1회 제작하였다가 2020년부터 월 1회 제작하여 4만여 명에게 발송하고 있다(2021년 8월 현재 234호 발행). ‘휴먼레터’는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메뉴 ‘활동 소식’에서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이메일만으로 쉽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다.

• 블로그 ‘인권 속, 별별이야기’로 네티즌과 소통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권위의 네이버 블로그 ‘인권 속, 별별이야기’는 생활 속의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네티즌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개설 초기에는 시민기자단의 기고를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인권다반사, 미디어와 인권, 생활 속 인권과 법, 인권위 소식, 인권만화, 인권용어사전 등의 코너로 구성되었다. 이후 인권의 블로그 메뉴는 여러 번의 개편을 통해 현재 인권위의 소식을 알리는 ‘별별이슈’,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다루는 ‘별별인권’, 영화·도서 등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별별문화’, 시민기자단의 기고를 중심으로 생활 속 인권을 이야기하는 ‘별별기자단’, 지속적인 네티즌 유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유지를 위해 소규모 이벤트를 진행하는 ‘별별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현재 ‘인권 속, 별별이야기’는 17명의 온라인 서포터즈인 별별기자단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이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맞게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2021년 8월 현재 3,756개의 콘텐츠가 소개되어 있으며, 구독자는 1만여 명에 이른다. 블로그 방문객 수도 매년 증가해 누적 480만 명을 넘어섰다.

• 실시간 소통, 페이스북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온라인 홍보가 대중화되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은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지향하여 웹 3.0 정보행정시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쉽고 편하게 대중과 소통하며, 전파 가능한 게시글을 통해 빠르게 인권문화를 조성하고, 실시간으로 인권위의 활동을 알릴 수 있어 인권과 관련된 생각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인권위는 2012년 3월 페이스북(www.facebook.com/nhrckr)을 개설하였고, 이후 매체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및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권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인권위 활동을 소개하고, 발간 서적 및 영화를 홍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소규모의 온라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권생활지수’와 같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

롭게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행하는 매체로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 팔로어는 매년 증가하여 2021년 8월 현재 4만 6,122명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다.

• 모바일 기반, 카카오톡스토리

2010년 이후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이 중요한 매체로 부상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블로그, 페이스북에 이어 2015년 카카오톡스토리 채널을 개설하였다. 인권위 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하여 인권위 소식, 결정례 영상, 인권 관련 카드뉴스, 인권 웹툰, 인권용어사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 현재 1,719개 콘텐츠, 6,387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 딱딱한 텍스트를 영상으로 쉽게, 결정례 동영상 제작

인권위는 2014년부터 그동안 텍스트 중심이었던 주요 결정례를 재연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권교육에 활용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의 SNS 채널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유튜브 대담 형식을 차용하여 군대와 직장에서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고 결정례 설명과 함께 결정 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결정례 동영상은 인권위의 역할과 인권침해와 차별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공감하게 하여 인권이 일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결정례 동영상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텍스트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어 접근성을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결정례 동영상은 매년 분야별로 선정해 제작하고 있으며,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CD로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인권위 공식 블로그 메뉴 중 '별별기자단' 페이지



인권위 유튜브 채널 중 결정례 동영상 '선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선talk'

주요 결정례 동영상

연도	분야	주요 내용
2014	인격권	경찰 인종차별 언행 시정 권고
	학력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 학력차별 시정 권고
	신체조건	신체조건에 의한 공무원 채용차별 시정 권고
	연령	도비 유학생 선발 나이차별 시정 권고
	개인정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신상을 아파트 현관에 게시
	성희롱	국립대학 교수의 제자 성희롱 사건 관련 징계 권고
	아동인권	중학교의 강제 이발권 관련 시정 권고
	장애	의족 관련 요양 불응인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의견 제출
	성별(고용)	혼인 여성에 대한 퇴사 관행 등 고용차별
		간호사 모집 시 남성 배제로 인한 성차별
사회적 신분	비정규직 호봉과 경력 불인정	
2015	성별	여성 승무원에 대한 복장 및 용모 제한
	피의자	조사 중 메모 금지 등 인권침해
	노인	노인요양원에서 치매환자 폭행 피해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장애	장애인 고용차별
	혼인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피부양자 자격요건 차별
학벌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관행 개선 의견표명	
2016	개인정보	무죄판결 관보 게재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군 폭력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스포츠	운동부 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조정)
	정신장애	정신병동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출신지역	이주아동 중등교육 제한
가족형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 위원 피선거권 제한	
2017	장애	항공기 이용 시 장애차별 개선
	청소년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의견표명)
	군인권	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검열
자유권	자의 입원환자 퇴원 거부	
2018	이주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성추행
	난민	난민 장애인 등록 거부
	고용차별	종교집회 참석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
아동인권	노키즈존	
2019	장애학생 교육권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성차별	일상 속 성차별과 성 불균형의 심각성
학생인권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	
2020	군인권	부대장의 사적 지시로 인한 인권침해
	공공기관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공공기관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연도	분야	주요 내용
2021	정신장애인 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경찰이 사건관계자의 정신병력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청소년인권	중학교 전학 시 부모의 별거사실 확인을 담임교사로부터 받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4) 잡지를 활용한 홍보

인권위는 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진정권 보장 및 대국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잡지 《인권》을 창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다수인보호시설, 공기업,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을 통해 시대의 인권 담론을 담아내고 생활 속 인권 이슈는 물론 새로운 인권 영역과 다양한 관점과 논의를 소개하고,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여 독자들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 ‘읽는 잡지’, ‘보는 잡지’ 인권 전문 교양지 《인권》 창간

인권위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 취약계층이 스스로의 권리와 구제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기능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03년 8월 월간지 《인권》을 창간하였다. 《인권》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과 인권향상을 위해 애쓰는 인물의 인터뷰, 세상 사는 이야기 속에 담긴 인권 풍경, 문인들의 인권 에세이 등 다양한 인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 전문지임과 동시에 교양지를 지향한다.

《인권》은 월간지로 시작해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변경되어 2021년 8월 현재 통권 135호를 발행하였다. 17여 년간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온 《인권》은 몇 차례의 리뉴얼을 통해 콘텐츠와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읽는 잡지’, ‘보는 잡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잡지 《인권》 창간 5주년 기념 전시(2008. 08. 04)



• 웹진, 전자 도서 등 접근경로 확대

인권위는 인권정보 공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인권》과 만날 수 있도록 접근경로를 꾸준히 확대하였다. 2004년 5월부터는 오프라인 매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웹진 《인권》을 창간해 온라인을 통한 인권홍보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의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도서로도 제작하여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이 《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책자의 모든 내용에 보이스아이(음성 전환) 바코드를 삽입하였다. 2013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해마다 웹 접근성 인증을 받고 있다.

《인권》은 2015년까지 매호 2만 부가량 발행되었으나 잡지 환경이 변화하고 다양한 접근경로가 개발됨에 따라 점차 발행량이 축소되어, 2021년 현재 3,600부가 발행되어 웹과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노인·장애인·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과 중·고등학교 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우선 배포되고 있다.

• 시민기자단 운영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 도모

인권위는 《인권》의 외연을 확대하고 독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청소년명예기자단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시민기자단을 운영하였다. 시민기자단은 잡지 모니터링, 인권위 블로그 ‘인권 속, 별별이야기’에 인권 에세이 등을 기고하는 활동을 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에서의 인권홍보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국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다(2021년 현



제1기 청소년명예기자단 워크숍(2010. 08. 06)

재 온라인 서포터즈 별별기자단으로 활동), 또한 인권위는 내용의 다양성과 인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잡지 기획위원회를 구성, 매호 기획회의를 통하여 잡지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5) 기타 홍보

•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기반으로 '인권홍보대사' 위촉

인권위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인지도와 신망이 높은 유명인을 인권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인권홍보대사는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자연스럽게 인권을 받아들이고, 인권이 나와 이웃의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인권홍보대사는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각자의 직업에 맞는 자발적인 재능 기부 형식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주간'

인권위는 2016년 인권위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인권위 설립일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 2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인권주간 동안에는 라디오 캠페인 진행과 사진전 개최 외에도 온라인, 인쇄물,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권위 활동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히 인권사무소와 연계하여 인권영화제, 토론회, 사진전 등 다양한 인권주간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인권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권홍보대사 김미화의 다일공동체 밥퍼봉사 현장(2009. 01. 30)



인순이 인권홍보대사 위촉식(2015. 02. 02)

역대 인권홍보대사 및 활동 내용

성명/단체명	직업	위(해)촉 일자	주요 활동 내용
윤도현	가수	2003. 12. 10 2015. 05. 31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참가(2003), 인권위 전화 컬러링 녹음(2005. 09~2010. 12)
김미화	방송인	2007. 11. 23 2012. 12. 06	인권현장 방문(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다일공동체, 2008. 03),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진행(2008~2010), 인권위 전화 컬러링 녹음(2010. 12~2011. 12)
공지영	작가	2007. 11. 23 2010. 06. 0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행사 참가(2008. 0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한 시 면담(2008. 07)
이수영	가수	2007. 11. 23 2010. 06. 03	위촉 보도자료(2007)
정명화	음악인	2007. 11. 23 2015. 05. 31	사형제 폐지 행사 참가(2007. 12),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한 시 면담(2008. 07), 인권위 전화 컬러링 배경음악 연주(2010. 12~)
예쁜아이들 중창단	음악 단체	2007. 12. 10 2014. 12. 31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참가(2011년 등)
양종훈	사진작가	2008. 05. 14 2010. 06. 03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홍보대사(2008)
강용주	의사	2008. 07. 06 2010. 06. 03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홍보대사(2008)
양지운	성우	2008. 07. 06 2018. 07. 20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홍보대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사회(2008~201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한 시 면담(2008. 07), 세계인권선언 영상물 더빙(2011)
이원복	만화가	2008. 07. 06 2010. 06. 03	세계인권선언 60주년 홍보대사(2008), 인권선언 만화작업(2008)
김호진	배우	2012. 12. 11 2018. 07. 20	북한인권 다큐멘터리 내레이션(2012), 안산평화의 집 현장방문(2013), 인권위 홍보영상 및 사진(2015)
인순이	가수	2015. 01. 26 2018. 07. 20	인권위 홍보영상 및 사진(2015),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홍보영상 내레이션(2015)
유전식	음악인	2015. 04. 29 2018. 07. 20	정책자문위원회 공연(2015)

● 제5절 인권도서관 운영

1. 개관

인권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도서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02년 소속기관인 인권자료실로 개관하였다가 2012년에 인권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권도서관은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 과정에서 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편입되었다가 2016년부터 인권교육기획과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 인권 자료 조사·수집 등 인권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

인권도서관은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직원, 인권단체,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도서관 소장자료를 검색하고 인권위 간행물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권자료목록, 인권사이트, 인권도서관, 뉴스레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면 단행본, 영상자료, 전자저널, Web-DB 등의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를 검색·출력할 수 있으며, 영상실,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등의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권정보 접근의 지역 간 균형을 통한 정보접근권 향상과 지역민을 위한 인권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 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인권도서관 분관(부산·광주·대구·대전분관 2015년 개관, 강원 분관 2017년 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 환경 개선으로 장서의 효율적 관리와 접근성 증대

인권도서관은 2017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서가 집중 구간에 대한 구조 보강 공사를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장서 증가에 따른 서고 과밀화 및 부족한 이용자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도서관 확장 공사(도서관 총 면적 574㎡)를 실시하여 장서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장애인 접근성 증대 등 쾌적한 이용자 환경을 조성하였다. 장서 관리와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2002년 자료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03년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1년·2016년·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RFID 시스템과 통합검색엔진을 도입하고, 영문 홈페이지를 신설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등 자료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용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

2. 주요활동

인권도서관은 인권위 간행물과 인권 분야 자료 수집·정리 외에도 인권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인권영화 상영회,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등을 통하여 인권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인권위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업무 효율성을 위한 자료 수집·제공

인권도서관은 매년 장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주제 분야별 균형 있는 장서와 장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정보매체를 반영하여 장서 구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통하여 인권위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인권환경의 흐름과 사회적 현안을 주시하여 인권 분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질의 자료를 수집·정리·축적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전문화된 최적의 정보·자료를 적시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준 높은 장서 구성을 위하여 사서가 조사·작성한 최신 인권자료 목록을 법학·정치학·북한인권·아동인권 등 인권 관련 13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자료 구입에 반영한다. 또한 「인권자료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장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장서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서고 공간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 자료 구입 예산 : 연간 약 1억 8,000만 원(2020년 기준)
- 장서 현황(분관 포함, 2021. 01. 01 기준)
 - 단행본 : 인쇄자료 5만 5,000여 권, 전자책 2,900여 권
 - 비도서 자료 : 1만 1,000여 점
 - 연속간행물 : 인쇄자료 66종, 전자저널 1,100여 종
 - Web-DB : 9종(학술정보, 법률정보)

• 인권위 간행물 관리 및 정보 제공

인권도서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인권위 간행물의 발간등록 번호 부여, 관리, 보존, 납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간행물 서지정보와 원문 정보를 제공하고, 2011년 9월부터 누리미디어 등 외부 정보원에 인권위 간행물 원문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2021. 08. 31 기준)

자료유형	소장 현황	자료유형	소장 현황
단행본	60,106권	전자책	3,037권
비도서	11,753점	Web-DB	9종 (학술정보 7종, 법률정보 2종)
연속간행물	66종	전자저널	1,117종

인권위 간행물 원문 이용 현황(인권도서관 홈페이지)

연도	다운로드 건수	연도	다운로드 건수
2012	9,244건	2017	4,661건
2013	6,408건	2018	8,694건
2014	3,771건	2019	9,283건
2015	3,635건	2020	13,177건
2016	4,602건	2021. 10	27,696건

•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인권도서관은 인권자료와 인권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이용의 편의를 위해 2005년 11월부터 개인과 단체(학교, 기관, 단체 등)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08년 12월부터는 개인 대출을 자료회원제로 변경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권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인 장서, 시설, 서비스를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독서 보조기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장년을 대상으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유엔 인권정보와 주요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정보와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인권 분야의 신간 도서, 학술논문, 콘텐츠, 강좌 등의 행사를 소개하는 월간 소식지 ‘인권도서관 뉴스레터’를 매달 5일 이메일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가 인권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대차 서비스와, 도서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도서관 행사

① 인권영화상영회

인권도서관은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100여 개 도서관에서 인권위에서 제작한 인권영화를 상영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상영회’를 공동 개최하였고, 2003년부터 정기적으로(월 1~2회) 인권도서관 내 영상실에서 직원 및 외부 이용자가 함께하는 ‘인권영화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2. 10)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상영회 개최 현황

회차	연도	상영작품	상영일	참가 현황
제1회	2008	여섯 개의 시선 외	2008. 12. 07~12. 14	15개 지역 106개 도서관
제2회	2009	별별이야기 2 외	2009. 12. 06~12. 13	11개 지역 55개 도서관
제3회	2010	날아라 펭귄 별별이야기 1, 2 시선 1318	2010. 12. 06~12. 12	14개 지역 54개 도서관 6,109명
제4회	2011	날아라 펭귄 별별이야기 1, 2 다섯 개의 시선	2011. 12. 05~12. 11	16개 지역 78개 도서관 5,845명
제5회	2012	다섯 개의 시선 시선 너머 별별이야기 1, 2	2012. 12. 08~12. 14	15개 지역 105개 도서관 1만 5,467명
제6회	2013	범죄소년 시선 1318 시선 너머 별별이야기 1, 2	2013. 12. 04~12. 18	16개 지역 169개 도서관 3만 418명
제7회	2014	별별이야기 1 어떤 시선	2014. 12. 07~12. 13	15개 지역 120개 도서관 1만 9,614명
제8회	2015	별별이야기 2 어떤 시선 하늘의 황금마차	2015. 12. 07~12. 13	14개 지역 71개 도서관 8,192명
제9회	2016	별별이야기 1 날아라 펭귄 어떤 시선 하늘의 황금마차	2016. 11. 25~12. 10	16개 지역 79개 도서관 1만 2,000명
제10회	2017	시선 사이 4등 어떤 시선 날아라 펭귄	2017. 11. 20~12. 21	17개 지역 112개 도서관 1만 4,790명
제11회	2018	4등 어떤 시선 하늘의 황금마차 별별이야기 1	2018. 10. 10~12. 10	14개 지역 109개 도서관 약 7,770명
제12회	2019	4등 어떤 시선 시선 사이 별별이야기 1	2019. 10. 28~12. 20	15개 지역 97개 도서관 약 1만 2,857명

② 견학 프로그램

인권도서관은 2012년부터 인권에 관심 있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2020~2021,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477개 기관에서 8,730명이 참여하였다. 견학 내용에는 인권위 소개, 인권도서관 소개, 자료 이용 방법 및 도서관 홈페이지 활용법 안내, 인권영화관람(15~30분),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이해와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견학프로그램 신청 건수 및 참여 인원

연도	구분	합계	연도	구분	합계
2012	건수	27	2016	건수	58
	인원	461		인원	999
2013	건수	79	2017	건수	49
	인원	1,537		인원	893
2014	건수	87	2018	건수	70
	인원	1,722		인원	1,191
2015	건수	51	2019	건수	52
					1,005
			총계	477건 8,730명	

③ 전국 도서관과 함께하는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책과 독서와 관련한 여러 부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인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전국 도서관과 함께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2021년 도서 전시회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어린이 인권도서 목록'을 제작하여 도서관에 배부하였다. 목록을 배부받은 각 도서관은 도서관별 상황에 따라 어린이 인권도서 관련 대면·비대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인권도서 전시 도서관

연도	구분
2009	공공도서관 2개관
2010	공공도서관 5개관, 학교도서관 1개관, 작은도서관 1개관
2011	학교도서관 5개관, 인권도서꾸러미 2개관
2012	공공도서관 10개관, 학교도서관 2개관, 대학도서관 1개관
2013	공공도서관 6개관, 학교도서관 3개관, 인권사무소 2개 전시관
2014	공공도서관 9개관, 작은도서관 5개관, 인권사무소 2개 체험관
2015	공공도서관 9개관, 학교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4개관
2016	공공도서관 7개관, 어린이도서관 1개관, 인권사무소 4개 체험관
2017	공공도서관 9개관, 어린이도서관 1개관, 인권사무소 4개 체험관
2018	공공도서관 12개관, 인권사무소 2개 체험관
2019	공공도서관 9개관, 인권도서관, 인권사무소 3개 체험관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2009. 11. 08)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현장 방문으로 인권·시민사회
단체와 교류 강화 및 외연 확대

182회



20년간 인권현장 방문 횟수

새로운 인권분야 개발로
인권의식 개선 기여

33억 4,100만 원



20년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보조금 지원금액

국제인권회의의 유치로
국제사회의 인권 의제 주도

71건



20년간 국제인권회의의 유치 건수

새로운 인권분야 개발로
인권의식 개선 기여

498건



20년간 인권 관련 국제회의의 참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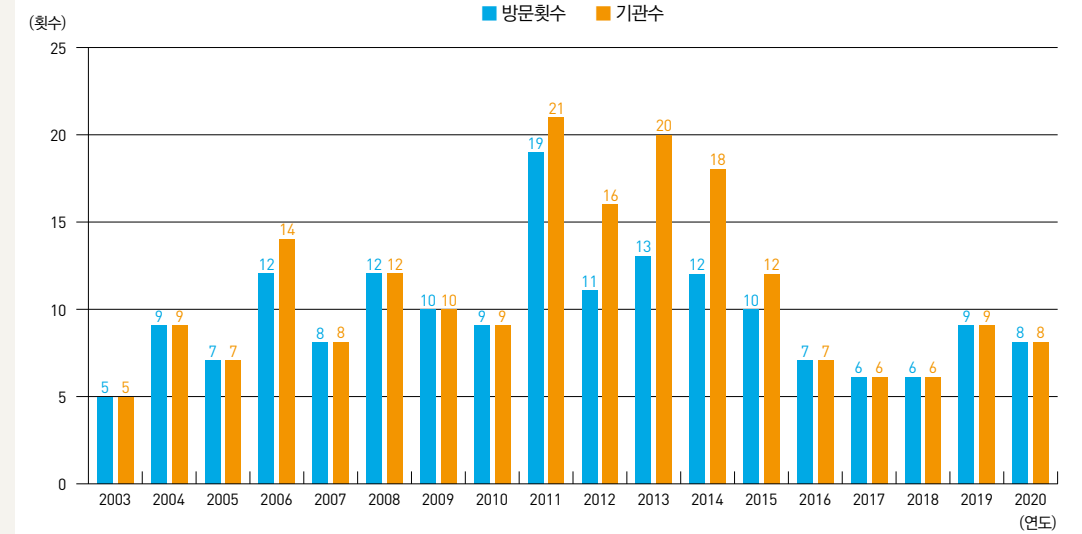
국제인권회의의 유치로
국제사회의 인권 의제 주도

32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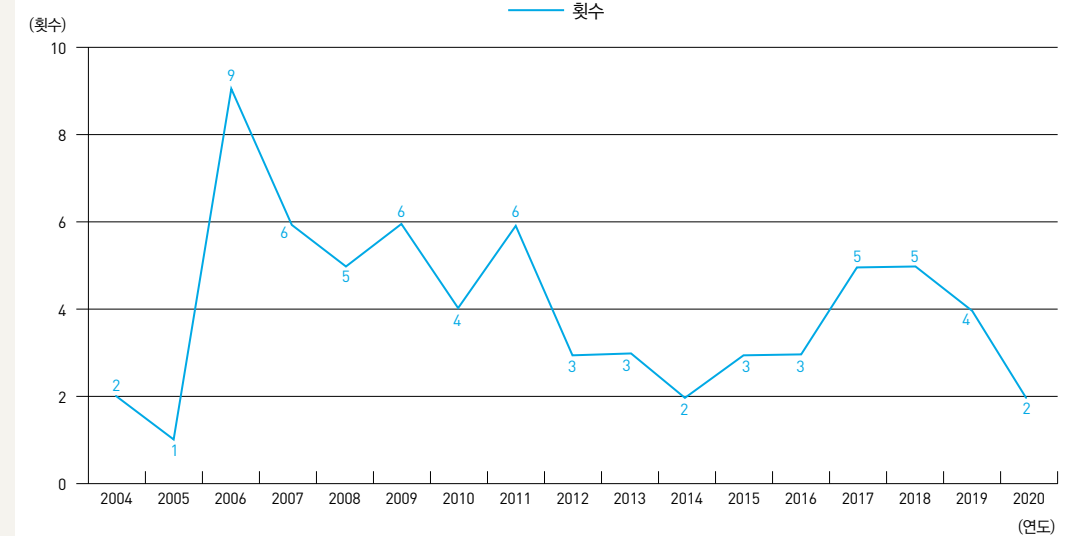
20년간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의
내방 건수

... 사회 소수자 및 취약계층 현장 지속 방문 ...



[그림 3-4-1] 인권현장 방문 추이

... 2004년 이후 주요 국제인권회의의 매년 개최 ...



[그림 3-4-2] 국제인권회의의 개최 추이

영역별 주요 성과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 강화

- 인권·시민사회단체 방문, 인권정책간담회 개최 등 의견 청취 토대로 정책 반영
- 인권·시민사회단체 주최 각종 행사 지원, 인권위가 제작·발간한 영상 및 교육 자료 제공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
- 국가기관 최초 쿼어축제 참석, 성소수자 인권보호 및 차별개선에 기여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권가치의 지역 확산 촉진

- 인권사무소와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상호협약체 구성, 인권옹호자회의 개최로 인권위·지역인권기구·인권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토대 마련
- 지역인권기구와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인권 보호·증진방안 모색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인권증진 다각화

-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공동사업 영역 발굴
- 각 인권 영역의 인권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실질적 협력 추진

인권현장 방문으로 현장의 목소리 정책 반영 계기 마련

- 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이주민, 난민, 군, 구치소 등 방문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현실 정책에 반영
- 인권 취약현장 및 해당 보호시설 방문 등을 통한 인권의제 발굴과 정책권고안 마련

국제인권사회 리더십 확보로 국제적 위상 제고

- GANHRI 아·태지역 집행이사회 이사국(2012, 2020),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2016, 2020),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2020) 선출 등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
-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구와 협력 강화로 선도적인 인권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국제회의의 참가 및 국가인권기구 교류를 통한 국제연대 강화

- GANHRI 연례회의, APF 연례회의, 각종 워크숍 참가로 국제 교류·협력 강화
- 주요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방문으로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
- GANHRI 및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간 지속 협력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국제사회 노인인권 이슈 선도

-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5, 2017~2019), 아셈 노인인권전문가 포럼(2016),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2017~2019),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2020) 개최 등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문제 논의 주도

총론

1. 개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국내외 인권단체와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함으로써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장 방문, 공동협력사업 등으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교류 이어나가

인권위는 설립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수시로 인권단체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하였고, 차기 연도의 예산 및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인권위는 2003년부터 사회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현장을 방문하였고, 2021년 6월까지 182회에 걸쳐 총 206개 기관을 찾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인권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권위 설립 이후부터 2021년까지 360개 단체에 33억 4,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그 외 인권위는 인권 가치의 지역 확산과 더불어 지역 인권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인권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지역인권기구·인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 2020년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하는 국가기관이다. 인권위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을 비롯하여 유엔, 인권 관련 주요 국제기구, 아시아와 유럽의 아셈 회원국 정부 등 다양한 주체와 교류 협력하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셈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2015~2019년),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2020년) 등을 개최하여 회원국의 노인인권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노인인권을 주제로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등에게 성명서를 송부하는 등,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2016년 선출, 2020년 재선출)으로서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인권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권위 위원장이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국제인권 무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해외 인권현장과 인권기구 방문 및 교류를 통해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 이슈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한 해외 사례 연구 및 검토를 통해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국외 훈련은 국내외 인권현안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과제로 선정하여 훈련 종료 후 인권위 정책·조사업무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2. 주요 영역별 국내외 교류·협력 개선 성과

국가를 대표하는 독립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옹호와 인권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 단체 및 개인의 협력과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은 인권위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국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 왔으며, 각종 국제인권기구와 외국의 인권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왔다.

•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강화

인권위는 수시로 간담회나 현장방문을 통해 인권현안을 논의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 인권가치의 지역 확산과 지역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위는 인권사무소와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인권옹호자회의를 통해 인권가치의 지역 확산과 더불어 인권위·지역인권기구·인권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인권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가치의 지역 확산 및 지역인권기구 강화 방안을 논의, 시행하고 있다.

•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 개발**

인권위는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실질적으로 협력하였다. 인권위가 2020년까지 지원한 인권 프로그램은 총 349개로, 장애·아동·여성·이주·난민·정보인권·혐오표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제안을 발굴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 **인권현장 방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 마련**

인권위는 매년 인권 취약 현장 및 해당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는 물론 생활인과 종사자,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인권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정책 권고>(2009. 10. 26),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2012. 06. 14),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2014. 08. 21) 등 정책권고를 내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7년 국가기관 최초로 귀어추계에 참석하여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였다.

• **국제회의의 참가 및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로 국제연대 강화**

인권위는 주요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주요 인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직접적인 교류·방문 이외에도 국제인권기구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연대를 강화하였다.

•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 국제사회 노인인권 이슈 선도**

인권위는 유엔 기구 및 다양한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인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와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원국의 노인인권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를 인권위가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주요 통계

[표 3-4-1] 인권현장 방문 현황

(단위: 회, 개)

구분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방문 횟수	182	5	9	7	12	8	12	10	9	19	11	13	12	10	7	6	6	9	8	9
기관 수	206	5	9	7	14	8	12	10	9	21	16	20	18	12	7	6	6	9	8	9

[표 3-4-2]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¹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 단체 수	360	23	26	20	33	30	32	33	15	16	15	14	15	15	14	10	14	12	12	11
지원 금액	3,341	200	150	150	275	275	275	275	130	130	115	115	115	115	115	115	197	194	200	200

[표 3-4-3] 국제부담금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	
	지원기구 수	지원금액	지원기구 수	지원금액
합계	17	1,700	4	2,588

[표 3-4-4] 국제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구분	합계	정책 일반	북한인권	정보인권	기업인권	국제인권	인권교육	자유권	이주인권	차별 시정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합계	71	4	17	3	4	20	3	4	4	1	2	9

[표 3-4-5]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단위: 회)

구분	합계	회의·교육	교류협력	조사	연구 및 훈련
합계	498	291	88	21	98

[표 3-4-6]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단위: 회)

구분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34	15	19	19	26	25	18	17	29	13	24	24	11	6	17	16	9	15	16	9	6

¹ 2003~2005년은 시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포함

● 제1절 국내 교류 및 협력

1. 개관

1993년 유엔 주관으로 열린 빈 세계인권회의에서는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가인권기구가 비정부기구(NGO)와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권위법」 제19조 제8호에서도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분야별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은 인권위가 설립 초기 인권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고 인권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인권위는 인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인권 이슈를 개발하고, 인권보호와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주요 활동

설립 초기부터 인권위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연간 업무계획 수립 이전에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으며, 인권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인권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또한 각 부문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인권보호가 필요한 현장 상황을 파악해 대처에 나서는 등 국내 인권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인권위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간부와 직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현장을 찾아다니며 외부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1) 인권단체와의 일상적 협력

• 외연확대 및 협력기반 구축

인권위는 설립 이전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위의 조직이 대폭 축소·약화되는 과정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가 생각하는 인권NAP 권고안’을 주제로 한 인권단체 정책간담회(2005. 09. 29)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2017. 11. 16)

가 크게 반발, 협력 공백이 발생하였다. 2015년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4대 중단 방문, 장애인단체(장애 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주요 단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인권재단사람·새사회연대·참여연대·한국여성민우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인권연대·한국인권재단·다산인권센터·군인권센터 등) 방문 및 행사 참석으로 공식·비공식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고 협력 기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2018년에는 대표적인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차기 연도의 전반적인 업무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였다.

•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인권위는 수시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하여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권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며,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역 인권활동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제작·발간한 각종 영상자료, 실태조사 보고서 및 인권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규모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권위는 지역 인권사무소 협력업무 담당자 회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인권기구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공동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인권정책 토론 활성화를 위한 '배움터'

인권위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각종 토론회, 학술행사,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사회 여론 형성과 인권운동의 활성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사 내 강당을 '배움터'로 명명하고 무료로 개방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NGO 지원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장애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의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NGO 워크숍',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동북아시아 국제이주 국제회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2005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헌법 다시 보기 연속 세미나',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인권단체연석회의·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위원회의의 '일본군 위안부와 인권 토론회', 한국여성성의 전회의 '데이트폭력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 2018년부터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인권위는 2018년부터 매년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한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담당자 등 민관 영역에서 인권옹호 업무를 하는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활동과 인권행정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인권현안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인권옹호자회의로 인권 가치의 확산과 더불어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인권위·지자체 인권기구·인권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인권위는 전국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인권기구,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 지역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

인권사무소와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역 인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협의체 구성, 정기회의 개최, 인권활동가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인권강사단 구성 운영, 사회적 약자 분야별 인권 캠페인 및 홍보활동, 시민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센터 개방 등 인권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인권 협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기구 담당자들의 소통과 자료 공유를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권네트워크(www.human-rightstogether.com)를 구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인권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인권전담기구 신설 확산,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 인권보장 체계 관련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 인권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인권전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권에



지역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개최된 ‘강원도 인권제도 이행방안 모색 워크숍’(2014. 07. 04)



지역의 인권협치제도 구축 방안과 인권의제 논의를 위한 제주 인권옹호자회의의(2019. 08. 28)

관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향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논의의 장이 지속성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인권위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3)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인권위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권 영역과 다양한 인권 이슈들로 인하여 국가기관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의 인권옹호 활동을 위해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보조금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 개척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은 인권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3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은 국가인권기구의 기본 역할인 ‘인권단체와 개인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인권옹호와 향상’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민 실천프로그램 개발 용역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였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은 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을 위한 지역단체 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등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 및 인권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모범적인 사업의 성과와 인권 프로그램 확산을 위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 20년간 총 349개 인권 프로그램 선정·지원

인권위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각 인권 영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중간 발표회(2008. 10. 24)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종료 후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업 시상식(2011. 12. 27)

역의 인권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의식 개선을 도모하는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까지 선정, 지원한 인권 프로그램은 총 349개로, '희귀난치질환자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교육 사업', '아동인권 관련 생활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 인권지킴이', '미군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사업', '빈곤여성 사회권 확보를 위한 인권의식 강화교육', '국제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탈북여성 인권개선을 통한 정착지원 사업',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가사노동자 인권교육과 시민홍보', '발달장애인 당사자 인권의식 함양', '사회적으로 낙인된 질병에 대한 언론보도 실태조사',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고문 피해자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 '공항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인권활동가를 위한 신기술 강좌'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망라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인권위는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장애·아동·여성·이주·난민·정보인권·혐오표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 증진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4) 인권현장 방문 사업

• 20년간 182회 206개의 인권현장 방문

200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은 총 182회 206개의 인권현장을 방문하여 사회 소수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였다. 인권위는 노숙인, 장애인, 미혼모, 학대 피해 아동, 이주민, 노인, 청소년, 난민, 군, 구치소,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권 취약 현장 및 해당 보호시설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당사자는 물론 생활인파와 종사자,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인권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06. 05. 08),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 도용 피해 사전 예방대책 의견표명>(2009. 09. 03),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정책권고>(2009. 10. 26),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2012. 06. 1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동대문 쪽방촌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위원장 (2005. 01. 21)



김천소년교도소 현장을 방문한 인권위 위원장(2011. 01. 25)



국기기관 최초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인권위(2017. 07. 15)

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2012. 08. 03),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2014. 08. 21) 등 정책권고를 내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현장 참여로 인권위의 적극적인 의지 드러내

인권위는 2017년 국기기관 최초로 퀴어 축제에 참석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도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퀴어 축제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주한 대사관 등 총 10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축제로, 2018년에는 국기기관 처음으로 건물 외벽에 무지개 깃발을 부착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축제에서는 인권위 소개 및 진정 접수 방법 안내, 혐오차별 반대 메시지 카드 작성, 혐오차별 예방 마주 캠페인 포토월 촬영 및 SNS 인증, 다양성 옹호 타투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축제 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인권위의 공식적인 참가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였다.

● 제2절 국제 교류 및 협력

1. 개관

1993년 빈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에서는 “유엔 및 유엔 관련 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기구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위법」 제19조에서도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과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

인권위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의 국가기관이라는 형태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을 토대로 하고 그 이행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국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와 협력해야 하며, GANHRI(전 ICC) 연례회의, APF 연례회의, 각종 워크숍에 참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위 활동 경험을 신흥 인권 국가에도 전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국제교류와 협력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준국제기구이다.

인권위는 2002년 APF, 2004년 GANHRI에 가입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기구와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실무그룹 활동에 관해 유엔총회에서 브리핑하는 등 국제적 리더십을 행사하였다. 또한 제23차 APF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를 강화하였다.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는 APF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 GANHRI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국제인권 문제 선도적으로 이끌어

GANHRI에서는 「파리원칙」 부합성 여부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에 승인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전 절차 규칙 또는 정관에 따라 마련된 절차에 준하여 A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는 GANHRI의 결 회원으로 유엔의 인권회의 및 심의과정에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언할 자격을 갖지만, B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는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인권위는 2004년 가입할 당시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재승인 심사 때에도 A등급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승인소위는 2014년 정기 재승인 심사 시 투명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인권위원 선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등급결정을 연기하였다. 이어진 2014년 10월과 2015년 3월의 두 차례 심사에서도 인권위는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등급 결정이 연기되었다. 「인권위법」 개정안에 이러한 권고 내용을 담은 등의 노력 끝에 2016년 재승인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인권위는 그 외에도 유엔 기구 및 다양한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인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아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노인인권 증진사업 이행을 위해 2015년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한 데에 이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및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를 개최, 회원국의 노인인권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를 인권위가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주요 활동

인권위는 설립 이후 GANHRI와 APF 및 유엔의 각종 국제 인권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성숙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1) GANHRI·APF와의 교류·협력

인권위는 출범 이후 GANHRI와 APF를 중심으로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GANHRI 집행이사회 이사국 활동으로 위상 강화

GANHRI는 1992년 3월 3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파리원칙」을 준수·발전·강화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이다. 인권위 출범 당시에는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나, 2016년 3월 연례회의에서 명칭을 GANHRI(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으로 변경하였다.

인권위는 2004년 4월 GANHRI에 가입했고, 그해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주관한 이후 매년 연례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인권위는 GANHRI의 2007~2009년 부의장직을 수임하였고, 2006~2011년에는 승인소위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에는 3년 임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2008~2012년에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 지역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GANHRI 집행이사회 아·태 지역 대표로 선출된 데 이어, 2020년 GANHRI 아·태 지역집행

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어 2023년까지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아·태 지역을 대표하여 카타르·호주·요르단과 함께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가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2016년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020년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재선출되어 노인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 APF,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 내 중심적인 활동 펼쳐

인권위는 2002년 11월 APF에 가입한 이래 아·태 지역에서의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다. AP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역조정기구로서 1996년 제1차 지역 국가인권기구 회의를 계기로 설립되었다. APF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운영지원,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인권현안 및 국제인권 이슈 등을 주제로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 사무총장급 회의를 통해 각 국가인권기구 사무처 간 협력 및 정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회원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 교육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내 인권상황 및 인권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인권위는 2002년 11월 APF에 정회원기구로 가입한 이후 매년 연례회의에 참가하여 아·태 지역 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최되는 훈련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인권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른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제9차 APF 연례회의를 주관하여 한국에서 개최하였으며, 2004년과 2007년에는 의장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APF 이사회에 위원장이 참가하여 APF의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 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며, 회원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 연대를 강화해 왔다.

2015년 8월 연례회의에서는 ‘아셈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 특별 세션 개최를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2019년에는 ‘제24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020년 제25차 APF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APF 부의장 겸 APF 거버넌스



제15차 APF 연례회의에 참석한 인권위(2010. 08. 01)



GANHRI 실무그룹 노인인권 특별 세션(2016. 06. 14)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 내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펼치며, 국제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선도적인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유엔기구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인권위는 GANHRI, APF 외에도 전통적인 활동 범위인 유엔, 인권 관련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의 아셈 회원국 정부 등 다양한 주체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국가보고서 및 독립보고서 통해 유엔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유엔 현장상의 기구인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인권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유엔조약감시기구(UN Human Rights Treaty Bodies)는 분야별 인권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인권위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절차 심의에 참가하여 한국 인권현안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인권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주요한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하여 유엔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또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정부보고서 심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인권조약 가입국은 각 조약기구에 주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조약기구는 이를 심사하여 최종 견해를 통해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9개 유엔 핵심 인권조약 중 7개 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또한 국가보고서와는 별개로 독립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약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담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제7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2016. 12. 14)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장 시마 사마르 인권위 방문 (2005. 07. 18)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 인권위 방문(2009. 11. 24)

인권위는 인권조약 관련 활동 외에도 노인인권 전문가회의, 기업과 인권 포럼, 여성지위위원회 등에도 참석하여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에 열린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고문방지대사 프로젝트에서 APF 대표로 인권위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외국 인권기구와 전략적 교류 협력 진행

인권위는 주요 국가인권기구 교류 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주요 인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인권위 출범 초기에는 호주·뉴질랜드·캐나다·덴마크·영국·스웨덴 등 인권활동이 활발한 외국 국가인권기구를 방문하여 선진화된 제도를 배웠으며, 현재는 인도네시아·몽골·네팔·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인권기구와 교류를 통해 인권위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직접적인 교환 방문 이외에도 GANHRI 연례회의, APF 연례회의, 각종 워크숍 등 국제인권기구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 현황

연도	상대국 방문	인권위 방문
2002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몽골
2003	몽골,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페인, 모로코	-
2004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이집트, 태국, 홍콩	카자흐스탄
2005	아일랜드,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남아공, 덴마크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2006	-	태국, 말리,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2007	-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2008	스웨덴, 덴마크, 코스타리카	아프가니스탄
2009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10	호주	말레이시아, 네팔

연도	상대국 방문	인권위 방문
2011	러시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
2012	네팔	우즈베키스탄, 호주
2013	프랑스	네팔
2014	폴란드, 덴마크, 독일	-
2015	폴란드,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덴마크
2016	스웨덴, 필리핀	-
2017	-	캐나다
2018	호주, 스위스, 카자흐스탄	캐나다, 오스트리아
2019	-	영국, 러시아
2020	미국	-

3) 국제회의 개최

인권위는 2004년 9월 ‘제9차 APF 연례회의 및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APF의 적극적 요청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UNOHCHR)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대회 개최를 통하여 인권위는 국내외적으로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 20년간 인권위가 개최한 주요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다.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2004. 09. 14~17)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대회가 개최된 이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4개 지역을 순환하며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이다.

인권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는 국제인권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60여 명, 61개국 국가인권기구 대표 119명, 국내외 NGO 대표 6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하여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삼아서, 분쟁과 대테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쟁과 대테러, 시민·정치적 권리와 법치, 분쟁 상황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분쟁과 테러리즘 상황에서의 이주 문제, 분쟁 상황에서의 여성의 권리 등을 논의하였다. 이 대회는 ‘분쟁과 대테러’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국가인권기구가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의 인권 NGO 대표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국가인권기구 대표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국가인권기구와 NGO 간의 새로운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한 회의로 평가받았다.

회의 마지막 날 채택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에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및 대테러 조치의 국제적 인권 기준 부합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유엔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9월 13일에는 14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이 모인 제9차 APF 연례회의를, 9월 13일과 14일 오전에는 100여 명의 국내외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사전 NGO 대회(NGO Pre-Meeting)'를 별도로 개최하였다.

•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사회 컨설팅(2011. 04. 19~20)

UNOHCHR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사회 컨설팅(Civil Society Consultation on Strengthening Treaty Body System)'을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브라힘 살라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조약국장, 휴먼라이츠 워치(HRW),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한 NGO 그룹(NGO Group on CRC), 국제장애인연대(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대한변호사협회, 아시아인권센터 등이 참여하여 인권 보호와 보장을 위해 유엔 인권조약기구가 더욱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회의 결과는 '서울 성명서(Seoul Statement)'로 채택되어 유엔에 보고되었다.

•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2011. 10. 11~13)

APF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에는 국가인권기구 대표와 UNOHCHR 대표 등, 4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성명서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면서, 국가인권기구 간에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APF·ICC(현 GANHRI) 및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의 국제인권기구와 협력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 APF 홈페이지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페이지를 따로 두도록 할 것, 정부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것 등을 포함하였다.

•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2012. 06)

2012년 6월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한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셈 인권세미나'는 1997년 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아셈 외교장관회의'에서 아셈 내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식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 제안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세미나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간 가장 큰 규모의 정보인권 관련 회의로 41개국 241명의 시민사회 및 정부 대표가 참가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속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인권 이슈(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①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임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제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②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및 기업들의 의무, ③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정보 격차를 좁히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의무 확인, ④ 공익을 고려한 지적재산권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세미나를 통해 아셈 회원국에 대한 15개의 선언적·실천적 권고를 포함하는 키 메시지(Key Message)를 채택한 후 아셈 정상회의에 반영하는 등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는 정보인권에 관한 아셈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한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2012. 06. 30)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2013. 09. 13)

회원국들의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세부 인권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도출 및 정부 후속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권위는 사전회의 개최 건의를 통해 아셈 참가자와 국내 정보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의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 먼저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3일차 회의에서 '개인정보감독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직접 구성·운영함으로써 정보인권과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2013. 09)

2013년 9월에는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전·현직 ICC 의장, 태국 인권위원장, UNOHCHR 담당국장, APF 실무자 및 국내 인권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파리원칙」 20주년의 의미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능력 구축과 역할 확대,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파리원칙」과 ICC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5~2019)

인권위는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2014년 '제10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증진 협력사업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는 2010년 이후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콘퍼런스를 통해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제1회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5. 10. 26~28)에는 43개국 239명이 참석하여 적절한 삶을 향유할 권리, 연령차별 금지, 접근에 대한 권리, 사회적 배제와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노인인권과 관련된 주요 권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16년에는 콘퍼런스를 대신하여 '아셈 노인인권전문가 포럼'(2016. 06. 15~16)을 개최하였다. 36개국 233명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노인의 주요 권리를 중심으로 빈곤 해소 및 건강권에 대한 국제기구의



노인의 주요 권리에 대해 논의한 '제1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5. 10. 26)



주한 EU 대표부와 공동 개최한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9. 10. 01)

활동, 노인 빈곤 해소와 관련한 유럽과 아시아의 정책 경험, 노인 건강권 증진과 관련한 유럽과 아시아의 정책 경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고, 각 국제기구 및 행위자들의 노력과 공조를 위한 구심점으로 아셈 에이징 센터 설치를 논의하였다.

2017년에는 '제2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7. 09. 18~21), '아셈 글로벌 에이징센터 운영 라운드테이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를 연계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는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2018. 09. 05~07)와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를, 2019년에는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와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하반기 회의'를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특히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는 주한 EU 대표부와 공동 개최하여 기획 단계부터 탄탄하게 설계·운영함으로써 미얀마·중국·몽골·필리핀·파키스탄·캄보디아·말레이시아·독일의 담당부처 장·차관,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아세안 사무차장, 주한 유럽국 대사 등 국제사회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콘퍼런스를 통해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업무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 이슈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2020. 09. 17)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APF 및 유럽연합(EU)과 공동 개최하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유럽집행위원회, 유럽평의회, 덴마크 인권위원회 등 유럽권역의 혐오차별 관련 전문가와 주한대사관, 국내 시민사회 단체 주요 인사 등 80여 명의 전문가(온라인 참가자 1,300여 명)가 참석하여 혐오차별 대응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및 정책 동향, 혐오차별 대응 기제로서의 「평등법」 추진 성과와 도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정책 등에 대해 논의, 혐오차별 관련 인권 문제의 국내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위는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혐오와 차별 철폐,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협력·지지를 내 용으로 하는 「평등법」에 대한 '구두 성명'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평등법」 제정 동력을 지속화하고 국제 연대를 유인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2020. 12. 07)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권위는 2020년 12월 7일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GANHRI, 주(駐) 유엔 아르헨티나 대표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 콘퍼런스는 노인의 생명권, 안전권 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유엔과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인식하에 개최되었다. 이 콘퍼런스에서는 교육·연수·평생교육 및 역량 강화 관련 규범 요소, 사회보장·사회안전 관련 규범 요소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의 안전권 보장 방안, 일할 권리와 노동시장 접근권과 사법접근권을 주제로 노인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연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제협력

인권위는 인권위의 활동과 모범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신흥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도국 국가인권기구 직원초청 연수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초청연수사업인 '인권정책발전과정(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여 외국의 인권정책 수립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지원하며 인권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였다.

(1) 국가인권기구 직원초청 연수

인권위는 GANHRI 및 APF 소속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을 초청하여 주요 인권 이슈와 국가인권기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지역적·국제적 인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나이지리아 3개국에서 참가한 개도국 인권위 직원 초청 연수(2007. 09. 05)



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 등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2010. 10. 01)

• 참가 인권기구의 직원 역량 강화

연수 참가자들은 참가국 국가인권기구의 주제별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인권 문제 유형과 각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진정사건 조사기법, 사례연구, 인권교육 실천 사례와 국제적·지역적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헌법재판소 등 기관 방문을 병행함으로써 한국의 인권보장을 위한 변화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등, 참가 인권기구의 직원 역량을 강화하였다. 인권위는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대한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국제무대에서 선진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7개국의 인권기구 직원 85명을 대상으로 직원초청 연수를 추진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다.

직원초청 연수

연도	참가 대상	참가 인원	주요 연수 내용
2007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나이지리아(3개국)	6명	국가인권기구 역할 및 기능
2008	몽골,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몰디브 / APF(8개국)	19명	
2009	아프가니스탄,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8개국)	8명	
2010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네팔, 요르단(6개국)	6명	
2011	-		
2012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카타르, 멕시코(5개국)	7명	
2013	네팔 (1개국)	2명	
2014	폴란드, 태국 (2개국)	3명	
2015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폴란드(4개국)	5명	
2016	독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5개국)	6명	
2017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인도, 요르단,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9개국)	9명	
2018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몰디브, 몽골(7개국)	7명	
2019	사모아, 오만, 몽골, 호주,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7개국)	7명	

또한, 인권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초청연수사업인 ‘인권정책발전과정(Human Rights Policy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여 선도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ODA 인권정책발전과정

연도	주최/후원	참가 대상	참가 인원
2009	인권위 / KOICA	이라크 인권부 및 인권종사 공직자	16명
2010		라오스, 베트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20명
2011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	16명
2012		네팔, 방글라데시 등 7개국	14명
2013		부탄, 몽골 등 8개국	16명
2014		가봉, 온두라스 등 8개국	15명
2015		-	-
2016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1개국	19명

(2) 직원 국외 연수

인권위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 국제전문성 강화, 교류 협력 증진, 선진적 인권정책과 제도 조사 등을 위해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직원들을 매년 외국 국가인권기구에 파견하고 있다.

‘인권현장훈련’은 해외 인권현장 및 인권기구 방문, 교류를 통해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 이슈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 사례 연구, 검토를 통한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진행되는 ‘국외위탁훈련’은 국내외 인권현안은 물론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과제로 선정하여 훈련 종료 후 인권위 정책·조사 업무 등에 활용함으로써 직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직원 국외 연수 현황

연도	연수 현황
2002	- 호주 캔버라 연방경찰학교 인권침해 조사 교육 - 유엔인권최고대표 주관 인권교육
2003	- APF 사무국 - 필리핀, 피지, 뉴질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2004	- 이탈리아 인권위원회 및 터키 인권보호협회
2005	- APF 사무국 - 아프가니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인권위원회
2006	- 폴란드 인권 옴부즈맨 -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2007	- 벨기에(EU본부), 독일(의회), 영국(의회, 장애위원회) - 독일(구금소), 네덜란드(공향보호소), 영국(IOC 등) - 유럽고문방지위원회 - 프랑스(교육부, 유네스코, 인권위원회)
2008	- 아일랜드(기업의 사회적 책임) - 네덜란드(EIPA) - 몽골, 캄보디아(선거, 민주주의와 인권)

연도	연수 현황
2009	- 미국(이주인과 제3세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 스웨덴(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인권정책 수립 및 개선 사례) - 캐나다(캐나다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방지 홍보 시스템과 기법) - 말레이시아, 태국(이주자 관련 정부와 인권위원회의 정책 대응)
2010	-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아동권리보호·중진제도 및 협력체계 연구) - 벨기에, 덴마크(유럽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아프리카 지역 인권기구의 권리구제 구조에 대한 연구)
2011	- 영국(인권경영 연구) - 프랑스(장애인 교육권 확보 방안 연구) - 스페인(외국인보호시설 운영 현황과 법제도에 관한 연구) - 필리핀(필리핀 출신 이주민 현황 및 인권문제 연구)
2012	- 캐나다(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연구) - 미국(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위반 판단 기준 연구) - 스웨덴(재화용역관련 장애차별사건 조사효율화 방안)
2013	- 태국(국외 인권현장 훈련)
2014	- 호주, 뉴질랜드(난민지원체계연구) - 몽골(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연구)
2015	- 미얀마(인권홍보 국외인권현장 훈련) - 캐나다(사이버불링연구) - 호주(장애인안전연구)
2016	- 스위스(ILO 등 국외 인권현장 훈련) - 프랑스, 덴마크(기업과 인권) - 호주(아동학대예방)
2017	- 프랑스, 독일(기업과 인권 NAP 수립 연구) - 스위스, 세르비아(군인권응부즈맨)
2018	- 캐나다(지방자치단체 협력 방안 국외 인권현장 훈련) - 미국(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
2019	- 하와이(사회적 소수자 혐오 문제 국외 인권현장 훈련) - 뉴질랜드(성소수자 대상 혐오 표현 및 혐오 차별) - 캐나다(노동인권 보호 방안)

5) 인권교육 분야 국제협력

인권위는 국제인권교육 메커니즘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세계 인권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석

인권위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사례를 이해하고, 세계 인권교육의 흐름, 쟁점 및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각국 인권교육 전문가 및 국가인권기구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는 국제기구, 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노조와 각종 연합, 종교단체, 언론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시민으로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발현할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가 현황

연도	기간	개최지
2013	11. 20~25	대만 타이베이
2014	12. 03~08	미국 워싱턴
2015	12. 16~21	네덜란드 미델뷔르흐
2016	12. 11~17	칠레 산티아고
2017	11. 28~12. 04	캐나다
2018	11. 26~30	호주 웨스턴시드니

(2) 국제 인권교육기구 MOU 체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콘퍼런스 공동 개최 등 업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2월 7일 캐나다 최고의 인권교육기관인 에퀴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01

1 ○ 제1차

2 ○ 인권옹호인 행동계획 및 전략 변경

3 ○ 역대 인권위원 임명 및 사무처 간부

4 ○ 현 인권위원 임명, 사무처 간부 및 각종 위원회의 위촉

5 ○ 조직 및 운영 규정

6 ○ 조직 및 운영 규정

7 ○ 예산변천 현황

8 ○ 제12차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9 ○ 제13차 인권위원회 상임회의

2021

부록



20th ANNIVERSAR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연표

1993~2001 설립 이전

- 1993. 06 오스트리아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
 - 1997. 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 발표(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 1998
 - 03.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제시
 - 09. 17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결성
 - 09. 25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 10. 14 인권법 관련 제1차 당정협의 (법무부 '법안'과 국회의 '국가기구안' 간 입장 차이로 결렬)
 - 10. 26 공추위, '공추위법안' 최종 확정
 - 11. 27 법무부 1차 수정안 발표(이사회 제도 폐지, 임시구제 조치권 부여 등 일부분 개선, 특수법인 형태 고수)
 - 12. 05 공추위,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및 대국민 캠페인 전개
 - 1999
 - 03. 30 공추위,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요구 및 국무회의 상정저지 집회,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
 - 03. 31 민주화운동 원로 30여 명, 인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 04. 07 인권활동가 30여 명, 정부 인권법안 철회와 인권법 재논의 촉구, 7일간 단식농성 돌입
 - 04. 16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 상정저지' 결의대회 개최
 - 04. 19 공추위 대표자회의, 공추위 확대·개편 결의
 - 04. 22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여야의원 대부분이 정부안의 문제점 지적, 법사위 제1소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
공추위, 인권법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개최
 - 04. 29 공추위 확대·개편대회 개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 개편(70여 개 민간단체 참여)
 - 06. 16 공대위,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안' 최종 확정
 - 12. 20 국회의 정책위 의장, "인권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인권법 제정 연기 선언
 - 2000
 - 01. 03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인권법'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힘)
 - 07. 19 공대위대표자회의 "법무부의 인권위원회법안 재상정을 반대한다" 성명 발표
 - 08. 21 법무부 공고 제2000-31호, 인권법 입법예고(인권위원회를 비법인 민간기구로 설치하는 내용)
 - 12. 03 공대위, 민주당안에 대한 전면 거부입장 천명
 - 12. 13 여야 국회의원 95인이 서명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출(민주당 이미경·김원길 의원 등 61명, 한나라당 이부영·김원웅 의원 등 31명,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3명)
 - 12. 14 민주화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가보안법을 연내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성명 발표
 - 12. 18 인권 2대 현안 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
2000. 12
인권활동가연합 단식농성
- 12. 28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제2차 단식농성(명동성당)

- 12. 31 공대위,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개혁을 위한 송구영신 문화제" 및 "개혁 입법들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주최
 - 2001
 - 01. 08 공대위, 민주당 7인 소위원회와 연석회의
-
2001. 02
공대위 시위
- 01. 19 민주당 7인 소위원회 최종회의,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하는 '인권법 시안' 확정
 - 02. 01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잠정 결정
 - 02. 07 공대위 「3대(인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식」 개최
 - 02. 09 민주당, 당정협의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 확정(민주당 소위와 법무부 차관 공동기자브리핑)
공대위, 민주당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인권활동가 25명 민주당 농성
 - 02. 14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
 - 02. 20 공대위, 탑골공원에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철회촉구와 개혁실종 규탄대회" 개최
 - 02. 21 '개혁쟁취를 위한 사회각계 인사 10,000인 시국선언'
 - 02. 23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국회제출 국회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상정
 - 02. 26 공대위, 민주당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민주당사 앞 1인 피켓 시위
 - 03. 05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04. 30 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 심의 후 민주당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여 표결처리 발표
공대위, "개혁실종, 졸속심의 기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공대위 성명" 발표
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 민주당수정안 표결(찬성4, 반대3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당 수정안 표결(찬성8 반대7 통과)
국회 본회의(제221회 임시국회), 법사위원회안(민주당 수정안) 찬성 137, 반대 133명,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의결
 - 05. 24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법률 제6481호)
 - 08. 01 청와대, 인권위 초대 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내정 발표
 - 08. 20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 10. 0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위원장_김창국 | 상임위원_박경서, 유현, 유시춘 | 비상임위원_이진강, 정강자, 곽노현, 김덕현, 김오섭, 신동운, 조미경
 - 10. 11~11. 22 제1차 ~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 인권위 사무총장 제청안에 대한 심의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수정안) 의결 등
-
2001. 10
인권위법 시행 및 직원채용 토론회
- 11. 2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 해단식 및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발대식
 - 11.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01. 11. 26~ 설립 이후

2001

- 11. 2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상담 및 접수 개시(첫날 진정접수 122건)
- 11. 28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인권위 대책(안) 논의
- 11. 30 제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개최. 울산구치소내 피의자 의문사 사건 조사개시 등 5건 처리
- 12. 03 구금시설 첫 면전진정 실시(청송보호감호소, 대구교도소) 및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조사
- 12. 04 제1차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개최.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사건과 양심적 집총거부자 진정 사건 조사 결정 등 2건 처리
- 12. 07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주제로 청문회 개최
- 12. 11 제1차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정보공개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2002

- 01. 30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5국 18과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정원 215명(자체정원 180명, 파견공무원 20명, 전문위원 15명) 확정
2002년도 예산 192억 원 확정
- 02. 05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02. 14 제11차 전원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의결
- 02. 19 최영애 사무총장 임명
- 02. 20 국가정보원이 입법 추진중인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제출(국회의장,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법사위원장)
- 02. 26 인권위 공무원 특채 원서접수 마감(2. 15~26), 71명 모집에 총 2,469명 지원
- 04. 01 인권위 청사(금세기빌딩) 입주 및 사무처 발족
- 04. 04 제3차 공무원 전입: 지원자 115명, 채용인원 27명
- 04. 30 정보화 기반시스템 및 전산실 구축
- 05. 10 ALRC(Asian Legal Resource Center) 헨리안 중국 대법원 부장판사 등 8명, 인권위 권한 및 기능 파악차 내방
- 05. 11 홍콩 인권법센터 리알 수가 소장 등 아시아 NGO 홍보단 5명,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 독려차 내방
- 05. 24 일본 인권포럼 21(NGO) 마에카와 미노루 총괄연구원 등 5명, 일본 인권옹호법과 한국 「인권위법」 비교·분석차 내방
- 05. 29 월드컵 기간 중 ‘인권현장 확인반’ 활동 전개
- 06. 03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후지와라 세이고 등 12명, 일본 인권옹호법 제정 관련, 한국 「인권위법」 제정 경과 및 주요업무 파악차 내방



2002. 06
월드컵 기념 축구사랑 인권사랑 현수막

- 06. 12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보호협력협정’ 체결
- 06. 21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인권국장 등 2명, 한·뉴 국제인권 분야 연대 강화 모색차 내방
- 07. 23 월드컵 기간 중 집회·시위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경찰청)에 대한 유감 표명
- 08. 07 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 나카오 아키라 검사 등 3명, 일본 인권옹호법 제정 관련, 한국 「인권위법」 및 활동상황 파악차 내방
- 08. 09 유엔인권위원회 이완희 UNDP 몽골사무소 국제인권전문위원 등 2명, 한국 인권위 활동상황 파악차 내방
- 08. 16 주한 미2사단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0. 04 일본 중의원 헌법중사회 나카야마 다로 회장 등 11명, 인권위 활동 및 한국 인권상황 파악차 내방
- 10. 21 인권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도입
- 10. 25 주한 스웨덴대사관 오펜브란트(Fredrika Ornbrant) 부대사, 인권위 현황 파악차 내방
- 10. 28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체렌더르프(Tserendorj) 위원장 등 5명, 인권위 현황 및 한국 인권상황 파악차 내방

- 10. 31 청송 제2교도소에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 인권위 로고 제작 완료
- 11. 09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 APF에 정식회원으로 가입(위원장, 김덕현 위원, 사무총장, 최영란)
- 11. 12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영국대표단 내방(오드리 글로버 유엔인권위원회 영국대표단 단장 등 4명),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 11. 18 위원장 APF 연례회의 참석에 대한 청와대 경호조치 관련, “행정부 소속이 아닌 국가독립기구가 국외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와대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식 브리핑(최영애 사무총장)
- 11. 20 위원회 설립 1주년 기념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개최
- 12. 02 베트남국립인권연구소(VRCHR) 소장 내방,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 12. 08 일본 인권의날 기념행사 참가, 「인권위법」 설명 및 일본 인권옹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강연(박경서 위원)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개최
- 12. 30 주요기업의 채용상 차별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2003

- 01. 07 2002년 주요기업 입사지원서상 차별관행 조사결과 발표
- 01. 21 사회보호법 TF팀 출범: 보호감호제도의 인권침해 여부 집중 검토 위해 유한 상임위원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7명으로 구성
- 01. 22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진정서 양식 홈페이지 게시
- 01. 27 태국 상원 소속 ‘사법 및 인권위원회’ 감누안 찰로파툼(Kamnuan Chalopathump) 위원장과 상원의원 9명 및 전문가·자문위원 2명 등 총 16명 인권위 내방
- 01. 28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발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 시안 마련코자 김오섭 인권위원을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 02. 03 국가보안법 TF팀 구성(팀장 박경서 상임위원)
- 02. 04 영국 외무부 사형전문위원 겸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 대표 피터 호지킨슨, 주한 영국대사 찰스 험프리 등 인권위 내방
- 02. 06 인권영화 <대륙횡단>(감독 여균동) 등 시사회 개최(영화진흥위원회)
인권자료실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 02. 11 국제이주기구(IOM) 아·태지역 자문관 요리오 타니무라(Yorio Tanimura), 서울사무소장 고현웅 등 인권위 내방
- 2003년 인권위 업무설명회 개최: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부산인권센터 등 42개 단체 참석
- 02. 12 미국 노총 소속 아시아·태평양 노동동맹(APALA) 한국연수단 3명 인권위 내방
- 02. 20 기간제 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개최
- 02. 26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제안창구’ 개설 공고: 3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게시
- 03. 04 일본 아동권리조약준협연구소장 일행 인권위 내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및 정보교환
- 03. 07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창간호 발간: 일반 국민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위의 결정내용 및 구제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 향상 및 연구자료 활용에 기여
- 03. 11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시사회: 얼굴값(박광수 감독) |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박찬욱 감독) | 그 남자의 사정(정재은 감독) | 신비한 영어나라(박진표 감독) | 대륙횡단(여균동 감독) | 그녀의 무게(임순례 감독)
- 03. 12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국민은행, 한국전력 등 38개 기업, 입사지원서상 차별항목 자진삭제 결정
- 03. 16 호주제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민법 제778조 및 제781조 제1항
- 03. 26 제38차 (임시)전원위원회: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관련, 인권위의 반전·평화·인권에 대한 의견표명
- 04. 01 인권총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전자결재 시스템 본격 실시
- 04. 07 《2002년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인권위 설립과정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내용과 평가 및 향후 과제, 개선방안 포함
- 04. 09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청문회 개최
- 04. 25 <여섯 개의 시선>,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
- 04. 28 일본 부락해방연구소 ‘한국인권여행’ 내방: 일본의 부락민 등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문제 의견교환(일본부락해방·인권연구소장, 부락해방동맹중앙본부 중앙서기차장, 김동훈 교수 등)
- 04. 28 국제엠네스티 국제집행위원 마거릿 베드굿(Margaret Bedgood) 교수(뉴질랜드 와이카토대학교 법학과)와 고은태 한국지부장 내방
- 05. 13 부산지역 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 13~14)

- 05. 19 부산지역 주재기자 간담회(부산KBS 등 4개사), 부산지역 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29개 단체, 41명), 부산지역 관계기관장 간담회
- 05. 20 홍콩 소재 국제NGO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배질 퍼넨도(Basil Fernando) 등 2명 위원장 면담
아시아재단의 아디스 베티스(Ardith Betts) 장학프로그램 국장 등 2명 위원장 면담
광주지역 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 20~21)
광주지역 주재기자 간담회(광주MBC 등 16개사),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25개 단체 32명), 광주지역 관계기관장 간담회
- 05. 22 전주지역 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 22~23)
전주지역 주재기자 간담회(전북일보 등 10개사), 전주지역 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26개 단체 41명), 전주지역 관계기관장 간담회
- 05. 27 대전지역 순회 인권상담, 홍보, 진정접수 및 상담(5. 27~28)
대전지역 주재기자 간담회(대전일보 등 7개사), 대전지역 인권시민단체장 및 간사 간담회(19개 단체 23명), 충청지역 관계기관장 간담회
- 05. 31 인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06. 02 2003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공고(2003-25호)
- 06. 11 미안마 민주활동가 부찌 등 5명 위원장 예방: 미안마 사태 현황 및 민주화 노력에 관한 논의
- 06. 16 외국어 진정서 양식 게시(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 06. 19 제1차 인권백서 발간회의
- 06. 24 화상 및 인터넷 상담 개통(시범실시): 평일(13:00~16:00), 토(09:00~11:00)
- 06. 26 62개 대기업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분석 및 입사지원서 자진시정 내용 기자브리핑
- 07. 08 계구사용 관련 공청회 개최
계구 시연 및 계구 관련 각계의견 청취, 토론
- 07. 19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장 및 각국 참가자 등 40여 명, 인권위 활동 및 한국 인권교육 상황 파악차 내방



2003. 07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인권위 내방

- 07. 25 국제엠네스티 조너선 오도노후 등 13명, ICC 로마규정 이행 관련 한국 및 인권위 활동 파악차 내방
- 08. 01 월간 《인권》 창간
- 08. 05 인권 만화집 《심시일회》 발간
- 08. 22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의 시민권위원 이건용 등 2명 내방, 위원장 면담: 미국 뉴저지주 인권보호제도 소개 및 인권 현안 논의
- 08. 27 일본 휴라이츠 오사카의 마에가와 미노루 기획실장 등 15명, 한국 인권현황 및 인권위 주요 활동 파악차 내방
- 09. 01 제10차 「국가보안법」 청문회 개최
- 09. 12 <여섯 개의 시선>, 제13회 후쿠오카국제영화제 초청: 2003년 한 해 동안 제1회 블라디보스토크국제영화제(9. 12), 제22회 뱅쿠버영화제(9. 25), 제47회 런던국제영화제(10. 22), 제4회 장애인영화제(9. 24), 제6회 고당영화제(9. 24) 등 초청
- 09. 25 인권위 홈페이지 진정상담실 서비스 개시
- 10. 02 <여섯 개의 시선>,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상영,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NETPAC) 특별언급상(Special Mention) 수상
- 10. 6~9 주중 한국영사관 직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중국 현지 실지조사(인권침해조사국 정혜웅, 김원숙 조사관)
- 10. 14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0. 17 '북한의 식량난과 재외탈북자의 인권' 간담회 개최
- 10. 21 현장방문: 나사로의 집(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 10. 22 띠마웅탄(Tin-Maung Than) 미안마 민주화운동가 내방, 미안마 민주화 지지하는 국제연대 참여 호소
- 10. 23 현장방문: 쪽방촌(서울 중구 후암동 소재)
<인권상담가이드북> 발간(인권상담센터)

- 10. 28 <여섯 개의 시선> 기자사회(서울극장)
- 10. 29 현장방문: '들꽃피는 마을' 시설 관계자 격려 및 위문금 전달(경기도 안산시 와동 소재)
- 10. 30 입사지원서 차별시정 토론회 개최
- 11. 05 위원장·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 주재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 국정회의의 참석(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참석)
- 11. 08 영문 연간보고서 발간
- 11. 14 '외국인노동자 인권의 보호 증진' 주제로 외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페렌레인 우르진룬데브(Perentein Urjinlhudev) 주한 몽골 대사, 알라딘 곤잘레스 빌라코르테(Aladin Gonzales Villacorte) 주한 필리핀 대사 등 8명의 주한 외교사절 참석
<여섯 개의 시선>, 전국 53개 극장에서 동시개봉



2003. 11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시사회

- 11. 21 현장방문: '샘터마을' 시설 운영현황 청취 및 시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사회보호법 TF팀 회의
- 12. 08 인디애나 로스쿨 인권센터 조지 에드워즈 소장(인디애나대학교 법대 교수) 내방(~12. 9), 한국 인권현황, 국제인권법 관련 토론 및 의견 교환
인권사진집 <눈·밖에·나다> 발간
- 12. 09 아시아민중진보센터 대표단 내방(제네√신부 아시아민중진보센터 전 집행위원장, 샌디코니 아시아민중진보센터 사무국장)
외국인 노동자 차별 예방 및 국민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TV 광고를 제작 방영(12. 9~31, MBC·KBS·SBS)
- 12. 10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노무현 대통령 내외 참석, 인권단체 인사 표창장 수여, <여섯 개의 시선> 감독 감사패 전달, 윤도현밴드 인권홍보대사 위촉
인권사진전 <눈·밖에·나다> 개최(12. 10~16, 덕원갤러리 5층)
- 12. 11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개최
<여섯 개의 시선>, 천주교 주교회의의 주관 제13회 한국가톨릭매스컴상 영화부문 수상
- 12. 18 현장방문: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 '주보라의 집'(경기도 파주 소재)
인권동화 활용 공모작 시상 및 워크숍 개최
- 12. 19 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공청회 개최
- 12. 23 학교인권교육과정안 개발 공청회 개최
- 12. 26 인권위 인지도 여론조사 및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12. 12~26 실시)
- 12. 29 제2회 인권위 인권논문상 시상식 개최(가작 2편)



2003. 12
제2회 인권논문 시상식

2004

- 01. 02 주한 독일대사 미하엘 가이어(Michael Geier) 등 3인 위원장 내방, 한국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향후 독일 인권기구와 협력방안 논의
- 01. 09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회의의 기본계획 보고회의의 개최
- 01. 13 동티모르 외무장관 호세 라모스 오르타 박사(노벨평화상 수상자) 내방, 위원장과 한·동티모르 인권 교류협력 증진 및 국내외 인권상황 관련 의견교환

- 01. 15 「사회보호법」 폐지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
- 01. 15 소년소년가장 지원단체 '함께 사는 사람들' 방문(위원장 등)
- 01. 16 외국인노동자 지원 및 보호시설 '인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방문(김창국 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 등)
- 인도 뭌바이 개최 2004 세계사회포럼(WSF) 참가
- 01. 23 인권영화 <여성 개의 시선>, 제27회 에테보리영화제(1. 23~2. 2) 초청
- 03. 02 '어린이 인권익식 함양 프로그램' 개발 위해 전국 5개 초등학교, 2년간 인권교육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 2004. 03
인권교육 연구학교 간담회
- 03. 04 사무총장 및 인권정책국장, 각 부처 차관회의 참석: 「인권위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논의(중앙청사 국무조정실)
- 03. 07 KBS 1라디오 <생방송 일요매거진>에 매주 일요일 '주간인권보고서' 기획·홍보 시작
- 03. 08 MBC TV <아주 특별한 아침> '여성주간' 특집기획(3. 8~12, 총 5회)
- 03. 11 인권동화 <장한친구 희완이>, 인권교육 입문서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 발간·배포
- 03. 17 이라크 인권대표 레파트 살만(Reffat S. Salman, 바그다드대 교수) 등 3명 내방, 위원장 접견
- 03. 22 <중앙일보>와 '빈곤층 아동인권' 공동기획(3. 22~31, 총 5회 보도)
- 03. 2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기획단 발족식 개최
- 03. 30 <주간동아> 격주 연속기획 '차별을 넘어' 보도 시작
- 04. 03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김창국 위원장,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 조미경·신동운 위원, 사무총장 | 4. 3~2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및 제9차 APF 연례회의 서울 개최 확정
- 04. 28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개최
- 김창국 위원장, EBS <일요특강>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한국사회에서의 차별' 강의 녹화
- 05. 03 EBS <미래의 조건> '어린이날 특집' 방영(2004 아동인권보고서)
- 05. 11 군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05. 18 광주 국립 5·18묘지에서 거행된 제2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참석(위원장)
- 05. 19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9. 14~17) 의제,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인권보호'로 확정
- 05. 20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공청회 개최
- 06. 09 2004년 5월 28일자로 1만 번째 진정을 접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 06. 1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홈페이지 오픈(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06. 17 독일 솔츠 변호사(정정희·정준·조건영 교수 동반), 박경서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과 송두울 교수 사건 관련 논의 및 진정접수차 내방
- 06. 25 진정 1만 건 돌파 관련, KBS 라디오 <세상의 아침> 인터뷰(인권상담센터소장)
- 07. 23 최영애 신임 상임위원 임명(국회 선출)
- 08. 02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한국사회의 차별' 연속기획 방영: 성, 사회적 신분, 외모, 장애, 혼인 여부(8. 2~5)
- 08. 03 위원장, 경찰청 대강당에서 '자기성찰로 만나는 인권' 주제로 특강(약 400여 명 참석)
- 09. 12 위원장, 모르텐 키에룸(Morten Kjaerum)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 접견, 국가보안법 폐지 및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관련 논의
- 09. 13 인권위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제9차 연례회의 개최: APF 의장으로 한국 인권위 위원장(김창국) 만장일치로 선출
- 09. 14 루이즈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최고대표, 오레스트 노보사드(Orest Nowosad), 드그리스 블라토(Degryse-Bleateau), 플린(Plyn), 완헤아 리(Wan-hea Lee) 등 관계자 면담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오찬사(위원장, 인권위원)
- 노무현 대통령,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 모르텐 키에룸 ICC의장 면담(위원장)
-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 인권보호' 주제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최(9. 14~17, 롯데호텔)



2004. 03
인권교육 연구학교 간담회

- 09. 15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개막식 개최: 김창국 위원장 개회사, 노무현 대통령 축하,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모르텐 키에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낭독
- 카자흐스탄의 압딜딘(Abdildin)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볼랏 바이카다모프(Bolat Baikadamov) 음부즈맨 대표, 아르기노프 아르볼(Argynov Arbol) 음부즈맨 수석전문가(Chief Expert) 위원장 예방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위한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만찬 참석, 북한·여성 인권 등 인권 전반 논의(박경서 상임위원, 프라자호텔)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분과별 회의 개최
- 09. 16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분과별 토론결과 보고 및 전체회의
- 09. 17 비뫼 문따폰(Vitit Muntarbhor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내방, 북한인권 관련 면담(김창국 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
-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전체회의 개최, 서울선언문 채택
- 11. 10 구금시설 방문조사 관련 법무부에 협조공문 발송: 휴대전화 및 사진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재발 방지 요청
- 11. 12 국제이주기구(IOM) 은디오로 온디아에(Ndioro Ndiaye) 부사무총장, 브루스 리드(Bruce Reed) 마닐라 지역사무소장, 고희웅 서울사무소장 면담(위원장)
- 11. 16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 방한한 라프트(RAFTO) 인권재단의 안 램스타(Jan Ramstad) 인권본부장 등 2명 면담: 라프트 인권상 소개, 한국 인권 및 탈북자 등 논의(김창국 위원장, 최영애 상임위원)
- 11. 22 일본 부락해방동맹 사이타마연합회 나가시마 다이지로 부위원장 외 11명 면담(김창국 위원장, 박경서·최영애 상임위원)
- 11. 30 '정신과 시설 인권현황 공청회' 개최
- 12. 03 <인권백서> 발간
- 12. 22 김창국 초대 위원장 및 박경서 상임위원 이임식
- 2004. 12
김창국 초대 위원장, 박경서 상임위원 이임식
- 12. 23 신임 위원장 최영도, 상임위원 김호준·정강자, 위원 이해학·나천수·정인섭·최금숙 임명
- 12. 24 최영도 위원장 취임식
- 12. 29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05
- 01. 07 박노현 신임 사무총장 임명
- 01. 18 신원조사제도 관련 청문회 개최
- 03. 03 전직 북파공작원(HID) 관련 피해자들 면담(위원장)
- 03. 04 위원장, 경찰청 초청으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인권특강(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
- 03. 05 사무총장, '아랍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회' 아·태지역 대표발제
- 03. 23 최영도 위원장 이임식
- 04. 04 조영항 신임 위원장 취임 및 직원 상견례,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면담
- 05. 31 지역사무소 개설 관련 직제령 개정
- 06. 29 「인권위법」 정부안 수정, 국회 통과
- 유엔인권최고대표 요청으로 네팔 인권상황 유엔진상조사단 활동(6. 29~7. 7, 사무총장)
- 위원장, 소속도 현지 취재기자들과 기자간담회(MBC 등 5개 언론사 참석)
- 06. 30 KBS <시사투나잇> '2005 인권순회상담' 프로그램 방영
- 07. 01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개최
- 07. 02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인권위 공동기획물 '위풍당당 여자씨' 1회 방송(2회 9일, 3회 17일, 4회 23일)
- 07. 04 <한겨레21> '한센인 인권' 기획보도
- 07. 14 난민인권 관련 청문회 개최

- 07. 15 현장방문: 탈북민 시설 '하나원'(경기도 안성 소재, 위원장)
- 07. 18 광주MBC <금요기획> '2005 인권순회상담' 특집 다큐 방영
<서울신문>, 인권위 공동기획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 1회차 보도(10주간 연속보도)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 위원장 시마 사마르(Sima Samar) 접견 및 만찬
- 08. 01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참석(8. 1~12, 뉴욕)
- 08. 18 인권NAP 권고안 특별위원회 개최
- 08. 24 제10차 APF 연례회의 참가(8. 24~26, 몽골 울란바토르, 위원장 외 4인 참가)
- 08. 30 발전전략기획안 작성 위한 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계획 수립
- 09. 02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가회의' 만찬행사 축하 및 주재(위원장)
- 09. 08 시각장애인 보조견 이용 활성화 관련 해외 초청인사 마이클 킹섬 외 2인 위원장 접견
- 09. 15 사이버 인권배움터 웹사이트 오픈
- 10. 11 부산지역사무소 개소식(국민연금 부산회관 3층 컨벤션홀)
- 10. 12 광주지역사무소 개소식(광주YWCA 1층 대강당)



2005. 10
광주인권사무소 개소식

- 10. 19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개최
- 11. 24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 11. 25 인권자료실 외부대출서비스(개인, 단체 대상) 개시
- 11. 29 여의도 농민시위 사망사건 조사 착수
- 12. 01 여의도 농민시위 사망사건 현장조사

2006

- 01. 02 인권만화 <사이시웃> 발행(창비 펴)
- 02. 07 태국 인권위원회 위원(수틴 노파켓 Suthin Nophaket 박사) 내방
- 02. 22 신임 주한 호주대사 위원장 예방
- 02. 28 인권NAP 권고안 책자 발간, 정부·국회·인권단체 송부
- 03. 03 대통령 업무보고
- 03. 06 후쿠오카현 인권연구소, 부산지역사무소 방문
- 03. 13 국가인권위원회 비전 선포식(배움터2)
- 03. 17 인권사진전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 개최(3. 17~28, 조흥갤러리)
- 04. 07 인권자킴이 활동(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 집회현장 모니터링)
- 04. 09 제17차 ICC회의 및 APF회의 참가(4. 9~15, 위원장·사무총장 등)
- 04. 13 스리랑카 재난관리 인권부 장관 내방
- 04. 26 전 말리 대통령 내방
- 05. 05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홈CGV(케이블 TV)에서 방영
- 06. 09 '국가비상사태하의 인권보호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주제로 한 국제인권 심포지엄 참석(조영황 위원장, 정강자 상임위원 등)
- 06. 13 스리랑카 전 인권위원(셀바 쿠바란), 네팔 전 인권위원 위원장 내방
- 06. 15 인권순회상담버스 출고 및 운영계획 수립 추진
- 07. 18 인권위-국가청소년위원회 간 청소년인권증진 MOU 체결

- 07. 28 제11차 APF 연례회의 참가(7. 31~8. 3, 피지 수바, 위원장·사무총장 외 5인)
- 08. 11 대통령 특별보고(위원장, 상임위원, 인권위원)
- 08. 16 제1회 동북아 인권옹호자포럼 참가(8. 16~20, 몽골)
- 09. 21 국회의장 초청 오찬간담회(위원장, 상임위원, 인권위원, 사무총장)
- 10. 02 조영황 위원장 사임
- 10. 13 인권자료목록 발간
- 10. 14 대만 대표부 위원장 예방: 대만 신임대표 인사 및 화교 학력인정 권고 관련 감사
- 10. 24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10. 24~27, 볼리비아, 신혜수 인권위원 등)
국제이주기구(IOM) 전문가 3인 초청, 이주와 인권 관련 국제포럼 및 국제워크숍 개최(10. 24~27)
- 10. 26 주요 송출국 노무참사관 오찬간담회(KOTRA, 최영애 위원장 직무대리·스리랑카 노무관·필리핀 노무관 등 10명)
- 10. 30 안경환 신임 위원장 취임식
- 11. 01 유럽의회 의원 인권위 내방
- 11. 09 위원회-전남대 MOU 체결
- 11. 14 고문방지협약 관련 수용시설 모니터링 역량강화 훈련 워크숍 개최(11. 14~17, APT·APF·국제NGO 관계자 25명)
- 11. 17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특별시사회(씨네큐브)
- 11. 24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식(백범기념관, 김대중 전 대통령, 임채정 국회의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340여 명 참석)



2006. 11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식 김대중 전 대통령 축하

설립 5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청사 1층, 이우송 신부 기증)

- 12. 01 유엔 글로벌컴팩트 가입기업 간담회(한전, 우리은행 등 9개 기업)
- 12. 07 이주인권 특별보고관 내방, 면담 및 현황 설명
- 12. 08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등 250여 명 참석)
-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 입장표명, 기자회견(위원장, 최영애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정인섭·신혜수 북한인권특위 위원 등)

2007

- 01. 06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화천애니메이션 영상제 초청(1. 6~28)
- 01. 15 광노현 사무총장 사임
- 01. 19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제101회 독립영화발표회 초청 상영
- 01. 24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보스턴 미술박물관 한국영화제 초청(1. 24~28)
- 01. 29 김철준 사무총장 취임
- 02. 02 인권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4회 물레델발레 아시아영화제 초청(2. 2~4, 바르셀로나)
- 02. 08 일본 NGO 휴먼라이츠나우(Human Rights Now), 위원장 예방(아베 교수, 이토 가즈코·스즈키 아츠시 등 변호사 4명)
- 02. 2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서울과학전시관)
북한인권 관련 인권위 개성공단 방문
- 03. 01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제17회 카이로국제어린이영화제 초청(3. 1~8, 이집트)
- 03. 06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인권위원 워크숍
- 03. 08 산타클라라 법과대학 마크 에이 플레이어 교수, 필립 지멘스 교수 등 2명 내방
- 03. 15 아시아 인권운동가 위원장 예방(리 탄동 등 베트남 인권운동가 7인)
- 03. 16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제10회 스키페영화제 초청(3. 16~25, 마케도니아)

- 03. 28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제9회 도빌아시아영화제 초청(3. 28~4. 1, 프랑스)
- 04. 27 아프가니스탄 인권위원회 직원, 인권위 방문연수(무사 솔타니)
인권위-영남대학교,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05. 04 볼레라니 나쿠가 남아공 부통령 부군, 위원장 예방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문화관광부 '가정의 달' 영화제 상영
- 05. 07 중국 NI 설립준비연수단 방문 연수(중국정치법률대 쉬시엔밍 학장 외 11명)
- 07. 01 대구지역사무소 업무 시작
- 07. 22 사이버인권배움터, 중앙인사위원회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 08. 01 일본 인권단체 휴라이츠 오사카, 인권위 내방
- 08. 21 대통령 특별보고
- 08. 31 대구지역사무소 개소식(위원장, 상임위원 3, 사무총장, 지역 단체 및 기관 관계자 250여 명)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이주노동자영화제 개막전 및 전국투어 상영(8. 31~9. 1)
- 09. 03 개도국 NI 초청연수 실시(9. 3~7, 나이지리아·아프가니스탄·통기모르 인권위원 등 총 6명)



2007. 09
개도국 인권위 직원 초청연수

- 09. 15 사이버 인권배움터 사이트(edu.humanrights.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사이트 30 선정
- 10. 09 <별별이야기2-여섯 빛깔 무지개>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초청상영
- 10. 10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UN 담당국장, 위원장 면담(마틴 맥퍼슨 국장)
- 10. 31 인하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11. 01 한양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11. 02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11. 21 이화여자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11. 22 고려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11. 28 아시아 NI 인권현안 공동사업 중간발표(제목: 고통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 및 베트남의 이주절차 및 국제결혼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 11. 30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 제10회 토론토 밀아시아 국제영화제 초청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제20회 일본 스카가와 국제단편영화제 초청
- 12. 12 인권교육 어울마당 개최(12. 12~14, 한국표준협회인재개발원): 전국시·도교육연수원 인권교육 간담회(12. 12),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 교 종합보고회(12. 12~13), 수도권 인권교육 실천대회(12. 13), 제1차 인권교육포럼(12. 14)
- 12. 21 전북대학교와 인권교육 교류협정(MOU) 체결
- 12. 24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 기념행사 '사형수에게 희망을' 이벤트 개최

2008

- 01. 31 김호준 상임위원 임기만료
- 02. 01 문경란 상임위원 임명
- 03. 14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
- 0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05. 25 세계인의 날 참가 및 인권위-경기도-안산시 MOU 체결
- 06. 19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 및 유엔 난민의 날 기념 주먹밥 콘서트
- 07. 05 위원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면담

- 07. 7~14 북한인권 관련 해외 실태조사(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 09. 01. 5 정신장애인과 함께하는 자전거 여행
- 09. 29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인권자료실 열람 환경개선
- 10. 31 인권테마역사 개관 및 광주광역시 MOU체결
- 11. 17 위원장 대구지역 기업특강 및 언론사 기획대담 실시(대구지역사무소, 대구은행 임직원 90명 특강, TBC '리얼 인터뷰 通' 대담)
- 11. 18 경상대학교 MOU 체결(경상대학교)
- 12. 01 인권자료실 자료회원제도 실시 시작
- 12. 07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4, 전국 106개 도서관)
- 12. 10 세계인권선언 제60주년 기념식 행사(W컨벤션센터)
- 12. 24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국민 보고회

2009

- 02. 19 영국대사관 공동 '영국 인권기관 연수' 실시
- 02. 24 제1차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개최
- 03. 23~27 제22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연례회의 참가
- 03. 26~30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 참가
- 03. 30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 04. 02 인권교육센터 현판식(충주 건설경영연수원)
- 04. 06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 5본부 22팀 4소속기관 208명 →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64명 | 인권위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지역사무소 → 인권사무소)
- 04. 06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인권위 직제개정 관련 대국민 호소문 채택 및 기자회견



2009. 04
직제 개정령 발효에 즈음해 국민들께 드리는 글 기자회견

- 04. 1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서울, 광주, 부산, 대구)
- 04. 11~24 2009년 1차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운영(공무원, 교사, 시민 대상)
- 04. 13~15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실천방안 공모전
- 04. 22 광주사무소 인권테마역사 첫 방문 프로그램 시행
- 04. 30 개성공단 억류자 관련 위원장 논평
- 05. 02 <날아라, 팽귄>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 05. 06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GRI 공동개최)
- 06. 03 집회시위의 자유 현 상황에 대한 위원장 성명 발표
- 06. 4~27 이라크 공무원단 대상 인권정책개발연수과정 진행(ODA 협력사업)
- 06. 04 <시선1318> 특별시사회
- 06. 13 제1기 인권친화적 교과서 모니터단 발대식(학생 50명, 교사 34명)
- 06. 22 전산정보 광주통합전산센터 이전
- 06. 26 MOU 체결 대학 실무협의회 개최
- 6.29~7.3 미국 로스쿨 학생 대상 인권연수과정(산타클라라 인권연수) 진행
- 06. 29 부산 MBC 'TV 시민세상'에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 방송
- 07. 08 안경환 위원장 이임식
- 07. 17 현병철 제5대 위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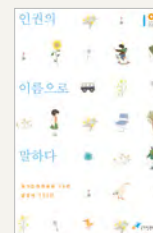
- 07. 20 현병철 위원장 취임식
- 07. 22 <시선1318> 국회 상영(국회 아동인권 포럼(대표 최영희, 이주영) 공동개최)
- 08. 3~6 제14차 APF 연례회의 참가
- 08. 12 현장방문: 미혼모 시설 '애란원'(문경란 위원 등)
- 09. 10 군대인권교육협의회 구성
- 09. 24 <날아라, 펭귄> 극장 개봉
- 10. 05 김옥신 사무총장 취임
- 10. 26~30 아·태지역 8개국(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아프가니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태국) 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 10. 26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
- 11. 03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15, 부평 기적의도서관, 통진도서관)
- 11. 5~18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회(서울,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 11. 10~14 제6차 아세안지역 국가인권기구 연례회의 참가
- 11. 16~18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원회 참가
- 11. 24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 내방: 인권위 독립성 문제 등 논의
- 11. 24 인권친화적 10대 언론보도 발표 및 시상식 개최
- 12. 1~31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시민홍보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이제는 인권선진국입니다"
- 12. 03 대통령 특별보고
- 12. 06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 개최(~12. 13, 전국 55개 도서관)
- 12. 10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12. 18 인권위-부산교통공사 MOU 체결식(부산교통공사)
- 12. 18 광주인권사무소 인권테마열차 발차식
- 12. 28 현장방문: 아동복지시설 '경생원'(위원장 등)
- 12. 31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간담회
- 2010**
- 03. 10 인권위(장애차별조사과)-한국정보화진흥원 간 MOU 체결



2010. 03
인권위-한국정보화진흥원 MOU 체결식

- 04. 23 부산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개관(부산인권사무소)
- 05. 10 필레이 유엔인권대표 내방
- 06. 22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12, 전국 7개 도서관)
- 07. 04 2010년도 ODA 초청연수 시행(~7. 24, 4개국 20명)
- 07. 09 롯데디자인츠 구단과 '스포츠와 인권' 주제 캠페인 실시(부산인권사무소)
- 07. 21 손심길 사무총장 임명
- 07. 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부산인권사무소)
- 10. 07 인권영화 <시선 넘어> 부산영화제 참가
- 10. 11 장향숙 상임위원 임명
- 11. 02 전라남도와 '인권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광주인권사무소)
- 11. 15 김영혜 상임위원 임명
- 12. 06 세계인권선언 제62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 개최(~12. 12, 전국 54개 도서관)

- 12. 08 네팔 국가인권위원회와 양국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MOU 체결
- 2011**
- 01. 03 인권자료실 야간 연장운영 시범실시(~3. 31)
- 01. 25~26 현장방문: 김천소년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 01. 27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시행
- 02. 11 제1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 02. 17 제11차 아셈인권세미나 참가(체코 프라하)
- 02. 21 홍진표 상임위원 임명
-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뉴욕)
- 03. 15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개소
- 03. 23 APF 사무총장단 회의 참가(호주 시드니)
- 04. 29 지미 카터 前 미 대통령 외 3인 내방
- 05. 01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대외 명칭 인권자료실 → 인권도서관으로 변경
- 05. 03 인권위-법무법인 태평양 MOU 체결(장애 분야)
- 05. 23 ICC(現 GANHRI) 승인소위원회 참가
- 05. 24 러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모스크바)
- 05. 25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0. 28, 전국 5개 초등학교도서관, 인권도서관 2개관)
- 05. 26 제3기 수도권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 개최
- 05. 29 반값등록금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 활동(총 14회)
- 05. 31 인권위-대한정신건강재단 MOU 체결
- 06. 08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6. 19 APF-UNFPA 주최 재생산권리 아·태지역 워크숍 참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06. 29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긴급구제조치 관련 현장방문(부산인권사무소)
- 07. 09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희망버스 인권지킴이 활동(총 5회)
- 08. 24 호세 라모스 동티모르 대통령 내방 강연
- 09. 01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강제진압 인권지킴이 활동
- 09. 05 APF 연례회의 참가
- 09. 20 인권위 간행물의 대국민 정보접근성 강화 위한 업무협력 추진(네이버, 누리미디어, 교보문고)
- 09. 23 인권위-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서명
- 09. 25 아시아-아프리카 10개국 공무원 인권정책개발과정 초청연수 실시(~10. 15)
- 09. 29 자오룽야오(Chao, Ron-yaw) 대만 감찰원 감사위원 등 내방
- 10. 10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 개최(~10. 14)
- 10. 20 기타 아키토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대표 등 내방
- 인권위 설립 10주년 기념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개최
- 11. 18 2011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11. 20)
- 바크티아르 아민(Bakhtiar Amin) 전 이라크 인권장관 내방
- 11. 24 한미 FTA 집회시위 관련 인권지킴이 활동(총 7회)
- 11. 25 <인권의 이름으로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천차만별> 발간



2011. 11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표지

- 11. 28 인권교육센터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커스터마이징
- 11. 29 인권위 설립 10주년 기념 수사분야 토론회
'착한 소비자, 여성 감정노동자를 웃게 하다' 소비자 캠페인
- 11. 30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사업주 대상) 발간
여성연예인 인권개선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선정
'차별시정 10년, 차별의 재발견' 토론회
- 12. 05 세계인권선언 제63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1, 전국 78개 도서관)
- 12. 13 멕시코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협정 체결(멕시코 멕시코시티)
- 12. 16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미주인권재판소/미주인권연구소 방문(코스타리카 산호세)
- 12. 25 인권위와 함께한 KBS <열린음악회> 방영
- 12. 2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 구성·발족회의 개최

2012

- 01. 20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시행
- 01. 20 현장방문: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위원장, 김영혜 상임위원, 홍진표 상임위원)



2012. 01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현장방문

- 02. 15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기자회견
미국민주주의재단(NED) 회장 면담
- 03. 06 아시아·아프리카 7개국 공무원 인권정책개발과정 초청연수(~3. 30)
- 03. 08 장명숙 상임위원 임명
- 03. 21 2012년 인권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인권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인권위법」 법률 제1413호, 2012. 3. 21, 일부개정)
- 04. 13 「인권위법」 개정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안내 설명회
- 04. 16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조사 기자브리핑
- 04. 20 인권위 설립 10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개최
- 04. 24 수원 여성 살인사건 관련 직권조사 기자브리핑
- 04. 25 현장방문: 광주 그룹홈 '홀더'(장명숙 상임위원)
- 04. 30 인권위 페이스북 '인자상' 개설
- 05. 01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영문판 출간
- 05. 14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미국 UCLA)
- 05. 16 콜롬비아 부통령 내방
- 05. 24 중국에 억류중인 자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장 성명
APF 사무총장단 회의 참가(호주 시드니)
- 06. 04 주한 프랑스 대사관 면담
프랑스 외무부 평양(협력)사무소 소장 내방
- 06. 05 일본 변호사연합회 산하 사형폐지검토위원회 내방

- 06. 11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9, 전국 13개 도서관)
- 06. 12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내방·면담
- 06. 19 주한 독일대사 면담
- 06. 21 주한 EU대사 면담
- 06. 26 ASEF 사무총장 방문
- 06. 27 태국 법무부 내방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 08. 02 중국 구금중 고문피해 당한 자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장 성명
자국민 보호 방안 의견표명 기자회견
- 08. 13 현병철 제6대 위원장 임명, 강명득 인권위원 임명
- 09. 06 우즈베키스탄 인권 옴부즈맨 내방
부산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막
- 09. 07 부산 사직구장 시구 및 인권위 홍보행사 실시
- 09. 22 태국 탐마셋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단 내방
- 09. 26 유엔고문방지특별보고관 면담
- 10. 06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인권영화가 어루만진 디아스포라>전 참가
- 10. 09 충북대학교와 MOU 체결
- 10. 11 미국무성 한국담당관 내방
- 10. 12 부산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장애차별 萬·畫·展> 개막
- 10. 15 북한이탈주민 관련 중국 현지조사
- 10. 26 언론인(사회부 기자) 인권워크숍 실시
- 10. 30 영화 <범죄소년>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특별시사회
- 11. 04 제9회 울산인권마라톤대회 홍보부스 운영 및 파견상담 실시
- 11. 24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 개최
- 12. 08 세계인권선언 제64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4, 전국 105개 도서관)
- 12. 11 한국기자협회와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공동 제정
방송인 김호진 인권홍보대사 위촉



2012. 12
김호진 인권홍보대사 위촉식

- 12. 13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2013

- 01. 07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기관 실무수습 실시
- 02. 01 주한 아일랜드 대사 내방
- 02. 04 주한 일본대사 내방
- 02. 05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사무소 대표 내방
- 02. 07 주한 프랑스대사관 정무담당서기관 내방
- 02. 15 주한 EU대사 내방
- 02. 22 주한 독일대사 내방

- 02. 25 APF 직원배치 협력사업 실시(~3. 22)
- 03. 06 대구광역시교육청 MOU 체결
- 03. 10 제22차 UN인권이사회 참가(~3. 16)
아시아·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3. 30)
- 04. 02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 05. 04 제26차 ICC 연례회의 참석(~5. 10)
- 05. 29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 05. 30 인권자료목록 전자책(e-Book) 제작 및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 05. 31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13, 전국 9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2개 전시관)
- 06. 13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위원장 예방
- 06. 20 독일 연방하원 청원위원회 국회의원단 위원장 예방
- 07. 09 서울특별시교육청과 MOU 체결
방글라데시 장애담당 공무원 내방
- 08. 06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스칼라트) 내방
- 08. 08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사무처 직원 내방
일본 권리옹호네트워크 내방
- 08. 16 주한 미국대사관 미카 왓슨(Micah Watson) 내방
- 08. 2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3인 내방
- 08. 2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최 공청회 참석 및 인권위 입장 발표
- 08. 27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인권위 방문(~8. 31)
- 09. 01 장애인권리협약 정부보고서 모니터링(스위스 제네바)
- 09. 02 네팔 인권위원회 대표단 위원장 예방
- 09. 11 제6차 북경인권포럼 참석(~9. 15, 김영해 상임위원)
- 09. 13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 10. 15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 인권위 방문
- 10. 20 제13차 아셈인권세미나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10. 21 제8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회의 참석(~10. 25)
- 10. 22 우즈베키스탄 국제콘퍼런스 참석(~10. 26)
- 10. 29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식
- 11. 15 주한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내방
- 11. 18 김영해 상임위원 임명(연임)
- 11. 20 주한 덴마크 대사 위원장 예방
- 11. 24 2013년 하반기 ICC(현 GANHRI) 집행이사회 참가(~11. 29)
- 11. 28 바레인 인권장관 위원장 예방
하반기 군대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12. 01 2013년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12. 6)
- 12. 04 유엔 OHCHR UPR 부서장 김영해 상임위원 예방



2013. 12
유엔 OHCHR UPR 부서장 김영해 상임위원 면담

- 세계인권선언 제65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8, 전국 169개 도서관)
- 12. 11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협력 강화 위해 독일, 폴란드 방문(~12. 18)
- 12. 15 인권교육센터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 12. 24 <감춰진 수용소 2> 발간

2014

- 02. 07 삼 랭시 캄보디아 야당 대표 내방
- 02. 14 장영숙 상임위원 청구교도소 방문
- 02. 17 ○○군 염전 장애인노예사건 현장 방문조사(2. 17~19)
- 02. 27 제3회 인권보도상 시상
- 03. 07 유영하 상임위원 임명
- 03. 09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27차 ICC 연례회의 참가(~3. 16)
- 04. 10 감정노동 인권개선 대국민 홍보 캠페인
- 04. 21 2014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4. 25)
- 05. 13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개최
- 06. 05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15, 전국 14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2개 체험관)
- 06. 16 2014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06. 19 외국 공무원 대상 인권정책발전과정 연수 운영(~7. 9)
- 06. 21 APF 사무총장급 회의 및 APF 2015-2020 전략계획 실무그룹 회의 참석(~6. 28)
- 06. 23 바레인 외교부 대표단 방문
- 06. 30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MOU 체결
- 08. 05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 OHCHR) 실무진 인권위 내방
- 08. 26 인권영화 <하늘의 황금마차> 특별시사회



2014. 08
인권영화 <하늘의 황금마차> 시사회

- 09. 01 제19차 APF 연례회의 참석(~9. 6)
- 09. 02 충북지역 인권단체 간담회
- 09. 03 충남지역 인권단체 간담회
- 09. 13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회의 참석(~9. 20)
- 09. 16 제7차 북경인권포럼 참석(~9. 19)
말레이시아 인권위원 위원장 예방
- 09. 26 APF 고문방지대사에 김영해 상임위원 선출
- 10. 01 유엔인종차별특별보고관, 위원장 면담
- 10. 13 2014년 하반기 ICC(현 GANHRI) 집행이사회 참석(~10. 20)
- 11. 08 APF 주관 고문방지대사 제1차 워크숍 참석(~11. 14)
- 11. 17 제14차 아셈 비공식 인권세미나 참석(~11. 21)
- 11. 18 대만 감찰원 방문단 내방
제주 종교 대표자 간담회
- 11. 29 제3회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12. 5)

- 12. 01 폴란드-덴마크 국가인권기구 방문(~12. 6)
- 12. 03 제5차 국제인권교육콘퍼런스 참석(~12. 8)
- 12. 07 세계인권선언 제66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3, 전국 120개 도서관)
- 12. 11 캐나다 인권재판소장 등 내방

2015

- 02. 10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03. 08 제28차 ICC 연례회의 참가 및 한-폴란드 인권기구 MOU 체결(~3. 15)
- 03. 16 이경숙 선임 상임위원 임명
- 05. 01 대구인권교육센터 개관식
- 05. 15 현장방문: 한센병 치료시설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 소재)
- 05. 18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실시(~5. 2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G) 의장 초청 특별강연
- 05. 21 스위스 인권특임대사 내방, 위원장 면담
- 06. 10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20, 전국 8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4개 체험관)
- 06. 23 유엔인권최고대표 방문
- 07. 13 재단법인 동천과 업무협약(MOU) 체결
- 07. 17 지자체 인권제도 서울·경기·강원 워크숍 개최
- 08. 13 제6대 현병철 위원장 퇴임, 제7대 이성호 위원장 취임
- 08. 20 현장방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호시설 '나눔의 집'(위원장)
- 08. 24 제20차 APF 연례회의 및 제3차 격년 콘퍼런스 참석(~8. 29, 위원장)
- 08. 25 대전청소년 유니브 연극제 인권홍보 전시관 운영(~9. 2)
- 08. 27 APF 고문방지대사 회의 참석(~8. 31, 김영혜 상임위원)
- 09. 01 인권도서관 부산·광주·대구·대전 분관 개관
- 09. 10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 09. 22 인권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 10. 04 인권위, 나라키움 저동빌딩 신청사로 이전
- 10. 12 인권위 신청사 현판식 개최



2015. 10
인권위 신청사 나라키움 저동빌딩 현판식

- 10. 14 인권과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내방, 위원장 면담
- 10. 15 미얀마 인권위원회, 인권위 방문견학
- 10. 19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심의 참석(~10. 23)
- 10. 2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 위원 내방
- 10. 26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10. 28)
- 11. 02 APF 사무총장급 회의 참석(~11. 7)
- 11. 12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마이클 커퍼, 소냐 비셰르코) 내방
- 11. 1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11. 18, 위원장)
- 12. 06 유럽평의회 참석 및 인권기구 방문(~12. 13, 이경숙 상임위원)

- 12. 07 세계인권선언 제67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3, 전국 71개 도서관)

2016

- 01. 12 유영하 상임위원 퇴임
- 01. 15 주한 EU대표부 대사 내방
- 01. 27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방
- 03. 17 유럽인권재판소 방문(위원장)
- 03. 18 유럽평의회 방문(위원장)
- 03. 21 제29차 ICC 연례회의 참가,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수임(~3. 23, 위원장)
- 03. 22 정상환 상임위원 임명
- 04. 15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내방
- 05. 11 세계국가인권기구(이하 GANHRI) 승인심사소위 콘퍼런스 콜(위원장)
2016년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
- 05. 23 가슴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위원장 성명
- 05. 24 GANHRI 승인심사소위 A등급 심사결과 통보
- 05. 25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 개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의 도전과 기회"
- 05. 31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위원장 성명
- 06. 03 하청근로자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 06. 03 2016년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인권 NAP, 기업과 인권 NAP)
- 06. 08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21, 전국 8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4개 체험관)
- 06. 14 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주재(위원장)



2016. 06
GANHRI 노인인권 특별세션 참석자들

- 06. 17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위원장 성명
- 06. 17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위원장 영문 성명
- 06. 20 '세계 난민의 날' 위원장 성명
- 06. 22 인권위 APF 고문방지대사 회의 참석(~6. 22)
- 06. 30 대전인권체험관 개소식 및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
- 07. 29 인권도서관 소장자료 RFID 태그 부착 작업(~8. 22)
- 08. 04 태국 외교부 방문단 기업과 인권 간담회 개최
- 08. 05 동국대와 업무협약 체결
- 09. 05 스웨덴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 방문
- 09. 07 기업과 인권 NAP 권고 설명회 개최
- 09. 15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 방한결과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성명
- 10. 0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 10. 14 지자체 인권제도 서울·경기·강원 워크숍 개최
- 10. 24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방문(위원장)
- 10. 26 제21차 APF 연례회의 참가(~10. 27, 위원장)
- 10. 31 성희롱 결정례 동영상 제작

- 11. 14 201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등 국외출장(~11. 21)
- 11. 15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11. 16, 위원장)
- 11. 18 독일인권기구(GANHRI 의장기구) 방문(위원장)
- 11. 22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면담
- 11. 24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내방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최종보고 및 토론회 개최
- 11. 25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0, 전국 79개 도서관)
- 11. 28 최혜리 상임위원 임명
- 12. 06 2016 유엔 인터넷거버넌스 포럼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12. 12)
- 12. 08 인권도서관 RFID 장비(도난방지안테나, 장서점검기 등) 도입 및 시스템 구축
- 12. 09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행복한 돌봄문화 만들기》 제작
- 12. 12 제7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12. 14, 위원장)
유엔고령화실무그룹 국가인권기구 병행행사 참석 및 발표(위원장)
- 12. 13 유엔본부 및 유엔사무총장 방문(위원장)

2017

- 01. 17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
- 01. 20 인권교육포털 개통
- 01. 23 필리핀 경찰 한인 살해사건 관련 위원장 성명
- 02. 13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참석(위원장)
- 02. 24 제6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 03. 02 GANHRI 연례회의 참석(위원장)
- 03. 03 국제형사재판소 방문(위원장)
- 03. 12 제6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참석(~3. 19)
현장방문: 여수출입국사무소(이경숙 상임위원)
- 03. 14 현장방문: 청주여자교도소(이경숙 상임위원)
- 03. 15 현장방문: 이주아동 교육시설 '지구촌 학교'(위원장)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위원장 환영 성명
대구인권사무소-경북행복재단 업무협약 체결
- 03. 29 태국인권위원회 대표단 내방
- 03. 30 현장방문: 이주아동 교육현장(위원장)



2017. 03 이주아동 교육시설 지구촌학교 현장방문

- 04. 03 2017 인권공모전 실시(~4. 30)
- 04. 19 현장방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위원장)
- 04. 20 '장애인의 날' 위원장 성명
- 04. 24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확정
APF 주관 성소수자 인권 국제회의 참석(~4. 28)
- 04. 29 제60차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참가

- 05. 04 제95회 '어린이날' 위원장 성명
- 05. 15 인권현장 방문 및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상임위원)
- 05. 18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05. 22 한센인 인권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 05. 25 정부, 인권위 위상 강화 발표
- 05. 29 2017년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진행(~6. 2, 9개국 참가)
- 06. 01 강원인권사무소 개소 및 인권도서관 강원분관 개관
- 06. 08 업무혁신 TF 활동 개시
- 06. 14 강원인권사무소 개소식
- 06. 16 위원장,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후세인 대표 면담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22, 전국 10개 도서관, 인권체험관)
노인인권모니터링단 발족(~6. 21,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지역)
현장방문: 국립소록도병원(정상환 상임위원)
- 06. 20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동, 11개국 공무원 대상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7. 12)
- 06. 26 업무혁신 TF 활동 종료
- 06. 29 반복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해결 촉구 위원장 성명
현장방문: 수원 보훈요양원(이경숙 상임위원)
- 07. 05 제8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회의 참가 및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7. 13)
- 07. 06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장 성명
- 07. 10 퀘벡 인권·아동권리위원회, 퀘벡 인권재판소, 퀘벡 옴부즈맨 방문(~7. 11, 위원장)
- 07. 15 제4차 인권순회상담(청소년 대상)
퀴어문화축제 홍보부스 운영
- 07. 20 인권·시민사회단체 면담(위원장)
- 07. 21 2017 인권공모전 시상식
- 07. 25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위원장 성명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07. 26 인권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무인대출반납기 도입 및 운영(~11. 23)
- 07. 27 중국 정부의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위원장 성명
- 08. 23 위원장,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
- 08. 29 어르신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 08. 30 열악한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 촉구 위원장 성명
위원장,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접견
- 09. 06 성주 사드 배치 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9. 6)
- 09. 07 현장방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위원장)
- 09. 18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 개최
- 09. 19 제2회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9. 21)
아셈 글로벌고령화센터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
- 09. 26 위원장, 토마스 귀버 민주안보거버넌스센터(DCAF) 총장 면담
- 09. 27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09. 29 조영선 사무총장 임명
- 11. 14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 운영(연말까지)
- 11. 16 2018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11. 20 세계인권선언 제69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21, 전국 112개 도서관)
- 11. 21 위원장,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장 면담
- 11. 24 인권위 설립 기념 인권현장 봉사활동(한센인복지시설)
- 11. 27 <장애인 인권 사진전 액세스어빌리티(AccessAbility)> 스웨덴 대사관·김중만 작가와 공동개최(~12. 10)



2017. 11
장차법 10년 장애인인권 공동 사진전

APF 연례회의 참가(~12. 1)

- 11. 29 2017 아동인권 보고대회 개최(~11. 30)
제22차 APF 연례회의-격년 콘퍼런스 참가 및 국제인권기구 방문(위원장)
인권작품 공모전 전시회 개최(~12. 8)
- 12. 07 대통령 특별보고
- 12. 08 세계인권선언 제69주년 기념식 개최
- 12. 13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창립총회
- 12. 20 충청남도와 업무협약 체결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과 북한 당국의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

2018

- 01. 02 故 우동민 활동가 7주기 추모식 참석(위원장)



2018. 01
고 우동민 활동가 7주기 추모식

- 01. 17 신년 기자간담회
- 01. 30 인권단체(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등) 면담(위원장)
- 02. 01 혁신위원회 최종 권고 기자회견
- 02. 02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직권조사 기자회견
- 02. 07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촉구 위원장 성명
서울대학교와 인권증진 업무협약 체결
캐나다 에퀴타스와 업무협약 체결
- 02. 2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참석(최혜리 상임위원)
제1차 신규 조사관학교(~2. 23)
- 02. 23 GANHRI 연례회의 참석(위원장)
- 02. 27 2017년도 초중등교과서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03. 07 호주 복지서비스부 부장관 위원장 접견
'세계여성의 날' 위원장 성명
- 03. 12 제7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 03. 23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위원장 성명
- 04. 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4. 17, 6개 권역)
- 04. 12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방안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04. 18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04. 20 통계청과 국가인권통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04. 2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권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05. 02 인권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실시(유엔인권정보, 국내외 법률DB 등)
- 05. 14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면담(위원장)
- 05. 17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05. 18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위원장)
- 05. 29 국가인권기구 초청 연수 입교식
- 06. 02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위원장 성명
- 06. 08 5·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 06. 19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20, 전국 12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3개 체험관)
- 06. 22 정문자 상임위원 임명
- 06. 23 대구퀴어축제 위원회 홍보부스 운영 및 모니터링
- 06. 25 2018년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6. 29, 7개국 참가)
- 06. 26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식
- 06. 28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현지 인권순회상담 및 기초조사(~6. 30)
- 07. 17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1국 2과 1팀 신설)
- 07. 16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서울중로경찰서, 강남경찰서)
- 07. 23 제9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위원장)
- 07. 25 육군훈련소 방문 및 훈련병 인권교육 제도화 협의(최혜리 상임위원)
- 08. 07 난민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 대한 위원장 성명
- 08. 23 7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9. 13)
- 09. 04 제7대 이성호 위원장 이임식
제8대 최영애 위원장 임명
- 09. 05 최영애 위원장 취임식
제3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9. 6)
- 09. 13 난민 단식농성장 방문(위원장)
- 09. 18 APF 연례회의 참석(위원장)
- 09. 27 국회의장 면담(위원장)



2018. 09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예방

- 09. 28 제주퀴어문화축제 인권지킴이단 운영
- 10. 05 사형제 폐지 명예대사 위촉식(가수 이은미)
- 10. 10 세계인권선언 제70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10, 전국 109개 도서관)
- 10. 15 유엔 피해자권리옹호관 면담(위원장)

- 10. 24 광주퀴어문화축제 홍보부스 운영 및 모니터링
- 10. 25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호주 의회)
- 10. 27 국제음부즈맨기구 연례회의 참석(~11. 1)
- 10. 29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019년 업무계획 의견수렴
- 10. 31 5·18 계엄군 등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11. 02 주한 영국대사 면담(위원장)
- 11. 19 주한 스웨덴대사 면담(위원장)
국방부장관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논의(위원장)
- 11. 22 2018 아동인권보고대회(~11. 24)
- 11. 23 인권위 설립 17주년 기념식
- 11. 25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위원장)
- 11. 26 법원의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 관련 의견제출
제9차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가
- 11. 29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참석(~12. 6)
- 12. 04 인권영화 <메기> 시사회
- 12. 10 세계인권선언 제70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 12. 11 인권위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2018. 12
인권위 혁신위 권고 진상조사결과 브리핑

- 12. 12 2018 인권옹호자회의(~12. 13)
- 12. 14 제주 예멘난민 심사결과에 대한 위원장 성명
- 12. 19 부산광역시와 인권증진 확산 업무협약 체결
- 12. 21 군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12. 26 현장방문: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현장
- 12. 27 한국관광공사와 외국인 관광객 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2019

- 01. 02 우동민 열사 추모제(성남 모란공원) 참석(위원장)
- 01. 03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 01. 11 주한 호주대사 접견(위원장)
- 01. 22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담회
- 02. 12 신년 기자회견담회(위원장)
- 02. 18 인권위원 워크숍(~2. 19)
- 02. 20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위원회 구성
- 02. 25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출범
- 02. 26 제8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 03. 05 GANHRI 연례회의 참석(위원장)
- 03. 18 현장인권상담센터 6개소 설치(수원남부·부천원미·광주광산·대구성서·대전둔산·강원춘천 경찰서)

- 04. 01 현장인권상담센터 부산동래경찰서 설치
- 04. 04 대통령 특별보고
- 04. 09 2019년 상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019. 04
2019년 상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0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위원장 성명
- 04. 15 제10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위원장)
- 04. 18 유엔여성기구 방문(위원장)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장애인권 현안 토론회 개최(~4. 25, 대구·제주·서울·대전·창원·원주)
- 04. 29 인천광역시 간담회(위원장)
현장방문: 발달형 구급시설(인천구치소) 수용환경 점검(위원장)
- 05. 03 사형제 및 대체형벌 검토 청문회
- 05. 14 주한 이라크 대사 접견(위원장)
- 05. 22 인권위-광역시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 05. 25 혐오차별 대항문화 조성 인권캠페인(부산)
- 05. 27 국가인권기구 직원 초청연수 실시(~5. 31)
- 05. 29 제주유나이티드 프로축구 경기 시축 행사
제주 시민사회 간담회
- 06. 01 2019 서울퀴어문화축제 인권위 홍보부스 운영
- 06. 04 혐오차별예방 '마주' 캠페인 실시
- 06. 10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국 회의 참석(~6. 15)
- 06. 11 제1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뉴욕)
- 06. 25 대만 전환기 정의추진위원회 대표단 면담(위원장)
- 06. 29 대구퀴어문화축제 모니터링 및 홍보
- 07. 07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유엔인권지식정보 최신화 작업 수행(~11. 6)
- 07. 08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 13, 전국 9개 도서관, 인권도서관, 인권사무소 3개 체험관)
- 07. 09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 의견서 제출(유엔)
- 07. 10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 발간
- 07. 29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제129001호)
- 08. 20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8. 21)
- 08.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방문조사(정문자 상임위원)
- 08. 28 2019 인권옹호자회의(~8. 30)
- 09. 01 강원FC 스포츠 인권 홍보 캠페인
- 09. 03 제24차 APF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9. 5)
- 09. 09 인권작품공모전 시상식
- 09. 19 이상철 상임위원 임명
- 09. 30 2019 하반기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 10.01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10. 2)
- 10.04 전국체육대회 현장 모니터링
- 10.16 언론인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10.19 춘천시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혐오·차별 대응 캠페인
- 10.25 인권위 설립 제18주년 기념식
- 10.26 광주 쿼어퍼레이드 부스 운영
국제 군음부즈맨기구 회의 참석(~11. 1)
- 10.28 세계인권선언 제71주년 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 20, 전국 97개 도서관)
- 11.01 제주출장소 개소
제주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 11.03 울산지역 혐오차별 대항문화 조성 인권 캠페인
- 11.04 2019년 하반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11.08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1.19 「인권위법」 개정안(성적지향 등 삭제)에 대한 위원장 성명
- 11.21 호주 외교부장관 접견(위원장)
2019 아동인권보고대회(~11. 29)
- 12.02 현장인권상담센터 서울영등포경찰서 설치
- 12.06 주한 인도대사 접견(위원장)
- 12.10 세계인권선언 제71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 12.13 스포츠인권 선서의 날 개최



2019. 12
스포츠인권 선서의 날 기념식

- 12.17 2019 유라시아 인권보호 국제 콘퍼런스 참가
서울역 노숙인·쪽방 주민 성탄축제 참석(위원장)
- 12.30 인권교육센터 인권강사 정보공개 및 자율매칭 시스템 오픈

2020

- 01.09 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회
- 01.13 신임 박찬운 상임위원 임명
- 01.13 2020년 제1차 함께하는 충북인권협의회 회의
- 01.16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 02.20 현장방문: 중국동포 거주지역



2020. 02
중국동포 거주지역 현장방문 및 코로나19 관련 혐오차별 간담회

- 인권도서관 유엔인권정보 활용교육 실시
- 02.27 제9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 02.28 재난상황 보도에서 농민(農人)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을 위한 위원장 긴급성명
- 03.05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03.16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논평
- 03.25 혐오표현 없는 선거 만들기 위원장 성명
- 03.26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환영 위원장 성명
- 04.08 '어려운 시기, 모두가 동등한 한 표 행사하는 선거 기대' 위원장 성명
- 04.23 상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온라인 의견 수렴(~5. 6)
- 05.06 현장인권상담센터 5개소 설치(서울송파·서울금천·성남분당·안양동안·인천미추홀 경찰서)
- 05.08 인권도서관 공간 확장공사 및 장서 재배치(~6. 26)
- 05.17 국제 성소수자의 날 기념 혐오차별 예방 '마주' 캠페인
- 05.19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
- 05.26 인권경영 관련 인권위-법무부 업무협약식 개최
- 05.28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
- 06.11 「평등법」 관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단 간담회
- 06.22 코로나19와 노인인권 관련 GANHRI 회의 참가
- 06.23 뉴욕 소재 단체 '패스파인더스' 소장 접견(위원장)
평등법 관련 천주교 한국주교회의 의장 면담
「평등법」 제정 국회 의견표명 및 기자브리핑
- 06.30 「평등법」 제정 국회 의견표명 및 기자브리핑
- 07.08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참석: 평등법 제정 필요성 및 시안 설명, 혐오표현 대응 정부선언 필요성 설명
- 07.09 「평등법」 관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면담
- 07.10 「평등법」 권역별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설명회(~7. 22)
- 07.10 「평등법」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면담
- 07.14 「평등법」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 07.21 「평등법」 입법 추진을 위한 지역설명회 개최
- 07.23 「평등법」 관련 원불교 교정원장 면담
- 07.30 「평등법」 관련 유교 성균관장 면담
- 07.31 「평등법」 관련 천도교 교령 면담
- 08.18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 촉구 캠페인
- 08.26 2020 인권옹호자회의
- 09.09 제25차 APF 연례회의
- 09.17 2020 혐오차별대응 국제콘퍼런스
- 09.18 「평등법」 관련 종교계 원로간담회
- 09.22 「평등법」 관련 주한 해외대사관 초청 국회 인권콘퍼런스 공동개최
- 09.28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위원장 성명
- 09.28 이주 및 장애분야 인권상담사례 네트워크 협의
- 10.06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접견(위원장)
- 10.06 「평등법」 관련 개신교 원로초청 간담회
- 10.08 「평등법」 관련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차별금지회의 개최
- 10.14 대전인권체험관 개관식
- 10.21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0.23 「평등법」과 인권 관련 주한대사 등 간담회

- 10. 27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에 관한 토론회 개최
- 10. 28 현장방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 11. 03 스포츠인권명예대사 류현진 선수 내방, 위원장 면담
- 11. 05 「평등법」 입법 추진 관련 간담회
- 11. 07 충북 이주민축제 혐오·차별 대응 및 「평등법」 제정 홍보 캠페인
- 11. 23 아동인권보고대회
- 11. 24 「평등법」 제정 관련 부산 종교계 대표 초청간담회
- 11. 25 인권위 설립 제19주년 기념식
- 11. 25 부산시민공원 내 '평등벤치' 설치
- 11. 2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 11. 05 하반기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11. 26 2020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11. 30 GANHRI 연례회의 참석(~12. 4)
- 12. 06 인권교육포털 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 12. 07 2020 국가인권기구 노인인권 콘퍼런스 개최
- 12. 07 인종혐오와 차별 대응 캠페인(12. 7~11, KBL 공동)
- 12. 08 주한 스위스 대사 간담회(위원장)
- 12. 10 세계인권선언 제72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 12. 10 세계인권선언 제72주년 기념 시민인권영화제
- 2021**
- 01. 14 위원장, 증오발언 대응원칙 발표 환영 성명
- 01. 26 위원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 02. 04 해고 노동자 김진숙 관련 위원장 성명 발표,
“김진숙 복직은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 02. 22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 공동주최(~2. 24)
- 02. 24 제1차 성평등포럼 개최
- 03. 18 미안마 사태 관련 GANHRI·APF에 위원장 서한 송부
- 03. 23 위원장,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반대 국제포럼 참석
- 03. 23 행정 분야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03. 25 위원장, 주한 스웨덴 대사 면담
- 03. 29 제11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화상) 회의(~4. 1)
- 03. 29 광역시·도 지자체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 03. 31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맞아 위원장 성명 발표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 03. 31 《별별인권리포트》 발간(제1호)
- 03. 31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국회 법률 개정에 대한 위원장 환영 성명 발표
- 04. 07 “대학인권센터 법제화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04. 20 제1차 노인인권포럼(노인인권의 국제적 흐름 및 최근 동향) 개최
- 04. 23 위원장,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
- 04. 2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기념 토론회
- 05. 07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1차 회의
- 05. 21 위원장, 주한 호주 대사 면담
- 05. 2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위원장 환영 성명
- 06. 02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화상) 개최

- 06. 08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포럼
- 06. 1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6. 11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 개최
- 06. 11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 개최
- 06. 21 제21대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하는 성명 발표
- 06. 22 APF 사무총장 네트워크 회의(화상) 참가
- 06. 26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7. 18)
- 06. 29 GANHRI 연례회의(화상) 참가(~7. 1)



2021. 06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화상)

- 07. 05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8. 04 이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북 콘서트 개최
- 08. 06 남규선 신임 상임위원 임명
- 08. 10 정부 홍보물 혐오표현 실태 모니터링 결과 발표
- 08. 24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대면·화상)
- 08. 25 2021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 08. 31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 개최
- 09. 02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결과 발표
- 09. 03 최영애 위원장 이임식
- 09. 04 송두환 신임 위원장 임명



2021. 09
송두환 신임위원장 취임

- 09. 06 송두환 위원장 취임식 및 국립묘지 참배
- 09. 14 인권교육원 설립 설계공모 공고
- 09. 14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09. 15 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 09. 15 APF 연례회의(화상)
- 10. 22 GANHRI 승인소위 심사(화상)

인권증진 행동계획 및 전략 변천¹

...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



...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체계도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명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전략 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성과 목표	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강화 사형제 폐지 입법화 2. 표현의 자유 보장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3. (변경)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 행위 강요 개선 4. 정보인권 증진 개인정보 보호 방안	1. 학생 인권 개선 체벌 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2. 취약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4. 노인 인권 보호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2. 빈곤계층 인권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3. 비정규직 인권 보호 3. (변경) 노동취약계층 인권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인권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2.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3. 결혼이주여성 인권 증진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 보장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1. 차별금지법 제정(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안 3. 장애인 차별 개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촉진 4.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5. 여성 인권 보호 여성 인권 사각지대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1.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상황 파악 2. 재외 탈북자 인권보호 3.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4. 새터민 인권증진방안 모색 5.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기획 사업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1.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2.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3.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 강화)	1. 인권위 독립성 강화 2.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¹ 인권위는 3개년 주기 계획으로 2006년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래, 총 5차례에 걸쳐 수립하였다. 2021년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유연성, 전략성, 업무 균형성, 유사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목표설정 체계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을 수립하였다. 매 3개년마다 수립했던 인권증진행동계획과 달리, 인권증진행동전략은 NAP권고(의견표명)안 수립시기와의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연하게 수립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 체계도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전략 목표	I. 기본적인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확대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V. 차별시정 강화
성과 목표	1. 사회권의 확대·증진 2. 자유권의 보장·강화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4. 군 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 구축 6. 인권지수 개발	1. 다문화 사회 이주민 인권 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장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1. 장애인 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 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 향상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 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IV.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핵심 추진 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성과 목표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5. 인권평가제도 도입	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 인권 증진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기능의 확대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			
기획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 전문성 강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 체계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 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II. 차별 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IV. 인권의 확장 다문화

성과 목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②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③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방안 마련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①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② 학교내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③ 아동의 놀 권리 보장 ④ 장애인 교육권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①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②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①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②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③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①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노인빈곤) ②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③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1.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구제 ①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②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③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2.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①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②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③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④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함께 등 모니터링 강화 3.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①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②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③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4.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①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②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보호 방안 마련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①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②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③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방안 마련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①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②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③ 노동인권교육 강화 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①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②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3.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② 아동·노인·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③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강화 ①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② 특별절차 협력 강화 ③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④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기구 역할 확립 ⑤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 모니터링	1.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①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②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2.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①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②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③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3.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①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 ②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4.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①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②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③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④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5.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①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② 군영장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③ 여군 인권보호 강화 ④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	---	--	---

특별 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프로젝트팀 : 교육, 협력, 홍보, 정책·제도개선 통합, 차별금지법 대응)
-------	--

기획 사업	위원회 역량 강화(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 권고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 지침 제시, 직원 역량교육 내실화)
-------	--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체계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모든 사람의 존엄, 평등,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실현		
전략 목표	I. 급변하는 인권환경과 지구적 재난·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	II.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III.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성과 목표	1. 재난상황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장 2. 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3.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인권 보호 4.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 5. 새로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인권경영 강화 6. 스포츠 인권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 강화 7. 북한인권 개선 강화	1.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 표현 대응 2. 인종차별 대응과 이주민·난민 인권 보호 3.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기반 구축 4.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5.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 6. 형사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개선 7.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	1. 조사구제 활동의 신속성, 실효성, 전문성 강화 2.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확대와 인권문화 확산 3. 교류협력 내실화와 인권거버넌스 강화 4. 지역인권보장체계 및 인권사무소 역량 강화 5. 군인권 보호·증진체계 강화 6. 체계적 인권진단과 평가제도 마련 7.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
-------	---	--	--

역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역대 위원장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지검·광주지검 부장검사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2001. 11. 25~ 2004. 12. 23
 제2대 위원장 최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4. 12. 24~ 2005. 03. 22
 제3대 위원장 조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2005. 04. 04~ 2006. 10. 01
 제4대 위원장 안경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2006. 10. 30~ 2009. 07. 05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5~6대 위원장 현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 한양대학교 사무처장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 	2009. 07. 17~ 2015. 08. 12 ※ 2012. 08. 13 연임
 제7대 위원장 이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원장 수원지법·서울지법 동부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 	2015. 08. 13~ 2018. 09. 03
 제8대 위원장 최영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2018. 09. 04~ 2021. 09. 03

... 역대 인권위원 ...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상임위원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 11. 25~2004. 12. 23
상임위원 유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2004. 07. 20
상임위원 유시춘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 11. 25~2004. 03. 12
인권위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2003. 02. 23
인권위원 김덕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 11. 25~2005. 03. 14
인권위원 김오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2004. 12. 23
인권위원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1. 11. 25~2004. 12. 23
인권위원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01. 11. 25~2002. 11. 29
인권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1. 11. 25~2004. 12. 23
인권위원 조미경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1. 11. 25~2004. 12. 23
인권위원 류국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2002. 12. 12~2003. 02. 23
인권위원 이흥록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 05. 01~2005. 04. 18
인권위원 김만흠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 08. 01~2006. 10. 24
상임위원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4. 07. 23~2007. 09. 20
상임위원 김호준	서울신문 편집국장, 논설주간	2004. 12. 24~2008. 02. 03
상임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4. 12. 24~2007. 12. 23
인권위원 나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12. 24~2006. 06. 28
인권위원 이해학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 12. 24~2006. 12. 31
인권위원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2007. 12. 23
인권위원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2007. 12. 23
인권위원 신혜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5. 03. 15~2008. 03. 19
인권위원 원형은	부산기독교협의회 회장	2005. 06. 01~2008. 09. 09
인권위원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 08. 10~2012. 08. 09
인권위원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06. 10. 25~2009. 12. 28
인권위원 정재근	조계종 금선사 주지	2007. 02. 08~2010. 02. 07
상임위원 최경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2007. 09. 21~2010. 10. 10
상임위원 유남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2007. 12. 24~2010. 11. 04
인권위원 조 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 12. 24~2010. 11. 15
인권위원 황덕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7. 12. 24~2011. 01. 18
상임위원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2008. 02. 04~2010. 11. 04

구분 / 성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인권위원 최윤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08. 09. 04~2012. 01. 02
인권위원 김양원	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복지재단 이사	2008. 09. 10~2011. 09. 27
인권위원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2009. 12. 29~2012. 06. 27
인권위원 한태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2010. 02. 08~2016. 06. 15
상임위원 장향숙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2010. 10. 11~2012. 01. 12
상임위원 김영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11. 15~2016. 11. 27
인권위원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01. 19~2014. 01. 18
상임위원 홍진표	(사)시대정신 이사	2011. 02. 21~2014. 03. 06
인권위원 김성영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2011. 09. 28~2014. 11. 02
인권위원 곽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12. 01. 03~2015. 02. 04
상임위원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12. 03. 08~2015. 03. 15
인권위원 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2012. 08. 13~2016. 09. 22
상임위원 유명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14. 03. 07~2016. 01. 12
인권위원 윤남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01. 19~2017. 01. 31
인권위원 이선애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4. 01. 19~2017. 03. 23
인권위원 최이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2014. 11. 03~2017. 12. 14
상임위원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공동대표	2015. 03. 16~2018. 06. 21
인권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015. 02. 05~2018. 08. 26
인권위원 한위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 08. 10~2018. 08. 26
인권위원 장애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2016. 06. 16~2019. 06. 15
상임위원 정상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6. 03. 22~2019. 09. 18
상임위원 최혜리	서울지방법원 판사	2016. 11. 28~2020. 01. 12
인권위원 김기중	(사)오픈넷 이사	2016. 09. 23~2020. 01. 12
인권위원 배복주	(사)장애여성공감 대표	2017. 12. 15~2020. 02. 07
인권위원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변호사	2020. 01. 13~2020. 02. 23
인권위원 한수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02. 01~2020. 02. 27
인권위원 조현욱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06. 21~2020. 12. 10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2018. 06. 22~2021. 06. 21
인권위원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8. 08. 27~2021. 08. 26
인권위원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 08. 27~2021. 08. 26

... 역대 사무총장 ...

구분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1대 사무총장 최영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 위원 • 한국인권재단 이사 	2002. 02. 19~ 2004. 07. 22
 제2대 사무총장 곽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5. 01. 07~ 2007. 01. 14
 제3대 사무총장 김철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다산 공동대표변호사 •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7. 01. 29~ 2009. 08. 27
 제4대 사무총장 김옥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대전·마산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가정법원 판사 • 인천·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 	2009. 10. 05~ 2010. 06. 07

구분	주요경력	재임기간
 제5대 사무총장 손심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기획원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총무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2010. 07. 21~ 2015. 11. 15
 제6대 사무총장 안석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2015. 11. 30~ 2017. 06. 26
 제7대 사무총장 조영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 	2017. 09. 29~ 2019. 09. 30

현 인권위원, 사무처 간부 및 각종 위원회 위원²

1. 현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인권위원 ...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기관(임기)
 위원장 송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유한) 한결 대표변호사 	대통령 지명 (2021. 09. 04~ 2024. 09. 03)
 상임위원 이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위 위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 선출 (2019. 09. 19~ 2022. 09. 18)
 상임위원 박찬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법학회 회장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지명 (2020. 01. 13~ 2023. 01. 12)
 상임위원 남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총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홍보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홍보·협력팀장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장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장 	국회 선출 (2021. 08. 06~ 2024. 08. 05)

2 2021년 10월 31일 현재 기준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기관(임기)
 인권위원 문순희(퇴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대표이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법장사 주지 중앙승가대학교 외래교수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 	대통령 지명 (2019. 07. 09~ 2022. 07. 08)
 인권위원 이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장 지명 (2020. 02. 28~ 2023. 02. 27)
 인권위원 서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유달장애인지원센터 소장 보건복지부 성평등자문위원회 위원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제9대 목포시의원 	대통령 지명 (2020. 05. 01~ 2023. 04. 30)
 인권위원 석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장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유한모임 소장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2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2020. 07. 03~ 2023. 07. 02)
 인권위원 윤석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울가정법원 양성평등심의회 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대법원장 지명 (2021. 02. 19~ 2024. 02. 18)

성명	주요경력	선출·지명기관(임기)
 인권위원 김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법인 지향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장 지명 (2021. 08. 27~ 2024. 08. 26)
 인권위원 한석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선출 (2021. 10. 15~ 2024. 10. 14)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사무총장 송소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총무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 재단법인 진실의힘 상임이사 	 기획조정관 이석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위원회 비서실장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정책교육국장 조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침해조사과장 위원회 홍보협력과장 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침해조사국장 안성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침해조사과장 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차별시정국장 강문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전남연합 인권상담당 광주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준비단 광주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교육협력심서관 김은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위원회 홍보협력과장 위원회 차별조사과장

2. 각종 위원회 위원

... 정책자문위원회 ...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곽관주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전 인권위원	이병학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조정연맹 이사
김상우	JTBC 대외협력본부장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순	(사)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
김규현	큐렉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영립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한센인권변호단 단장	임홍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훈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백미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서울대 이사장, 전 대법관	이공현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조 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자), 전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유엔자의적구금워킹그룹 위원	Eunice K. Kim (김유니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오 준	경희대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서창록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범철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임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 전문위원회 ...

1) 사회권전문위원(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

분야	성명	주요경력
사회권 일반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위원장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노동권, 기업과 인권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박점규	직장갑질 119 활동가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센터 연구위원
건강·환경·생명권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거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문화권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2) 인권교육전문위원(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구정화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구제담당
박형철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수팀장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전진성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철	(사)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3) 국제인권전문위원(위원장 : 송두환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위원	이양희	전 유엔 미안마인권특별보고관
정진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성훈	전 한국인권재단 이사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교수
김미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김기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임홍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4) 지역인권전문위원(위원장 :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명숙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안은정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상임활동가
박영철	(사)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조성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상임활동가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5) 자유권제1전문위원(위원장 : 이상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정문식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옥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경용	법무법인 L.K.B.&Partner 변호사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6) 자유권제2전문위원(위원장 :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종철	노인전문용인병원 진료부장
김미선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상임이사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정란	충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은주	인천사랑요양원 원장
김철효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김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형길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 부회장
남철관	(사)나눔과미래 국장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조문기	송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해경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한영섭	비전트레이닝센터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허용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원영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7) 차별시정전문위원(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상욱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전윤구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형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심재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윤애림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박주영	민노총법률원 노무사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갑선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
방준식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8) 장애인인권전문위원(위원장 : 남규선 상임위원)

분야	성명	주요경력
장애차별	김정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김현아	(주)마크로젠 변호사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원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인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손 학	(주)에스씨이 이사
	윤영삼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연구교수
	장애시설	김귀자
김명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경미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임소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분야	성명	주요경력
장애시설	고명균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은종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문용훈	태화섬솟는집 관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장애	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백재중	신천연합병원장
	유시완	한국정신장애인지원생활센터 소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시설장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원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9) 아동인권전문위원(위원장 : 박찬운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용욱	법무법인 IB 변호사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고은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이배근	한국아동학대협회 회장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강화천	안양중학교 교장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

10) 북한인권전문위원(위원장 : 송두환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엘렌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지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
도경욱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현선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지현	국제엠네스티 사무처장
이대훈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장미란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장	정강자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대표

... 조정위원회 ...

1) 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희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		

2) 성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백미순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기중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현아	법무법인 GL 변호사		

3) 장애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이상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박승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조원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4) 인권침해조정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이형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림	이림 법률사무소 변호사
태원우	법무법인(유) 로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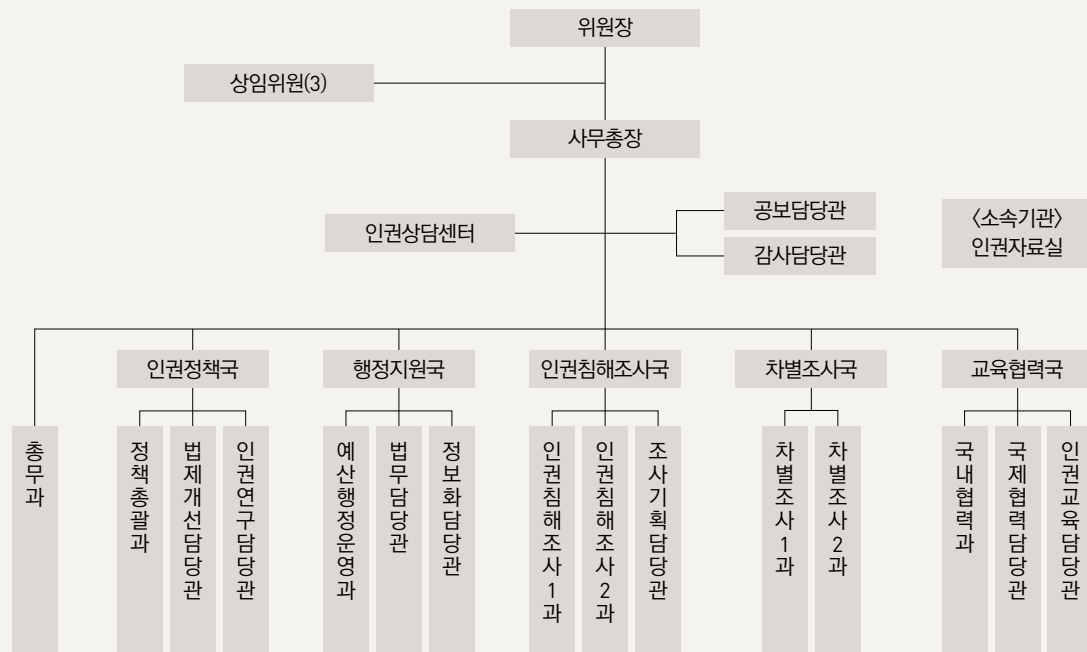
... 행정심판위원회 ...

구분	성명	주요경력	
당연직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조영호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안성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장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위촉직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왕미양	법무법인 탐 서초분사무소 변호사
		강수경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선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경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오선희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최윤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태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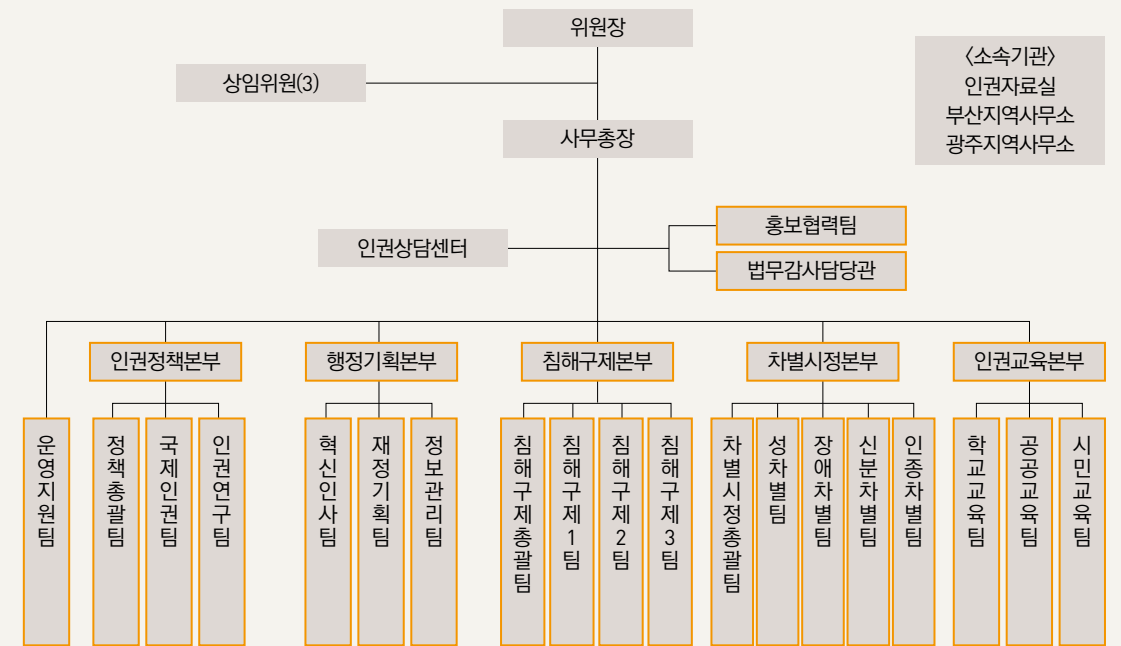
조직 및 정원 변천

신설 명칭·기능·소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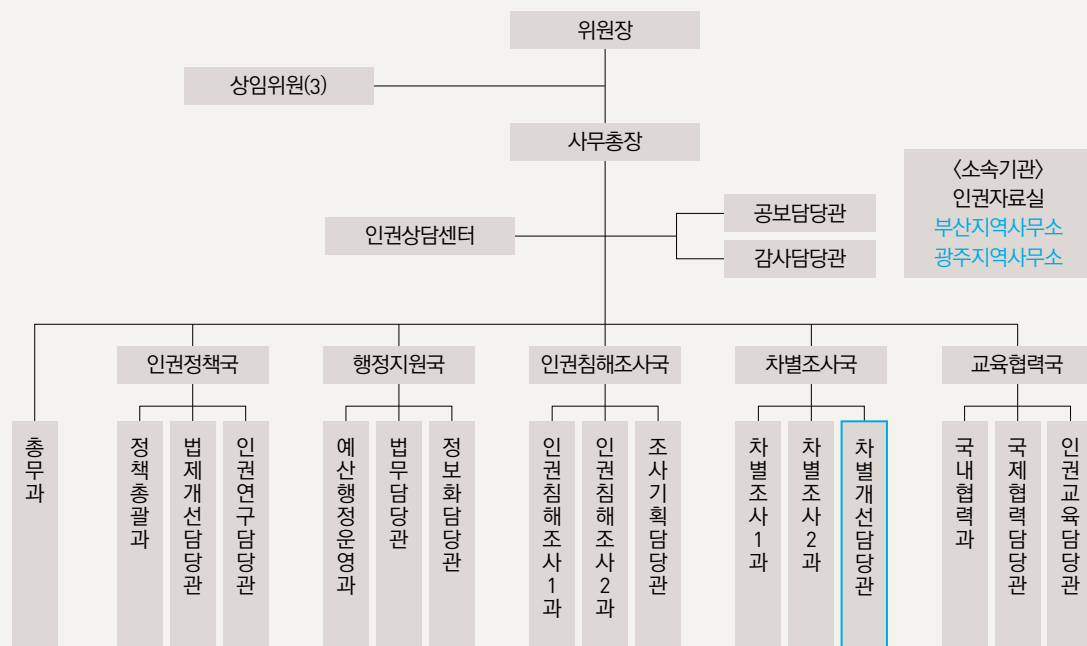
사무처 출범(2002. 04. 01) 5국 18과 1소속기관 | 정원 180명(본부 175, 소속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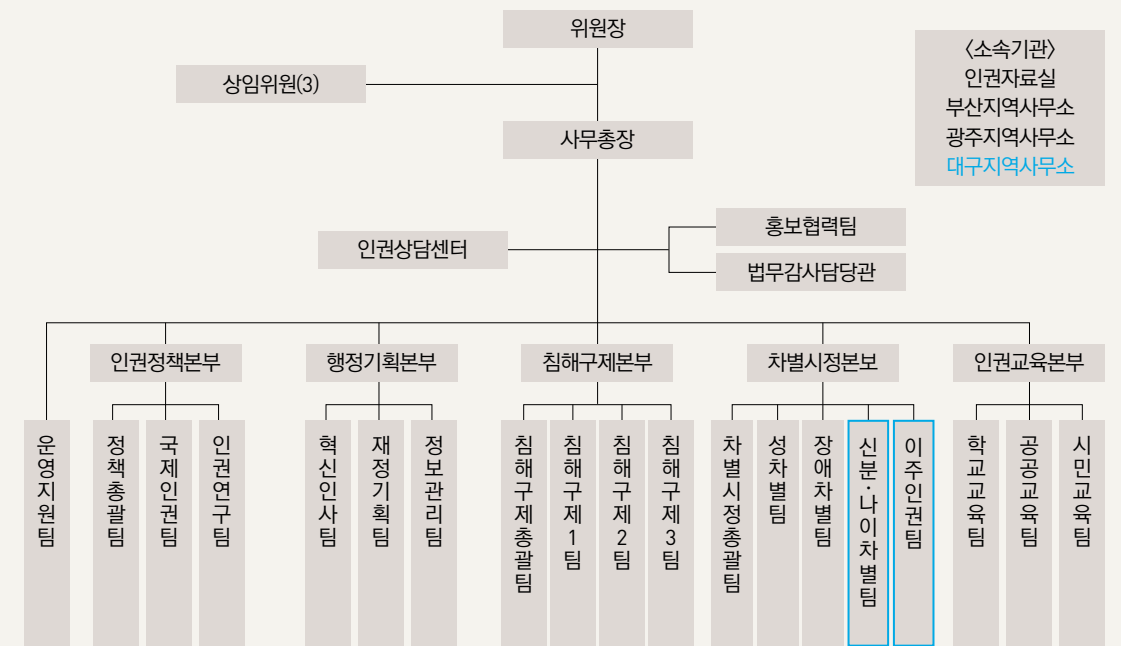
본부·팀제 개편(2005. 12. 30) 5본부 22팀 3소속기관 | 정원 201명(본부 183, 소속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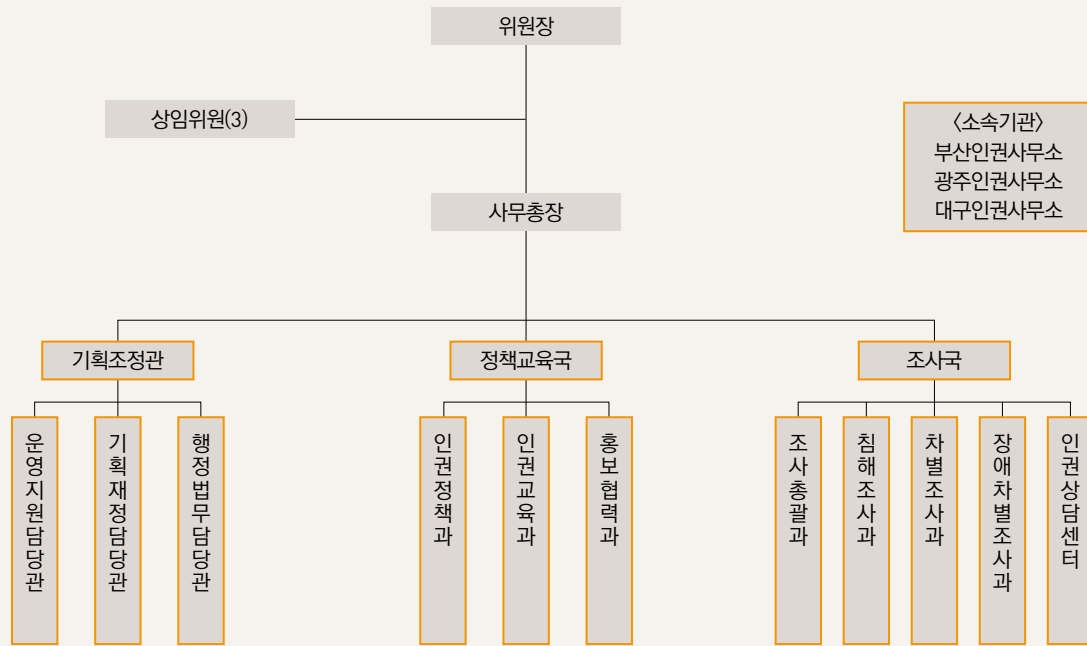
신설·변경(2005. 05. 31) 5국 19과 3소속기관 | 정원 201명(본부 183, 소속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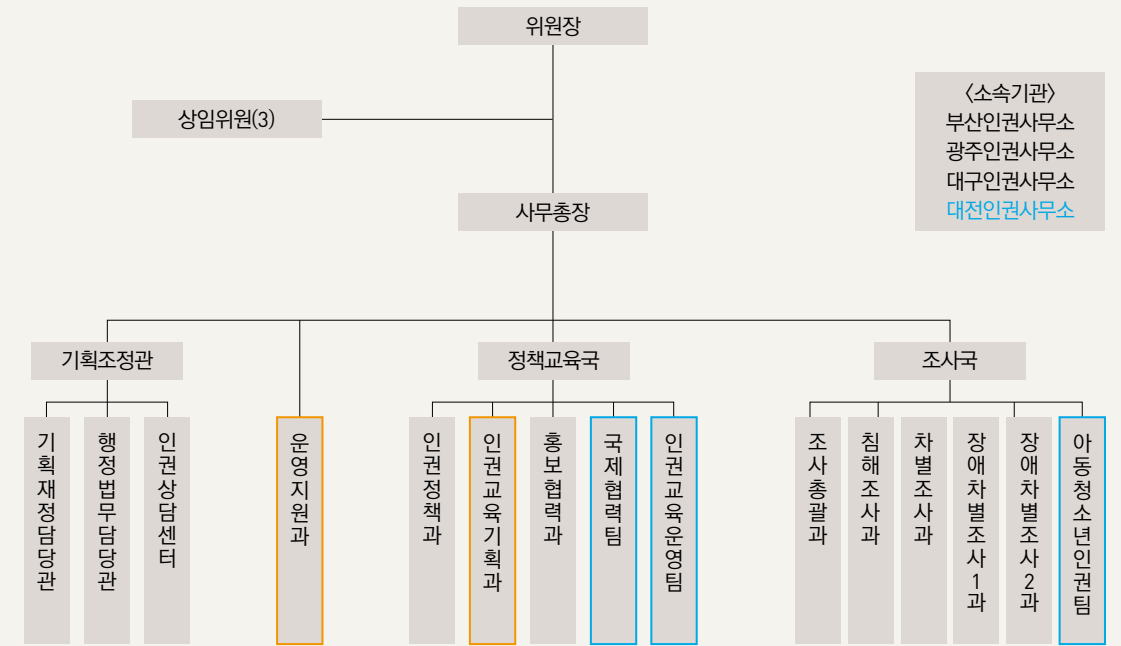
2차 개편(2007. 07. 01) 5본부 22팀 4소속기관 | 정원 208명(본부 184, 소속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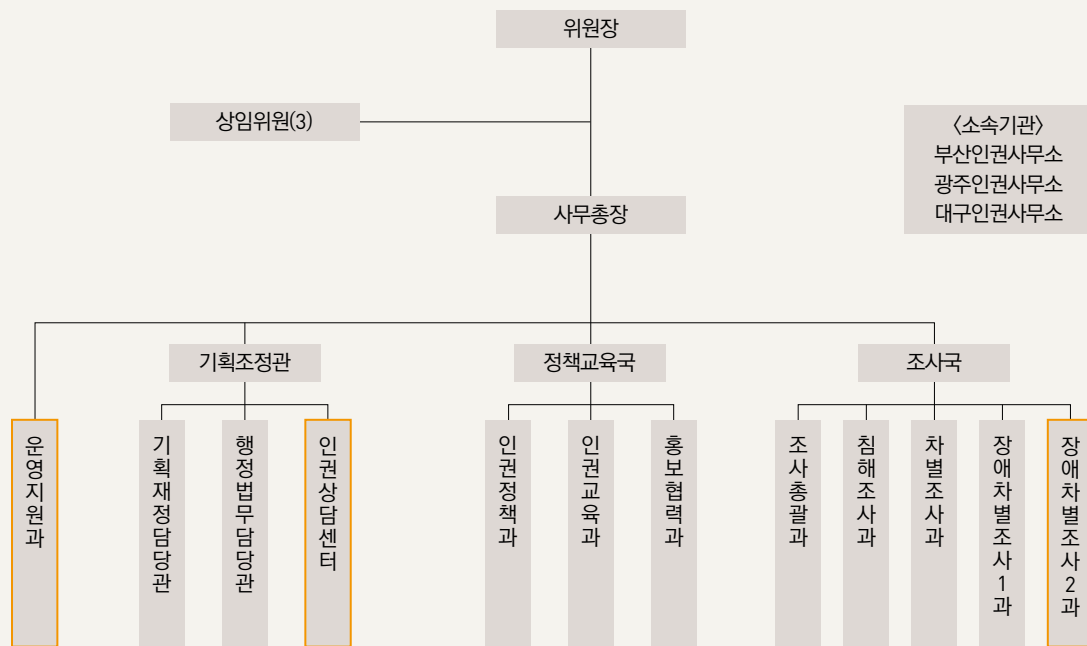
조직 축소(2009. 04. 06) 3국(관) 11과(담당관) 3소속기관 | 정원 164명(본부 146, 소속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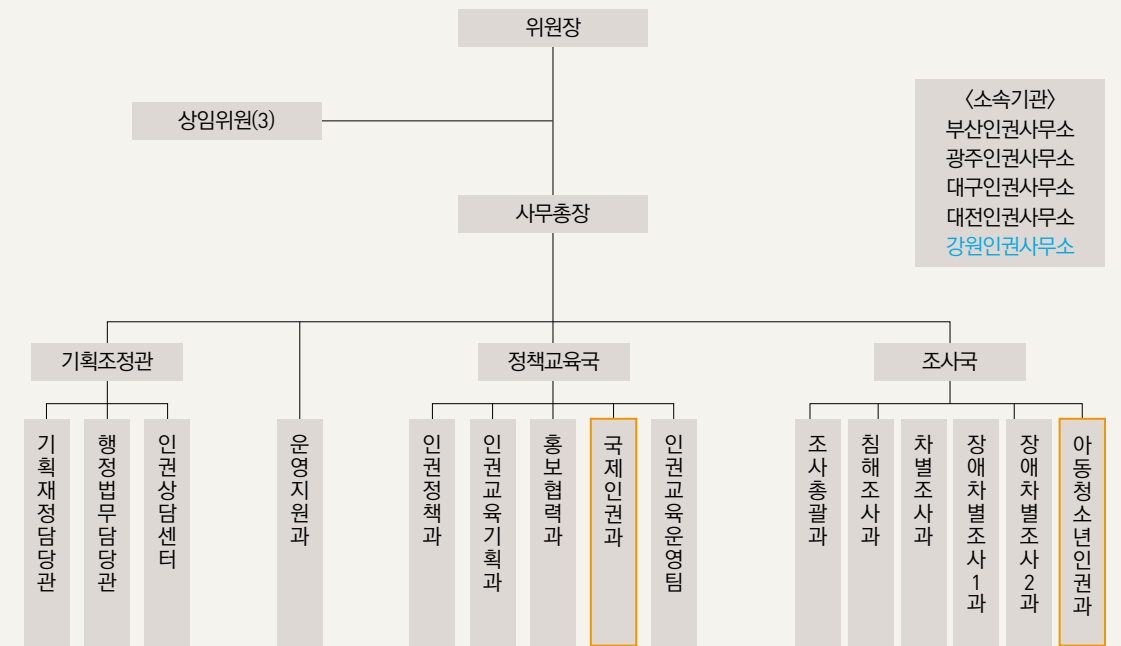
신설·변경(2014. 08. 27) 3국(관) 12과(담당관) 3팀 4소속기관 | 정원 191명(본부 167, 소속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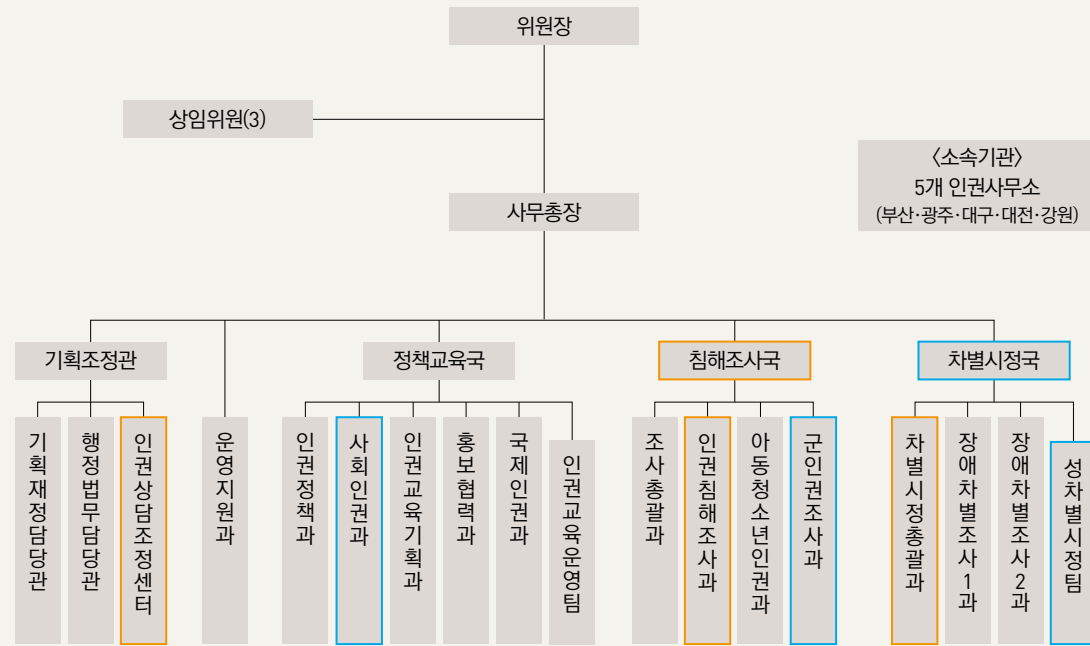
신설·변경(2011. 10. 10) 3국(관) 12과(담당관) 3소속기관 | 정원 185명(본부 167, 소속 18)



신설·변경(2017. 02. 28) 3국(관) 14과(담당관) 1팀 5소속기관 | 정원 194명(본부 164, 소속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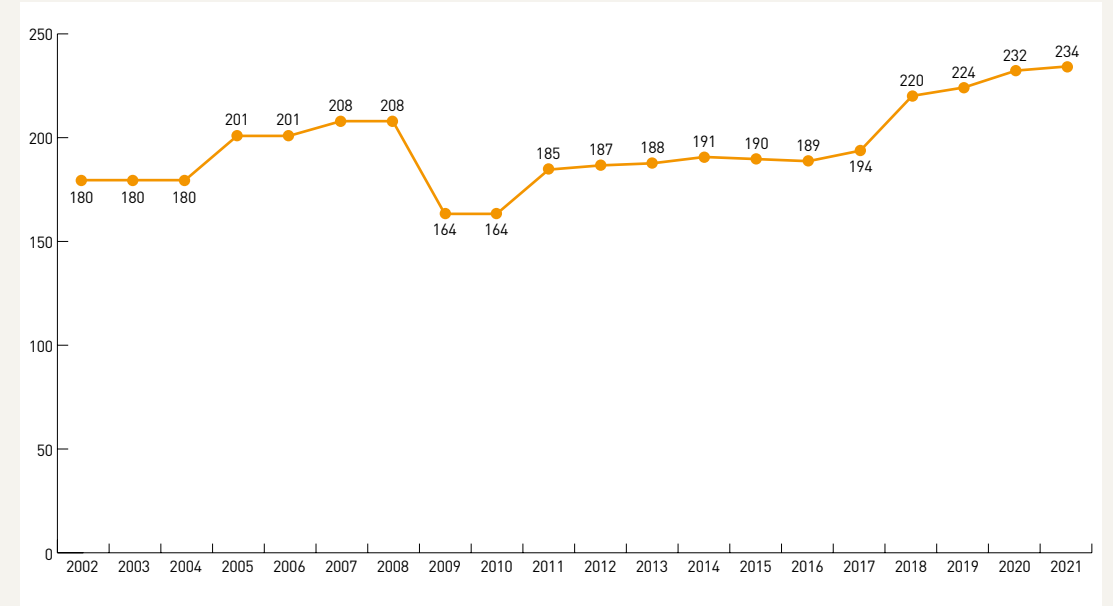
신설·변경(2018. 07. 24) 4국(관) 16과(담당관) 2팀 5소속기관 | 정원 220명(본부 186, 소속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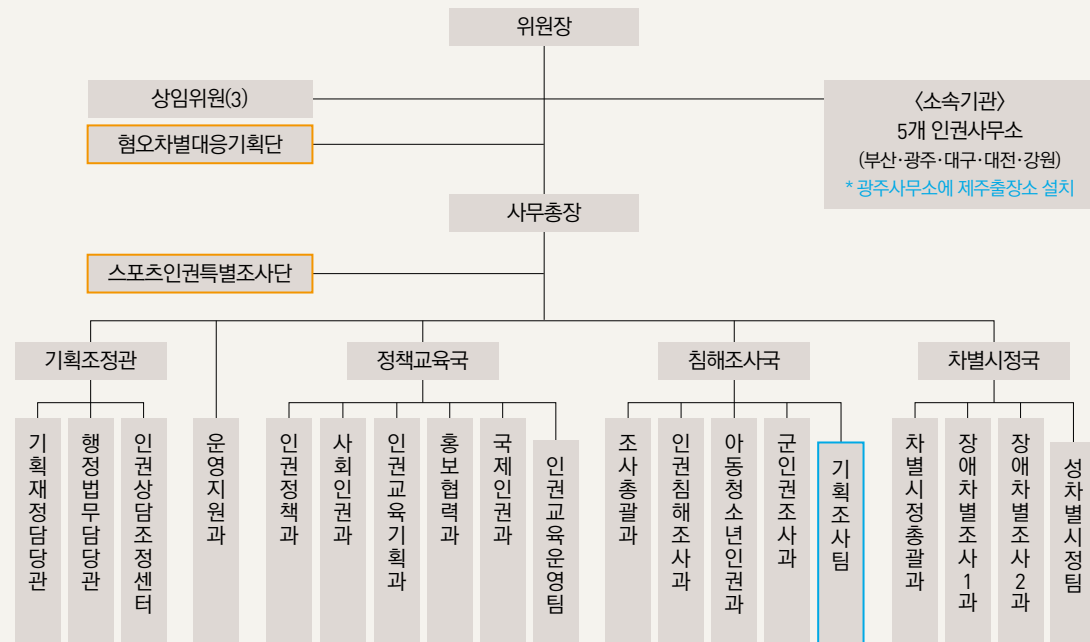
연도별 정원 변천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변동 현황

(단위: 명)



신설·변경(2019. 07. 30, 2020. 03. 31) 4국 16과 3팀 5소속기관+2단 | 정원 232명(본부 188, 소속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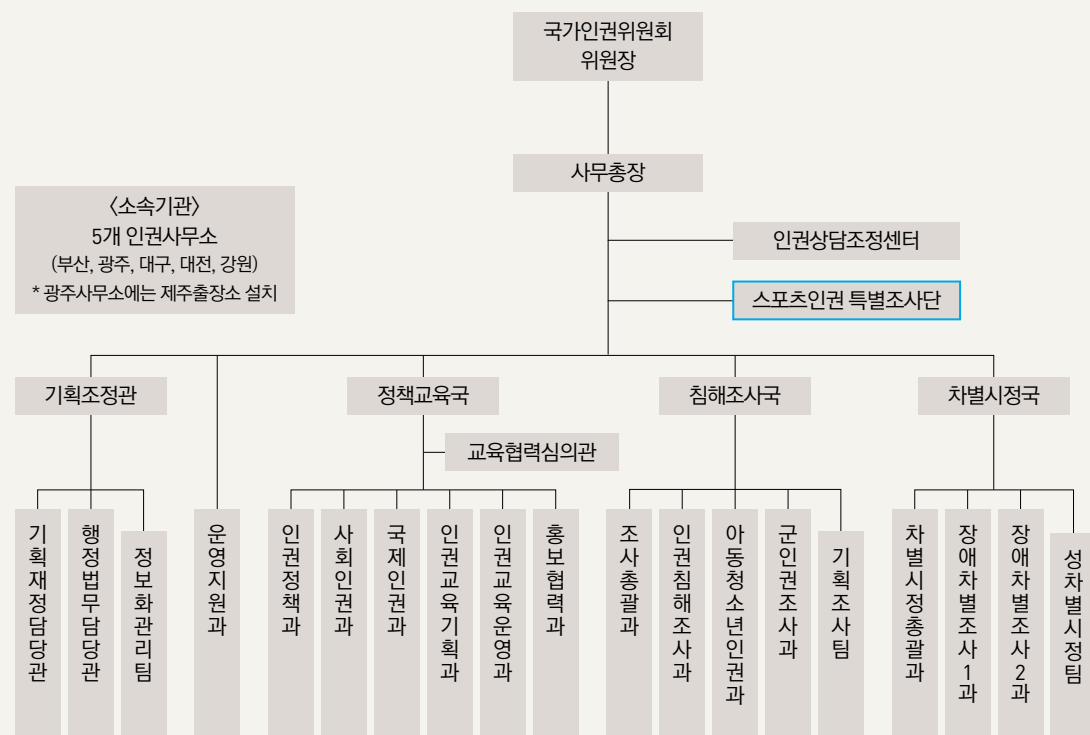


조직 및 정원 현황

사무처 조직도

임시기구

신설·변경(2021. 02. 25) 2관 3국 17과 3팀 5소속기관+1단 | 정원 234명(본부 190, 소속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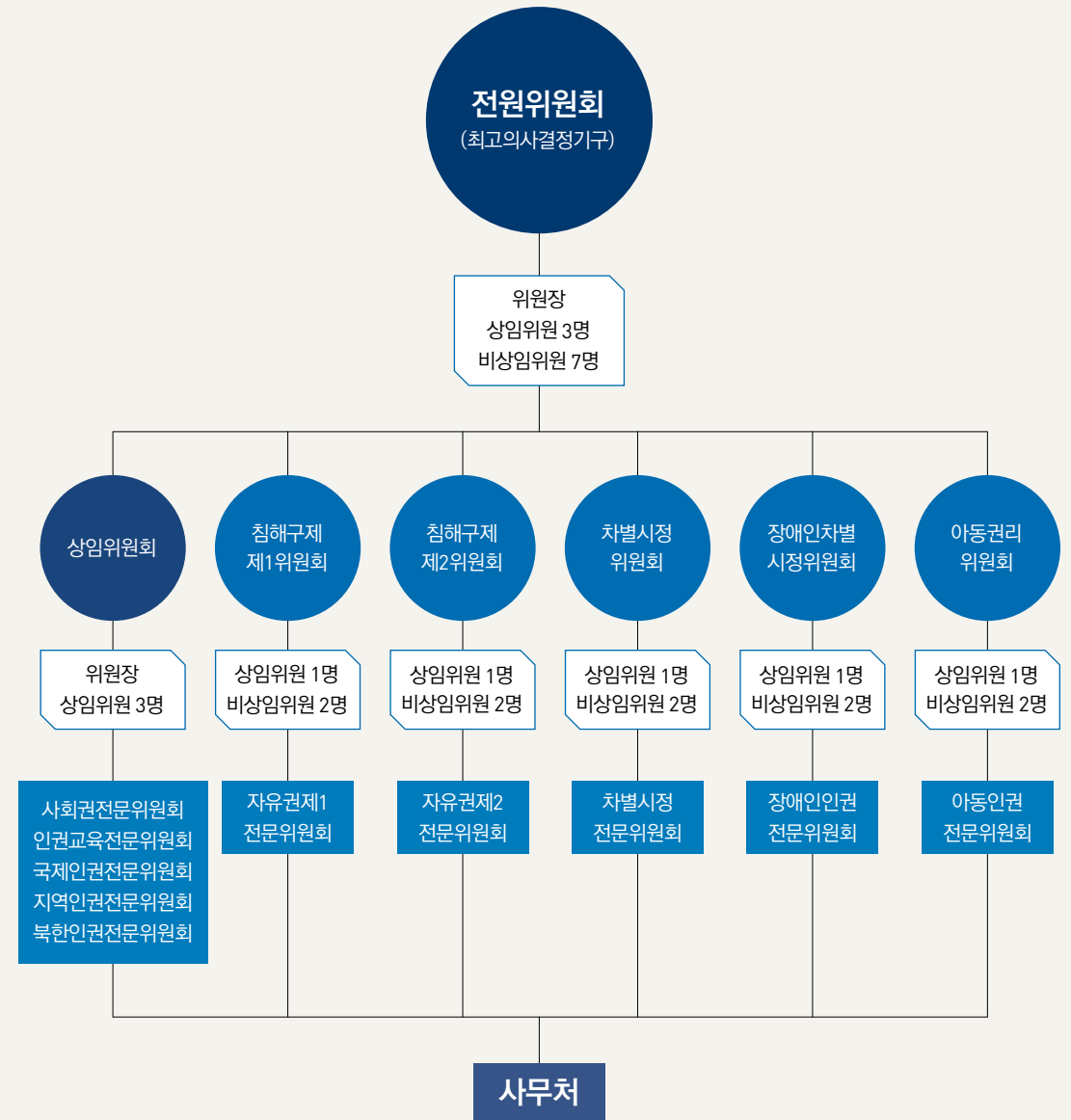
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정무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 연구사	경감
계	234	4	6	3	19	14	57	57	44	8	20	1	1
본부	190	4	6	3	14	14	47	48	34	3	15	1	1
소속	44	0	0	0	5	0	10	9	10	5	5	0	0

※ 교육훈련, 파견,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및 공무원 직원은 정원에서 제외

위원회 의사운영 체계도



예산 변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19,203 (100.0)	18,919 (100.0)	19,617 (100.0)	20,406 (100.0)	21,558 (100.0)	21,909 (100.0)	23,349 (100.0)	23,373 (100.0)	22,285 (100.0)	22,079 (100.0)
인건비	5,309 [27.6]	7,199 [38.1]	7,665 [39.1]	8,317 [40.8]	9,082 [42.1]	9,962 [45.5]	11,117 [47.6]	11,308 [48.4]	10,869 [48.8]	10,316 [46.7]
기본 경비	9,372 [48.8]	6,355 [33.6]	6,596 [33.6]	6,727 [33.0]	7,136 [33.1]	7,103 [32.4]	7,264 [31.1]	7,200 [30.8]	6,813 [30.6]	6,948 [31.5]
주요 사업비	4,522 [23.5]	5,365 [28.4]	5,356 [27.3]	5,362 [26.3]	5,340 [24.7]	4,844 [22.1]	4,968 [21.3]	4,865 [20.8]	4,603 [20.7]	4,815 [21.8]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23,055 (100.0)	24,091 (100.0)	24,560 (100.0)	26,926 (100.0)	28,176 (100.0)	29,289 (100.0)	31,412 (100.0)	36,683 (100.0)	36,669 (100.0)	37,931 (100.0)
인건비	10,770 [46.7]	11,368 [47.2]	11,742 [47.8]	12,816 [47.6]	13,667 [48.5]	14,147 [48.3]	15,674 [49.9]	17,936 [48.9]	17,885 [48.8]	19,002 [50.1]
기본 경비	7,222 [31.3]	7,047 [29.3]	7,185 [29.3]	7,593 [28.2]	7,608 [27.0]	8,102 [27.7]	8,077 [25.7]	8,152 [22.2]	8,587 [23.4]	8,519 [22.5]
주요 사업비	5,063 [22.0]	5,676 [23.5]	5,633 [22.9]	6,517 [24.2]	6,901 [24.5]	7,040 [24.0]	7,661 [24.4]	10,595 [28.9]	10,197 [27.8]	10,410 [27.4]

역대 전원위원회 운영실적

회차	일자	안건	구분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1-01	10.11.	인권위 시행령(안)	의결	2002-03	01.28.	제천시 장애인 승진차별사건 진술청취	기타
2001-01	10.11.	인권위 사무총장 제청안에 대한 심의	의결	2002-04	02.14.	위원회 회의 방청요청에 대한 검토	심의
2001-01	10.11.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의결	2002-04	02.14.	제천시 장애인 승진차별사건	심의
2001-01	10.11.	위원회 소속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안)	의결	2002-04	02.1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 규칙	의결
2001-01	10.11.	인권위 운영규칙(안)	의결	2002-05	02.28.	조정위원 위촉에 관한 건	의결
2001-01	10.11.	위원회 정기회의 일정 및 다음 위원회 일정	심의	2002-05	02.28.	면전진정 요구건	심의
2001-01	10.11.	인권위원 워크숍 개최 계획	심의	2002-05	02.28.	테러방지법 의견제출 결과보고	보고
2001-01	10.11.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심의	2002-05	02.28.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 부결상황	보고
2001-01	10.11.	인권위 사무처 기능대행 지정(안)	의결	2002-05	02.28.	비공개회의 진행방안 검토	심의
2001-02	10.25.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보고	2002-06	03.14.	제천시 장애인 승진차별사건에 관한 건	심의
2001-02	10.25.	인권위 자문위원회 규칙(안)	의결	2002-06	03.14.	면전진정 요구건	심의
2001-02	10.25.	인권위원 겸직금지 사유에 대한 제안	심의	2002-06	03.14.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	심의
2001-02	10.25.	인권위 출범 행사계획	심의	2002-06	03.14.	조정위원 위촉에 관한 건	의결
2001-02	10.25.	인권위원 워크숍 계획(임시회의 개최건 포함)	심의	2002-06	03.14.	인권위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결
2001-02	10.25.	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및 특례규정안 공청회 개최계획	심의	2002-07	03.28.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사건	의결
2001-02	10.25.	제1차 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현황	보고	2002-07	03.28.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	심의
2001-03	11.08.	사업계획안 및 겸직금지 규칙에 대한 논의	심의	2002-07	03.28.	제1회 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보고
2001-03	11.08.	인권위 예산안에 관한 사항	의결	2002-07	03.28.	개정행사 및 인권보고 관련사항	보고
2001-03	11.08.	인권위 사무처준비단 규칙(안)	의결	2002-08	04.11.	제천시 장애인 승진차별사건에 대한 논의	심의
2001-03	11.08.	인권위 자문위원회 규칙(안)	의결	2002-08	04.11.	위원회 의사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논의	의결
2001-03	11.08.	위원회 직원채용에 관한 특례규정 수정(안)	의결	2002-08	04.11.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사건	의결
2001-03	11.08.	제1차 전원회의 회의록 보완내용	보고	2002-08	04.11.	인권정책 추진계획	보고
2001-03	11.08.	제2차 전원회의 회의록 승인(안)	의결	2002-09	04.25.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	심의
2001-03	11.08.	인권위법 시행령 수정(안)	보고	2002-09	04.25.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심의
2001-04	11.14.	인권위 출범 직후 위원회 활동계획	심의	2002-09	04.25.	특별기획사업계획(안)	보고
2001-04	11.14.	인권위법 시행령(수정)안	의결	2002-09	04.25.	제6차 세계국가인권기구의 참석결과	보고
2001-05	11.22.	진정접수업무 추진계획	심의	2002-09	04.25.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직원인권교육사업	보고
2001-05	11.22.	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2002-10	05.09.	합의권고로 종결된 경우의 행정처리방안	심의
2001-05	11.22.	인권위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02-10	05.09.	불공정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방안	심의
2001-05	11.22.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책	심의	2002-10	05.09.	국제형사법원 규정비준에 관한 건	심의
2001-05	11.22.	소위원회 위원구성	심의	2002-10	05.09.	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01-05	11.22.	제4차 전원회의(임시) 회의록	의결	2002-10	05.09.	진정접수 현황	보고
2001-05	11.22.	제3차 전원회의 회의록	의결	2002-10	05.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
2001-05	11.2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접수 지침(안)	보고	2002-11	05.23.	국제사면위원회 서한 관련건	심의
2001-05	11.22.	위원 겸직금지 규칙(안)	의결	2002-11	05.23.	대학신입생 모집과정의 연령차별사건	의결
2001-06	12.13.	2002년도 인권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2002-11	05.23.	인권위 징계규칙(안)	의결
2001-06	12.13.	청문회 규칙안	의결	2002-11	05.23.	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01-06	12.13.	테러방지법 청문회 결과	보고	2002-11	05.23.	2003년도 인권위 예산요구(안)	의결
2001-06	12.13.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보고	2002-11	05.23.	중국 판사 및 법학자 면담결과보고서	보고
2001-06	12.1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보고	2002-11	05.23.	제7차 교육과정 인권관련 내용분석 사업계획	보고
2001-06	12.13.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보고	2002-11	05.23.	인권순회교육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보고
2001-06	12.13.	진정접수 결과	보고	2002-11	05.23.	ICC 참여촉구를 위한 아시아 NGO 홍보단 방문결과	보고
2001-07	12.20.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2002-11	05.23.	인권위 자문위원회 규칙(안) 제정에 관한 건	심의
2001-07	12.20.	2002년도 인권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2002-12	06.17.	인권위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02-01	01.10.	인권위 청문회 운영규칙(안)	의결	2002-12	06.17.	미신고 다수인보호시설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심의
2002-01	01.10.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활동 관련	보고	2002-12	06.17.	인권관련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 방안	심의
2002-01	01.10.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 활동 관련	보고	2002-12	06.17.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01진차11)	심의
2002-02	01.24.	면전진정 방문	심의	2002-12	06.17.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차별(01진차2)	심의
2002-02	01.24.	제천시 장애인 승진차별사건 조사보고	심의				
2002-02	01.24.	면전진정시 구금시설의 반응 및 조치 검토사항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2-12	06.17.	인권위 과대로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02-12	06.17.	인권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안)	보고
2002-12	06.17.	APF 및 호주·뉴질랜드 인권위원회 방문결과	보고
2002-12	06.17.	제2차 인권위 워크숍 개최	보고
2002-12	06.17.	일본변호사연합회 방문·면담보고서	보고
2002-12	06.17.	인권현장확인반 활동보고	보고
2002-13	06.27.	호주 및 뉴질랜드 국가인권위 방문보고	보고
2002-13	06.27.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요구(02진인680)	의결
2002-13	06.27.	인권관련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위원회의 대응방안	보고
2002-13	06.27.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01진차11)	심의
2002-13	06.27.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차별(01진차2)	심의
2002-14	07.11.	인권위 조사업무에서의 입중책임 전환	심의
2002-14	07.11.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차별(01진차2)	의결
2002-14	07.11.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01진차11)	의결
2002-14	07.11.	6월말 현재 진정사건 관련 통계보고	보고
2002-15	07.25.	의결서의 소수 의견 기재 등에 관한 건	심의
2002-15	07.25.	인권위 조사업무에서의 입중책임 전환	심의
2002-15	07.25.	사생활의 비밀침해(02진인1036외 14건)	의결
2002-15	07.25.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01진차3)	의결
2002-15	07.25.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차별(01진차2)	의결
2002-15	07.25.	미디어와 인권교육관련 APF워크숍 참가결과보고	보고
2002-16	08.22.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보고(제천시 장애인 차별사건)	보고
2002-16	08.22.	7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2-16	08.22.	장애인이동권연대 단식농성 관련보고	보고
2002-16	08.22.	인권위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02-16	08.22.	나이를 이유로 한 교수모집 차별(01직차1)	의결
2002-16	08.22.	진주교도소 인권위 진정방해건	의결
2002-16	08.22.	전향 장기수 복송차별에 대한 진정(01진차39)	심의
2002-16	08.22.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02진차20)	심의
2002-16	08.22.	인권위 법률구조 규칙 제정(안)	의결
2002-17	08.26.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보고
2002-17	08.26.	전향 장기수 복송차별에 대한 진정(01진차39)	심의
2002-17	08.26.	교도소 인권위 진정방해건	의결
2002-18	09.09.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심의
2002-18	09.09.	전향 장기수 복송차별에 대한 진정	심의
2002-18	09.09.	알몸수색 인권침해건	의결
2002-18	09.09.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차별	의결
2002-18	09.09.	인권위 법률구조 규칙 제정(안)	의결
2002-18	09.09.	인권영화프로젝트 기획	보고
2002-18	09.09.	8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2-19	09.23.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심의
2002-19	09.23.	전향 장기수 복송차별에 대한 진정	심의
2002-19	09.23.	알몸수색 인권침해건	의결
2002-19	09.23.	면전진정 중간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02-19	09.23.	진정접수 현황(사무처 구성 전후의 통계 일원화 결과)	보고
2002-19	09.23.	인권안화진 제작 기획(안)	보고
2002-19	09.23.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차별	의결
2002-20	10.14.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2002-20	10.14.	알몸수색 인권침해건	의결
2002-20	10.14.	경찰서 가혹행위 등 진정사건	의결
2002-20	10.14.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정차별	의결
2002-20	10.14.	9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2-21	10.28.	구치소 환자방치 사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2-21	10.28.	발산역 철제어리프트 사고건	의결
2002-21	10.28.	경찰서 가혹행위 등 진정사건	의결
2002-21	10.28.	캐나다 방문 결과보고	보고
2002-22	11.18.	10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2-22	11.18.	발산역 철제어리프트 사고건	의결
2002-22	11.18.	나이를 이유로 한 교수모집 차별(01직차1)	의결
2002-22	11.18.	불공정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방안	심의
2002-22	11.18.	APF 회의참석 관련 언론보도	보고
2002-23	12.09.	ICPA 제4차 연례회의 참가결과	보고
2002-23	12.09.	11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2-23	12.09.	제3회 인권위 워크숍 관련	보고
2002-23	12.09.	APF 제7차 연례회의 참가결과	보고
2002-23	12.09.	교도소 징벌관 남용건	의결
2002-23	12.09.	중국동포 강제퇴거 진정사건	의결
2002-23	12.0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의결
2002-23	12.09.	기간제 교사 고용차별(02진차64)	심의
2002-23	12.09.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 주제 선정사항	심의
2002-24	12.23.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 주제 선정사항	심의
2002-24	12.23.	인권위 운영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2-24	12.23.	인권위 보상금 지급 규칙(안)	의결
2002-24	12.23.	서신검열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	의결
2002-24	12.23.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의결
2002-24	12.23.	중국동포 강제퇴거 진정사건(02진인1428)	의결
2002-24	12.23.	○○○○병원 진정사건	의결
2002-24	12.23.	2003년도 업무계획(안)	심의
2002-24	12.23.	수사과정상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권고 및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 검토	심의
2003-01	01.13.	부산만덕정신병원 사건	의결
2003-01	01.13.	기간제 교사 고용차별(02진차64)	심의
2003-01	01.13.	2003년도 업무계획(안)	심의
2003-01	01.13.	02년 12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01	01.13.	중국동포 강제퇴거 진정사건(02진인1428)	의결
2003-02	01.27.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신규교원 임용차별	심의
2003-02	01.27.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차별행위 개선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수용불가에 대한 공표건	심의
2003-02	01.27.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인권연안 건의	심의
2003-02	01.27.	삼일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분장에 관한 건	의결
2003-02	01.27.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
2003-02	01.27.	피의자 고문치사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건	의결
2003-03	02.10.	제32차 UN아동권리위원회 참가결과	보고
2003-03	02.10.	1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03	02.10.	인권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수정	의결
2003-03	02.10.	처우관련 기본권 침해에 관한 진정	의결
2003-03	02.10.	시설 등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의결
2003-03	02.10.	피의자 고문치사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건	의결
2003-03	02.10.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03-03	02.10.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03-03	02.10.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검토	심의
2003-04	02.24.	피의자 고문치사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건	의결
2003-04	02.24.	호주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	심의
2003-04	02.24.	유치장내 흡연권 보장	심의
2003-04	02.24.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검토	심의
2003-05	03.10.	2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05	03.10.	북파공작원 관련현황 및 정책권고 검토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3-05	03.10.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검토	심의
2003-05	03.10.	기간제 교사 고용차별(02진차64)	심의
2003-05	03.10.	호주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	의결
2003-05	03.1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3-05	03.10.	2002년 연간보고서 발간 추진경과	보고
2003-05	03.10.	서신검열인 관련규칙 개정 권고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보고
2003-05	03.10.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교원임용차별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3-05	03.10.	국적차별에 관한 진정사건(02진차30, 02진차31)	심의
2003-06	03.24.	정밀신체검사 관련 특별인권교육 결과	보고
2003-06	03.24.	인권위 운영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3-06	03.24.	서신검열인 관련규칙 개정 권고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보고
2003-06	03.24.	○○경찰서 표현의 자유침해(02진인1691)	의결
2003-06	03.24.	기간제 교사 고용차별(02진차64)	의결
2003-06	03.2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3-07	03.26.	인권위의 반전·평화·인권선언에 관한 건	의결
2003-08	04.1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3-08	04.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검토	심의
2003-08	04.14.	부당수사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논의	심의
2003-08	04.14.	불공정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심의
2003-08	04.14.	서신검열인 관련규칙 개정 권고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보고
2003-08	04.14.	3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09	04.28.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	심의
2003-09	04.28.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검토	심의
2003-09	04.28.	지방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행사	보고
2003-09	04.2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3-10	05.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검토	심의
2003-10	05.12.	직업재활훈련 대상자 선정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회신내용	보고
2003-10	05.12.	4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11	05.26.	부당수사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논의	심의
2003-11	05.26.	2004년도 인권위 예산요구(안)	의결
2003-11	05.26.	불공정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심의
2003-12	06.09.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제출	의결
2003-12	06.09.	5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12	06.09.	지역순회 인권상담 및 홍보행사결과	보고
2003-12	06.0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검토 보고	심의
2003-13	06.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검토 보고	심의
2003-13	06.23.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의결
2003-13	06.23.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
2003-14	07.14.	수용자의 집필권 침해사건 조사결과 보고	심의
2003-14	07.14.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대응방안	심의
2003-14	07.1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관련 검토 보고	심의
2003-14	07.14.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	의결
2003-14	07.14.	피진정인 특별인권교육 시행결과(2003년 상반기)	보고
2003-14	07.14.	6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15	07.28.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의 진정사건	의결
2003-15	07.28.	수용자 집필권 침해사건에 관한 논의	심의
2003-16	08.25.	군인건강보험 배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진정	의결
2003-16	08.25.	수용자 집필권 침해사건에 관한 논의	심의
2003-16	08.25.	7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16	08.25.	조계개정(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 삭제) 관련 시정권고 요구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3-16	08.25.	투표권 배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건	심의
2003-17	09.08.	8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17	09.08.	군인건강보험 배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의 진정	의결
2003-17	09.08.	특수경력직공무원 육아휴직 배제	의결
2003-17	09.08.	정치관계법 등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	심의
2003-18	09.22.	사회적 신분예외에 의한 고용차별	심의
2003-18	09.22.	경찰의 징계권고 거부에 대한 건	심의
2003-18	09.22.	사생활의 자유침해	의결
2003-18	09.22.	특수경력직 공무원 육아휴직 배제	의결
2003-18	09.22.	병원보직해임처분 등 사건에 관한 논의	의결
2003-19	10.13.	9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19	10.13.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관련 항고에 대한 검찰처분	보고
2003-19	10.13.	조계개정(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 삭제) 관련 시정권고 요구건	의결
2003-19	10.13.	인권위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의결
2003-19	10.13.	장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의결
2003-19	10.13.	인격권 침해 진정사건	의결
2003-19	10.13.	대학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심의
2003-19	10.13.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심의
2003-20	10.27.	인격권 침해 진정사건	의결
2003-20	10.27.	대학교수의 여제자 성희롱	심의
2003-20	10.27.	구급시설에 초빙된 의사의 진료행위가 조사대상인지 여부	심의
2003-21	11.10.	10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21	11.10.	인권위 징계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3-21	11.10.	구급시설에 초빙된 의사의 진료행위가 조사대상인지 여부	심의
2003-21	11.10.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심의
2003-22	11.24.	편파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심의
2003-22	11.24.	교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심의
2003-22	11.24.	교육청의 시정권고 이행유보 결정 관련	보고
2003-23	12.08.	11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3-23	12.08.	교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의결
2003-23	12.08.	법원행정처의 권고사항 이행결과	보고
2003-23	12.08.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 및 아동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의견	의결
2003-23	12.08.	미가입 여성협약 선택의정서 및 아동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의견	의결
2003-23	12.08.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2003-23	12.08.	대학시간강사 차별사건 검토	의결
2003-24	12.22.	출신국가에 의한 고용차별	의결
2003-24	12.22.	인권위 보상금 지급규칙 중 개정(안)	의결
2003-24	12.22.	사회보호법 TFT 제1차 제출의견 검토	보고
2004-01	01.12.	영장없는 압수수색의 적정성 관련 검토건	심의
2004-01	01.12.	출신국가에 의한 고용차별	의결
2004-01	01.12.	대학시간강사 차별사건	의결
2004-01	01.12.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관련 의견(안)	의결
2004-01	01.12.	기 인용사건과 동일·유사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심의
2004-01	01.12.	2003년 12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4-02	01.26.	기 인용사건과 동일·유사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심의
2004-02	01.26.	기업의 채용상 차별행위 조사결과	심의
2004-02	01.26.	인권위법 시행령 개정령(안) 추진상황	보고
2004-02	01.2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칙 개정(안)	의결
2004-02	01.26.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의결
2004-02	01.26.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4-02	01.26.	신행정수도로의 청사 이전에 대한 검토건	심의
2004-03	02.09.	법령제도 개선(신원조사제도)	심의
2004-03	02.09.	행정심판 청구결정(진정사건 기각처분 취소)	심의
2004-03	02.09.	○○경찰서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심의
2004-03	02.09.	피의자 부재중 긴급 압수·수색의 적법성 검토	심의
2004-03	02.09.	○○경찰서 집회참여 방해건	의결
2004-03	02.09.	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등 사유 발생시 사건처리방안	의결
2004-03	02.09.	2003년 연간보고서 발간 추진경과	보고
2004-03	02.09.	200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04-03	02.09.	1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4-04	02.23.	가평은혜기도원 가혹행위 진정사건	의결
2004-04	02.23.	서초경찰서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의결
2004-04	02.23.	과천경찰서의 집회참여 방해건	의결
2004-04	02.23.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안)	의결
2004-04	02.23.	TFT 운영계획(안)(주제: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보고
2004-04	02.23.	인천지검 가혹행위 진정사건	의결
2004-05	03.08.	가평은혜기도원 가혹행위 진정사건	의결
2004-05	03.08.	장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의결
2004-05	03.08.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차별	심의
2004-05	03.08.	보고전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심의
2004-05	03.08.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	의결
2004-05	03.08.	교육인적자원부의 평등권 침해	심의
2004-05	03.08.	2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4-05	03.08.	대전시교육청, 시정권고 이행유보 결정 관련	보고
2004-05	03.08.	구제조치 다양화 방안	의결
2004-06	03.22.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의결
2004-06	03.22.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	의결
2004-06	03.22.	탈북자 생존권 관련 진정사건	의결
2004-06	03.22.	사회적 신분에 의한 고용차별	심의
2004-06	03.22.	보고전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심의
2004-07	04.12.	3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4-07	04.12.	탈북자 생존권 관련 진정사건	의결
2004-07	04.12.	보고전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심의
2004-08	04.2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안)	의결
2004-08	04.26.	교육인적자원부의 평등권 침해	심의
2004-08	04.26.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	심의
2004-08	04.26.	문서실무사 관련 추가조사내용	보고
2004-09	05.10.	국가정보원 귀화인 정보원 강요사건	의결
2004-09	05.10.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 관련건	의결
2004-09	05.10.	성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서울YMCA 총회에서의 여성참여 및 의견전 배제)	의결
2004-09	05.10.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관련 평등권 침해	의결
2004-09	05.10.	인권위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결
2004-09	05.10.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에 대한 위원회 검토	심의
2004-09	05.10.	4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4-09	05.10.	행복추구권 침해(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문제 제도 개선)	의결
2004-10	05.24.	서초경찰서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치결과(수용)	보고
2004-10	05.24.	수용자 진정권 보장을 위한 협조요청사항에 대한 법무부의 수용결과	보고
2004-10	05.24.	연대책임에 의한 TV 및 선풍기 사용제한 진정사건 조치결과(수용)	보고
2004-10	05.24.	법무부의 수용자 처우개선 조치결과(수용)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4-10	05.24.	한신대 고용차별사건 관련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재임용 심사 없이 4년간 재고용)	보고
2004-10	05.24.	장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조정성립)	보고
2004-10	05.24.	2005년도 인권위 예산안	의결
2004-10	05.24.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각급학교 일용직 영양사 관련)	의결
2004-10	05.24.	평등권 침해(국립묘지 안장차별)	의결
2004-10	05.24.	대학시간강사 차별사건	의결
2004-10	05.24.	충주경찰서 밀실조사 관련 위원회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수용)	보고
2004-11	06.14.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구속전 피의자 심문신청권 침해)	보고
2004-11	06.14.	수용자 외부병진 진료거부	보고
2004-11	06.14.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직장통지로 사생활 침해	보고
2004-11	06.14.	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긴급체포 사실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보고
2004-11	06.14.	5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4-11	06.14.	대응감방 처우 및 운영실태 관련	심의
2004-11	06.14.	육군본부의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04-11	06.14.	중형선고 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 계구사용	의결
2004-11	06.14.	평등권 침해(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차별)	의결
2004-11	06.14.	인천지검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보고
2004-11	06.14.	부당서신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보고
2004-11	06.14.	법률구조요청 수용	보고
2004-11	06.14.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등	의결
2004-11	06.14.	교도관의 폭언 등에 의한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	보고
2004-12	06.28.	미결수용자 종교침회 허용	보고
2004-12	06.28.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사학연금가입 차별	의결
2004-12	06.28.	수사권 남용	보고
2004-12	06.28.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제한 관련 평등권 침해	의결
2004-12	06.28.	공기업의 직원 공개채용시 나이 및 학력차별	의결
2004-12	06.28.	전과 등을 이유로 한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의결
2004-12	06.28.	강제 지문채취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04-12	06.28.	탈북여성 정착지원 관련건	의결
2004-12	06.28.	교원의 도서·벽지 가산점 관련 인권침해	의결
2004-12	06.28.	대응감방 처우 및 운영실태 관련	심의
2004-12	06.28.	병합사건 결정문 통보방안 관련	심의
2004-12	06.28.	구인장 집행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건	보고
2004-12	06.28.	제자 성희롱 사건	보고
2004-12	06.28.	영치품 운동화 착용 허용	보고
2004-12	06.28.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보고
2004-13	07.12.	병합사건 결정문 통보방안 관련	심의
2004-13	07.12.	6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004-13	07.12.	법무부의 수용자 관련 규칙 제·개정 사항	보고
2004-13	07.12.	변호인 점검교통권 침해 외 2건	보고
2004-13	07.12.	사회적신분(영양사)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보고
2004-13	07.1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사학연금가입 차별	의결
2004-13	07.12.	육군본부의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04-13	07.12.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외 1건	심의
2004-13	07.12.	대응감방 처우 및 운영실태 관련	심의
2004-14	07.26.	긴급체포 관련 권고 수용거부에 대한 검토	보고
2004-14	07.26.	제1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불심검문시 적법절차 위반건 외 1)	보고
2004-14	07.26.	국가보안법 관련 검토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4-14	07.26.	해외파견교사 직급별 나이제한 차별건	의결
2004-14	07.26.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준비상황	보고
2004-14	07.26.	제3소위 권고, 수용사항(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보고
2004-15	08.09.	국가보안법 관련 검토	의결
2004-15	08.09.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의결
2004-15	08.09.	징벌·계구규칙 제·개정안의 의견표명에 대한 결과	보고
2004-15	08.09.	제3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보고
2004-15	08.09.	제2소위원회 수사외리사건 조치결과(전북지방경찰청수사본부의 가혹행위사건)	보고
2004-15	08.09.	7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4-16	08.23.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 차별)	보고
2004-16	08.23.	제2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전과 사면복권 관련 인권 침해)	보고
2004-16	08.23.	진정사건 병합 및 결정문 통지에 관한 검토	심의
2004-16	08.23.	재판중 병역기피자 제재조치 관련 사건	의결
2004-16	08.23.	국가보안법 관련 검토	의결
2004-17	09.06.	국가보안법 권고건 결정문 검토	심의
2004-17	09.06.	인천지검 가혹행위사건 수사외리 결과 보고	심의
2004-17	09.06.	부산구치소의 외부교통권 침해사건	의결
2004-17	09.06.	개인택시면허 취소관련 법령개정요구 진정건	의결
2004-17	09.06.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사학연금가입 차별사건	의결
2004-17	09.06.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추진경과	보고
2004-17	09.06.	8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4-18	09.20.	제1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군외문사 관련 정책권고건)	보고
2004-18	09.20.	제2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서대문경찰서 부당 면회금지 관련건 외 1)	보고
2004-18	09.20.	개인택시면허 취소관련 법령개정요구 진정건	의결
2004-19	10.11.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의결
2004-19	10.11.	공기업의 모집시 나이 및 학력차별	의결
2004-19	10.11.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공로연수실시 차별	의결
2004-19	10.11.	제3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해외파견공무원 직급별 나이차별건)	보고
2004-19	10.11.	제2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서울동부지검 성범죄피해자 보호조치 소홀건)	보고
2004-19	10.11.	제1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주선양총영사관 사증발급 불허 건 외 3)	보고
2004-19	10.11.	9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4-20	10.2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요구	의결
2004-20	10.25.	인권백서 발간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2004-20	10.25.	제2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수원지검 면회금지건)	보고
2004-20	10.25.	제1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비밀전학생 신상정보 보호건)	보고
2004-20	10.25.	민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의결
2004-21	11.08.	인권백서 발간 및 배포계획	보고
2004-21	11.08.	제1소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수용자 교정작품 저작권침해건 외 2)	보고
2004-21	11.08.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군 전공사상자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건 외 2)	보고
2004-21	11.08.	10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4-21	11.08.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의결
2004-21	11.08.	대구달서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처우관련	의결
2004-22	11.22.	전원위 권고, 수용사항(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개의 선택의정서 가입권고)	보고
2004-22	11.22.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서초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4-22	11.22.	행복추구권 침해(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문제 제도 개선)	의결
2004-22	11.22.	수용자 외부교통권 등 인권침해	의결
2004-23	12.13.	의문사위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04-23	12.13.	상당통계조정(안)	보고
2004-23	12.13.	11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4-23	12.13.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심의
2004-24	12.27.	인권위 사무총장 제청(안)	의결
2004-24	12.27.	인권위 운영 개요	보고
2004-24	12.27.	울산남부서 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결
2004-24	12.27.	전원위원회 정기회의 일정	심의
2005-01	01.10.	2004년 연간보고서 발간 기본계획(안)	보고
2005-01	01.10.	2004년 12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01	01.10.	부안 핵폐기장 설치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의결
2005-01	01.10.	인천계양경찰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05-01	01.10.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결
2005-01	01.10.	인권위법 개정안 추진현황	보고
2005-02	01.17.	인권위법 개정(안)	의결
2005-02	01.17.	직권조사 결정(경북 칠곡 화재공장 장애인보험가입 거절 관련)	보고
2005-03	01.24.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의결
2005-03	01.24.	부안 핵폐기장 설치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의결
2005-03	01.24.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	의결
2005-04	02.14.	휴무일 실의운동 미실시 및 점검권 제한	의결
2005-04	02.14.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강요 등 인권침해	의결
2005-04	02.14.	부안 핵폐기장 설치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의결
2005-04	02.14.	신원조사제도 개선방안(신원조사 관련 권고대상 결정)	의결
2005-04	02.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의결
2005-04	02.14.	제도개선 요구 진정의 처리방안	보고
2005-04	02.14.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보고
2005-04	02.14.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의결
2005-04	02.14.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재판 진행중인 병역기피자 제재조치)	보고
2005-04	02.14.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유보조항 철폐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심의
2005-04	02.14.	1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05	02.28.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유보조항 철폐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심의
2005-05	02.28.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의결
2005-05	02.28.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의결
2005-05	02.28.	휴무일 실의운동 미실시 및 점검권 제한	의결
2005-05	02.2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의결
2005-05	02.28.	인권위법(정부제출안) 추진현황	보고
2005-05	02.28.	국회 업무현황 보고서	보고
2005-05	02.28.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05-06	03.14.	2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06	03.14.	사이버인권교육 콘텐츠 구축사업	보고
2005-06	03.14.	차별행위 시정 권고, 수용사항	보고
2005-06	03.14.	한센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보고
2005-06	03.14.	2005년 업무계획(안)	의결
2005-06	03.14.	2005년 북한인권연구사업 계획	의결
2005-06	03.14.	경기이전경찰서 불법체포 등의 건	의결
2005-06	03.14.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유보조항 철폐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심의
2005-06	03.14.	인권위 워크숍 실시계획(안)	심의
2005-06	03.14.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5-07	03.28.	전자선거공보의 규격제한건	의결
2005-07	03.28.	인신보호법에 관한 검토	의결
2005-07	03.2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	의결
2005-07	03.28.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의결
2005-07	03.28.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결
2005-07	03.28.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선정 보고 및 향후 추진일정	보고
2005-07	03.28.	방문조사 실시계획	보고
2005-07	03.28.	2005년 2~3월중 법령 질의·회신내용	보고
2005-07	03.2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결
2005-08	04.06.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	의결
2005-08	04.06.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결
2005-08	04.0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	의결
2005-08	04.06.	3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08	04.06.	차별행위 시정권고, 불수용사항(서울 YMCA 사건)	보고
2005-08	04.06.	2004년 연간보고서 발간 및 활용	보고
2005-08	04.06.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의결
2005-08	04.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결
2005-08	04.06.	인신보호법(안) 검토	의결
2005-09	04.11.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	의결
2005-09	04.11.	정신보건시설 인권개선 방안	의결
2005-09	04.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유보조항 철회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의결
2005-09	04.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결
2005-09	0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결
2005-09	04.11.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결
2005-10	04.25.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심의
2005-10	04.25.	제61차 UN인권위원회 제5주차(APF회의 및 ICC회의) 참가	보고
2005-10	04.25.	인권위 기구도 수정	보고
2005-10	04.25.	위원회 내부 인터넷 활용을 위한 원격접속 활용방법	보고
2005-10	04.25.	전원위원회 권고, 수용사항(0000경찰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보고
2005-11	05.09.	4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11	05.09.	경주시의 권고, 불수용사항(개인택시 면허 발급건)	보고
2005-11	05.09.	NAP 권고안 개요 및 추진현황	보고
2005-11	05.09.	행정자치부 사생활 관련 인권침해	의결
2005-11	05.09.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05-11	05.09.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의결
2005-12	05.23.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과정의 인권침해	의결
2005-12	05.23.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검토(안)	의결
2005-12	05.23.	직권조사(음성정신병원) 중간보고	보고
2005-12	05.23.	대구교도소 방문조사 중간보고	보고
2005-12	05.23.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2005-12	05.23.	2006년도 인권위 예산(안) 편성방향	보고
2005-13	06.13.	5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13	06.13.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보고
2005-13	06.13.	경주시의 권고, 불수용사항(개인택시 면허 발급건)	보고
2005-13	06.13.	NAP 권고안 경과 및 향후일정	보고
2005-13	06.13.	2005년 4~5월중 법령 질의·회신내용	보고
2005-13	06.13.	감신대의 권고 불수용사항(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보고
2005-13	06.13.	2006년도 인권위 예산요구(안)	의결
2005-13	06.13.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정년차별	의결
2005-13	06.13.	○○교도소의 의료관련 인권침해	의결
2005-14	06.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이행	보고
2005-14	06.27.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5-14	06.27.	학생 두발제한 관련 검토	의결
2005-14	06.27.	법무부 인권국 신설	보고
2005-14	06.27.	GP 수류탄 총기난사사건 기초조사 결과	보고
2005-14	06.27.	행정처분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의결
2005-14	06.27.	인권위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
2005-15	07.11.	국가정보원의 권고이행사항(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	보고
2005-15	07.11.	공기업의 모집시 나이 및 학력차별	의결
2005-15	07.11.	6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15	07.11.	인권 NAP 권고안 검토방안 및 향후일정	심의
2005-15	07.11.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
2005-15	07.11.	금강산 관광 관련 평등권 침해건	심의
2005-15	07.11.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은 지명수배 관련 권고 수용	보고
2005-15	07.11.	북한인권 업무 추진현황	보고
2005-16	07.25.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제정안	의결
2005-16	07.2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결
2005-16	07.25.	인권위 조정위원회 규칙 제정안	의결
2005-16	07.25.	인권위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결
2005-17	08.16.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사건 관련 위원회의 입장	심의
2005-18	08.22.	인권위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심의
2005-18	08.22.	인권 NAP 권고안 관련 위원 워크숍 방안	심의
2005-18	08.22.	금강산 관광 관련 평등권 침해건	의결
2005-18	08.22.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개선 등 관련 검토의견	의결
2005-18	08.22.	7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18	08.22.	인권위 소송현황	보고
2005-19	09.12.	8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19	09.12.	행정처분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권고수용보고(04진인4354)	보고
2005-19	09.12.	인권위 소송현황	보고
2005-19	09.12.	인권위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보고
2005-19	09.12.	정신보건법령 개정 및 정책계고[재상정]	의결
2005-19	09.12.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안	의결
2005-19	09.12.	여권발급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418)	의결
2005-19	09.12.	음성현대정신병원 직권조사결과(05직인11, 05직인12, 04직인45)	의결
2005-20	09.26.	북한인권관련 기본입장 수립 논의	심의
2005-20	09.26.	경찰공무원 채용관련 제도개선(04진차304)	의결
2005-20	09.26.	여권발급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418)	의결
2005-20	09.26.	음성현대정신병원 인권침해 사건(05직인11, 12, 04진인45)	의결
2005-21	10.10.	법령질의 회신보고(05.6-05.9)	보고
2005-21	10.10.	인권위법 제46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의 해석	보고
2005-21	10.10.	9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21	10.10.	차별금지법 성안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2005-21	10.10.	인권위 직제령 개정(안)	의결
2005-21	10.10.	원주교도소의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04진인3848)	의결
2005-21	10.10.	금강산 관광 관련 평등권 침해(03진차655)	의결
2005-21	10.10.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04진인923)	의결
2005-22	10.24.	인권위 조정위원회 위촉	보고
2005-22	10.24.	NAP 권고안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2005-22	10.24.	인권위 정책자문위원 위촉현황	보고
2005-22	10.24.	차별금지법 관련 인권위원 워크숍 계획	보고
2005-22	10.24.	2005년 병역처분기준의 평등권 침해 검토 보고	의결
2005-22	10.24.	원주교도소의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04진인3848)	의결
2005-22	10.24.	권고이행 결과(군공사상자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03진인5724)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5-22	10.24.	북한인권관련 논의	심의
2005-22	10.24.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04진인923)	의결
2005-22	10.24.	금강산 관광 관련 평등 권침해(03진차655)	의결
2005-23	11.14.	차별금지법 인권위원 워크숍 및 향후추진계획 보고	심의
2005-23	11.14.	북한인권관련 논의	심의
2005-23	11.14.	NAP 권고안	심의
2005-23	11.14.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05진인1466)	의결
2005-23	11.14.	여권발급 거부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418)	의결
2005-23	11.14.	반인도적 범죄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검토	의결
2005-23	11.1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	의결
2005-23	11.14.	10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23	11.14.	인권위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보고
2005-24	11.28.	SH공사의 고용차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건(05진차 479)	의결
2005-24	11.28.	인권NAP 권고안	의결
2005-24	11.28.	북한인권관련 논의	심의
2005-24	11.28.	인권위 발전기획(안) 작성관련 상임위원 논의결과	보고
2005-24	11.28.	인권위법 해설집 발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05-24	11.28.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안) 검토	의결
2005-24	11.28.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선방안	의결
2005-25	12.13.	2005년 병역처분기준의 평등권 침해건 진행상황	보고
2005-25	12.13.	11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5-25	12.13.	인권NAP 워크숍 추진방안	보고
2005-25	12.13.	북한인권관련 논의	심의
2005-25	12.13.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선방안	의결
2005-25	12.13.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04진인923)	의결
2005-25	12.13.	불법체류자 구인과 관련한 인권침해(05진인937)	의결
2005-26	12.26.	정책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05-26	12.26.	학생두발제한 관련 권고수용	보고
2005-26	12.26.	두발제한 관련 인권침해 권고수용(05진차119 외 2건)	보고
2005-26	12.26.	북한인권관련 논의	심의
2005-26	12.26.	과잉집압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3941)	의결
2005-26	12.26.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개선방안	의결
2005-26	12.26.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의견	의결
2006-01	01.09.	2005년도 12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01	01.0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개정안	의결
2006-01	01.09.	불법체류자 구인과 관련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의결
2006-01	01.09.	인권위 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	의결
2006-01	01.09.	2006년 제1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보고
2006-02	01.23.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및 인권위 보상금 지급규칙 개정안	의결
2006-02	01.23.	인권위 업무전략 기획안	의결
2006-02	01.23.	북한인권관련 논의	심의
2006-03	02.13.	1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03	02.13.	위원회 공개/비공개 결정 절차 검토	보고
2006-03	02.13.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안	의결
2006-03	02.13.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과 법원의 재판지연 개선에 관한 검토	의결
2006-03	02.13.	인권위 업무전략 기획안 보고	의결
2006-03	02.13.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주거시설 이용차별(05진차305 외 35건)	의결
2006-04	02.27.	사병 의료접근권 침해사건(05진인3581)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6-04	02.27.	인권위 비전선포식 개혁 관련	보고
2006-04	02.27.	보도자료 작성, 배부 개선안	보고
2006-04	02.27.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06-05	03.07.	서울구치소 직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	의결
2006-06	03.13.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안	의결
2006-06	03.13.	2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06	03.13.	사병 의료접근권 침해 사건(05진인3581)	의결
2006-07	03.27.	구속적부심 재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건	의결
2006-07	03.27.	영치금 사용시 지문날인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2712)	의결
2006-07	03.27.	사병 의료접근권 침해사건(05진인3581)	의결
2006-07	03.27.	대학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결
2006-07	03.27.	위원회 결정문상 반대외견 표기 방식	보고
2006-08	04.10.	영치금 사용시 지문날인에 의한 인권침해(05진인2712)	의결
2006-08	04.10.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의 제공에 관한 검토	의결
2006-08	04.10.	3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09	04.24.	사병 의료접근권 침해사건(05진인3581)	의결
2006-09	04.2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그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한 위원회 검토보고서	의결
2006-09	04.24.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개정안	의결
2006-09	04.24.	인권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2006-09	04.24.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2006-09	04.24.	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2006-09	04.24.	인권위 징계규칙 개정안	의결
2006-09	04.24.	UN인권이사회의 설립과 국제인권체제의 변화	보고
2006-10	05.08.	4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10	05.08.	북한인권관련	보고
2006-10	05.08.	사회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검토 보고	의결
2006-10	05.08.	사병 의료접근권 침해사건(05진인3581)	의결
2006-10	05.08.	북한인권관련 진정사건 보고	심의
2006-10	05.08.	한센인 인권보호 증진방안	의결
2006-11	05.2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계획 논의	심의
2006-11	05.22.	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06진차 364)	의결
2006-11	05.22.	군대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사건(06진 차87)	의결
2006-11	05.22.	인종차별 철폐협약 관련 제13차 정부보고서 검토의견	의결
2006-11	05.22.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가입관련	보고
2006-11	05.22.	법령 질의 회신 결과	보고
2006-12	06.12.	군대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사건(06진 차87)	의결
2006-12	06.12.	인천지검 폭행 및 구속행위 등 사건(05진인1891)	의결
2006-12	06.12.	행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결
2006-12	06.12.	2007년도 예산요구안	의결
2006-12	06.12.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결
2006-12	06.12.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결
2006-12	06.12.	5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12	06.12.	남북차 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06-13	06.26.	군대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사건(06진 차87)	의결
2006-13	06.26.	인천지검 폭행 및 구속행위 등 사건(05진인1891)	의결
2006-13	06.2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116, 06진차136)-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의결
2006-13	06.26.	기부금 모집 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	의결
2006-14	07.10.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116, 06진차136)-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6-14	07.10.	광주인화특수학교 및 인화원 성폭력사건 직권조사	의결
2006-14	07.10.	교정관련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등	보고
2006-14	07.10.	6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15	07.24.	인권위-국가청소년위원회 양해각서 체결관련 추진상황	보고
2006-15	07.24.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06-15	07.24.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결
2006-15	07.24.	진정공표권 검토	보고
2006-15	07.24.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04진인34,35,36)	의결
2006-15	07.2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116, 06진차136)-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의결
2006-16	08.21.	광주인화특수학교 및 인화원 성폭력사건 직권조사	의결
2006-16	08.2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116, 136)-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	의결
2006-16	08.21.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 차별(05진차 936)-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복지접수 차별	의결
2006-16	08.21.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보고	의결
2006-16	08.21.	양해각서 체결의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보고
2006-17	09.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의결
2006-17	09.11.	중앙인사위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05진 차16)	의결
2006-17	09.1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건부 워크숍 세부추진계획	보고
2006-17	09.11.	8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17	09.11.	사회적신분(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대학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의결
2006-17	09.1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116, 06진차136)	의결
2006-18	09.25.	군인 의료접근권 권고에 따른 수용보고(05진인3581)	보고
2006-18	09.25.	위원회 설립 제5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기념행사	보고
2006-18	09.25.	인권교육법제화 진행경과 및 주요쟁점	보고
2006-18	09.25.	사회적신분(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05진 차100,236,534 06진차 29,171)	의결
2006-18	09.25.	외국군 소속 특수 임무수행자 등 차별(04진기320)	의결
2006-18	09.25.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학습권 보장 방안	의결
2006-18	09.25.	한국까르푸 노동조합 관련 소송사건 1심 결과 보고	심의
2006-18	09.25.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1592)	의결
2006-19	10.09.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1592)	의결
2006-19	10.09.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자 등 차별(04진기320)	의결
2006-19	10.09.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	의결
2006-19	10.09.	재건축 재개발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의결
2006-19	10.09.	사회적신분(학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05진 차100,236,534 06진인29,171)	의결
2006-19	10.09.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진행	보고
2006-19	10.09.	한국까르푸 노동조합 관련 제1심 소송결과 보고	심의
2006-20	10.23.	9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20	10.23.	성희롱사건 손해배상 권고 및 합의사례	보고
2006-20	10.23.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 차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복지접수 차별	의결
2006-20	10.23.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에 관한 검토의견	의결
2006-20	10.23.	ILO강제근로 관련 협약에 대한 가입 권고	의결
2006-20	10.23.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1592)	의결
2006-21	11.13.	위원회 설립 제5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기념행사 추진상황	보고
2006-21	11.1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추진현황	보고
2006-21	11.13.	제8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 결과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6-21	11.13.	ILO강제근로 관련 협약 가입 권고 검토	의결
2006-21	11.13.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5진차662, 06진차 468,469,472,502)	의결
2006-21	11.13.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안)	의결
2006-21	11.13.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1592)	의결
2006-22	11.27.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안)	심의
2006-22	11.27.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1592)	의결
2006-22	11.2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 규칙 개정(안)	의결
2006-22	11.27.	독직폭행 고발 등 조치 수용	보고
2006-22	11.27.	권고사항 수용 및 불수용 보고: 부산해피징장 설치 반대 집회 관련 신체의 자유 등 침해	보고
2006-22	11.27.	10월말 현재 진정·상담·안내 접수현황	보고
2006-23	12.07.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안)	심의
2006-24	12.11.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안)	의결
2006-24	12.11.	성희롱(06진차465)	의결
2006-25	12.26.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06-25	12.26.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 관련	보고
2006-25	12.26.	성희롱(06진차465)	의결
2006-25	12.26.	북한인권관련 논의(2005.12.26 제26차 전원위로 수정)	심의
2006-25	12.26.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06-25	12.26.	인권위 진단을 위한 전국법학교수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06-25	12.26.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보고방안 검토	보고
2007-01	01.0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07-01	01.08.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안)	의결
2007-01	01.08.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정(안)	심의
2007-01	01.08.	회의결과 및 회의록 보고	기타
2007-01	01.08.	2007년도 예산	보고
2007-01	01.08.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관련	보고
2007-02	01.22.	인권위-전남대 인권증진 교류협정서 체결 결과	보고
2007-02	01.22.	2006년도 진정·상담·안내·접수 현황	보고
2007-02	01.22.	2006년도 TFT 운영현황	보고
2007-02	01.22.	제2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2	01.22.	수사·재판 관련 각하사건 분석	보고
2007-02	01.22.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업무대행기관 선정 중심)	의결
2007-03	02.12.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67)	의결
2007-03	02.12.	제3차 전원위원회 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3	02.12.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망사건 개요 및 조사계획	보고
2007-03	02.12.	권고수용: 대학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보고
2007-03	02.12.	HIV/AIDS 관련 인권정책 검토	의결
2007-03	02.12.	각하사건 처리 개선안	의결
2007-03	02.12.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칙으로 인한 인권침해(05진차 297)	의결
2007-04	02.26.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의결
2007-04	02.26.	HIV/AIDS 관련 인권정책 검토	의결
2007-04	02.26.	원폭피해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07-04	02.26.	제4차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4	02.26.	진정·상담·민원·안내 처리현황	보고
2007-04	02.26.	정부(법무부) 인권NAP 초안분석	보고
2007-05	03.12.	제5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5	03.12.	한미FTA 집회관련 보고	기타
2007-05	03.12.	외국군 소속 특수임무 수행자 등 차별(04진기320)	의결
2007-05	03.12.	권고수용: 항공사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06진 차502 등 4건)	보고
2007-05	03.12.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TFT안) 수정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7-05	03.1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7-06	03.26.	위원회-영남대 교류협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	의결
2007-06	03.26.	2007년 제6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6	03.26.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개선방안	의결
2007-06	03.26.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수정(안)	의결
2007-06	03.26.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의결
2007-06	03.26.	한미FTA 반대집회(3.25) 인권지킴이단 활동	보고
2007-06	03.26.	진정·상담·민원·안내 처리현황	보고
2007-07	04.09.	2007년 제7차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7	04.09.	골프장 경기보조원 나이차별 사건	의결
2007-07	04.09.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67)	의결
2007-07	04.09.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 직권조사 결과	의결
2007-07	04.09.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07-07	04.09.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의견수렴 결과	보고
2007-07	04.09.	제1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참가 결과	보고
2007-08	04.23.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67)	의결
2007-08	04.23.	2007년 제8차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8	04.23.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5진차345)	의결
2007-08	04.23.	골프장 경기보조원 나이차별 사건(05진차536)	의결
2007-08	04.23.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07-08	04.23.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007-08	04.23.	진정·상담·민원·안내 처리현황	보고
2007-09	05.14.	2007년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9	05.14.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5진차345)	의결
2007-09	05.14.	골프장 경기보조원 나이차별 사건(05진차536)	의결
2007-09	05.14.	진정·상담·민원·안내 처리현황	보고
2007-10	05.28.	각하사건 처리 개선안 의결	의결
2007-10	05.28.	2007년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0	05.28.	보호외국인 강제 격리로 인한 인권침해(07진인771)	의결
2007-11	06.25.	2008년도 예산요구(안)	의결
2007-11	06.25.	제5차 UN 인권이사회 및 제1차 ICC 집행이사회 참석	보고
2007-11	06.25.	결정문 작성 개선방안	보고
2007-12	07.09.	보호외국인 강제격리로 인한 인권침해(07진인771)	의결
2007-12	07.09.	2007년 제12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2	07.09.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메이콤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 적용차별(06진차272))	의결
2007-12	07.09.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소방공무원 임용시 남녀 구분모집에 의한 고용차별(05진차430))	의결
2007-13	07.23.	2007년 제13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3	07.23.	진정·상담·민원·안내 처리현황	보고
2007-13	07.23.	군인복무기본법(안) 의견표명 수용 여부 및 향후계획	보고
2007-13	07.23.	금급구제조치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07-13	07.23.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방안 검토 보고	의결
2007-13	07.23.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72)	의결
2007-13	07.23.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175)	의결
2007-13	07.23.	KT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06진차 204)	의결
2007-13	07.23.	한국씨티은행의 간기능 저하자 신입사원 고용차별(06진 차621)	의결
2007-14	08.27.	씨티은행의 간기능 저하자 신입사원 고용차별(06진차 621)	의결
2007-14	08.27.	나이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04)	의결
2007-14	08.27.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175)	의결
2007-14	08.27.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7-14	08.27.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소방공무원 임용시 남녀 구분모집에 의한 고용차별(05진차430))	의결
2007-14	08.27.	금급구제조치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07-14	08.27.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의견 권고수용	보고
2007-14	08.27.	2007년 제14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4	08.27.	차별시정위원회 진정사건 권고결정(사각장애인 주주에게 점자로 변형된 주주총회자료 미제공)	보고
2007-14	08.27.	여수출입국화재사고 직권조사 권고수용	보고
2007-15	09.10.	위원회 의사운영 매뉴얼(안)	보고
2007-15	09.10.	공공부문 청소년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 검토	의결
2007-15	09.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정책 검토	의결
2007-15	09.10.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175)	의결
2007-15	09.10.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권고	의결
2007-15	09.10.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06진차204))	의결
2007-15	09.10.	한국씨티은행의 간기능 저하자 신입사원 고용차별(06진 차621)	의결
2007-15	09.10.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7진차232)	의결
2007-15	09.10.	2007년 제15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6	09.17.	2007년 제16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6	09.17.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7진차232)-기룡전자의 임 금 성차별	의결
2007-16	09.17.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04)-인사고과 평가 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의결
2007-16	09.17.	전문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
2007-16	09.1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정책 검토	의결
2007-16	09.17.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 입에 대한 검토보고	의결
2007-17	10.08.	제12차 AFP 참석 결과	보고
2007-17	10.08.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안)	의결
2007-17	10.08.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04)-KT 인사고과 평가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의결
2007-17	10.08.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7진차232)-기룡전자의 임 금 성차별	의결
2007-17	10.08.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5진차494)-한동대 교수 채용시 종교차별 등	의결
2007-17	10.08.	2007년 제17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8	10.22.	금급구제조치 관련 소관위원회 검토	보고
2007-18	10.22.	2007년 제18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8	10.22.	인권위원의 인권제출 관련 문제제기 검토	보고
2007-18	10.22.	미안마 민주화시위 관련상황 검토	보고
2007-18	10.22.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원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검토	보고
2007-18	10.22.	안양교도소 수용자 폭행사건 권고 경과	보고
2007-18	10.22.	양형자료 통보제도에 관한 의견	의결
2007-18	10.22.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07-18	10.22.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05진차494)-한동대 교수 채용시 종교차별 등	의결
2007-18	10.22.	부산교도소의 인권위 진정방해 등(06진인2118등 8건)	의결
2007-19	11.12.	2007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 결과	보고
2007-19	11.12.	인권위법 개정(안)	의결
2007-19	11.12.	2007년 제19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9	11.12.	부산교도소의 인권위 진정방해 등(06진차272)	의결
2007-19	11.12.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6진차272)	의결
2007-19	11.12.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안)	의결
2007-19	11.12.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7-19	11.12.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의결
2007-19	11.12.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 검토	의결
2007-19	11.12.	양형자료 통보제도에 대한 검토	의결
2007-19	11.12.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헌제청사건 검토	의결
2007-20	11.26.	빈곤가구 단전·단수조치 인권개선 정책 검토	의결
2007-20	11.26.	국회와 정부에 대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중단 촉구 권고 검토	의결
2007-20	11.26.	2007년 제20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20	11.26.	양형자료 통보제도에 대한 검토	의결
2007-20	11.26.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헌제청사건 검토	의결
2007-20	11.26.	인권위법 개정(안)	의결
2007-20	11.26.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07-20	11.26.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법원공무원 8급 및 9급 공채시험 응시상한연령 현법소원)	의결
2007-20	11.26.	조정위원회 위원 추가위촉(안)	의결
2007-20	11.26.	부산교도소의 인권위 진정방해 등(06진인2118등 8건)	의결
2007-20	11.26.	제62차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표결 권고 검토	의결
2007-21	12.17.	무호적자 호적취득제도 개선방안 검토	의결
2007-21	12.17.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07-21	12.17.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제한에 대한 검토	의결
2007-21	12.1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07-21	12.17.	미등록 외국인보호시설 및 외국인교도소 방문조사 결과 보고	의결
2007-21	12.17.	객실 승무원 모집시 성차별(07직차2)	의결
2007-21	12.17.	가납리 새마을부녀회 회원 자격상의 나이제한(07진차 408)	의결
2007-21	12.17.	인권위법 개정안	의결
2007-21	12.17.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안 중간보고	보고
2007-21	12.17.	2007년 제21차 전원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21	12.17.	차별판단지침 작성업무	보고
2008-01	01.14.	UN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별도 정보노트 제출에 관한 건	의결
2008-01	01.14.	집회금지통고 제도에 관한 정책권고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	의결
2008-01	01.14.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의결
2008-01	01.14.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및 인권증진 교류협정서 체결 결과	보고
2008-01	01.14.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	의결
2008-01	01.14.	국립중앙도서관 입관 제한에 대한 검토[재상정]	의결
2008-02	01.17.	인수위의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
2008-03	01.28.	2007년도 진정·상담·민원·인내 처리현황	보고
2008-03	01.28.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직권조사 권고수용	보고
2008-03	01.28.	KT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권고수용	보고
2008-03	01.28.	UN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를 위한 인권위 정보노트 제출 결과	보고
2008-03	01.28.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 관련 검토의견	의결
2008-03	01.28.	2008년 주요업무 계획안	의결
2008-03	01.28.	집회금지통고 제도에 관한 정책권고 및 진정사건 조사 결과[재상정]	의결
2008-04	02.14.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의결
2008-04	02.14.	외국인 HIV감염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 관련 검토	의결
2008-04	02.14.	위원회 독립성(소속 변경) 관련 경과	보고
2008-04	02.14.	제40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참석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8-05	03.1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정책 검토	의결
2008-05	03.10.	세계인권선언6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08-06	03.24.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의결
2008-06	03.24.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의결
2008-07	04.14.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08-07	04.14.	2008년 1분기 북한인권	보고
2008-07	04.14.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추진상황	보고
2008-07	04.1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정책 검토[재상정]	의결
2008-07	04.14.	여행증명서 발급불허 등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의결
2008-07	04.14.	치료강요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08-08	04.28.	부산교도소의 인권위 진정방해·폭행 및 가혹행위, 과도한 계구사용 권고 수용·불수용	보고
2008-08	04.28.	전원위원회 의결(2008.4.14, 제7차) 일부수정	보고
2008-08	04.28.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08진차459)	의결
2008-08	04.28.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07진인 3327)[재상정]	의결
2008-08	04.28.	치료강요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재상정]	의결
2008-09	05.19.	한동대 종교차별사건에 대한 권고불수용	보고
2008-09	05.19.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2008토5) 관련상황	보고
2008-09	05.19.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07진인 3327)[3회상정]	의결
2008-09	05.19.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07진차459)[재상정]	의결
2008-09	05.19.	07진인387사건 관련정책 검토	의결
2008-09	05.19.	정신보건법 제24조 개정 권고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08-10	05.26.	07진인387사건 관련정책 검토	의결
2008-10	05.26.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08-10	05.26.	인권위 조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08-10	05.26.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08-10	05.26.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	의결
2008-10	05.26.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심의 내용 및 평가	보고
2008-11	06.09.	부산대-충남대와 교류협정서 체결 결과	보고
2008-11	06.0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2008-11	06.09.	1-5월 북한인권업무	보고
2008-12	06.23.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
2008-12	06.23.	2009년도 예산요구안	의결
2008-12	06.2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일부개정안 [재상정]	의결
2008-12	06.23.	재중 탈북자 문제	보고
2008-13	07.02.	춧불집회 상황 및 대책	보고
2008-13	07.02.	시각장애인 점거농성에 대한 배경 및 쟁점	보고
2008-14	07.15.	전사·전후 남북피해자 관련 정책권고 현황	보고
2008-14	07.15.	UN사무총장 면담결과	보고
2008-14	07.15.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검토	의결
2008-15	07.25.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사건(06진차525, 06진차673병합)	의결
2008-15	07.25.	안마사 자격과관련 의료법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검토[재상정]	의결
2008-15	07.25.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중단 촉구 검토	의결
2008-16	08.04.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차별사건	의결
2008-16	08.04.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사건	의결
2008-16	08.04.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중단 촉구 검토[재상정]	의결
2008-16	08.04.	2008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 처리현황	보고
2008-16	08.04.	권고수용: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8-17	08.25.	북한인권법(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관련	보고
2008-17	08.25.	권고수용: 외국인 강제격리로 인한 인권침해	보고
2008-17	08.25.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의결
2008-17	08.25.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17	08.25.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의결
2008-17	08.25.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사건	의결
2008-17	08.2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일부개정안 [3회상정]	의결
2008-18	09.08.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보고
2008-18	09.08.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재상정]	의결
2008-18	09.0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2008-18	09.08.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직권조사	의결
2008-19	09.22.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 검토	의결
2008-19	09.22.	스포츠분야 인권향상사업 중간보고	보고
2008-19	09.22.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행위 고발건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한 불기소처분	보고
2008-19	09.22.	춧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의결
2008-19	09.22.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결
2008-20	09.30.	춧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08진인11)[재상정]	의결
2008-20	09.30.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검토[재상정]	의결
2008-22	10.27.	춧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	의결
2008-22	10.27.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의결
2008-23	11.10.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2008-23	11.1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보고	의결
2008-23	11.10.	인권증진행동계획안(2009-2011) 보고	의결
2008-24	11.24.	2008년 인권위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2008-24	11.24.	인권테마역사 조성사업 영상보고	보고
2008-25	12.08.	UNA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의결
2008-25	12.08.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가 위촉	의결
2008-25	12.08.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다문화 국제회의 개최결과	보고
2008-25	12.08.	UN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채택	보고
2008-25	12.08.	2008년도 대한민국 인권상 경과	보고
2008-25	12.08.	농민사망사건 수사의뢰 기소총지처분	보고
2008-26	12.22.	제2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안건	보고
2008-26	12.22.	HIV감염인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의결
2008-26	12.22.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불허	의결
2009-01	01.12.	2008년 진정·상담·민원·인내 처리현황	보고
2009-01	01.12.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보고
2009-02	02.02.	2009년 주요업무계획	의결
2009-02	02.02.	07진인387사건 관련 법원재판 결과	보고
2009-03	02.23.	단체내 총회 회원권에서의 성차별 관련소송 경과보고	보고
2009-03	02.23.	HIV감염인을 이유로 한 외항선원 취업 제한	의결
2009-03	02.23.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의결
2009-03	02.23.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안)	보고
2009-03	02.23.	북한인권 실태조사 수행방식 관련 검토	보고
2009-04	03.09.	위원회 직제개편 관련현안	보고
2009-04	03.09.	행정인턴 모집시 학력 및 나이에 의한 고용차별	의결
2009-05	03.23.	행안부의 인권위 직제개편 강행추진에 대한 대응(안)	의결
2009-06	03.27.	행안부의 인권위 직제개편 강행추진 관련 차관회의 등에 대한 대응 상황보고	보고
2009-06	03.27.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한 결의안 채택건	의결
2009-07	04.01.	인권위 직제 개정령 효력정지처분신청서 등 접수상황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9-08	04.06.	인권위 직제개정에 따른 위원회 규칙 일괄개정안 보고	의결
2009-08	04.06.	국가인권 직제개정령 발효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의결
2009-09	04.27.	전·의경 가혹행위 직권조사(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보고
2009-09	04.27.	권고수용: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불허	보고
2009-09	04.27.	2008년 진정사건 처리현황	보고
2009-09	04.27.	개성공단 억류자 석방 촉구	의결
2009-09	04.27.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보고	의결
2009-09	04.27.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검토 보고	의결
2009-10	05.11.	북한인권법(안) 제정 촉구 검토	의결
2009-10	05.1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검토 보고[재상정]	의결
2009-11	05.25.	성평등기본법 추진동향과 위원회의 대응방향	보고
2009-11	05.25.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검토 보고[재상정]	의결
2009-11	05.25.	부당한 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교)	보고
2009-11	05.25.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의결
2009-11	05.25.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충역 편입에 있어서의 양자 차별	의결
2009-12	06.22.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의결
2009-12	06.22.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723)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검토	의결
2009-12	06.22.	2010년도 예산요구서(안) 보고	의결
2009-13	07.06.	진정사건처리 시스템개선 검토안	보고
2009-13	07.06.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가723)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검토	의결
2009-13	07.06.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의결
2009-14	07.20.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보고
2009-15	08.2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개정안 보고	의결
2009-15	08.24.	제14차 APF 연례회의 결과	보고
2009-16	09.14.	UN사회권규약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위원회 보고서안	의결
2009-16	09.14.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물 방류관련 검토	의결
2009-16	09.14.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	심의
2009-16	09.14.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검토	보고
2009-16	09.14.	인권위 소송현황	보고
2009-16	09.14.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09-17	09.18.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재상정]	심의
2009-18	10.12.	2009년(1~8월) 진정·상담·민원·인내 처리현황	보고
2009-18	10.12.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안)	의결
2009-18	10.12.	위원장 국회발언 해명요구 및 의견표명	의결
2009-18	10.12.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제개정(안) 보고	의결
2009-19	10.26.	춧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보고
2009-19	10.26.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경)	보고
2009-19	10.26.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안) [재상정]	의결
2009-19	10.26.	임시전원위원회 소집 등에 대한 운영규정의 해석에 관한 건	의결
2009-19	10.26.	교복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신상 노출	의결
2009-20	11.09.	임시전원위원회 소집 등에 대한 운영규정의 해석에 관한 건[재상정]	의결
2009-20	11.09.	2009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 결과	보고
2009-20	11.09.	판사의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의결
2009-21	11.23.	판사의 발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의결
2009-21	11.23.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의결
2009-21	11.23.	제64차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관련 환영 논평건	의결
2009-21	11.23.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관련 의견제출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9-21	11.23.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보고	의결
2009-21	11.23.	집회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경)	보고
2009-22	12.01.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관련 의견제출 [재상정]	의결
2009-23	12.14.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의결
2009-23	12.14.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보고[재상정]	의결
2009-23	12.14.	집회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경)	보고
2009-23	12.14.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 모집시 성차별	보고
2009-24	12.28.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상임위원 역할 재정립 부분 관련	보고
2009-24	12.28.	양산철거민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진정사건(09진인215) 관련 법원 의견표명	의결
2009-24	12.28.	제7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의결
2010-01	01.11.	양산철거민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진정사건(09진인215) 관련 법원 의견표명	의결
2010-02	01.25.	2010년도 업무계획(안)	의결
2010-02	01.25.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안)	의결
2010-02	01.25.	사회권규약위원회 참가 결과 및 최종견해 분석	보고
2010-02	01.25.	2009년 진정·상담·민원·안내 처리현황	보고
2010-03	02.08.	평등권 침해(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	보고
2010-03	02.08.	2010년 예산현황	보고
2010-03	02.08.	2009년 12월말 현재 진정사건 접수·처리실적	보고
2010-03	02.08.	헌법재판소2010헌가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정건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10-03	02.08.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2010-04	02.22.	2009년 12월말 현재 진정사건 접수·처리실적[재상정]	보고
2010-04	02.22.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청소년역량 나이제한	의결
2010-04	02.2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의결
2010-04	02.22.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 조 등 위헌제정건 관련 의견제출[재상정]	의결
2010-05	03.08.	헌법재판소 2010헌가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 조 등 위헌제정건 관련 의견제출	의결
2010-05	03.08.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2010-06	04.12.	이단 교파 신도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의결
2010-06	04.12.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인권위 기준 입장 재 확인 보도자료 배포 등	보고
2010-06	04.12.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	의결
2010-06	04.12.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2010-07	04.26.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간 사건처리 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2010-07	04.26.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10-08	05.10.	부당한 수배 및 개인정보 유출	의결
2010-08	05.10.	종교재단 사립대학교의 행정직원 채용시 종교제한	의결
2010-08	05.10.	사형집행시설 설치 추진현황 및 사형집행 다양화 개정법안	보고
2010-08	05.10.	교육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신상 노출	보고
2010-08	05.10.	용모를 이유로 한 골프장 회원 가입 불허	의결
2010-09	05.24.	용모를 이유로 한 골프장 회원 가입 불허	의결
2010-09	05.24.	교차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보고
2010-10	06.14.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차별	의결
2010-10	06.1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의결
2010-10	06.14.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부여 실행방안	의결
2010-11	06.28.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	의결
2010-11	06.28.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정(안)	심의
2010-11	06.28.	2011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0-11	06.28.	고문경찰관 직권조사 권고에 따른 경과	보고
2010-11	06.28.	상임위원의 상임위 의인제출 검토	보고
2010-12	07.12.	부당한 수배 및 개인정보 유출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0-12	07.12.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의결
2010-13	07.26.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의결
2010-13	07.26.	인권위 징계규칙 개정안	의결
2010-13	07.26.	권고수용: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청소년역량 나이제한	보고
2010-13	07.26.	2010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실적	보고
2010-13	07.26.	2010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0-13	07.26.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부여 실행방안	의결
2010-13	07.26.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방안 정책검토	의결
2010-14	08.23.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	보고
2010-14	08.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요일 시험실시로 인한 종교차별	의결
2010-14	08.23.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2010-14	08.23.	헌법재판소 2010헌바88사건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14	08.23.	국무총리실의 한국노총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계획안	의결
2010-14	08.23.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정치인 포함)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 등	의결
2010-14	08.23.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	의결
2010-14	08.23.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	의결
2010-15	10.25.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등 미국출장 결과	보고
2010-15	10.25.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15	10.25.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2010-15	10.25.	아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15	10.25.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결과	보고
2010-16	10.29.	현재 권한쟁의심판청구 결과	보고
2010-17	11.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도개선방안 검토	의결
2010-17	11.08.	이단 교파 신도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보고
2010-17	11.08.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보고
2010-17	11.08.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임시운영방안 검토 보고	의결
2010-17	11.08.	아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18	12.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결
2010-18	12.06.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결
2010-18	12.06.	아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18	12.06.	이단 교파 신도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보고
2010-18	12.06.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보고
2010-18	12.06.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 부 여 권고	의결
2010-18	12.06.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보고
2010-18	12.06.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의결
2010-19	12.27.	겸직신고에 대한 검토 보고	의결
2010-19	12.2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결
2010-19	12.27.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검토 수용	보고
2010-19	12.27.	불법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0-19	12.27.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검토 보고	의결
2010-19	12.27.	지역아동센터 소장의 직원 성희롱	의결
2010-19	12.27.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의결
2011-01	01.10.	2011년 세출예산 현황	보고
2011-01	01.10.	2011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2011-01	01.10.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2011-02	01.24.	인권위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2011-02	01.2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정부보고 서 초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	의결
2011-02	01.24.	2010년도 진정사건 처리실적	보고
2011-03	02.14.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1-03	02.14.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침해기록관 설치계획	보고
2011-03	02.14.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최종안에 대한 검토	보고
2011-03	02.14.	2010년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1-03	02.14.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 한 검토 의견	의결
2011-03	02.14.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 및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1-03	02.14.	2011년도 인권위원 워크숍 추진계획(안)	보고
2011-04	02.28.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	의결
2011-04	02.28.	2010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	의결
2011-04	02.28.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보고	의결
2011-05	03.14.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수립 추진방안	보고
2011-05	03.14.	인권위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2011-06	03.28.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제입원	의결
2011-06	03.28.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계획	보고
2011-06	03.28.	UN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 심의관련 인권위 업무처리 절차 검토	보고
2011-06	03.28.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팅 이션 추진계획	보고
2011-07	04.11.	인권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2011-07	04.11.	인권교육법 제정 발의결과	보고
2011-08	04.25.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의결
2011-08	04.25.	구 군형법 제92조 위헌법률심판 결정 관련	보고
2011-08	04.25.	통일연구원의 직급별 정년 차별	의결
2011-09	05.16.	11-9차(보고11-13) UN인권이사회 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결의	보고
2011-09	05.16.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의결
2011-10	05.30.	좌익사범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1-10	05.30.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의결
2011-11	06.13.	러시아 국가인권위 방문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11-11	06.13.	제24차 ICC 연례회의 및 승인소위 참가 결과	보고
2011-12	06.2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결
2011-12	06.27.	북한인권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보고
2011-12	06.27.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의결
2011-12	06.27.	2012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1-13	07.11.	해병2사단 총기사망사건 직권조사	보고
2011-13	07.11.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강원지방 청 307전경대)	의결
2011-14	07.25.	2011헌마28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1-14	07.25.	2011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1-14	07.25.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상황	보고
2011-14	07.25.	북한인권관련 유관기관 방문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2011-15	08.22.	UN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관련 위원 회 의견서안 검토	의결
2011-15	08.22.	한진중공업 고공노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11-16	09.02.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11-17	09.19.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강원지방 청 307전경대)	의결
2011-17	09.19.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안)	의결
2011-17	09.19.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제입원	보고
2011-17	09.19.	권고이행 여부: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등권 침해 권고 등 9건	보고
2011-17	09.19.	한진중공업 고공노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11-18	10.10.	인권위법 시행 일부개정령(안) 수정 제출건	의결
2011-18	10.10.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의결
2011-18	10.10.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등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1-19	10.24.	신속자 모녀(일명 통영의 딸) 송환을 위한 권고안	의결
2011-19	10.2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의결
2011-19	10.24.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1-20	11.14.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권고안	의결
2011-20	11.14.	영장 없는 가택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1-20	11.14.	인권위 규칙 중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1-20	11.14.	인권위 설립 제10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63주년 기념 행사 추진상황	보고
2011-21	11.28.	노숙소녀 살인사건 무죄확정판결에 따른 형집행정지 요 청 진정사건관련 법원 의견표명	의결
2011-21	11.28.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개선방안	의결
2011-22	12.05.	2012 제12차 ASEM 인권세미나 개최 추진계획(안)	보고
2011-22	12.05.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연례리포트 참석결과	보고
2011-22	12.05.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 결과	보고
2011-22	12.05.	네이버 카페에 대한 부당한 접근 제한조치로 인한 인권 침해	의결
2011-23	12.26.	NAP 권고안	의결
2011-23	12.26.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의결
2011-23	12.26.	UN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및 최종견해	보고
2012-01	01.03.	NAP 권고안[재상정]	의결
2012-02	01.09.	2012년 세출예산 현황	보고
2012-02	01.09.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연장)건	의결
2012-02	01.09.	한-멕시코 국가인권위 협력협정 체결 결과	보고
2012-02	01.09.	2012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2012-03	01.30.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2-04	02.13.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2-04	02.13.	2011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2-05	02.27.	2012년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보고
2012-05	02.27.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재상정]	의결
2012-05	02.27.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및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의견표명	의결
2012-05	02.27.	2011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	의결
2012-06	03.12.	2기 UPR 관련 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2012-06	03.12.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및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의견표명	의결
2012-06	03.12.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2-06	03.12.	2012년도 인권위원 워크숍 추진계획(안)	보고
2012-06	03.12.	2011년도 진정사건 처리실적	보고
2012-06	03.12.	인권위법 일부개정 결과	보고
2012-07	03.26.	정보인권 보고에 관한 건	의결
2012-08	04.16.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사건 관련 인권위 대응방안건	의결
2012-09	04.23.	2012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안)	의결
2012-09	04.23.	공직유관단체 등의 인권침해 적용시점 관련건	의결
2012-09	04.23.	인권위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2-09	04.23.	진정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 사후관리 기준(안)	보고
2012-09	04.23.	지역아동센터 소장의 직원 성희롱	보고
2012-09	04.23.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	보고
2012-09	04.23.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보고
2012-09	04.23.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2-09	04.23.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보고
2012-10	05.07.	통일연구원의 직급별 정년차별	보고
2012-10	05.07.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2-11	05.21.	소위원회 등 업무 공유방안	보고
2012-11	05.21.	2012 인권정책발전과제 연구결과	보고
2012-11	05.21.	제25차 ICC 연례회의 및 집행이사회 참가결과	보고
2012-11	05.21.	LA 북한인권 국제세미나 결과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2-12	06.11.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	의결
2012-12	06.11.	2013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2-12	06.11.	군사법정의 소지품 수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2-13	06.25.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사건 결정사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보고
2012-13	06.25.	군사법정의 소지품 수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2-14	07.0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	의결
2012-15	07.23.	2012년 상반기 진정·접수·상담·민원 현황	보고
2012-15	07.23.	경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	의결
2012-16	08.27.	UN고문방지위원회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보고
2012-16	08.27.	권고수용 여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권고	보고
2012-17	09.10.	UN고문방지위원회 제3·4·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재상정)	의결
2012-18	09.24.	2012년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현황	보고
2012-18	09.24.	인권교육법 입법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2-18	09.24.	제11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가계획	보고
2012-18	09.24.	지자체 인권제도화 관련 위원회 추진내용	보고
2012-18	09.24.	성폭력 등 강력범죄대책 관련 위원회 추진내용 및 대응 방안	보고
2012-19	10.08.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	의결
2012-19	10.08.	2013년 위원회 예산안 경과(정부안 확정)	보고
2012-19	10.08.	전·외국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강원지방 청 307전경대)	보고
2012-19	10.08.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2-19	10.08.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2-20	10.22.	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의결
2012-20	10.22.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안	의결
2012-20	10.22.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2-21	11.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성명 채택건	의결
2012-21	11.12.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훈장 및 포장 수여 대상자 차별시정 관련 상훈법 개정 권고안	의결
2012-21	11.12.	개인 고위직정보 처리 최소화를 위한 위원회 규칙 일괄개정건	의결
2012-21	11.12.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2-22	11.26.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의결
2012-22	11.26.	장애인 보형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 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안)건	의결
2012-22	11.26.	지자체의 장애인 시설 건립 거부	의결
2012-22	11.26.	인권위 징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2-23	12.10.	정보인권 보고건	의결
2012-23	12.10.	지자체의 장애인 시설 건립 거부	의결
2012-23	12.10.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의결
2012-23	12.10.	2012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2-24	12.26.	2013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2012-24	12.2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훈장 및 포장 수여 대상자 차별시정 관련 상훈법 개정 권고안	의결
2012-24	12.26.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의결
2012-24	12.26.	제11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출장결과	보고
2013-01	01.14.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연장)건	의결
2013-01	01.14.	차기정부 인권과제(안)	의결
2013-01	01.14.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의결
2013-01	01.14.	경찰의 제주 강점마을 주민동태 실시간 촬영 중계 사건 관련 직권조사계획(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3-01	01.14.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현황	보고
2013-01	01.14.	권고수용 여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보고
2013-02	01.28.	노인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개선 권고안	의결
2013-02	01.28.	2012년 진정·상담·민원 현황	보고
2013-02	01.28.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의결
2013-03	02.18.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의결
2013-03	02.18.	2012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	의결
2013-03	02.18.	2012년 진정사건 처리실적	보고
2013-04	02.25.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기능직 사서 경력 차등적용	의결
2013-04	02.25.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사무원에 대한 임금과 금품지급에서의 불이익	의결
2013-05	03.11.	2013~17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권고이행상황	보고
2013-05	03.11.	2012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3-05	03.11.	2013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3-06	03.25.	소송제기 여부에 따른 환경미화원 휴일근무 여부 결정	의결
2013-06	03.25.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기능직 사서 경력 차등적용	의결
2013-06	03.25.	2013년 인권위원 워크숍 계획(안)	보고
2013-06	03.25.	2013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3-06	03.25.	2012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재상정)	보고
2013-07	04.08.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훈장 및 포장 수여 대상자 차별시정 관련 상훈법 개정 권고안(3회상정)	의결
2013-07	04.08.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	보고
2013-08	04.22.	제22차 UN인권이사회 출장결과	보고
2013-08	04.22.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훈장 및 포장 수여 대상자 차별시정 관련 상훈법 개정 권고안(4회상정)	의결
2013-09	05.13.	장애인 보형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의학적·통계적 연구에 대한 권고이행상황	보고
2013-09	05.1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2013-10	05.27.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의결
2013-10	05.27.	장애인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보고
2013-11	06.10.	공군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모집시 학교별 학과 제한	의결
2013-11	06.10.	구급시설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의결
2013-11	06.10.	2014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3-12	06.24.	공무원의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3-12	06.24.	공군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모집시 학교별 학과 제한	의결
2013-12	06.24.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보고
2013-12	06.24.	제26차 ICC연례회의 참석결과	보고
2013-13	07.08.	공무원의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3-13	07.08.	공군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모집시 학교별 학과 제한	의결
2013-13	07.08.	구급시설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의결
2013-14	07.22.	2013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3-14	07.22.	2013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와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3-14	07.22.	2013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3-14	07.22.	공무원의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3-15	08.26.	대학 수시 지원자격에서 검정고시 출신 제한	의결
2013-15	08.26.	부당한 긴급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3-15	08.26.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의견표명	의결
2013-15	08.26.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3-15	08.26.	면전진정제도 관련 검토	보고
2013-15	08.26.	진정사건 처리와 조사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13-16	09.09.	광주고법 2013재노3사건(일명 악선택시기사살해사건 재심청구사건)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13-16	09.09.	대학 수시 지원자격에서 검정고시 출신 제한	의결
2013-16	09.09.	면전진정제도 관련 검토보고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3-17	09.23.	대학 수시 지원자격에서 검정고시 출신 제한	의결
2013-17	09.23.	구급시설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보고
2013-18	10.14.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안	의결
2013-19	10.28.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안	의결
2013-19	10.28.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호봉 획정시 민간기업 경력 불인정	의결
2013-20	11.11.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	의결
2013-21	11.25.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의결
2013-21	11.25.	노인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3-21	11.25.	요양불응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2013-21	11.25.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3-22	12.09.	정신장애인 의료시설 건축제한에 의한 차별	의결
2013-22	12.09.	대학 수시 지원자격에서 검정고시 출신 제한	보고
2013-22	12.09.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 등	의결
2013-22	12.09.	요양불응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2013-23	12.2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권고 이행현황	보고
2013-23	12.23.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3-23	12.23.	ICC 승인심사위원회 정기심사자료	보고
2013-23	12.23.	2014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2013-23	12.23.	사립중학교 교사 채용시 특정종교인으로 제한	의결
2013-23	12.23.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의결
2013-23	12.23.	북한인권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건	의결
2014-01	01.13.	요양불응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관한 의견제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의족 파손의 산재 인정	의결
2014-01	01.1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관련규정 개선 권고안	의결
2014-02	01.27.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보호조치 미흡	의결
2014-02	01.27.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연장)건	의결
2014-02	01.27.	2013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4-02	01.27.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 등	의결
2014-02	01.27.	2013년 진정사건 처리와 권고 이행현황	보고
2014-02	01.27.	사립중학교 교사 채용시 특정종교인으로 제한	의결
2014-03	02.10.	2013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4-03	02.10.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관련규정 개선 권고안	의결
2014-03	02.10.	2014년 인권위원 워크숍 추진계획(안)	보고
2014-03	02.10.	경찰의 부당한 통행제한 등	의결
2014-03	02.10.	군사학과 여학생에 대한 군정학급 지급 배제 및 정교임 관철차 차등적용	의결
2014-04	02.24.	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	의결
2014-04	02.24.	경찰의 집회 신고물품 게시와 설치 제한	의결
2014-04	02.24.	권고 일부수용: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사건	보고
2014-04	02.24.	2013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의결
2014-04	02.24.	인권위 징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4-04	02.24.	공무원의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보고
2014-04	02.24.	여성 추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 성희롱	의결
2014-05	03.24.	경찰의 집회 신고물품 게시와 설치 제한	의결
2014-05	03.24.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발의 철회상황 및 위원회 입장관련	의결
2014-05	03.24.	제4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5~17) 수립 추진방안	보고
2014-05	03.24.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4-05	03.2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05	03.24.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4-06	04.14.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추진안	보고
2014-06	04.14.	지자체 인권제도화 사업추진 기본계획	보고
2014-06	04.14.	2014년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보고
2014-07	04.28.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대한 개정 권고안	의결
2014-08	05.12.	ICC 승인소위 재승인 심사결과 후속조치 계획(안)	보고
2014-08	05.12.	주민등록번호 포함 서식 정비를 위한 위원회 규칙 일괄 개정안	의결
2014-09	05.2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2014-09	05.26.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보고
2014-09	05.26.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안	의결
2014-09	05.26.	성희롱 관련정보 게시에 의한 인격권 등 침해(사립학교)	의결
2014-09	05.26.	2014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4-10	06.09.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검토	보고
2014-10	06.09.	2015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4-10	06.09.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14진정016700)	의결
2014-11	06.23.	ICC 승인소위 재승인 심사 단편서 제출건	의결
2014-11	06.2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의결
2014-12	07.14.	인권위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건	의결
2014-13	07.28.	사회권규약 선택의제서 대한민국 서명 및 비준 권고안	의결
2014-13	07.28.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의견서 제출건	의결
2014-13	07.28.	2014년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와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4-13	07.28.	일부 불수용: 여성 추구선수 성별진단 요구 성희롱 진정 권고	보고
2014-13	07.28.	인권위법 개정 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보고
2014-13	07.28.	2014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4-14	08.2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보호조치 미흡	보고
2014-14	08.25.	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	보고
2014-14	08.25.	2014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4-14	08.25.	권고 불수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 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 개선	보고
2014-14	08.25.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제한은 차별	의결
2014-14	08.25.	제4기 인권증진동행계획(안) 2015~17년	의결
2014-15	09.22.	인권위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	의결
2014-15	09.22.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2014-16	10.13.	사립고등학교 야구감독의 학부보 성희롱	의결
2014-16	10.13.	권고 일부수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개정	보고
2014-16	10.13.	청사이전 진행경과 등	보고
2014-17	10.27.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결
2014-17	10.27.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보고
2014-17	10.27.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안	의결
2014-17	10.27.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검토	보고
2014-17	10.27.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상황	보고
2014-18	11.10.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 후속조치(안)	보고
2014-18	11.10.	인권교육지원법 발의 철회상황 및 위원회 입장관련	보고
2014-18	11.10.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 권고안	의결
2014-18	11.10.	사립고등학교 야구감독의 학부보 성희롱	의결
2014-19	11.24.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보고
2014-19	11.24.	공군 학군사관후보생과정 모집시 학교별 학과 제한	보고
2014-19	11.24.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제한은 차별	의결
2014-20	12.08.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20	12.08.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인권위의 사무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14-20	12.08.	2015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4-21	12.22.	2014년 하반기 ICC 권고사항 후속조치 기본계획(안)	보고
2014-21	12.22.	2014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4-21	12.22.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인권위의 사무에 관한 규칙(안)	의결
2014-21	12.22.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5-01	01.12.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안보고	보고
2015-01	01.12.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5-01	01.12.	인권위법 개정(안) 수정 검토	의결
2015-01	01.12.	인권위 위원 선출지명 관련 권고이행 촉구를 위한 성명	의결
2015-02	01.26.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대한 위원회 답변서(안) 제출건	보고
2015-02	01.26.	2014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5-02	01.26.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연장건	의결
2015-02	01.26.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15-02	01.2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	보고
2015-03	02.09.	2015년 인권위원 워크숍 계획(안)	보고
2015-03	02.09.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모집시 남성 배제	의결
2015-04	02.23.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모집시 남성 배제	의결
2015-04	02.23.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외출·외박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5-04	02.23.	요양원의 외출·외박 금지 부당	의결
2015-04	02.23.	2014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5-04	02.23.	2014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5-04	02.23.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2015-04	02.23.	2014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의결
2015-04	02.23.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위원회 결정관련 언론보도 및 대응방향	보고
2015-05	03.23.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모집시 남성 배제	의결
2015-05	03.23.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외출·외박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5-05	03.23.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5-05	03.23.	군용부조면제도 도입논의 경과	보고
2015-05	03.23.	요양원의 외출·외박 금지 부당	의결
2015-06	04.13.	2015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5-06	04.13.	청사이전 적정성 검토	보고
2015-06	04.13.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5-06	04.13.	2015년도 상반기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권고내용	보고
2015-06	04.13.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결
2015-06	04.13.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5-06	04.13.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의결
2015-07	04.27.	사립고등학교 야구감독의 학부모 성희롱	보고
2015-07	04.27.	인권위 징계규칙 일부개정건	의결
2015-07	04.27.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재입원	의결
2015-07	04.27.	청사이전 적정성 검토	보고
2015-07	04.27.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관련 추진경과	보고
2015-07	04.27.	2015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5-08	05.11.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5-08	05.11.	헌법재판소 2014헌가9 의견표명	의결
2015-08	05.11.	권고 일부수용: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보고
2015-08	05.11.	인권위 징계규칙 일부개정건(재상정)	의결
2015-08	05.11.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재입원	의결
2015-09	05.26.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안) 의견표명(전원위)	의결
2015-09	05.26.	2016년 예산안 요구	의결
2015-09	05.26.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5-10	06.08.	UN 기업과 인권 WG 의장 초청 및 UNGC 리더 서밋 공동 개최결과	보고
2015-10	06.08.	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권고	의결
2015-11	06.22.	병동내 휴대폰 사용 등 제한	의결
2015-11	06.22.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권고에 대한 수용 추가보고	보고
2015-12	07.13.	병동내 휴대폰 사용 등 제한(재상정)	의결
2015-12	07.13.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건	의결
2015-12	07.13.	행정심판 운영 관련 검토	보고
2015-13	07.27.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보고
2015-13	07.27.	형집행정지 원본제시 권고 불수용	보고
2015-13	07.27.	2015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5-13	07.27.	2015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5-13	07.27.	2015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5-14	08.24.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5-14	08.24.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설치 불허부당건(15-진정-0348400)	의결
2015-14	08.24.	전문대학 항공운항과 모집시 남성 배제	보고
2015-15	09.14.	청사이전 추진경과	보고
2015-15	09.14.	UN자유권규약 제4차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안)	의결
2015-16	10.12.	인권위 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5-16	10.12.	노인인권 ASEM 콘퍼런스 진행경과 및 현황	보고
2015-16	10.12.	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현황	보고
2015-16	10.12.	행정심판 운영방안 검토	보고
2015-16	10.12.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5-17	11.09.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2015-17	11.09.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행사 취소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결
2015-17	11.0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5-18	11.23.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 제청(안)	심의
2015-18	11.23.	UN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보고
2015-18	11.23.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설치 불허부당건(15-진정-0348400)	의결
2015-19	12.14.	권고 일부수용: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보고
2015-19	12.14.	권고 일부수용: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관련	보고
2015-20	12.28.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의결
2015-20	12.28.	2016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2015-20	12.28.	권고수용: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실태조사	보고
2016-01	01.11.	인권위법 일부개정안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6-02	01.25.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건	의결
2016-02	01.25.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의결
2016-02	01.25.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6-03	02.22.	2015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	의결
2016-03	02.22.	2015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6-03	02.22.	2015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6-03	02.22.	2015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6-04	03.28.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6-04	03.28.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행사 취소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보고
2016-05	04.11.	인권위 규칙 일괄정비건	의결
2016-05	04.11.	인권위법 개정 수정권고 사항 권고수용	보고
2016-05	04.11.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6-05	04.11.	북한인권법 제정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
2016-06	04.25.	조정제도 활성화 추진현황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6-06	04.25.	2016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보고
2016-07	05.23.	2017년 예산안 요구	의결
2016-07	05.23.	병동내 휴대폰 사용 등 제한	보고
2016-07	05.23.	노인인권 관련사업 진행경과	보고
2016-07	05.23.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15-직권-0001300)	의결
2016-07	05.23.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15-직권-0000900)	의결
2016-07	05.23.	노인요양시설의 외출·외박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보고
2016-08	06.13.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6-08	06.13.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15-직권-0001300)[재상정]	의결
2016-08	06.13.	2016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결과	보고
2016-09	06.27.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09	06.27.	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권고	의결
2016-10	07.25.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18차·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10	07.25.	제3기 NAP 권고건	의결
2016-10	07.25.	기업과 인권 NAP 권고건	의결
2016-11	08.22.	2016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6-11	08.22.	2016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6-11	08.22.	법원의 개인정보유출 등	의결
2016-11	08.22.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의결
2016-11	08.22.	2016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6-12	09.12.	병적증명의 병력 유출로 인한 채용차별	의결
2016-12	09.12.	미인가학교에 다니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 차별	의결
2016-13	10.10.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추진경과 및 검토	보고
2016-13	10.10.	2017년 예산(안) 및 소요정원 경과	보고
2016-14	11.07.	지자체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결
2016-14	11.07.	제2기 NAP 권고수용	보고
2016-14	11.07.	북한인권법 제정권고 일부수용 및 북한인권법 시행상황	보고
2016-14	11.07.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의결
2016-15	11.28.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따른 인권침해	의결
2016-15	11.28.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15	11.28.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16	12.26.	권고 불수용: 집회금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14진정 464100)	보고
2016-16	12.26.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보고
2016-16	12.26.	2017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2016-16	12.26.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7-01	01.09.	헌법개정 대비 대응계획(안)	보고
2017-01	01.0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
2017-02	01.23.	조사국에서 이관된 정책과제 검토현황 및 처리방안	보고
2017-02	01.23.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건	의결
2017-03	02.13.	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권고	보고
2017-03	02.13.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보고
2017-04	02.27.	권고 불수용: 미인가학교에 다니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차별 사건	보고
2017-04	02.27.	2016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7-04	02.27.	2016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	의결
2017-04	02.27.	수능감독관 의사 미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7-04	02.27.	2016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7-04	02.27.	2016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7-05	03.13.	강원인권사무소 설치 관련	보고
2017-05	03.13.	UN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관련 인권위 의견서(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7-06	03.27.	UN인권이사회 제3기 대한민국 UPR 심의를 위한 인권 위 의견서(안)	의결
2017-06	03.27.	제5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2008-2020)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
2017-06	03.27.	권고 불수용: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의무 부과사건	보고
2017-07	04.1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보고
2017-07	04.10.	차기정부 인권과제(안)	의결
2017-07	04.10.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추진경과	보고
2017-07	04.1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보고
2017-07	04.10.	2017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7-08	05.15.	UNA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7-08	05.15.	2018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7-09	05.29.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보고
2017-09	05.29.	인권위 규칙 개정(안) 보고	의결
2017-09	05.29.	병적증명의 병력 유출로 인한 채용차별	보고
2017-09	05.2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
2017-10	06.26.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표명(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7-10	06.2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보고
2017-11	07.24.	UN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독립의견서 제출건	의결
2017-12	08.14.	사무총장 임명 제청(안)	심의
2017-12	08.14.	제2차 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 등 개최계획	보고
2017-13	08.28.	2017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7-13	08.28.	2017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7-13	08.28.	2017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7-14	09.11.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건	의결
2017-14	09.11.	경찰의 과도한 현행범인 체포 등	의결
2017-15	09.25.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017-15	09.25.	상업시설 이용시 나이제한	의결
2017-16	11.13.	인권위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및 인권위 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안)	의결
2017-17	11.13.	제5기 인권위 인권증진행동계획(안)(2018~2020)	의결
2017-18	12.04.	인권위 혁신위원회 운영경과	보고
2017-18	12.04.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의결
2017-18	12.04.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보고
2017-19	12.18.	조정위원회 위촉건	의결
2017-19	12.18.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2017-19	12.18.	2018년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2018-01	01.15.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관련 인권위 독립의견서(안) 심의건	의결
2018-01	01.15.	총기 압출고시 2인 이상 동행요구 등	의결
2018-01	01.15.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사항	보고
2018-02	01.2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
2018-02	01.29.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건	의결
2018-03	02.12.	인권위 혁신위원회 활동경과 및 권고사항	보고
2018-04	02.26.	2017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	의결
2018-05	03.12.	권고수용: 약식명령 송달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건	보고
2018-05	03.12.	권고 일부수용: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한 보호의무자 동의의 재입원 사건	보고
2018-05	03.12.	2017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8-05	03.12.	2017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8-05	03.12.	인권위 혁신위원회 결과보고서 접수 및 권고이행 추진경과	보고
2018-05	03.12.	ASEM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추진경과	보고
2018-05	03.12.	2017년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8-06	04.09.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	의결
2018-07	04.23.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
2018-07	04.23.	총기 입출고시 2인 이상 동행요구 등	의결
2018-07	04.23.	검사의 조사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보고
2018-08	05.14.	2019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8-08	05.14.	상업시설 이용시 나이제한	보고
2018-09	05.28.	수능감독관 의사 미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8-09	05.28.	1인 시위 방해	의결
2018-10	06.25.	위원회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
2018-10	06.25.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의결
2018-10	06.25.	UN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2018-10	06.25.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8-11	07.23.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표명	의결
2018-11	07.23.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보고
2018-12	08.20.	2018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8-12	08.20.	2018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8-12	08.20.	2018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2018-12	08.20.	제3차 ASEM노인인권관련퍼런스 등 노인인권의회의 추진 상황	보고
2018-12	08.2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18-12	08.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정 등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8-13	09.10.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8-13	09.10.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건	의결
2018-13	09.10.	소위원회 개최주기 및 결정문 작성기간 등 개선검토	보고
2018-13	09.10.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 권고수용	보고
2018-14	10.08.	위원회 투명성 제고방안	의결
2018-14	10.08.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의결
2018-14	10.08.	결혼한 군종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조치 시정권고건	의결
2018-14	10.08.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사건 권고수용	보고
2018-15	10.22.	민간회사의 직원채용 시 간염보균자 배제	의결
2018-15	10.22.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시 종교차별	의결
2018-15	10.22.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의결
2018-15	10.22.	사립대학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등 침해	의결
2018-15	10.22.	인종차별철폐협약	의결
2018-15	10.22.	총기 입출고시 2인 이상 동행요구 등	보고
2018-16	11.05.	형사사건 재심절차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의결
2018-16	11.05.	구급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의결
2018-17	11.12.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의결
2018-17	11.12.	사립대학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집회의 자유 등 침해	의결
2018-17	11.12.	교직원 채용시 종교차별	의결
2018-18	11.26.	결혼한 군종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조치 시정권고건 [재상정]	의결
2018-18	11.26.	법원의 보안감호처분 형사보상 불인정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18	11.26.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18	11.26.	제3차 NAP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8-19	12.10.	판사의 모욕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시정권고건	의결
2018-19	12.10.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권고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8-19	12.10.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거부 시정권고건	의결
2018-19	12.10.	인권위의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건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의결
2018-19	12.10.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의결
2018-20	12.24.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거부 시정권고건	의결
2018-20	12.24.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41071)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9-01	01.14.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유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강제절차의 부당성	의결
2019-02	01.28.	2019년 업무계획(안)	의결
2019-02	01.28.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기한 만료 및 재구성 여부건	의결
2019-02	01.28.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19-02	01.28.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거부 시정권고건	의결
2019-03	02.18.	인권위 스포츠인권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및 자문 위원 위촉	의결
2019-04	02.25.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위헌법률심판 의견제출	의결
2019-04	02.25.	2018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의결
2019-04	02.25.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검토	의결
2019-04	02.25.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건	의결
2019-04	02.25.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보고
2019-05	03.11.	2018 진정·상담·민원·안내 및 기초조사 현황	보고
2019-05	03.11.	국가기관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 진정이 차별사유와 영역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의결
2019-05	03.11.	2018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9-05	03.11.	대학교 교직원 채용시 종교차별	보고
2019-05	03.11.	2018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현황 보고	보고
2019-05	03.11.	민간회사의 B형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차별	보고
2019-06	03.25.	2019 인권위법 워크숍 논의결과 후속조치 검토 보고	보고
2019-06	03.2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불수용	보고
2019-06	03.25.	결혼한 군종장교에 대한 강제전역조치	보고
2019-07	04.08.	진정인 등 의견진술기회 부여 실행방안 검토	보고
2019-07	04.08.	위원회 권고수용	보고
2019-08	04.22.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보고
2019-08	04.22.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종교법인 설립 대학에서의 집회의 자유 침해 등	보고
2019-09	05.13.	판사의 모욕적 발언	보고
2019-09	05.13.	2020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19-10	05.27.	대규모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건	의결
2019-10	05.27.	2019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의결
2019-11	06.1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19-11	06.10.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권고수용	보고
2019-12	06.24.	2019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의결
2019-12	06.24.	대규모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재상정]	의결
2019-12	06.24.	HIV/AIDS 관련 차별 진정사건의 차별사유 분류에 대한 판단건	의결
2019-13	07.08.	인권위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9-13	07.08.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9-13	07.08.	제2기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건	의결
2019-14	07.22.	형사사건 재심절차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권고수용	보고
2019-14	07.22.	인권위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9-14	07.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9-14	07.22.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클럽입장 제한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9-14	07.22.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재상정]	의결
2019-15	08.19.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심의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제출건	의결
2019-15	08.19.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 설치관련	보고
2019-15	08.19.	2019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19-15	08.19.	2019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19-15	08.19.	제2기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	의결
2019-16	09.09.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 인권침해	의결
2019-16	09.09.	2019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 및 기초조사 등 현황	보고
2019-16	09.09.	경찰청의 진정사건 권고 불수용 재검토 요청 처리방안	보고
2019-16	09.09.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보고
2019-16	09.09.	경찰청의 부당한 불심검문 및 육설 등	의결
2019-17	09.23.	예비군훈련 대상 자정에 따른 학력차별	의결
2019-17	09.2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2019-18	10.14.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19-18	10.14.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의결
2019-18	10.14.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차별	의결
2019-18	10.14.	인권위 징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결
2019-18	10.14.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트라우마 치유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9-18	10.14.	경찰에 의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의결
2019-19	10.28.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 의견표명	의결
2019-19	10.28.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최종견해	보고
2019-19	10.28.	경찰에 의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의결
2019-19	10.28.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클럽 입장 제한	보고
2019-20	11.11.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 손해소송 의견표명	의결
2019-20	11.11.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2019-20	11.11.	인권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2019-20	11.11.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 제정(안)	심의
2019-21	11.25.	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차별	의결
2019-21	11.25.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의결
2019-21	11.25.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의결
2019-21	11.25.	국회위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	의결
2019-22	12.09.	온라인소피플의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한	의결
2019-22	12.09.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보고	의결
2019-22	12.09.	2020년도 업무계획(안)	의결
2019-22	12.09.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2021년 등 급심사 대응방안	보고
2019-23	12.23.	구급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수용	보고
2019-23	12.23.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보고[재상정]	의결
2019-23	12.23.	2019년 인권위 정보시스템 구축	보고
2020-01	01.13.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2020-01	01.13.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의결
2020-02	02.10.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0-02	02.10.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활동지원제도 이용 배제	의결
2020-02	02.10.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0-03	02.24.	스포츠인권 자문위원 위촉	의결
2020-03	02.24.	군대내 징계혐의사실 유포로 인한 거주지 CCTV 정보 요구 등 생활 침해	의결
2020-03	02.24.	65세 이상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의결
2020-03	02.24.	2019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20-04	03.23.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사건	의결
2020-04	03.23.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 수사결과	보고
2020-04	03.23.	2019 진정·상담·민원·기초조사 및 조정 현황	보고
2020-04	03.23.	2019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20-04	03.23.	2019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현황	보고
2020-05	04.07.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의결
2020-05	04.07.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20-06	04.21.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차별(18-진정-0527600, 19-진정-0407200, 0748600, 0765700 병합)	의결
2020-07	05.07.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건	의결
2020-07	05.07.	권고 불수용·토요일 국가자격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 차별(19-진정-0456100)	보고
2020-08	05.21.	2021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20-08	05.21.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소득 지원시 이주민 배제	의결
2020-08	05.2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0-08	05.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0-09	06.1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경과 관련	보고
2020-09	06.18.	직권조사결과 의결 처리에 관한 건	의결
2020-09	06.18.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20-09	06.18.	인권위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건	의결
2020-09	06.18.	인권위 결정문 주문 문체 변경 검토	의결
2020-09	06.18.	약도 이의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차별	의결
2020-10	06.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	의결
2020-10	06.3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의결
2020-11	07.06.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2020-11	07.06.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19직권 0001700)	의결
2020-11	07.06.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장애인 차별	의결
2020-11	07.06.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20-11	07.06.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안)건	의결
2020-12	07.20.	약도 이의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차별	의결
2020-12	07.20.	영유아용품의 색깔 및 역할의 성별구분으로 인한 차별	의결
2020-12	07.20.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의 장애인 차별	의결
2020-12	07.20.	권고 일부수용: 만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보고
2020-13	08.24.	2020년 상반기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20-13	08.24.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 결정건	의결
2020-13	08.24.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사건	보고
2020-13	08.24.	영유아용품의 색깔 및 역할의 성별구분으로 인한 차별	의결
2020-13	08.24.	2020년 상반기 진정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2020-13	08.24.	2020 상반기 진정·상담·민원·기초조사 및 조정 현황	보고
2020-14	09.14.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컨퍼런스 실행계획 및 코로나 19 관련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
2020-14	09.14.	경찰의 부당한 위치추적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20-14	09.14.	위원회 목표설정 체계 개선방안	의결
2020-15	10.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하위조직정보 규제)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0-15	10.12.	코로나19 특별대응팀 활동결과	보고
2020-15	10.12.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2020-16	10.26.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결
2020-16	10.26.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소득 지원시 이주민 배제	보고
2020-16	10.26.	혐오차별대응기획단 활동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20-16	10.26.	성전환 군인에 대한 전역처분 등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	의결
2020-16	10.26.	스프츠인권특별조사단 업무현황	보고
2020-16	10.26.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결
2020-17	11.09.	스프츠인권특별조사단 업무현황보고[재상정]	보고
2020-17	11.09.	2020 국제인권 주요활동	보고
2020-17	11.09.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외국인 차별	의결
2020-17	11.09.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소득 지원시 이주민 배제	보고
2020-18	11.23.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 인권침해	보고
2020-18	11.23.	북한선원 강제 복송에 따른 생명권 등 침해	의결
2020-18	11.23.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의결
2020-19	11.30.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0-20	12.14.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차별	보고
2020-20	12.14.	복무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 부당	의결
2020-20	12.1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20-21	12.28.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건	의결
2020-21	12.28.	사형제 폐지 등에 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0-21	12.28.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개선 권고	보고
2020-21	12.28.	2021년 위원회 업무계획	의결
2020-21	12.28.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1-01	01.2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
2021-02	01.25.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
2021-03	02.08.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채택 및 활용 권고건	의결
2021-04	02.22.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1-04	02.22.	2020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의결
2021-05	03.08.	대학교의 경건회(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의결
2021-05	03.08.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2021-05	03.08.	2020년 법령, 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2021-05	03.08.	2020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 이행현황	보고
2021-05	03.08.	2020년 진정·상담·민원·기초조사 및 조정 현황	보고
2021-06	03.22.	지자체의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정책권고	의결
2021-06	03.22.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아동 긴급재난지원금 이주 아동 지급 배제	의결
2021-06	03.22.	영유아용 상품의 색깔별 성별 표기로 인한 차별 등(20-진정-0004000-0004007 병합)	의결
2021-07	04.1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2021년 10월 등급심사 제출자료(안)건	의결
2021-07	04.12.	대학교의 경건회(채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의결
2021-07	04.12.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1-07	04.12.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화신	의결
2021-07	04.12.	권고 불수용: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보고
2021-08	04.26.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화신	의결
2021-08	04.26.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보고
2021-09	05.10.	복무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처분	보고
2021-09	05.1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의결
2021-10	05.24.	2022년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21-10	05.24.	성별을 이유로 한 미술학원 이용차별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21-10	05.24.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아동 긴급재난지원금 이주 아동 지급 배제	의결
2021-11	06.14.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21-11	06.14.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보고

역대 상임위원회 운영실적

회차	일자	안건	구분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1-01	11.28.	테러방지법에 대한 인권위 대책안	심의	2003-03	04.26.	2003년 인권교육 강사인력양성 및 관리기본계획(안)	보고
2001-02	12.12.	테러방지법 청문회 결과	보고	2003-03	04.26.	인권길라잡이 시리즈 책자에 대한 반응 보고	보고
2002-01	01.07.	목포교도소 재소자 긴급구제 요구사건	심의	2003-03	04.26.	인권위 공무원 윤리강령(안)	의결
2002-02	02.18.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의료권 확보 촉구 의견서	심의	2003-04	05.12.	소회의실(13층)	의결
2002-02	02.18.	청송제2교도소 장기징벌자 긴급구제조치안	의결	2003-05	06.24.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3차 사업계획(안)	의결
2002-02	02.1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개정한	의결	2003-05	06.24.	인권상황실태조사 2차 사업과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 실태조사	심의
2002-02	02.18.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안	의결	2003-05	06.24.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이관 추진	심의
2002-03	03.11.	위원회 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안	심의	2003-06	06.30.	서울지검 고문치사 불기소처분 관련 교육부 직권수정 권고이행 사항	의결
2002-03	03.11.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건	심의	2003-06	06.30.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 관련 교육부 직권수정 권고이행 사항	보고
2002-04	03.29.	장애인 차별(02진차26) 사건에 관한 논의	심의	2003-06	06.30.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결과	보고
2002-05	04.09.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	보고	2003-06	06.30.	관악고 학생 인권체제 활동	보고
2002-06	04.23.	진주교도소 AIDS환자 치료요구 진정접수	심의	2003-07	07.07.	2003년도 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기술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02-07	05.07.	위원회와 사무처의 관계	심의	2003-07	07.07.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 추진 개선방안	의결
2002-07	05.07.	AIDS환자에 대한 긴급구제절정 불이행에 따른 위원회 입장	심의	2003-08	08.05.	2003년도 인권실태조사 제3차 사업 기술심사회의 및 재공고 결과	보고
2002-08	05.29.	인권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안) 제정	심의	2003-08	08.05.	구급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관련 시설방문조사 계획(안)	의결
2002-08	05.29.	인권위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	심의	2003-08	08.05.	구급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관련 시설방문조사 계획(안)	의결
2002-08	05.29.	제2차 인권위 워크숍 기획안	심의	2003-08	08.05.	정체권고에 따른 피진정기관의 자료협조 요청건	심의
2002-08	05.29.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위법에 대한 논평 관련	심의	2003-09	08.12.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이관 추진	보고
2002-08	05.29.	2003년도 인권위 예산요구서(안)	의결	2003-09	08.12.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4차사업 공모계획(안)	보고
2002-09	06.11.	경찰청의 정신과치료 병력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 성검사 통보에 대한 대책안	심의	2003-09	08.12.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4차사업 공모계획(안)	보고
2002-09	06.11.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의결	2003-09	08.12.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검토	의결
2002-10	07.02.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진행경과	보고	2003-10	08.21.	수사관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의 긴급구제조치	의결
2002-11	07.23.	인권논문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2003-11	10.01.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제4차 사업 기술심사회의 결과	의결
2002-11	07.23.	위원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운영계획	보고	2003-12	10.09.	2003년도 운영사업 추진계획(안)[병역복무자 관련]	의결
2002-12	08.06.	인권논문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003-12	10.09.	추계체육행사 실시계획(안)	보고
2002-13	08.09.	중국동포 강제퇴거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검토 보고	의결	2003-12	10.09.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계획	보고
2002-14	09.02.	정보공개 청구권	의결	2003-13	10.31.	군 영창 방문조사 계획(안)	의결
2002-15	09.12.	이주노동자 강제퇴거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심의	2003-14	11.04.	정보공개취소소송 관련 항소제기 여부에 관한 논의	심의
2002-16	09.23.	연간보고서 등의 발간계획 기본계획안	심의	2003-14	11.04.	군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관련 군 교도소 방문계획(안)	의결
2002-17	09.30.	정책 관련 진정사건 처리철차 보고	심의	2003-14	11.04.	사회보호법 TFT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련 방문조사 계획	의결
2002-17	09.30.	정보공개청구 이익신장건	의결	2003-15	11.13.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5차 사업계획(안)	의결
2002-18	10.14.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기획	심의	2003-15	11.13.	지자체 조례 등의 차별관련 실태조사 계획안	의결
2002-19	10.28.	인권위 경직현황	보고	2003-16	11.24.	지자체조례 및 규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안)	의결
2002-19	10.28.	다수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위한 과업수행팀 구성 및 기획안	심의	2003-16	11.24.	외국인 인권침해 현장조사 계획	의결
2002-19	10.28.	연론 가이드라인 발간기획안	보고	2004-01	01.17.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관련 정신보건기관 방문조사 계획(안)	의결
2002-20	11.12.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	의결	2004-01	01.17.	구급시설 평가지침서 개발연구 관련 시설방문조사 계획(안)	의결
2002-21	11.28.	인권위 발족 1년 평가 워크숍	심의	2004-01	01.17.	2004년도 업무계획(안)	보고
2002-21	11.28.	진정사건 중 명예훼손과 관련없는 사건의 선별적 공개 방안	심의	2004-02	02.05.	TFT 운영계획(안) 보고(주제: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	심의
2002-21	11.28.	홈페이지 익명제 전환	심의	2004-02	02.05.	2003년 연간보고서 발간 추진경과 보고	보고
2002-22	12.30.	형사소송법·형법개정안 검토의견, 수사과정상 고문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권고	의결	2004-03	02.09.	NAP안 추진을 위한 인력구성(안)	심의
2002-22	12.30.	수사과정상 고문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권고	의결	2004-04	02.10.	부안군청의 주민투표 방해 등에 대한 긴급구제조치건	의결
2003-01	01.08.	정보공개 청구권	의결	2004-05	04.28.	학교 인권교육 교재개발 기본계획(안)	의결
2003-02	02.15.	지체1급 장애인의 구속수사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의결	2004-05	04.28.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 언론·출판의 자유 분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안)	의결
2003-03	04.26.	인권교육발전 종합프로젝트 기본계획(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4-06	08.04.	인권교육발전5개년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안)	보고
2004-06	08.04.	인권교육 실천사례 및 문예작품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의결
2004-06	08.04.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 및 의결안건	의결
2004-06	08.04.	기업대상 차별예방 교재개발 기본계획(안)	보고
2004-07	09.06.	북한인권 실태조사 계획(안)	의결
2004-07	09.06.	긴급구조요청 진정사건: 국립순천대 수시2학기 모집 응시자격 차별	심의
2004-08	10.08.	200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과제: 인권영향평가 방법론 개발연구 계약추진(안)	의결
2004-08	10.08.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4-08	10.08.	교육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4-08	10.08.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구축 기본계획(안)	보고
2004-09	10.13.	색각이상자의 고용차별 연구과제 수의계약 체결(안)	의결
2004-10	10.21.	NAP 환경권 기초현황 실태조사 계약체결건	의결
2004-11	10.27.	국민인권의식조사 계획(안)	의결
2004-12	11.11.	직권조사 계획: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04-13	11.24.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NAP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안)	의결
2004-13	11.24.	다산인권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건	의결
2004-14	12.13.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진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직권조사 계획 보고	의결
2005-01	01.13.	직권조사 계획: 경북 철곡 화재공장 장애인 보형가압 거절 관련	의결
2005-02	01.18.	인권위법 개정 수정(안)	의결
2005-03	01.21.	직권조사 계획: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관련	의결
2005-04	02.03.	신원조사 관련 권고대상 결정	의결
2005-05	03.08.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개요	보고
2005-05	03.08.	인권위 워크숍 실시계획(안)	심의
2005-05	03.08.	차별조사국의 인권침해사건 처리	심의
2005-05	03.08.	2005년도 업무계획(안)	보고
2005-06	03.14.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1차 사업 추진계획(안)	의결
2005-06	03.14.	한센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의결
2005-07	03.22.	지역사무소 개청 준비계획	보고
2005-07	03.22.	위원회 조직개편 계획	보고
2005-07	03.22.	인권위법 개정 추진상황	보고
2005-07	03.22.	2004년 연간보고서 사업계획 및 경과	보고
2005-08	04.01.	인권위법 개정안 검토의견(안)	의결
2005-09	05.03.	영상회의 중계시스템 설치 검토	보고
2005-09	05.03.	인권위 기구도 수정	심의
2005-10	05.19.	2005년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5-11	05.27.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검토(안)	의결
2005-12	06.01.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검토(안)	의결
2005-13	06.15.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제2차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접수현황	보고
2005-13	06.15.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제3차 연구용역사업 추진 계획(안)	의결
2005-14	06.30.	학생두발제한 관련 검토 보고	의결
2005-15	07.08.	직권조사 계획: 보조견등반 시각장애인 식품접객업소 출입거절 관련	의결
2005-15	07.08.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의결
2005-16	07.15.	교원인권 연구과정 운영 준비	보고
2005-17	08.19.	긴급구조차: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결
2005-18	10.04.	인권위 직제 개정(안)	심의
2005-19	10.06.	인권위 직제 개정(안)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5-20	10.20.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의결
2005-21	11.0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개정(안)	심의
2005-22	11.15.	인권위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	심의
2005-23	11.24.	단전·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상황 실태조사 계획	의결
2006-01	01.10.	2006년도 제1차 상임위 회의결과	기타
2006-01	01.10.	복송 장기수·귀환 남북자 인권침해 보상이구 관련 상황	보고
2006-01	01.10.	법무부 인권국 신설 관련	보고
2006-02	02.07.	인권위 직원선서문 제정안	심의
2006-02	02.07.	위원회 운영방안 검토	심의
2006-02	02.07.	2005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	보고
2006-02	02.07.	2006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2006-02	02.07.	2006년 제2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3	02.09.	2006년 제3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3	02.09.	인권위 직원선서문 제정안	심의
2006-04	02.16.	2006년 제4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4	02.16.	주요 국제회의 참석일정	보고
2006-04	02.16.	2006~2010 중기사업계획	심의
2006-04	02.16.	2006년 주요업무계획 중 중점추진과제 선정	의결
2006-04	02.16.	비영리법인 허가신청건 검토 보고	의결
2006-04	02.16.	보도자료 작성·배부 개선안	보고
2006-05	02.23.	2006년 제5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5	02.23.	2006~2010 중기사업계획	심의
2006-05	02.23.	청소년 성폭력 관련 상황	보고
2006-05	02.23.	인권위 구성원의 소속감 조성을 위한 우리의 다짐(가칭) 제정(안)	보고
2006-05	02.23.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06-05	02.23.	전문위원회 공개안건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방안	심의
2006-06	02.27.	2006년 제6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6	02.27.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 성적과로힘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의결
2006-06	02.27.	특이사항 긴급구제 여부 검토(안): 군대내 동성애자 진정 사건	의결
2006-07	03.02.	인권위 비전선포식 계획(안)	보고
2006-07	03.02.	2006년 제7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7	03.02.	TFT 운영방안	심의
2006-07	03.02.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안)	보고
2006-07	03.02.	비영리법인 허가신청 검토(울산인권연대)	의결
2006-08	03.10.	2006년 제8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8	03.10.	위원회 의사운영 개선방안	심의
2006-08	03.10.	운동선수 등 체육계 인권보호 증진방안 검토	보고
2006-08	03.10.	인권옹호과 기능관련 법무부 입장	보고
2006-08	03.10.	인권위 중기인력 운영계획(안)	보고
2006-09	03.16.	2006년 제9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09	03.16.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안)	의결
2006-09	03.16.	운영검토위원회 결과	보고
2006-10	03.20.	2006년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6-10	03.20.	2006년 제10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11	03.23.	2006년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6-11	03.23.	전문위원회 결정문 확정일자 통일 방안	심의
2006-11	03.23.	2006년 제11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11	03.23.	2006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일부 재정]	의결
2006-11	03.23.	대학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문제 검토	의결
2006-12	03.24.	2006년 제12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6-12	03.24.	평택 인권활동가 구속사건	심의
2006-13	04.06.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와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보고	보고
2006-13	04.06.	2006년 제13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13	04.06.	전문위원회 결정문 확정일자 통일방안(재상정)	심의
2006-13	04.06.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 검토	심의
2006-13	04.06.	2006년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심사	의결
2006-14	04.07.	2006년 제14차 상임위 회의록	기타
2006-14	04.07.	2006년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심사	의결
2006-15	04.14.	미종결 진정기관사건의 처리	의결
2006-15	04.14.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경과 보고	심의
2006-15	04.14.	2006년 제15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16	04.20.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대한 위원회 의견	심의
2006-16	04.20.	인권위 징계규칙 개정안	심의
2006-16	04.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개정안	심의
2006-16	04.20.	인권위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2006-16	04.2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개정안	심의
2006-16	04.20.	인권위 전문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심의
2006-16	04.20.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개정안	심의
2006-16	04.20.	2006년 제15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17	04.27.	2006년 제17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6-17	04.27.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검토 보고	심의
2006-17	04.27.	한센인 인권 보호증진 방안	심의
2006-17	04.27.	인권애니메이션 프로젝트 2 기획안	보고
2006-17	04.27.	2005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06-18	05.04.	사단법인 만남의 집 비영리법인 허가건	의결
2006-18	05.04.	사회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검토 보고	심의
2006-18	05.04.	한센인 인권 보호증진 방안	심의
2006-18	05.04.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	보고
2006-18	05.04.	2006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결과	보고
2006-19	05.11.	2007년도 예산편성	보고
2006-19	05.11.	이주인권포럼 운영계획	보고
2006-19	05.11.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법규상 성차별 여부 검토 보고	의결
2006-19	05.11.	행정부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심의
2006-19	05.11.	사별의료접근권 침해사건(05인3581) 결정문 작성에 관한 사항	심의
2006-20	05.18.	인종차별 철폐협약 관련 제13차 정부보고서 검토의견	심의
2006-20	05.18.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법규상 성차별 여부 검토	보고
2006-21	05.25.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안 검토의견	심의
2006-21	05.25.	군형사소송법안 검토의견	심의
2006-21	05.25.	인종차별 철폐협약 관련 제13차 정부보고서 검토의견	의결
2006-22	06.09.	교육과정 개정 시안 검토의견 제출	의결
2006-22	06.09.	남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결
2006-22	06.09.	2007년도 예산요구(안)	심의
2006-22	06.09.	행정부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심의
2006-23	06.15.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보고	의결
2006-23	06.15.	교육과정 개정 시안대안 검토의견 제출	의결
2006-24	06.2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검토	의결
2006-24	06.22.	특수진정사건 관련 경과	보고
2006-24	06.22.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결과	보고
2006-24	06.22.	위원회 인권 보고서 원칙마련 검토	보고
2006-25	06.29.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정정사항 검토	심의
2006-25	06.29.	정부기념일행사 참석방안 검토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6-26	07.13.	광주인화특수학교 및 인화원 성폭력 사건	의결
2006-26	07.13.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6-26	07.13.	인권위-국가청소년위원회 MOU 체결관련 추진상황	보고
2006-27	07.20.	광주인화특수학교 및 인화원 성폭력 사건	의결
2006-28	0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결
2006-28	07.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검토보고서	보고
2006-28	07.27.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2006-29	08.10.	군행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의결
2006-29	08.10.	행정부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의결
2006-29	08.10.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가 계획(안)	의결
2006-30	08.17.	광주인화특수학교 및 인화원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보고
2006-30	08.17.	법무부 인권국 소관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규정안 검토 보고	보고
2006-30	08.17.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보고
2006-31	08.24.	국가청소년위원회의와 종교교육회 학생인권상황 실태조사 공동실시 계획(안)	의결
2006-31	08.24.	위원회 사무처 간부 워크숍 개최 계획(안)	보고
2006-31	08.24.	위원회 기념품 관리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06-31	08.24.	인권교육본부 상임위 인권상황 기준(안)	보고
2006-32	08.31.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의견	의결
2006-33	09.07.	인권관련 법령의 의권회신절차 개선방안(안)	의결
2006-33	09.07.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 현황	보고
2006-33	09.07.	인권위원회 사무처 간부 워크숍 세부추진계획	보고
2006-33	09.07.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계획안	보고
2006-33	09.07.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검토의견	의결
2006-34	09.14.	북한인권관련 진정사건	의결
2006-34	09.14.	인권NAP 모니터링 관련 문제점	보고
2006-34	09.14.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보고
2006-34	09.14.	인권교육 업무현황 및 과제	보고
2006-35	09.21.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방안	의결
2006-35	09.21.	인권교육 법제화 진행경과 주요쟁점 보고	보고
2006-35	09.21.	법무부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리 규정안에 대한 답변	보고
2006-35	09.21.	한국까르푸 노동조합 관련 소송사건 1심 결과	보고
2006-36	09.28.	보상금 지급 검토	의결
2006-36	09.28.	근로기준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	의결
2006-36	09.28.	2006년도 하반기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6-37	10.13.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검토	의결
2006-38	10.18.	군사·경찰음부즈맨 설치관련 고충위 입장 최신	보고
2006-38	10.18.	2007년도 위원회 예산(정부부안)	보고
2006-38	10.1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추진 관련 외교통상부 질의 검토의견	의결
2006-38	10.18.	ILO 강제근로 관련협약에 대한 가입권고	심의
2006-38	10.18.	2006년도 방문조사결과 처리방안 보고	보고
2006-39	10.26.	전문위 의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가족 복지점수 차별건 기각결정문 작성방안(안)	의결
2006-39	10.26.	가출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룸홈)의 현황 실태조사 실시 계획(안)	의결
2006-39	10.26.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	의결
2006-39	10.26.	군사·경찰음부즈맨 설치관련 고충위 입장 검토	보고
2006-40	11.09.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안)	심의
2006-40	11.09.	인권위-전남대 MOU 체결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6-40	11.09.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
2006-40	11.09.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보고
2006-40	11.09.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추진현황	보고
2006-41	11.16.	인권위 징계규칙 개정(안)	심의
2006-41	11.16.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 조형물 기증	심의
2006-42	11.23.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규칙 개정(안)	심의
2006-42	11.23.	고충위 군사·경찰 업무부담 설치를 위한 시행령 및 직제령 관련	보고
2006-43	11.2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06-44	12.05.	긴급구제 요청 진정사건 접수 보고	의결
2006-45	12.14.	2007년도 중점추진과제(안)	심의
2006-45	12.1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06-45	12.14.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의결
2006-45	12.14.	보상금 지급 검토	의결
2006-45	12.14.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기획단 회의 최종결과	보고
2006-46	12.21.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
2006-46	12.21.	보상금 지급대상 검토	의결
2006-46	12.21.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의결
2006-46	12.21.	HIV/AIDS 관련 인권정책 검토	의결
2006-46	12.21.	2007년도 중점추진과제(안)	심의
2006-46	12.21.	2006년도 방문조사결과 처리방안	보고
2006-47	12.2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심의
2006-47	12.28.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인권개선방안 검토	의결
2006-47	12.28.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보호감호자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조사	의결
2006-47	12.28.	긴급구제조치 요청	의결
2007-01	01.0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의견표명안	의결
2007-02	01.11.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절차 및 기준	보고
2007-02	01.11.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2	01.11.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업무대행기관 선정 중심)	의결
2007-02	01.11.	인권위-전남대 인권증진 교류협정서 체결 결과	보고
2007-03	01.18.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	기타
2007-03	01.18.	지리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07-03	01.18.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07-03	01.18.	국제협력 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보고
2007-03	01.18.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07-04	01.25.	제4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4	01.25.	장차법안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07-04	01.25.	200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7-04	01.25.	2007~2011 중기사업계획(안)	보고
2007-04	01.25.	2006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	보고
2007-05	02.15.	원폭피해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심의
2007-05	02.15.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심의
2007-05	02.15.	제5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5	02.15.	법무부 인권NAP 초안	보고
2007-05	02.15.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심의
2007-05	02.15.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보고	의결
2007-06	02.27.	2007년 제6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6	02.27.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사망사고 직권조사 계획 보고	의결
2007-07	03.08.	제7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7	03.08.	장차법 제정경과 및 향후 대응방안	보고
2007-07	03.08.	2006년도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결과 보고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7-07	03.08.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보호감호자 처우에 대한 방문조사	보고
2007-08	03.09.	집회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긴급구제조치 요청건	의결
2007-08	03.09.	2007년 제8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9	03.15.	2007년 제9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09	03.15.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심의
2007-10	03.22.	2007년 제10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0	03.22.	집회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긴급구제조치 요청	의결
2007-10	03.22.	인권위-영남대 교류협정서 체결 계획	의결
2007-11	03.29.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의결
2007-11	03.29.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2007-11	03.29.	2007년 제11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1	03.29.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법률안 검토	의결
2007-12	04.05.	2007년 제12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2	04.05.	고령자 고용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7-12	04.05.	인권위법 제33조제1항 이송관련 검토 보고	의결
2007-12	04.05.	전자여권도입 관련 검토	보고
2007-12	04.05.	인권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07-12	04.05.	기회홍보 지원사업 선정 결과	보고
2007-12	04.05.	인권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추진계획안	보고
2007-13	04.12.	2007년 제13차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3	04.12.	2007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7-13	04.12.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 검토	의결
2007-13	04.12.	여권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7-13	04.12.	인권위법 제24조 방문조사 관련 검토	보고
2007-14	04.19.	2007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7-14	04.19.	2007년 제14차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4	04.19.	2007년 사회권 심포지엄 계획	보고
2007-14	04.19.	인권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수립 추진계획안	보고
2007-14	04.19.	인권위법 제24조 방문조사 관련 검토	보고
2007-14	04.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	의결
2007-15	04.23.	2007년 제15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5	04.23.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보고 관련 검토	보고
2007-16	04.26.	2007년 제16차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6	04.26.	부산교도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상습폭행	보고
2007-16	04.26.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보도관련 검토	보고
2007-16	04.26.	외국인보호시설 및 교도소 방문조사 계획안	의결
2007-17	05.03.	2007년 제17차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7	05.03.	부산교도소 수용자 상습폭행 진정사건 관련 자료검토 및 조사방향	보고
2007-17	05.03.	호주 커턴대학교의 교류협정서 체결계획안	심의
2007-17	05.03.	차별금지법 관련 주요쟁점 검토	의결
2007-18	05.04.	2007년 제18차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8	05.04.	차별금지법 관련 주요쟁점 검토	심의
2007-19	05.10.	2007년 제19차 상임위 회의결과 및 회의록	기타
2007-19	05.10.	인권위-영남대 인권증진 교류협정서 체결결과	보고
2007-19	05.10.	호주 커턴대학교의 교류협정서 체결계획안	심의
2007-19	05.10.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	의결
2007-20	05.16.	긴급구제조치 요청건: 영남대의료원의 CCTV설치를 통한 노동조합원 감시사건(07진자487)	의결
2007-21	05.23.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	의결
2007-21	05.23.	정부 인권NAP 보고	보고
2007-21	05.23.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관련 경과	보고
2007-21	05.23.	2006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7-22	06.07.	아시아 N간 인권현안 공동사업을 위한 용역실시 계획	보고
2007-22	06.07.	여권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에 대한 답변사항	보고
2007-22	06.07.	2008년도 예산편성 관련	심의
2007-23	06.08.	긴급구제요청건: 유치된 중증장애인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1864)	의결
2007-23	06.08.	2008년도 예산편성	심의
2007-24	06.14.	긴급구제조치: 유치된 중증장애인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07진인1864)	의결
2007-25	06.22.	주민등록 말소자 인권개선방안 검토 보고	의결
2007-25	06.22.	영문홈페이지 개편 진행상황	보고
2007-25	06.22.	2008년도 예산편성	심의
2007-25	06.2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검토	심의
2007-26	06.2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검토	심의
2007-27	07.05.	주민등록말소자 인권개선방안 검토 보고	의결
2007-27	07.0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검토	의결
2007-27	07.05.	차별금지법 제정 TFT 최종결과	보고
2007-27	07.05.	장차법 시행령 관련 업무경과	보고
2007-28	07.12.	긴급구제조치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07-28	07.12.	위원회 조사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보고
2007-29	07.18.	긴급구제사건 조사결과: 이랜드 집회방해 등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07진인2479)	의결
2007-30	07.19.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개인위치정보 사용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의결
2007-30	07.19.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 검토	의결
2007-30	07.19.	의사운영 매뉴얼(안)	보고
2007-31	07.26.	부안 순화상담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07-32	08.09.	장차법 차별시정 관련 시행령 검토	보고
2007-33	08.16.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관련 정책 검토	의결
2007-33	08.16.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자료 공유 검토	의결
2007-33	08.16.	청와대 민원 제도개선협의회 결과	보고
2007-34	08.23.	2007년 진정접수 증가 검토	보고
2007-34	08.23.	양형자료의 통보제도 검토	의결
2007-35	08.30.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관련 긴급구제	의결
2007-35	08.30.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에 대한 위원회 의견표명(안)	의결
2007-35	08.30.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 정책 검토	의결
2007-36	09.06.	200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추가)	의결
2007-36	09.06.	최저임금법 개정안 검토	의결
2007-36	09.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정책 검토	보고
2007-36	09.06.	2007년 상반기 위원회 10대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보고
2007-37	09.1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7-37	09.13.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검토	의결
2007-37	09.13.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 가입 검토 보고	심의
2007-37	09.13.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심의
2007-38	09.20.	사이버인권교육 운영현황	보고
2007-38	09.20.	법학전문대학원 MOU 체결 추진안	의결
2007-38	09.20.	소년법개정안 적용연령 인하의 인권적 측면 검토	의결
2007-38	09.20.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7-38	09.20.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에 대한 의견표명(안)	의결
2007-39	10.04.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안)	심의
2007-39	10.04.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내용 검토 보고	의결
2007-40	10.15.	위원회 설립 제6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9주년 기념행사 계획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7-40	10.15.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의
2007-40	10.15.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및 MOU 체결 계획	의결
2007-41	10.19.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헌제정 사건 검토	심의
2007-41	10.1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07-41	10.19.	인권위법 개정안	심의
2007-41	10.19.	인권위와 유사기관의 민원처리 현황	보고
2007-42	10.25.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추가 지정 및 MOU 체결안	의결
2007-43	11.0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7-43	11.01.	군 인권교육 규정 연내 제도화 권고안	의결
2007-43	11.01.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보고
2007-43	11.01.	인권홍보대사 운용 계획안	보고
2007-43	11.01.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안 검토	의결
2007-44	11.08.	하반기 인권위 워크숍 개최 계획안 보고	보고
2007-44	11.08.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안)	심의
2007-45	11.09.	긴급구제 요청건: '07.11.11. 범국민행동의날 서울광장 집회 금지통고 관련	의결
2007-46	11.15.	군 인권교육 제도화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2007-46	11.1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결
2007-47	11.22.	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심의
2007-48	11.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검토	의결
2007-48	11.29.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추가지정 MOU 체결안(전북대)	의결
2007-48	11.29.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국가보고서 TF 추진계획안	보고
2007-48	11.29.	위원회 영문 홍보영상물 시사회	기타
2007-49	12.0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7-49	12.06.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안 보고	기타
2007-49	12.06.	차별판단지침 작성업무	보고
2007-49	12.06.	무호적자 초적령취제도 개선방안 검토	의결
2007-49	12.06.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의결
2007-49	12.06.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7-50	12.13.	미등록 외국인보호시설 및 외국인교도소 방문조사 결과 보고	심의
2007-50	12.13.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검토	심의
2007-50	12.13.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심의
2007-50	12.13.	2007년 보상금 지급건	의결
2007-50	12.13.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의결
2007-51	12.20.	아동인권 기해조정회의 운영결과: 아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검토 기본계획안	보고
2007-51	12.20.	2007년 보상금 지급건	의결
2007-51	12.20.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 가입 권고	심의
2007-52	12.27.	인권위법 개정안	의결
2007-52	12.27.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보상 등에 관한 검토의견	의결
2007-52	12.27.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 관련 검토의견	심의
2008-01	0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검토	의결
2008-01	01.10.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심의
2008-01	01.10.	미등록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	보고
2008-02	01.17.	UN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별도 정보노트 제출건	의결
2008-03	01.24.	2008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계획	보고
2008-03	01.24.	2008년 주요업무 계획안	심의
2008-03	01.24.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재상정)	의결
2008-03	01.24.	UN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별도 정보노트 제출건(재상정)	의결
2008-04	02.14.	군인권교육규정 제정 결과	보고
2008-04	02.14.	2008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8-04	02.14.	외국인 HIV감염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 제출 검토	심의
2008-05	02.2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정책 검토	심의
2008-06	03.06.	2008년 북한인권 업무계획안 보고	보고
2008-06	03.06.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보고
2008-06	03.06.	인권논문 공모사업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08-06	03.06.	2008년 제1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8-07	03.13.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심의
2008-07	03.13.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검토의견	의결
2008-07	03.13.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의결
2008-08	03.2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재상정]	의결
2008-09	04.03.	국방자적법제정안 검토	의결
2008-09	04.03.	장차법 시행에 따른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검토	심의
2008-10	04.1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검토의견	의결
2008-10	04.1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2008-10	04.10.	2008년 1분기 북한인권 업무	보고
2008-11	04.17.	인권관련 법령의 의견회신 절차 개선안	보고
2008-12	04.24.	충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및 MOU 체결안 보고	의결
2008-12	04.24.	인권관련 법령의 의견회신 절차 개선안[재상정]	보고
2008-13	05.01.	충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및 MOU 체결안[재상정]	의결
2008-13	05.01.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사건 검토	의결
2008-14	05.06.	부산대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및 MOU 체결안	의결
2008-15	05.15.	카이어링(Car Earring)제도 검토	의결
2008-15	05.15.	국내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MOU 체결안(인권위-경기도-안산시)	의결
2008-15	05.15.	인권현장활동 실천대회 준비사항	보고
2008-15	05.15.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사건(2008도5) 관련 상황	보고
2008-15	05.15.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표적단속 사건(08진인1550)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건	의결
2008-16	05.22.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08-16	05.22.	인권위 조정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08-16	05.22.	이주노동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의견제출 검토	심의
2008-16	05.2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일부개정안[재상정]	심의
2008-16	05.22.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08-17	05.23.	촛불문화제 참여방해에 따른 긴급구제요청건	의결
2008-18	05.29.	1-5월 북한인권 업무	보고
2008-19	06.03.	감사원 감사진행 및 자료제출 관련	보고
2008-20	06.05.	전후 남북피해자 보상 관련 법령 개선 검토	의결
2008-20	06.05.	북한주민 인권실태조사	의결
2008-20	06.05.	시설 강제퇴소 관련 긴급구제조치건	의결
2008-21	06.12.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 등 검토	의결
2008-21	06.12.	행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검토	의결
2008-21	06.12.	2008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8-22	06.19.	2009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2008-22	06.19.	2007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08-22	06.19.	2007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08-22	06.19.	2009년도 예산편성요구안 검토	심의
2008-23	06.26.	4.9 통일·평화재단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검토 보고	의결
2008-24	06.30.	시각장애인 인마사의 의료법 제82조 관련 검토	보고
2008-24	06.30.	촛불집회 관련 상황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8-24	06.30.	위원회 시각장애인 점거농성 상황	보고
2008-25	07.11.	APF 제13차 연례회의 참가계획	보고
2008-25	07.11.	양성적 병역거부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촉구 의견표명	의결
2008-25	07.11.	촛불집회 직권조사	의결
2008-25	07.11.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검토	심의
2008-26	07.18.	공공분야 인권교육 교재 관련	보고
2008-26	07.18.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보고	의결
2008-26	07.18.	남북피해자 관련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정책 검토	의결
2008-26	07.18.	(사)사법피해자연맹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의결
2008-26	07.18.	4.9 통일·평화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재상정]	의결
2008-27	07.24.	전환복무 해제요구 전경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건	의결
2008-28	07.31.	민주노동 운동 봉쇄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건	의결
2008-28	07.31.	악식 신원진술서 제정 관련 검토	의결
2008-29	08.04.	집회불허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신청건	의결
2008-30	08.07.	북한인권법(황우여·황진하 의원 발의) 관련	보고
2008-30	08.07.	제13차 APF연례회의 결과	보고
2008-30	08.07.	아동청소년권리 옹무즈퍼스 관련 검토	보고
2008-31	08.14.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31	08.14.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검토	의결
2008-31	08.14.	공공분야 인권교육 교재 개발	보고
2008-31	08.14.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심의결과	보고
2008-32	08.21.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관련 검토	의결
2008-32	08.21.	가칭 '사단법인 옐리네트웍'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의결
2008-32	08.21.	인권교육법 재추진 방식 검토	의결
2008-32	08.21.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33	08.28.	가칭 '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	보고
2008-34	09.04.	2008년도 상반기 업무평가	보고
2008-34	09.04.	권고 불수용 보고·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 등 검토	보고
2008-34	09.04.	권고 관리 현황	보고
2008-34	09.04.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특별사업계획 추진상황	보고
2008-35	09.11.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조례안 검토 보고	의결
2008-35	09.11.	촛불집회 조사 관련 경찰의 협조태도	보고
2008-36	09.23.	전남대 국악과 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결정건	의결
2008-36	09.23.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재상정]	의결
2008-37	09.25.	고품질 인권상담종합서비스시스템 구축계획	보고
2008-37	09.25.	2008년 상반기 업무평가 후속조치 계획	보고
2008-37	09.25.	광주광역시와 인권교류협력증진 및 지역사회 인권신장을 위한 MOU 체결안 보고	의결
2008-37	09.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보고	의결
2008-38	10.02.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38	10.02.	경상대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및 MOU 체결안	의결
2008-39	10.09.	법원 청소년보호근로자 인권개선 검토	의결
2008-40	10.16.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결
2008-40	10.16.	기무사 조사 후 심리불안 겪는 병사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신청건	의결
2008-40	10.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	의결
2008-41	10.23.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 제출 인권위 별도 보고서(안)	보고
2008-41	10.23.	국공립대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조사	보고
2008-41	10.23.	인권증진행동계획안(2009~2011) 보고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8-42	11.06.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안 보고	심의
2008-42	11.06.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안 보고[재상정]	심의
2008-42	11.06.	배회가능 어르신(치매노인) 인식표 보급사업 검토	의결
2008-43	11.14.	광주지역사무소 개소 3주년 평가와 전망	보고
2008-43	11.14.	부산지역사무소 개소 3주년 업무평가	보고
2008-44	11.20.	대한민국 인권상 관련 논란	보고
2008-45	11.27.	군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8-45	11.27.	인권위 성희롱 예방규정 개정(안) 추진내용	보고
2008-46	12.0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8-46	12.04.	2008년 보상금 지급 계획	의결
2008-46	12.04.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가 위촉(안)	심의
2008-46	12.04.	상임위원회 지역사무소 순회개회 관련 검토	보고
2008-46	12.04.	학교 자율화 정책 관련 검토 보고	의결
2008-47	12.12.	학교 자율화 정책 관련 검토 보고[재상정]	의결
2008-47	12.12.	국내 체육지도자 채용관행의 양성평등적 개선방안 검토	의결
2008-47	12.12.	보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8-47	12.12.	장애인생활시설(예수재활원) 직권조사	의결
2008-48	12.18.	아동청소년 5개년 기본계획안 검토	의결
2008-48	12.18.	유통업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건강권 개선정책 검토	의결
2008-48	12.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48	12.18.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결과 종합 보고	보고
2008-49	12.2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49	12.22.	국제수행자이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49	12.22.	군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08-50	12.24.	국세청의 개인정보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검토 보고	의결
2008-50	12.2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결
2008-50	12.24.	형법 개정안(정윤석 의원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안) 병합 검토	의결
2009-01	01.05.	골목 농성자 음식물 등 반입제한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건(09진인0008)	의결
2009-02	01.08.	골목 농성자 음식물 등 반입제한 관련 긴급구제조치 신청건	의결
2009-02	01.08.	2008년 상담경향과 조사 및 정책검토 과제 분석	보고
2009-02	01.08.	고용차별기부 재원 관련 동향 및 과제	보고
2009-03	01.15.	정신병원 방문조사 계획	의결
2009-03	01.15.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판단기준(안) 중간보고	보고
2009-04	01.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결
2009-05	01.30.	2009 업무계획	심의
2009-05	01.30.	위원회를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사건의 처리현황 및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09-05	01.30.	2009년 사회와 교육과정 재개정안 '인권' 단원 축소 사안 검토	의결
2009-06	02.05.	2009년 사회와 교육과정 재개정안 '인권' 단원 축소 사안 검토	의결
2009-06	02.05.	형법 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병합 검토 [재상정]	의결
2009-07	02.12.	학교 자율화 정책 관련 검토 보고[재상정]	의결
2009-07	02.12.	강제철거에서의 거주민 인권보호방안 검토	의결
2009-07	02.12.	미안마 친족 민주주의 인권연합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의결
2009-07	02.12.	인권위법 개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결
2009-07	02.12.	시민단체 가입회원 활동 등에 대한 경직허가 처리방안 검토	보고
2009-07	02.12.	2008년도 대학교 인권교육 추진 결과	보고
2009-08	02.19.	인권상황실태조사 활동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9-08	02.19.	연령차별금지법 시행효과 극대화 사업 세부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09-08	02.19.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심의
2009-08	02.19.	2009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9-08	02.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9-08	02.19.	학교 자율화 정책 관련 검토 보고[재상정]	의결
2009-09	02.26.	미안마 친족 민주주의 인권연합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재상정]	의결
2009-09	02.26.	2009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의결
2009-09	02.26.	2009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9-10	03.05.	조정위원회 운영관련 현황	보고
2009-11	03.12.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이행 모니터링사업 기본 계획안	보고
2009-12	03.19.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9-12	03.19.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위원회 임무와 업무체계	보고
2009-12	03.19.	NAP 이행 모니터링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09-13	04.02.	인권위 직제령 전부개정안에 따른 각 부서 소관사무 일시 조정(안)	보고
2009-13	04.02.	인권위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보고
2009-14	04.03.	인권위 직제 개정에 따른 위원회 규칙 일괄개정안 보고	심의
2009-15	04.16.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검토 보고	심의
2009-15	04.16.	사무처 운영지침(안)	보고
2009-15	04.16.	공익근무요원 두발규제 관련 질의회신 요청 검토 보고	의결
2009-16	04.23.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보고	심의
2009-16	04.23.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검토 보고[재상정]	심의
2009-16	04.23.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피의자 뇌사사건 관련 직권조사	의결
2009-16	04.23.	19**년 ***로 분류된 **사건 검토	의결
2009-16	04.23.	2009년 제2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09-17	04.30.	한국-몽골 국가인권위원회 MOU 체결(안)	의결
2009-17	04.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결
2009-18	05.07.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사업추진경과 및 계획(안)	보고
2009-18	05.07.	노인인권증진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09-19	05.14.	2008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09-19	05.14.	2010년 예산확보 추진현황	보고
2009-20	05.21.	성평등기본법 추진 동향과 위원회의 대응 방향	보고
2009-20	05.21.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 등 검토	의결
2009-21	06.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9-21	06.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결
2009-21	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검토 보고	의결
2009-22	06.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검토 보고[재상정]	의결
2009-23	06.10.	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 및 집회불허 관련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09-24	06.11.	2009~2010 인권영화 프로젝트 기획	보고
2009-24	06.11.	한국-몽골 국가인권위원회 MOU 체결(안)[재상정]	의결
2009-25	06.15.	AIDS치료제 무제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검토 보고	의결
2009-26	06.18.	인권 논문-에세이 및 인권실천 우수사례 공모사업 추진 계획	보고
2009-26	06.18.	2010년도 예산요구서(안) 보고	심의
2009-27	06.19.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09-28	06.25.	2009년도(제2회) 인권친화적 10대 보도물 발굴·선정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09-28	06.25.	차별 진정사건 접수 등 현황	보고
2009-28	06.25.	진정사건처리 시스템 개선 검토(안)	보고
2009-29	07.02.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 긴급구제신청건[재상정]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9-29	07.02.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조사 경과	보고
2009-30	07.08.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이후보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초청	의결
2009-31	07.16.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학생회장 이후보 제한(09진차889) 긴급구제초청 권고수용	보고
2009-32	07.23.	직권조사 의미 및 의견 검토	보고
2009-32	07.23.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제한 관련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09-33	07.30.	ICC 의장기구 수임 추진계획	의결
2009-33	07.30.	쌍용자동차 농성자 정중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초청	의결
2009-34	08.05.	쌍용자동차 농성자 강제진압에 대한 긴급구제초청	의결
2009-34	08.05.	긴급구제권고 이후 상황과 대응방안 검토	보고
2009-35	08.20.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개정안 보고	심의
2009-35	08.20.	인권사무소 자문위원회 구성(안)	보고
2009-35	08.20.	제14차 APF 연례회의 참가결과	보고
2009-36	08.27.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기본계획(안)	보고
2009-36	08.27.	장차법 이행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 계획	보고
2009-36	08.27.	노숙인 명의도용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09-37	09.03.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방안 검토	의결
2009-37	09.03.	인권친화적 교과서 추진 관련 상반기 업무보고	보고
2009-37	09.03.	장차법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보고
2009-37	09.0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검토	보고
2009-38	09.09.	조사규칙 제20조 개정안 운영방안 및 계획	보고
2009-38	09.09.	(사)소파인권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건	의결
2009-38	09.09.	재단법인 진실의 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	의결
2009-38	09.09.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09-39	09.14.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사건 관련 의견제출	심의
2009-39	09.14.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	보고
2009-40	09.16.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재관 응모 연령상한제도 검토 보고	의결
2009-40	09.16.	구급시설 진정사건 처리방안 검토	보고
2009-41	09.24.	제43차 UN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회기 제출을 위한 인권위 의견서	의결
2009-41	09.24.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제 개정(안) 보고	심의
2009-41	09.24.	(사)한국역사연구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의결
2009-42	10.01.	ASEM 인권세미나 개최 여부 검토	보고
2009-42	10.01.	사단법인 대전·충청인권문제연구소 설립 허가건	의결
2009-42	10.0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국내 적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계획	보고
2009-42	10.0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심의
2009-43	10.08.	재단법인 진실의 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재상정)	의결
2009-43	10.08.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안)(재상정)	심의
2009-43	10.08.	ASEM 인권세미나 개최 여부 검토(상임위원회 재상정)	보고
2009-44	1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검토	의결
2009-44	10.22.	용산화재 진정사건(09진인215)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상황	보고
2009-44	10.22.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보고
2009-44	10.22.	정보인권 관련 법제 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09-45	10.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검토(재상정)	의결
2009-45	10.29.	한국-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MOU 체결(안)	의결
2009-46	11.05.	(사)전북인권협의회 설립허가 신청건	의결
2009-46	11.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09-46	11.05.	2009 10대 인권보도 선정 결과	보고
2009-46	11.05.	행정소송 1심 결과 및 항소심 제기 여부 검토	보고
2009-46	11.05.	2009 대한민국인권상 공적심사 결과	보고
2009-47	11.19.	2009 초·중·고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09-47	11.19.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보고	심의
2009-47	11.19.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사건(일명 피다수참사건) 관련 의견제출건	심의
2009-47	11.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법무부안) 검토	의결
2009-47	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중 기사판 본인확인제 관련조항 검토	의결
2009-47	11.19.	대통령 특별보고	보고
2009-48	11.26.	(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	의결
2009-48	11.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표명	의결
2009-48	11.26.	행정소송 1심 결과 및 항소 여부	보고
2009-49	12.03.	인권상실선사관 구축 및 인권위-부산교통공사 MOU 체결(안)	의결
2009-49	12.03.	개인정보보호법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조항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09-49	12.03.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2010 개최 계획	보고
2009-49	12.03.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기념행사 계획	보고
2009-49	12.03.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검토	의결
2009-50	12.09.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안)(재상정)	심의
2009-51	12.17.	(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재상정)	의결
2009-51	12.17.	초·중·고 교과서내 비인권적 내용 수정과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을 위한 권고	의결
2009-51	12.17.	진정사건 권고 사후관리 강화방안	보고
2009-51	12.17.	2009년 보상금 지급 계획	의결
2009-52	12.24.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안)(재상정)	심의
2009-52	12.24.	개인정보보호법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조항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09-52	12.24.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검토의견	심의
2009-52	12.24.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09-52	12.24.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발의) 검토	의결
2010-01	01.07.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01	01.07.	사회권규약위원회 참관결과 및 최종견해 분석	보고
2010-02	01.14.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의결
2010-02	01.14.	2010년도 업무계획(안)	심의
2010-03	01.21.	2010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10-04	01.28.	근로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활동능력 평가기준 검토	의결
2010-04	01.28.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방안 검토	의결
2010-05	02.04.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방안 검토	의결
2010-06	02.11.	2010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의결
2010-06	02.11.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한 결과 조치	보고
2010-07	02.18.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대비 사업추진 기본계획안	보고
2010-07	02.18.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부분수용	보고
2010-07	02.18.	2010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기본계획(안)(재상정)	의결
2010-07	02.18.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심의
2010-08	03.11.	북한인권 용역과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정책 및 로드맵 구축	의결
2010-08	03.11.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2010 결과	보고
2010-09	03.25.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	심의
2010-09	03.25.	병적증명서 발급시 과거의 병역면탈 범죄사실 기재·발급에 대한 의견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0-09	03.2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10-09	03.25.	인권위-한국정보화진흥원,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결과	보고
2010-10	04.01.	UN인권교육훈련선언(초안) 작성 동향 및 향후 대응 검토	보고
2010-10	04.01.	인권위-전라남도 인권증진 MOU 체결(안)	의결
2010-10	04.01.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03887사건 관련 의견제출건	심의
2010-11	04.08.	2010년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 업무계획(안)	보고
2010-11	04.08.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11	04.08.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심의
2010-11	04.08.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계획안	의결
2010-11	04.08.	긴급구제권고 일부수용: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 중 인권침해(09진인2731, 09진인2841)	보고
2010-12	04.15.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안) 검토	의결
2010-13	04.29.	2010년 장애차별조사과 소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10-13	04.29.	수형자 긴급구제요청 사건(김명호 긴급구제요청)	의결
2010-13	04.29.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 부여 실행방안	보고
2010-13	04.29.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실적(2010년 3월말 기준)	보고
2010-13	04.29.	2010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0-13	04.29.	2010 장차법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보고
2010-14	05.1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중 불심검문(직무질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14	05.13.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동향	보고
2010-15	05.20.	경찰의 고문	의결
2010-15	05.20.	2012 ASEM 인권세미나 개최 여부 검토	보고
2010-15	05.20.	2009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0-15	05.20.	2010년 사이버인권교육 기본계획(안)	보고
2010-16	06.03.	인권홍보대사 운용 활성화 계획(안)	보고
2010-16	06.03.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10-17	06.10.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국제회의	보고
2010-17	06.10.	2011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0-17	06.1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심의
2010-17	06.10.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2010-17	06.10.	국토해양부의 국내공항 전신스캐너 설치 관련 검토	의결
2010-18	06.15.	경찰의 고문 진정관련 직권조사	의결
2010-19	06.17.	공개수배제도 관련 법령 및 관행 개선 권고	의결
2010-19	06.17.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검토	의결
2010-19	06.17.	2011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0-20	06.24.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	심의
2010-20	06.24.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정책 검토(재상정)	의결
2010-21	07.01.	인권위 정례회 개최 예정안	심의
2010-21	07.01.	의료기관 자율인증제 도입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논의 결과	보고
2010-21	07.01.	중요사건 접수 관련	보고
2010-21	07.01.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심의
2010-21	07.01.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일터만들기 협약 체결(안)	의결
2010-23	07.15.	결혼이주여성의 사망사건 처리계획 보고	의결
2010-23	07.15.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보고
2010-23	07.15.	국무총리실의 한국노총 간부 사찰에 대한 예비검토	보고
2010-24	07.22.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 협약서 체결(안)(재상정)	의결
2010-24	07.22.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방안 정책 검토	심의
2010-25	07.29.	헌법재판소 2010헌바88사건 등에 대한 의견제출건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0-25	07.29.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신청 검토 보고(10진정 0460400)	의결
2010-25	07.29.	성희롱 문제 개선 관련 대책방안 검토	보고
2010-26	08.13.	이포보 고공농성 관련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0-27	08.19.	긴급구호비 지원 등을 통한 긴급구제신청 검토 보고(긴급구제신청)	의결
2010-27	08.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0-27	08.19.	전자우편 압수수색 관련 개정법률안 검토	의결
2010-27	08.19.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의견	의결
2010-27	08.19.	인권위-전라남도, 인권증진 MOU 체결(안)(재상정)	의결
2010-28	09.01.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0-29	09.0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의결
2010-29	09.02.	2010년 개정 교과서 상반기 검토 보고	의결
2010-29	09.02.	위원회 인지도와 인권익사 조사 결과	보고
2010-30	09.09.	인권광역시 전자기카드 제도 관련 정책검토 보고	의결
2010-30	09.09.	국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10-30	09.0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관련 개정권고	의결
2010-31	09.14.	경찰의 폭행 관련 직권조사	의결
2010-32	09.30.	노동조합설립제도 개선방안 검토	의결
2010-32	09.30.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이춘석 의원안) 검토	보고
2010-32	09.30.	군(부)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견표명	의결
2010-32	09.30.	인권위-서울특별시의회 인권증진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안	의결
2010-32	09.30.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의결
2010-33	10.21.	성폭력범죄자의 성총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	의결
2010-33	10.21.	국회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10-33	10.21.	사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검토	의결
2010-33	10.21.	개인정보보호법 의견표명 수용	보고
2010-34	10.28.	성차별조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보고	심의
2010-34	10.28.	2010년 3/4분기 진정사건 처리실적	보고
2010-34	10.28.	경찰의 고문관련 직권조사 권고수용(10직인0001)	보고
2010-35	11.18.	성폭력범죄자 성총동 약물치료법 검토	의결
2010-35	11.18.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심의
2010-36	11.25.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개선권고 검토 보고	의결
2010-37	12.02.	인권위법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
2010-37	12.02.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의결
2010-38	12.08.	인권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2010-38	12.08.	2010년 보상금 지급 계획	의결
2010-38	12.08.	한국-네덜란드-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MOU 체결(안)	의결
2010-39	12.16.	2010 기업과 인권 포럼 운영결과	보고
2010-39	12.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10-39	12.16.	2010년 보상금 변경 지급	의결
2010-39	12.16.	목포농아원(현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의결
2010-40	12.23.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검토 보고	의결
2010-40	12.23.	장애인인권협약 국가보고서(안) 검토 보고	심의
2010-40	12.23.	노인인권사업 추진결과	보고
2010-40	12.23.	2010 스포츠 성 인권 교육 결과	보고
2010-41	12.30.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강화방안 검토 보고	의결
2010-41	12.30.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1-01	01.06.	2011년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1-01	01.06.	군대내 폭행	의결
2011-02	01.10.	의경 백혈병 사망사건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1-03	01.13.	2011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11-03	01.13.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1-04	01.2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제출건	심의
2011-04	01.20.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지침 초안 검토	의결
2011-04	01.20.	2011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기본계획(안)	의결
2011-04	01.20.	인권위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2011-05	01.27.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적 착취 등) 행위 등 직권 조사 기획(안)	의결
2011-05	01.27.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계획안 보고	의결
2011-05	01.27.	정책, 법령 등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보고
2011-05	01.27.	UN아동권리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 제출 인권위 보고서안 검토	보고
2011-05	01.2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정부보고서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제출건	의결
2011-05	01.27.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 불수용	보고
2011-06	02.10.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11-06	02.10.	정림원내 시설생활인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수용	보고
2011-06	02.10.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수립 계획(안)	보고
2011-06	02.10.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침해기록관 설치계획	보고
2011-06	02.10.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통합 정부보고서 검토 의견	심의
2011-07	02.11.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추가위촉(안)	심의
2011-08	02.17.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UN인권이사회 보고서 초안(대한민국 방문 결과) 검토 보고	의결
2011-08	02.17.	2011 장차법 모니터링 사업 운영계획	보고
2011-08	02.17.	장차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계획	보고
2011-08	02.17.	2011년도 국외출장 및 국제회의 개최 계획	보고
2011-08	02.17.	(사)인권의학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	의결
2011-09	02.18.	2010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	심의
2011-10	02.28.	2011년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회의결과(고용노동부)	보고
2011-10	02.28.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추가위촉 보고	심의
2011-11	03.02.	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	의결
2011-11	03.0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검토	의결
2011-12	03.10.	2012 ASEM 인권세미나 개최 추진계획(안)	보고
2011-12	03.10.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시 및 회의 개최 계획	보고
2011-12	03.10.	2010 장차법 모니터링 사업 운영 결과	보고
2011-12	03.10.	기업과 인권에 관한 ICC 아·태지역 워크숍 추진계획(안)	보고
2011-12	03.10.	UN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턴트 추진계획(안)	보고
2011-12	03.10.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의결
2011-13	03.17.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MOU 체결	의결
2011-13	03.1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11-13	03.17.	2011년 인권단체협력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1-13	03.17.	상임위원회 회의록 개선방안	보고
2011-14	03.24.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사업계획(안)	의결
2011-14	03.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일부수용	보고
2011-15	03.31.	의원발의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의결
2011-15	03.31.	국민인권의식조사(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의결
2011-15	03.31.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검토	의결
2011-15	03.31.	노인인권사업 추진계획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1-16	04.07.	요양보호사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근로감시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 검토	의결
2011-16	04.07.	인권교육법 제정 발의결과	보고
2011-16	04.07.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국회 의원번호 1811304호)	의결
2011-16	04.07.	인권보호도준칙 제정 홍보사업 계획(안)	보고
2011-17	04.14.	2010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1-18	04.28.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검토	의결
2011-19	05.03.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11-20	05.04.	UN인권이사회 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 결의	보고
2011-20	05.04.	2011년 1/4분기 진정사건 처리 실적	보고
2011-21	05.19.	UN인권조약기구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사회 컨설턴트 선정 결과	보고
2011-22	06.02.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처 의견 검토	보고
2011-22	06.02.	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수용	보고
2011-22	06.02.	이주아동 교육권 개선방안 권고수용	보고
2011-23	06.09.	제24차 ICC 연례회의 및 승인소위 참가 결과	보고
2011-24	06.13.	2012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1-24	06.13.	제2기 인권NAP 권고안 추진 경과	보고
2011-24	06.13.	입양대가아동 가정 찾아주기 캠페인 방송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의결
2011-25	06.2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	심의
2011-25	06.23.	학력차별금지법안 제정 관련 동향	보고
2011-26	06.30.	한진중공업 고공성사자 보호조치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1-26	06.30.	기업과 인권 추진 현황	보고
2011-27	07.14.	시립도서관 열람실내 CCTV 설치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검토	의결
2011-27	07.1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검토 보고	의결
2011-28	07.21.	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인권교육 반영 현황	보고
2011-28	07.21.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상황	보고
2011-29	08.04.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건	의결
2011-29	08.04.	정신과 병원에서 추락사한 중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방문 조사 기획(안)	의결
2011-30	08.11.	해맑음 마음터 장애아동 보호조치 관련 긴급구제 신청건	의결
2011-30	08.11.	긴급실태조사 개사: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의결
2011-30	08.11.	UN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위원회 의견서안 검토	심의
2011-31	08.18.	정책, 법령 등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보고
2011-31	08.18.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개정안	심의
2011-31	08.18.	2011년 개정 적용 교과서 상반기 검토 보고 및 수정 권고	의결
2011-31	08.18.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보접근권 이행 강화 국제 컨퍼런스(안)	보고
2011-32	08.24.	인권보호도준칙 제정 추진경과와 최종안	보고
2011-33	09.01.	인권NAP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11-33	09.01.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 기본계획(안)	보고
2011-33	09.01.	무국적자 인권증진방안 검토	의결
2011-33	09.0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검토 보고	의결
2011-33	09.01.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1-33	09.01.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11-34	09.15.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안)	심의
2011-34	09.15.	인권위 간행물의 대국민 인터넷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MOU 추진(안)	의결
2011-34	09.15.	인권위법 시행령 개정령안(수정)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1-35	09.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의결
2011-35	09.22.	장애인의 사생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보고	의결
2011-36	09.29.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제도 의견표명	의결
2011-37	10.06.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연락사무소(NCP)의 구성·운영 상황 개선권고건	의결
2011-38	10.13.	광주인화학교 관련 진행상황 및 대응방안	보고
2011-38	10.13.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1-39	10.13.	직권 및 방문조사계획(안):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	의결
2011-40	10.20.	육군 31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1-40	10.20.	인권위-경찰청 경찰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안)	의결
2011-41	10.27.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건	의결
2011-41	10.27.	차별금지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1-41	10.27.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1-42	11.04.	인권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1-43	11.10.	권고 일부수용: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권고	보고
2011-43	11.10.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건	의결
2011-44	11.18.	2011년 3/4분기 진정사건 처리 실적	보고
2011-44	11.18.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재근 의원 발의) 의견제출건	의결
2011-44	11.1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1-44	11.18.	진정사건 효율적 처리 개선방안	심의
2011-44	11.18.	권총 및 경찰장구 사용 매뉴얼(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1-45	11.2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재단법인 호루라기, 사단법인 북한인권보호연합회)	의결
2011-45	11.24.	2011년 장차법 모니터링 사업 운영 결과	보고
2011-45	11.24.	북한이탈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권고건	의결
2011-45	11.24.	직권조사 계획(안): 사회복지법인 예원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	의결
2011-45	11.24.	은행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 권고건	의결
2011-45	11.24.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정부협약안	보고
2011-46	11.29.	기업과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회의 결과	보고
2011-46	11.29.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권고건	의결
2011-47	12.08.	한국-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협력협정 체결(안)	의결
2011-47	12.08.	201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건	의결
2011-47	12.08.	중장기 다문화 인권정책 실행계획(안)	보고
2011-47	12.08.	노숙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11-48	12.15.	NAP 권고(안)	심의
2011-48	12.15.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권고건[재상정]	의결
2011-49	12.22.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심의
2011-49	12.22.	201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건	의결
2011-49	12.22.	2012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1-49	12.22.	조사국 보도자료 작성기준 검토	보고
2011-49	12.22.	2011년 보상금 지급 계획	의결
2011-50	12.29.	201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건	의결
2011-50	12.2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건	의결
2012-01	01.12.	여성연예인 인권보호 애니메이션 <나의 꿈은> 제작보고	보고
2012-01	01.12.	2기 UPR 업무추진계획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2-01	01.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 구성 및 활동계획(안)	보고
2012-01	01.12.	(사)탈북난민인권연맹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	의결
2012-02	01.19.	무국적자 인권개선 정책권고 불수용	보고
2012-02	01.19.	2012 ODA 인권정책발전과정 기본계획	보고
2012-02	01.1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재상정]	의결
2012-03	01.26.	2012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12-03	01.26.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총회(ICDPC) 가입 추진계획	보고
2012-03	01.26.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2-03	01.26.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2-04	01.31.	자료제출 거부 대응방안	보고
2012-04	01.31.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운영위원회 심사자료(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2012-05	02.14.	재중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의견표명	의결
2012-06	02.16.	2011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 보고	심의
2012-06	02.16.	선거운동시 예비후보자의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의결
2012-06	02.16.	군대내 여성군인 인권증진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12-06	02.16.	국내 체류 이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 체계 개선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2-06	02.16.	노인인권 증진과 사회적 강화를 위한 기획단 운영 기본계획(안)	보고
2012-06	02.16.	장차법 2012 모니터링사업 운영 계획(안)	보고
2012-07	02.23.	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2-07	02.23.	2012년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보고
2012-08	03.06.	2기 UPR관련 위원회 의견제출	심의
2012-09	03.0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결
2012-09	03.08.	2012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2-09	03.08.	2012년 노인인권 모니터링 사업 계획안	보고
2012-09	03.08.	인권위법 일부개정 결과	보고
2012-09	03.08.	장차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세부계획(안)	보고
2012-10	03.15.	구급시설 진정사건 처리 개선방안	보고
2012-10	03.15.	인권위법 시행령 개정안(부처협약안)	의결
2012-10	03.15.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정책개선 권고 관련 수용건	보고
2012-11	03.26.	2012년 위원회 수시적회 협의 요청(안) 제출건	의결
2012-12	03.29.	공공부문 청사관리용역 고용차별 개선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12-12	03.29.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운영성과	보고
2012-12	03.29.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2-12	03.29.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개정 권고	의결
2012-12	03.29.	고용허가제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2-13	04.05.	2012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안)	심의
2012-13	04.05.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의결
2012-13	04.05.	진정처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권고 사후관리 기준(안)	보고
2012-13	04.05.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이행 중간점검 평가결과 제출건	의결
2012-14	04.12.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건	의결
2012-14	04.12.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추진계획(안)	보고
2012-14	04.12.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2-14	04.12.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관련 위원회 대응방안건	의결
2012-14	04.12.	정신의료기관 간 부당한 입·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계획(안)	의결
2012-14	04.12.	2011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2-15	04.18.	원앙어선내 외국인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2-15	04.18.	군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정책권고건	의결
2012-15	04.18.	개정 위원회별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2012-15	04.18.	장애인 보행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계획(안)	보고
2012-15	04.18.	인권위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2-15	04.18.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
2012-16	05.0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권고건	의결
2012-17	05.1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권고건	의결
2012-17	05.10.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	의결
2012-17	05.10.	제25차 ICC연례회의 및 집행이사회 참가 결과	보고
2012-17	05.10.	2012 인권정책발전과정 연수 결과	보고
2012-17	05.10.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에 대한 성희롱 및 임금차별 등 사건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변경안	의결
2012-18	05.1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권고건	의결
2012-18	05.17.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재상정]	의결
2012-19	05.24.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장표명건	의결
2012-19	05.24.	국가인권지수 개발 추진계획안	보고
2012-20	05.31.	2012년 1/4분기 진정사건 처리 실적	보고
2012-20	05.31.	성폭력우범자 재범방지 예방자료 배포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결
2012-20	05.31.	2013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2-21	06.07.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	의결
2012-21	06.07.	국립특수학교 한국경진학교 직권조사	의결
2012-22	06.14.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확신	의결
2012-22	06.14.	201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가 실시건	의결
2012-22	06.14.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후속조치	보고
2012-22	06.14.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건	의결
2012-23	06.21.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 관련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2-23	06.21.	2기 UPR 관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	심의
2012-24	06.28.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수용	보고
2012-24	06.28.	중증장애인 구급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2-24	06.28.	인권위-충북대 인권교육협력증진을 위한 MOU 체결(안)	의결
2012-25	07.05.	기각·각하와 권고·훈재하는 진정사건의 처리방안	보고
2012-26	07.26.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총회(ICDPC) 가입 추진건	의결
2012-26	07.26.	인종차별철폐위원회(제81차) 정부보고서 제출건	보고
2012-26	07.26.	제12차 ASEM 인권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2012-27	08.02.	중국 구금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김영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위 대응방안	의결
2012-28	08.0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	의결
2012-29	08.20.	2012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추가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2-29	08.20.	UN고문방지위원회 제3·4·5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
2012-30	08.30.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후속조치 및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2-30	08.30.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의결
2012-30	08.30.	중증장애인 구급시설 수용 관련 긴급구제 권고 수용	보고
2012-30	08.30.	군복무로 인한 이명피해자 대책마련 등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2-31	09.06.	장애인 인권증진 증정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권고 추진(안) 중간보고	보고
2012-31	09.06.	2010-2012년 발행 초·중등 교과서 속 인권위 관련 내용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2-31	09.06.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군전역자들의 이명피해 실태조사 권고건	의결
2012-31	09.06.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2-32	09.1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재단법인 공감)	의결
2012-33	09.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의견표명 권고수용	보고
2012-33	09.20.	인권위법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손인춘·김광진 의원 발의 등 2건)	의결
2012-34	09.27.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건	심의
2012-34	09.27.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 권위의 의견표명건	심의
2012-34	09.27.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2-34	09.27.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권고건	의결
2012-34	09.27.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 등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2-35	10.11.	2012년 상반기 정책권고 이행 현황	보고
2012-35	10.1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2-35	10.11.	안마사 자격 관련 의료법 개정 권고 불수용	보고
2012-35	10.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의견표명	의결
2012-35	10.11.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권고건 [재상정]	의결
2012-36	10.18.	장애인 인권증진 증정기 계획 수립을 위한 권고건	의결
2012-36	10.18.	인권위-한국정보화진흥원 MOU (제)체결 추진건	의결
2012-36	10.18.	개인 고유식별정보 처리 최소화화를 위한 위원회 규칙 일괄 개정안	심의
2012-36	10.18.	방송영상 제작스태프 인권개선 정책권고건	의결
2012-37	10.25.	경찰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동태 실시간 촬영·중계사건 관련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2-37	10.25.	성폭력 관련법률의 개정 권고건	의결
2012-38	11.01.	정리해고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2-39	11.15.	인권위 징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2-39	11.15.	기업과 인권 보고서	심의
2012-39	11.15.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용역투입 금지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의결
2012-39	11.1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우범자정보수집관련)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2-40	11.22.	2012년 3분기 진정사건 처리 실적	보고
2012-40	11.22.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2-40	11.22.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용역투입 금지를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건	의결
2012-41	12.06.	연근해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2-41	12.06.	결혼이주여성 및 인도적 체류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방안 정책권고건	의결
2012-42	12.13.	2012년 보상금 지급계획(안)건	의결
2012-42	12.13.	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건	의결
2012-42	12.13.	노숙인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2-42	12.13.	2012년 정착법 현황모니터링 운영결과	보고
2012-42	12.1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건(사단법인 공익벤츠텐터 어필, 사단법인 인권부산을 가꾸는 사람들)	의결
2012-42	12.13.	선거권 등 연령기준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권고건	의결
2012-43	12.20.	2013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2-43	12.20.	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건	의결
2012-44	12.27.	2012년 보상금 지급 계획(안)건	의결
2012-44	12.27.	노인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종합권고	의결
2012-44	12.27.	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3-01	01.09.	인권위-대구광역시교육청 MOU 체결(안)건	의결
2013-01	01.09.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연장)건	심의
2013-01	01.09.	차기정부 인권과제(안)	심의
2013-01	01.09.	노숙인정책 개선권고건	의결
2013-02	01.17.	군전역자들의 이명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권고수용	보고
2013-02	01.17.	정리해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3-02	01.17.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요금 변경결정 멘트 의견조치에 대한 확산건	의결
2013-02	01.17.	선거권 등 연령기준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권고건	의결
2013-03	01.24.	인권위-영화진흥위원회 MOU 체결(안)건	의결
2013-03	01.24.	2013년도 ODA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 기본계획(안)	보고
2013-03	01.24.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3-03	01.24.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13-04	02.07.	정부조직법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관련부분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3-04	02.07.	인권위 조직개편 관련 의견제출건	의결
2013-05	02.1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심의
2013-05	02.14.	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3-05	02.14.	가족해체에 따른 이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3-05	02.14.	2013년 기업과 인권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3-05	02.14.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3-05	02.14.	2012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심의
2013-06	02.28.	제22차 UN인권이사회 출장계획	보고
2013-06	02.28.	2013년도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3-06	02.28.	군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3-06	02.28.	전국 학교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에 대한 성명건	의결
2013-06	02.28.	2013년 기업과 인권 실태조사 계획[재상정]	보고
2013-07	03.07.	2013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심의
2013-07	03.07.	장차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계획(안)	보고
2013-07	03.07.	장차법 2013 모니터링사업 운영계획(안)	보고
2013-08	03.14.	2013 노인인권 모니터링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3-08	03.14.	민간부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개선권고 일부 수용	보고
2013-09	03.21.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심사결과	보고
2013-09	03.21.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개선사업 기본계획	보고
2013-09	03.21.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 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13-09	03.21.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13-09	03.21.	학교 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3-09	03.21.	2013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의결
2013-09	03.21.	2013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
2013-10	03.28.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인권위 위원장 성명(안)건	의결
2013-10	03.2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3-10	03.28.	2012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3-11	04.04.	진주의료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3-11	04.04.	긴급구제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 검토	보고
2013-12	04.16.	해양경찰의 중국선원 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관련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3-13	04.19.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3-13	04.19.	공격적 직장폐쇄 관련 정책권고에 대한 권고수용	보고
2013-14	04.25.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수용	보고
2013-14	04.25.	2003년도 1/4분기 진정사건 처리 실적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3-14	04.2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건	의결
2013-15	05.02.	장애인 인권침해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3-15	05.02.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3-15	05.0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급식 및 건강 개선을 위한 인권위 위원장 성명(안) 채택건	의결
2013-16	05.09.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제한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3-16	05.09.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3-17	05.10.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3-18	05.16.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3-18	05.1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방안 정책권고건	의결
2013-19	05.23.	위원회-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교육 MOU 체결(안)	의결
2013-19	05.23.	군인권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의견표명	의결
2013-20	05.30.	한-몽골 국가인권위원회 MOU 재체결건	의결
2013-20	05.30.	한-우즈베키스탄 국가인권기구 MOU 체결건	의결
2013-21	06.05.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관련 의견제출건(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결
2013-21	06.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결
2013-21	06.05.	2014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3-22	06.13.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결
2013-23	06.20.	육군 제11사단의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사망사건 직 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3-23	06.20.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3-24	06.27.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3-25	07.04.	형법 등 성폭력 관련법률의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 고수용 여부	보고
2013-26	07.11.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강동원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3-27	07.18.	권고수용: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제도개선 권고	보고
2013-27	07.18.	인도적 체류자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 도 개선권고 수용	보고
2013-28	07.25.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 인권보호에 관한 의견표명	의결
2013-28	07.25.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관련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3-29	08.01.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2013-30	08.1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심의
2013-30	08.14.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3-31	08.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3-32	08.29.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사건(13진정2858)관련 법원 의견 제출	심의
2013-32	08.29.	인권위-광주광역시교육청 인권교육 협력증진을 위한 MOU 체결안	의결
2013-32	08.29.	2013년 발행 초·중등 교과서 속 인권위 관련 내용 모니터 링 결과	보고
2013-33	09.05.	2013년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의결
2013-33	09.05.	2012 인권통계	보고
2013-34	09.11.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수용건	보고
2013-35	09.26.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건	보고
2013-36	10.02.	노숙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3-37	10.10.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기획단 활동결과	보고
2013-37	10.10.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3-38	10.17.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3-38	10.17.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권고건	의결
2013-38	10.17.	인권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MOU 체결건	의결
2013-38	1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권고건	의결
2013-39	10.24.	채용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안) 의견표명	의결
2013-39	10.24.	2013년도 3/4분기 진정사건 처리 실적	보고
2013-40	10.31.	여권 인권증진 정책권고건	의결
2013-41	11.07.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건	의결
2013-41	11.07.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건	의결
2013-41	11.07.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 정책권고에 대한 일부수용	보고
2013-42	11.1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13-42	11.14.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3-42	11.14.	장차별 2013 모니터링 사업 운영 결과	보고
2013-42	11.14.	요양불송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관한 의견제출건	심의
2013-42	11.14.	보육공공성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정책권고건	의결
2013-43	11.21.	이주민 관련 TV 프로그램 개선방안 권고건	의결
2013-43	11.2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권고건	의결
2013-44	11.28.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연락사무소(NCP) 구성·운영상황 개선권고건	보고
2013-44	11.28.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보장에 관한 권고건	의결
2013-44	11.28.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관련 규정 개선권고건	의결
2013-44	11.28.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관련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3-44	11.28.	군영향 관련 징계제도 및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건	의결
2013-45	12.05.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관련 규정 개선권고건	의결
2013-45	12.05.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보장에 관한 권고건	의결
2013-45	12.0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정책권고건	의결
2013-45	12.05.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강은희·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3-46	12.12.	2014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3-46	12.12.	2013년도 보상금 지급 계획(안)건	의결
2013-46	12.1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안) 의견조회 결과 및 보급계획	보고
2013-47	12.19.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관련 분향소 설치 긴급구제신청	의결
2013-47	12.19.	2013년 조정위원 위촉계획(안)	심의
2013-47	12.19.	2014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건	의결
2013-47	12.19.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 관련 규정 개선권고건	의결
2014-01	01.09.	제천영유아원 제2차 피해에 대한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4-02	01.1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4-03	01.2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결
2014-03	01.23.	2014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기본계획	보고
2014-03	01.23.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계획	의결
2014-03	01.23.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연장)건	심의
2014-04	02.06.	직제상 팀 신설계획	보고
2014-04	02.0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05	02.13.	인권위 징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공무원 직종 개편 등 관련)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4-05	02.13.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	의결
2014-05	02.13.	2013년 인권교육 운영결과	보고
2014-06	02.20.	진정사건 관련 정책권고 업무 처리 기준 검토	보고
2014-06	02.20.	연예홍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4-06	02.20.	2014 인권교육지원법 입법 추진계획(안)	보고
2014-06	02.20.	UN인권옹호자 특별관 최종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보고
2014-06	02.20.	2013 회계 인권위 소관 결산	심의
2014-07	02.2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있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07	02.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건	의결
2014-07	02.27.	UN장애인권리위원회 회기 전 실무그룹회의 제출 인권위 의견서	보고
2014-07	02.27.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추진안	보고
2014-07	02.2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식 및 차별 실태조사 추진건	보고
2014-07	02.2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4-07	02.27.	2014년 기업과 인권 실태조사 계획건	보고
2014-08	03.06.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 수용	보고
2014-08	03.06.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시연 관련	보고
2014-09	03.2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건	의결
2014-09	03.20.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09	03.20.	국회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09	03.2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014-09	03.20.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2014-09	03.20.	2013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4-09	03.20.	여권인권 증진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4-09	03.20.	2014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4-10	03.27.	2014년 국가인권자수개발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4-10	03.27.	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본 계획(안)	보고
2014-10	03.27.	국회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10	03.27.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11	04.03.	성적 소수자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실태조사 기본계획(안)	보고
2014-11	04.03.	특정직 여성공무원 성차별 개선 실태조사	보고
2014-11	04.03.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 불수용건	보고
2014-11	04.03.	한-폴란드 인권기구 MOU 체결건	의결
2014-11	04.03.	한-덴마크 인권기구 MOU 체결건	의결
2014-12	04.10.	제58차 UN여성지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2014-13	04.1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있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건	의결
2014-13	04.17.	2014년도 1/4분기 진정사건 처리 현황	보고
2014-14	04.2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있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건	의결
2014-15	04.24.	한-폴란드 인권기구 MOU 체결건	의결
2014-15	04.24.	2014년도 ODA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 기본계획(안)	보고
2014-15	04.24.	주민등록번호 포함 서식 정비를 위한 위원회 규칙 일괄개정안	심의
2014-15	04.24.	국회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16	05.01.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건	의결
2014-17	05.15.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4-17	05.15.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초안) 검토의견 제출	의결
2014-18	05.19.	상임위원회 인권 재상정(제3차 UN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초안) 인권위 의견 제출)	의결
2014-19	05.22.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관련 정책개선 권고	보고
2014-19	05.22.	2014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건	심의
2014-20	05.29.	2015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4-20	05.2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14-21	06.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의견표명	의결
2014-21	06.12.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운영결과	보고
2014-22	06.19.	ICC 승인소위 재송인 심사 답변서 제출(안)	심의
2014-22	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의견표명	의결
2014-22	06.19.	군 의료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안)건	의결
2014-23	06.26.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선방안 권고수용건	보고
2014-24	07.02.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4-25	07.10.	인권위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
2014-25	07.10.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대한민국 서명 및 비준 권고	심의
2014-26	07.17.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관련 인권위 의견서	심의
2014-27	07.31.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건	의결
2014-27	07.31.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조항 관련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4-27	07.31.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안)	심의
2014-27	07.31.	시민사회 제출문건에 대해 ICC에 송부하는 위원회 답변서(안)	보고
2014-28	08.07.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관련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4-28	08.07.	지적장애인 사설 거주자 폭행 등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계획	의결
2014-29	08.21.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조항 관련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4-29	08.21.	군대내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4-29	08.21.	본인확인용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다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29	08.21.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건	의결
2014-30	09.1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4-30	09.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의결
2014-31	09.22.	인권위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권고	심의
2014-32	09.25.	탈북청소년 교육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32	09.25.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의 권	의결
2014-32	09.25.	제9차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회의 참석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보고
2014-33	09.29.	[상임위 상정]ICC 승인소위 제출 추가 답변서(안)	보고
2014-34	10.10.	청사이전 진행경과 등	보고
2014-35	10.16.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4-35	10.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건	의결
2014-36	10.23.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및 인권문제 연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36	10.23.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정부 입법예고안) 의견표명	의결
2014-37	10.30.	경찰의 모욕죄 현행법 체포 관련 관행 개선의 권고건	의결
2014-37	10.30.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4-37	10.30.	(상임위)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권고 수용건	보고
2014-37	10.30.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4-38	11.05.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재상정]	의결
2014-38	11.05.	APF 고문방지대사 선출 결과 및 향후 활동계획	보고
2014-39	11.1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4-39	11.14.	인권보도준칙 일부개정안	보고
2014-39	11.14.	2014년도 3/4분기 진정사건 처리 현황	보고
2014-39	11.14.	2013 인권통계	보고
2014-40	11.21.	제10차 ASEAN정상회의 승인 노인인권 신규협력사업 추진경과	보고
2014-40	11.21.	보호수용법안 의견표명	의결
2014-40	11.21.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40	11.21.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41	11.27.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41	11.27.	2013 인권통계	보고
2014-41	11.27.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접근권 보장을 위한 권고	의결
2014-41	1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41	11.27.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건	의결
2014-41	11.27.	결혼 이주가족 인권실태 모니터링 결과 권고건	의결
2014-41	11.27.	외부진료 불허	의결
2014-42	12.01.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수용 촉구 의견표명	의결
2014-43	12.04.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4-43	12.04.	2015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	의결
2014-43	12.04.	인권위원 선출·지명 관련 인권위의 사무에 관한 규칙(안)	심의
2014-43	12.04.	2015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4-43	12.04.	외부진료 불허	의결
2014-44	12.11.	2015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	의결
2014-44	12.11.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인권 지침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4-44	12.11.	2014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촉	심의
2014-45	12.18.	장애인 방송접근권 고시 개정안 검토건	의결
2014-45	12.18.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5-01	01.08.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5-01	01.08.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이개호·부좌 현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01	01.08.	인권위원 자격기준 관련 인권위법 개정(안)	심의
2015-01	01.08.	한국 고문방지프로젝트 계획서	보고
2015-02	01.15.	아동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5-02	01.15.	UN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 제출건	보고
2015-02	01.15.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연장	심의
2015-02	01.15.	2014년도 보상금 지급 계획	의결
2015-03	01.22.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위 답변서(안)	심의
2015-04	01.29.	위원회 국제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강화방안	보고
2015-04	01.29.	2015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5-04	01.29.	한-인도네시아 인권기구 간 MOU 체결(안)건	의결
2015-04	01.29.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의견 표명	의결
2015-04	01.29.	병영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견표명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5-04	01.29.	2014년도 보상금 지급 계획(안)[재상정]	의결
2015-05	02.05.	ICC의 시민단체 제출 문서에 대한 위원회 답변서(안)	보고
2015-05	02.0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5-05	02.05.	2015년 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5-05	02.0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5-05	02.05.	UN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 제출[재상정]	보고
2015-06	02.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5-06	02.16.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안	보고
2015-06	02.16.	2014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심의
2015-06	02.16.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안)	보고
2015-07	02.26.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07	02.26.	제3기인권NAP 권고안 수립을 위한 계획안	보고
2015-07	02.26.	ASEM 노인인권증진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5-07	02.26.	2014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5-07	02.26.	한-덴마크 인권기구 MOU 체결건(안)	의결
2015-08	03.05.	롯데아이언즈 구단의 CCTV 활용 선수 사생활감시 관련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5-08	03.05.	군음부조제도 도입논의 경과	보고
2015-08	03.05.	인권위-APF 지원금 지급에 관한 MOU 체결건	의결
2015-09	03.19.	인권위 징계규칙 일부개정	심의
2015-09	03.19.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5-09	03.19.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 검토건	의결
2015-09	03.19.	장차법 2015 모니터링 사업 운영 계획(안)	보고
2015-10	03.26.	인권위-강원도교육청 인권교육 MOU 체결 계획	의결
2015-10	03.26.	헌법재판소 2014헌가9 의견제출	심의
2015-10	03.26.	사회적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5-10	03.26.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
2015-10	03.26.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바이오정보 수집 의견표명	의결
2015-11	04.02.	2015년 보육 종사자 인권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재개발 계획(안)	보고
2015-11	04.02.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의견표명	의결
2015-11	04.02.	군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관한 의견(안)건	의결
2015-12	04.09.	인권위-강원도교육청 인권교육 MOU 체결 계획	의결
2015-12	04.09.	2015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
2015-12	04.09.	정신보건시설의 선거권 보장 정책권고건	의결
2015-13	04.16.	2015년도 인권정책발전연구과정(ODA 지원사업) 기본 계획(안)	보고
2015-13	04.16.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이원욱·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13	04.16.	인권위-충청남도 소재 5개 기관 인권업무협약 체결 제안건	의결
2015-13	04.16.	정신보건시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재상정]	의결
2015-14	04.23.	경찰의 모욕죄 현행법 체포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보고
2015-14	04.23.	제59차 UN여성지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
2015-14	04.23.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수용	보고
2015-14	04.23.	2015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
2015-15	04.30.	북한인권박물관 기초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5-15	04.30.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추진계획	보고
2015-16	05.12.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의견표명	심의
2015-16	05.12.	2016년 예산요구서(안)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5-17	05.21.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5-17	05.21.	사건기록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등 관련 현황	보고
2015-17	05.21.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의견표명[재상정]	심의
2015-18	06.04.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최민희·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19	06.18.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건	의결
2015-19	06.18.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5-20	06.25.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
2015-20	06.25.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5-20	06.25.	경찰의 성소수자 관련 행사 불허 등	의결
2015-20	06.25.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총회(CDPPC) 가입 추진 [재상정]	의결
2015-21	07.02.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건	의결
2015-21	07.02.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박남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21	07.0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MOU 체결계획(안)건	의결
2015-22	07.09.	출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5-22	07.09.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MOU 체결계획(안)건[재상정]	의결
2015-23	07.16.	인권위 보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5-24	07.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15-25	08.12.	인권위 옥상 공공농성자에 대한 음식물 등 반입차단 관련 긴급구제신청	의결
2015-26	08.20.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내역(19대 국회 발의 기준)	보고
2015-26	08.20.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27	09.03.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5-27	09.03.	UN자유권규약 제4차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안)	심의
2015-27	09.0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지급여기에)	의결
2015-27	09.0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정보인권연구소)	의결
2015-28	09.10.	인권위 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재상정]	심의
2015-28	09.10.	위원회-대전광역시교육청 MOU 체결 추진계획(안)	의결
2015-29	09.17.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류지영·김한길·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29	09.17.	노인인권 ASEM 콘퍼런스 진행경과	보고
2015-30	09.23.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5-30	09.23.	군 고도소 수용자 가족행위 등에 관한 직권조사 계획 보고	의결
2015-30	09.23.	무죄판결 관보 게재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관련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5-31	10.08.	연근해 선원 이주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5-31	10.08.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 및 미보고 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5-32	10.2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5-33	11.12.	인권위-경상남도교육청 MOU 체결 계획(안) 보고	의결
2015-33	11.12.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 및 미보고 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재상정]	의결
2015-34	11.18.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건(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5-34	11.1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5-35	11.23.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 제청(안)	심의
2015-36	11.26.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노사정위 및 국회 논의 경과	보고
2015-37	12.0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건	의결
2015-38	12.0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	의결
2015-38	12.09.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심의
2015-39	12.16.	2015년도 보상금 지급 계획(안)	의결
2015-40	12.2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 규칙 일부개정	심의
2015-40	12.21.	2016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5-40	12.21.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5-40	12.21.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권고건	의결
2015-41	12.23.	의원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건	의결
2015-41	12.23.	[제15-45호]공공사업에서 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 참여권 보호 권고건	의결
2015-41	12.23.	중소기업 인권경영 역량강화 권고건	의결
2015-41	12.23.	취년치정실천자 의료보장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5-41	12.23.	정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확대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신장을 위한 권고건	의결
2015-41	12.23.	2016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	의결
2016-01	01.21.	2016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관련 위원회 답변서(안)	보고
2016-01	01.21.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심의
2016-01	01.21.	2016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재상정]	의결
2016-02	01.28.	2015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심의
2016-03	02.25.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권고건[재상정]	의결
2016-04	03.03.	2016년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016-04	03.03.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6-04	03.03.	2016년 국민인권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6-04	03.03.	인권상황실태조사 안건 처리절차 검토 보고	의결
2016-04	03.03.	기업과 인권 로드맵 연구용역 계획	보고
2016-05	03.10.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6-05	03.10.	2015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6-05	03.10.	북한인권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6-05	03.10.	바이오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6-05	03.10.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05	03.10.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6-05	03.10.	2016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6-06	03.31.	인권위 규칙 일괄정비	심의
2016-06	03.31.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6-07	04.07.	2016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6-07	04.07.	장차법 2016 모니터링 사업 운영 계획(안)	보고
2016-08	04.14.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6-08	04.14.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6-09	04.29.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위한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6-09	04.2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09	04.2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건	의결
2016-09	04.29.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계획(안)건	보고
2016-10	05.12.	인권위-동국대 인권교육 연구중심대학 지정 MOU 체결 검토 보고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6-10	05.12.	성희롱 2차피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16-10	05.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견표명	의결
2016-10	05.1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건	의결
2016-11	05.17.	2017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6-11	05.17.	2017년 실태조사 관련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6-12	05.24.	인권위-대전광역시 MOU 체결 계획(안)	의결
2016-12	05.24.	정신보건법 개정 동향	보고
2016-12	05.2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위한 정책개선 권고 건[재상정]	의결
2016-12	05.24.	인권위-AFT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 지원금 지급에 관한 MOU 체결건	의결
2016-13	06.02.	북한인권위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14	06.08.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
2016-14	06.08.	채용과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의결
2016-15	06.20.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6-15	06.20.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건	의결
2016-15	06.20.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안)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건	의결
2016-16	06.2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위-부산광역시교육청 MOU 체결건	의결
2016-17	07.05.	공공사업에서 주민의 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절차참여권 보호 권고수용	보고
2016-17	07.05.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16-18	07.07.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건	의결
2016-18	07.07.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재상정]	의결
2016-18	07.07.	인신보호법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16-19	07.19.	기업과 인권 NAP 권고건	심의
2016-19	07.19.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19	07.19.	제3기 NAP 권고건	심의
2016-20	07.2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건	의결
2016-21	08.04.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016-21	08.04.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재상정]	의결
2016-22	08.1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재)일본군성노예 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의결
2016-22	08.18.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적 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권고 수용	보고
2016-23	08.25.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건	의결
2016-23	08.25.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건	의결
2016-23	08.25.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차임'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24	09.01.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위-전라북도 MOU 체결건	의결
2016-25	09.08.	중소기업 인권경영 역량강화방안 권고건[재상정]	의결
2016-25	09.08.	회화지도(E-2)비자 소지 외국인의 HIV/AIDS 검사제도 개선 및 UN인권협약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건	의결
2016-25	09.08.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방향	보고
2016-26	09.2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6-27	09.29.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건	의결
2016-28	10.06.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6-28	10.06.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6-28	10.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권고 수용	보고
2016-28	10.0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 개선(안)	의결
2016-28	10.06.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6-29	10.13.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재상정]	의결
2016-29	10.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6-30	10.2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재상정]	의결
2016-31	11.0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6-31	11.04.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재상정]	의결
2016-31	11.04.	인권위법 일부개정	심의
2016-32	11.10.	비공식부문 기사근로자의 노동권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안	의결
2016-32	11.10.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32	11.10.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재상정]	심의
2016-33	11.24.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016-33	11.24.	가정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안	의결
2016-33	11.24.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6-33	11.24.	UN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33	11.2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일부 수용	보고
2016-33	11.24.	2016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 운영 결과	보고
2016-34	12.0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에 대한 확인	보고
2016-34	12.0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사)NK인권피해자 협회	의결
2016-34	12.01.	만성 기성 장애석 환자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6-34	12.0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34	12.01.	축사노예사건 대응방안에 대한 추진 결과	보고
2016-35	12.05.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6-35	12.05.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안	의결
2016-36	12.15.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
2016-36	12.15.	2017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6-36	12.15.	2016년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2016-37	12.27.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권(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6-37	12.27.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6-37	12.27.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6-37	12.27.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 관련 상임위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6-37	12.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재)한배평화재단	의결
2017-01	01.05.	조사국에서 이관된 정책과제 검토현황 및 처리방안	보고
2017-01	01.05.	2017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안	의결
2017-01	01.05.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의견표명(안)	의결
2017-02	01.12.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심의
2017-02	01.12.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7-02	01.12.	무죄판결 관보 게재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관련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7-02	01.12.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7-03	01.13.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착취	의결
2017-04	01.25.	성희롱 2차피해 예방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7-04	01.25.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7-04	01.25.	채용과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7-05	02.02.	인권경영 표준매뉴얼 제작 연구용역 계획	보고
2017-05	02.02.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착취	보고
2017-06	02.09.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7-06	02.09.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권(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재상정]	의결
2017-06	02.09.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의견서(안)	보고
2017-06	02.09.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보고
2017-07	02.15.	2016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	심의
2017-07	02.1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재)한배평화재단	의결
2017-08	02.2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	의결
2017-08	02.23.	2017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7-08	02.23.	노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성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17-08	02.23.	노인인권의 국제적 현안 분석과 UN에서의 주류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17-08	02.23.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와 한계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17-08	02.23.	2017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7-08	02.2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관련	보고
2017-08	02.23.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수용	보고
2017-09	03.03.	UN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의견서(안)	심의
2017-09	03.03.	노인인권종합서 세부추진 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7-10	03.09.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7-10	03.09.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17-11	03.16.	재난 등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7-11	03.16.	여성인권, 차별 관련 실태조사·모니터링 추진계획(안)	보고
2017-11	03.16.	대한민국 제3기 UPR 실무그룹 심의 회기 제출 위원회 의견서(안)	심의
2017-11	03.16.	제5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2018~2020)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
2017-12	03.2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7-12	03.23.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재상정]	의결
2017-12	03.23.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 의견제출권(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의결
2017-13	03.30.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의결
2017-13	03.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의견표명	의결
2017-13	03.30.	2016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7-13	03.30.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건	보고
2017-13	03.30.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추진계획	보고
2017-14	04.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안	의결
2017-15	04.13.	차기정부 인권과제(안)	심의
2017-15	04.13.	2017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
2017-15	04.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의견표명	의결
2017-15	04.13.	순직인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의결
2017-16	04.20.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7-17	04.27.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
2017-17	04.27.	2018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방안 상임위 상정 안건 보고	심의
2017-17	04.27.	2018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안건 보고	심의
2017-17	04.27.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7-17	04.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개선방안	보고
2017-18	05.19.	인권위 규칙 개정안	심의
2017-18	05.1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7-18	05.19.	비공식부문 기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수용 여부건	보고
2017-19	06.01.	인권위-APF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 지원금 지급에 관한 MOU 체결건	의결
2017-19	06.01.	군대내 성폭력에 의한 직권조사	의결
2017-19	06.01.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7-20	06.08.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고
2017-20	06.08.	지자체 인권조례 개폐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7-20	06.08.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7-21	06.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7-21	06.15.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	의결
2017-21	06.15.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7-22	06.27.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및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7-23	07.05.	UN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독립의견서	심의
2017-23	07.05.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기전 실무그룹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의견서(안)	보고
2017-23	07.05.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인권교육 강화 권고수용건	보고
2017-24	07.20.	2017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2017-24	07.20.	기업과 인권 NAP 수립 촉구 의견표명	의결
2017-24	07.2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 보고(사)정신장애인권 연대 카미)	의결
2017-24	07.20.	난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7-25	07.27.	2017년 상반기 보상금 수정지급	의결
2017-25	07.27.	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7-26	08.04.	기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17-27	08.11.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7-27	08.11.	인종차별철폐협약	보고
2017-27	08.11.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7-27	08.11.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7-28	08.14.	인권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	심의
2017-29	08.31.	위원회 권고수용평가 강화 및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보고
2017-29	08.31.	조사국에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2017-29	08.31.	가정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7-30	09.14.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의
2017-31	09.28.	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7-31	09.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수용	보고
2017-32	10.12.	혐오표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안	의결
2017-32	10.12.	회화지도(E-2) 비자 외국인 건강검진제도 개선 UN인권 협약 개인통보제도 관련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7-33	10.19.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7-33	10.19.	인권위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및 인권위 혁신위원회 위원 위촉(안)	심의
2017-33	10.19.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안)(2018~2020)	심의
2017-34	11.0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17-34	11.0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7-34	11.02.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7-35	11.0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8~2022)(안) 의견표명(수정)	의결
2017-35	11.09.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7-35	11.09.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보고
2017-36	11.16.	인권위-연세대 인권증진 MOU 체결건	의결
2017-36	11.16.	대학장학금 신청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안	의결
2017-37	11.23.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	의결
2017-37	11.23.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	의결
2017-38	12.06.	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안)	심의
2017-38	12.06.	법외노동동보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32992)에 관한 의견제출	심의
2017-38	12.06.	인권증진 및 인권가치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위-충청남도 MOU 체결건	의결
2017-38	12.06.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7-38	12.06.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한 구제방안 권고안	의결
2017-38	12.06.	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개선권고안	의결
2017-39	12.14.	2017년 하반기 진정사건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2017-39	12.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외국인 특례제도 의견제출건	의결
2017-39	12.1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인권도시연구소)	의결
2017-39	12.14.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안	의결
2017-39	12.14.	2018년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7-39	12.14.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안[재상정]	의결
2017-39	12.14.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7-40	12.21.	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권고안(3회상정)	의결
2017-40	12.21.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인권위 독립의견서(안)	심의
2017-40	12.21.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7-40	12.21.	구급시설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7-41	12.28.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의결
2017-41	12.2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
2017-41	12.28.	정책권고 수용 이행현황 점검 결과	보고
2017-41	12.28.	2017년 정부업무평가 인권개선 부문 평가결과	보고
2017-41	12.28.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안	의결
2018-01	01.11.	특정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8-01	01.1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수용	보고
2018-01	01.1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사)ASEM노인인권정책센터	의결
2018-02	01.18.	2018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8-02	01.18.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심의
2018-03	01.25.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의결
2018-03	01.25.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8-03	01.25.	UN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쟁점목록 선정 관련 의견서(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8-03	01.25.	인권위-서울대 인권증진 MOU 체결건	의결
2018-04	02.01.	2018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8-04	02.01.	인권위-에퀴타스 MOU 체결건	의결
2018-04	02.01.	2018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	의결
2018-05	02.02.	검찰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건	의결
2018-06	02.0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건	의결
2018-07	02.12.	진정사건 제보자(참고인) 불이익 조치에 대한 긴급구제건	의결
2018-08	02.20.	중국동포 강제퇴거에 따른 긴급구제건	의결
2018-09	02.22.	2017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심의
2018-09	02.22.	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09	02.22.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계획	보고
2018-09	02.22.	만성가성당 폐쇄 환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8-10	02.22.	방송사의 평정율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시 청각·시각장애 인 편의 미제공 등	의결
2018-11	03.08.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심사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8-11	03.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11	03.08.	중국동포 강제퇴거 긴급구제건	보고
2018-12	03.1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자침 보조금 지원 제한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8-12	03.15.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수용	보고
2018-12	03.15.	이주인의 권리에 기반한 사회통합 방안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18-12	03.1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
2018-12	03.15.	2018 군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8-12	03.15.	유차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건	의결
2018-12	03.15.	정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13	03.22.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8-13	03.22.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18-14	03.29.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건(재상정)	의결
2018-14	03.29.	2018년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건	보고
2018-15	04.05.	인권위-국민건강보험공단 MOU 체결건	의결
2018-15	04.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16	04.1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8-16	04.12.	2017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8-16	04.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16	04.12.	정신장애인 자력·연허 취득제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8-16	04.12.	대한민국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인권위-통계청 MOU 체결건	의결
2018-17	04.1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18-17	04.19.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과태료 미납 출국금지 관행 개선 권고건	의결
2018-18	05.03.	2019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8-18	05.03.	2019년도 실태조사 추진방안건	의결
2018-18	05.03.	인권위-광주드라마센터 MOU 체결건	의결
2018-18	05.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18	05.03.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개선 권고건(3차 상정)	의결
2018-18	05.03.	고용차별사건 조사사례 연구 계획(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8-18	05.03.	진정사건 참고인 불이익 조치 긴급구제건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8-18	05.03.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8-18	05.03.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8-19	05.24.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의견제출건	의결
2018-19	05.24.	제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8-20	05.31.	구급시설 사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재상정)	의결
2018-21	06.0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
2018-22	06.1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22	06.14.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
2018-23	06.21.	구급시설 사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제3회)	의결
2018-24	06.28.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권고건	의결
2018-24	06.28.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보고
2018-25	07.05.	북한이탈주민 인권익시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8-26	07.12.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18-26	07.12.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권고건	의결
2018-27	07.19.	북한식당 탈북여성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개시건	의결
2018-27	07.1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심의
2018-27	07.19.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8-28	07.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28	07.26.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 제도개선 수용 여부	보고
2018-28	07.26.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보고
2018-28	07.26.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보고
2018-28	07.26.	위원회 MOU 추진 현황 및 실적	보고
2018-29	08.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인 24시간 활동지원 거부에 대한 긴급구제요청	의결
2018-29	08.09.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일부수용	보고
2018-29	08.09.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심의
2018-29	08.09.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8-29	08.09.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심사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18-29	08.09.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건	의결
2018-29	08.09.	소위원회 개최주기 및 결정문 작성기간 등 개선 검토	보고
2018-29	08.09.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보고
2018-30	08.16.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18-30	08.16.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8-30	08.16.	2018년 상반기 조사국에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2018-30	08.16.	노인인권종합서(안) 발간	보고
2018-30	0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30	08.16.	2018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2018-31	09.06.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8-31	09.06.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31	09.06.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독립보고서 실무안	보고
2018-31	09.06.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건	보고
2018-32	09.13.	의원발의 인권위법 개정안 의견제출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8-32	09.13.	국회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32	09.13.	대체복무제 도입관련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33	10.04.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건	의결
2018-33	10.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33	10.04.	긴급구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인 24시간 활동지원 거부) 권고수용	보고
2018-34	10.11.	UN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인권위 독립보고서(안)	심의
2018-35	10.25.	가족 살처분 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8-35	10.25.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시를 위한 MOU 체결건	의결
2018-35	10.25.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35	10.25.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사전협의	의결
2018-35	10.25.	세종누리학교 장애인 학생 폭행 등 직권조사 개시건	의결
2018-35	10.25.	정부업무평가 평가 기준(안)	보고
2018-35	10.25.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 쟁점목록을 위한 인권위 의견서안	보고
2018-36	11.01.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의결
2018-37	11.08.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심의
2018-37	11.08.	의원발의 인권위법 개정안 의견제출건	의결
2018-37	11.08.	가족 살처분 매몰 작업 참여자 심리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18-37	11.08.	고공농성 관련 대응 경과	보고
2018-38	11.15.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
2018-38	11.15.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위-부산광역시 MOU 체결건	의결
2018-38	11.15.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8-39	11.22.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안 마련 권고건	의결
2018-39	11.22.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보고서(안)	의결
2018-39	11.22.	국방부 훈령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규정」 관련 의견제출건	의결
2018-39	11.22.	인권위-충청북도 MOU 체결건	의결
2018-39	11.22.	인권위의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건 진상조사 보고서(안)	의결
2018-40	12.05.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건	의결
2018-40	12.05.	지자체 혁신평가 인권개선 부문 평가 결과	보고
2018-40	12.05.	북한이탈주민 인권익시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8-41	12.14.	요양급여신청방치처분 취소소송(대법원2016두41071)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018-41	12.14.	2019년 업무계획(안)	심의
2018-41	12.14.	2018년 하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2018-41	12.14.	인권위-한국관광공사 MOU 체결건	의결
2018-41	12.14.	직장내 괴롭힘 방지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8-41	12.14.	대중매체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18-42	12.20.	군 영창 폐지 관련 군인사법 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18-42	12.20.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권고건	의결
2018-42	12.20.	중앙행정기관 혁신평가 인권개선 부문 평가 결과	보고
2018-42	12.20.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관련 직권조사 실시 검토(안)	의결
2018-43	12.27.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18-43	12.27.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권고건	의결
2018-43	12.27.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 의정서 가입 권고	심의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9-01	01.10.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기한 만료 및 재구성 여부	심의
2019-01	01.10.	2019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	의결
2019-01	01.10.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9-02	01.17.	태안화력발전소 현장방문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19-02	01.17.	2019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재상정)	의결
2019-02	01.17.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19-02	01.17.	2019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9-02	01.17.	진폐근로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보고
2019-02	01.17.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02	01.17.	2019년 업무계획(안)	심의
2019-03	01.24.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의견표명	의결
2019-03	01.24.	군 인권상황 및 의식조사(여군 실태 포함) 계획(안)	보고
2019-03	01.24.	고령화 측면에서 본 헌신인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9-04	01.31.	2018년 하반기 조사국에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2019-04	01.3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안)	보고
2019-04	01.31.	2019년도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19-04	01.31.	국방부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9-04	01.31.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05	02.14.	인권위 스포츠인자 자원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및 자문위원 위촉	심의
2019-05	02.14.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9-05	02.14.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06	02.21.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위헌법률심판 의견제출	심의
2019-06	02.21.	노량진수산시장 생존권 탄압 진정관련 긴급구제신청건	의결
2019-06	02.21.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검토건	의결
2019-06	02.21.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안) 검토 보고	심의
2019-06	02.21.	2018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심의
2019-06	02.21.	유차원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보고
2019-06	02.21.	UN고령화실무그룹 제10차 회의 사전 설문조사 답변서(안)	보고
2019-07	02.2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07	02.28.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전년도 사업결과 및 2019년 기본계획(안)	보고
2019-07	02.28.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07	02.28.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08	03.1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08	03.14.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 권고건	의결
2019-08	03.14.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수용	보고
2019-08	03.14.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9-08	03.14.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9-08	03.14.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08	03.14.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9-09	03.21.	가족 살처분 매몰작업 참여자 심리지원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10	03.28.	사상개혁단 사건 실태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 추진계획	의결
2019-10	03.28.	2019년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9-10	03.28.	2019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9-11	04.05.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 사건처리 관련 인권침해 직권 조사 개시건	의결
2019-11	04.05.	차별판단기준 기초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9-12	04.11.	농어촌 노인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19-12	04.11.	2018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19-13	04.19.	혐오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19-14	04.25.	UN아동권리협약 제5·6차 심의 대응 기본계획안	보고
2019-14	04.25.	UN자유권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질의목록 (LoIPR)' 작성을 위한 의견서(안)	보고
2019-14	04.2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15	05.02.	성범죄 피해 신고자 살해사건 관련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19-15	05.02.	2020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9-15	05.02.	2020년 실태조사 추진방안	의결
2019-15	05.0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19-15	05.02.	경비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16	05.0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재상정]	의결
2019-16	05.09.	스포츠인권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19-17	05.16.	UN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심의 후속보고에 대한 의견서(안)	의결
2019-17	05.16.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권고	의결
2019-17	05.16.	스포츠 인권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추진계획(재)	보고
2019-18	05.23.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18	05.23.	2019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
2019-19	06.04.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안) 정책권고건	의결
2019-19	06.0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심의
2019-19	06.04.	재심재판 수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방어권 침해 긴급구제건	의결
2019-20	06.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20	06.20.	2019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심의
2019-21	06.27.	인권위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9-21	06.27.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안 인권위 의견 제출(안)	의결
2019-21	06.27.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의결
2019-22	07.04.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관련 제도개선방안	의결
2019-22	07.04.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장재원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 표명	의결
2019-23	07.11.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23	07.11.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의결
2019-24	07.18.	장차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24	07.18.	비주택 거주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9-25	07.25.	보호관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26	08.0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2019-27	08.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외 1건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9-27	08.08.	UN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제출건	심의
2019-27	08.08.	대학장학금 신청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9-27	08.08.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안 마련 권고건	의결
2019-27	08.08.	2019년 상반기 침해조사국 등에서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2019-27	08.0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9-27	08.0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업 업사이클링을 통한 발달장애 인 돌봄서비스 사업 의견표명	의결
2019-28	08.16.	2019년도 상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2019-28	08.16.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의견표명	의결
2019-29	08.22.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안 마련 권고건	의결
2019-29	08.22.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권고	의결
2019-30	08.30.	간접고용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9-30	08.30.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31	09.06.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 규칙 일부개정안(상임위 상정)[재상정]	심의
2019-31	09.06.	실업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의견표명	의결
2019-31	09.06.	구급시설 사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31	09.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31	09.06.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19-32	09.25.	인권위 징계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심의
2019-32	09.25.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관련 긴급구제건	의결
2019-32	09.25.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의결
2019-32	09.25.	인권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2019-32	09.25.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의
2019-32	09.25.	사회보장급여법 개정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32	09.25.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건	의결
2019-33	10.10.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의견표명	의결
2019-33	10.10.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의견표명	의결
2019-33	10.10.	사회보장급여법 개정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34	10.17.	쌍용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 손해소송 의견제출건	심의
2019-34	10.17.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8헌가16)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019-34	10.17.	공공부문 인터넷 실명제 폐지 권고 및 의견표명	의결
2019-35	10.24.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 표명	의결
2019-35	10.24.	국제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외 2건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9-35	10.24.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 표명	의결
2019-36	10.31.	부서관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건	의결
2019-37	11.14.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의결
2019-37	11.14.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 표명	의결
2019-37	11.14.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37	11.14.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 권고(안)	의결
2019-37	11.14.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일부수용 등 권고이행	보고
2019-37	11.14.	UN고령화실무그룹 제11차 회의 사전 설문조사 인권위 의견서 제출건	의결
2019-38	11.21.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등 사건처리 관련 인권침해 직권 조사	의결
2019-38	11.21.	민사집행법상 경찰의 감치집행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9-38	11.21.	노인자살을 감소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19-38	11.21.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19-39	11.28.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사안 대응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직권조사[재상정]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19-39	11.28.	2020년도 업무계획(안)	심의
2019-40	12.05.	재난 발생시 안전취약계층의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19-41	12.12.	2019년 하반기 보상금 지급 계획(안)	의결
2019-41	12.12.	2020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	의결
2019-41	12.12.	수사절차상 방어력 취약계층의 방어권 강화 권고건	의결
2019-42	12.13.	북한선원 강제복송에 따른 생명권 등 침해	의결
2019-43	12.19.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긴급구제건	의결
2019-44	12.26.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재상정]	의결
2019-44	12.26.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건	의결
2019-44	12.26.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19-44	12.26.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19-44	12.26.	노인자살을 감소 위한 노인정신건강 제도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19-44	12.26.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권고(안)	의결
2020-01	01.09.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심의
2020-01	01.09.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
2020-02	01.16.	농어촌 지역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0-02	01.16.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건	의결
2020-03	01.30.	군복무중 성전환 부서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건	의결
2020-04	01.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04	01.30.	아동에 대한 사법제도 개선안	의결
2020-04	01.30.	2020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채택건	의결
2020-05	02.06.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보고
2020-05	02.06.	고문방지협약 정정 목록 의견서	의결
2020-06	02.13.	UN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2020-06	02.13.	인권침해 판단기준 연구 추진계획(안)	보고
2020-06	02.13.	2019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심의
2020-06	02.13.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의결
2020-07	02.2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07	02.20.	2020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07	02.20.	장병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08	02.27.	발달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	보고
2020-08	02.27.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의결
2020-09	03.05.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환자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구제건	의결
2020-10	03.05.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0-10	03.05.	의원발의 인권위법 개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 의견서 제출건	의결
2020-10	03.05.	차별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2020-10	03.05.	2020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10	03.05.	2020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보고
2020-11	03.1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11	03.12.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건	의결
2020-11	03.12.	2020년 인권상황실태조사(2차) 과제 채택건	의결
2020-12	03.19.	인권위-법무부 MOU 체결건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20-12	03.19.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12	03.19.	구급시설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상당한 편의제공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13	03.26.	성희롱에 대한 국민익식 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13	03.26.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방안 연구 실태조사	의결
2020-13	03.26.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건	의결
2020-13	03.26.	2019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20-14	04.02.	여성 스포츠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20-14	04.02.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의결
2020-14	04.02.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의견표명	의결
2020-14	04.02.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	의결
2020-14	04.02.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20-14	04.02.	스포츠분야 해외선진제도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2020-15	04.09.	인권위-대전광역시-대전도시철도공사 MOU 체결(안)	의결
2020-15	04.09.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0-15	04.09.	공무원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개선 권고	의결
2020-15	04.0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
2020-15	04.0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
2020-16	04.16.	국가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실태조사	보고
2020-17	04.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의결
2020-17	04.23.	2020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추진계획(안)	보고
2020-17	04.23.	2019년 하반기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2020-18	05.07.	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특정 과제) 추진방안	의결
2020-18	05.07.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방안 연구	의결
2020-18	05.07.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검토의견서 제출	의결
2020-18	05.07.	2021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20-18	05.07.	재개발현장 음식물 반입 금지 등에 따른 긴급구제	의결
2020-19	05.14.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	의결
2020-20	05.21.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20-21	06.02.	2020년 기획조사팀 운영계획	보고
2020-21	06.02.	교도관의 진정취하·하위공문서 작성 강요 진정관련 긴급구제신청	의결
2020-22	06.16.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의결
2020-22	06.16.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2020-22	06.16.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심의
2020-23	06.2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20-23	06.23.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20-23	06.23.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의결
2020-23	06.23.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개정안 의견 제출	심의
2020-23	06.23.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재상정]	의결
2020-24	07.01.	빙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	의결
2020-25	07.16.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20-진정-0385100, 0390900, 0397500 병합)	의결
2020-26	07.30.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
2020-26	07.30.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모니터링	보고
2020-26	07.30.	공공분야 인권감사 양성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2020-26	07.30.	기후변화(폭염)에 의한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의결

회차	일자	안건	구분	회차	일자	안건	구분	회차	일자	안건	구분	회차	일자	안건	구분
2020-27	08.1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40	11.26.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의결	2021-08	03.04.	202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8	05.20.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0-27	08.13.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외	의결	2020-41	12.03.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21-08	03.04.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인권증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9	05.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20-27	08.13.	노동위원회 소관사무 확대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의결	2020-41	12.03.	유도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21-08	03.04.	각급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9	05.27.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0-27	08.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41	12.0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1-08	03.04.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과 접근성 조치 선진사례 현황 조사 및 제도 연구	보고	2021-19	05.27.	공소장에 실려진 전과 기재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의결
2020-28	08.21.	긴급구제 처리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20-42	12.10.	유도 선수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재상정]	의결	2021-08	03.04.	성소수자 차별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사례연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9	05.27.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0-28	08.21.	2020년도 상반기 보상금 지급 계획(안)	의결	2020-42	12.10.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의결	2021-08	03.04.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개선 권고	의결	2021-20	06.10.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20-28	08.21.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42	12.10.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개선 권고	의결	2021-08	03.04.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21	06.16.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20-29	08.2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42	12.10.	사형제 폐지 등에 관한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	2021-08	03.0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방안 연구계획(안)	보고				
2020-29	08.27.	2020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	2020-43	12.17.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1-09	03.11.	2021년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	의결				
2020-29	08.27.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43	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권고	의결	2021-09	03.11.	2021년 경쟁보호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				
2020-29	08.27.	노노돌봄 인권보호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 개선권고	의결	2020-43	12.17.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1-10	03.18.	권고수용 보고: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보고				
2020-30	09.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0-43	12.17.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1-10	03.18.	권고수용 보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보고				
2020-30	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규제) 의견표명	의결	2020-43	12.17.	정신장애인 자력·면허 취득제한 제도개선 권고수용 여부	보고	2021-11	03.25.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0-30	09.03.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20-43	12.17.	정신건강 인권보호 기준 추진경과 및 최종안	보고	2021-11	03.25.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의결				
2020-31	09.10.	위원회 목표설정 체계 개선방안	심의	2020-43	12.17.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21-11	03.25.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2021년 10월 등급심사 제출자료(안)	심의				
2020-31	09.10.	위촉인권감사 강의평가 방안 연구용역 계획	보고	2020-43	12.17.	2021년 위원회 업무계획	심의	2021-11	03.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 회신	의결				
2020-31	09.10.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 [재상정]	의결	2020-44	12.24.	감치제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의결	2021-11	03.25.	장차법 개정법률안 의견회신	의결				
2020-32	09.18.	2020년 상반기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2020-44	12.2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1-12	04.01.	제4차 NAP 권고안 수립 기본계획	보고				
2020-32	09.18.	수사기관 인주적 통제 방안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2020-44	12.24.	2020년도 하반기 보상금 지급 계획안	의결	2021-12	04.01.	2021년 인권상황실태조사(일반과제) 과제(2차) 채택	의결				
2020-32	09.18.	20대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개선 권고	의결	2020-44	12.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1-12	04.01.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				
2020-32	09.18.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안) 의견표명	의결	2020-44	12.24.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재상정]	의결	2021-12	04.01.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보조금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020-33	10.0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의결	2020-44	12.24.	강제퇴거·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보호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21-12	04.01.	2020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2020-33	10.08.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표명	의결	2021-01	01.07.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의	2021-12	04.01.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20-34	10.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표명 [재상정]	의결	2021-01	01.07.	의원발의 인권위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서 제출	의결	2021-13	04.08.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제)	의결				
2020-35	10.22.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수용(20-진정-0138000)	보고	2021-01	01.07.	2021년 인권상황실태조사(일반과제) 과제(1차) 채택	의결	2021-13	04.08.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20-35	10.22.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수용(20-진정-0171500, 20-진정-0178100 병합)	보고	2021-02	01.1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21-13	04.0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20-35	10.22.	2020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	2021-02	01.14.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21-13	04.08.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수용(20-진정-0001900)	보고				
2020-35	10.22.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방문조사 실시계획(안)	의결	2021-02	01.14.	의원발의 인권위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안) 검토의견서 제출	의결	2021-13	04.08.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20-35	10.22.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20-진정-0001600)	의결	2021-03	01.21.	2021년 노숙인복지시설 방문조사계획(안)	의결	2021-13	04.08.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권고수용	보고				
2020-36	10.29.	기후변화(폭염)에 의한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재상정]	의결	2021-03	01.2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검토 회신	의결	2021-13	04.08.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수용(20-진정-0001600)	보고				
2020-36	10.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1-04	01.28.	인권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재상정]	심의	2021-13	04.08.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 관련 권고수용(20-진정-0385100)	보고				
2020-37	11.05.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의결	2021-04	01.28.	2021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4	04.15.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의결				
2020-37	11.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표명	의결	2021-04	01.28.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건강권 침해 방지 등(긴급구제)	의결	2021-14	04.15.	2020년 하반기 정책교육국으로 이관된 정책과제 처리현황	보고				
2020-38	11.12.	경찰의 단식 농성자에 대한 방한물품 반입 제한에 따른 긴급구제	의결	2021-05	02.05.	권고수용 보고: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보고	2021-15	04.22.	요양병원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제도 도입 권고 수용 여부	보고				
2020-38	11.12.	보호수용법 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의결	2021-05	02.05.	광역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5	04.22.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				
2020-39	11.17.	만 65세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에 대한 긴급구제(20-긴급-0001900)	의결	2021-05	02.05.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5	04.2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회신	의결				
2020-39	11.17.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심의	2021-06	02.18.	2020 회계연도 인권위 소관 결산(안)	심의	2021-16	05.06.	2022년도 예산요구서(안)	심의				
2020-39	11.17.	경찰의 단식 농성자에 대한 방한물품 반입 제한	의결	2021-06	02.18.	인신매매·착취방지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제출	의결	2021-16	05.06.	2022년도 실태조사(특정과제) 추진방안	의결				
2020-40	11.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의결	2021-06	02.18.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심의	2021-17	05.13.	2022년도 실태조사(특정과제) 추진방안	의결				
2020-40	11.26.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의결	2021-06	02.18.	방상종목 인권실태 특별조사 결과 및 정책권고[3회상정]	의결	2021-18	05.20.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21-07	02.25.	노인의 생애와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8	05.20.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일부수용	보고				
				2021-07	02.25.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2021-18	05.20.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일부 수용	보고				



20th ANNIVERSAR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심상돈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유남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찬진 변호사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실무추진단

단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단원 조형석 인권정책과장
권혁장 인권교육기획과장
윤설아 홍보협력과장
김용국 조사총괄과장
서수정 차별시정총괄과장
김재석 대전인권사무소장
최진열 운영지원과 서기관
박은정 운영지원과 주무관
정호균 국제인권과 서기관
임선영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
길남희 아동청소년인권과 주무관
간사 박광우 기획재정담당관
박진남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20년사 — 2001~2021

인쇄일 2021년 11월 10일
발행일 2021년 11월 25일
발행인 송두환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02) 2125-9793
팩스 (02) 2125-0913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편집 그리모
디자인 올컨텐츠그룹
인쇄제작 올앤피앤비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49-01

비매품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서명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